始興市史 3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사편찬위원회

Contents

제1부 근대사회의 형성과 전개

1장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_ 차선혜 12
1. 한말 시흥의 행정구역 12
2. 지방제도 개혁과 행정 운영의 변화 17
1) 지방제도 개혁과 인천 · 안산지역의 변화 17
2) 행정 운영의 변화 20
3. 조세징수체계의 일원화 22
4. 근대적인 재판제도의 도입 25
5. 치안행정의 강화와 통신시설의 근대화 28
1) 치안기구의 설치와 치안행정 강화 28
2) 통신시설의 근대화 30

2장 광무양전사업과 국유지 정리 _ 이영호
1. 행정구역과 호구 · 토지의 변화 34
1) 행정구역의 변천 34
2) 호구와 결부의 변화 37
2. 광무양전사업 43
1) 광무양전의 시행과정 43
2) 시흥지역의 광무양전 46
3. 궁장토 · 둔토의 경영과 국유화 52
1) 궁장토경영과 국유화 52
2) 둔토경영과 국유화 61

3장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_ 차선혜 76
1. 지역사회 변화의 제양상 76
1) 개신교 바람, 방죽뫼에 불다 76
2) 갈수록 극심해지는 도적, 도적떼 79
3) 중간 수탈에 신음하는 지역민 82
2. 시흥지역의 국권회복운동 84
1)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계몽운동 84
2) 의병운동의 전개와 양상 89

제2부 일제시기 정치 · 경제적 변화

1장 지방지배체제의 변화 _ 윤해동 98
1. 식민지 지방제도 개편과 '면제' 실시 98
2. 군 · 면 폐합과 군 · 면 구역의 획정 103
3. 군 · 면 행정 담당자의 변화 110
4. 군 · 면 행정의 편린 118

2장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_ 조석곤 124
1. '사업' 이전 일제의 토지정책 127
2. 토지조사사업의 경과 133
3. 시흥지역 토지조사사업 140

3장 임야조사사업과 삼림조합 _ 최병택 158
1.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배경 160
2. 시흥지역 임야조사사업 165
3. 시흥군의 삼림조합 171

4장 농업정책과 농촌경제의 변화 _ 이송순 180
1. 일제시기 농업생산구조 180
1) 일제시기 인구구성 180

2) 경지 · 계급구성과 소작관행 186
2. 일제의 식민농정과 농촌경제의 변화 191
1) 농사개량과 수리조합 191
2) 농촌진흥운동과 농가경제 203

5장 군자 · 소래염전의 축조와 운영 _ 박민웅 214
1. 천일염 관영화정책과 시흥의 염전 214
1) 수입 중국염의 증가 214
2) 천일염 이전 시흥의 염전 216
3) 천일염 관영화정책 220
2. 1907~1930년 관영염전 축조와 군자염전 221
1) 관영염전의 축조와 군자염전의 난공사 221
2) 관염의 운영과 군자염전 225
3. 1930~1945년 염업정책과 군자 · 소래염전 227
1) 염수이입관리령의 시행 227
2) 제4기 염전 축조계획과 소래염전 축조 228

6장 수인선의 부설과 운영 _ 견수찬 232
1. 수인선 부설의 배경 232
2. 수인선의 부설 234
3. 수인선의 변천 241
4. 시흥지역의 수인선 역과 기능 244

제3부 일제시기 주민 동향과 생활상

1장 시흥지역의 3 · 1운동 _ 이현주 250
1. 3 · 1운동의 확산 250
2. 3 · 1운동의 전개과정 253
1) 수암면 만세시위운동 253
2) 군자면 만세시위운동 257

3. 시흥지역 3 · 1운동의 특징과 성격 259

2장 연성음사의 활동내역 _ 김근태 262
1. 연성음사의 결성과 활동 263
1) 한시 창작모임의 결성 263
2) 연성음사의 운영 267
3) 『연성음사시첩』 편집과 현상공모를 통한 작품집 발간 270
2. 연성음사의 문학관과 사회의식 278
1) 연성음사의 문학관 278
2) 연성음사의 사회의식 281
3. 일제강점기 지역적 한시 동인회 활동의 의의 284

3장 주민생활의 편린 – 일제시기 신문기사를 통해 본 시흥 _ 이상록 290
1. "보통학교 학년을 연장하라!" 290
2. 누가 교육칙어를 훔쳤나 298
3. "술을 끊자, 담배를 끊자" 301
4. 1928년, 그 잔인한 가뭄의 해 305
5. 친절한 이명규 씨 그리고 어떤 효성 308
6. '농촌진흥'에서 '근로보국'으로 311

제4부 현대사회의 변화

1장 해방과 한국전쟁 _ 박동찬 320
1. 미군정기 시흥 320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시흥 332
3. 한국전쟁의 발발과 북한군 점령하의 시흥 337
4. 유엔군의 시흥 수복과 휴전 347
5. 전쟁이 시흥에 미친 영향 355

2장 시흥군 농지개혁의 전개와 귀결 _ 최영묵 360
1. 미군정의 귀속농지 분배 360
1) 해방 직후의 농업상황과 토지개혁 문제 360
2) 경기도 농업상황 362
3) 미군정의 토지정책과 귀속농지의 분배 366
2. 한국정부의 농지개혁 370
1) 농지개혁법의 성립과 내용 370
2) 농지개혁의 귀결 372
3. 시흥군의 농지개혁과 귀결 373
1) 전국의 지주 동향 373
2) 시흥군의 지주 동향 377
3) 농민의 동향 385

3장 새마을운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_ 이상록 390
1. 1970년대 초반까지의 농촌상황 – 소래면의 사례 391
2. 새로운 주체의 탄생 – 새마을연수교육 394
3. 새마을지도자의 열성 – 포1리의 사례 398
4. 관의 지원과 마을 간 경쟁 405
5.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동원 사이 416
6. 여성들이 나서다 420
7.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과 망각 427

4장 사회변동과 행정구역의 변화 _ 홍복현 432
1. 경인공업지대의 형성과 시화공단의 조성 433
2. 도시화와 행정구역의 개편 439
1) 인구 변동과 개발제한구역 439
2) 행정구역의 개편 448
(1) 해방 후~1960년대 행정구역 개편 448
(2) 1970년대 행정구역 개편 451
(3)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과 시흥군의 해체 459

5장 근대가족의 변화와 시흥 주민의 가족생활 _ 김은경 462
1. 가족 규모와 구성의 변화 464
2. 결혼과 출산 471
1) 결혼 관행의 변화 471
2) 출산과 가족계획 478
3. 가족 내의 성역할 변화 483
1) 자녀 양육 484
2) 가 사 491
4. 경제생활의 변화 496
1) 경제권 496
2) 주택마련 498
3) 소비생활 501
5.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505
1) 부부관계 505
2) 딸과 아들에 대한 태도 506
3) 여성들의 사회활동 508

표 목록 512
그림 목록 513
사진 목록 513
찾아보기 516
집필위원 명단 524



제1부 근대사회의 형성과 전개

1장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2장 광무양전사업과 국유지 정리
3장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1장 근대적 개혁과 지방제도 변화

1. 한말 시흥의 행정구역

오늘날 시흥의 행정구역은 1989년 시흥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편제된 것이다. 이때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소래읍을 하나로 묶어 시흥시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시흥시는 조선시대 시흥이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형성된 시흥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시흥'이라는 명칭은 1795년(정조 19)에 금천현의 군명을 '시흥'으로 개칭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1] 1912년까지만 해도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군내면, 동면, 서면, 상북면, 하북면 등 6개 면 22개 동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과천군 전부와 안산군 일부를 통합하여 북면, 신동면, 동면, 서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 군자면, 수암면 등 9면 162개 리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후 1940년대에 들어서면 안양면, 서면, 신동면, 남면, 과천면, 동면, 군자면, 수암면 등 8면 71리로 축소, 조정되다가 해방 이후 신동면과 동면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1963년에 새롭게 의왕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면서

(1)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윤2월 1일.

안양읍, 서면, 과천면, 의왕면, 수암면, 군자면의 6개 읍 · 면으로 조정되었다.

시흥군은 한동안 행정구역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일대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73년 수도권 위성도시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안양읍이 시흥군에서 분리되어 안양시로 승격하였고,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었다. 이와 함께 1979년에는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반월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암면의 6개 리와 군자면의 7개 리가 반월출장소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분리과정은 계속되어 1981년에는 서면이 광명시로, 1986년에는 과천면이 과천시로, 그리고 1989년에는 군포읍과 의왕읍이 각각 군포시와 의왕시로 승격하여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같은 해 시흥군도 시로 승격하게 되는데, 이때 시흥시의 행정구역을 이루게 된 것이 군자면, 수암면, 소래면이다. 이처럼 몇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분리와 편입을 거듭한 결과 오늘날 시흥시의 행정구역은 본래 시흥군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시의 이름은 예전 그대로 '시흥'이면서 포괄하는 지역은 옛 시흥과 전혀 다른 시흥시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오늘날 시흥시를 이루고 있는 군자, 수암, 소래지역은 원래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 군자면과 수암면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오랜 세월 안산군에 속해 있다가 1914년 안산군 해체와 함께 시흥군에 편입된 이래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역이다. 1914년 전까지는 안산군 군내면(郡內面), 잉화면(仍火面, 仁化面), 초산면(草山面), 대월면(大月面), 와리면(瓦里面), 마유면(馬遊面)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반면 소래면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시흥군에 편입된 지역으로 좀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천군의 신현면(新峴面, 新古介面), 전반면(田反面), 황등천면(黃等川面)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1914년 이전 시기의 안산군 일부와 인천부 일부 지역이 오늘날의 시흥지역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음에서는 한말 안산군과 인천부의 행정구역체제와 변천과정을 통해 어떤 지역이 시흥군으로 편입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안산군의 경우, 조선 후기부터 1910년대 초까지 행정구역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 후기~1910년대 초 안산군의 행정구역 변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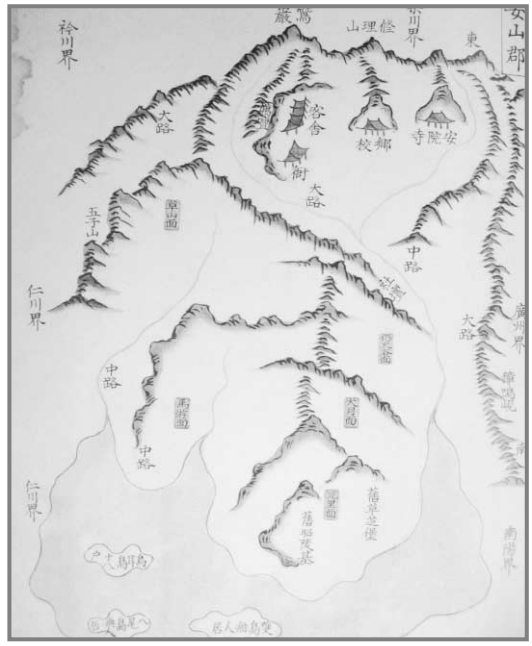
면명	1789년	1895년	1912년	1914년		2005년
군내면	동암리, 서정자리, 장곡리, 부곡리, 신동리, 점성리, 성곶리, 성곶포촌리, 양등벌리(9)	지장, 장상, 장하, 부곡, 신리, 점성, 성포, 양상, 양하, 성륙(10)	수암리, 서정리, 장상리, 장하리, 동곡리, 부곡리, 신리, 점성리, 성포리, 양상리, 양하리(11)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3)	시흥
					부곡리, 양상리, 성포리(3)	안산
잉화면(인화면)	북곡리, 잉화곡리, 와곡리, 고잔리, 월입피리(5)	북곡, 능곡, 화정, 광곡, 와상, 월하, 고잔, 월피(8)	북곡리, 능곡리, 화정리, 광곡리, 와상리, 와하리, 고잔리, 월입피(8)		능곡리, 화정리(2)	시흥
					와리, 고잔리, 월피리(3)	안산
초산면	두모곡리, 목감리, 논지곡리, 물항동리, 상직곶리, 광석리, 중직곶리, 하직곶리, 하직곶중리, 하직곶하리(10)	조남, 제청, 목감, 논곡, 상직, 광석, 궤곡, 중직, 산현, 물항, 하상, 하중, 하하(13)	조남리, 제청리, 목감리, 율포리, 물왕리, 상직리, 산현리, 궤곡리, 중직리, 하상리, 광석리, 하하리, 논곡리, 하중리(14)		조남리, 목감리, 물왕리, 산현리, 하상리, 광석리, 논곡리, 하중리(8)	시흥
대월면	거모포리, 석곡리, 동선리부, 달산리(4)	거모포, 석곡, 선부, 달산(4)	거모포리, 석곡리, 선부리, 달산리(4)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1)	시흥
					선부리(1)	안산
와리면	강곡리, 신각리, 적길리, 무등곡리, 성두리, 이목리, 능내리, 원당상리, 원당하리, 포촌리, 초지리(11)	선곡, 모곡, 신각, 적길, 무곡, 성두, 이목, 능내, 성내, 원당포, 원상, 원하, 구초지(13)	모곡리, 선곡리, 신각리, 적길리, 무곡리, 성두리, 이목동, 능내리, 성내리, 원상리, 원포리, 원하리, 초지리, 시우동(14)		초지리, 원곡리, 신길리, 성곡리, 목내리, 원시리(6)	안산
마유면	마현리, 장종리, 응곡리, 월곶리, 죽율리, 정왕리, 구지정리, 산북리, 오이도리(9)	장종, 조현, 응곡, 월곶, 정왕, 죽율, 구정, 산북(8)	조현리, 장상리, 장하리, 조촌리, 응곡리, 월동리, 월서리, 정왕리, 오이리, 죽율리, 구정리, 신북리(12)		장현리, 장곡리, 월곶리, 정왕리, 죽율리, 군자리(6)	시흥

조선 후기 안산군의 면모는 1789년 발간된 『호구총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호구총수』는 안산군의 인구와 리명(里名)을 기록한 최초의 자료로, 이에 따르면 당시 안산군의 행정구역은 6개 면 48개 리였다. 그 후 1895년경 자료인 『기전읍지』에는 6개 면 56개 리로 늘어나 리수가 19.2% 증가하였다. 동리의 증가는 인구와 가호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동리의 분화는 계속되어 1912년에는 6개 면 63개 리

(2) 1789년은 『호구총수』, 1895년은 『기전읍지』, 1912년은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4년은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32개 리가 오늘날 시흥시 지역에 해당한다. 잉화면 능곡리 · 북곡리가 능곡동, 화정리 · 광곡리가 화정동의 옛 지명이며, 초산면 목감리 · 율포리는 목감동, 논곡리는 논곡동, 조남리 · 제청리는 조남동, 산현리 · 궤곡리는 산현동, 물왕리 · 상직리는 물왕동, 광석리 · 하하리는 광석동, 중직리 · 하상리는 하상동, 하중리는 하중동에 해당한다. 대월면에서는 거모포리와 석곡리가 현 거모동이다. 한편 마유면 일대는 전부 시흥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월동리와 월서리는 월곶동이며, 조현리 · 장상리는 장현동, 장하리 · 도촌리 · 응곡리는 장곡동, 정왕리 · 오이리는 정왕동, 죽율리는 그대로 죽율동이 되었다.

다음으로 『호구총수』에 기재된 조선 후기 인천지역





〈그림 1〉 조선 후기의 안산군(『광여도』)
〈그림 2〉 조선 후기의 인천부(『광여도』)

의 행정구역을 보면, 부내면, 조동면, 신고개면, 전반면, 황등천면, 남촌면, 원우소면, 다소면, 주안면, 이포면 등 모두 10개 면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오늘날 시흥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고개면, 전반면, 황등천면의 3개 면으로 전체 2,627호 가운데 914호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시흥지역으로 포함된 신고개면, 전반면, 황등천면의 행정구역 변화과정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 후기~1910년대 초 인천부 신고개면 · 전반면 · 황등천면의 행정구역 변화[3]

면이름	1789년	1912년	1914년		2005년
신고개면 (신현면)	일리, 이리, 삼리, 사리, 포촌	대야동	소래면	대야리	대야동
		삼리		은행리	은행동
		사천리, 신촌리		신천리	신천동
		창동, 고기리, 이리		미산리	미산동
		죽원, 산정리, 방곡리		방산리	방산동
		국동, 포동		포리	포 동
전반면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 육리, 칠리	일리 양지리, 일리 가대동, 일리 손내동, 이리 장낙동		안현리	안현동
		이리 매착리, 이리 율동		매화리	매화동
		삼리 도두동, 삼리 강창리		도창리	도창동
		사리 진촌, 오리 검의리, 육리 도이리		금이리	금이동
		칠리 능내동, 칠리 중동, 칠리 신흥동, 칠리 은행동		무지리	무지내동
황등천면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 육리	일리 두곡, 일리 목과동, 일리 불야위, 이리 중림, 삼리 탄평		과림리	과림동
		삼리 일부, 사리		옥길리	광명편입
		오리		계수리	부천편입
		육리 수노곡, 육리 구미, 육리 가일, 육리 건정리, 육리 고공리, 칠리 내곡, 칠리 후곡, 칠리 덕석리			계수동

〈표 2〉에서와 같이 인천부에 소속되어 있던 신고개면, 전반면, 황등천면은 황등천면의 일부를 제외하면 오늘날 시흥시의 행정구역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신현면은 1899년 이전까지 지도와 읍지에서 신고개면으로 표기되다가 1899~1900년에 간행된 『인천부읍지』에 신현면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 무렵부터 '고개

(3) 1789년은 『호구총수』, 1912년은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4년은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古介)'를 '현(峴)'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것 같다. 한편 시흥지역에 포함되는 인천부 소속 면들은 조선 후기 이래 한말을 거치면서 동리 단위 마을 이름이 다양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는 등 촌락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2. 지방제도 개혁과 행정 운영의 변화

1) 지방제도 개혁과 인천 · 안산지역의 변화

『대전회통』에 따르면 조선 후기 전국의 행정구역체제는 8도 5부 5대도호부 20목 75도호부 77군 148현으로 편제되어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4부 3목 8도호부 10군 12현이었다. 오늘날 시흥지역은 당시 인천도호부 일부와 안산군 일부에 해당한다. 인천도호부는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편 때 인주에서 인천군으로 바뀐 이래 1460년(세조 5) 도호부로 승격하였다. 이후 숙종연간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복구된 후 한말 지방제도 개편이 있기까지 도호부체제를 유지하였다. 인천지역이 읍호의 부침을 겪은 것에 비해 안산군은 고려 충렬왕대 안산군으로 승격하여 조선 태종대 8도제 실시로 경기도에 편제된 이래 한말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였다.

인천도호부와 안산군에 행정구역상의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갑오개혁이 진행되던 1895년에 이르러서였다. 1895년 5월 26일 개화파정부는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조선시대 이래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공포하였다. 칙령 제98호 '지방제도개혁에 관한 건'을 통해 시행하게 된 23부제는 종래 유수부 · 부 · 대도호부 · 도호부 · 군 · 현 등으로 번잡하게 나뉘어 있던 것을 모두 군으로 단일화하여 총 337개 군을 23부 아래 분속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도호부는 인천군으로, 안산군은 그대로 안산군으로 개편되어 김포군, 부평군, 양천군, 시흥군, 과천군, 수원군, 남양군, 통진군, 강화군, 교동군 등

과 함께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23부제하에서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군을 결호(結戶)의 다소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경비와 관원의 봉급체계를 달리 책정하였다. 등급별 1년 군 경비 현황을 보면, 1등 17개 군 3,356원, 2등 32개 군 2,884원, 3등 78개 군 2,710원, 4등 111개 군 2,276원, 5등 85개 군 2,122원이었다. 인천군은 4등 군으로 분류되어 관원 봉급 2,056원과 기타 경비 220원을 합쳐 도합 2,276원을 1년 경비로 배정받았다.[4] 5등 군으로 분류된 안산군은 관원 봉급 1,932원과 기타 경비 190원을 합쳐 2,122원이 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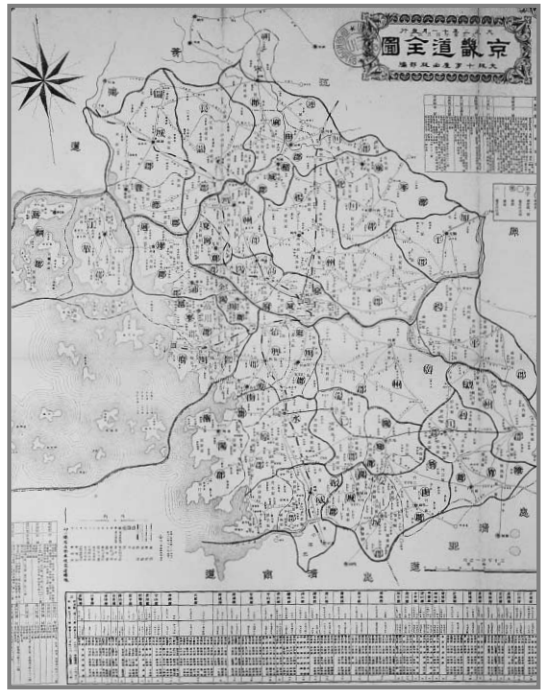
그러나 23부제는 갑오개혁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급박하게 공포된 것이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종래의 뿌리 깊은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이었다는 점에서 원활한 실시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에 23부제는 실시 1년 만에 "민정(民政)의 불편함과 번용(煩冗)의 폐가 있고 재정상의 부담도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13도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첫째 이전의 8도 중 함경도 · 평안도 · 충청도 · 경상도 · 전라도 등 5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13도로 하고 각 도에 관찰사를 두었고, 둘째 23부제하에서 군으로 격하되었던 한성을 특별히 도와 동격의 부로 하여 판윤을 두었으며, 셋째 도 아래 단위를 다시 부 · 목 · 군으로 나누어 7부(광주 · 개성 · 강화 · 인천 · 동래 · 덕원 · 경흥), 1목(제주), 331군으로 구획하였다.[5]

13도제의 실시에 따라 23부제하에서 인천부에 소속되었던 인천군은 인천부로 격상하였고, 안산군은 다시 경기도로 편제되었다. 13도제도 23부제와 마찬가지로 지방 관원의 봉급과 경비를 차등 지급하는 군 등급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23부제하에서 인천군으로 격하되었던 인천지역은 다시 인천부로 승격하여 1등급 경비인 3,922원을 배정받았다. 안산군도 한 등급 승격하여 4등 군으로 책정되어 2,154원

(4) 勅令 第163號「各郡經費排定에 관한 件」; 勅令 第164號「郡守官等俸給에 관한 件」, 1895년 9월 5일,『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이하『법령집』으로 약칭함).

(5) 勅令 第36號「地方制度 · 官制 · 俸給 · 經費 改正」, 1896년 8월 4일,『법령집』Ⅱ.

을 배정받게 되었다. 1년 경비는 각 행정구역 등급별로 차이가 큰 편인데, 지방관원 봉급도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가령 1등급인 인천부의 경우 부윤 100원, 향장(鄕長) 6원, 순교(巡校) 4원, 수서기(首書記) 8원, 서기 6원, 순졸(巡卒)·사령(使令)·사용(使傭)·사동(使僮)이 각각 3원이었다. 이에 비해 4등 군인 안산군의 경우는 군수 58원, 향장 6원, 순교 4원, 수서기 7원, 서기 5원, 통인·사령·사용·사동이 3원씩이었다.[6]



〈그림 3〉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경기도 안산군 잉화면·초산면은 시흥군 수암면으로, 대월면·와리면·마유면은 군자면으로 변경되었고, 인천부의 전반면·신현면·황등천면은 부천군 소래면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지방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본격화되었다. 통감부는 1906년 4월 지방제도 개정작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방제도조사소를 설치하고, 9월 초부터 비입지(飛入地)와 두입지(斗入地) 정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 '지방구역정리건'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총 316개 대상 지역 가운데 217개 지역의 비입지와 두입지를 정리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비입지 12개 지역과 두입지 18개 지역이 각각 정리되었는데, 인천부에서는 이포면이 비입지로 판정되어

(6) 勅令 第36號「地方制度·官制·俸給·經費 改正」, 1896년 8월 4일, 『법령집』 Ⅱ.

남양군으로 편입되면서 종래 12개 면에서 11개 면으로 축소되었다. 안산군은 광주군의 두입지인 성곶면, 월곶면, 북방면이 편입되어 기존의 6개 면에서 9개 면으로 늘어났다.(7)

그런데 통감부시기 지방제도 개정은 지방구획상의 비입지와 두입지 정리만이 아니라 345개 전국 부 · 군을 220개로 대폭 통폐합하는 군폐합안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폐합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 38개 군 가운데 16개 군이 폐지 대상이었는데, 여기에는 부평군을 인천부로 통합하는 한편, 안산군은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8)

군폐합안은 당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일제 강점 후인 1914년 지방제도 개정 때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2) 행정 운영의 변화

조선시기 지방행정체제는 수령과 이서(吏胥), 그리고 그 보좌기관인 향청과 수령의 간접지배에 의한 면리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관은 일반 행정권은 물론이고 조세징수권 · 군사권 · 재판권 등 거의 전권을 행사하며 해당 군현의 모든 일을 관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관의 전권 행사, 지방행정 실무자층에 대한 보수체계의 비합리성과 지방관의 잦은 교체, 매관매직 등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방행정을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갑오개혁 이후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지방관의 행정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조세징수권을 분리하였다. 아울러 지방경찰업무와 재판권 및 행형권(行刑權)도 군수권에서 분리하였다. 이러한 군수권의 축소와 분리는 중세적 행정 미분화를 지양하고 근대적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7) 勅令 第49號「地方區域整理件」, 1906년 9월 24일, 『법령집』 Ⅴ.
(8)「地方區域分合說明書」, 『地方制度調査』(朝-31-6, 국립중앙도서관).

등장한 징세기구 및 재판, 경찰기구는 지방행정체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한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라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 실무담당층의 구성과 기능도 크게 달라졌다. 조선 후기 인천지역의 『인천부읍지』에 수록된 인천지역 관속(官屬)은 향소(鄕所) 3명 ,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장교(將校) 10명, 인리(人吏) 26명, 통인(通引) 15명, 노령(奴令) 19명, 비자(婢子) 3명 등 모두 76명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에 이르러 군수권의 축소는 물론 지방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하였다. 이 시기 4등 군이던 인천군 소속 관직명과 정원을 보면 세무주사 1명, 장교 4명, 이방(吏房) 1명, 이(吏) 6명, 통인 1명, 사령 4명, 객사(客舍) 1명, 향교직(鄕校直) 1명, 세무서기 2명, 통인 1명, 사령 3명 등 25명이었다.[9] 안산군의 경우 조선 후기 관속의 수를 알 수는 없으나 갑오개혁 당시에는 5등 군에 배정됨에 따라 행정 실무자가 모두 23명이었다. 이는 5등 군에는 세무주사직이 없고, 사령이 3명이었기 때문이다.

갑오개혁기에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종래 과다했던 지방 관원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행정을 분화함으로써 군수업무가 행정사무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의 분화는 세무주사 · 세무서기 등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관직명도 출현시켰다. 또한 이때에 이르러 군수뿐 아니라 하위 관리들까지 보수지급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들이 중앙정부 통제 아래서 근대적인 관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지방 관리의 구성과 기능은 1896년 13도제를 실시하면서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군에서 부로 승격한 인천부의 지방 관리는 향장 1명, 순교 8명, 수서기 1명, 서기 8명, 통인 3명, 순졸 8명, 사령 10명, 사용 5명, 사동 4명, 객사직 1명, 향교직 1명 등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4등 군에 편제된 안산군은 향장 1명, 순교 4명, 수서기 1명, 서기 6명, 통인 2명, 사령 6명, 사용 2명, 사동 2명, 객사직 1명, 향교직 1명 등 26명이었다.[10] 이를 갑오개혁기와 비교해 보면 우선 관직명이

(9) 勅令 第163號 「各郡經費排定에 관한 件」, 1895년 9월 5일, 『법령집』 Ⅰ.
(10) 勅令 第36號 『地方制度 · 官制 · 俸給 · 經費 改正』, 1896년 8월 4일, 『법령집』 Ⅱ.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장교가 순교, 이방 · 이(吏)가 각각 수서기 · 서기로 바뀌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이서조직의 명칭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향장이라는 새로운 관직이 등장하는데, 과거 향청의 좌수로 부와 5등 군을 제외한 각 군에 한 명씩 배치하였다. 이는 정부가 조선시대 향촌 지배를 주도하던 향청과 향장을 지방행정체계로 편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사민(士民)과 이액(吏額)을 불문하고 향장을 선정함으로써 이후 향촌사회의 주도세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향장제는 1906년 지방관 관제 개정 때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신설된 군주사가 '군수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하며 군수 유고시 직무를 서리'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1]

3. 조세징수체계의 일원화

갑오개혁기 조세징수를 전담하는 징세기구를 설치하면서 조선시대 이래 지방관이 담당하던 조세징수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의 부과와 수취를 이원화하여 조세징수는 징세서(徵稅署)에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군에 설치된 부세소(賦稅所)에서는 조세 및 기타 세입조사, 세액조정과 부과업무만 실시할 뿐 조세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관의 부세사무에 대해서도 관세사(管稅司)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조세부과상의 부정을 막고자 하였다.[12] 조세수납 절차도 부세소에서 세액을 정해 개별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납세자나 납세 위탁 총대인이 징세명령이나 납액고지서를 휴대하고 지정된 징세서에 납세한 후 영수증을 받아 오는 식으로 변경되었다.[13]

---

(11) 勅令 第50號「地方官官制 改正」, 1906년 9월 24일,『법령집』Ⅴ.
(12) 勅令 第56號「管稅司及 徵稅署官制」, 1895년 3월 26일 및 勅令 第74號「各邑賦稅所章程」, 1895년 4월 4일,『법령집』Ⅰ.
(13) 勅令 第71號「收入條規」, 1895년 4월 5일,『법령집』Ⅰ.

그러나 개정된 수취체제는 징세기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 재원의 부족, 새로운 수취방식에 대한 지방민의 부적응 등으로 시행 몇 달 만에 정지되었다. 이에 조세 징수권은 다시 군수에게 환원되었으며, 징세업무를 수행할 세무주사가 각 군마다 전담 배치되었다. 다만 군수의 징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징세업무를 감독·관리할 세무시찰관만을 별도로 두었다.(14)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세무주사는 세정(稅政)을 담당하므로 선발에 엄격을 기했다. 가령 1895년 11월 3일자 인천부관찰사 박세환(朴世煥)의 보고에 의하면 관할지역인 인천군과 안산군의 세무주사 천보를 살펴보니 "혹 간향활리(奸鄕猾吏)요 혹 빈핍무자자(貧乏無資者)인 고로 각 면동(面洞)의 두임과 지사인을 소집해서 다시 투표하여 재산이 세수이백조석(歲收二百租石) 이상으로 문산(文算)을 겸비한 성망소저인(聲望素著人)을 공선(公選)하여 다시 보고하게 하였다"고 하여(15) 세무주사의 자격이 일정한 재산과 명망을 겸비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향활리'로 표현되는 이서층을 조세징수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던 중간수탈문제를 해결하고 세정의 투명함과 근대적 조세행정을 구현하려는 의도였다. 이 같은 선발과정을 통해 인천군 세무주사에는 김재연(金在延), 안산군 세무주사에는 임갑준(任甲準)이 '가자(家資)와 문산(文算)이 선법(選法)에 합당'하여 선발되었다.(16)

대한제국기에는 독자적인 징세기구와 징세원을 두었던 갑오개혁기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세징수사무를 관찰사와 군수에게 환원하였다.(17) 이에 따라 조세징수 절차도 통일적인 규정없이 군수의 책임 아래 각 군마다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수세사무가) 지금 각 군의 관습에 따라 이동(異同)이 있고 각 군수의 수쇄방략(收刷方略)으로 인해 근만(勤慢)이 생겨 서로 같음이 없고 군마다 다름이 있어 일정한 규례로 논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러한 수세 절차의 다양한 양상을 잘 보여 준

(14) 勅令 第161號「稅務視察官章程」, 1895년 9월 4일 및 勅令 第162號「各郡稅務章程」, 1895년 9월 4일, 『법령집』 Ⅰ.
(15)「경기관찰사래첩」, 『공문편안』 9, 1895년 11월 3일.
(16)「경기관찰사래첩」, 『공문편안』 9, 1895년 11월 3일.
(17) 勅令 第17號「地稅 및 戶布錢의 收納을 觀察使와 郡守로 句管케 하는 건」, 1896년 4월 19일, 『법령집』 Ⅱ.

다.[18] 또한 조세징수사무를 군수가 관장하게 되면서 이서층이 다시 수세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중간수탈도 재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인천지역 제염장에서는 본군 관리배들이 매년 정해진 염세 이외에 구문(口文)이라 칭하며 수탈하는 경우가 많아 구문을 혁파해 달라는 염민들의 호소가 끊이질 않았다.[19]

조세징수가 군수권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이를 담당할 징세기구가 마련된 것은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통감부는 국가 재정의 확대와 집중화를 위해서 조세징수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비를 서둘렀다. 먼저 세무감부 · 세무서 · 세무분서를 각지에 설치하고 일체의 세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도 관찰부 소재지에 세무감부를 두고 전국 50개 지역에 세무서를, 186개 지역에 세무분서를 설치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 · 한성 · 개성 · 여주 등 4개 세무서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25개 세무분서를 두었다. 안산지역 세무를 전담할 안산세무분서가 수원세무서 산하에 설치되었고, 인천부와 부평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인천세무분서는 한성세무서 산하에 설치되었다.[20] 그리고 얼마 후 관제를 개정하여 기구 명칭을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로 변경하고 재무서 사무분장 규정을 구체화하였다.[21] 이때 안산세무분서는 안산재무서로, 인천세무분서는 인천재무서로 개칭되었다.

조세부과 및 징수방식도 달라졌다. 세무(재무)서에서 면 단위로 세액을 부과하면 면장이 면 내에 납세다액자 5명 이상으로 선발한 임원들과 협의하여 부과금액을 정해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였다. 그러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와 납세금액을 임원 가운데 선정된 공전영수원에게 제출하고, 공전영수원은 수령한 세금을 관할 금고나 우편관서에 납부해야 했다.[22] 이때 인천 · 부평 · 안산지역 각 면에서 수령

---

(18) 「수세사무」, 『지방제도조사』.

(19) 『황성신문』 1900년 9월 5일; 『황성신문』 1901년 4월 23일.

(20) 勅令 第54號 「管稅官官制」, 1906년 9월 24일, 度支部令 第23號 「管稅官位置 · 管轄區域」, 1906년 10월 27일, 勅令 第38號 「管稅官官制 改正」, 1907년 6월 19일, 度支部令 第26號 「管稅官位置 · 管轄區域 改正」, 1907년 7월 2일, 『법령집』 Ⅴ.

(21) 勅令 第46號 「財務監督局官制」 및 勅令 第47號 「財務署官制」, 1907년 12월 13일, 「財務署事務分掌規程」, 1908년 1월 27일, 『법령집』 Ⅵ.

(22) 勅令 第60號 「租稅徵收規程」, 1906년 10월 16일, 『법령집』 Ⅴ; 法律 第5號 「國稅徵收法」, 1909년 2월 18일, 『법령집』 Ⅷ.

한 세금은 우편취급소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인천항에 소재한 인천지금고에 납부했다.[23] 그러다 1907년 4월에 납부구역이 개정되면서 인천과 부평지역은 그대로 인천지금고로 납부한 반면 안산군은 수원 · 용인지역과 함께 수원우편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24]

한편 통감부시기에는 조세징수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조세 대상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지세나 호세는 물론이고 인천과 안산지역 같은 해안가 각 면에서는 채수물(採收物) 매매가격의 1,000분의 20을 3기로 나누어 납부하였다.[25] 또한 1906년 11월 13일 칙령 제69호로 제정된 '염세규정(鹽稅規程)'에 따라 100근에 대해 6전의 율(率)로 매 3개월 제조근량을 4월, 7월, 10월, 익년 1월로 네 번에 나누어 납부했다. 같은 해 12월에 신설된 지방세에서는 시장세, 포구세, 여각(객주)세, 교세(轎稅), 인력거세, 자전거세 등 다양한 세목(稅目)의 유통세가 과세되었다.[26] 1909년에 가면 과세 대상 국세는 더욱 늘어나 선세(船稅), 주세(酒稅), 연초세, 가옥세 등으로 확대되었다. 가옥세는 시가지에 있는 가옥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가옥세를 적용하는 지역은 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법률로 정한 가옥세법 시행구역 가운데는 인천부 부내면과 다소면만 포함되어 있어 오늘날 시흥시를 구성하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27]

4. 근대적인 재판제도의 도입

갑오개혁으로 구래의 재판제도도 크게 달라져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

(23) 度支部令 第17號「國庫金委託出納事務處理順序」, 1906년 9월 22일, 『법령집』 Ⅴ.
(24) 度支部令 第12號「金庫及郵便官署國庫金出納區域 改正」, 1907년 4월 15일, 『법령집』 Ⅴ.
(25) 勅令 第5號「水産稅規則改正」, 1907년 8월 16일, 『법령집』 Ⅵ.
(26) 勅令 第81號「地方稅規則」, 1906년 12월 29일, 『법령집』 Ⅴ.
(27) 勅令 第43號「家屋稅를 施行하는 市街地에 관한 件」, 1909년 3월 31일, 『법령집』 Ⅷ.

되고 민사와 형사의 분리, 재판권의 일원화, 형벌 개혁 등이 이루어졌다. 지방재판소 · 한성 및 개항장재판소 · 순회재판소 · 고등재판소 · 특별법원 등 각급 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종래 수령을 대신하여 각 지방재판소에서 민 ·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이에 불복하는 사건은 상급재판소인 순회재판소에 상고하는 근대적 재판절차가 마련되었다.[28]

1895년 5월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각 부에 지방재판소를 개설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인천과 안산지역의 재판과 소송은 인천재판소에서 관할하였다.[29] 그러나 재판소 개설이나 전문 사법관 양성이 미비한 현실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일원화가 용이한 것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지방재판은 군수가 겸임하고 관내 소송을 관장하였으며, 이에 불복하는 사건은 관찰사에 상소하는 식이었다.[30] 13도제에서도 군수가 일심재판을 담당하고 여기서 상고한 사건을 지방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였다. 이때 군수는 관내의 소송 일체를 심리할 수 있지만, 민 · 형사를 물론하고 의의(疑義)가 있거나 형사의 역형(役刑) 이상에 처할 때는 상급재판소의 수반판사에게 질품하고 처판을 기다려야 한다.[31] 1896년 인천부의 상급재판소는 개항장재판소인 인천항재판소에서 관할하고, 안산군을 비롯하여 경기도 4부 34군의 상급재판은 한성재판소에서 담당하다가 1897년 경기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인천 · 안산을 포함한 경기 일원 각 군의 상소심을 경기재판소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재판소 역시 경기관찰부에 설치되어 관찰사가 판사를 겸임하는 상황이었다.[32]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고 재판절차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통감부가 '시정개선'이란 미명 아래 재판제도를 정비하면서부터이다. 통감부는 1907년 '재판소구성법'과 '재판소설치법'을 통해 구(區)재판소 · 지방재판소 · 공소원 · 대심원을 설

(28) 法律 第1號「裁判所構成法」, 1895년 3월 25일,『법령집』Ⅰ. 한편 1899년 5월 30일 재판소구성법 개정 때 고등재판소는 평리원으로 개칭된다.

(29) 勅令 第114號「開港場裁判所 · 地方裁判所 開設에 관한 件」, 1895년 윤5월 10일 및 法部令 第5號「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의 管轄區域에 관한 件」, 1895년 윤5월 12일,『법령집』Ⅰ.

(30) 法部訓令 第2號「各府觀察使 · 參書官 · 郡守가 判檢事事務를 執行하는 件」, 1895년 6월 1일,『법령집』Ⅰ.

(31) 勅令 第29號「各郡 郡守의 該管內 訴訟 聽理하는 件 改正」, 1896년 5월 25일,『법령집』Ⅱ.

(32) 勅令 第6號「京畿裁判所를 京畿觀察府에 設置하는 件」, 1898년 1월 27일,『법령집』Ⅱ.

치하고, 각급 재판소의 업무분장 및 관할구역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심원 1개, 공소원 3개, 지방재판소 8개, 구재판소 113개를 설치하고, 관할구재판소가 개설될 때까지 각 지방재판은 종래 군수가 담당하던 것을 해당 관할구재판소에서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경기도에는 13개의 구재판소가 개청하여 인천구재판소에서는 인천부의 일심재판을 담당하고, 수원재판소에서 수원군을 비롯하여 안산, 남양, 과천, 시흥, 진위군 일원의 일심재판을 담당하였다.(33) 그러나 구재판소 개청이 늦어지자 미개청 구재판소의 사무처리는 개청한 구재판소로 이관되어 수원구재판소의 재판업무도 1908년 7월 경성구재판소에서 담당하다가 같은 해 10월부터 수원구재판소에서 관할하게 되었다.(34) 한편 한일병합이 임박하면서 통감부는 재판 관련법 일체를 폐지하고 '통감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한국 민·형사 재판을 장악하였다.

이처럼 근대적인 재판절차와 기구가 정비되어 가면서 종래 군수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던 재판이나 군수의 재판권 남용은 크게 약화되었다. 1897년 안산군에서 발생한 임춘원(林春元) 치사사건이 한성재판소로 이관되자 한성재판소에서는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 사건을 공소 논률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35) 1900년에는 안산군의 살인죄인 김춘식(金春植)이 경기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인 평리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평리원에서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해당도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36) 이렇듯 재판절차가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한편 소송의 기회가 일반 민인들까지 확대되었다. 1900년 10월 안산군의 김소사(金召史)는 군수 남계술(南啓術)이 불효죄를 들어 자신의 집과 문을 철거하고 폐쇄하자 군수를 고소하였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평리원에서 사건을 조사 심리한 후 남계술이 군수로서 과격한 처벌을 하였다 하여 태(笞) 40에 처하였다.(37) 아직 구재판소를 개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심재판을 담당한 군수가 재판

(33) 法律 第9號「裁判所構成法」 및 法律 第10號「裁判所設置法」, 1907년 12월 23일, 『법령집』 Ⅵ.
(34) 法部令 第13號「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1908년 7월 24일 및 法部令 第17號「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改正」, 1908년 10월 31일, 『법령집』 Ⅶ.
(35) 조복 제786호, 『사법품보(을)』 1책, 1897년 8월 11일.
(36) 보고서 제250호, 『사법품보(을)』 25책, 1900년 9월 19일.

권을 남용하자 오히려 재판권자인 군수를 처벌하였던 것이다.

5. 치안행정의 강화와 통신시설의 근대화

1) 치안기구의 설치와 치안행정 강화

1894년 출범한 개화파 정부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포도청을 경무청(警務廳)으로 개편하고 경찰기능을 강화하였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과 함께 각 부(府) 관찰사 산하에 경무관 1명, 경무관보 1명, 총순 2명, 순검 50~100명을 배치하고 관내 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인천군과 안산군이 소속되어 있던 인천부에도 순검 70명이 배치되었다. 지방경찰 직제의 대략적인 틀은 13도제에서도 계승되어 각 도 관찰부에 배치된 경무관 2명, 총순 30명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을 담당하였고, 각 군에는 순교가 있어 군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다.[38] 그러나 중앙의 독립관청인 경무청(이후 경부)에서 지방경찰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였지만, 지방 단위까지 경찰기구를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다만 관찰부 산하에 경찰 관리를 배치하는 정도였다.

각 지방에 경찰기구가 설치되고 치안행정이 강화된 것은 통감부시기에 들어서이다. 이는 통감부가 추진하던 지방제도 및 수취구조 개편에 반발하는 지방세력을 탄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항일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감부는 이를 위해 1906년 6월 각 관찰부에 경무서 설치, 도내 주요 지역에 경무분서 설치, 각 도에 순검 1,273명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칙령 제30호 '지방 13도 각 관찰부 경찰서 및 경무분서 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경무서 13개, 경무분서 26개, 분파소 300개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37) 보고서 제278호, 『사법품보(을)』 27책, 1900년 10월 18일; 『황성신문』 1900년 10월 2일.
(38) 勅令 第36號 「地方制度官制俸給經費 改正」, 1896년 8월 4일, 『법령집』 Ⅱ.

확정하였다. 인천에는 인천경무서가 별도로 설치되었고, 경기도에는 경기경무서와 개성 · 여주 분서 및 36개 분파소를 설치하고 각기 관할구역의 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안산지역의 경찰사무는 안산분파소에서 관할하였으며 경기경무서 직속으로 배치되었다. 분파소에는 순검 4~6명을 배치하였는데, 안산분파소에는 순검 4명이 배치되었다.(39)

1907년 6월에는 인천부를 관할하는 인천경무서가 경기경무서 산하 인천분서로 편입되었다. 인천분서가 총순 1명, 권임 2명, 순검 20명 등 소속 인원을 그대로 보유한 채 경기경무서 산하로 편입된 것은 감리서가 폐지되면서 개항장업무가 도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경찰 인원은 크게 증가하여 경무관 13명, 총순 64명, 권임 136명, 순검 2,129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찰직책의 명칭을 개정하여 총순은 경부로, 권임과 순검은 순사로 별도로 사령하지 않고 임용하였다. 아울러 경무서와 분파소 명칭을 각각 경찰서와 순사주재소로 개칭하고 경찰서 설치를 확대하였다. 경기도 내에 한성 5부 경찰서와 수원 · 개성 · 인천경찰서를 두었다. 인천경찰서는 인천부 외에 8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안산순사주재소를 비롯하여 남양, 부평, 소사, 양천, 김포, 통진, 강화, 교동군의 순사주재소가 포함되었다.(40)

1908년 7월에 이르러 다시 개정을 맞은 경찰관제에서는 경기도 관할에 두었던 한성 5부 경찰서가 별도로 한성부 소관으로 분리되었다. 이외에도 수원, 개성, 인천경찰서 외에 분서였던 여주와 양주경찰분서가 경찰서로 승격하였다. 인천경찰서 관할구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안산순사주재소를 비롯한 8개 순사주재소였다. 경찰기구의 증설은 해마다 계속되어 1909년 10월에 이르면 경기도 소재 경찰서가 수원 · 안성 · 인천 · 강화 · 개성 · 연천 · 양주 · 여주경찰서로 늘어났다. 경찰서 확대와 더불어 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축소되어 인천경찰서는 인천부 외에 4

(39) 內部令 第11號 「各道警務署 · 分署 · 分派所 管轄區域」 및 內部令 第12號 「各道警務署 · 分署 · 分派所 警察官吏配置定員」, 1906년 10월 1일, 『법령집』 Ⅴ.

(40) 칙령 제66호 「總巡 · 權任 · 巡檢을 警部 · 巡査로 任用하는 件」 및 內部令 第14號 「警察區劃 改正」, 1907년 12월 27일, 『법령집』 Ⅵ.

개 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소관 순사주재소는 부평, 김포, 통진, 양천, 소사 순사주재소였다.[41] 인천경찰서는 1910년 5월 다시 김포경찰서가 분리 승격하면서 인천부와 부평군의 부평 · 소사 순사주재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한편 경찰서 소관 순사주재소가 조정되면서 종래 인천경찰서에 배속되어 있던 안산순사주재소는 수원경찰서 산하로 옮겨져 1910년까지 유지되었다.

2) 통신시설의 근대화

근대적 변화를 잘 보여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편 · 전신 · 전화 등 통신시설이다. 통신업무 또한 갑오개혁 당시 일련의 근대적 법제화 과정에서 착수되어 1895년 윤5월 '국내우체규칙' 및 '우체사관제'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성 · 인천을 비롯한 23개 지역에 우체사를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한성~인천간 우체사무를 개설하고 관할구역을 정하였다. 아울러 이듬해 7월 '전보사관제'를 제정, 공포하고 1897년 3월부터 인천부에 전보사를 설치하고 전보 · 통신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전국 단위 통신기반시설 마련이 여의치 않자 1897년 '임시우체규칙'을 제정하여 우체사 소재지 20리 밖을 임시우체구역으로 설정하고 우체사무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임시우체구역은 각 부 · 군간 형편을 참작해 선로를 획정하고 매일 혹은 격일로 임시 우체물을 체송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한성우체사에서 2부 17군을, 수원우체사에서 10개 군을 관할하였다. 한성우체사의 소관 경로는 직로(直路)와 5개 경로로 나뉘어 있었는데 안산군은 시흥과 함께 1로(一路)에 해당하여 격일로 우체물을 발송하였다.[42] 그 후 1903년 8월 시흥군 하북면 중종리 영등포에 우체지사를 신설하면서 1904년 7월 통신원령 제7호 '국내우체규칙 · 선로 개정'에서는 한성우체사에 소속되어 있던 안산이 시흥우체사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우체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으로는 우체주사와 체전부가 있었다. 우체규칙이

(41) 內部令 第10號「警察署 · 警察分署 · 巡査駐在所 名稱 · 位置 · 管轄區域 改正」, 1909년 10월 29일, 『법령집』 Ⅷ.
(42) 勅令 第43號「臨時郵遞規則」, 1897년 12월 23일, 『법령집』 Ⅱ.


▲ 안산우체소(1910년대)

제정되어 시행되는 1897년에는 각 부·군 지방관이 우체사장을 겸임하고 향장이 우체사에 와서 우체사무를 배운 후 임시우체사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43) 각 군 단위까지 우체관리가 배정된 것은 1904년에 이르러서이며, 이때에 군마다 임시우체주사 1명과 체전부 2명씩을 두고 우체주사가 없는 곳은 향장이 우체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44) 그런데 우체규칙 시행 초기에는 "각 군마다 향장의 업무 여부와 장정(章程) 유무에 차이가 많아 우체사무 시행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안산군의 향장이 우체사무를 잘 숙지하고 우체물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모범이 되었다"고 한다.(45) 한편 궁핍한 지방재정으로는 신설된 관원의 봉급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듯하다. 안산군수가 안산군 체부(遞夫)의 미지급 봉급을 타군의 역토도전(驛土賭錢)에서 이획(移劃)해 달라고 보고하자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46) 그런가 하면 안산군에 해당 우체사와 전보사의 경비를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을 내리기도 했다.(47)

통신시설 및 업무는 1905년 8월 일제가 한국 통신사무를 접수하면서 빠르게 정비되었다.(48) 이는 철도 장악을 완료한 일제가 대한(對韓) 식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간시설을 우선적으로 장악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43) 勅令 第43號 「臨時郵遞規則」, 1897년 12월 23일, 『법령집』 Ⅱ.
(44) 勅令 第25號 「臨時郵遞規則 改正」, 1904년 9월 10일 및 通信院令 第9號 「臨時郵遞細則」, 1904년 10월 11일, 『법령집』 Ⅲ.
(45) 『황성신문』 1899년 8월 19일.
(46) 『공문편안』 81, 1898년 1월 10일.
(47) 『전보비훈령편안』, 1900년 10월 25일.
(48) 韓國通信事務引繼委員會公告 「韓國各郵遞司·電報司·各郡臨時郵遞所의 事務를 接受하는 件」, 1905년 8월 19일, 『법령집』 Ⅳ.

1908년 단계에 가면 인천부에는 통상우편, 소포우편, 우편환전, 우편저금, 전보, 전화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우편국 외에 인천화정우편소, 인천화방정우편소, 인천경정우편소 등과 인천전신취급소가 설치되었다. 안산읍에 위치한 안산우체소에서는 통상우편업무를 담당하였다.[49] 특히 국고사무는 1906년 우편관서에서 국고금 출납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시기 의병전쟁에서 우편관서가 의병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차선혜 | 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49) 「統監府官署名 · 位置 · 處理事務」, 1908년 8월 11일, 『법령집』 Ⅶ.

2장 광무양전사업과 국유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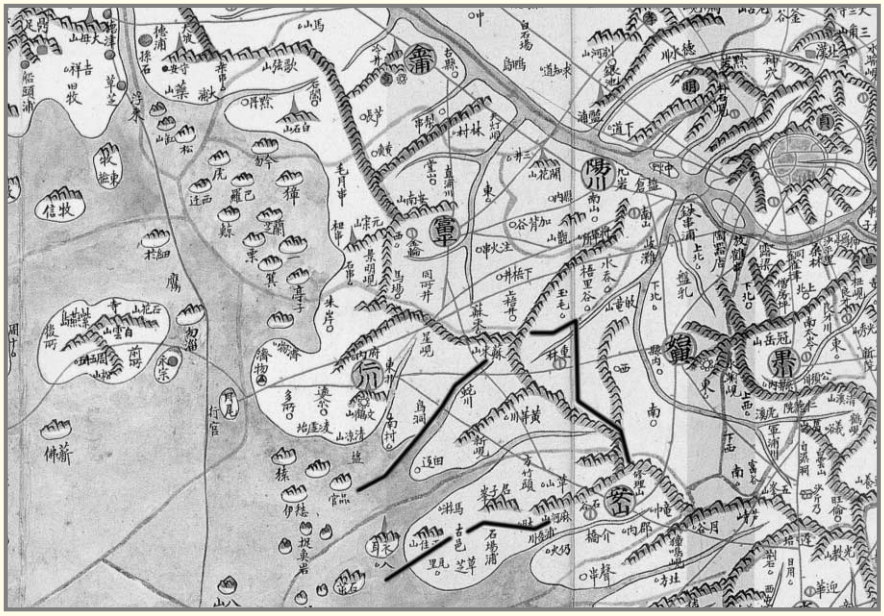
1. 행정구역과 호구 · 토지의 변화

1) 행정구역의 변천

한말 토지소유관계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 대상지역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현 시흥시는 일제시기의 시흥군 수암면 · 군자면 일부, 부천군 소래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시대로 소급하면 안산군과 인천도호부에 걸쳐 있던 지역이다.

안산군은 한말에 이르기까지 군내면 · 초산면 · 잉화면 · 마유면 · 대월면 · 와리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0] 통감부시기에는 경기도 광주부의 월경지였던, 안산군 경계의 성곶면 · 북방면 · 월곡면이 잠시 안산군으로 소속되어 모두 9개 면이 된다.[51] 1914~1917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안산군은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편입된다. 이때 안산군 군내면 · 초산면 · 잉화면은 시흥군 수암면으로, 안산군 마유면 · 대월면 · 와리면은 시흥군 군자면으로, 안산군 성곶면 ·

(50) 『輿地圖書』(1760년경) 이후 『安山郡邑誌地圖』(1899년 5월)에 이르기까지 안산군은 이들 6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51)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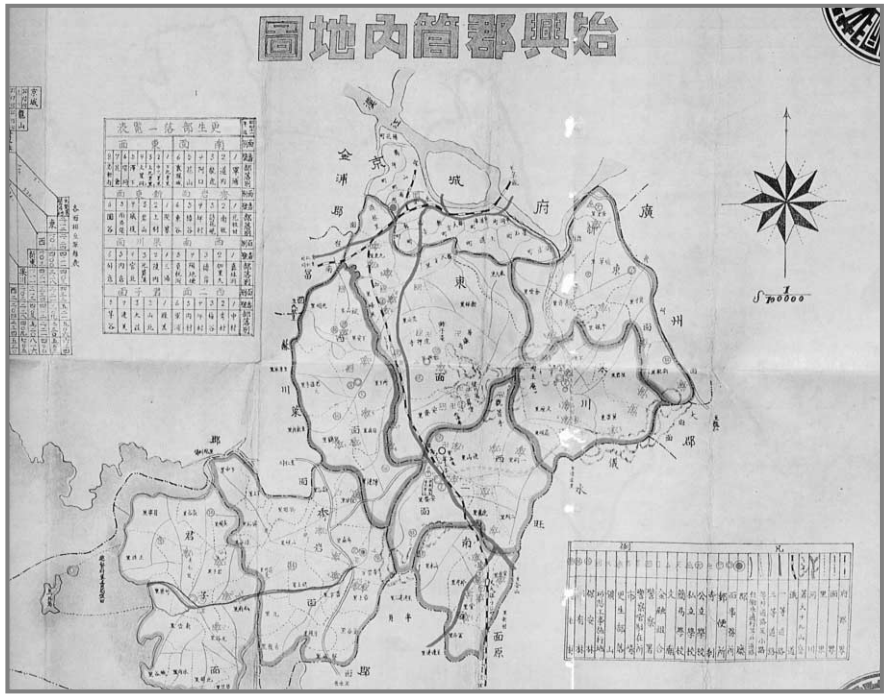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시대 시흥의 영역

북방면 · 월곡면은 수원군 반월면으로 편입된다.(52)

1912년 당시 시흥군은 하북면 · 동면 · 군내면 · 남면 · 서면 · 상북면으로서, 영등포를 중심으로 현재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구로구 · 영등포구와 경기도 광명시 · 안양시를 포괄한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시흥군은 북면 · 신동면 · 동면 · 서면 · 과천면 · 서이면 · 남면 · 수암면 · 군자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옛 과천 · 안산까지를 통합한 것이었다. 이로써 시흥군은 오늘날의 서울 서남부지역과 시흥 · 과천 · 안양 · 안산 · 광명 · 군포를 포괄하여 한강 이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군(大郡)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산군이 시흥군의 군자면과 수암면으로 편제되었는데, 이것이 현 시흥시가 '시흥'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는 기원이 된다.

현재의 시흥시를 살펴보면, 일제시기 시흥군 수암면은 한말 안산군의 군내

(52)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草風館, 1917.



〈그림 2〉 시흥군 관내지도(1936) 소래면은 부천군에 편제되어 이 지도에는 빠져 있다.

면 · 잉화면 · 초산면으로 구성되었으나, 군내면 전체와 잉화면 일부(한말의 와상리 · 와하리 · 고잔리 · 월피리로서 일제시기의 와리 · 고잔리 · 월피리)는 현 안산시에 편입되어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한말 안산군 초산면 전체, 잉화면 일부(한말의 북곡리 · 능곡리 · 광곡리 · 화정리로서 일제시기의 능곡리 · 화정리)가 시흥시에 남게 되었다. 일제시기 군자면은 한말 안산군의 와리면 · 대월면 · 마유면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와리면 전체와 대월면 일부(한말의 선부동 · 달산리로서 일제시기의 선부리)는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한말 안산군 마유면 전체, 대월면 일부(한말의 거모포 · 석곡동으로서 일제시기의 거모리)가 시흥시에 남게 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인천부 동쪽지역의 황등천면 · 전반면 · 신현면은 일제시기 부천군 소래면을 거쳐 현재 시흥시에 편입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시흥현(군)은 일제시기에 크게 확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의 영역이 서울특별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등지로 편입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시흥시는 조선시대의 시흥현(군)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일제시기에 시흥군으로 편입된 안산지역에서 유래한 군자면과 수암면 및 인천부에서 부천군을 거쳐 1973년 시흥지역으로 편입된 소래면지역으로 완전히 새로 짜인 것이다.

현재의 시흥시 행정구역을 한말 · 일제시기와 견주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시흥시 행정구역의 변천

한말	일제시기	현재
안산군 군내면	시흥군 수암면	안산시
안산군 잉화면 와상리 · 와하리 · 고잔리 · 월피리	시흥군 수암면 와리 · 고잔리 · 월피리	안산시
안산군 잉화면 북곡리 · 능곡리 · 광곡리 · 화정리	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 화정리	시흥시
안산군 초산면	시흥군 수암면	시흥시
안산군 와리면	시흥군 군자면	안산시
안산군 대월면 선부동 · 달산리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	안산시
안산군 대월면 거모포 · 석곡동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시흥시
안산군 마유면	시흥군 군자면	시흥시
인천부 황등천면 · 전반면 · 신현면	부천군 소래면	시흥시

시흥시의 행정구역은 한말 안산군의 절반 및 인천부의 일부분에 걸쳐 있으므로 한말 토지소유관계의 변화를 현재의 시흥시 행정구역에 꼭 맞추어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의 사정을 고려하여 한말의 안산군지역, 특히 현재 시흥시에 완전하게 해당되는 초산면 · 마유면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2) 호구와 결부의 변화

조선시대 안산군의 호구와 토지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참고로 삼는다. 여러 차례 편찬된 읍지들, 광무양안, 통감부의 『호구조사표』를 참고하여 호구의 변화를 면별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선~한말 안산군 각 면별 호구의 변화[53]

구분 / 자료	군내면				초산면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여지도서(1760년경)	408	1,070	1,050	2,120	342	781	767	1,548
경기지(1842~1843)	428				331			
기전읍지(1894~1895)	474	1,070	1,050	2,120	463	781	767	1,548
안산읍지지도(1899)	530	1,165	918	2,083	510	1,418	1,063	2,481
광무양안(1900)	540(거민호)				501 (456, 사기호)			
호구조사표(1907)	443	1,336	1,129	2,465	549	1,068	974	2,042

구분 / 자료	잉화면				마유면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여지도서(1760년경)	274	550	540	1,090	488	1,090	1,080	2,170
경기지(1842~1843)	241				422			
기전읍지(1894~1895)	345	550	540	1,090	494	1,090	1,080	2,170
안산읍지지도(1899)	396	871	667	1,538	580	1,260	1,027	2,287
광무양안 원호(사기호)	393 (399)				624 (622)			
호구조사표(1907)	445	860	795	1,655	900	1,264	1,012	2,276

구분 / 자료	대월면				와리면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여지도서(1760년경)	239	531	521	1,052	470	1,060	1,050	2,110
경기지(1842~1843)	175				381			
기전읍지(1894~1895)	199	531	521	1,052	497	1,060	1,050	2,110
안산읍지지도(1899)	228	514	415	929	522	1,218	984	2,202
광무양안 원호(사기호)	224 (239)				516 (547)			
호구조사표(1907)	245	524	457	981	563	1,248	1,068	2,316

(53) 광무양안 군내면에는 原戶와 査起戶의 기록이 빠져 있어 부득이 居民戶를 활용하였고, 군 전체의 합계에도 이 거민호를 원호와 사기호에 모두 적용하였다.

구분 / 자료	안산군			
	호수	인구		
		남	여	합계
여지도서(1760년경)	2,221	5,082	5,008	10,090
경기지(1842~1843)	2,403			
기전읍지(1894~1895)	2,472	5,082	5,008	10,090
안산읍지지도(1899)	2,766	6,450	5,074	11,524
광무양안 원호(사기호)	2,798(2,803)			
호구조사표(1907)	3,145	6,300	5,435	11,735

조선 후기의 읍지는 편호(원호)인데, 『여지도서』와 『기전읍지(畿甸邑誌)』는 남녀 인구는 동일하나 호수는 다르다. 『기전읍지』가 『여지도서』의 인구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광무호적이 작성되면서 좀 더 실재호에 근접한다. 현재 안산군 광무호적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안산읍지지도』에는 광무호적조사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호수에 비하여 300여 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광무양안의 원호(사기호)와 근접한 수효를 보이고 있음에서도 이 시기 호적조사와 토지조사의 결과가 실재호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호적대장이 호세의 기초 징수대장으로서의 기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제도의 근본적 변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만큼 실재호로의 근접성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통감부시기 경찰을 동원하여 조사한 『호구조사표』에서는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지만 호수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재호로의 근접성이 더욱 높아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안산군 토지결부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영조 때 비총법을 시행하여 각 군마다 원장부전답을 확정하였다. 이 원장부전답은 새로 양전을 시행하여 재조정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호조양안 또는 수세장부상에 고정된 전답결수이다. 그러나 규정대로 20년에 한 번씩 양전을 시행하여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장부전답은 실제상황을 반영해 주지 못하였다. 읍지에 기록된

〈표 3〉 읍지에 나타난 안산군 토지결부의 변화 (단위 : 結-負-束)

구분 / 자료	전	답	원장부	진탈	각양 면세	실총
여지도서(1760)	603-55-4	549-04-5	1,152-59-9			809-31-7
경기지(1842~1843)	603-55-4	549-94-5	1,153-49-9	83-84-3	837-66-0	231-98-9
경기읍지(1871)			1,153-49-9	216-39-6	243-95-5	693-14-8
기전읍지(1894~1895)	603-55-4	549-94-5	1,153-49-9			807-05-9
안산읍지지도(1899)	603-55-4	549-04-5	1,152-59-9			1,100-46-7

원장부전답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때에 따라 진탈과 면세가 변동하여 호조에 납부할 실총결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안산군의 원장부전답은 1,152결 59부 9속 또는 1,153결 49부 9속이다. 여기에서 황폐하여 제외해야 할 진탈과 각종 면세결을 제외하면 납세할 실총은 크게 줄어든다. 조선 후기인 1842년경 안산군에서 납세할 실총은 230여 결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탈이 많은 것은 해안과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뭄에 취약한 산악지역이고 이를 해소할 저수시설이 거의 없었다. 해안가 역시 홍수에 잠기고 가뭄에 말라 버리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래서 진탈이 많은데 1871년에는 무려 200여 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다. 각양 면세의 경우 1842년경에는 800결이 넘어서는데 이는 원장부의 70%를 상회할 정도이다. 이처럼 각양 면세가 집중된 이유는 이 지역이 해안과 포구를 끼고 있어 세곡의 수송에 편리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는 각종 면세결을 폐지하여 모두 출세하도록 조치하였다. 갑오개혁의 출세조치에 의하여 면세결은 사라졌지만, 1894~1895년의 『기전읍지』는 갑오개혁 이전과 똑같이 실총을 산출해 놓고 있다. 원장부전답과 실총의 차액 346결 44부에는 진탈과 각양 면세가 모두 포함되었을 것이다. 즉 『기전읍지』에는 면세결의 출세조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각양 면세는 출세조치함으로써 실총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으나 진탈에 대해서는 각 군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산군에서는 이때

진탈의 실태를 조사하여 진탈이 분명할 경우 원장부에서 제외하여 실총을 재조정하고 이를 과세결로 삼고자 하였다. 1895년 진탈을 조사한 실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1895년 안산군 진탈 조사결과[54] (단위 : 결-부-속)

면	군내면	대월면	와리면	잉화면	합계
결부	21-87-7	8-15-5	16-26-1	5-18-1	51-47-4

각 면 구석구석에 황폐화되어 도저히 과세할 수 없는 토지를 필지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결부의 수, 황폐한 원인, 납세자의 이름이 필지별로 조사되어 있다. 진탈의 사유는 진(陳), 성천(成川), 산진(山陳), 묘진(墓陳), 복사(覆沙), 성림(成林), 포락(浦落) 등이다. 초산면과 마유면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진탈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아하지만 이 책이 군수가 조사·보고한 완성본인 것은 틀림없다. 진탈의 양은 원장부에서 제외하여 실총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조사를 군수가 하였지만 관할은 탁지부 사세국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지세부과를 위한, 즉 실총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행한 조사라고 하겠다. 다른 자료를 통해 이 진탈의 소속과 규모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체 합계는 진전이 60결 75부 6속, 진답이 7결 44부, 합계 68결 19부 6속이고, 이 가운데 교위전 1결 85부 6속, 교위답 2결 98부, 합하여 4결 83부 6속은 다시 경작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관하각부군병신조수조성책』에는 이를 모두 합하여 전 62결 61부 2속, 답 10결 42부, 합하여 73결 3부 2속를 진전답으로 계산하고 있어, 장부상에서 보면 이것은 확실히 오류이다. 진탈의 내용은 관아·사찰터, 관둔 등의 관공유지와 민유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유지가 56결 35부 8속으로 77%를 차지한다. 1895년 진탈을 조사한 『안산군결복영진성책』의 내용이 이 수조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종 면세를

(54) 『安山郡結卜永陳成冊』(규16367, 1895년 5월).

〈표 5〉 1896년조 안산군 진탈의 내용[55]

(단위 : 결-부-속)

		진전	진답	기전	기답
관 · 공유지	公廨坐地 續田	5-17-3			
	司饔院漁箭官坐地 속전	0-02-5			
	寺刹坐地 속전	0-31-3			
	校位	0-14-8	0-01-6	1-85-6	2-98-0
	官屯	0-07-0	0-28-3		
	馬位	1-19-4	0-15-0		
	訓練屯		1-85-6		
	張本房 入葬處	2-55-1	0-05-9		
민유지	舊陳	44-10-8	5-07-6		
	各年墓入	7-17-4			
합계		60-75-6	7-44-0	1-85-6	2-98-0

출세하도록 하고 진탈을 조사하여 실총에서 제외하여 수조안을 작성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1896~1905년조 안산군 실총전답의 내용[56]

구분 / 연도	원장부			진탈		
	계	전	답	계	전	답
1896년조	1,153-49-9	603-55-4	549-94-5	73-03-2	62-61-2	10-42-0
1897년조	1,153-49-9	603-55-4	549-94-5	53-03-2	42-61-2	10-42-0
1898~1905년조	동일			동일		

구분 / 연도	은결색출			실총		
	계	전	답	계	전	답
1896년조	20-00-0	7-30-0	12-70-0	1,100-46-7	548-24-2	552-22-5
1897년조	없음	없음	없음	1,100-46-7	560-94-2 (51%)	539-52-5 (49%)
1898~1905년조	동일			동일		

(55) 『京畿管下各府郡丙申條收租成冊』(규17899, 1897년 7월).

(56) 『京畿管下四府三十四郡收租成冊』(규17899); 『京畿管下三府三十五郡收租成冊』(규17900).

갑오개혁 이후 면세결을 출세조치하고 진탈을 조사하여 이를 수조 안에 반영한 것이 1896년조의 실총전답이다. 원장부전답에서 진탈을 제외하고 은결을 색출하여 차감한 후 실총전답을 1,100결 46부 7속으로 확정짓고 1905년에 이르기까지 고정시켜 여기에 지세를 부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탈 73결 3부 2속에서 은결을 색출한 20결을 제외하고 53결 3부 2속을 진탈로 보고 원장부 1,153결 49부 9속에서 이를 제외하여 안산군의 실총전답을 1,100결 46부 7속으로 확정한 것이다. 〈표 3〉에서 본 『안산읍지지도』(1899)의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2. 광무양전사업

1) 광무양전의 시행과정

경국대전에서는 20년에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전국적인 양전은 1720년의 경자양전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양안은 실제의 경계, 과세결수, 토지소유자 및 납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 중 전정의 문란은 이처럼 양전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개혁론자들은 양전의 시행을 개혁의 기초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재를 얻기 어려워 전국적인 양전은 계속 미루어졌고, 문제가 터진 지역을 중심으로 미봉적으로 도별, 군현별로 양전하는 데 그쳤다. 개항 후에도 그러한 사정은 변하지 않았다. 갑오개혁에서도 양전을 시행하고자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57]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된 뒤 전국에 걸쳐 양전을 실시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1898년 6월 내부대신 박정양과 농상공부대신 이도재는 의정부에 '토지

(57) 김용섭, 「광무년간의 양전 · 지계사업」, 『한국근대농업사연구(증보판)』 하, 일조각, 1984;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측량에 관한 청의서'를 제출하여, 농지에 한정하지 않고 원야, 천택, 산림, 해빈(海濱), 도로, 가옥 등 전국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청의서는 의정부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고종은 1898년 7월 6일 양지아문의 설치를 규정한 칙령을 반포하여 강력한 의지로 양전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측량은 한성부로부터 시작하되 외국인기사를 고용하여 측량과 함께 측량기술자를 양성하여 지방의 양전을 담당하도록 구상하였다. 그러나 양전의 원칙을 정하지 못하는 등 양전사업은 곧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 해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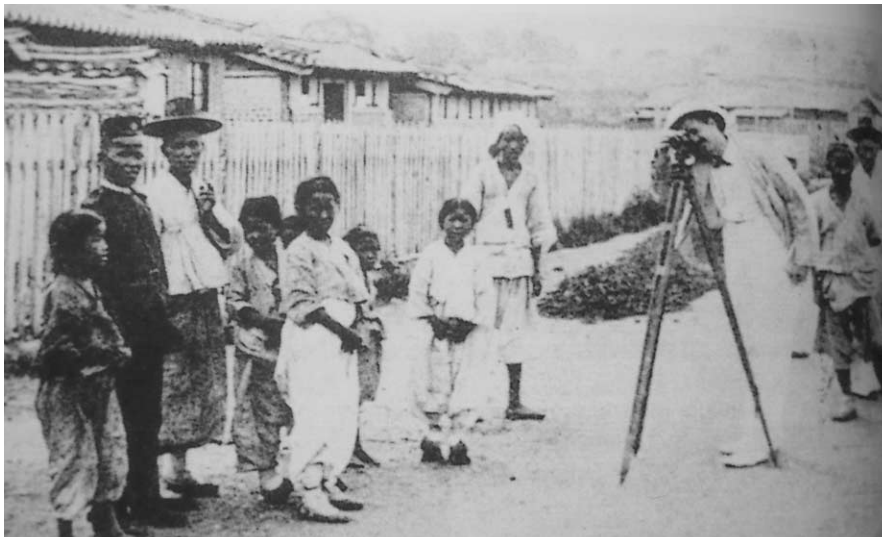
1899년 4월 5일 양지아문에서 탁지부의 결세전 수입이 각 군의 무망(無亡), 진천(陳川)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므로 시기전답(時起田畓)의 결총에 은루(隱漏)함이 없도록 양전할 것을 청의하였다. 즉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양전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지세수입과 관련하여 실결(實結)의 확대를 목표로 한 양전, 지세부과를 위한 양전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58]

원래 양전은 한성부 5서(署)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데부터 먼 곳으로 측량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899년 4월부터 한성부의 토지를 측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측량은 경기도의 전답을 많이 소유한 유력한 세력가들이 경기도의 측량을 미루고자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하였으므로 충청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은결이 있다는 세평이 있는 충청도 아산에서 시작하였다. 아산군의 양전은 1899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아산군에 대한 시험적인 양전을 거친 후 충청남도 양무위원을 지낸 이종대를 1899년 11월 11일 경기도 양무감리로 임명하였다. 경기도의 양전은 결폐가 심한 용인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99년 6월부터 1901년 7월까지 양지아문에서 측량한 지역은 경기도 14군, 충북 13군, 충남 18군, 전북 14군, 전남 13군, 경북 22군, 경남 8군, 황해 2군 등 모두 104군이었다. 추가로 얻은 사득결(査得結)은 6만 6,901결 52부, 사득호는 18만

(58) 『時事叢報』 광무 3년 5월 11 · 13일 量地發訓; 왕현종, 「대한제국기 지계아문의 강원도 양전사업과 관계발급」, 『동방학지』 123, 연세대, 2004, 140~143쪽.



▲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 모습(1899)

8,832호에 이르렀다. 사득결은 결가로 61만 7,138원(元) 47전(錢) 8리(里)였다.(59) 경기도에서 양전된 지역은 광주 · 수원 · 여주 · 이천 · 죽산 · 안산 · 안성 · 고양 · 용인 · 음죽 · 진위 · 과천 · 양지 · 양성 · 장단의 15개 군으로 소개되기도 하고,(60) 39개 군 가운데 11개 군이 측량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61) 서울 이남 경기도는 모두 측량이 완료되었다.

탁지부에서는 양지아문에 의해 완성된 양안을 수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군에 보내어 1902년조 지세부터 광무양안에 의거해 과세하도록 지시하였다.(62) 그러나 1901년의 대흉년 여파로 1903년 1월 12일 경기관찰사와 충청남북도관찰사에게 훈령을 보내어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양안을 내려 보내 수세에 활용하도록 조치한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과천 · 수원 · 죽산 · 용인 · 음죽 · 광

(59) 「查得結戶」, 『황성신문』 광무 5년 11월 27일 잡보. 『地稅例規綴』 '(秘)光武新量按調製沿革調査書' 에 의하면 광무양전의 결과 수세실결은 203개 군의 구결 57만 1,527결에 비하여 13만 3,651결 증가한 70만 5,178결로서 증가결은 구결의 23%에 해당한다.

(60) 『토지조사참고서』 제1호, 1909년 10월, 26쪽.

(61) 『지세예규철』 '(秘)光武新量按調製沿革調査書.'

(62) 『訓令編案』 광무 7년 1월 12일 훈령 경기관찰사 · 충청남북도관찰사.

주 · 여주 · 이천과 함께 안산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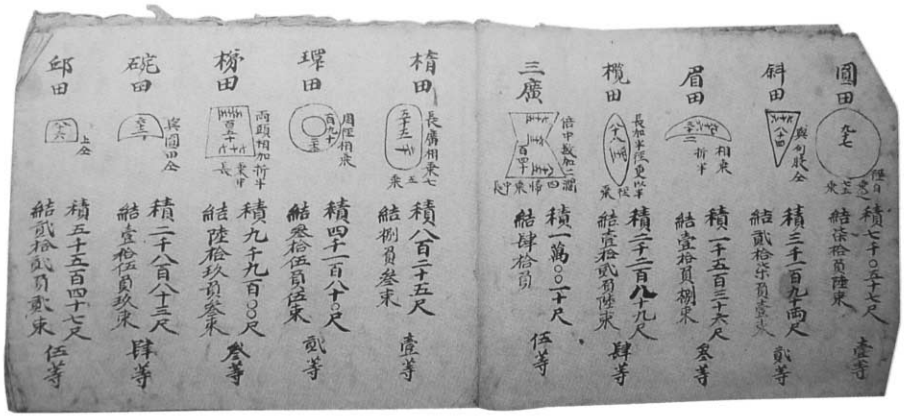
2) 시흥지역의 광무양전

오늘날의 시흥지역은 옛 안산군 일부와 인천부 황등천면 · 전반면 · 신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인천부 광무양안은 남아 있지 않고 안산군 광무양안만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시흥지역 광무양전은 한말 안산군을 대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안산군양전은 1900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양전은 들에 나가 측량하여 기록하는 '야초(野草)'의 단계, 각 군에서 야초를 모아 편집하는 '중초(中草)'의 단계, 양지아문에서 중초를 재정리하는 '정서(正書)' 단계로 진행된다. 야초책에는 지역명 외에 토지모양, 지목, 양전방향, 초가 · 와가의 칸수 및 좌수(座數), 지형도 및 사표(四標)와 장광척수(長廣尺數), 면적척수, 토지등급, 결부수, 전답주 · 작인 및 대주(貸主) · 가주(家主)를 기록한다.[63] 〈표 7〉에 나오는 안산군의 지심(指尋) 날짜는 1900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지심은 토지의 경계, 토지등급, 시주와 시작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에 측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야초의 단계이다. 중초책은 각 면별로 작성된 야초를 토대로 자호와 지번을 부여하고 기재항목을 재점검하면서 이를 재배치하여 양안의 형식에 맞도록 작성한다.[64] 정서책은 중앙의 양지아문의 조사위원들이 중초책을 검토하여 표지에 초사(初査) · 재사(再査), 초서(初書) · 재서(再書), 초준(初准) · 재준(再准) · 삼준(三准)을 실시하면서 양안의 각종 사항을 재점검, 수정한 뒤 정서한 것이다. 이때 규정 양식에 벗어나는 사항은 모두 생략되면서 통일적으로 조정되었다. 여기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규장각 소장의 안산군양안은 수세를 위하여 안산군에 내려 보낸 정서책 완성본이 아니라 정서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초책 위에 재점검하여 수정한 것이다.

---

(63)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128~131쪽.
(64)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89 · 128~131쪽.



▲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

양전은 중앙의 양지아문, 각 도의 양무감리, 각 군의 양무위원, 조사위원을 두어 진행하였다. 양무위원은 학원을 데리고 각 군의 양전을 수행하고 조사위원은 이를 다시 세밀히 조사, 검토하여 착오를 정정한다. 각 군의 양전과 양안작성은 양무위원의 지휘하에 진행된다. 안산군 초산면의 위원, 학원, 지심인과 그 지역은 〈표 7〉과 같다.

지심인과 구역이 일정한 영역에 규칙적으로 배당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넓은 면적을 담당한 지심인도 있고, 좁은 면적을 담당한 경우도 있다. 지심인 기록이 부실한 경우도 있다. 해당지역의 인물인 지심인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위에 있었는지는 안산군양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초책 안산군양안의 표지에는 조사안이 붙어 있다. 여기에는 초사 · 재사 · 초서 · 재서 · 초준 · 재준 · 삼준의 담당자와 일시가 적혀 있다. 이것은 정서책을 만들기 위한 중초의 수정과정으로 파악된다.[65] 이들이 다른 지역의 양안에서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산군양안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초책의 조사안에 수록된 인사들은 양지아문의 조사위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

(65) 왕현종, 「대한제국기 지계아문의 강원도 양전사업과 관계발급」, 『동방학지』 123, 연세대, 2004, 89~90쪽.

〈표 7〉 안산군 초산면양안의 위원, 학원, 지심인과 그 지역[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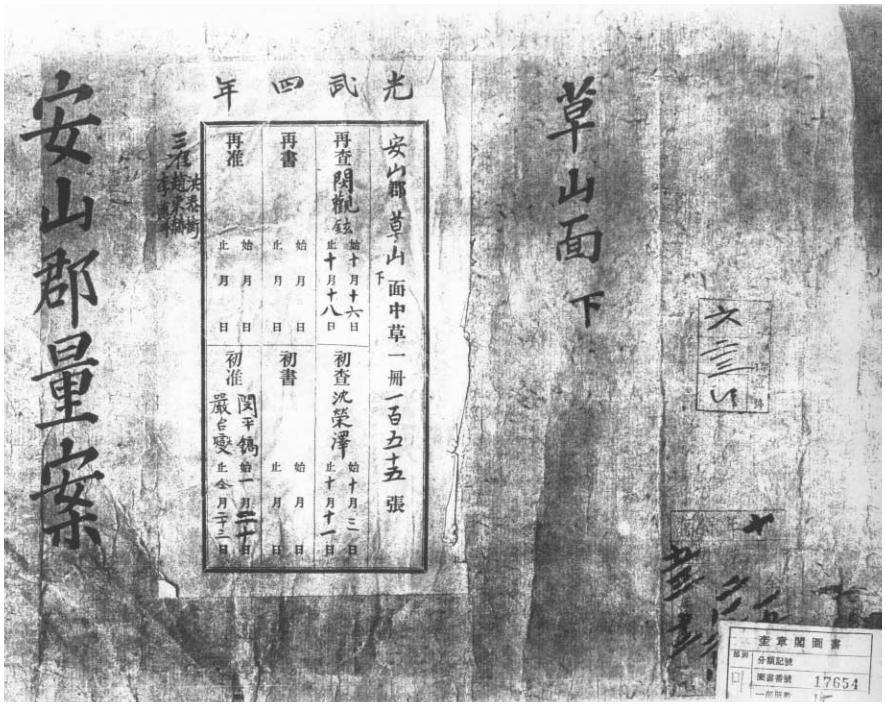
면명	위원	학원	지심인과 지역	자호
초산면(상) 97장	어택선	홍종준 권형집 김학노 김승렬 유병룡 고택규	김한실(8월 12일 조남동 사곡, 내곡, 용현, 용당곡, 사락리평), 김상근(사락리평), 김재성(조남리, 개잉평), 이영실(곤현평, 외암평), 김화집(단리평, 만리외평), 김영서(제청 남양리평, 배미곡), 김영서(목후교), 박경삼(제청 족접평), 김대현(장분방평), 김영서(제청리, 고저곡, 목감리전평, 정수곡평), 정화성(초곡평), 이순월(당후평), 이이덕(율포내평, 후곡평, 소두천평, 오현기곡평), 김경순(오리현전평)	爲~珠 15자
초산면(중) 108장	남계양	이범직 이범하 심윤택 김문수 박영구 박계근	박춘보(장기촌전평 소임, 영성평, 조평), 황군선(하후곡, 소두내곡), 박춘보(논실, 축곡, 거정곡, 논실전평), 김경진(신촌), 김영서(순우곡, 삼천병마곡, 군실평), 김상운(내가논평, 개논평, 원통천, 입암), 김춘서(산현동전평, 산현동, 차부악리), 권용문(괴화곡, 피곡), 김동근(생곡), 권주원(금령곡, 괴화곡, 차부악리, 행비래곡, 물왕동), 이소희(물왕동 해전평, 장자동, 월촌, 물왕동, 전고내평, 무곡논평, 석거리, 정지미, 상직동, 성재동)	稱~鹹 13자
초산면(하) 155장	송종원	이은구 박유현 박노정 조재승 이원우 윤희용	한계영(상직전평), 김사인(광석리전평), 김순교(광석리 洞中), 장윤행(광석리 前, 중직리), 안덕현(하상리전평), 안순서(내평), 지성범(걱지방축외평 제언답, 고평), 지윤만(걱지방축), 이도원(벼실고지전평, 호조방축), 이유근(호조방축평), 김홍겸(春臺방축), 이도원(善爲방축), 장치보(간촌), 지윤만(간촌전평, 유축평), 권봉수(8월 18일 간촌전평 能溪水방축), 전치근(채나물평), 김원보(하하리전평, 석교평, 축곡), 권문도(감재평)	河~虞 28자

산군에서 만들어 양지아문에 올린 중초책을 수정한 과정이 조사안에 반영된 것이다. 중초책인 안산군양안의 면별 책자의 제목에는 '광무 4년 경자 10월일 경기안산군○○면양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중초책은 1900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초책 안산군양안을 정서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작업 및 시기와 그에 참여한 인물을 초산면에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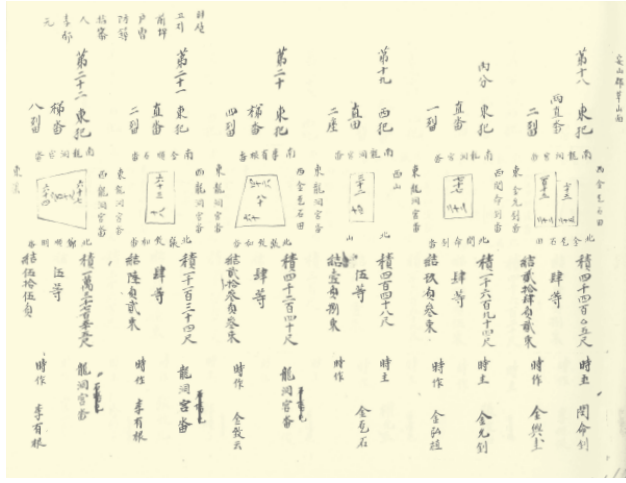
중초책의 수정내용은 결부의 정확여부, 전답가대의 정확여부, 둔전여부, 시주시작의 정확여부 등이었다.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양안은 5결 단위로 자호를 붙이고 자호 아래 필지마다

(66) 『경기안산군양안』(규17654).



▲ 중초책 안산군양안의 표지
▶ 안산군 초산면양안의 내용



네 칸으로 구별하여 제1칸에는 지번, 양전방향, 지형. 지목, 야미수, 제2칸에는 지형도 및 사표와 장광척수, 제3칸에는 면적척수, 토지등급, 결부수, 제4칸에는 시

〈표 8〉 안산군 초산면 중초책 양안의 수정과정[67]

면명	초사	재사	초서	재서	초준	재준	삼준
초산면(상) 97장	홍유현 10.3~5	이필우 10.15~16	이원익 10.29		민평호, 엄태섭 1.16~17	김주영, 현동익, 정태환 4.11	홍태형, 조동혁, 안기원 6.18~26
초산면(중) 108장	주상룡 10.3~8	이종범 10.15	이원익 12.3~20		민평호, 엄태섭 1.18~20	김주영, 정태환, 현동익 4.12	홍태형, 조동혁, 안기원
초산면(하) 155장	심영택 10.3~11	민관현 10.16~18			민평호, 엄태섭 1.20~23		홍태형, 조동형

주와 시작의 성명(대주와 가주의 성명 및 와가 · 초가의 칸수)을 기재하였다. 기재란 밖에는 지역명(중초책은 양전날짜, 지심인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단위로 작성되었고, 면별로 전답의 면적척수와 결부수, 거민호수와 초가 · 와가의 칸수를 합산하여 면총을 산출해 놓았다.

양지아문양안은 이전의 양안과 비교하여 지형을 확대하여 10개까지로 파악함으로써 토지의 모양과 면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 지형도를 기재하여 토지의 위치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 장광척수를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적척수를 계산하여 기재함으로써 전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대지의 경우 대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가옥주를 기재하고 또한 와가 및 초가의 칸수를 기재함으로써 거주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양지아문양안의 특징임과 동시에 이전의 양안에 비하여 발전된 모습이다. 안산군 양안에 나타난 면별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안산군에서는 '천' 자에서부터 '흥' 에 이르기까지 232자에 걸쳐 자호가 부여되었다. 광무양전사업에 의하여 전답의 구분과 실총이 새로 확인되었다. 안산군 실총의 전답 비율이 51 대 49이던 데서 광무양전의 결과 29 대 71로 답이 현격하게 많이 집계된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의 원장부전답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미 수리시설의 확대, 개간의 증가에 의하여 답의 비

(67) 연도는 1900년 10월부터 1901년 6월 사이이다.

〈표 9〉 안산군양안에 나타난 면별 토지현황[68]

	항목	군내면	초산면	마유면	대월면	와리면	잉화면	합계
중초수정	천자문	天-結(38)	爲-虞(56)	陶-及(48)	萬-短(38)	靡-慶(52)	尺-興(32)	天-興(264)
	전면적	1,958,880	1,990,661	2,014,872	1,148,081	2,005,157	1,146,487	10,264,138
	답면적	2,512,079	4,702,798	4,104,230	2,526,550	4,194,899	2,252,561	20,293,117
	전답면적	4,470,959	6,693,459	6,119,102	3,674,631	6,200,056	3,399,048	30,557,255
	전답결총	197-38-8	288-65-6	244-93-3	190-00-4	262-75-5	153-64-0	1,337-37-6
	전결 (응탈)	75-84-6 (1-19-8)	70-01-6	69-52-5	49-94-0	74-43-5 (0-00-9)	44-97-7	384-73-9 (1-20-7)
	전결실총	74-64-8	70-01-6	69-52-5	49-94-0	74-42-6	44-97-7	383-53-2 (29%)
	답결 (진)	121-54-2	218-64-0 (0-04-0)	175-40-8 (0-18-5)	140-06-4	188-32-0	108-66-3	952-63-7 (0-22-5)
	답결실총	121-54-2	0-04-0	0-18-5	140-06-4	188-32-0	108-66-3	558-81-4 (71%)
	전답실총	196-19-0	288-61-6	244-74-8	190-00-4	262-74-6	153-64-0	1,335-94-4 (100%)
	공해(좌)	7좌				1좌 와8		8좌 와8간
	거민(호)	542	476	612	237	557	408	2,832
	와가(간)	76	78	64	40	156	130	544
	초가(간)	2,174	1,977	2,667	965	2,168	1,815	11,766
중초	염막(좌)			6		19	22	47
	원결(原結)	186-43-9	232-50-5	198-11-5	115-69-6	240-48-2	144-97-4	1,118-21-1
	사기결(査起結)	197-49-7	288-45-4	244-84-0	190-00-8	262-84-2	153-71-4	1,337-35-5
	증감결	11-05-8	55-94-9	46-72-5	74-31-2	22-36-0	8-74-0	219-14-4

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무양전에 의하여 안산군 전체의 전답실총 1,335결 94부 4속은 수조안의 실총 1,100결 46부 7속에 비하여 235결 47부 7속,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면적인 토지조사에 의하여 은결의 재발견, 진탈의 면밀한 조사를 거친 승결, 토지등급 상향조정에 의한 결부의 증가 등에 의하여 실총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광무양전지계사업에서 측량한 203개 군 전체의 증결이 23%에 이르는 점과 비교하면 평균에 못 미치는 증가율이다.

(68) 면적, 전답결, 응탈, 진, 거민 등은 중초의 수정부분에서 취하였다. 원결과 사기결 및 그 증감은 중초에서 취하였다. 그래서 전답결총, 전답실총 그리고 사기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궁장토 · 둔토의 경영과 국유화

1) 궁장토경영과 국유화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사에 의하면 안산군의 궁장토는 〈표 10〉과 같고, 1899년 9월 현재 내장원에 소속된 안산군의 궁장토는 〈표 11〉과 같다.

〈표 10〉 안산군의 궁장토[69]

구분 / 소속	위치	면적 (두락 · 일경)	면적 (결부)	납입액	감관 도장	연혁
내수사	오이도	전 1석 16두락 답 10두 5승락	0-70-4	금 1.500	도장 정용섭	대빈궁에서 이래
내수사		전답	2-36-0	금 3.000		귀인방에서 이래 1894년 이후 수취하지 않음
수진궁	와리면 능내리	전 21석 15두락 답 21석 5두락	21-76-6	백목 80.000 태 10.000	감관 최상학	400년 전 매수
수진궁	와리면 능내리	신동(新垌) 답 10석락	4-8-4	금 0.650	도장 길영수	유래 불명
수진궁	와리면 능내리	수가(水家) 답 2석락	1-85-3	금 0.650	도장 박평서	유래 불명
수진궁	옹암면 동장리	전 3석 6두 5승락 답 29석 15두락	12-2-5	금 17.350	도장 민영찬	유래 불명
명례궁	마유면	전답	4-37-3	태 10.000 점미 1.000	도장 김문환	명례궁의 오래된 장토
명례궁	마유면	보세(洑稅)		금 2.015		명례궁의 오래된 장토
용동궁	초산면 마유면	전 21일 5식경 대전 35일경 답 56석 5두 9승락	2-68-0	백미 80.000	도장 신석효	병인년(1866) 매수
용동궁	잉화면	전 3식경 답 19두락	0-63-8	금 2.500		용동궁의 오래된 장토

(69) 조선총독부 정리국, 『국유지조사서(抄)』.

〈표 11〉 1899년 내장원 소관 안산군 궁장토[70]

구분 / 둔명	지역	전답	결세/납세	도지	비고
용동궁둔	초산면	답 초산면 40석락 전 초산면 도조 100석 규모	14-00-0 타조 중 충당	도조 450석	신석효 동생이 해마다 수거
	마유면	답 12석락			
수진궁둔	잉화면 와하리	답 23석락	14-00-0		전동 민영찬 매득
	와리면	전답 399두락		도미 1,197	두이전 소릉(昭陵)에서 빈전(殯殿)으로 편입

안산군 궁장토의 연혁과 경영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다. 현재의 시흥시에 속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초산면 · 마유면 용동궁 전답의 연혁과 경영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토는 1866년 용동궁에서 매입한 장토로, 1875년에 재측량한 양안에 따르면 그 규모는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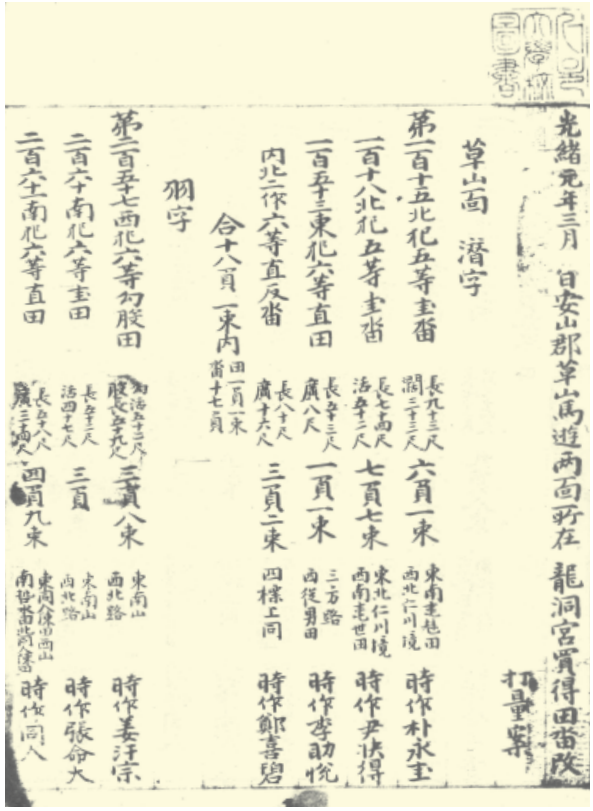
〈표 12〉 1875년 안산군 초산면 · 마유면 용동궁장토의 규모[71]

구분 / 면	자호	필지	전	답	전답
초산면	16개	252	4-32-4	10-44-5	14-76-9
마유면	9개	59	0-86-7	2-85-9	3-72-6
합계	25개	311	5-19-1	13-30-4	18-49-5

이 자료는 용동궁에서 매득한 전답에서 거두어들일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황폐한 것은 제외하고 실결만을 파악한 것이다. 용동궁장토는 초산면과 마유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초산면은 하상리 · 중직동에 걸쳐 있고, 마유면은 장종리에 소재하고 있다. 총 25개 자호 지역에서 311필지에 걸쳐 있는데, 1자

(70) 『宮內府所管京畿安山郡各屯土査檢案』(광무 3년 9월, 규21046 경리원역둔토성책에 포함됨)에서 둔토와 염막을 제외하고 궁장토만 정리하였다.

(71) 『安山郡草山馬遊兩面所在龍洞宮買得田畓改打量案』(1875년 3월, 규18194). 전답의 합계는 원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산술적 결과를 기입하였다.



▲『안산군초산마유양면소재용동궁매득전답개타양안』내용

5결 원칙에 따르면 25개 자호는 125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거기에 15%인 18결 정도가 용동궁장토로 신규 매입된 것이다. 특히 마유면 국자(國字) 10필지 1결 85부 3속 가운데 답 1결 54부 6속은 사방둘레 1,210척의 구방축언에서 1결 34부 6속, 사방둘레 952척의 신방축언에서 20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18결 49부 5속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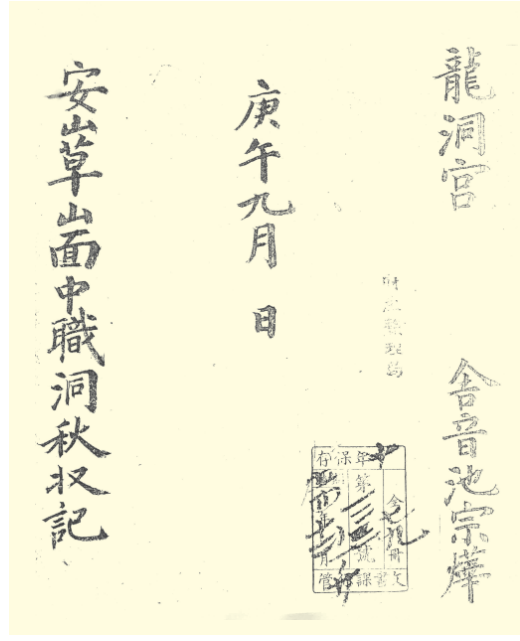
안산군 용동궁장토는 세 지역으로 나누어 사음(舍音)이 관리하였다. 마유면지역은 김동식, 초산면 하상리지역은 안재록, 초산면 중직동지역은 지종엽이 관리하였다. 세 지역의 대체적인 규모와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안산군 용동궁장토는 초산면 중직동, 초산면 하상리, 마유면의 세 곳으로 나뉘어 각각 사음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장토의 규모는 수확량을 통해서 보면 하상리, 중직동, 마유면의 순이다. 타작의 비율이 도지보다 월등히 많다. '결복' 은 지세납부액수를 의미할 것이다. '실상납' 은 결복을 비롯한 종자, 저수역(貯水役), 유량(留糧) 등을 제외한 것이며, 상납비용은 실상납에 포함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초산면 하상리 장토의 결복을 '초산면 원결복' 과 '둔답 원결복' 으로 구분하고 있

〈표 13〉 1868~1870년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경영[72]

구분 / 지역	추수	사음	타작	도조	타도합	결복	실상납
초산면 중직동	1870.9	지종엽	117석 13두	27석 16두 4승	145석 9두 4승	32석 1승	92석 16두 6승
초산면 하상리	1869.9	안재록	213석 12두	46석 18두 4승	260석 10두 9승	26석 14두 3승 초산면원결복 19석 10두 4승 둔답원결복	193석 15두 9승 5합
마유면	1867.10	김동식	63석 18두	16석 12두 8승	80석 10두 8승	12석 13두 2승 7두(신방축)	59석 1두 6승
	1868.9	김동식	90석 11두	16석 1두 8승	106석 12두 8승	12석 13두 2승 2석(신방축)	84석 5두 6승

는 점이다. 둔답은 안산둔답과 인천둔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치나 자호상으로 볼 때 모두 석장둔인 것이 틀림없다. 용동궁에서 석장둔을 매입하여 경영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석장둔의 경우는 뒤의 둔토경영에서 설명하기로 한 초산면 하상리에 있는 둔답을 용동궁에서 매입하여 경영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납세하게 한 것은 지세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



▲『용동궁안산초산면중직동추수기』 표지

(72) 『용동궁안산초산면중직동추수기』(庚午 9월, 규20561, 사음 池宗燁); 『용동궁안산초산면하상리추수책』(己巳 9월, 규20558, 사음 安再祿); 『안산추수기』(丁卯 10월, 규20564, 李東植次知); 『경기도안산군잉화면소재장토용동궁제출도서문적류』(규19299-63) 수록의 『안산추수기』(戊辰 9월, 李東植次知).

다. 마유면의 경우에는 구방축과 신방축을 구분하여 경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역시 지세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869년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경영실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4〉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경영실태[73]

구분 / 지역	타도조합	작미	태가	잔액
초산면 하상리	195석 12두 9승 5합	180석	15석	12두 9승 5합
초산면 중직동	89석 6두 1승	81석	6석 15두	1석 11두 1승
마유면 장종리	79석 6두 2승	72석	6석	1석 6두 2승
합계	364석 5두 2승 5합	333석	27석 15두	3석 10두 2승 5합

추수결과를 보면 초산면 하상리, 중직동, 마유면 장종리의 순으로 경영규모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작미(作米)한 뒤 육로를 통해 서울로 운송하였다. 안산군 용동궁장토 세 곳에 대한 추수실태를 1870년부터 1874년까지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1870~1873년 안산 용동궁장토 추수실태[74]

구분 / 연도	타작조	도지조	기타	합조	결복	실조	작미
1870	452석 2두	79석 16두 6승		531석 18두 6승	91석 12두 4승	400석 10두 7승 5합	224석 9두 6승
1872	436석 14두	79석 17두 6승	11석 4승 9합	527석 12두 9합	93석 8두 4승	398석 11두 9승 8합	224석 9두 2승
1873	304석 7두	74석 16두 8승	24석 11두	403석 14두 8승	63석 13두 6승 19석 11두 3승 화영둔결	280석 16두 5승 1합	148석

(73) 『경기도안산군잉화면소재장토용동궁제출도서문적류』(규19299-63)의 안산추수기.

(74) 1870년 추수 『경기도안산군초산면소재장토용동궁제출도서문적류』(규19299-10); 1872년 추수 『경기도안산군초산면소재장토용동궁제출도서문적류』(규19299-21); 1873년 추수 『경기도안산군초산면소재장토용동궁제출도서문적류』(규19299-21).

1870년의 경우 결복 외에 비용으로 종자 절반, 신방축 종자 전부, 방축 및 저수역 비용, 유량 등이 있고 실조에서 다시 간추인(看秋人) 비용, 동역(垌役)을 위한 유치, 태가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작미하였다. 1872년의 경우에는 결복 외에 강화포량미 가결(加結), 반종자, 신방축 전종자, 방축 및 저수역 비용을 제외하여 실조를 산정하고 다시 실조에서 간추인의 경비를 제외한 뒤 작미하였다. 1873년의 경우 타조와 도지의 사득조(査得租)가 24석 11두에 이르렀고, 역시 결복, 강화포량미, 저수역량, 구방축 역량, 유량 등을 제외하여 실조를 산정하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결복을 구분하여 화영둔결로서 19석 11두 3승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복의 액수를 비교해 볼 때 1870년과 1872년의 경우에도 화영둔결의 결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869년 초산면 하상리 추수기에서 둔답원결복이 19석 10두 4승인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영둔결을 의미할 것이다. 화영둔결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언급할 수원부에 속했던 석장둔을 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로 운송된 작미는 〈표 16〉과 같이 처리되었다.

〈표 16〉 용동궁장토의 작미 처리방향[75]

연도	작미	별치(석)	관고(석)	향미
1869	184석	100	57	27석
1870	224석 9두 6승	100	92	32석 9두 6승
1871	160석 7두 2승	100	32	28석 7두 2승
1872	224석 9두 2승	100	92	32석 9두 2승
1873	151석 4두 8승	100	25	26석 4두 8승
1874	164석	100	30	34석

향미 비용을 제외하고 100석은 별치의 예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5) 『경기도안산군초산면소재장토용동궁제출도서문적류』(규19299-21) '안산 春精米.'

이상에서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기원과 경영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장토는 매득에 의하여 성립되었지만, 방축을 이용한 개간지로서 석장둔도 포함되고 새로이 사득되기도 하였다. 용동궁의 사유지로서 지세를 납부한 것이 '결복'으로 확인된다.

갑오개혁을 통해서 궁장토도 출세하게 되지만 안산군 용동궁장토는 이미 납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을미사판(乙未査辦), 광무사검(光武査檢) 등의 궁장토·둔토·역토 조사사업을 거치면서 농장경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903년 안산군 초산면 하상리 용동궁장토의 추수책에 붙은 쪽지에 의하면 안산의 타량은 1904년에 시행하고 사득전답을 양안에 병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양안이 성출(成出)된 것은 1901년이며 도장(導掌)을 작정한 것은 189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음을 통해 직접 경영하던 장토인데 광무연간에 이르러 장토에 도장이 설정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03년과 1907년 안산군 초산면 하상리 중직동 추수의 내용은 〈표 17〉과 같다.

〈표 17〉 한말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추수[76]

연도	지역	타조	도지	타도합	결복	실상납
1903	하상리	타조 80석 12두 수원둔답 21석 18두 인천둔답 28석 13두	40석 2두	171석 5두	답결 4-65-2 23석 5두 2승 둔결 3-59-1 17석 19두 1승	113석 17두 9승 5합
1903	중직동	81석 7두	29석 18두 7승	113석 1두 7승	답결 5-78-4 28석 18두 7승	73석 14두 4승 5합
1907	중직동	72석 5두	29석 1두 3승	101석 6두 3승	5-83-4	91석 12두 2승

'실상납'은 '타도합'에서 '결복'을 비롯한 반종자, 방축역량, 둔답저수역량,

(76) 『용동궁안산초산면하상리추수책』(1903년 8월), 『안산초산면중직동추수책』(1903년 8월, 규20807 합본); 『前龍洞宮坪안산초산면하중리추수기』(1907년 10월, 규21976 제3책). 하중리는 중직동과 같은 지역이다.

유량 등을 제외한 것이다. 하상리에 답결과 둔결이 구분되고 둔결은 석장둔을 의미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결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장토의 규모를 알 수 있다. 1907년 중직리 추수지역은 타조의 면적 16석 5두 2승락지에서 사음사경, 수문사경, 진폐 등을 제외하고 14석 19두 8승락으로 산정되어 있다. 도조의 면적은 집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추수기에는 책 표지에 '방매(放賣)' 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장토의 명칭도 '전용동궁평(前龍洞宮坪)' 이라 하여 방매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양안의 작성은 안산 하중리 전(前)용동궁답 감관(監官) 이경수, 추수감 전태신, 전기봉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제 통감부는 궁장토를 비롯한 황실재산 정리에 착수하였다. 1907년 2월 궁내부 각궁사무정리소, 7월 임시제실유 급 국유재산조사국, 11월 제실재산조사국을 설치하였다가, 1908년 6월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으로 업무가 계승되었다. 일제는 1907년 6월부터 궁장토의 도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도장은 "궁방에 대하여 일정한 세미를 납부하고 궁장토를 관리하여 그 수익권(受益權)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도장 아래에는 감관 또는 사음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서 소작인의 감독 및 추수의 일에 종사하고 그 관계는 오히려 일반 지주가 원격지에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감관 또는 사음을 두는 것과 조금도 다른 바 없다"고 하였다. 1906년 6월 현재의 도장에 대하여 도서문적, 도장매매문기, 투탁문기로 증명하도록 하였다. 서류조사 후 실지조사를 시행하여 작도장, 납가도장, 역가도장은 제실유로 인정하고 1906년 수확고에 의거하여 그 3개년분을 도장 교부금으로 산정하여 증권으로 지불하였다. 투탁도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토지를 돌려주었다.(77)

안산군의 경우 안산군 하중리 김치덕에게는 용동궁에 혼입된 하중리 전 약 15평, 답 1두락을 혼탈입지로서 환급하였다. 이연직에게는 용동궁에 혼입되었다고 청원한 하중리 답 5두락, 하상리 답 3두락 및 전 반일경은 인정하지 않았다.

(77) 임시재산정리국,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 1911, 61~74쪽.

안산군 궁장토에서 도장을 인정하여 처리한 결과는 〈표 18〉과 같고, 도장에 대한 배상결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8〉 도장의 처분[78]

구분 / 궁방	위치	답	전	배상(사금)	도장
수진궁	안산군 잉화면 범하리	24석 2두락	8일 2식경	684.804엔	민영찬(閔泳贊)
수진궁	안산군 와리면 능내동	2석락		77.934엔	박평서(朴平瑞)
명례궁	안산군 마유면, 대월면	6두 5승락	29일 1식경	15.102엔	김재원(金在元)
용동궁	안산군 마유면, 초산면 인천군 신현면	50석 7두 9승락	110일 반식경	1,477.551엔	신석현(申錫賢)

〈표 19〉 안산군 궁장토 도장 배상금 산출결과[79]

도장	총수익	총지출	순수익	단가(엔)	총액(엔)	공제액(엔)	순수익(엔)	3년분(엔)
박평서	조 15석	종자 조 2석	조 13석	조 1석 3.200	41.600	궁납 0.950 결세 14.672 계 15.622	25.978	77.934
민영찬	조 117석 15두	종조 12석1두	조 105석 14두	조 1석 3.200	338.240	궁납 17.240 결세 92.632 계 109.972	228.268	684.804
김재원	조 2석 태 10석 19두	궁상납 점미(粘米)1석 태 10석	조 2석 태 19두	조 1석 3.200 태 1석 2.400	8.680	궁납 점미 1석 8.000 결세 1.110 계 9.110	−0.430	15.102
신석현	조 316석 17두	조 27석 12두 4승 5합	조 289석 4두5승 5합	조 1석 3.200	925.528	궁납 백미 80석(1석 3.675엔) 327.075 결세 105.936 계 433.011	492.517	1,477.551

수진궁 안산 서면 능내동의 전답은 물력을 준비하여 방축을 쌓아 작답한 것으로서 도장 박평서가 제출한 문서에 "안산 수가동 전 수진궁장토 작도장 박평서 ;

(78) 임시재산정리국,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 1911, 94~118쪽.
(79) 임시재산정리국,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 1911, 161~174쪽.

이는 서류에 의하여 작도장이 명확함"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어서 작도장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80]

김재원은 안산군 월곶 · 대월 소재의 명례궁 전도지태(田賭地太) 도장으로 인정받았다.[81] 신석현은 안산군 초산면 · 마유면 소재 전답을 납가 1,000냥을 납부하고 작도장을 허급받은 것으로서 납가도장으로 인정받았다.[82] 신석현의 경우에는 황해도 봉산군 서호면 대소성포 수진궁 답노전 16석 14두 5승락의 도장으로서 사금으로 718.023엔을 받은 인물이다.

도장의 폐지와 정리를 통해 일제는 투탁도장 8건, 약 610정보에 대하여 토지를 돌려주고, 123건의 도장에 대하여 11만 6,809원을 도장의 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78건은 부인하였다. 이로써 임시재산정리국은 전국에 걸쳐 전답 · 노전 등 약 2만 5,800정보, 산림원야 약 1만 9,400정보, 가사(家舍) 약 190호, 택지 약 50정보를 국유화하였다. 1908년 6월 역둔토관리규정에 의하여 궁장토는 역둔토에 편입되어 탁지부가 도조 징수권을 갖는 국유지로 되었다.

2) 둔토경영과 국유화

조선시대의 둔토는 정부의 각 행정, 군사기관이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 · 운영하던 장토이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하여 중앙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그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각 기관의 운영경비는 별도의 정부예산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처음 1894년에는 탁지아문에서 모두 통괄하였다. 1895년에는 왕실과 관계된 토지는 궁내부, 종래 호조 · 병조와 관련된 토지는 탁지부에서 관리하였으나 궁내부가 관리하는 면적이 훨씬 많았다. 이후 점차 많은 둔토가 궁내부 및 그

(80) 『경기도안산군능내동소재장토朴平瑞제출도서문적류』(규19299-49).
(81) 『경기도안산군월곶소재장토金在元제출도서문적류』(규19299-17).
(82) 『경기도안산군마유면소재申錫賢제출도서문적류』(규19299-84).

산하의 내장사로 귀속되어 가고, 대한국국제를 제정함으로써 황제권의 전제화가 급진전된 1899년 9월 왕실재산을 총괄하는 내장원의 성립과 팽창을 계기로 탁지부 소관의 각종 둔토들은 내장원으로 대거 이관되었다.[83]

조선총독부중추원의 조사에 의하면 안산군 둔토의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0〉 안산군의 둔토[84]

구분 / 소속	둔명	유래	비고
금둔	금둔	적몰	운현궁 이속
총리영둔	월입피둔	이래	원래 양향청에 속함, 1896년 선희궁 이속, 1901년 내장원 환속
총리영둔	장용둔	이래	1896년 선희궁 이속, 1901년 내장원 환속
총리영둔	석장둔	축언	1896년 선희궁 이속, 1901년 내장원 환속
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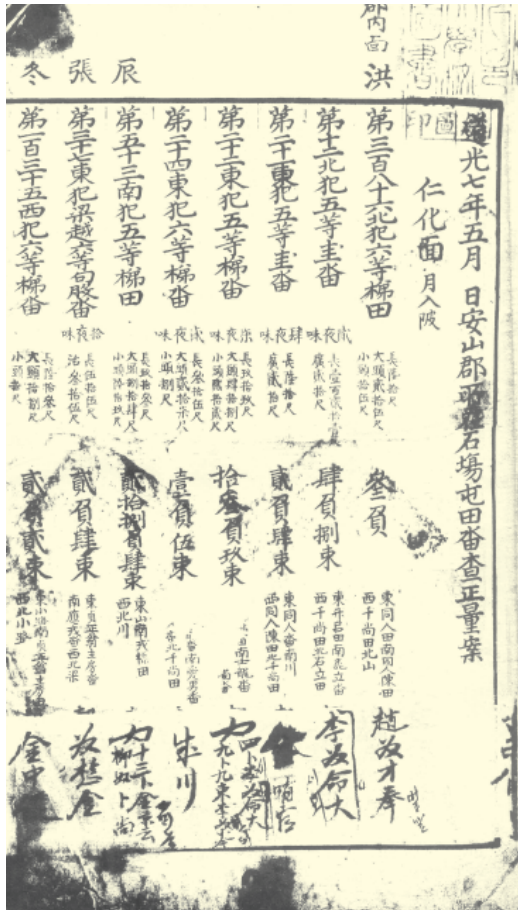
안산의 둔토는 금둔, 총리영둔, 관둔이 있다. 둔토의 조성은 적몰, 축언, 이래의 기원을 보인다. 『국유지조사서(초)』의 '장용둔 안산 장둔(壯屯)' 항목에는 "원래 양향청(糧餉廳)에 속하였지만 장용영(壯勇營) 폐지 후에는 화영(華營)으로 이속되고 화영 폐지 후에는 선희궁으로 이속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서, 장용둔과 월입피둔은 원래 양향청에 속했다가 갑오개혁 이후 총리영둔으로 이관되었다가 1896년 선희궁으로 이속된 것이다. 석장둔은 안산과 인천의 경계에 진휼청에서 제언을 쌓아 조성한 것으로 총리영둔을 거쳐 선희궁으로 넘어갔다. 관둔은 안산군 재정을 위한 장토이며, 금둔은 또 다른 연혁을 가진 장토이다.

안산의 대표적인 둔토는 석장둔과 장용둔이므로, 이들 둔토를 사례로 하여 둔토의 연혁과 경영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석장둔은 진휼당상 민진원이 인천부 신현면과 안산군 초산면의 경계에 있는 넓은 진황지에 1720~1721년 방죽을 쌓아 형성한 1,000석에 달하는 둔토에서 기

(83) 김양식, 『근대권력과 토지』, 해남, 2000 참조.
(84) 조선총독부 중추원, 『국유지조사서(抄)』.

인한다. 물론 이전에도 방죽과 개간이 반복되어 왔던 지역이다. 방죽을 쌓아 만든 1,000여 석의 전답은 호조 산하의 진휼청에 소속시켜 진휼자금 등의 재정에 충당하였다. 『여지도서』 안산조에 "석장포는 관아 서쪽 20리의 인천부 경계에 있는데 진휼청에서 제언을 쌓았다"고 한 것이나, 18세기 중엽에 나온 『해동지도』에 '진청신언(賑廳新堰)'이라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킨다. 『안산석장둔양안』(규18997)과 『인천석장둔양안』(규18996)은 자호 · 지번 · 양전방향 · 지형 · 지목 · 야미수 · 장광척 · 결부수 · 사표 · 주명(主名)의 형식으로 기재된 양안인데, 방죽을 쌓아 개간한 뒤 작성한 최초의 양안으로 판단된다.



▲ 『안산군석장둔전답사정양안』

이처럼 방죽을 쌓아 바닷물을 막아 개간한 해변의 장토는 특별히 석장둔이라고 불렀는데 방죽을 쌓는 독특한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방식의 개간은 이후 안산 연해를 둘러 여러 곳에서 소규모로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1827년 5월 안산군 석장둔의 황폐여부를 조사한 『안산군석장둔전답사정양안』(규18918)의 지역과 면적은 앞에서 살펴본 안산군 석장둔지역과는 다른 곳이다.

〈표 21〉 1827년 안산군 석장둔 진기 조사결과[85]

지역	전		답		합계
	기전(起田)	진전(陳田)	기답	진답	
잉화면 월입피	1-55-0	0-25-4	6-06-9	1-69-1	9-56-4
마유면 정왕리 오이도	0-51-1		1-01-9	0-01-6	1-54-6
합계	2-06-1	0-25-4	7-08-8	1-70-7	11-11-0

안산군 잉화면 월입피와 마유면 정왕리 · 오이도에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석장둔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뒤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는 이 지역의 장용둔을 포함해 수원부 소속 둔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석장둔이 인천부 신현면과 안산군 초산면 외에 잉화면과 마유면 해안가에도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잉화면과 마유면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오이도 주변은 갯벌이며 월입피도 마찬가지로 내륙으로 연결되는 하천의 초입에 있는 갯벌이었다. 이들 장토는 안산군 초산면과 인천부 신현면 석장둔 개간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장토와 함께 조사된 『안산군소재장용둔전답사정양안(安山郡所在壯勇屯田畓査正量案)』(도광 7년 5월, 규18673)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안산군의 이 석장둔은 장용영 소속을 거쳐 수원부에 소속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장용영둔을 살펴보자. 장용영은 1783년 장용위를 개칭한 것으로 1789년 장용내영으로 개칭하였다가 1802년 폐지하였다. 장용영둔은 1787년부터 황해 · 평안 · 경기도 일대에 설치되었으나 영 폐지 이후 각 영아문으로 이속되었다. 『안산군소재장용둔전답사정양안』의 책표지 내피에 붙어 있는 별지의 수기(手記)에 의하면, 안산군 소재 장용둔전답의 결복은 〈표 22〉와 같다.

장용영둔이 1802년 폐지되었으므로 갑자는 1804년을 의미할 것이다. 합계 2결 55부 1속 가운데 2결 40부는 '귀본영(歸本營)' 시키고 15부 1속이 남았다는 기

(85) 『安山郡石場屯田畓査正量案』(1827년 5월, 규18918).

〈표 22〉 1804년 안산군 구 장용영둔토의 규모[86]

지역 \ 구분	결복	실결
초산면	0-33-0	0-18-8
대월면	0-11-0	0-11-0
마유면	1-46-3	1-42-9
와리면	0-93-1	0-71-2
군내면	0-11-2	0-11-2
합 계	2-94-6	2-55-1

록에서 볼 때 장용영둔을 폐지하면서 이를 수원부에 소속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수원부에서 이 둔토의 도조를 수취했을 것이다.

수원부에서는 1827년 관할 둔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핀 『안산군석장둔전답사정양안』이나 수원부 금물촌면 · 북방면 · 숙성면 · 오타면 소재의 구장용내영 소속 둔전답을 개타량한 『수원부소재내영둔전답개타량성책』(규18547)은 모두 1827년 5월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가 겸사 및 타량감관 · 서기로 구성된 것도 동일하다. 1827년 조사한 안산군 구장용영둔토의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 1827년 안산군 구 장용영둔토의 현황[87]

지역 / 구분	군내면	초산면	마유면	대월면	와리면	합계
필지수	3	5	52	2	27	89
면적						전 1-16-1 : 9일 반경 답 2-93-1 합계 4-09-2

장용영둔전답은 안산군 군내면 · 초산면 · 마유면 · 대월면 · 와리면 등지에 전

(86) 『安山郡所在壯勇屯田畓査正量案』(道光 7년 5월, 규18673) 표지 안쪽의 수기 '結卜都摠 甲子件.'
(87) 『安山郡所在壯勇屯田畓査正量案』(道光 7년 5월, 규18673).

1결 16부 1속, 답 2결 93부 1속, 합계 4결 9부 2속으로 집계되어 있다. 주로 마유면과 와리면에 분포하고 있다. 1804년의 기록과 차이가 나는데 결복은 답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한 사람은 겸사이며 타량감관은 안문흠, 서리는 김해운으로 수원부 소속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둔토는 민유지의 절수 · 모입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지세수준을 납부하고, 완전한 소유지는 지주제로 경영하면서 면세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었다. 개간지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석장둔은 호조의 진휼청에서 개간한 것과 후에 추가로 개간하여 장용영에 속하다가 수원부로 이관된 장토가 있으며, 장용영둔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원래 양향청에 속하다가 장용영 폐지로 화영으로 이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토지는 대체로 해안가의 갯벌지역에 석장을 쌓아 개간한 것으로서 절수개간지에 속하기 때문에 소유관계, 지대 · 지세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갑오개혁 이후 면세의 철회에 따라 각종 영아문에서 수취하던 지세는 모두 탁지부로 귀속되었다. 영아문 소유의 토지나 중도적인 권리를 지닌 장토에서는 지세를 제외한 생산물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지방의 각 영아문의 둔토는 갑오개혁에 의하여 모두 탁지아문으로 이관되었다. 1895년에는 궁내부와 탁지부가 나누어 관리했는데 궁내부에서는 왕실과 연관되는 종친부둔, 돈녕부둔, 충훈부둔, 규장각둔, 봉상시둔, 사옹원둔, 사복시둔을 관리하고, 탁지부는 호조 · 병조와 관련이 있는 균역청둔, 진휼청둔, 양향청둔, 훈련둔, 의금부둔, 기로소둔, 호둔, 관둔, 영둔, 진보둔 등을 관리하였다. 1894년 6월 총제영이 폐지되고 1895년 7월 각도의 감영 · 통제영 · 병영 · 수영 · 진영이 폐지되고 소속 토지는 해당 관청에 이속되어 탁지부와 궁내부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탁지부 관리의 둔토는 1,655결, 궁내부 관리의 둔토는 7,623결로서 18 대 82의 비율로 궁내부 관리에 속한 둔토가 많았다.[88] 이후 궁내부 소관의 둔토의 수는 더욱 확장되었다. 아관파천 이후 1896년

(88) 김양식, 『근대권력과 토지』, 해남, 2000, 55~57쪽.

에는 훈련둔, 양향청둔, 금위영둔 등 병조와 관련이 있는 장토의 관리권도 궁내부로 이속되었다.

전국의 둔토를 관리하게 된 탁지부는 1895년 7월 각 군에 대하여 소속 둔토의 소재와 두락, 작인 등을 조사 ·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역토를 관리하던 농상공부에서는 조사를 위해 1895년 9월부터 전국 22개 부에 사판위원을 파견하였다. 1896년 2월 탁지부와 궁내부는 소관 장토에 대한 조사를 농상공부의 사판위원에게 의뢰하였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판'이라 불리는, 국가와 왕실 소유지 전 면적에 대한 조사였다.(89)

안산군의 경우에도 갑오개혁 이후 둔토관리방식에 따라 탁지아문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안산군의 둔토도 물론 을미사판을 받았으며, 그 예를 안산군 석장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96년 4월 인천부사판위원 이태래의 주관하에 사음 이희덕이 실무를 담당하고 안산군수 서민순이 보고한 조사안에 의하면, 각 지역 · 필지별로 전답, 두락, 야미, 상중하 토질, 도조액, 작인성명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실태는 〈표 24〉와 같다.

총리영에 소속된 안산군 석장둔은 인천부사판위원에 의하여 1896년 4월에 조사 · 보고되었다. 이때에는 지방행정구역이 23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산군은 인천관찰부에 속하였고, 따라서 여기에 파견된 사판위원에 의하여 조사된 것이다. 이 조사책이 각군역토성책에 묶인 이유는 역토를 관장하던 농상공부에서 파견한 사판위원이 조사한 뒤 이를 농상공부에 보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안산군 석장둔은 상직동, 중직동, 하상리, 하중리, 간촌, 월피, 정왕 등지에 걸친 답 49석 5두 2승락, 전 2석 7두락의 장토이다. 초산면의 석장둔과 기타 잉화면 · 마유면의 것이 합해져 있는데, 사유화된 것은 제외되고 정부기관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파악한 것만 모은 것으로 판단된다. 을미사판의 결과 도조는 163석 15두 9승 5합이고 이 가운데 2결 24부 8속의 세금으로 6석 12두 4승을 납부하며, 제언

(89) 김양식, 『근대권력과 토지』, 해남, 2000, 66~67쪽 .

〈표 24〉 1896년 안산군 석장둔의 상황[90]

지역	전답	필지수	면적	도조
초산면 상직동	답	1	2두락	5두
중직동	답	6	1석 17두락	7석 8두
하상리	답	26	10석 18두락	38석 3두
하중리	답	27	16석 4두락	42석 8두 5합
간촌	답	24	12석 18두락	35석 8두
월피	답	24	4석 7두 2승락	19석 18두 8승
	전	5	17두락	1석 12두
정왕	답	20	2석 19두락	15석 3두
	전	10	1석 10두락	3석 10두 1승
전답 합계	답	128	49석 5두 2승락	158석 13두 8승 5합
	전	15	2석 7두락	5석 2두 1승
전체 합계		143	51석 12두 2승락	163석 15두 9승 5합

직 이도원, 사음 이희덕의 비용을 제하고 137석 6두 5승 5합을 상납하고 있다. 장토의 일부인 2결 24부 8속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탁지부 소관 둔토들이 궁내부로 편입되어 가는 일반적인 양상과 마찬가지로 안산군의 둔토들도 1896년에는 궁내부로 이속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안산군의 경우 금둔, 장용둔, 관둔과 총리영둔의 월입피둔, 장용둔, 석장둔 등이 있는데 금둔이 운현궁으로 이속되고, 나머지는 1896년 모두 선희궁으로 이속된다. 관둔을 제외하고는 궁내부 산하의 각 궁으로 모두 귀속된 것이다. 궁내부로 편입되는 한 사례를 장용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1896년 10월 장용둔이 궁내부로 편입된 직후 작성된 추수기를 통해 당시 장용둔의 상황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이 추수기의 표지에는 '궁내부상납(宮內府上納)', '전수원둔토(前水原屯土)' 그리고 내제에는 '전화영둔토(前華營屯土)'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것이 수원부 소관의 둔토였음을 말해 준다. 1827년 조사한 『안산군소재장용둔전답사정양

(90) 『安山郡石場屯田畓賭租區別成冊』(건양 원년 4월, 규21030 각군역토성책에 수록). 1석락=20두락이며, 원자료의 합계에 착오가 있어 다시 산정하였다.

〈표 25〉 1896년 장용둔의 상황[91]

구분 / 지역	타도여부	필지수	도지
마유면 구지정	타작답	31	타조 24석 15두 5승
	도지(전)	22	도조 12석 8두
마유면 장종리	타작	11	타조 12석 10두
와리면 성두평	타작(답도(畓賭)포함)	22	타도합 20석 11두
	도지(전)	10	도조 7석 3승
대월면 독월리	타작	1	타조 1석 15두
초산면 궤곡	도지(답)	8	도조 2석 14두
합계			81석 13두 8승

안』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장토는 갑오개혁 이후 탁지부 소관으로 들어가고, 당연히 을미사판을 받았을 터이고, 1896년 10월에 이르러 궁내부, 즉 궁내부 산하의 선희궁에 귀속된 것을 의미한다. 이 추수기는 선희궁에 이속된 뒤 둔감 이순길, 사음 한병옥이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앞의 표에서 보듯이 '장용둔(장둔)'은 원래 양향청에 속하다가 장용영 폐지로 화영으로 이속되고 화영이 폐지되면서 선희궁으로 이속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용안둔(龍安屯)'은 구장용영(壯勇營) 안산둔(安山屯)을 의미하는 '용안둔(勇安屯)'의 오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장토의 결복은 2결 80부 8속이며 이에 대한 세금으로 10석 5합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이전에 탁지부에서 관장하던 둔토가 다수 궁내부 소관으로 넘어갔다.

1897~1898년에는 군부가 각 지방대를 중심으로 역토와 둔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92] 이는 전 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아니었다. 1897년 10월 수원지방대 본영에서는 경기도 각 군의 둔토를 조사하였고, 그중 안산의 경우는 〈표 26〉과 같다.

(91) 『安山所在龍安屯秋收記』(1896년 10월, 규21028의 제2책). 추수기의 합계는 수조 합계를 79석 18두 8승으로 집계하고 있다.
(92) 김양식, 『근대권력과 토지』, 해남, 2000, 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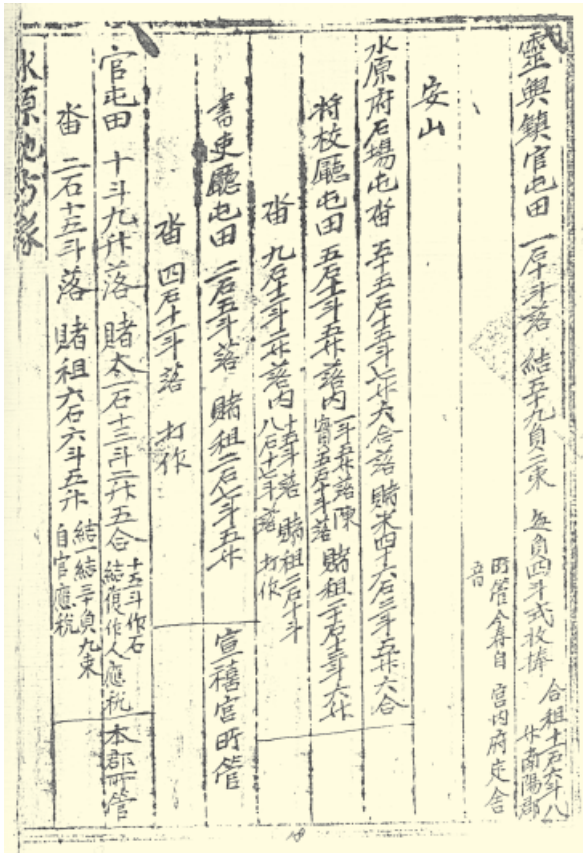
〈표 26〉 1897년 수원지방대 본영에서 조사한 안산군의 둔토[93]

구분 / 둔명	전답	면적	소관
수원부 석장둔	답	94석 19두 6승락	궁내부
수원부 석장둔	답	55석 15두 7승 6합락	선희궁
수원부 장교청둔	전	5석 11두 5승락	선희궁
	답	9석 12두 2승락	선희궁
수원부 서리청둔	전	2석 5두락	선희궁
	답	4석 11두락	선희궁
관둔	전	10두 9승락	안산군
	답	2석 15두락	안산군

안산군의 둔토는 이미 궁내부, 선희궁에 모두 이관된 상황을 보여 준다. 선희궁은 장조의 사친인 영빈 이씨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으로 1762년(영조 38)에 창설되었다. 1870년 폐지하고 육상궁에 합하였다가 1897년(광무 원년)에 다시 중건한 것이다.[94] 그러니까 선희궁의 복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재원을 안산군의 둔토를 이관해 마련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석장둔, 장교청둔, 서리청둔에는 모두 그 소속이 수원부였음을 붙이고 있다. 〈표 24〉에서 51석 12두 2승락 규모로 확인한 안산 석장둔은 이때 55석 15두 7승 6합락으로 산정되어 선희궁으로 이속되었다. 1896년 조사된 장용둔은 여기서는 수원부 장교청둔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관둔은 안산군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군부는 1897년 3월 농상공부 소관의 역토 관리권을 이양받아 군수에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농민전쟁 이후 신설된 훈련대, 시위대, 진위대, 친위대, 지방대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역토와 함께 탁지부 소관의 영진둔, 관둔, 포둔도 넘겨받아 지방대의 경비로 삼게 하였다.[95] 수원지방대에서도 경기도 각 군의 둔토를 조사하여 군수에 충당할 둔토를 확보하고자 하

(93) 『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査成冊』(광무 원년 10월, 수원지방대본영, 규19550).
(94) 임시재산정리국,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 1911, 106쪽.
(95) 김양식, 『근대권력과 토지』, 해남, 2000, 60~61쪽.

였겠지만 〈표 26〉에서 보듯이 관둔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궁내부, 선희궁에 넘어간 상태였다.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 수원지방대본영 안산군 부분

황제권 강화를 꾀한 대한제국과 민권의 신장을 추구한 독립협회의 갈등은 결국 1898년 말 대한제국의 독립협회 탄압으로 결말이 났다. 1899년에 들어 대한제국은 황제권 강화 조치를 취하고 8월에는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여 황제의 전제군주권을 법제화하였다. 이때 궁내부의 재정기관인 내장사를 재장원으로 승격하여 왕실의 각종 재원을 모두 여기에 결집시키고 이 재원을 황실의 운영 및 황제 중심의 개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궁장토는 물론 둔토와 역토도 모두 내장원으로 귀속되었다. 이를 위해 내장원에서는 역 · 둔토에 대한 사검사업을 시작하였고 그것을 광무사검이라 부른다.

1899년 9월 둔토와 역토가 대거 내장원으로 귀속되었을 당시 안산군의 둔토는 〈표 27〉과 같이 조사되었다.

수원서리청둔(훈둔), 수원석장둔, 수원장교청둔은 내장원에 귀속되었지만 도조는 결전을 떼어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희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표 27〉 1899년 내장원 소관 안산군 둔토[96]

둔명	지역	전답	결세/납세	도지
수원서리청둔 (훈둔)	장종, 초산면, 군내면, 월입피, 정왕, 대월면 선부	답 11석 2승락 전 11일경	9-71-4/ 도조 중 납세	도조 102석 13두 8승
수원석장둔	초산면	답 55석 15두 7승 6합락	17-33-9/ 면세	도미 46석 3두 5승 6합
수원장교청둔	4개 면 분산	답 9석 12두 2승락 전 5석 11두 5승락	2-77-3/ 도조 중 납세	도조 85석 2두 6승
관둔	군내면, 잉화면, 대월면, 마유면, 와리면	답 2석 15두락 전 10두 9승락	1-30-9/ 작인납세	도전 100냥 8전 6푼
금위영둔 (운현궁소속)	대월면	답 15석락 전 약간	결가 34석/ 도조 중 납세	도조 107석

이 자료를 작성한 군수 남계술과 궁내부 사검위원 강봉헌, 이태하는 이에 대하여 새로이 도조를 책정하지 않고 사음도 차정하지 않았다. 도조의 책정과 사음의 차정은 선희궁 소관사항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내장원에 소속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희궁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위영둔은 운현궁 소속인데, 장토는 안산군 읍내에 거주하는 김달원 · 최세영이 담당하였다. 금위영둔도 선희궁처럼 별도로 운현궁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둔이 포함된 것은 안산군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조차 내장원으로 수렴되어 안산군의 재정은 탁지부의 책정된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관둔은 안산군 읍내에 거주하는 김응태가 담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1899년 7월에 내장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97] 안산군의 관둔은 전 10두 9승락에 도태로 1석 13두 2승 5합(15두 작석, 결복 작인 응세), 답 2석 15두락에 도조 6석 6두 5승(1결 30부 9속의 결세는 자관 응세)로 되어 있다. 아마도 군부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내장사에 편입하기 위하여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96) 『宮內府所管京畿安山郡各屯土査檢案』(광무 3년 9월, 규21046 경리원역둔토성책에 포함됨).
(97) 『경기각군공토안』(광무 3년 7월, 내장사, 규19614의 제11책), 안산군.

수원 석장둔은 앞서 본 것처럼 초산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로서 지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면적을 비교해 보면 1896년의 조사를 계승한 것임에 틀림없다. 수원 장교청둔은 앞서 정리한 구장용영둔을 의미한다. 수원 서리청둔은 조선총독부에서 월입피둔이라고 지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후술하는 1906년의 안산군 둔토 상황에 견주어 보아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양향청에 속하다가 1896년 선희궁에 소속되고 궁내부, 내장원 산하로 이관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처럼 내장원에서는 새로이 귀속하게 된 둔토에 대한 전면적인 사검사업을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안산군의 둔토도 정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장용둔, 월입피둔, 석장둔은 모두 1901년 내장원으로 환속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궁내부 산하의 선희궁에서 왕실재정을 총괄하는 내장원으로 이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역둔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안산군 둔토의 상황을 살피면 〈표 28〉과 같다.

〈표 28〉 1906년 안산군 둔토의 상황[98]

구분 / 둔명	전답	원결	도지	사음료비
관둔	전 1일 2식반경 답 2석 15두락	1-30-9	도조 7석 15두 3승	15두 3승
월입피둔	전 4일경 답 8석 6두 2승락	7-15-5	도조 54석 7두 1승	5석 7두 1승
장용둔	전 16일 반식경(2식경 구진) 답 9석 18두 8승락(8두락 성천)	2-77-3	도조 79석 17두	7석 17두
석장둔	답 15-84-9		도미 42석 3두 9승 6합	4석 3두 9승 6합

석장둔의 결부는 둔결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원결로 표현되었다. 원결은 납세

(98) 『京畿各郡驛屯田畓日耕斗落結卜定賭實數都案』(광무 10년 3월, 규19178).

하는 부분이 아닌가 짐작된다. 둔결은 전답의 규모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원결은 두락 일경으로 표현한 다음 별도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둔의 경우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되던 1결 30부 9속만이 원결로 확정되어 있고, 월입피둔과 장용둔은 전답의 규모와는 전혀 반대로 원결이 산정되어 있는 것에서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된다.

둔토의 국유화는 역토와 함께 진행되었다. 임시제실유 급 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1월 지방조사위원을 파견하여 역둔토의 각종 문서류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탁지부에서 역둔토의 도조 징수권을 확보한 뒤 산하의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역둔토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탁지부는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에 걸쳐 역둔토 실지조사를 단행하여 역둔토의 국유화를 완료하였다. 이때 역둔토의 면적은 12만 8,868정보에 이르렀다.

◎ 참고자료

『안산석장둔전양안』, 1책, 규18997.
『인천석장둔양안』, 1책, 규18996.
『경기장토문적』, 규19299.
『안산군소재석장둔전답사정양안』, 1827, 1(12), 규18918.
『안산군소재장용영둔전답사정양안』, 1827, 1(5), 규18673.
『안산군옹암면동장리추수기』, 3책, 규20843-45.
『각군역토성책』, 내수사, 1896, 5책, 규21030; 4. 안산군석장둔전답도조구별성책.
『안산초산면중직동추수기』, 명례궁, 1870, 1(13), 규20561.
『안산군결복영진성책』, 1895, 1(116), 규16367.
『안산군초산마유양면소재용동궁매득전답타량양안』, 1875, 1(16), 규18294.
『경기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 수원지방대, 1897, 1(10), 규19550.
조선총독부 중추원, 『국유지조사서(초)』.

임시재산정리국,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 1911.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越智唯七,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명칭일람』, 草同館, 1917.
『용동궁안산초산면하상리추수책』, 규20558.
『경기안산군양안』, 1900, 15책, 규17654.
『안산군읍지』, 규10717.
『안산초산면하중리추수기』, 규21976.
『민참판댁 안산군옹암면추수기』, 규20843.
『용동궁안산초산면추수책』, 규20807.
『안산소재용안둔추수기』, 규21028.
『안산군옹암동추수기』, 규20844.
『안산동장리추수기』, 규20845.
『안산군초산마유양면소재용동궁매득전답타량양안』, 1875, 1(16), 규18294.

이영호 |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3장 지역사회 변화와 국권회복운동

1. 지역사회 변화의 제양상

1) 개신교 바람, 방죽뫼에 불다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이다. 이 시기는 개항과 근대적인 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와 공식적인 교류가 가능해진 시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 사회에는 '소중화(小中華)'와 '척사위정(斥邪衛正)'이 강고하게 남아 있어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과 사상은 모조리 배척의 대상이던 시대였다. 조선 후기 서학(西學)으로 불리며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천주교는 이미 18세기 후반 신해박해를 시작으로 19세기내내 박해와 수난을 겪어야 했다. 천주교보다 늦은 19세기 중엽 선교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도 초기에는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과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교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20세기 전후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까지 개신교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시흥시는 1914년 이전에는 안산군과 인천부의 일부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시 시흥군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인 셈이다.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은 신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한글 전용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지역사회 변화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1897년 7월 기사에 시흥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띈다. 기사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고양군 채장리 사는 신화춘은 서울 정동 있는 미국 목사 원두우 씨의 교도인데 전도할 차로 안산군 방죽뫼에 간즉 그 동리 사는 교도 홍덕순이 말하기를 금번에 본동 사는 사람들이 동회하려고 동리 인민들에게 통문을 돌리는데 노소간에 발문 중에 모두 자호로 썼는데 유독 나만 관명으로 썼기에 그 발문 중에 내 성명을 뺐더니 동장 윤가가 본군 겸관 남양군에 무소하여 남양군 차사가 나를 잡으러 와서 차사 예채 240냥을 물었노라 한즉 신화춘이 그 동리 사람들에게 남양군 차사가 받아간 차사채 중에 100냥을 물리고 왔는데 이 일이 탄로나 원두우 씨의 교중에서 한성부로 기별한고로 서서에서 신화춘을 잡아 경무청으로 보냈다더라.(『독립신문』 1897년 7월 8일)

> 이 달 8일 제80호 신문에 기재한 고양군 채장리 사는 신화춘은 당초에 미국 목사 원두우 씨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교중에서도 교우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원립 교우로도 세우지 아니한 사람이거늘 이 신화춘이 거짓 교도라 칭하고 안산군 방죽뫼에 가서 탁란질하고 그 동리에서 돈 100냥을 가져온 일로 안산 사는 교우가 그 돈으로 말미암아 교중에 와서 말한즉 교중에서 경무청에 기별하여 신화춘을 잡아 가두고 그 돈 100냥을 받아 보내라고 하였다더라. 교중에는 당초에 고양군 사는 신화춘이 없을뿐더러 매양 신화춘 같은 외인들이 협잡할 마음으로 교를 팔고 외지에서 혹 탁란하는 폐단이 있다 하기로 이러한 폐단은 교중에서 별도로 살펴 엄금한다더라.(『독립신문』 1897년 7월 13일)

원두우(元杜尤)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의 한국식 이름으로 1885년 조선에 들어와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서울시 종로구 신문로)를 설립하였으며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이

기도 하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방죽뫼에는 홍덕순과 같은 교도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보아 교도들이 모이는 교회나 그에 준하는 모임이 있었을 것이다. 안산 방죽뫼라는 지역은 오늘날 시흥지역의 방죽들을 일컫는다. 이 방죽은 다른 말로 호조방죽, 호조벌, 호조들이라고도 하는데, 물왕저수지 아래에 있는 물왕동 월미와 광석동 나븐들로부터 시작해 도창동, 매화동, 안현동, 은행동, 미산동, 하상동, 하중동 새터, 포동까지 연결되는 넓은 들판이다. 오늘날 시흥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는 무지내교회와 미산감리교회가 있다. 시흥지역에 개신교가 전래된 것이 1895년부터라고 하니 개신교가 일찍부터 들어온 셈이다. 무지내동에 소재한 무지내학교는 시흥시 최초의 교회로 1898년 음력 10월 18일에 창립하였다.[99] 그 다음으로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미산감리교회로 1903년 5월 미산리 320번지에 미국인 선교사 떼밍(조이명)과 유인재가 힘을 합쳐 건평 10평 규모의 초가집 형태로 창립하였다.[100] 자료의 미비로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이 시기 방죽뫼에 있던 개신교도가 후에 미산감리교회의 창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신화춘이 전도한다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무청에 체포되었다는 것과 교단에서 별도로 이러한 폐단을 엄금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교우 행세를 하며 외지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개신교의 교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하겠다.

교세의 확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고 있었던 듯하다. 방죽뫼에 사는 교도 홍덕순은 동회 때 통문에서 이름을 빼자 동장이 고소하여 체포하러 온 차사의 예채까지 물어야 했다. 이웃한 인천의 남촌면에서는 "당굿을 하는데 그 동리에 예수교 하는 네 사람의 집에서 굿하는 돈 추렴을 안 냈더니

(99) 리진호, 『무지내교회104년사』, 2001, 46~47쪽.
(100) 시흥문화원, 『신현동지』, 1999, 418쪽.

동리에서 힘이 있는 남촌 영좌 김기보와 왕윤백과 공원 김화보와 최덕신 등이 교를 믿는 네 사람을 굿하는 돈 추렴 안한 일로 못 견디게 만단으로 흉계를 꾸며 집을 부수고 내쫓기로 했다"(101)고 하여 마을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있었다.

2) 갈수록 극심해지는 도적, 도적떼

조선 후기 이래 상품화폐경제가 점차 발달하면서 18세기 말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달하는 장시가 생겨나기에 이른다. 각기 개설일을 달리하는 오일장이 돌아가며 개장을 하자 이제 상품경제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렇듯 상품을 교환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물산과 돈이 모여들면서 장시가 활성화되자 장시를 노리는 부류가 생겨났는데, 바로 도적들이었다. 유통경제의 발달과 함께 이 시기 도적들의 공격대상도 변화해 갔다. 부자들의 집을 공격하는 전통적인 수법에서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교통로를 장악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고, 장터에 모이는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자릿세를 강탈하는 등 대상과 수법도 다양해졌다.

오늘날 시흥지역에는 소재한 장시로 대표적인 것이 신천동에 있던 뱀내장[蛇川場]이다. 우시장으로 유명한 뱀내장은 1·6일장으로 수원, 오산, 안성장과 함께 경기 서남부 일대의 주요 시장으로 손꼽힌다. 이 외에 1842~1843년 편찬된 『경기지』의 「안산읍지」 '장시' 항목을 보면, 초산면의 방축장시(防築場市)와 대월면의 산대장시(山垈場市)가 있는데 두 장시 모두 궁벽한 곳에 있어 특별한 통화가 없고 단지 토산을 교역할 뿐이며 점심때가 되면 장이 파하니 바닷가 외딴 곳의 깨끗한 기풍을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점막' 조에서는 초산면 광석리와 잉화면 월피에 점막이 있는데, 모두 읍치에서 10리 정도 거리에 있었고 바닷가 구석진 곳의 소로(小路)라 행인이 드물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흥지역에서는 뱀내장

(101) 『독립신문』 1897년 6월 5일 잡보.

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신문에서도 뱀내장을 중심으로 한 도적 출몰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기사는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나타난 방축두장과 뱀내장 일대 도적 출몰에 관한 기사들이다.

> 비도 40여 명이 인천부 전반면 오리골 근처 남쪽 길에서 3~5명씩 동행하여 행인 모양으로 점점 방축 머리 점막에 이르러서는 무리를 이루어 작당하여 창과 총을 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장사와 행객들을 잡아 결박하고 재물을 뺏으며 무수히 작경하는 고로 그 근처 마을에 사는 백성들이 모여 그 도적놈들에게 당한 사람들을 구완하려 한즉 도적놈들이 마을 백성들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마을 백성들이 빈손으로 대적하지 못하였더니 날이 저물어 도적놈들이 스스로 흩어졌다는데 인천부윤 강화석 씨가 도적들을 결단코 잡겠다고 순검을 많이 파송하였다더라.(『독립신문』 1897년 11월 18일)

> 도적 10여 명이 사천장(沙川場)을 지나가다 장군(場軍) 2명을 살해하고 도망가 인근 백성들이 주야로 불안해한다.(『황성신문』 1898년 9월 22일)

> 광주군 사는 이순기(李順基)가 인천군 사천장(蛇川場)에서 행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지동(大池洞)을 지나다 쫓아온 화적 두 명에게 칼에 찔리고 행장을 모두 빼앗겨 그 마을 김진사 집에 며칠 머물다 일전에 상경하여 니현 찬화의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한다.(『황성신문』 1899년 2월 16일)

> 인천항 감리의 공보에, 3월 20일 밤 사천장(蛇川場)에 화적당이 돌입하여 백성들을 결박하고 재산을 모두 탈취해 가 백성이 흩어지고 상로가 두절함에 순교를 파견하여 도적을 탐문하나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황성신문』 1901년 4월 2일)

시대를 막론하고 도적 없는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적인 사회질서

와 경제체제가 점차 붕괴하고 새로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 가는 한말의 상황은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였다. 사회경제적인 혼란은 비단 시흥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도적이 횡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관아에서는 민생치안에 힘을 쓰고 싶어도 늘어나는 도적에 비해 순검의 수는 언제나 부족하기만 하였다. 이에 1902년 2월 22일 『황성신문』에서는 "근일 인천부와 부평군에 도적이 극심하여 수십 명씩 작당하여 민가에 돌입하여 인민을 살해하는 일이 많아 민심이 흉흉하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시흥지역에서 도적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일대가 장시였다면 그 다음으로 도적이 많은 곳은 지금의 과림동인 중림(重林)이었다. 이곳은 과거 역원이 설치되었던 교통로였다. 수원 이남지역에서 송도나 평양으로 가려면 중림역, 대야원(소래), 나진(부평), 경명현(부평)을 거쳐 조강(김포)에서 한강을 건넜다고 하니 이 일대에 사람의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말 교육계몽운동이 한창일 때 시흥 일대의 사립학교 4개 중 2개가 중림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재력가, 즉 부호들이 이 일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림이 교통로이면서 부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적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중림 일대 도적 출몰에 관한 기사들이다.

> 인천군 중림(重林) 등지에 적경(賊警)이 매우 극심하여 일반 촌민들이 저마다 목봉(木棒)과 총검(銃劍)을 준비해 놓고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대한매일신보』 1906년 12월 6일)

> 인천항 중림(重林)에 사는 부호 정윤영(鄭允永)의 집에 강도 30여 명이 쳐들어가 가족을 포박하고 가산집물(家産什物)을 모두 빼앗아 갔다.(『대한매일신보』 1906년 12월 28일)

> 인천부 중림(重林)에 사는 정윤영(鄭允永)의 집에 강도 30여 명이 대낮에 총칼을 들

고 들어와 전재(錢財)와 물건들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3일)

3) 중간 수탈에 신음하는 지역민

부세 운영에서 수세대상은 '일토일세(一土一稅)'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정세이며 이외에 부가되는 것이 있다면 무명잡세가 된다. 그러나 전근대 부세 운영 과정에서는 정세 이외에도 각종 명목의 부가세가 있기 마련이어서 어떤 때에는 이런 부가세가 원 세액를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잡세들이 납세 담지자인 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반면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면 각종 무명잡세 이외에도 하나의 세액을 여러 기관에서 수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는 왕실 사무와 재정을 관장하는 궁내부와 내장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기관에서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관해 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을 담당한 농상공부와 내장원, 궁내부 등 각 관청 사이에 수세권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다음의 예는 농상공부에서 수세하던 어염세와 포세를 궁내부가 이관해 가면서 양쪽 기관에서 수세하는 사례이다. 수세권을 서로 가지려는 양 기관들의 갈등 앞에서 수세 대상자인 인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다.

수원 · 남양 · 인천 · 안산 등 각처 어염세를 궁내부에 부속하여 선희궁에서 관리하는 고로 궁감이 표를 주고 수세하여 경강에 도착한즉 선세파원이 선희궁 표는 모른다며 강제로 세를 받고 악형까지 가하여 궁내부에서 농상공부에 수세하는 데 간섭하지 말라고 조회하다.(『독립신문』 1899년 11월 14일)

궁내부 대신 서리 윤정구(尹定求)가 농상공부에 조회하여 인천 관하 각 포세를 선희궁 향수비로 이관하여 징수하고 포에서 나오는 구문을 따로 걷겠다고 하자 농상공부에

서 원래 세 외에 구문을 더 징수하는 것은 일물양세(一物兩稅)이니 금지시켜 백성들의 원망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다.(『황성신문』 1900년 8월 31일)

다음의 사례를 수취 과정에서 중간 수탈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 첫 번째 사례는 지방 단위에서 수세를 담당한 지방 이서배들이 염민들에게 구문을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역도조를 수세하는 군인이 세액을 착복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사례는 1906년 10월 새로운 조세징수체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관직으로 등장한 재무서장이 직권 남용하는 사례이다.

인천 사는 이경천(李敬天) 등이 농상공부에 호소하기를, 이배(吏輩)들이 염민에게 구문을 강제 징수하고 또 염리서(監理署)에서 염민 정남집(鄭南集)을 잡아 가두었으니, 이를 석방시켜 주고 구문은 영원히 혁파해 달라고 하다.(『황성신문』 1900년 9월 5일)

치중대병(輜重隊兵) 이순길(李淳吉) 등 302명이 원수부에 호소하기를, 본대의 편두(牌頭) 이희길(李喜吉)이 자칭 마대(馬隊) 정위라 칭하고 부하를 대동하여 용인군 등지에 추수차 내려가 역도조(驛賭租) 360석을 받아 130석만 상납하였으며, 인천부 소재 역조(驛租) 100여 석을 착복하였고, 개성부 소재 역조(驛租)는 작인에게 5,000냥을 뇌물로 받고, 역전(驛田) 15두락에 삼을 재배하게 하여 매 두락에 360냥씩 착복하고는 본대 병정 302명에게는 1석도 분급치 않으니 그를 엄히 다스려달라고 하다.(『황성신문』 1900년 12월 24일)

안산군 각 면에 있는 역토 소작인 등이 탁지부령에 의해 음력 8월 그믐까지 신청하여 체약서를 선급한 것을 이곳 재무서장 홍모(洪某)가 소작인들에게 내주지 않고 본년도 정해진 수세 외에 더 걷자 민원이 자자하다.(『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6일)

2. 시흥지역의 국권회복운동

1)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계몽운동

1905년 일제의 강제적인 을사조약 체결로 조선의 국권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자 많은 조선인들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국권회복운동에 나섰다. 국권회복운동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운동의 방식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중의 하나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교육계몽운동이었다. 교육계몽운동은 당시 "교육과 식산(殖産)으로 실력을 양성한다"는 자강운동의 취지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교육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립학교를 대거 설립하자 일제는 식민지적 교육정책을 통해 조선의 민족교육을 억압하고 조선인의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06년 8월 27일 '칙령 제44호 보통학교령'을 시작으로 일련의 새로운 교육령을 제정하여 종래의 교육 관제를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학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나아가 1908년 8월 26일에는 '사립학교령'을, 같은 해 9월 1일에는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민족 사학을 통제하고 애국적인 교육내용을 봉쇄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제정함으로써 신규 사립학교 설립은 물론 기존의 모든 사립학교들도 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학교 설립과 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교육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만이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하여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각계각층의 사회세력에 의해 사립학교 설립은 계속 확대되었다.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 민족 신문들도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 유지들로 하여금 학교 설립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1906년 3월 26일에 '광학조칙(廣學詔勅)'이 반포되자, 각 지방에서는 군수가 봉칙(奉勅)의 의미로 학교 설립에 앞장서기도 하고, 지방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908년 현재 설립된 사립학교수는 관공립학교를 포함하여 5,000여 개교, 학생수 20만 명에 달하였다. 1910년 7월 1일 학부 조사에 따르면 '사립학교령' 제정으로 학교 설립이 감소했음에도 그 수가 총 2,082개교에 달해 전국 각지의 학교 설립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102) 경기도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종 학교 139개, 종교 학교 44개로 총 183개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평안남도 417개교, 평안북도 367개교, 황해도 251개교, 함경남도 189개교 다음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서북지방에 종교학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에 설립된 사립학교가 수적으로 우세함을 보여 준다.(103)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경기도 각 군으로 확대되어 1910년 현재 총 37개 군 가운데 30개 군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면 시흥지역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 오늘날 시흥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1900년대에는 인천과 안산지역 일부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시흥시의 군자 · 수암권역은 옛 안산군의 잉화면(仍火面), 초산면(草山面), 마유면(馬遊面), 대월면(大月面) 일대에 해당하며, 소래권역은 인천부의 신현면(新峴面), 전반면(田反面), 황등천면(黃等川面)에 해당한다. 때문에 한말의 시흥군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다.

일찍부터 개항장이 개설되어 근대 문물 도입이 용이했던 인천부는 행정구역상의 지위도 부(府)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관 ·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도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이러한 사정은 1908년 4월 29일 부내면(府內面) 송림동 후원에서 열렸던 관 · 공 · 사립학교 연합운동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운동회에는 관립일어학교, 공립보통학교, 영화(永化) · 인명(仁明) 등 사립학교, 기타 10여 개 사숙(私塾)의 학생 등 총 754명과 영화여학교 학생 137명, 그리고 부윤, 12개 동 대표, 7개 회사 대표, 유지신사 등 116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내외국 관광인이 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104)

(102) 김정해, 「1895~1910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 제11집, 역사교육학회, 1987, 133쪽.
(103) 김상기, 「한말 사립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구국운동」, 『청계사학』 1, 1984, 74~75쪽.
(104)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5일 잡보.

인천부 10개 면 가운데 오늘날 시흥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 3개 면으로 『호구총수』에 기재된 인구 현황을 보면 전체 2,627호 가운데 914호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파악된 사립학교는 황등천면 중림(重林)에 사는 부호(富豪) 정윤영(鄭允永)이 세운 학교였다. 정윤영은 1906년 6월 20일경 총검을 휴대하고 집으로 쳐들어 온 적한(賊漢) 10명으로부터 물건과 돈 · 미곡을 강탈당하자, 자선의무(慈善義務)로 학교를 설립하고 총준자제(聰俊子弟)를 모아 열심히 교육에 힘써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다고 한다.[105] 오늘날 과림동에 설립된 이 학교는 학교 이름이나 규모, 학생수 등을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06년에 이미 시흥시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1908년에 가면 과림동에 또 하나의 학교가 설립되는데, 황등천면 두곡리(杜谷里)에 사는 전우태(全宇泰)가 세운 창흥측량학교(昌興測量學校)였다. 이 학교 학생 류승렬(柳承烈)은 전우태가 자신의 집에 측량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교육하여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하여 학교를 홍보하였다.[106] 이 학교는 측량기술을 가르치는 전문학교라는 점에서 여타의 사립학교와 차이가 있었다.

한편 신현면에는 흥인의숙(興仁義塾)과 진명의숙(進明義塾)이 있었다. 흥인의숙은 1908년에 오늘날 법정동으로 포동에 해당하는 국동(局洞)에 전 주사 엄선영(嚴選永)이 세운 학교였다. 엄선영의 집을 학사(學舍)로 한 이 학교는 학생수가 30여 명에 달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주로 신학문을 가르쳤다.[107] 12월에는 연말시험을 치르고 우등생에게는 공책과 연필을 시상하기도 하였다.[108] 진명의숙은 정3품 정형택(鄭炯澤)이 동생 정우택(鄭禹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설립한 학교였다. 사재를 털어 각종 교과서를 구입하고 열심 교육하여 학도가 30여 명에 달했으며, 정우택은 주간에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노동야학과를

(105)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29일 잡보.
(10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7일 광고.
(107)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12일 잡보.
(108)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9일 잡보.

부설하였다.[109]

이처럼 오늘날 시흥시의 소래권에 해당하는 인천부 황등천면과 신현면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인근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비롯한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시흥시의 수암 · 군자권역인 옛 안산군 초산면, 잉화면, 마유면, 대월면 일대에서는 사립학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1908년 안산군의 목동, 초동들이 7곳에 야학교를 세우자 공립 · 기독(基督) · 양산(楊山) 학교 학생들이 이들을 가르치고, 5월 10일에는 봄운동회를 개최하였다는 신문기사로[110] 보아 구체적인 지명과 학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안산군 일대에도 여러 학교가 설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안산군수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근면하여 학교가 점차 흥왕하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 군수와 같으면 나라의 문명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111]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군수가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을 독려한 만큼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시흥시의 옛 안산군 일대에도 여러 학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안산군에서 사립학교 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와리면(瓦里面)이었다. 오늘날 안산시로 편입된 와리면에는 『대한매일신보』에서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신각동에 신영학교, 원상리에 사립대성학교, 초지리에 초지보통학교 등이 있었다. 이처럼 안산지역에서 유독 와리면에 학교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학교 설립자의 거주지와 관련이 있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력가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시기 학교 설립자들을 보면 대개가 재력과 명망을 갖춘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았다. 가령 신영학교를 세운 함원식(咸元植)은 감찰(監察)을 역임했던 인물로 교사 초빙, 학교 건물 신축 등 각종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또한 초지보통학교를 세운 전 주사 이민선(李敏善)도 학교를 설립하고 3년 동안 제반 경비를 혼자서 담당했다.[112]

(109)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7일 학계.
(110)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2일 잡보.
(1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5일 잡보.
(112)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일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16일 학계.

이러한 사실은 안산군 6개 면 중에서 와리면에 지역 유지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산군양안』에 나타난 거주형태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거주형태 가운데 와가(瓦家)의 분포를 보면, 군내면 76호, 와리면 164호, 잉화면 130호, 대월면 40호, 마유면 64호, 초산면 78호이다. 관청 소재지인 군내면을 제외하면 와리면과 잉화면에 기와집이 집중되어 있어, 이 일대가 반촌(班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촌인 와리면에 거주하는 지역 유지들이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말 시흥지역에서는 군자 · 수암권인 안산지역보다 소래권역인 인천지역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이들 학교 설립자들은 황등천면의 부호 정윤영, 신현면의 전 주사 엄선영이나 정3품 정형택 등과 같이 재력과 관력을 가진 지역의 유지들이었다. 한편 자료가 소략하여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안산군 와리면에 소재한 신영학교의 예에서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사립학교의 교과운영은 보통 1895년 7월에 제정된 '소학교령'을 따랐는데, 교과목으로는 영어, 한문, 지리, 역사, 산술, 성리학, 화학, 독서, 작문, 천문학 등과 체육, 군사훈련, 미술, 음악, 토론, 연주, 여행 등이 있었고, 이들 교과목 중에서 일부를 학교 형편에 따라 편성하였다.[113] 교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학교에서는 한문과 같은 일부 전통 교육과 함께 외래의 교과목 및 교육과정을 수용함으로써 근대적인 교육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학생이 40여 명이었던 신영학교에서도 교과과정으로 국문, 한문, 산술, 체조 등을 두고 있어 근대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114] 따라서 시흥지역의 다른 학교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교과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의 각성과 근대화를 역설하는 교육계몽운동이 시흥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13) 김정해, 「1895~1910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역사교육논집』 제11집, 역사교육학회, 1987, 148~149쪽.
(114)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2) 의병운동의 전개와 양상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이후 군대를 해산하고 일본 헌병이 한국 경찰권을 접수하였으며,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박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지법, 보안법, 출판법 등 각종 탄압법을 제정하여 식민지 지배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권침탈이 가중되자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국권회복운동은 당시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민족운동이었던 만큼 지역과 계층을 망라한 거국적인 반일운동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살펴본 학교설립을 통한 교육계몽운동이었다면, 국권회복운동의 또 하나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의병운동이었다. 의병들의 희생은 비록 식민지화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일제가 식민지 지배정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의병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는 1907년 8월 군대해산이었다. 일제의 군대해산 조치가 발표되자 이를 거부한 많은 조선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1909년 9월 남한대토벌 직전까지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해산당한 군인들이 의병대열에 동참하면서 의병진의 병력은 강화되었고, 소규모 유격전을 구사하는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다. 1907년 9월 "안산, 양천, 부평, 과천, 시흥, 김포, 통진 등지에는 의병은 없으나 적한(賊漢)이 빈번하다"[115]는 신문기사처럼 경기 서부지역 일대에도 1907년 중반까지는 의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안산의 마유면, 대월면, 초산면, 잉화면과 인천의 황등천면, 신현면, 전반면 지역이 오늘날 시흥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신문기사에 나타난 시흥은 현재의 시흥시와 무관한 지역이다.

이 시기 의병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907년 후반기부터 1908년에 걸쳐 일제의

(115)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6일 잡보.

피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가령 1907년 7월부터 1908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의병에게 피해 입은 일진회원수는 경기도에서만 사살자 9,260명, 부상자 140명, 불탄 가옥수 총 360호, 재산피해 5만 501원에 달했다.[116] 그러자 일진회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위단을 구성하여 의병 토벌에 앞장섰다. 자위단은 의병에 대항하기 위해 일진회를 중심으로 각 마을에 조직된 단체로, 일본 군대와 헌병대의 보호와 감독을 받았다. 일진회에서는 자위단조직원호회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자위단 망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일진회 모든 간부들을 11개 부로 나누어 1907년 11월부터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안산을 비롯한 시흥, 남양, 안성, 진위 일대에는 제6부를 담당한 윤시병(尹始炳) 등 10명이 파견되었다.[117]

의병활동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일본인과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파들이었으며, 일제 식민지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의 행정기관과 탄압기구,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신문과 한말 의병전쟁 자료를 묶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10월 11일에는 의병 20여 명이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 목감동인 안산군 초산면 논곡리(論谷里)에 돌입하여 민가에 있던 엽총 3정과 육혈포 1병(柄)을 가져가고 이 지역에 사는 일본인을 응징하였다.[118] 당시 논곡리의 의병 사건을 공격 대상이 되었던 일본인의 진술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右, 피해 일본인을 일컬음)는 한국 경기도 안산군 논곡리 일어원증학교(日語掾證學校) 교사로 근무하는 일방 매약상(賣藥商)을 경영하고 있었던바 본년 10월 11일 오전 5시경 비상히 소요하여 눈을 떠보니 이미 적 20명은 문을 부수고 있었고 손에 발도(拔刀)를 번쩍이고 총구를 들이대며 양인(兩人)을 구타 포승하여 같은 리에 사는 이주사(李主事)가 정박(庭迫)한 후 불계전(不計前)에 끌고 가 꼼짝 못하게 묶어 놓고 가내를

(116)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16일 잡보.
(11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9일 잡보.
(118)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23일 잡보.

> 수색하여 그럼직한 재물은 모두 약탈하고 또 부근의 한인(韓人) 부자(富者)를 모아 구타 협박하고 금품 총포를 강탈하고 오전 12시경 돌아가면서 아등(我等)을 죽어라고 구타하므로 같은 학교 교감 이훈직(李勳稙)과 부근 한인들이 일본인의 생명만은 조명(助命)하여 달라고 빌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아등(我等)을 끌고 1리 정도 산로(山路)를 가다가 부근 도계촌(桃季村)에 이르러 어느 집 마당에 앉으라고 명했다. 잠시 후 우리가 살던 논곡리로부터 한인 3인이 서장(書狀)을 가지고 와서 만약 일본인인 이 교사를 살해하면 일본 병사가 와서 논곡리의 집을 소각하고 사람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고 담판하여 금(金) 40원을 주기로 하고 조명(助命)을 빌었더니 이에 응하였다. 따라서 아등(我等)은 구사일생으로 오후 3시경 소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용산으로 피난하였다.(119)

이 인용문은 일본인의 진술서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글이지만, 이를 통해 의병들의 공격 대상과 목적을 알 수 있다. 인용문에 나타난 일본인은 36세인 고강(高岡)과 32세의 삼하사방치(森下四方治)란 인물로 일어학교 교사일 뿐 아니라 약재상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경기지역에는 약재상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한 일본인이 많았으며, 이들은 의병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11월에는 과천군 잠실에 사는 일본인 약상(藥商)이 의병 30여 명의 습격을 받아 살해되기도 하였다.(120) 일본인뿐 아니라 한인 부자들도 의병들의 공격 대상이 되곤 하였는데, 이는 의병 활동에 필요한 군자금과 군수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이 일대 부자들에게 '금품과 총포를 강탈' 했다는 것으로 보아 부자들이 스스로 무기를 갖추고 의병들의 공격을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친일 성향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의병들이 지나간 후에는 여지없이 일본의 보복이 뒤따랐다. 인용문에서

(1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권8, 의병편 1, 1979.
(12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8일 잡보.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을 살해하면 일본 병사가 와서 논곡리의 집을 소각하고 사람들을 살해할 것이니 풀어주라고 하자 의병들이 일본인을 죽이지 않고 풀어 주었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안산군 논곡리는 60여 호나 되는 큰 마을로 의병과 일본 병사가 서로 충돌하려는 것을 동민 이훈직이 교섭하여 그만두게 하였다"고[121] 게재하고 있는데, 이 이훈직이란 사람이 인용문에 나오는 일어학교 교감이었다. 이훈직의 교섭으로 다행히 논곡리는 마을이 소각되고 지역 주민이 살해당하는 보복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논곡리 마을 60여 호가 일본병의 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위기 상황이었지만, 안산군수 이석재(李錫宰)는 의병과 일본병의 소요를 피해 군수직을 버리고 상경해 버렸다.[122]

이 시기 군수가 의병의 습격이나 일본의 보복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고 무력하게 대응하거나, 소요를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의병들의 공격 대상도 일본인이나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을 비호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관청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1907년 11월 7일에는 와리면 무곡리(無谷里)에 들어온 의병 30여 명이 군수의 유무를 살핀 후 관아에 들어가 군수를 결박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장차 인천항으로 갈 것인데 군수(軍需)가 부족하므로 부민(富民)의 이름을 모두 적어 내라"[123]고 하여 군수로부터 부호들의 명단을 받아내기까지 하였다. 1907년 12월에도 의병 수십 명이 안산군 관아에 총을 쏘며 들어와 군수를 위협하며 군기(軍器)를 강청(强請)하였다.[124]

안산군 관아를 돌입하여 군수를 위협했던 의병들은 안산분파소를 습격하여 분파소를 부수고 총기를 빼앗아 갔다.[125] 이 시기 안산군에는 경기경무서 직속으로 안산분파소가 있었으며 순검 4명이 배치되어 있었다.[126] 그 후 안산분파소는 1907

(12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31일 잡보.
(12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8일 잡보.
(123)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3일 잡보.
(124)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7일 잡보.
(125)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7일 잡보.
(126) 內部令 第12號 「各道警務署 · 分署 · 分派所 警察官吏 配置定員」, 1906년 10월 1일, 『한말근대법령집』 Ⅴ.

년 12월 관할지구와 경찰직책의 명칭 개정에 따라 인천경찰서 관할로 변경되었으며 명칭도 안산순사주재소로 변경되었다. 당시 분파소나 순사주재소, 헌병분견소 등은 의병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이는 이 기관들이 항일 의병을 진압하고 반일적인 조선인을 탄압하는 탄압기구인 동시에 일제 식민지정책을 수행하는 물리적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병들과 이들 병력간의 대치와 교전도 불가피하였다. 1907년 10월 12일에는 안산군에 파견한 일본 수비대 하사 척후병과 의병 20명이 두 시간 동안 교전하다가 의병들이 퇴각하였는데,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그로부터 이틀 후인 14일에도 안양장 정거장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안산의 정시촌 등에서 의병과 일본병사가 교전하여 한인 8명이 피해를 입었고 의병들은 흩어져 도망갔다.(127)

한편 군수품 보급은 친일분자 처단과 함께 의병들의 주요 활동영역이었다. 물적 기반인 군수품의 확보 여부가 의병 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군수품 보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주로 친일부호나 말단행정기구인 면 · 이장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면장과 이장이 식민지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제의 대리자로 비춰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지방세 납부 고지와 수납을 이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식민지 재정에 사용될 세금을 회수하여 국권회복운동에 쓰겠다는 명분도 작용하였다. 이 시기 세금 수납을 담당한 우편취급소가 의병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 본월(1909년 4월 : 인용자 주) 25일 오전 11시 폭도 8명(한복으로 韓銃 3, 환도 1 휴대)이 안산군 잉화면 능곡리(陵谷里) 이장 이봉구(李鳳求) 택(宅)에 침입 동인(同人)을 난타 협박한 후 금 1원 90전을 약탈한 후 남방으로 도주하였다는 보고를 접하고 안산군 주재순사가 정찰차 향하였으나 종적을 득(得)치 못하였다.(128)

(12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6일 잡보.
(1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권14, 1985.

앞의 인용문은 오늘날 능곡동에 해당하는 능곡리 이장 이봉구가 의병들에게 습격당한 사건으로, 경기경찰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다. 전년도인 1908년 9월 5일에도 지금의 안산지역인 성곶면(聲串面) 이리(二里) 이장 한원배(韓元培) 집에 돌입한 의병 수십 명이 신화 20원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당시 의병투쟁이 격렬해지고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갈수록 일제의 의병 토벌과 색출도 극렬해져 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의병과 무관한 지역민들까지도 '의병 색출'이라는 명목하게 큰 피해를 입었다. 1908년 3월 18일 인천경찰서장의 보고에 따르면, "안산군 인화면 부근에 폭도가 출몰한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를 위해 해당 지방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논곡리에서 적 1명을 체포한 것을 단서로 하여 동류(同類) 5명을 부근 촌락에서 체포 인치(引致)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산군 인화면(仁化面) 부근에 폭도가 출몰한다는 정보가 있다. 따라서 지난 15일 경부 1명에게 순사 4명을 부쳐 수색을 나선바 논곡리에서 부호에 대하여 금원(金員)의 제공을 강박하였던 적 1명을 체포하고 그 자공(自供)에 의해 여당(與黨)의 잠복지를 알고 인화면 및 부근에서 적 5명을 체포 인치하였다. 체포한 폭도의 성명은 류성집(柳聖集), 박성삼(朴成三), 오중로(吳重魯), 곽창운(郭昌云), 한경춘(韓敬春), 김윤표(金允標)이다.[128]

라고 하여 인화면 일대에서 군자금 조달 활동을 벌이던 의병 유성집 외 5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의병과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1909년 10월 14일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일본 관비 유학생 윤거현(尹擧鉉)이 금년 봄 졸업하고 귀국했다가 유행병으로 안산군 향제에 내려갔는데, 안산군에 주둔한 일본 헌병이 윤씨를 의병으로 오인하여 포살(砲殺)한고로 헌병사령부에서 헌병 1명을 보내 조사 중이다"고 하여 무고하게 의병으로 오인받아 죽임을

(12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권9, 의병편 2, 1980.

당하기도 하였다.

"한복을 입은 폭도들이 한총(韓銃)이나 환도를 휴대했다"는 앞의 보고 내용처럼 군대해산 이후 무기가 보강되었다고는 하나 의병들이 보유한 화력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의병들은 취약한 전력에 적합한 소규모 유격활동으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결국 일제는 조선 식민지화에 최대 걸림돌인 의병들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 1909년 9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대대적인 남한대토벌을 감행하였다.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의 총공세에 대다수 의병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체포되었다. 1910년에 들어 의병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의병들은 간도와 연해주 일대로 활동 무대를 옮겨 독립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차선혜 | 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2부 일제시기 정치 · 경제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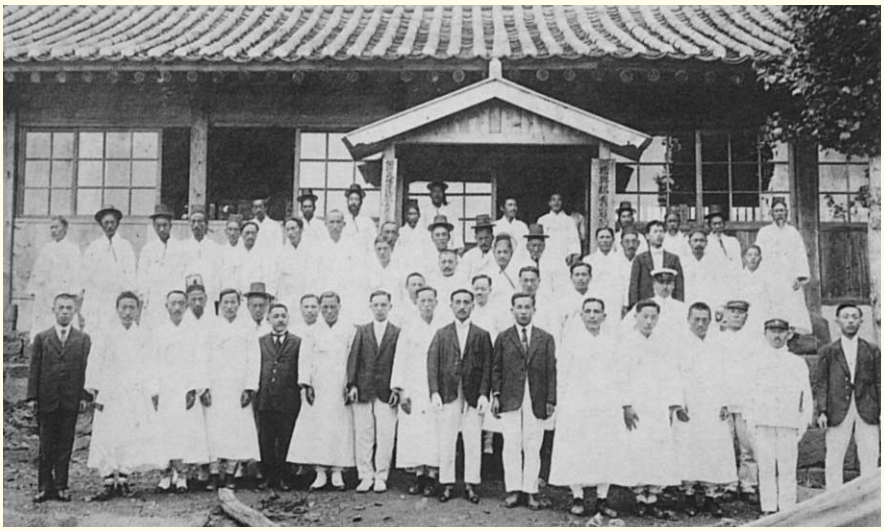
1장 지방지배체제의 변화
2장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3장 임야조사사업과 삼림조합
4장 농업정책과 농촌경제의 변화
5장 군자 · 소래염전의 축조와 운영
6장 수인선의 부설과 운영

1장 지방지배체제의 변화

1. 식민지 지방제도 개편과 '면제' 실시

일제는 조선을 병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관제'와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등의 법령을 발포함으로써 지배기구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발포함으로써 지방지배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곧이어 10월에는 '도, 부, 군의 명칭과 관할구역', '면에 관한 규정' 등의 총독부령을 발포하고, 이어 1911년 2월에는 도, 부, 군에 자문기관으로 참사(參事)를 두는 법령을 발포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과도기적인 지방지배기구, 즉 지방비-부 · 군-면의 3단계 행정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루어지는 조처로써 주목해야 할 사실은 먼저 통감부시기에는 대체로 개항장이 부로 지정되었던 데에 비해, 이번에는 일본 이사청(理事廳)과 거류민단(居留民團)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를 바꾼 점이다. 그러나 아직 도시지역으로서의 부와 일반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군은 호칭의 차이가 있을 뿐 지위와 성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부와 군은 모두 도장관(道長官)의 감독 아래 있는 지방행정구역이며, 그 관내에 면을 두고 있었다. 다만 군수는 대개 조선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일본인 중심 거주지역인 부의 부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달랐다.



▲ **안산군 관아를 개수한 수암면사무소** 면사무소를 배경으로 한 관내 유지들의 기념사진이다.

다음으로 말단 행정기구로서 면의 지위를 확정하였다. 지방에 따라 달리 불리던 것을 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장을 두어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였으며, 면사무소를 설치하여 종래 면장의 거주지에서 처리되던 사무를 처리케 하였다. 그리고 도에 3인, 부와 군에 각 2인씩의 참사를 두고, 부 · 군에서는 이들을 소집하여 참사자문회(參事諮問會)라는 것을 개최하도록 하였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자문기구였으나 실제로는 임명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지방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1917년에 시행되는 면제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을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총독이 지정하는 면은 상담역(相談役)을 두고 부채를 얻을 수 있으며, 셋째 동리장을 폐지하여 새로 구장(區長)을 두고, 넷째 호별할(戶別割), 지세할(地稅割), 그 밖의 특별부과금,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섯째 재무수속을 상세히 규정하게 하고, 여섯째 면조합(面組合)을 설치하여 일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면을 사업의 주체로 규정하면서도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면의 조례제정

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면장이 공리(公吏)가 아니고 대우관리(판임관 대우)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촌제(町村制)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조선인에게 조금의 자치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일본 내 법제국과 총독부 간 절충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여하튼 총독이 지정하는 면(지정면)에 한해 상담역을 두고 기채권(起債權)을 허용함으로써,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면(보통면)보다는 훨씬 많은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다. 상담역은 도장관이 면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다. 그러나 면의 상담역은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면장의 자문사항 이외의 것은 건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단순한 자문직이었으며, 그 자문내용도 면장이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뿐인 기관이었다.

지방의 동리장은 동리의 막일을 처리하는 일꾼으로 비하되어 동내의 유력자는 그 일을 맡는 것을 꺼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구장으로 고치고, 군수가 동리 내의 주민 중에서 임명하되 무급으로 하였다. 이는 동리재산을 면 소유로 하고 면비를 절약한다는 재정적 관점과도 연결된 문제였으며, 나아가 동리의 행정기능을 구장으로 통합하고 구장을 면이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동리 단위의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수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요컨대 면제의 실시는 지방말단 행정을 면으로 일원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대의 행정제도 개편을 통하여 지방비-부 · 군-면이라는 3단계 행정체계를 구성하여 중앙집권적인 지방지배제도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전통적인 지방행정의 중핵인 군은 그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식민지적인 지방관리로 군수를 두는 한편, 부의 운영에서는 일본인 중심지역으로 부의 구역을 축소함으로써 조선인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어 말단 행정조직을 면으로 통합하는 조처를 취하였으나, 이것도 지정면(指定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각급 행정단위의 무단 통폐합 조처로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면제 실시 이후 군의 행정적 지위는 다음과 같았다. 일제는 도-면의 2급제를 지향하고 있었기에 군을 중간적이고 과도적인 존재로만 규정하였다. 일제하에서 군은 군 고유의 사무, 즉 독자적인 공공사무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지 못했다. 일제는 군 고유의 행정상 · 단체상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도와 면 사이의 행정을 중개하고 면의 행정을 관리 · 감독하는 권한만을 가진 중간적인 행정기관이자 2차적 행정기구로 한정되었다.

1919년 3 · 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은 '신시정' 5대정책의 하나로 지방제도의 개혁을 내걸고 '지방관관제'를 개정하였다. 1920년에는 부제 및 면제를 개정하고, '조선도지방비령' 및 '조선학교비령'을 제정하였다. 1920년 시행된 지방제도 개정의 요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제와 면제의 개정으로는 첫째 부의 자문기관인 협의회원을 임명제에서 민선으로 고치며, 둘째 지정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자문기관으로 협의회를 두는데, 지정면에서는 협의회원을 공선하고, 보통면에서는 군수 또는 도사가 그를 임명하며, 셋째 협의회의 자문사항은 법정으로 하고 기타 사항은 대체로 일본 내 시정촌회의 결의 사항에 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부와 면에 이전보다 진전된 형태의 자문기관을 둔다는 것이었다.

읍 · 면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면제에서 지정면을 읍으로 하고, 보통면을 면으로 하며, 둘째 읍 · 면을 모두 법인으로 하여 법령에 따라 공공사무와 귀속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셋째 이에 따라 읍면은 규칙제정권을 가지며, 넷째 읍회는 부회와 같은 정도의 의결권을 가지는 반면, 면협의회는 종래와 같은 자문기관에 그치게 하였으나, 면협의회의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차이가 있으며, 다섯째 부와 마찬가지로 감독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1930년 지방자치 실시의 대안으로 제2차 지방제도 개정이 실행되었는데, 그 핵심은 부 · 읍 · 면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 도회와 면협의회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이나 의결권에 많은 제약을 두었고, 부회와 읍회에 대해서도 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결정적인 제약을 두고 있었지만, 선거권을 기존의 조건에 그대로 묶어 둔 채(납세액 5원)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전환한 것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조선인 선거권자를 일제의 지배조직 속에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 **조현강습소 졸업사진** 뒤에 '조현부락연맹' 간판이 보인다.

1937년을 기점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조선의 전 사회가 이른바 '전시하 총동원체제'로 이행되었고 지방지배체제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이 시기가 되면 지방행정조직은 모두 전시통제조직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거나 그 통제 아래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지배에 있어 전시통제의 효율성이 가장 강조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1938년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조직을 확충해 나갔는데, 그 조직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연맹-도연맹-부 · 군 · 도 · 읍면연맹-정(町)동리부락연맹, 각종 연맹-애국반이라는 단일조직계선을 취하고 있었다. 조직의 뼈대는 역시 지방행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에 누락될 부분을 염려하여 각종 연맹이라는 것을 두고, 관공서,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대상점 등의 소속인원으로 그것을 구성하게 하였다. 조직의 가장 하부를 이루고 있던 애국반은 10호를 단위로 조직하였는데, 이전 농촌진흥회의 세포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던 5인조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 많았다.

1940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결성하였는데, 이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

맹보다 전체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었다. 규약 자체에서도 "조선 내의 전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는 이른바 '국민조직' 임을 명기하여 강제성을 강화하였고, 총독이 총재, 정무총감이 부총재가 됨으로써 총독부의 행정조직과 일원적인 조직임을 명확히 하였다. 말하자면 총독부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의 활동과 조직이 하나가 된 것이었다.[1]

이상이 식민지기 조선에 실시된 지방행정제도의 대강이다. 군은 이전 시기 군 · 현제하의 군에 비하면 행정제도로서 그 위상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었고, 군 대신에 면을 지방행정제도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하겠다.

2. 군 · 면 폐합과 군 · 면 구역의 획정

면제는 서구적 관료 · 행정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다. 면제의 서구적 관료행정제도로서의 내용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면 담당구역의 획정과 서구적 문서행정제도의 도입 그리고 행정 담당자의 성격 변화의 고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면을 통폐합하여 새로 면의 구역을 획정하는 작업과 서구적 문서행정제도를 면행정에 도입하는 작업은 면을 제도로 확립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1917년 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인 '한일병합' 직후에 총독부는 이미 면구역의 통폐합 작업과 문서행정의 도입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군 · 면 폐합을 통한 행정구획의 확정과정을 통해 일제시기 시흥군의 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가 발포되었으나, 경성부에 군 · 면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도 · 부 · 군 · 면 간의 경계 변

(1) 일제시기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윤해동, 『지배와 자치 – 식민지기 촌락의 3국면 구조』, 역사비평사, 2006 참조.

경이 있었을 뿐, 근본적인 구획 변경은 없었다. 1912년 현재 시흥군, 과천군, 안산군의 행정구역 명칭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시흥군, 과천군, 안산군 행정구역 명칭 일람[2] (1912년 현재)

군의 명칭	면의 명칭	치소
시흥군(6면 22리)	하북면(下北面), 동면(東面), 군내면(郡內面), 남면(南面), 서면(西面),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영등포리(永登浦里)
과천군(7면 55리)	군내면(郡內面), 동면(東面), 상서면(上西面), 하서면(下西面), 남면(南面),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군내면(郡內面) 관문동(官門洞)
안산군(9면 87리)	군내면(郡內面), 초산면(草山面), 잉화면(仍化面), 마유면(馬遊面), 대월면(大月面), 와리면(瓦里面), 성곶면(聲串面), 북방면(北方面), 월곡면(月谷面)	군내면(郡內面) 수암리(秀岩里)

본격적인 군 · 면의 폐합은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 관할구역 및 부 · 군의 명칭 · 위치 관할구역' 에 의하여 단행되었다. 총독부령 제111호는 1913년 12월 29일 발포되어 1914년 3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 총독부령을 바탕으로 각 도에서는 도령(道令)과 고시(告示)에 의거하여 면과 동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수행하였다.

1914년 3월의 경계 획정으로 시흥군은 시흥군, 과천군 일원과 안산군(月谷面, 北方面, 聲串面 제외)의 대부분을 흡수 · 통합하게 되었으며, 북면 영등포리에 군청을 두게 되었다.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삼국시대 이래 1,400여 년간 독립된 행정단위로 내려오던 시흥(금천), 안산, 과천 3개의 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된 것이다. 또한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해 안산군으로 편입되었던 월곡, 북방, 성곶의 3개 면은 1914년 다시 수원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3월 총독부령 제111호로 폐합 · 개편된 시흥군의 행정구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 조선총독부,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시흥군, 『시흥군지』 하, 1988, 83~84쪽에서 재인용.

〈표 2〉 시흥군 행정구역 명칭 일람[3] (1914년 현재)

면의 명칭	행정동리의 명칭	구 동리의 명칭
북면 (北面, 11리)	도림리(道林里)	시흥군 상북면 사돈리(沙頓里), 도야미리(道也味里), 원지목리(遠之牧里)
	구로리(九老里)	시흥군 상북면 구노1리(九老一里), 구노2리(九老二里)
	당산리(堂山里)	시흥군 상북면 양진리(楊津里), 당산리(堂山里)
	양평리(楊坪里)	시흥군 상북면 양평리(楊坪里)
	신길리(新吉里)	시흥군 하북면 신길리(新吉里), 상방하관리(上方下串里)
	번대방리(番大方里)	시흥군 하북면 번대방리(番大方里), 우와피리(牛臥皮里)
	▲영등포리(永登浦里)	시흥군 하북면 하방하관리(下方下串里), 영등포리(永登浦里), 중종리(重宗里)
	노량진리(鷺梁津里)	과천군 하북면 신촌분리(新村分里), 옹점리(瓮店里), 옹막리(瓮幕里), 고사리(高寺里)
	본동리(本洞里)	과천군 하북면 본동(本洞), 상가차산리(上加次山里), 하가차산리(下加次山里)
	흑석리(黑石里)	과천군 하북면 흑석리(黑石里)
	동작리(銅雀里)	과천군 상북면 동작리(銅雀里), 포촌리(浦村里)
신동면 (新東面, 8리)	잠실리(蠶室里)	과천군 상북면 잠실리(蠶室里), 사평리(沙坪里)
	반포리(盤浦里)	과천군 상북면 상반포리(上盤浦里), 하반포리(下盤浦里)
	방배리(方背里)	과천군 상북면 방배동(方背洞)
	사당리(舍堂里)	과천군 상북면 사당리(舍堂里)
	양재리(良才里)	과천군 동면 양재동(良才洞)
	신원리(新院里)	과천군 동면 신원동(新院洞)
	▲우면리(牛眠里)	과천군 동면 우면동(牛眠洞)
	서초리(瑞草里)	과천군 동면 서초리(瑞草里), 명달리(明達里)
동면 (東面, 7리)	독산리(禿山里)	시흥군 동면 독산리(禿山里), 문교리(文橋里)
	신림리(新林里)	시흥군 동면 서원리(書院里), 신림리(新林里), 난곡리(蘭谷里)
	상도리(上道里)	시흥군 동면 상도리(上道里), 성도화리(成道化里)
	봉천리(奉天里)	시흥군 동면 봉천리(奉天里), 과천군 하북면 본동리(本洞里) 일부
	가리봉리(加里峰里)	시흥군 동면 가리봉리(加里峰里)
	▲시흥리(始興里)	시흥군 군내면 군내동(郡內洞)
	안양리(安養里)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安養里)
서면 (西面, 8리)	일직리(日直里)	시흥군 서면 일직리(日直里), 자경리(自京里)
	▲소하리(所下里)	시흥군 서면 소하리(所下里), 가리대리(加里大里)
	철산리(鐵山里)	시흥군 서면 이성리(已省里), 철산리(鐵山里) 일부
	하안리(下安里)	시흥군 서면 하안리(下安里), 율전리(栗田里)
	박달리(博達里)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博達里)

(3) 越智唯七, 『新舊 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草風館, 1917, 1~66쪽. ▲는 면 소재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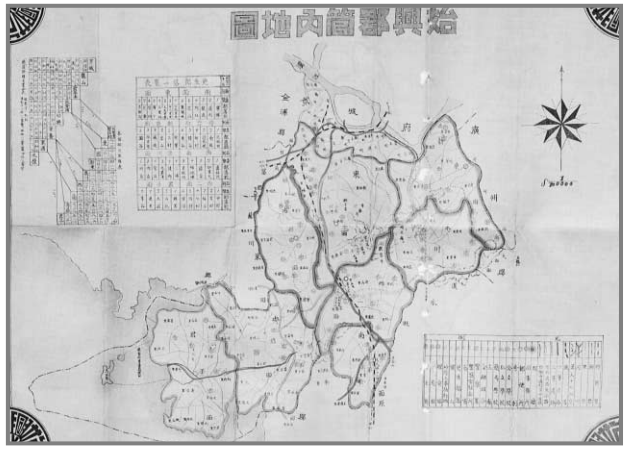
면의 명칭	행정동리의 명칭	구 동리의 명칭
서면 (西面, 8리)	광명리(光明里)	시흥군 남면 광화대리(廣火大里), 광명리(光明里)
	노온사리(老溫寺里)	시흥군 남면 노온사리(老溫寺里), 아방리(阿方里)
	가학리(駕鶴里)	시흥군 남면 유등리(柳等里), 가학리(駕鶴里), 노온곡리(老溫谷里)
과천면 (果川面, 6리)	▲관문리(官門里)	과천군 군내면 관문동(官門洞), 내점동(內店洞)
	문원리(文原里)	과천군 군내면 외점동(外店洞), 문원동(文原洞), 교동(校洞)
	갈현리(葛峴里)	과천군 군내면 갈현동(葛峴洞), 가일동(加日洞)
	하 리(下 里)	과천군 군내면 하리동(下里洞)
	초계리(草溪里)	과천군 군내면 초계동(草界洞)
	주암리(注岩里)	과천군 동면 주암리(注岩里)
서이면 (西二面, 5리)	일동리(一洞里)	과천군 상서면 일동(一洞), 이동(二洞)
	이동리(二洞里)	과천군 하서면 일동(一洞), 이동(二洞)
	비산리(飛山里)	과천군 상서면 내비산리(內飛山里), 외비산리(外飛山里)
	▲호계리(虎溪里)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道陽里), 호계동(虎溪洞)
	안양리(安養里)	과천군 하서면 발사리(撥舍里), 석장리(石墻里), 안양리(安養里), 후두미리(後頭尾里), 장내리(墻內里)
남면 (南面, 5리)	산본리(山本里)	과천군 남면 산본동(山本洞)
	금정리(衿井里)	과천군 남면 금정리(衿井里), 괴곡리(槐谷里)
	▲당 리(堂 里)	과천군 남면 당리(堂里), 용호동(龍虎洞)
	당정리(堂井里)	과천군 남면 봉성리(鳳城里)
	부곡리(富谷里)	과천군 남면 부곡리(富谷里), 장천리(章千里)
수암면 (秀岩面, 19리)	수암리(秀岩里)	안산군 군내면 수암리(秀岩里), 서정리(西亭里)
	장상리(章上里)	안산군 군내면 장상리(章上里), 동곡리(東谷里)
	부곡리(釜谷里)	안산군 군내면 부곡리(釜谷里), 신리(新里)
	양상리(楊上里)	안산군 군내면 양상리(楊上里), 양하리(楊下里)
	성포리(聲浦里)	안산군 군내면 성포리(聲浦里), 점성리(占星里)
	장하리(章下里)	안산군 군내면 장하리(章下里)
	능곡리(陵谷里)	안산군 인화면 북곡리(北谷里), 능곡리(陵谷里)
	▲화정리(花井里)	안산군 인화면 광곡리(廣谷里), 화정리(花井里)
	와 리(瓦 里)	안산군 인화면 와상리(瓦上里), 와하리(瓦下里)
	고잔리(古棧里)	안산군 인화면 고잔리(古棧里)
	월피리(月陂里)	안산군 인화면 월입피(月入陂)
	조남리(鳥南里)	안산군 초산면 조남리(鳥南里), 제청리(祭廳里)
	목감리(牧甘里)	안산군 초산면 목감리(牧甘里), 율포리(栗浦里)
	물왕리(物旺里)	안산군 초산면 물왕리(物旺里), 상직리(上職里)
	산현리(山峴里)	안산군 초산면 산현리(山峴里), 궤곡리(櫃谷里)
	하상리(下上里)	안산군 초산면 중직리(中職里), 하상리(下上里)

면의 명칭	행정동리의 명칭	구 동리의 명칭
수암면 (秀岩面, 19리)	광석리(廣石里)	안산군 초산면 광석리(廣石里), 하하리(下下里)
	논곡리(論谷里)	안산군 초산면 논곡리(論谷里)
	하중리(下中里)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下中里)
군자면 (君子面, 14리)	장현리(長峴里)	안산군 마유면 조현리(鳥峴里), 장상리(長上里)
	장곡리(長谷里)	안산군 마유면 장하리(長下里), 조촌리(鳥村里), 응곡리(鷹谷里)
	월곶리(月串里)	안산군 마유면 월동리(月東里), 월서리(月西里)
	정왕리(正往里)	안산군 마유면 정왕리(正往里), 조이리(鳥耳里)
	죽율리(竹栗里)	안산군 마유면 죽율리(竹栗里)
	군자리(君子里)	안산군 마유면 구정리(九井里), 산북리(山北里)
	▲거모리(去毛里)	안산군 대월면 거모포(去毛浦), 석곡동(石谷洞)
	선부리(仙府里)	안산군 대월면 선부동(仙府洞), 달산리(達山里)
	초지리(草芝里)	안산군 와리면 원당포(元堂浦), 초지동(草芝洞)
	원곡리(元谷里)	안산군 와리면 모곡리(茅谷里), 원상리(元上里)
	신길리(新吉里)	안산군 와리면 선곡리(船谷里), 신각동(新角洞), 성내리(城內里), 적길리(赤吉里)
	성곡리(城谷里)	안산군 와리면 무곡동(茂谷洞), 성두리(城頭里)
	목내리(木內里)	안산군 와리면 이목동(梨木洞), 능산리(陵山里)
	원시리(元時里)	안산군 와리면 원하리(元下里), 시우동(時雨洞)

1914년 시흥군의 행정구역 폐합은 시흥군, 과천군, 안산군의 3개 군을 흡수 · 통합하여 9개 면 83개 행정동리로 재편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래 시흥, 과천, 안산 3개 군의 행정구역수는 22개 면 162개 리였으나, 1914년의 군 · 면 폐합 조치로 9개 면 83개 리가 되어 양적으로는 축소되었다.

새로 편제된 북면은 시흥군의 상북면과 하북면 그리고 과천군의 하북면 및 상북면의 동작리를 통합한 11개 동리로 구성되었다. 새로 편성된 9개 면 가운데에서 시흥군의 일부와 과천군의 일부를 통합하여 편성된 북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의 군 경계 안에서 2~3개의 면을 통합하여 재편되었다.

신동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의 4개 면은 모두 과천군의 기존 면을 통합하여 편성되었다. 옛 과천군 상북면과 동면의 일부를 통합하여 신동면으로, 군내면과 동면의 일부를 통합하여 과천면으로, 상서면과 하서면을 통합하여 서이면으로, 남면은 그대로 남면으로 편제되었다.



〈그림 1〉 시흥군 관내지도(1936)

동면과 서면의 2개 면은 시흥군의 기존 면을 통합하여 편성되었다. 동면은 옛 시흥군의 동면과 군내면의 일부를 통합하여 편성되었으며, 서면은 옛 시흥군의 서면과 남면 및 군내면의 박달리를 통합하여 새로 구성하였다.

수암면과 군자면의 2개 면은 옛 안산군의 각 면을 통합하여 새로 편성되었다. 수암면은 안산군 군내면과 인화면 · 초산면을 통합하여, 군자면은 마유면과 대월면, 와리면을 통합하여 새로 편성하였다. 수암면과 군자면은 각각 기존의 3개 면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행정동리의 숫자도 수암면 19개, 군자면 14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1914년의 군 폐합 조치로 시흥군은 경성 남부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동북지역으로는 한강을 두고 경성 및 고양군과 마주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청계산을 경계로 광주군과 접하였고, 남쪽으로 수원군과 경계하고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부천군 및 김포군과 마주하고 있었다. 또한 경부철도와 경인철도가 군의 중앙을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경성과 인접하여 신문화의 수입에 매우 편리하였다고 한다.(4)

그 후 북면의 영등포리가 영등포면으로 승격되면서, 영등포리 · 당산리 · 양평리의 3개 동리가 영등포면으로 귀속되었으며, 북면의 면사무소는 노량진리로 이

(4) 『동아일보』 1920년 10월 3일.

전되었다. 1931년 영등포면은 영등포읍으로 승격되었다가,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1936년 4월 1일 시행(2월 14일 공포)된 총독부령 제8호 '부군(府郡)의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개정'에 의거하여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 및 북면의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 신길리 그리고 번대방리 일부와 도림리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북면에서 영등포면이 먼저 분리되어, 경성에 편입되었으며, 이어 북면마저 경성으로 편입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시흥군은 9개 면에서 8개 면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군청은 경성부(京城府) 영등포정(永登浦町)에 그대로 있었다.

1939년 현재의 시흥군 행정구역 명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시흥군 행정구역 명칭 일람[5] (1939년 현재)

면의 명칭	행정동리의 명칭	비고
동 면	▲시흥리, 안양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 번대방리, 도림리, 구로리(9개 리)	
서 면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노온사리, 가학리, 박달리, 광명리, 일직리(8개 리)	
신동면	▲양재리, 신원리, 우면리, 방배리, 서초리, 반포리, 사당리, 잠실리(8개 리)	면사무소 우면리에서 양재리로 이전
과천면	▲관문리, 문원리, 갈현리, 초계리, 하리, 주암리(6개 리)	
서이면	▲안양리, 비산리, 일동리, 이동리, 호계리(5개 리)	면사무소 호계리에서 안양리로 이전
남 면	▲당리, 당정리, 부곡리, 산본리, 금정리(5개 리)	
수암면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 양상리, 부곡리, 성포리, 월피리, 고잔리, 와리, 화정리, 능곡리, 하중리, 하상리, 광석리, 물왕리, 산현리, 조남리, 논곡리, 목감리(19개 리)	면소재지 화정리에서 수암리로 이전
군자면	▲거모리, 군자리, 장현리, 장곡리, 월곶리, 정왕리, 죽율리, 신길리, 성곡리, 목내리, 원시리, 초지리, 원곡리, 선부리(14개 리)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9년 현재 시흥군은 8개 면 74개 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는 1914년 군면 폐합 당시의 숫자인 9개 면 83개 리와 비교하면 1개

(5) 조선총독부내무국 편,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39, 24~25쪽. ▲는 면 소재지를 나타냄.

면 9개 리가 줄어든 것이다. 1941년 10월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해방이 될 때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3. 군 · 면 행정 담당자의 변화

면에 문서행정체계를 도입한 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리화'된 체계를 담당할 능력 있는 관료집단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했다. 행정에서 문서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면 행정의 담당자에게는 전문적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요구되었다. 시흥군과 각 면의 직원, 곧 행정 담당자를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4〉 일제시기 시흥군 직원[6]

1910	1911	1912	1913
나기정(羅基貞, 郡守)	나기정(羅基貞, 郡守)	윤필구(尹弼求, 郡守)	윤필구(尹弼求, 郡守)
이승우(李承瑀, 書記)	이승우(李乘瑀, 郡書記)	홍성표(洪城杓, 郡書記)	방한복(方漢復, 郡書記)
구자○(具滋○, 書記)	구자○(具滋○, 郡書記)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박규병(朴奎秉, 書記)	박규병(朴奎秉, 郡書記)	원익상(元益常, 郡書記)	
1914	1915	1916	1917
윤필구(尹弼求, 郡守)	홍종국(洪鍾國, 郡守)	홍종국(洪鐘國, 郡守)	홍종국(洪鐘國, 郡守)
심형진(沈衡鎭, 郡書記)	이승민(李承珉, 郡書記)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조병열(趙炳烈, 郡書記)	조병열(趙炳烈, 郡書記)	조병열(趙炳烈, 郡書記)
조병열(趙炳烈, 郡書記)	안성호(安聖濩, 郡書記)	신명환(申明煥, 郡書記)	안성호(安聖濩, 郡書記)
민병익(閔丙翼, 郡書記)	민병익(閔丙翼, 郡書記)	안성호(安聖濩, 郡書記)	신명환(申明煥, 郡書記)
정태형(鄭泰亨, 郡書記)	조문희(趙文熙, 郡書記)	민병익(閔丙翼, 郡書記)	민병익(閔丙翼, 郡書記)
		조문희(趙文熙, 郡書記)	조문희(趙文熙, 郡書記)

(6)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職員錄』, 해당 연도. 조선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고, 일본인 직원은 제외되어 있다.

1918	1919	1920	1921
홍종국(洪鍾國, 郡守)	홍종국(洪鍾國, 郡守)	서정악(徐廷岳, 郡守)	이승우(李承瑀, 郡屬)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이승우(李承瑀, 郡書記)	윤홍병(尹弘炳, 郡屬)
심규택(沈圭澤, 郡書記)	심규택(沈圭澤, 郡書記)	윤홍병(尹弘炳, 郡書記)	김태호(金泰鎬, 郡屬)
안성호(安聖濩, 郡書記)	안성호(安聖濩, 郡書記)	김태호(金泰鎬, 郡書記)	김만제(金萬濟, 郡屬)
조문희(趙文熙, 郡書記)	장인혁(張仁赫, 郡書記)	주시관(朱時寬, 郡書記)	이혜선(李惠善, 郡屬)
조한상(趙漢相, 郡書記)	조한상(趙漢相, 郡書記)	김만제(金萬濟, 郡書記)	안용재(安鏞載, 郡屬)
강한선(姜翰善, 郡書記)	조문희(趙文熙, 郡書記)	황성연(黃性淵, 郡技手)	황성연(黃性淵, 郡技手)
	황성연(黃性淵, 郡技手)	이연철(李淵哲, 郡參事)	
	이연철(李淵哲, 郡參事)	조중완(趙重完, 郡參事)	
	조중완(趙重完, 郡參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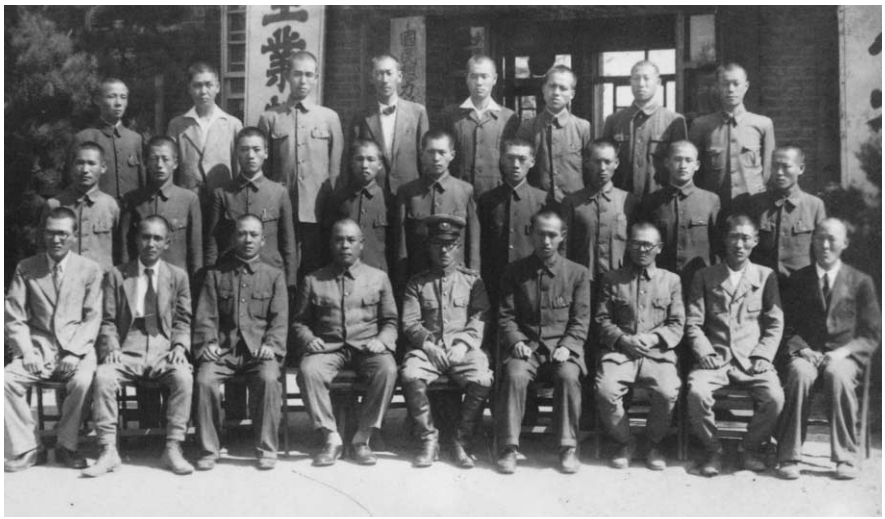
1922	1923	1924	1925
이승리(李承璃, 屬)	전기설(田基說, 屬)	전기설(田基說, 屬)	남진우(南晋祐, 屬)
전기설(田基說, 屬)	윤홍병(尹弘炳, 屬)	김만제(金萬濟, 屬)	임동운(林東雲, 屬)
윤홍병(尹弘炳, 屬)	홍일표(洪一杓, 屬)	남진우(南晋祐, 屬)	권갑중(權甲重, 屬)
김만제(金萬濟, 屬)	김만제(金萬濟, 屬)	권갑중(權甲重, 屬)	이재영(李宰榮, 屬)
이혜선(李惠善, 屬)	안용재(安鏞載, 屬)	고주현(高周鉉, 屬)	고주현(高周鉉, 屬)
안용재(安鏞載, 屬)	이재영(李宰榮, 屬)	이재영(李宰榮, 屬)	정한교(鄭漢敎, 書記)

1926	1927	1928	1929
남진우(南晋祐, 屬)	남진우(南晋祐, 屬)	남진우(南晋祐, 屬)	문명욱(文明郁, 屬)
임동운(林東雲, 屬)	임동운(林東雲, 屬)	임동운(林東雲, 屬)	임동운(林東雲, 屬)
권갑중(權甲重, 屬)	권갑중(權甲重, 屬)	이병숙(李炳璹, 屬)	이병숙(李炳璹, 屬)
고주현(高周鉉, 屬)	고주현(高周鉉, 屬)	신길순(申吉淳, 屬)	신길순(申吉淳, 屬)
이재영(李宰榮, 屬)	이재영(李宰榮, 屬)	이재영(李宰榮, 屬)	이재영(李宰榮, 屬)
정한교(鄭漢敎, 書記)	정한교(鄭漢敎, 書記)	정한교(鄭漢敎, 書記)	이교창(李敎昌, 森林主事)
			장희명(張希明, 地方書記)

1930	1931	1932	1933
문명욱(文明郁, 屬)	문명욱(文明郁, 屬)	이규승(李圭昇, 屬)	이규승(李圭昇, 屬)
임동운(林東雲, 屬)	임동운(林東雲, 屬)	문명욱(文明郁, 屬)	이병숙(李炳璹, 屬)
이병숙(李炳璹, 屬)	김세진(金世振, 屬)	이병숙(李炳璹, 屬)	최종선(崔鍾璿, 屬)
신길순(申吉淳, 屬)	이병숙(李炳璹, 屬)	장남섭(張南燮, 屬)	장남섭(張南燮, 屬)
이재영(李宰榮, 屬)	이재영(李宰榮, 屬)	정천모(鄭天謨, 屬)	김주동(金周東, 森林主事)
김주동(金周東, 森林主事)	김주동(金周東, 森林主事)	김주동(金周東, 森林主事)	장희명(張稀明, 地方書記)
장희명(張希明, 地方書記)	장희명(張希明, 地方書記)	장희명(張希明, 地方書記)	한백훈(韓百薰, 地方社會主事)
			○○吉(地方社會主事)
			서상용(徐相庸, 地方森林主事)
			최봉도(崔奉道, 地方森林主事)

1934	1935	1936	1937
이병숙(李炳璹, 屬)	이병숙(李炳璹, 屬)	강신효(姜信孝, 屬)	강신효(姜信孝, 屬)
최종선(崔鍾璿, 屬)	전재헌(全在憲, 屬)	전재헌(全在憲, 屬)	전재헌(全在憲, 屬)
박오창(朴午昌, 屬)	최종선(崔鍾璿, 屬)	최종준(崔鍾濬, 屬)	최종선(崔鍾璿, 屬)
김주동(金周東, 森林主事)	김주동(金周東, 森林主事)	김주동(金周東, 森林主事)	김태원(金泰元, 森林主事)
도경화(都炅華, 産業技手)	도경화(都炅華, 産業技手)	이교창(李敎昌, 産業技手)	이교창(李敎昌, 産業技手)
한백훈(韓百薰, 地方社會主事)	한백훈(韓百薰, 地方社會主事)	도경화(都炅華, 産業技手)	장석두(張錫斗, 産業技手)
임구남(林久男, 地方産業技手)	임구남(林久男, 地方産業技手)	장석두(張錫斗, 産業技手)	허기(許杞, 地方書記)
서상용(徐相庸, 地方森林主事)	서상용(徐相庸, 地木森林主事)	하본무(河本茂, 地方書記)	김기황(金基璜, 地方社會主事)
박승하(朴勝廈, 地方森林主事)	박승하(朴勝廈, 地木森林主事)	김창진(金昌鎭, 地方社會主事)	이필양(李弼良, 地方森林主事)
		서상용(徐相庸, 地方森林主事)	이희종(李熙鍾, 地方森林主事)
		이희종(李熙鍾, 地方森林主事)	
1938	1939	1940	1941
전재헌(全在憲, 屬)	윤충의(尹忠儀, 屬)	春日輝邦(郡屬)	牧山元茂(郡屬)
최종준(崔鍾濬, 屬)	최종준(崔鍾濬, 屬)	小泉源一(郡屬)	平原正達(郡屬)
이남호(李湳浩, 屬)	이남호(李湳浩, 屬)	이인섭(李寅燮, 郡屬)	佳山政弘(郡屬)
허기(許杞, 地方書記)	허기(許杞, 地方書記)	平原正達(郡屬)	船越稔(郡屬)
김기황(金基璜, 地方社會主事)	윤보영(尹普榮, 地方書記)	船越稔(郡屬)	新井有三郎(郡屬)
오혁수(吳赫洙, 森林主事)	김기황(金基璜, 地方社會主事)	손인용(孫仁龍, 郡森林主事)	太山行茂(産業技手)
이교창(李敎昌, 産業技手)	임인식(林寅植, 森林主事)	임인식(林寅植, 産業技手)	임융일(林隆一, 産業技手)
장석두(張錫斗, 産業技手)	김경호(金景鎬, 産業技手)	장석두(張錫斗, 産業技手)	眞山幸知(産業技手)
김기황(金基璜, 地方社會主事)	장석두(張錫斗, 産業技手)		
이필양(李弼良, 地方森林主事)	김기황(金基璜, 地方社會主事)		
이희종(李熙鍾, 地方森林主事)	이필양(李弼良, 地方森林主事)		
	강태설(姜泰卨, 地方森林主事)		

앞의 표는 『조선총독부직원록』에서 시흥군 직원만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병합 이후 1920년까지만 조선인 군수가 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군이 행정적으로 과도적인 단계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면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위주로 군수의 역할과 지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으므로, 조선인을 군수로 임명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인 군수가 늘어나는



▲ 시흥군 면치강습기념 군청직원 일동 기념촬영(1942.9.3)

점은 시흥군 역시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추세에 따르고 있었다. 조선인 군수 네 명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나기정 : 1900년 경기도 관찰부 주사로 임명되어 대한제국 정부에서 근무, 1909년에는 경기도 주사로 순종의 남서 순행(巡幸)에 공로가 있다고 표창됨, 1910년~1912년 시흥군수, 1912~1913년 용인군수, 1914년 면직.

윤필구 : 1908년 경남 진주경찰서 경부, 1910년 용인군수, 1912년 시흥군수, 1914년 · 1916년 경기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 1915년 연천군수, 1919년 포천군수, 1924년 8월 시대일보 발기인.

홍종국 : 1885년 충청남도 공주군 출생, 1906년 사립 광성실업학교(光成實業學校) 졸

(7)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한국근대인물 DB를 참고하였다.

업, 1907년 사립 광성실업학교 교사, 1908년 도주사가 되어 평북관찰도 근무, 1910년 도서기로 진급, 1911년 경기도 서기, 1913년 마전(麻田)군수, 1914년 연천 · 시흥군수, 1919년 용인군수, 1921년 양평군수, 1922년 강화군수, 1924년 안성군수, 1928년 양주군수, 1930년 고양군수, 1934년 강원도 참여관(參與官), 1938년 중추원 참의 역임,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수여.

서정악 : 1908년 궁내부 제실재산정리국 주계사(主計士), 1911년 교동군수, 1913년 남양군수, 1914년 경기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 · 장단군수, 1916년 광주군수, 1920년 시흥군수, 1921년 부천군수, 1923년 용인군수, 1926년 고양군수 역임.

네 사람 모두 구한국정부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하여 일제시기에 군수를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군수 이상으로 진급하여 관료생활을 계속한 사람은 홍종국뿐이다.

군수에 이어 시흥군 각 면의 직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흥군 각 면의 직원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시계열적인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허용하는 한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27년 현재 시흥군 각 면의 직원(면협의회원, 구장 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927년 시흥군 면직원 및 면협의회 의원[8]

군 · 면	구분	성 명
시흥군	군수(7등)	曾田篤一郎
	서무주임(屬)	能川清之助
	재무주임(屬)	심택정(深澤貞)
영등포면 (영등포리)	면직원	면장(從6, 勳5) : 大森三郎, 부장 : 缺, 서기 : 藤田卯一, 박용원(朴容元), 久富良三, 강유봉(姜有鳳), 원학희(元鶴喜), 노을만(盧乙萬), 기수 : 김재달(金在達)
	면협의회원	김태집(金泰潗), 최준영(崔俊永), 今書覺郎, 竹原初藏, 各井貞亮, 齋藤富藏, 鈴木文助, 노종성(盧鍾成), 전건흥(全健興)

(8) 文鎭國 편, 『朝鮮全道 面職員錄』, 文鎭堂, 1927, 46~50쪽.

군 · 면	구분	성 명
영등포면 (영등포리)	구장	영등포1구 三原正幸, 영등포2구 최준영(崔俊永), 영등포3구 김서윤(金瑞允), 당산1구 김종혁(金鍾赫), 당산2구 남춘희(南春熙), 양평 노종성(盧鍾成)
북면 (노량진리)	면직원	면장 : 이승우(李承瑀), 서기 : 지재환(池在煥), 이인성(李寅晟), 천선식(千璿植), 안상득(安商得), 이명균(李命均), 이명득(李命得), 기수 : 김창옥(金昌玉)
	면협의회원	高澤藤子, 차정환(車正煥), 이응삼(李應三), 마흥수(馬興壽), 이만종(李萬鍾), 정봉순(鄭鳳順), 엄주익(嚴柱益), 고성운(高聖云), 임도상(林道相), 이혜선(李惠善), 한흥택(韓興澤)
	구장	노량진 이흥선(李興先), 본동 서한준(徐漢俊), 도림 이순선(李舜善), 신길 이흥선(李興善), 흑석 유기성(柳基性), 동작 최의선(崔義善), 번대방 김원필(金元弼), 구로 한흥택(韓興澤)
신동면 (양재리)	면직원	면장 : 류제형(柳齊衡), 서기 : 김기황(金基璜), 류국형(柳國衡), 김순흥(金順興), 권완식(權完植), 이영우(李英雨), 기수 : 전호경(全浩景)
	면협의회원	이명구(李明九), 권원순(權元順), 김문수(金文守), 尙潨, 荒木三兵衛, 오상근(吳相根), 단용운(段龍雲), 강학준(姜學俊), 천학인(千學仁)
	구장	양재 홍순혁(洪淳赫), 서초1구 정태의(鄭泰儀), 서초2구 왕기설(王基卨), 신원 문성원(文聖元), 반포 정천응(鄭千應), 방배 유필무(柳必茂), 사당 김사연(金士連), 우면 이기훈(李驥薰), 잠실 김옥배(金玉培)
동면 (시흥리)	면직원	면장 : 강신한(姜信漢), 서기 : 천종서(千鍾瑞), 조정식(趙貞植), 강재순(姜在順), 연규순(延圭舜), 서병복(徐丙復), 기수 : 정운칠(鄭雲七)
	면협의회원	안일준(安日濬), 강일순(姜日順), 박태희(朴泰羲), 송현규(宋賢奎), 이동재(李桐宰), 하규홍(河奎泓), 송태식(宋台植), 이규봉(李奎鳳), 연성옥(延聖玉), 박용제(朴容第)
	구장	시흥 김상학(金商學), 안양 박교복(朴敎復), 봉천 이임재(李林宰), 가리봉 안순하(安淳夏), 상도 박용제(朴容第), 신림 이계홍(李啓弘), 독산 이정구(李定九)
서면 (소하리)	면직원	면장 : 윤지병(尹址炳), 서기 : 설규영(薛奎榮), 최호연(崔浩然), 최호만(崔浩萬), 설형규(薛亨奎), 이범규(李範圭), 기수 : 장석두(張錫斗)
	면협의회원	이연철(李淵哲), 성기동(成耆東), 이진경(李鎭敬), 권훈(權燻), 김호동(金鎬東), 백관영(白寬永), 강기석(姜夔錫), 류덕열(柳德烈), 안윤서(安潤瑞), 조세현(趙世顯)
	구장	소하 이연승(李淵承), 박달 이진경(李鎭敬), 철산 안창진(安昌鎭), 광명 한백규(韓百揆), 노온사 강해덕(姜海悳), 가학 성기철(成耆哲), 하안 김호동(金鎬東), 일직 심명택(沈明澤)
과천면 (관문리)	면직원	면장 : 김용빈(金容彬), 서기 : 박은용(朴殷鏞), 박인영(朴仁榮), 이윤명(李允明), 오순묵(吳順默)
	면협의회원	변성환(邊星煥), 강의영(姜義永), 이용남(李容南), 맹하술(孟夏述), 남궁달(南宮達), 김형만(金炯萬), 최병훈(崔炳勳), 김용건(金容健)
	구장	관문 변성환(邊星煥), 하리 남궁달(南宮達), 주암 김교성(金敎城), 갈현 맹하술(孟夏述), 문원 이경원(李景元), 막계 원호우(元鎬祐)
서이면 (안양리)	면직원	면장 : 조한구(趙漢九), 서기 : 신경택(愼庚宅), 윤경섭(尹敬燮), 권덕상(權德相), 조준구(趙濬九), 윤주희(尹宙熙), 기수 : 권임중(權任重)
	면협의회원	이사규(李寫珪), 신용범(愼用範), 田代良彦, 安江正三, 이택래(李宅來), 김성백(金聖伯), 이장훈(李章薰),

군 · 면	구분	성 명
서이면 (안양리)	면협의회원	최영복(崔永福), 이기순(李起純), 이종만(李鍾萬)
	구장	비산 김영옥(金永玉), 일동 이우종(李佑鍾), 안양 이세진(李世鎭), 호계 오인수(吳仁洙), 이동 이창규(李昌圭)
남면 (당리)	면직원	면장 : 이규응(李奎應), 서기 : 박용희(朴容熙), 이명용(李明鎔), 박진희(朴陣熙), 주경식(朱景植)
	면협의회원	조중완(趙重完), 佐熊源治, 양재철(梁在轍), 곽주영(郭柱英), 문병두(文炳斗), 한경리(韓敬履), 김ㅇ기(金ㅇ基), 김순복(金順福)
	구장	당리 이재성(李載成), 산본 이봉훈(李鳳薰), 금정 이수준(李秀俊), 당정 양재찬(梁在贊), 부곡 이진구(李鎭九)
수암면 (수암리)	면직원	면장 : 류기형(柳箕馨), 서기 : 김건배(金健培), 김동설(金東卨), 서규석(徐圭錫), 류지연(柳志淵), 강정원(姜貞元), 정기섭(丁起燮), 기수 : 신현기(申鉉箕)
	면협의회원	엄영섭(嚴英燮), 이한우(李漢宇), 류겸수(柳謙秀), 김명채(金明采), 장봉근(張奉根), 홍순칠(洪淳七), 김창환(金昌煥), 권형(權泂), 이남진(李南鎭), 이재간(李載侃)
	구장	수암 엄이섭(嚴履燮), 능곡 이동익(李東翊), 하중 권호(權澔), 산현 성조경(成祖慶), 고잔 윤경헌(尹慶憲), 광석 정원렬(鄭元烈), 성포 이서구(李敍九), 와리 류익렬(柳益烈), 논곡 이재간(李載侃), 화정 이종형(李鍾瀅), 물왕 송증(宋增), 양상 강영윤(姜永尹), 부곡 류해로(柳海魯), 장상 정윤철(鄭潤澈), 월피 이염태(李廉台), 장하 이건영(李建榮), 조남 이염(李炎), 목감 신현목(申鉉穆), 하상 권형(權泂)
군자면 (거모리)	면직원	면장 : 류지영(柳志英), 서기 : 한기호(韓基浩), 장순봉(張淳鳳), 이규원(李圭元), 김종윤(金鍾潤), 권성학(權聖學), 이명기(李命基), 기수 : 이규용(李圭龍)
	면협의회원	박봉진(朴奉鎭), 류지창(柳志昶), 정원수(鄭元洙), 안상묵(安湘默), 김성관(金聖寬), 문창영(文昌永), 김승한(金昇漢), 정은교(鄭殷敎), 이명상(李命相), 윤성한(尹成漢)
	구장	거모 한승우(韓升愚), 장현 권준영(權俊榮), 월곶 안상묵(安湘默), 정왕 한승리(韓承履), 성곡 허완(許浣), 목내 윤당당(尹塘㻋), 원시 이명상(李命相), 군자 류국현(柳國鉉), 장곡 장택진(張宅鎭), 신길 윤준(尹埈), 죽율 남덕원(南德元), 초지 이원종(李源琮), 선부 박래형(朴來亨), 원곡 윤성한(尹成漢)

영등포면은 도시화된 지역으로서 특별히 지정된 면, 곧 지정면이었으므로 면장, 서기, 면협의회원 등에 일본인이 많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면직원의 거의 대부분을 조선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면협의회원 가운데 구장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구장으로서 면협의회원에 임명된 사람을 각 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영등포면은 최준영, 노종성, 북면은 한흥택, 동면은 박용제, 서면은 이진경, 김호동, 과천면은 변성환, 남궁달, 맹하술, 수암면은 이재간, 권형, 군자면은 안상묵, 이명상, 윤성한 등이다. 1927년 당시 면협의회원은 임명제였으므로, 아마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구장에 선임되어 있었고 총독부가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직원록』을 통하여 시흥군 각 면의 면장을 추적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일제시기 시흥군 면장[9]

면명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과천면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缺員)
군자면	최준홍	최준홍	최준홍	최준홍	최준홍	최준홍	최준홍	최준홍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남면	이규응	이규응	이규응	곽주영	곽주영	곽주영	곽주영	곽주영	이규응	박태선	박태선
동면	류병태	류병태	송현규	송현규	송현규	강신한	강신한	강신한	강신한	강신한	강신한
북면	이정식	이정식	유상준	유상준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이학수	이학수
서면	조세현	조세현	조세현	조세현	조세현	조세현	조세현	김창호	(缺員)	윤지병	윤지병
서이면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규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수암면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이광훈	류기형	류기형	류기형
신동면	이한구	김용건	김용건	김용건	이명구	이영환	류제형	류제형	류제형	류제형	류제형
영등포읍	殿村政義	殿村政義	殿村政義	殿村政義	殿村政義	殿村政義	殿村政義	(缺員)	藤田信彦	大森三郎	大森三郎

면명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과천면	김완식	김완식	김완식	김완식	김완식	김완식	김완식	김완식	이준하	김영식	江川榮	江川榮
군자면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류지영	柳本英一	柳本英一
남면	조중완	조중완	조중완	조중완	조중완	조중완	조중완	조중완	박진희	안상억	안상억	治川定
동면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이윤수	송원윤	松原潤
북면	이학수	이학수	이학수	이학수	이학수	이학수						
서면	윤지병	윤지병	윤지병	윤지병	윤지병	윤지병	설규영	설규영	설규영	설규영	玉川元信	玉川元信
서이면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조한구	이기선	이기선	이기선	이기선	岡田政憲	岡田政憲
수암면	김용제	조신희	조신희	이재간	이재간	강정원	강정원	강정원	장순봉	장순봉	장순봉	德川龍平
신동면	류제형	류제형	김기황	김기황	김기황	김기황	김기황	이영섭	이영섭	이영섭	德原英燮	權藤完植
영등포읍	(缺員)	森高源藏	森高源藏	森高源藏	森高源藏	森高源藏						

위의 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실은 대개 면장의 임기가 상당히 길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1927년부터 1939년까지 군자면장을 '근속' 한 류지영에게 군자면의

(9)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職員錄』, 해당 연도. 영등포는 1931년 4월 읍으로 승격, 1935년 10월 京城府로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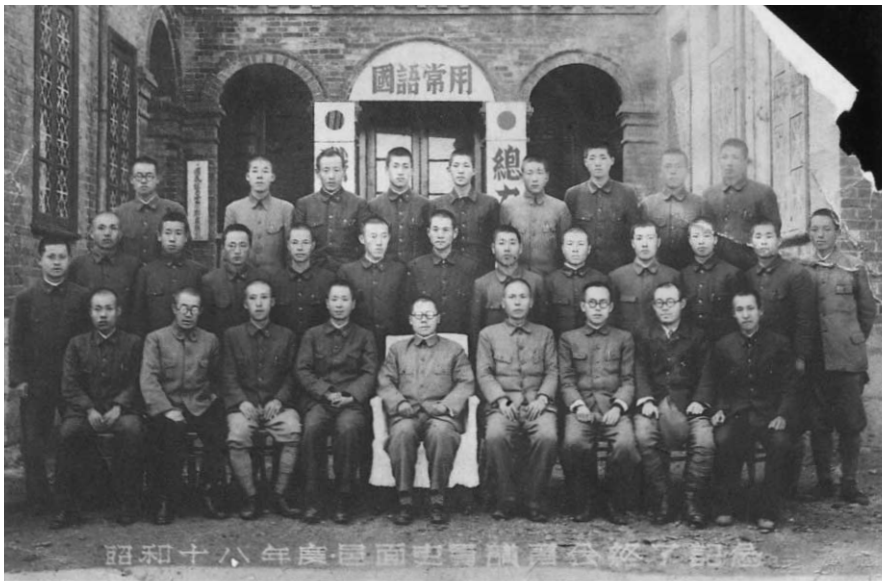


▲ 시흥군 영등포읍 직원들 (1940년대)
◀ 수암면 직원(1940년대)

유지들이 이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열어 기념품으로 금시계를 증정하였다.[10]

면장들의 이력사항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교육받은 각 지역의 유력자가 면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10) 『동아일보』 1934년 10월 13일. 1934년에 20년을 근속했다는 기사를 보아, 류지영은 아마 1915년경부터 면서기로 근무했을 것이다.



▲ 읍면리원강습회 종료기념(1943)

4. 군 · 면 행정의 편린

군 · 면 행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을 알려 주는 자료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살펴 군 · 면 행정의 편린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먼저 면사무연구회와 면장회의에 관한 것이다. 점차 복잡해지는 면 행정을 개선하고자 시흥군 북면사무소에서 군 내의 10개면 직원 20여 명이 회합하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연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11] 그리고 면장회의도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28년 8월 시흥군 면장회의 개최에 관

(11) 『동아일보』 1926년 7월 8일.



▲ 신천리 청년단

한 신문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12]

다음으로 산업장려에 관한 사항이다.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시흥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산업장려와 관련된 것이었다. 먼저 시흥군에서 농사개량을 장려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927년 4월 서이면사무소에서 농사 담당자 및 각 면의 기수가 모여 회의를 열고, 묘대(苗垈) 박파(薄播), 춘기퇴비 제조장려, 녹비 재배장려, 적미(赤米) 선발, 대두 선발, 정조식 보급, 수도(水稻) 갱신, 가마니 · 새끼 제조지도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한다.[13] 이 외에도 시흥군은 삼림보호조합, 축산동업조합, 농회 등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었다.[14]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체제로 돌입하면서 시흥군에서도 이와 관련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먼저 시흥에서 시국강연회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1937년 9월 영등포에서 시흥군 문묘유림시국인식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시흥 문묘에서 모금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군수와 군 내무주임이 중심이 되어 각 면의 청년단체와 부인단체를 대상으로 시국인식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15] 이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족과 함께 시흥군에서도 각 면과 부락의

(12) 『동아일보』 1928년 8월 9일.
(13) 『동아일보』 1927년 4월 19일.
(14) 『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동아일보』 1928년 3월 2일 기사 참조.
(15) 『동아일보』 1937년 9월 4일.



始興郡廳舍
移轉을計劃策
공작자등 백 명이 회합
期成會組織코活動

【영등포】 영등포읍(永登浦邑) 북면(北面) 동면(東面) 서면(西面) 신동면(新東面) 파천면(巴川面) 서이면(西二面) 남면(南面) 수암면(秀岩面) 군자면(君子面) 등 一읍九개면 행정구역으로한지 흥군(始興郡) 청의 소재지는 영등 포로서 전군흥륭하야 그소재가너 무나 한편모퉁이에 치우친관계상 군내의 모든진운(進運)에 적당치 안을뿐아니라 공사나 사사품차구 하고 불편한점이 만어서 종래지 방유지간에는 군청사를 군의중앙 부이며 교통에편리한 서이면(西二面) 안양(安養)에 이전할필요 를 절대로느끼여 오지기만기다 리든 터이엇섯는대 이번에대경성 건설 계획이 드디여실현됨에따라 영등포읍 一원과 로량진(鷺梁津) 을 중심으로한 북면(北面) 一부분 경성부에 편입기게 됨에따라시흥 군과 행정상 시설에 잇어서 아모 관계가없게되는 영등포에다가 군 청사를 그대로둔다는것은 지리상 으로나 교통상으로나 또는군내의 모든 산업진흥상으로보아 적당치 안타고해서 이번기회에 기어히군 청이전의 목적을달성하려고 지난 二十一일 오후一시부터군내 공직자 유력자등 백여명은 서이 면사무소에모이여 구청이전 기성 회를 조직하고 맹렬한활동을개시 하엿다고한다.

▶ 시흥군청 이전운동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36년 2월 26일)

정신총동원연맹이 결성되었다.[16] 또한 미곡통제조합과 목탄통제배급조합, 목재판매통제조합 등 각종 경제통제조합도 결성되었다.[17] 또한 시흥군 청년단도 전면에 걸쳐 결성되었다.[18] 또한 경기도의 근로보국단 결성에 발맞추어 시흥에서도 근로보국단 발단식이 1938년 8월 거행되었다. 군내 300여 부락에 조직된 근로보국단 연합단을 조직하였던 것이다.[19] 또한 시흥군 부인근로보국단도 결성되었다.[20] 특히 애국기(愛國機) 헌납운동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애국기 '시흥호' 헌납 기금이 군민으로부터 쇄도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주목할 만하다.[21]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흥군 청사 이전운동이다. 1936년 영등포읍과 북면 일원이 경성으로 편입된 후, 영등포읍에 소재하던 군 청사를 이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영등포의 경성 편입 이전에도 청사가 있는 영등포가 시

(16) 『매일신보』 1938년 8월 6일.
(17) 『동아일보』 1939년 10월 27일; 『매일신보』 1940년 9월 14일; 『매일신보』 1941년 11월 18일.
(18) 『매일신보』 1941년 6월 8일.
(19) 『동아일보』 1938년 8월 5일.
(20) 『매일신보』 1939년 5월 13일.
(21) 『매일신보』 1942년 12월 22일.

흥군 전체로 볼 때 너무 치우친 지역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으므로, 지역의 유지들 사이에서는 이미 청사 이전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영등포가 경성으로 편입되자, 청사를 이전하자는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36년 2월 21일 군내의 공직자와 유력자 등 100여 명이 서이면사무소에 모여 군청이전기성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22] 이들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 군의 가장 중심지대가 되는 안양으로 군청을 이전하고자 하였는데, 조선직물주식회사 안양공장장으로 있던 일본인 기리다 겐지(桐田元次)를 기성회장으로 선임하여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다.[23] 군민대회에서는 진정위원 4명을 선임하여 군청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결의하였다고 한다.[24]

이상으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시흥군 · 면 행정의 편린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일관된 시계열적 자료를 발굴하여 시흥군과 각 면의 재정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시흥군 행정의 전체적인 면모를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해동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22) 『동아일보』 1936년 2월 26일.
(23) 『동아일보』 1936년 3월 4일. 군민대회는 1936년 3월 5일 안양 조선직물주식회사 구내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24) 『동아일보』 1936년 3월 7일.

2장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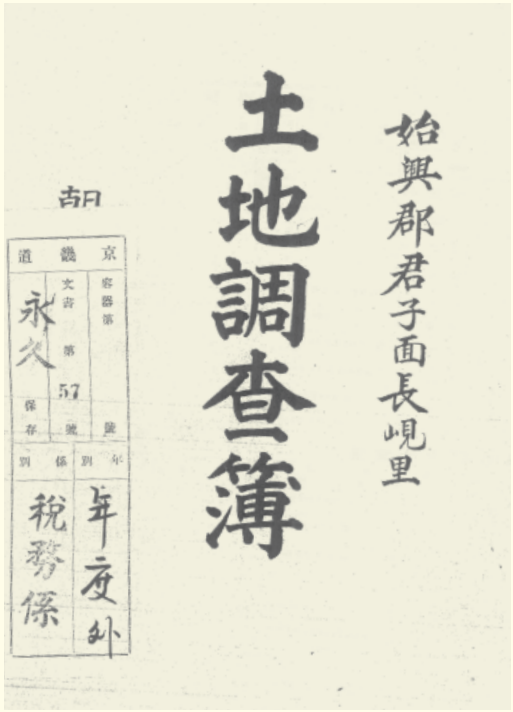
조선토지조사사업(朝鮮土地調査事業, 이하 '사업'이라 함)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직후 실시한 주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작업과 각 필지별 지세액을 확정하는 작업 그리고 지도 및 지적도를 작성하는 작업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비로소 조선사회는 토지에 관한 근대적인 장부체계를 갖출 수 있었고, 각 필지별로 토지에 대한 절대적 · 사적 토지소유권자를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사업에 관한 연구는 '사업'에서 나타난 수탈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사실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수탈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스페인의 라틴 아메리카 경영은 식민지에 대한 수탈이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일본의 조선경영 역시 수탈적이었다. 일본은 식민지의 장기적 경영을 위하여 식민지 내의 인적 · 물적 자원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시도하였다. 민적(民籍)을 작성하는 일이 식민지 민중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사업'은 식민지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던 토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사업'은 식민지의 장기적 경영을 위한 제도 구축의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연구사의 경향은 이러한 '사업'의 본질에 주목하여 '사업'을 통한

'불법적 토지약탈'과 '지세수탈'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다.[25] 이 논의에서는 '사업'이 가져온 근대적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수탈을 위한 명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무,[26] 신용하[27]로 대표되는 이 견해 이후 교과서 및 통사적 역사서술에서도 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토지조사부』 표지

그러나 '사업'의 성격을 '일제에 의한 수탈'로 규정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스스로 부정할 위험이 있다. 조선 후기 사적 토지소유권의 발전 정도가 근대적 토지소유권에 근접했다는 학계의 연구와 일제가 '사업'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약탈하였다는 명제는 쉽게 융화될 수 없는 것이다.[28]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한 일제의 정책의도뿐만 아니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조선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 형성된 토지제

(25)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을 토지약탈이나 지세수탈에서 찾는 논의를 '수탈론'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하 연구사 정리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관한 논의는 조석곤(「토지조사사업과 토지제도의 변화」, 『농업100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26) 李在茂,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實體」, 『社會科學研究』 7-5, 1955.

(27) 신용하,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지식산업사, 1982.

(28)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제22호, 1993.

도 · 지세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업' 당시의 기초 사료가 발견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사업'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평가 그리고 근대적 토지소유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조선사회의 토지제도와 '사업'에 의해 성립된 토지제도 양자를 어떤 관계 속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만, 필자는 기존의 '사업' 연구사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한다.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해 온 사적 소유권은 '사업'을 통하여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되었다. 단기간에 전국에 걸쳐 통일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이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적 소유권의 발전정도가 매우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점은 '사업'이 조선사회의 내부구조와 동떨어져 진행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사업'을 통하여 변화한 측면도 있었다. 첫째 '사업' 직전까지도 애매한 채로 남아 있던 국유 · 민유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 조선 후기에 절수(折受) 등의 명목으로 끊임없이 현실화되던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토지지배관념도 역둔토의 국유화 및 불하사업으로 종식되었다. 둘째, 토지소유권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래 관행화된 공동체적 토지소유관계가 해체되었다. 셋째, 결부제에 입각한 국가의 토지지배방식이 해체되고, 조세법정주의에 기초한 균등과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시흥에서의 '사업'의 진행도 이러한 연구사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 후기 이후 발전하여 오던 사적 토지소유권은 근대적인 장부체제 속에 녹아들어 갔으며,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일부 국유지는 분쟁을 거쳐 민유지로 환급되기도 하였다. 조세체제도 결부제로부터 지가의 일정비율을 지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제 이러한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사업' 이전 일제의 토지정책

'사업'은 일제에 의해 추진된 것이지만 사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조선 후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광무 연간에 실시한 조선왕조 최후의 양전인 광무양전사업은 그때까지의 토지제도 개혁논의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사업'의 소유권조사에서 중요 쟁점이 된 국유지분쟁의 경우 그 분쟁의 연원은 광무시기의 토지조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시흥의 국유지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국유지분쟁의 처리는 실질적으로는 일제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일제의 정책의도를 살피지 않고서는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일제가 조선의 식민지 경영방침을 확정한 후 그것을 어떻게 조선에 적용하는지를 '사업'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통감부시기에 시행된 징세제도의 개혁과 국유지조사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감부의 토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 첫째,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보증하고, 토지의 집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토지입법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둘째, 조선정부의 재정을 장악하고 왕실의 물질적 기초를 해체하기 위해 재정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자는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을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자는 황실재정 정리과정에서 국유 역둔토를 설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먼저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령의 정비과정을 살펴보자.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조선에 투자한 일본인 농업자본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통감부는 이를 위해 '토지가옥증명규칙'(1906년)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년) 등을 공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화 및 권리보존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은 그때까지 불법이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였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증명받은 토지의 절대면적이나 위치 등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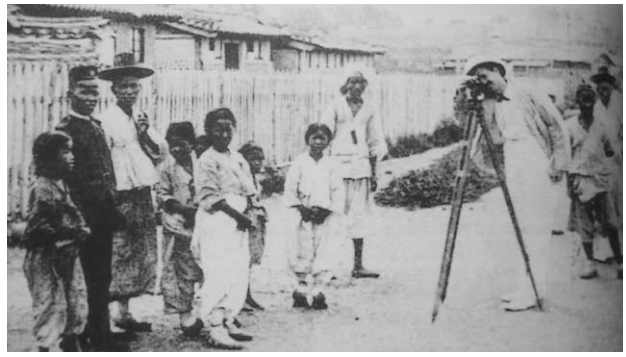
아 있었다. 결부제에 기초한 토지파악은 토지의 절대면적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였고, 토지의 위치를 지정하여 필지별 위치를 확정적으로 알게 해 주는 지번도 애매한 채로 남아 있었다.[29] 따라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등기제도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일제가 식민지화 초기에 토지조사를 긴급히 추구한 이유의 하나였다.

다음으로 황실재산 정리과정과 국유지 창출과정을 살펴보자. '사업' 당시 최대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국유지분쟁은 조선시대의 수조권적 토지지배를 철폐하고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 · 민유의 구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며, 그것은 국가의 수조권적 토지지배하에서도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한 농민적 토지소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였다. 일제가 국유 · 민유의 구분이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황실재산 정리과정에서부터였다.

국유의 성질을 가지는 토지는 역둔토라 불렀다. 갑오개혁 이후 역둔토의 관리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해 오다가 1899년 왕실의 재정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내장원에 집중되었다. 내장원은 1899년 사검위원을 각 도로 파견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901년 말에는 거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내장원의 역둔토조사는 왕실재산의 증대라는 확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895년의 조사결과(을미사판)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광무사검이라 부른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유지가 역둔토로 편입되었고, 을미사판 때 환급된 토지가 다시 역둔토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다시 분쟁을 일으켰지만 내장원은 한번 확보한 역둔토를 절대 환급하지 않았다. 통감부의 국유지조사는 광무사검의 성

(29) 조선시대의 토지면적은 토지의 생산력을 고려한 결부제에 의해 파악되었다. 따라서 같은 1결의 토지라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최고 4배 가까운 절대면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더구나 토지의 생산력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전사업 당시 양전 담당자인 書員의 농간이 개입할 소지가 있었으며, 따라서 결부수와 등급을 가지고 절대면적을 추론하는 것은 현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았다. 지번의 파악은 양전 당시 5결 단위로 字를 부여하고 필지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분필 · 합필되거나 새롭게 개간된 경우 등에 의해서 그 일련번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았다(조석곤,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과를 인정한 위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토지에는 광무정권이 무리하게 국유지에 포함시킨 민유 혼탈입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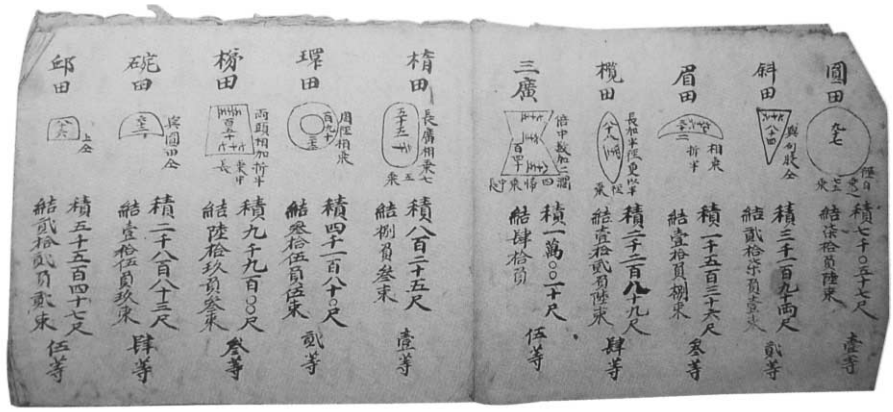


▲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 모습(1899)
▼ 역둔토 실지조사

이와는 별도로 국유와 황실유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어느 선까지를 황실유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일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경험을 살려 모든 황실유의 토지를 국유로 이관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궁전 및 종묘의 부지와 능원묘지 울타리 내의 토지를 제외하고 궁내부 및 경선궁 소속의 토지를 모두 국유로 이관하였다.(30)

이렇게 파악된 역둔토에 대하여 일제는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까지 '역둔토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유지의 소재와 면적을 실제로 확인하고 소작인을 조사하며, 소작료를 재조정하고 일률적으로 금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작인을 조사한 것은 중간소작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는 현지답사 정도의 간이조사형태로 진행되었지만 광무사검 당시에 강제로 역둔토에

(30) 이 조치는 '사업'의 국유지분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즉 광무정권에 의해 강제로 내장원에 승총된 많은 민유지들이 이제 역둔토라는 이름으로 국유지로 파악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

편입된 민유지들이 국유지로 파악됨으로써 '사업'에서 국유지분쟁이 크게 일어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때 창출된 국유지는 약 13만 정보가 넘었고(1912년의 전국 경작지의 5.6%),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도 30여만 호에 달하였다.

국유지의 창출은 국가와 동일시되던 황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그것은 국가적 토지소유의 실질적인 해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역둔토는 대한제국시기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제기되었던 토지로 그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이었다. 광무사검은 조선 후기 이래 발전해 온 농민적 토지소유를 억압하는 반민중적 원칙의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이었다. 일제의 국유 역둔토 창출은 바로 그 반민중적인 광무사검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에서, 이후 그 결과를 그대로 계승한 '사업'의 역사적 성격을 크게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징세제도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자. 통감부가 실시한 징세제도의 개혁은 종래 징세권을 가지고 있던 수령과 향리를 징세기구로부터 배제시키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1906년 9월 '관세관관제'는 종래 수령-향리로 이어지는 징세체계 대신 세무사-세무주사로 이어지는 징세기구를 만든 것이었다. 일제는 향리층이 징세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한 재정수입의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황실재정 정리가 국왕을 경제적으로 무장해제시킨 조치였다면, '관세관관제'





▲ **결수연명부**
▶ **과세지견취도** 경남 하동군 지역의 내용이다.

에 의한 징세기구의 분리는 지방서리층을 무장해제시킨 조치였다. 기존의 수취체제에서 수령-서리층의 중간수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폐해는 전면적인 토지조사에 의해서만 시정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당장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던 일제는 '관세관관제'를 통하여 과세 및 징세를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방행정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일제로서는 세금을 확실하게 거두기 위해 징세비가 더 들더라도 통제 가능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는 우선 기존 징수조직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세무의 인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서리층을 대신하여 새로운 징세기구로 등장한 면장 · 임원 등의 자질이 일제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제는 세금징수를 위해 서리층을 다시 징세기구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면을 단위로 한 징세구조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면에서 개별납세대상자의 납세액을 정하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납세자와 납세액을 국가가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별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징세대장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결수연명부의 작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작성된 결수연명부는 '사업'에서 토지신고서와 대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토지

소유권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수연명부는 1908년 이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지만 1910년 결수연명부는 지주명의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주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토지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권의 확정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것이었다. 말하자면 1910년의 결수연명부는 지주의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토지에 대한 최초의 신고였던 셈이다. 이를 기초로 1911년에는 지주납세를 권유하는 통첩을 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가 납세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였다. 1911년까지만 해도 납세대상자 311만 3,000여 명 중에 소작인이 납세하는 경우가 80만 7,000여 명으로 전체의 25%를 상회하였으나, 1912년 8월에는 304만 9,000여 명의 지주가 직접 납세하기에 이르렀고, 납세대리인 선정은 대상자 49만 7,000여 명 중 44만 1,000여 명이 선정을 완료하는 등의 실적을 보였다.

지주에 대한 파악이 강화되면서 결수연명부는 지세대장으로서만이 아니라, 토지에 관한 기본장부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나중에 작성될 토지대장과 비교할 때, 지목이 다양하지 않고 면적이 여전히 결부나 두락에 의해 부정확하게 기록되고, 비과세지의 경우는 기록하지 않는 등 한계가 뚜렷하였지만, 지세액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 분할 · 합병 등과 같은 사항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결수연명부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기재된 토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제는 과세지에 대하여 그 필지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묘사한 지도(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과세지견취도의 작성은 1911년 충북과 충남의 일부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견취도의 작성은 면이 중심이 되었다.

처음 결수연명부는 지세징수대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징세제도의 개혁과정에서 기존의 징세기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가가 개별 납세자의 납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납세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별 필지의 납세액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산물이 결수연명

부였다. 그런데 결수연명부에 기재할 납세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고, 일제는 납세자를 토지소유자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수연명부의 작성은 토지소유자를 확정하는 문제와도 결부되었다. 결수연명부의 이러한 성격은 과세지견취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결수연명부는 토지조사사업시 토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그것과 대조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토지조사사업의 경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토지조사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던 일제는 1909년 2월 탁지부대신이 일본 흥업은행으로부터 얻은 차관 중 1,000만 엔을 토지조사의 비용으로 할 것을 승인받으면서 토지조사 실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1910년 3월에는 토지조사의 주무관청인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고, 사업의 기간법령인 '토지조사법'을 8월에 공포하였다. 합방 후 일제는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1910년 9월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조사를 담당하였다.

임시토지조사국이 설치된 이후 토지측량 같은 기술적인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인 사정은 1913년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사정이 늦게 이루어진 것은 소유권조사와 지가조사에 관한 원칙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12년 8월에 토지조사법이 폐지되고 '토지조사령'이 공포되는데, 이때 비로소 '사업'에 관한 세부 원칙들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31]

(31)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 1991.



▲ 임시토지조사국

이 기간 중에 일제는 토지에 관하여 유일하게 믿을 만한 장부라고 생각했던 결수연명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과세지견취도는 1911년 충북에서 시험적으로 작성되고, 다음 해 전국적으로 작성작업이 확대되었다.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한 최대의 목적은 결수연명부로는 현실의 토지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양자의 대조결과 결수연명부는 자체의 부정확성을 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에 의해 보완을 받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사업'의 구체적인 경과를 소유권조사와 지가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분쟁지조사는 소유권조사의 일환이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항을 달리하여 설명할 것이다. 지형지모조사는 이 글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토지소유권조사는 준비조사, 일필지조사, 분쟁지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준비조사는 토지신고서를 배포하고 토지의 소재지방의 경제 및 관습을 조사하는 것이고, 일필지조사는 지주 · 지목 · 지번을 조사하는 것이고, 분쟁지조사는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내용을 조사하여 해결하는 것이었다.

준비조사의 중심은 토지신고서를 배부 · 작성하고 사업에 관계된 각종 자료 및 도서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준비조사는 1910년 5월부터 1916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처리한 것은 신고서 551만 3,516통, 신고필수 1,978만 3,745필에 달하였다. 토지신고서는 소유자가 결수연명부에 의거하여 작성 · 보고하도록 하였다. 신고서의 제출기간은 지역에 따라 30~90일이었다. 토지신고서의 배포 및 접수는 지주총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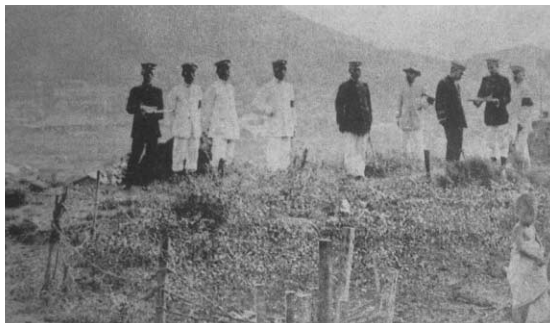
이 '신고주의'에 의해 농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토지가 불법적으로 약탈

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32]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당시의 농민들이 신고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확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주총대의 성격이다. 지주총대는 부윤과 군수가 선정하여 임명한 지주대표로서 종래에는 이들이 자의적으로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김해군의 토지신고서에 의하면 지주총대들의 경제적 지위는 보잘것 없었다.[33] 지주총대는 실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토지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신고에 따라 필지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일필지조사는 일필지측량에 기초하여 지주 · 경계 · 지목 · 지번의 조사로 나뉘어 행해졌다. 지주의 조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고자를 지주로 인정하였다. 만일 한 토지에 대해 2명 이상의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우선 사실을 조사한 후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 조정을 시도하였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분쟁지로 처리하여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겼다. 분쟁은 경계의 설정을 둘러싸고도 발생하였다. 일필지조사는 1910년 6월 시작하여 1916년 11월에 종료되었고, 측량 총필수는 1,910만 1,989필이었다.

'사업' 이 완료된 결과 1차 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276만여 정보, 1,378만여 필을 훨씬 넘는 487만여 정보, 1,911만여 필의 토지가 조사되었다. 이를 1910년 말에 추정된 경지면적과 비교하면 논은 83.8%, 밭은 79.1%가 증가하여 경지 전체로는 8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면적 증가는 은결이나 신개간지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1910년 말의 경지면적은 양안상의 결수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이 결수의 산정이 실제면적에 비해 낮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910년 말의 경지면적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고, 그것이 '사업' 에 의해 경지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게 한 요인이었다.

(32) 李在茂,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實體」, 『社會科學研究』 7-5, 1955; 신용하,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지식산업사, 1982..
(33) 조석곤,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있어서 所有權調査過程에 관한 한 硏究」, 『經濟史學』 10, 1986.



▲ 분쟁지조사

또한 '사업'의 결과 막대한 양의 국유지가 창출되었다. '사업' 직후의 국유지면적은 12만 7,331정보에 달하였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에 출자한 것까지 합하면 13만 7,225정보(2.8%)에 달하였다. 동척의 1918년의 소유면적은 7만 5,176정보(1.5%)이고, 국유지와 동척의 소유토지는 1918년 현재 전체 사정면적의 4.2%에 달하고 있다. 1918년 당시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과세지로 환산한 경우 전체의 7.5%에 달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본인은 조선 전경지의 1할 이상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종래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 조선농민에게는 잠재적 소유지와 다름없었던 미간지나 산림, 산야 등이 민유를 입증할 증거가 뚜렷하지 않는 한 모두 국유지로 편입된 것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용지인 철도부지나 도로 등의 건설과정에서도 많은 민유지가 편입된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분쟁지조사는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어온 분쟁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판별하는 작업이었다. 분쟁지조사는 1910년 9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총 3만 3,937건 9만 9,445필을 심사하였다. 총분쟁지 중 화해된 것은 1,058건 2,546필이고, 취하된 것은 1만 590건 2만 3,877필이었다. 나머지 중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631건 2,819필을 제외한 2만 1,658건 7만 203필에 대해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소유권 귀속을 결정하였다. 사정 총필수 1,910만 7,520필에 비하면 약 200필에 1필꼴로 분쟁이 발생한 셈이었다. 분쟁은 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국유지 분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시토지조사국의 사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대한 불복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해

재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사기관이었다. 1919년 6월 말 현재 접수된 2만 116건 중 난건으로 처리된 것은 3,959건이었다. 최초의 재결(裁決)은 1914년 8월 1일 공고되었으며, 1922년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1920년 8월 현재 접수된 불복신청 건수는 2만 148건이다. 이 중 취하된 건수는 9,388건, 반부된 건수는 1,414건이었다. 불복신청의 경우 취하 및 반부된 것이 전체의 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분쟁지처리와는 사뭇 달랐다. 이는 불복신청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불복신청지 중 사정되기 이전에 분쟁을 제기한 건수는 2,872건(14.3%)에 불과하였다. 원분쟁의 심사결과에 대해 3만 건 이상이 사정에 승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중 취하 및 반부된 것이 1,004건(34.9%)이고 사정이 취소된 것은 1,610건(56.1%)이었다. 이는 전체의 재결채용비율인 42.9%보다 높다.

분쟁지조사를 거쳐 소유권조사 및 지위등급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근거하여 사정을 실시하였다.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을 30일간 공시하도록 하였다. 사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여 그 재결을 구하도록 하였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사법재판에 회부할 수 없고, 토지조사 이전의 모든 관계는 사정에 의해 일체 단절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사정의 확정 혹은 재결이 서류의 위조와 같은 불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정의 공시는 1913년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에서 시작하여 1917년 10월 28일 평북 용천군 신도면 일부 지방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행정처분에 불과한 사정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없게 한 것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적 특징의 하나이다. 나아가 만일 사정내용이 그 이전의 증명 또는 등기와 저촉될 경우 증명 또는 등기가 말소되도록 정함으로써, 사정의 효력이 법률적인 결정보다 우위에 서는 형편이었다. 사정이 갖는 의미는 식민지 조선

의 모든 토지에 새로운 소유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종래의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정에 의해 이전의 소유관계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소유주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셈이 되었다. 사정에 불복할 경우도 역시 행정기관인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소청할 수밖에 없어 총독부의 의지대로 조선의 토지소유권은 개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작성된 토지대장은 등기제도창설의 기초 장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12년 법령의 정비, 통일과정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제도가 정리되었는데, '조선민사령' 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 · 상실 · 변경은 반드시 등기에 의거하도록 하였고, 그 등기의 방법은 '조선부동산등기령' 을 의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사업' 이 시작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등기제도의 시행은 토지대장이 완성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령은 이에 따라 1914년 5월 1일 경성부에서부터 시행되어 1918년 7월 1일 북부의 몇 개 군을 마지막으로 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부동산등기령의 시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절대적 · 배타적 소유권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토지상품화의 일반적 전개를 제한하는 주요한 법적 장애요인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지가조사와 지세부과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지가는 지위등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위등급은 수확고와 교통의 편부 · 수요의 다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위등급의 구분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백 평당 수확고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수확량의 차이에 따라 밭은 14급에서 특4급까지, 논은 22급부터 특4급까지로 규정하였다.

표준지의 선정은 그 지역의 중용이 될 만한 토지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제는 표준지의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표준지의 수확량은 최근 5개년 간의 평균수확량을 채택하되 그중 풍년이나 흉년인 해는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도록 하였다. 밭의 경우는 경작되는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 대해 표준지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지역별로 주요한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논의 경우는 재배품목이 대부분 벼이기 때문에 주요

작물 선정의 문제는 없었지만, 어느 품종을 경작하는 논이 표준지로 선정되는가는 중요하였다. '사업'에서는 재래품종을 경작하는 논을 표준지로 설정하고, 개량품종을 경작하는 논에 대해서는 수확량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 지위등급조사

각 필지별 지위등급의 조사는 각 지목에 대하여 수확고 및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면장이나 지주총대, 지주 등의 의견을 듣고 각 방면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 표준지와 비교하고, 그 우열을 판정하여 필지별 지위등급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까지는 외업반에서 담당하였다. 내업반에서는 군과 군의 균형이 대체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각 필지별 지위등급의 부여가 균형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하였다.

지가는 수익지가주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 순수입은 지위등급에 의해 결정된 조수입에서 경작비 명목으로 소작관습인 타조의 예에 의하여 50%를, 토지의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5%, 공과금 기타 토지의 부담금액 명목으로 지가의 3%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하여 정하였다. 이 순수입에 일정한 환원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지가는 1918년 지세령 개정에 의해 과세표준으로 이용되었다. 종래의 결부제에 의한 지세부과방식 대신 지가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었다. 이 1.3%라는 지세율의 결정은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34] 일제는 지세령 개정 시에 어느 정도의 지세를

(34) 宮嶋博史, 「朝鮮 土地調査事業 研究序說」, 『アジア經濟』 19-9, 1978.

거두어들일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산정된 지가로부터 그것을 역산해 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세의 급격한 증가에서 올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지주계급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지세령 개정의 결과 1918년의 지세는 전년에 비해 150여만 원, 1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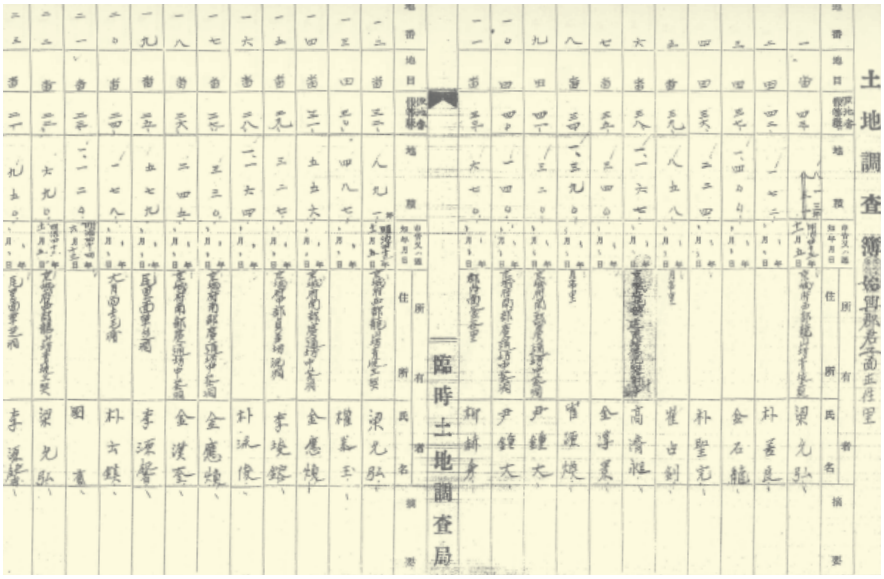
3. 시흥지역 토지조사사업

이제 시흥에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행을 보였는지 살펴보자. 사업의 전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지가조사의 실태까지 분석해야 하지만 현존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소유권조사와 분쟁지조사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절을 구성하는 데 이용한 자료는 시흥시 군자면, 소래면, 수암면 토지조사부이며, 특별히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토지조사부에 의거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시흥의 사정일은 1914년 10월 23일이었으며 사정 공시일은 10월 27일었다. 공시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며, 불복신청기간은 11월 26일부터 다음해 1월 24일까지였다. 하지만 토지신고서의 접수는 이미 1910년부터 시작하였다. 토지신고서의 접수일은 소래면의 경우 1910년 11월 중순부터 1911년 1월까지, 수암면의 경우 9월 중순부터 1911년 3월까지, 군자면의 경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접수되었다. 다만 오이도의 경우는 1911년 8월 19일에 대부분 접수되었다.[35]

국유지의 경우는 소관관청, 즉 탁지부에서 국유지통지서를 발송하고 그것이 토지신고서를 대신하였다. 국유지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항상 민유지신고가 끝난

(35) 토지신고서의 접수일은 토지조사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시흥시 『토지조사부』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 『토지조사부(갑)』는 가지번과 토지신고일을 적는 난이 있지만 『토지조사부(을)』에는 그것이 없어 가지번을 알 수 없다. 다만 토지신고일은 비고란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였다. 『토지조사부(갑)』의 양식으로 작성된 지역은 소래면의 대야 · 미산 · 방산리와 군자면 장현 · 장곡 · 정왕 · 군자 · 거모리 등이다.



▲ 오이도 『토지조사부』 내용

다음이었다. 국유지에 대한 통지는 소래면의 경우 대개 1911년 1월에 완료되었지만, 수암면은 1911년 4월부터 8월까지, 군자면의 경우는 1911년 4월 말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국유지통지가 가장 늦게 이루어진 곳은 하중리로 1911년 7월 9일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하중리 국유지통지가 늦어진 것은 하중리에 국유분쟁지가 많았던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토지조사사업시 무신고지 현황[36] (단위 : 필, 평)

면	임야		분묘지		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소래	3	1,230	5	2,107	8	3,337
수암	3	2,047	7	2,231	10	4,278
군자	3	2,956			3	2,956
계	9	6,233	12	4,338	21	10,571

(36) 『토지조사부』.

토지신고 및 국유지통지에서 누락된 토지들은 무신고지 또는 무통지지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유자조사를 벌였으며, 그 토지는 모두 국유지로 귀속되었다. 무신고지의 경우 조사일은 소래면의 경우 1911년 1월 및 2월, 수암면 물왕리는 3월, 하중리는 6월, 군자면의 경우는 5월 및 7월이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 시흥지역의 무신고지는 모두 21필지 1만 571평이었으며, 그중 임야는 9필, 분묘지가 12필이었다. 무신고지가 시흥시 총필지수 및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1% 및 0.06%였다. 이는 전국 무신고지의 비율인 0.05%보다는 높은 편이다.

무신고지가 모두 임야나 분묘지와 같은 지목에만 존재하는 것은 김해군에 대한 사례연구[37]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무신고지에는 정말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거나, 혹은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한 필지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무신고지 처리방식은 1908년 삼림법에 표현되어 있던 국유삼림 설정방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삼림법에서는 사유삼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지적도와 함께 자신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사유임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모두 국유로 귀속되었다. 토지신고 과정에서도 경지 사이에 산재하는 임야를 국유화하였고, 신고되지 않은 필지를 무신고지로 처리하여 국유로 귀속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업 당시 조사되었던 2,000만여 필지 중에서 무신고지로 처리된 것은 만 필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였지만, 임시토지조사국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사정방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필지별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한 조사와 그 필지의 지위등급 조사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공시되었다.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시흥의 토지소유상황에서 특이한 점의 하나는 소래면에 고종의 왕비였던 엄비 소유의 토지가 많다는 점이다. 엄비 소유지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필 23만 7,194평이었다. 이것이 소래면

(37) 조석곤,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있어서 所有權調査過程에 관한 한 硏究」, 『經濟史學』 10, 1986.

〈표 2〉 소래면 소재 엄비 소유토지현황[38] (단위 : 필, 평)

리별	전		답		대		임야		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과림	2	910	28	36,010					30	36,920
옥길			7	6,548					7	6,548
대야			1	1,408					1	1,408
은행			9	9,604					9	9,604
신천			1	1,397					1	1,397
미산	3	1,028	31	21,982			1	396	35	23,406
방산	2	486	7	5,981					9	6,467
안현	1	183	21	25,577					22	25,760
매화			42	65,966					42	65,966
도창			3	2,225					3	2,225
금이	3	671	17	14,323					20	14,994
무지	4	1,352	18	40,996	1	151			23	42,499
계	15	4,630	185	232,017	1	151	1	396	202	237,194

전체 필지수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3%와 2.9%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었다. 또 답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만을 생각하면 소래면 필지 및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7%와 5.2%에 이르렀다.

엄비 소유토지는 대개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월에 걸쳐 리별로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신고일과 동일하게 신고되었다. 이 토지들은 동척 소유지처럼 각 리별 소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과림리, 미산리 및 방산리에 소재한 엄비의 소유지는 원래는 '경선궁' 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되었다가 모두 '엄비' 로 수정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애초부터 엄비로 신고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토지들이 경선궁의 소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

(38) 『토지조사부』.



▲ 미산리 『토지조사부』의 엄비 소유지

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사실 경선궁은 엄비의 궁으로서 1896년에 창설되었다. 1912년 엄비 사망 후 덕안궁으로 개칭하고 이왕가의 소유로 하였다. 경선궁장토는 엄비의 사유재산으로 설정되었는데, 대부분은 경리원 소관의 아문둔토에서 이속된 것으로, 그 외 궁장토의 일부 이속, 왕실 내탕금으로 민전 매수, 민유지의 투탁 및 혼탈입 등을 통해 성립되었다. 1907년 이후 경선궁장토는 개인 또는 사립학교에 기부된 것이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강화군의 토지는 진명여학교에, 풍덕 · 이천의 토지는 양정의숙에, 부평군의 토지는 박창선(엄비의 종형)에게, 여주군의 토지는 엄주익(엄비의 조카), 양주군의 토지는 김학식에게, 평양부의 토지는 김규진에게 사여하였다. 1908년 칙령39호로 궁장토가 모두 국유로 귀속되었지만, 이장토 중 원래 엄비의 사유인 것은 이를 환부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조사한 후 사유로 인정한 것, 투탁지 및 혼탈입지로서 인민에게 돌려 준 것, 국유지로 편입한 것 등 3종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39] 1909년 8월 경선궁토지 중 사유로 인정된 것

(39) 和田一郎,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1920, 183~184쪽.

은 1,380.91정보이며 국유로 인정된 것은 620.54정보였다. 이 중 국유로 인정된 것은 재무감독국에 인계된 후 1910년 9월 모두 경선궁에 환부되었다.(40)

따라서 이 토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엄비의 사유지로 사정된 토지들로 보인다. 이 토지의 역사적 연원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일명 무사둔이라고도 칭했던 인천의 친둔(親屯)이 1900년 경선궁으로 이속되었는데,(41) 이때 엄비 소유지로 사정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다음으로 일본인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자. 일제 초기 시흥시에 일본인 토지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군자면에는 일본인 소유지가 없었으며, 소래면에는 임야 1필지, 수암면에는 전 2필지(217평)로 일본인 소유토지가 총 3필지에 불과하였다. 서울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보유토지가 거의 없는 것은 일본인의 농지 보유가 주로 삼남지방의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사정결과 확정된 시흥의 필지수와 면적은 1만 9,986필 1,637만 9,835평이었다. 이 중 국유지는 608필 92만 454평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0%와 5.6%였다. '사업'이 완료된 후 전국 경지의 필지수는 1,826만 5,915필지이고 면적은 446만 6,778정보였다. 또 역둔토 분필조사에 의해 확정된 역둔토 중 경지의 필지수는 55만 7,951필지이고 면적은 11만 9,281정보였으므로, 전국 수준의 국유경지의 비율은 필지수로는 3.1%였고, 면적으로는 2.7%였다. 따라서 시흥시의 경우 사정 직후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지수로는 전국 수준과 유사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두 배 정도의 규모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민유지의 지목별 특성과 비교할 때 국유지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국유경지의 지목별 분포를 보면 논과 밭의 국유지 비중이 필지수로는 2.8%와 3.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면적으로는 3.8%와 6.0%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국유지의 경우 논의 필지별 면적이 밭보다 넓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필지별 규모는 민유지에 비해 국유지가 논과 밭 모두 더 넓었

(40) 임시재산정리국,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1911, 39~40쪽.
(41) 조선총독부 중추원, 『국유지조사서초』.

다. 민유 밭의 1필지별 평균면적은 573평이며, 논은 1,003평이었던 반면 국유 밭의 1필지별 평균면적은 797평, 논은 2,080평이었다. 즉 국유지는 전체적으로 필지별 면적이 민유지에 비해 넓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논에서 현저한 반면 임야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민유 임야의 필지별 면적은 1,957평인 데 반해 국유 임야의 필지별 면적은 오히려 1,461평으로 더 작았다.

〈표 3〉 '사정' 완료 후의 시흥 국 · 민유지의 지목별 필수 및 면적 (단위 : 필, 평)

면	지목	국유지		민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소래면	전	106	95,143	3,500	2,158,549	3,606	2,253,692
	답	105	302,764	3,805	4,178,532	3,910	4,481,296
	대	30	10,676	543	206,782	573	217,458
	임야	9	4,661	547	1,133,855	556	1,138,516
	잡종지	7	8,799	18	18,643	25	27,442
	분묘지	5	2,107	141	70,408	146	72,515
	지소	0	0	6	1,366	6	1,366
	시사지	0	0	0	0	0	0
	소계	262	424,150	8,560	7,768,135	8,822	8,192,285
수암면	전	72	49,248	2,153	1,253,123	2,225	1,302,371
	답	96	141,933	2,058	2,044,752	2,154	2,186,685
	대	29	12,495	348	111,135	377	123,630
	임야	4	2,170	93	154,951	97	157,121
	잡종지	0	0	3	137	3	137
	분묘지	8	94,793	53	22,572	61	117,365
	지소	1	136	2	360	3	496
	시사지	0	0	1	237	1	237
	소계	210	300,775	4,711	3,587,267	4,921	3,888,042
군자면	전	60	45,220	2,738	1,396,824	2,798	1,442,044
	답	55	87,798	2,484	2,151,886	2,539	2,239,684
	대	12	2,204	589	119,810	601	122,014
	임야	5	19,471	219	391,919	224	411,390
	잡종지	4	40,836	0	0	4	40,836
	분묘지	0	0	72	31,097	72	31,097
	지소	0	0	5	12,443	5	12,443

면	지목	국유지		민유지		합계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군자면	시사지	0	0	0	0	0	0
	소계	136	195,529	6,107	4,103,979	6,243	4,299,508
합계	전	238	189,611	8,391	4,808,496	8,629	4,998,107
	답	256	532,495	8,347	8,375,170	8,603	8,907,665
	대	71	25,375	1,480	437,727	1,551	463,102
	임야	18	26,302	859	1,680,725	877	1,707,027
	잡종지	11	49,635	21	18,780	32	68,415
	분묘지	13	96,900	266	124,077	279	220,977
	지소	1	136	13	14,169	14	14,305
	시사지	0	0	1	237	1	237
	합계	608	920,454	19,378	15,459,381	19,986	16,379,835

둘째, 국유지 중 분묘지는 무신고지가 대부분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신고지는 국유지통지가 없었고 토지신고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그 소유자를 조사한 토지를 말한다. 일부 논자들은 무신고지의 존재를 사업에 의한 토지약탈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토지 중에는 사실상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들(예를 들면 임자 없는 묘지)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하겠다.

그럼 '사정'에 의해 파악된 면적은 조선시대 정부가 파악한 면적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사업' 이전에는 토지의 면적을 결수에 근거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면적은 절대면적이 아니고 그 토지의 생산성을 고려한 상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이를 절대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도별로 1결당 평균면적을 구하여 그것을 곱해 주었다. 일제가 추계한 경기도의 1결당 평균면적은 2.83정보였다.(42)

(42) 다른 지역의 추계치를 보면 충남과 전라도의 평야지대의 경우만 2정보 미만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2정보 이상, 특히 함경도의 경우는 4정보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결당 평균면적이 작을수록 그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러한 환산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러나 이 환산평균은 실제의 경지면적을 매우 과소평가하는 것이었다. 이 환산비율에 따른 종래의 과세지면적은 286만 7,518정보였으나, 사정결과 조사된 과세지 면적은 437만 6,362정보로 52%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경지면적의 증가는 종래의 결부제가 토지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표 4〉 시흥시 면별 경지의 결수 및 '사정' 면적 비교[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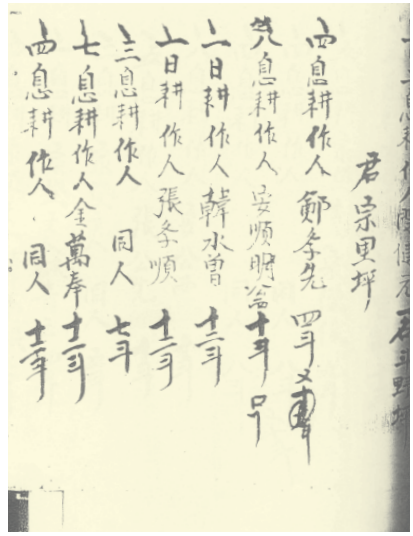
면	필지수	면적(평수)	면적(결수)	결당평균면적(정보)
소래	8,089	6,952,446	586.899	3.95
수암	3,614	2,994,271	230.505	4.33
군자	4,351	2,828,355	192.144	4.91
계	16,054	12,775,072	1,009.548	4.22

시흥시의 면별 경지면적의 평수와 결수를 비교한 위 표는 이러한 주장의 좋은 증거가 된다. 먼저 이 표의 작성방법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각 면별 필수와 면적(정보)은 각 면의 『토지조사부』에 의거하여 지목이 전, 답, 대지인 경우만 작성하였다. 면적(결수)는 규장각 자료인 『가례교시시각항기명기(嘉禮敎是時各項器皿記)』에 수록된 「현재경기도결수표(現在京畿道結數表)」에 나타난 결수인데, 이 자료는 1906년의 과세지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두 자료는 시간상으로도 10여 년의 격차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완전히 일치되는 자료는 아니다.[44] 우선 면적(결수)는 과세지로서 면세지가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과세지 중에는 사업 당시 잡종지나 지소로 분류된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전자의 규모가 후자보다는 더 컸을 것이므로 면적(결수)는 실제의 경지면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출된 1결당 평균면적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43) 필지수 및 면적(평수)은 『토지조사부』, 면적(결수)은 규20273, 『嘉禮敎是時各項器皿記』.

(44) 자료의 일치를 위해 수암면 토지면적(평수)에서는 능곡리와 화정리(과거 안산군 잉화면지역)를 제외하였고, 군자면에서는 거모리(과거 안산군 대월면지역)를 제외하였지만, 두 통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이 표의 수치는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결당 평균면적은 평균 4정보를 넘는다. 6등급 토지인 경우 1결은 4정보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이 표의 수치에 따르면 3개 면의 모든 토지는 6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설명이 된다. 그나마 군자면의 경우는 이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수치는 경기도의 평균결수에 비하면 약 5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결국 조선시대의 결수는 현실의 경지면적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예상 경지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동서역추수서류』의 군종리평 부분

그렇다면 시흥의 국유지는 어떤 역사적 기원을 가진 토지일까? 일부 임야나 분묘지처럼 신고되지 않아서 국유로 편입된 토지도 있지만, 경지의 경우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국유의 성질을 가진 토지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토지의 연원을 살피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시흥에서의 역둔토의 존재양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시흥에 존재한 역둔토는 크게 궁장토, 둔토, 역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역의 궁장토로는 명례궁과 용동궁의 장토가 있었으며, 둔토로는 석장둔과 장용영둔이, 그리고 중림역토가 존재하였다. 이 중 구한말 궁장토와 둔토 경영에 관해서는 『시흥시사』의 「광무양전사업과 국유지 정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정' 당시 국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 국유지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다.(45)

(45)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논의가 중복될 수 있겠으나, 이영호 교수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된 부분은 논의를 소략하게 줄인다. 또한 앞 글에서는 소유주체별로 논의를 정리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차이를 두고자 한다.

경지만을 대상으로 할 때 사정 이후 10필 이상의 국유지가 존재했던 동리는 소래면에서는 과림리(64필), 계수리(40필), 대야리(74필), 신천리(15필) 등, 수암면에서는 하상리(61필), 광석리(40필), 하중리(84필) 등이었고, 군자면에서는 장현리(18필), 장곡리(19필), 월곶리(12필), 정왕리(22필), 군자리(34필) 등이었고, 오이도에도 11필이 있었다.

소래면의 국유지는 중림역토와 관련된 토지들이었다. 중림역은 현재 과림리에 위치하였으며, 안산으로 가는 주요 역참의 하나였다. 1906년에 작성한 추수기를 보면 과림, 계수, 신천, 대야 등지에 속하는 지명들이 등장한다.(46) 해당지역의 국유지가 많은 것은 모두 중림역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림역토는 갑오개혁 이전에는 경저리인 최봉구가 수세를 담당하였으나 갑오개혁 이후 역토에서 도전을 납부하도록 방침이 변한 후에 농상공부에서는 새로운 마름으로 1895년 11월 박창보를 선임하였다. 그런데 박창보는 도조 납부와 관련하여 작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음이 당시의 소장에서 확인된다.(47) 역토 작인들의 소장에 따르면 박창보는 1896년 1월에 작인들에게 타작의 규칙으로 소작료를 거둘 것이며, 종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만일 종자를 받지 않으면 소작권을 옮길 것이라고 협박하여 작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종자를 받았다고 한다. 박창보는 도전을 선납한 후 그 차액을 더 얻기 위해 반분 타작의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종자도 미리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상공부는 작인에게 빌려 준 종자는 작인이 갚게 하고, 납세방식은 도조로 하도록 정리하였다.(48)

수암면의 국유지는 주로 용동궁둔과 석장둔토와 관련된 토지들이었다. 하상리의 토지들은 용동궁장토와 관련이 있으며, 하상리 · 광석리 · 하중리에는 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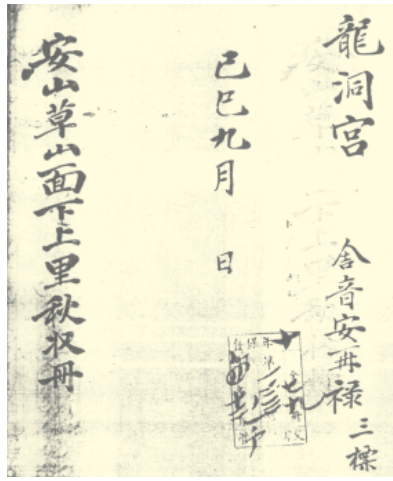
(46) 규21918, 『東西驛秋收書類』. 예를 들면 중림평 · 군종리평 · 불아위 등은 과림리, 내곡 · 후곡 등은 계수리, 사천장은 신천리에 있는 지명들이다.

(47) 규17895, 농상공부 농무국, 『驛土所關訴題存』 2. 1896년 9월에서 11월 관련 기사.

(48) 박창보는 이때 납부한 도조 200원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가기도 한다. 1901년 탁지부에서는 1896년 도조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잡아 가두었는데, 박창보가 농상공부에 자신의 납부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농상공부의 확인을 받았다(규17898-1, 농상공부, 『驛訓指』 2-6, 8책, 1901.4.4.). 그러나 그 후에도 풀려나지 않은 듯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6월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황성신문』 1901년 6월 5일).

둔토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49)

1875년에 작성한 용동궁장토의 양안에 따르면 초산면과 마유면지역에 모두 18.495결의 토지가 있었다.(50) 이와는 다른 자료이지만 1869년의 용동궁장토 수조기록에 따르면 초산면 하상리(일제시기 수암면 하상리)는 타조 195석 12두 5홉, 중직동(일제시기 하상리)은 타조 89석 6두 1승이었으며, 마유면 장종리(일제시기 군자면 장곡리)의 토지는 타조 79석 6두 2승이었다.(51)


龍洞宮
己巳九月 日
舍音安井祿 三楳
安山草山面下上里秋收冊

▲ 용동궁 마름 안재록이 기록한 추수기

그런데 일제하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조사한 국유지자료에 따르면 초산면 마유면의 용동궁장토는 1866년에 매입한 것으로 면적은 2.68결이었고 도장은 신석효였다. 또 잉화면(수암면 능곡리, 화정리지역)에도 0.638결의 장토가 있었는데 이는 유래가 오래된 장토였다. 이 토지들은 임시재산정리국의 재산 정리과정에서 신석현을 납가도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토지들은 위치는 동일하지만 면적은 큰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용동궁장토 중 무토의 성질을 지닌 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사정' 결과를 보면 능곡리와 화정리에는 국유경지가 각각 2필지와 1필지만 있었으며, 이는 0.638결이 되기는 부족한 면적이었

(49) 산현리의 국유지 5필지는 장용영의 둔토였는데, 이는 군자면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50) 규18194, 『安山郡草山馬遊兩面所在 龍洞宮買得田畓改打量案』. 초산면에 14.769결, 마유면에 3.726결이 있었다. 합계에 오차가 있다. 총합계는 18.751결(전 5.378, 답 13.373)이지만, 실제 합산하면 18.495결(전 5.191, 답 13.304)로 0.256결(전 0.187, 답 0.069)의 차이가 난다.

(51) 규19299, 『경기도장토문적』, 63책. 그 외에도 용동궁의 추수책은 꽤 많이 남아 있다. 마름 안재록이 작성한 1905년 하상리의 추수기(규20558, 『龍洞宮安山草山面下上里秋收冊』)나 1907년 감관 이경수가 작성한 하중리의 추수기(규21976, 『安山草山面下中里秋收冊』), 1870년 마름 지종택이 작성한 중직동(현 하상동)의 추수기(규20561, 『安山草山面中職洞秋收記』) 등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영호, 「광무양전사업과 국유지 정리」 참고.

다. 또한 국유지 정리과정에서 임시재산정리국에 제출한 서류들 중에는 전반면 소재 용동궁장토의 개인문기들[52]과 잉화면 소재의 토지들에 관련된 것[53]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소래면 금이리와 도창리에 소재한 토지들이며, 후자는 수암면 능곡리와 도창리에 소재한 토지들이다. 이들 지역에 국유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소재한 토지들은 무토의 성격을 가진 장토였으며, 그 때문에 민유 환급을 위해 증거자료로서 문기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54]

이러한 토지환급의 증거는 임시재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내각에 보낸 서류[5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13회 위원회의 회의록인데 그 내용 중에는 "전 투탁도장 및 작도장 중 사토 혼입이나 궁방에게 탈입된 12건의 토지를 환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산면 마유면에 있는 용동궁장토 중 정원규 등 6인의 답 1석 11두락 및 전 0.074결, 황봉우의 전 0.187결, 권경의 전 0.035결 등이 환급되었다. 이들 토지가 환급된 이유는 병인년(1866)에 용동궁 도장 신영조가 해당 장토 부근에 있는 민유지를 공토라 늑탈하였다는 해당 주민의 청원이 있어 양안과 추수기 등 일체 서류를 대조한 결과 궁과 관계없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환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재산조사국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0년 이내에 탈입된 것만 환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단 신청한 것 중에 20년 이전에 탈입되었더라도 탈입 이후 계속 돌려줄 것을 청원한 경우는 확인 후 돌려주기로 하였다.[56] 결국 이러한 환급은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농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52) 규19299, 『경기도장토문적』 중의 13책.

(53) 규19299, 『경기도장토문적』 중의 63책.

(54) 규27237, 『仁川府田反面所在畓衿記』에 나타난 오동근 소유지 관련 깃기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1911년 9월에 작성한 깃기로 소유주는 경성부의 吳東根이며, 마름은 金永信으로 도두리전평에 소재한 답 6석 7두락과 전 15두락을 담당하고 있음을 도두리장인 백선기가 증명하고 있다. 답은 2.174결이고 전은 0.226결 합 2.4결이다(도두리는 일제초 도창리에 속함). 실제로 깃기에는 61필에 관한 수세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오동근은 도창리와 금이리에 모두 22필지 22,137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55) 규17827, 내각, 『財産調査局來去文』, 1책(1908.1.30.).

(56) 규17827, 내각, 『財産調査局來去文』, 1책(1908.3.4.).

석장둔토는 18세기 초부터 진휼청에서 제언을 막아서 둔토를 개간해 온 것으로 인천부 신현면과 안산군 초산면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석장둔은 원래 양향둔에 속해 있다가 각종 영 · 진의 폐쇄 이후 소속 둔토를 각 군에서 관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안산 석장둔도 수원둔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수원둔에 소속된 일부 토지와 함께 1896년 9월 궁내부 관하로 이속되었고,(57) 1901년에 모두 내장원에 이속되었다.

이제 군자면의 국유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군자면 장현리와 월곶리 · 정왕리의 국유지는 앞서 설명한 석장둔토와 관련이 있으며, 장곡리의 국유지는 용동궁의 장토, 장용영의 둔토와 연관되어 있다. 군자리의 국유지는 장용영둔토, 오이도의 국유지는 내수사둔토와 연관되어 있다. 그 외 명례궁의 둔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58) 이 중 용동궁장토와 석장둔토는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장용영둔과 내수사둔에 대해 설명한다.

장용영둔은 원래 1789년에 설치되었으나 1802년 영 폐지 이후 수원부에 속해 있다가 1896년 선희궁으로 이속하였고 다시 1901년 내장원에 속하였다.(59) 1827년에 수원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용영둔은 초산면 5필지 0.33결, 마유면 52필지 1.463결, 합 57필지 1.793결의 규모였다.(60) 구체적인 소재지는 초산면의 궤곡리(일제시기 수암면 산현리), 마유면의 구지정(일제시기 군자리)과 장종리(일제시기 장곡리)였다.

오이도에는 모두 11필지의 국유 경지가 있었는데 이는 내수사의 둔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이도의 내수사둔은 전 1-16두락, 답 10-5승락의 규모였는데 이 중 정용섭이 도장인 0.704결은 대빈궁에서 이래한 토지이며, 2.360결은 귀인방에서 옮겨온 토지이지만 갑오개혁 이후 승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61)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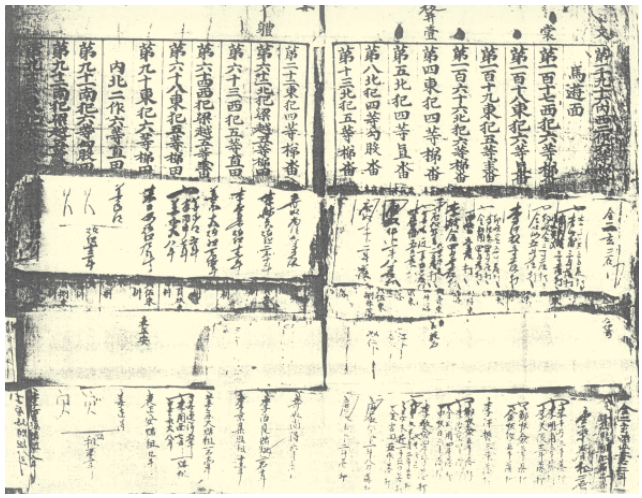
(57) 규18154, 『공문편안』 34. 1896.9.23.

(58) 명례궁장토에 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임시재산정리국의 도장정리서류를 보면 마유면에 4.373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도장은 김문환이었으며, 환급을 받은 도장은 김재원이었다.

(59) 조선총독부중추원, 『국유지조사사초』.

(60) 규18673, 『安山郡所在壯勇屯田畓査正量案』.

(61) 조선총독부중추원, 『국유지조사사초』.



▲『안산군소재장용둔전답사정양안』 마유면 부분

이 국유지들은 대빈궁의 장토에 그 기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업' 당시 시흥의 분쟁지에 대해 살펴보자. 시흥의 분쟁지는 190필 20만 9,269평이었다. 시흥의 총필수는 1만 9,986필이었으므로 총필수의 1.0%가 분쟁과 관련된 토지였다. 전국의 사정필수는 1,910만 7,520필이었으며, 그중 분쟁지는 9만 9,445필지로 약 0.52% 정도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시흥은 분쟁지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5〉는 시흥의 분쟁지를 분쟁호수별로 정리한 것이다. 분쟁 183호는 모두 수암면 하상리의 분쟁지이며, 분쟁 184호는 하중리의 분쟁지였다. 분쟁 을456호도 하중리의 분쟁지였으며, 나머지 두 건의 분쟁은 각각 소래면 매화리와 옥길리의 분쟁지였다. 특히 하중리의 경우는 전체 리 필지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쟁지였을 정도로 대규모 분쟁이었다. 토지조사부에는 분쟁지심사의 결과 소유자로 확정된 자만이 기재되기 때문에 토지조사부의 기록만으로는 국가가 관련된 분쟁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모든 분쟁지의 사정인이 민간인이었으며, 분쟁 183호와 184호는 대규모 분쟁이라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가 조선총독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지역은 용동궁장토나 석장둔토가 광범하게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국유지분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용동궁장토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지역의 용동궁장토는 무토, 혼탈입지가 많아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토지였다. 석장둔토의 경우도 이러한

〈표 5〉 시흥시 호수별 · 지목별 분쟁지[62]

분쟁지		전		답		임야		분묘		계	
호수	접수일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183	1910. 9.22.			38	49,017					38	49,017
184	1910. 9.20/21.			147	157,087	2	1,993			149	159,080
을133	1913.10.17.							1	278	1	278
을412	1911.12.08.	1	742							1	742
을456	1910. 9.21.			1	152					1	152
계		1	742	186	206,256	2	1,993	1	278	190	209,269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다. 1895년 11월 탁지부에서 인천부로 보낸 공문을 보면 안산의 석장둔토 작인들이 민결의 예에 따라 결전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도조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도조의 납부를 독촉해 줄 것을 인천부에 의뢰하고 있었다.[63] 이는 해당지역의 둔토 중에 사실상의 민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 토지들에 대해 분쟁지조사위원회는 모두 민간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부 용동궁장토에 대해 토지를 환급해 준 임시재산정리국의 결정방식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지조사과정의 영향을 받은 듯 시흥시 불복신청지는 2건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1915년 5월 결정된 군자면 장현리의 소유권분쟁과 1915년 10월에 결정된 수암면 하중리의 경계분쟁이었다. 해당 분쟁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관보에 재결서가 기재되어 있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64]

먼저 소유권분쟁의 건은 군자면 장현리에 거주하는 정동섭의 불복신청에 대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결정이다. 불복신청인은 원래 자기 토지를 지주총대가 잘못 안내하여 장현리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장현리장 권준영, 군자면장 김현광, 시흥군수 홍종국이 연서로 토지소유권명의정정승락서를 제출하였

(62) 『토지조사부』.
(63) 규18154, 『공문편안』, 1895.11.13.
(64) 『조선총독부관보』 1915.5.14; 『조선총독부관보』 1915.10.4.

다. 그런데 임시토지조사국 '사정' 시에는 정동섭은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장현리 관리인 유주환의 토지신고로서 장현리 소유로 사정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정' 당시에는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증거를 갖추어 불복신청을 하면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었다. 다음 경계분쟁의 건은 인접한 두 필지인 답의 경계를 조정한 것이었다. 이는 관계지주 김응환과 김창석의 연서로 정정도면을 첨부하여 불복신청하였으며,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이상의 분쟁지처리와 관련된 시흥의 사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분쟁지의 대부분은 국유지분쟁이었지만, '사정' 결과는 민유지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쟁지가 190필로 적지 않은 숫자였지만 이 중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한 필지는 한 필도 없었다. 분쟁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김해군의 사례연구[65] 에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그러한 경향은 이미 분쟁지심사위원회의 경우에서도 그 단초를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참고자료

『토지조사부』.

임시재산정리국,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 1911.

조선총독부중추원, 『국유지조사서초』.

『高等土地調査委員會事務報告書』, 1920.

『조선총독부관보』.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

『황성신문』.

규17827, 내각, 財産調査局來去文.

(65) 조석곤,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있어서 所有權調査過程에 관한 한 硏究」, 『經濟史學』 10, 1986.

규17895, 농상공부 농무국, 『驛土所關訴題存』.
규17898-1, 농상공부, 『驛訓指』.
규18154, 『공문편안』.
규18194, 『安山郡草山馬遊兩面所在 龍洞宮買得田畓改打量案』.
규18673, 『安山郡所在壯勇屯田畓査正量案』.
규19299, 『경기도장토문적』.
규20273, 『嘉禮敎是時各項器皿記』.
규20558, 『龍洞宮安山草山面下上里秋收册』.
규20561, 『安山草山面中職洞秋收記』.
규21918, 『東西驛秋收書類』.
규21976, 『安山草山面下中里秋收册』.
규27237, 『仁川府田反面所在畓衿記』.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序說」, 『アジア經濟』 19-9, 1978.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 1991.
和田一郎, 『朝鮮土地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 1920.
李在茂,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實體」, 『社會科學研究』 7-5, 1955.
배영순, 『韓末 · 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신용하,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지식산업사, 1982.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제22호, 1993.
조석곤, 「朝鮮土地調査事業에 있어서 所有權調査過程에 관한 한 研究」, 『經濟史學』 10, 1986.
조석곤,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조석곤,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제도의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100년사』, 2006.

조석곤 |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장 임야조사사업과 삼림조합

일제는 조선을 병합한 이후 곧바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수탈을 준비하였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많은 면적의 토지에 배타적인 소유권이 확립되었고 이들 토지에 많은 액수의 지세가 부과되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사실상 조선인에게 일제의 조선통치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런데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인 1917년부터 임야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24년까지 시행된 임야조사사업은 조선인들의 임야소유권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法認)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많은 면적의 임야가 주인을 찾아 법적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일제에 의하여 임야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야에 대해서는 등기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산림천택에 대해서는 '여민공리(與民共利, 백성과 더불어 그 이익을 공유한다)' 의 원칙에 따라 삼림의 개인소유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성리학자들이 유학의 경전으로 여기고 있던 『맹자』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조선후기 이래 권세가 및 양반가의 사점이 진행되어 실질적으로는 임야소유권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제적으로 임야는 어디까지나 공유, 공용의 대상이었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소유를 인정한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한 직후 고종에 의하여 실시된 광무양전사업 당시에 임

야에 대해서도 등기제도 실시가 고려되었다. 조선 후기 이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야점유 관행을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이전의 점유권자에게 등기를 발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됨에 따라 이러한 방침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17년 일제가 임야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실상 대한제국의 광무양전이 추구하던 목표를 실천한 것에 불과하였다.



▲ 임야조사

일제가 이렇게 조선인의 임야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에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한 이면에는 조선인에게 통치비용을 그대로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었다.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일제는 조선인들이 소유한 임야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대부'의 방법으로 실질 점유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임야의 치산비용과 기타 통치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하 시흥군 임야조사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시흥시의 영역은 일제시기 행정구역으로 따질 경우 시흥군 수암면 · 군자면지역과 부천군 소래면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는 임야조사사업 실시 1년 후인 1918년부터 1923년에 걸쳐 임야조사사업이 실행되었다.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부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기타 관련 문서가 다수 남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지역 임야조사의 결과와 그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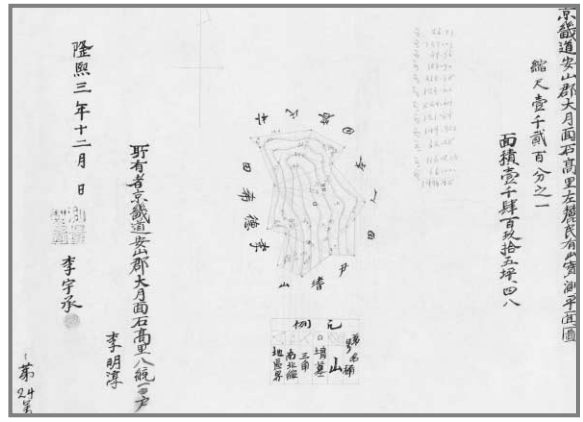
1.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배경

일제는 러일전쟁 직후 조선을 보호국화하면서 삼림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수탈에 나섰다. 1907년 3월 일제는 법률 제24호로 한국삼림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조선정부와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조선 내 삼림자원 수탈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다음 주요 삼림지역에 대한 벌채사업을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통감부영림창 관제를 만들어 본격적인 삼림자원 조사 및 관리에 돌입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수탈대상이 된 삼림은 두만강과 압록강 및 대동강 유역의 산림이었다. 이들 지역의 울창한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 일본으로 이출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 이외 임야에는 직접적으로 수탈할 만한 목재가 그리 흔치 않았는데, 일제가 원하는 아카시아, 포플러 등의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았고 전체적인 식재면적도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보잘것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로서는 이들 임야를 국유, 즉 일제의 소유로 빼앗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리 많지 않았다.

사실 일제의 삼림정책은 나무를 직접 벌채해서 빼앗아 가는 것에 집중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첫째, 자신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수종으로 임상을 개량하는 작업, 둘째 일본으로 식량을 수탈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의 안정화와 이를 위한 홍수피해 방지, 셋째 지방재원 마련 등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선인 소유의 임야를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면적의 임야를 조선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 대신 조선인에게 식림을 강요하거나 삼림녹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제로 지키게 하면서 각종 세금을 거두어들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제는 사실 1908년부터 삼림법을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수탈책을 수립하였다. 1908년 발표된 삼림법을 통해 일제는 1911년까지 임야소유자로 하여금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소유임야에 대한 소유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포된 삼림법에는 제19조에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地籍)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어, 만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국유지로 강제 편입하게끔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에는 임야 등기제도가 설정되지 않았고 관행적인 문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밝히는 정도였다. 일제는 이를 문제삼고 먼저 임야 소유권자를 확인한 후 이에 등기를 발부하고 법적인 보호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삼림법 시행과 아울러 모든 소유자는 해당 임야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각종 문서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임야의 소유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유지로 강제 편입되었다.





〈그림 1〉 안산군 대월면 석고리 민유산 약도 ①(1909)
〈그림 2〉 안산군 대월면 석고리 민유산 약도 ②(1909)

1911년까지 소유권신고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령이 발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삼림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임야소유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일제의 조치에 따라 1911년까지 소유권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52만 건에 이르렀고 면적으로 따지면 조선 내 전체 임야 1,600만 정보 가운데 220만 정보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삼림법에 규정된 소유권신고를

행한 임야소유자가 적었던 것은 소유권신고서 제출 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지적도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한 행정조치로 임야소유자가 과도한 액수의 측량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임야조사가 끝나게 되면 임야소유자에게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임야소유자의 다수는 측량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없어서, 혹은 장래에 매겨질 세금이 두려워서 신고를 기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 시흥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시흥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현 시흥지역 전체 삼림 가운데 15%만이 1908년 당시에 소유권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일제시기 시흥군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임야를 소유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관습이 굳어져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시흥군지역은 장작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서울에 인접하였기 때문에 동대문 등지에 개설된 장작시장에 땔감을 내다 파는 '나무꾼' 이 많은 편이었다. 나무꾼들에게 임야는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계유지의 수단이었다. 이로 보건대 이들에게 임야의 소유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음이 틀림없는데도 1911년까지 전체의 15%만이 소유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수암면, 군자면, 소래면 일대에서 큰 세력을 가진 사족이 그리 많지 않아 대규모 임야를 소유한 경우가 많지 않았고, 소유자의 대부분은 적은 면적만을 소유한 영세농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시흥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세 임야소유자가 많은 편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측량비를 스스로 조달할 형편이 아니었다. 자연히 소유권신고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시흥지역 외에 전국적으로도 소유권신고는 부진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소유권신고서가 제출된 삼림 중에서도 실제 그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은 곳은 소수였다. 왜냐하면 1912년 1월에 일제가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 · 사유 구분표준' 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인정의 기준을 상당히 엄격히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일제가 국유 · 사유림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한 표준은 첫째 조선시대 이래 결수연명부(세금징수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지

않더라도 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실하여 예전부터 국가에서 그 소유를 인정한 흔적이 있는 곳, 둘째 관청으로부터 문서를 발급받아 사유로 완전히 인정받은 적이 있는 곳, 셋째 1912년부터 1918년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임야의 일부가 토지에 편입되어 등기가 발부된 곳, 넷째 조선시대에 왕실로부터 사패(賜牌)를 받은 곳, 다섯째 관청으로부터 대여 혹은 양도를 받았다는 증서가 남아 있는 임야, 여섯째 1908년에 순종황제에 의하여 발표된 칙령 39호 '궁내부소관 및 경선궁 소속 재산의 이속 및 황실채무정리의 건' 에 따라 황실로부터 채무변제의 명목으로 기증받은 임야 등이었다. 즉 이들 사항 중 하나에 속하면 임야소유권 신고서 제출과 함께 그 소유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는 이들 기준 외에도 특별규정을 만들어 임야소유권신고서 제출지라고 하더라도 평균입목도가 임야면적의 10분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임야에 소재한 나무의 수령이 평균 10년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아무리 사유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야 내 수목의 평균수령이 높지 않으면 사유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삼림법 시행 결과 사유림이라도 국유림으로 편입된 곳이 많았다. 시흥지역에서도 이러한 강제적인 국유림 편입 흔적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수암면 광석리의 경우 해당 마을 소재 임야 필지의 10%가량만이 평균입목도 10분의 3을 초과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해당 마을의 임야 대부분은 국유지로 강제로 편입된 것이다.

이렇게 1908년부터 1911년 사이에 삼림법 규정에 따라 많은 면적의 국유림이 강제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제는 국유림면적을 늘리는 데 관심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는 국유림이 많아질 경우 그 관리에 들이는 비용이 가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임야의 대다수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늘어난 국유림을 차츰 민간에 대부하거나 양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192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사유림을 늘려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먼저 1911년 무렵 자체적으로 임야의 국유, 민유 상황을 간단히 파악하는 임적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일제는 임야의 상당수가 본래부터 소유자가 있는 사유림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나아가 사유림인 것으로 확인된 임야 중 국유로 강제 편입된 곳을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돌입하였다.

물론 일제가 무조건 원 소유자에게 임야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일제는 우선 '구분조사' 라는 이름으로 국유림을 다시 요존 · 불요존 국유림의 두 종류로 나눈 후에 불요존림이라고 구분된 곳만 민간에 양도하였다. 이때 원래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그리고 원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본인이나 임야 부근의 주민 등에게 대부 · 양도하였다. 여기서 '대부' 라는 것은 '조림대부' 를 의미하는데, 이는 임야를 몇 년의 약정기간을 통해 빌려 준 다음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식림이 성공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대부자에게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였다. 이 조림대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일제는 1911년에 삼림령을 발표하였다.

조림대부제도는 오직 불요존림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다. 불요존림이란 나무가 그리 많지 않고 수종도 경제성이 떨어져 국유림으로 계속 둘 필요가 그리 높지 않은 임야를 의미하는데, 이 불요존림에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제1종 불요존림은 해당 국유림에 원래의 소유자 등 특별한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제2종 불요존림은 원래 소유자가 있는 국유림을 의미하였다.

제2종 불요존림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대부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일제시기 시흥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소수였고 대부분의 임야가 제2종 불요존림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조림대부제도를 통해 임야를 소유하게 된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시흥지역에서 일본인에게 임야가 대부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국유림은 거주민에게 대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제는 식수를 장려하는 수종으로 그들이 원하는 포플러, 아카시아 등을 선정하였고, 해당 수종이 잘 자라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소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나아가 조림대부자가 대부림에 입산하여 그 산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따라서 대부자가 해당 임야에 들어가 마음대로 장작을 채취할 수 없었다.

조림대부가 이루어진 시흥지역의 임야에서도 초기에는 포플러, 아카시아 나

무가 다수 식재되었다. 아카시아는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뿌리의 생장력이 빨라 주위의 나무를 고사시키는 부작용을 지닌 수종이다. 따라서 일제에 의하여 국유림으로 편입된 이후 다시 식림을 대가로 조림대부된 곳의 다수가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금도 시흥시 산지에는 당시에 식재된 아카시아가 일부 자생하고 있어 그때의 피해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당시 일제는 조림대부제도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없다고 파악한 듯하다. 1908년에 소유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유림으로 편입된 지역은 일제에 의하여 조림대부가 이루어지고, 조림대부 산야도 계약체결 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림계획서에 따라 일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식림을 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8년에 신고서를 제출한 지역(시흥시의 경우에는 15%)에서 임야소유자가 임의대로 자기소유 임야를 관리, 이용하는 것에 간섭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일제는 아예 광범위한 통제를 펼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삼림조합을 결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임야소유자를 모두 삼림조합에 가입시키고 삼림조합에서 조직적으로 조선인 소유의 임야를 감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임야소유자를 다시금 확인하여 이들에게 등기를 발부하고 그 대가로 삼림조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2. 시흥지역 임야조사사업

일제는 1917년부터 1924년에 걸쳐 임야의 소유권자를 다시 확정짓는 임야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임야조사는 부윤, 면장이 도장관의 지휘하에 조사예정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임야를 소유한 권리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이 조사사업을 통하여 상당수의 임야가 민유

림으로 구분되었다. 즉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국유림이 되었던 곳이 이 사업으로 다시금 민유림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흥지역 임야조사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일제시기 시흥군 군자면 · 수암면, 부천군 소래면의 『임야조사부』에 나타난 임야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시흥군 군자면 · 수암면과 부천군 소래면 국유 · 민유림별 면적[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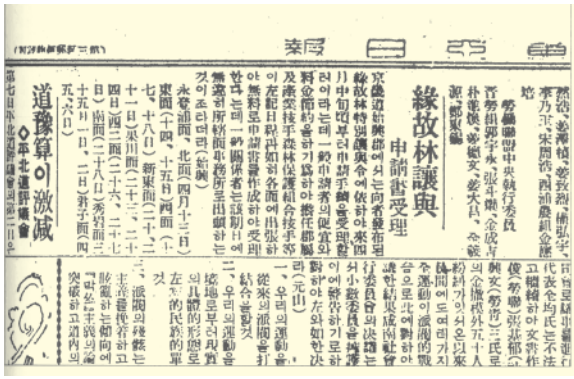
(단위 : 정보)

지역	구분	전체임야(A)		민유림 면적 및 비율(B)			국유림 면적 및 비율(C)			국유림 중 연고자가 있는 임야의 면적과 비율(D)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전체면적 대비비율(%)	필지	면적	전체면적 대비비율(%)	필지	면적	국유림면적 대비비율(%)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101	92.60	78	76.78	82.9	23	15.82	17.1	23	15.82	100
	장곡리	85	86.49	82	85.02	91.8	3	1.47	8.2	3	1.47	100
	월곶리	153	282.20	127	233.61	82.8	26	48.59	17.2	25	45.55	93.7
	정왕리	145	295.97	139	277.05	93.6	6	18.92	6.4	5	14.52	76.7
	군자리	194	278.08	173	207.04	74.5	21	71.04	25.5	21	71.04	100
	거모리	174	165.29	159	134.53	81.4	15	30.76	18.6	13	16.46	53.5
	선부리	172	320.90	147	271.14	84.5	25	49.76	15.5	25	49.76	100
	원곡리	122	132.72	105	118.52	89.3	17	14.20	10.7	17	14.20	100
	신길리	73	98.81	65	94.88	96.0	8	3.93	4	7	3.80	96.7
	성곡리	78	103.27	76	102.05	98.9	2	1.22	1.1	2	1.22	100
	목내리	131	120.88	128	120.00	99.3	3	0.88	0.7	2	0.50	56.8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49	242.89	38	139.59	57.5	11	103.30	42.5	2	10.36	10
	장상리	80	170.90	80	170.90	100	0	0	0	0	0	
	장하리	44	96.86	28	67.89	70.1	16	28.97	29.9	16	28.97	100
	부곡리	59	321.33	56	317.84	98.9	3	3.49	1.1	3	3.49	100
	성포리	71	162.50	61	141.48	87.0	10	21.02	13.0	10	21.02	100
	양상리	82	257.95	67	222.06	86.0	15	35.89	14.0	15	35.89	100
	능곡리	78	102.35	68	90.41	88.3	10	11.94	11.7	10	11.94	100
	화정리	120	243.45	96	195.72	80.4	24	47.73	19.6	24	47.73	100
	조남리	123	391.14	94	334.97	85.6	29	56.17	14.4	27	55.70	99.1

(66) 시흥군 군자면 · 수암면, 부천군 소래면의 『林野調査簿』를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다. 짙은 색 글씨로 표시된 지역이 현 시흥 영역에 해당한다.

지역	구분	전체임야(A)		민유림 면적 및 비율(B)			국유림 면적 및 비율(C)			국유림 중 연고자가 있는 임야의 면적과 비율(D)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전체면적 대비 비율(%)	필지	면적	전체면적 대비 비율(%)	필지	면적	국유림면적 대비 비율(%)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	71	108.26	59	78.36	72.3	12	29.90	27.7	12	29.90	100
	물왕리	65	121.00	53	79.68	65.9	12	41.32	34.1	12	41.32	100
	산현리	77	331.38	64	284.64	85.9	13	46.74	14.1	13	46.74	100
	광석리	42	152.30	19	14.96	9.8	23	137.34	90.2	23	137.34	100
	목감리	98	156.64	81	131.45	83.9	17	25.19	6.1	16	23.60	93.7
	하상리	19	30.43	8	2.07	6.8	11	28.36	93.2	11	28.36	100
	하중리	41	43.63	14	6.02	13.8	27	37.61	86.2	27	37.61	100
	와 리	81	175.52	72	166.02	94.6	9	9.50	5.4	9	9.5	100
	고잔리	98	174.86	63	96.01	54.9	35	78.85	45.1	34	78.16	99.1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172	326.38	130	183.79	56.3	42	142.59	43.7	41	140.50	98.5
	은행리	41	60.63	34	53.17	87.7	7	7.46	12.3	6	6.41	85.9
	신천리	28	88.25	22	79.19	89.7	6	9.06	10.3	6	9.06	100
	미산리	50	102.54	40	80.80	78.8	10	21.74	21.2	10	21.74	100
	방산리	116	166.73	62	53.20	31.9	54	113.53	68.1	54	113.53	100
	포 리	85	94.12	43	44.26	47.0	42	49.86	53.0	42	49.86	100
	안현리	57	134.62	32	35.69	24.3	25	98.93	75.7	25	98.93	100
	매화리	44	101.71	26	54.89	54.0	18	46.82	46.0	18	46.82	100
	도창리	78	76.21	69	66.74	87.6	9	9.47	12.4	9	9.43	99
	금이리	144	293.62	74	161.66	55.0	70	131.96	45.0	70	131.96	100
	무지리	62	107.09	54	89.04	83.1	8	18.05	16.9	8	18.05	100
	과림리	91	187.10	52	118.28	63.2	39	68.82	36.8	38	65.05	94.5
	옥길리	123	159.39	92	104.11	65.2	31	55.28	34.8	31	55.28	100
	계수리	145	313.86	103	247.03	78.5	42	66.83	21.5	42	66.83	100

〈표 1〉에 나타난 임야의 면적을 합산해 보면 군자면, 수암면, 소래면 일대의 임야는 모두 3,595필지이며 그 면적은 약 7,500정보에 이르렀다. 이 7,500정보의 임야 가운데 75.1%에 해당하는 임야가 일제에 의하여 사유림으로 인정받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갔고 해당 소유자에게 등기증서가 발부되었다. 그 외의 나머지 24.9%는 국유림으로 귀속되어 조선총독부가 계속 소유하게 되었다. 임야조



緣故林讓與
申請書受理

道豫算이激減

▲ 연고림 양여에 관한 신문기사(『동아일보』 1927년 2월 25일)

사사업을 통하여 시흥시 관내 임야의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귀속된 셈이다. 시흥 관내에는 사유림, 국유림 이외에도 공유림(公有林)이 소수나마 있었는데,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군자면 장현리의 공동묘지와 소래면 대야리 산20번지, 포리 산11번지, 매화리 산28번지 등이 면이 소유하는 공유림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제는 1908년에 한 차례 소유자를 조사한 바 있었는데 『임야조사부』에는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 소유권신고서가 제출된 임야필지에 소유권신고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908년에 삼림법 시행으로 임야소유권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 시흥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가 지적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권을 인정받은 곳은 수암면 154필지, 군자면 139필지, 소래면 120필지로서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임야조사사업 결과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 국유림이 되었던 임야가 다시 민유로 인정받은 경우가 매우 많았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보면 삼림법 시행 직후보다 국유림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

시흥지역 임야 중 임야조사사업 이후 국유림으로 그대로 남은 곳 중에 상당히 많은 임야가 이후에 점차적으로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 즉 조선인 원소유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암면 광석리의 경우 9.8%만이 사유림인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면적(마을 소재 임야의 90.2%)이 국유림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을 소재 국유림의 전부가 연고림(원래 소유자가 있으나 삼림법 시행 당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유림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

고 원소유자에게 이 임야를 모두 대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조림대부가 이루어지면 먼저 당국에 식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식림이 계획서대로 이루어지면 소유권 자체가 이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임야는 차츰 원소유자에게 돌아갔다.

광석리 이외에도 국유로 편입된 산이 많은 마을 대부분은 국유림에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들 원소유자(연고자)에게 모두 대부되었다. 수암면 수암리와 군자면 정왕리, 거모리, 목내리, 소래면 은행리를 제외한 모든 마을에서 국유림의 90% 이상이 연고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대부분은 『임야조사부』에 연고자에게 이미 대부된 상태이거나 임야조사 직후 대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시흥지역을 통틀어 24필지의 국유림만이 국유로 계속 존치되었다(이를 요존국유림이라고 한다). 요존국유림으로 분류된 곳은 수암면 수암리 소재 수암산 일대, 고잔리 태봉산 일대, 군자면 성곡리 성두산 일대, 거모리 인근 연성산 등지인데 이들 산이 요존국유림으로 지정된 것은 '사적(史蹟) 보호'의 명분에서였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는 옛 안산읍성 및 향교 등의 사적이 현재도 자리 잡고 있다. 일제는 안산읍성, 향교의 보존을 명분으로 이들 산만큼은 일반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제하 시흥군 군자면 · 수암면과 부천군 소래면의 임야는 삼림법 시행 당시 전체 임야면적의 15%만이 지적신고를 제출, 사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임야조사사업으로 민유림면적이 75.1%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임야조사사업으로 사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임야의 90%가 조림대부의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졌다. 이로 보건대 시흥지역에서의 임야조사사업으로 사유림으로 인정된 곳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현 시흥지역에서 이루어진 임야조사사업의 특징을 간단히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지역에는 일본인들이 삼림을 강탈한 사례가 적다. 이는 시흥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관내 삼림의 상당수가 수탈의 대상이 되기에는 나무의 수종이 그리 경제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대다수의 임야소유자는 적은 면적을 가진 영세농민이었다. 〈표 1〉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시흥지역의 주민들 다수가 임야를 가지고 있었고 그 면적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당시 시흥지역 주민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단편적으로나마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사유림소유자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식림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조선인에게 전가하려는 일제 정책당국자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비단 시흥지역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유림으로 구분된 임야의 면적이 전국적으로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

〈표 2〉 1920~1932년 국유 · 민유 소유별 임야 현황[67] (단위 : 천정보)

연도	요존국유림	불요존국유림	사유림
1920	5,427	3,942	6,398
1921	5,395	3,973	6,399
1922	5,385	3,976	6,406
1923	5,317	3,923	6,527
1925	5,317	3,844	6,606
1927	5,275	3,895	7,300
1928	4,847	3,537	7,891
1929	5,076	3,235	8,132
1930	4,791	3,066	8,742
1931	4,764	2,250	9,474
1932	4,699	1,931	9,827

일제가 이렇게 조선인들의 임야소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 것은 결코 조선인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조치들은 조선인 임야소유자를 많이 만들어 낸 다음 이들에게 삼림조합 가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시흥지역에서도 삼림조합이 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강제

(67) ①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 발행분을 참조로 작성하되 천 단위 이하는 절사함. ② 1924년의 통계자료는 누락되어 있음. ③ 1926년의 통계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5년도 발행분의 통계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표에서는 삭제함.

가입되었다. 일제는 삼림조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조합비를 징수하였고 장작 채취 등 삼림이용을 강제로 막기 시작하였다.

3. 시흥군의 삼림조합

삼림조합은 191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조직이었다. 초기의 삼림조합은 주로 지방관이나 지역유지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는데, 대개는 식림장려와 '남벌방지' 라는 명분 아래 땔감 채취나 가축먹이로 사용할 풀의 채취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았다. 땔감 채취를 금지하는 것은 장작을 겨울철 연료로 삼는 관습으로 인해 삼림이 쉽게 황폐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삼림조합이 삼림이용을 강제로 규제하기 이전부터 원래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삼림을 보호하는 관행이 있었다. 송계조직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임야에 대한 과도한 벌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임야를 정기적으로 순시하는 조직이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과거 송계조직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시흥지역에서는 아직 존재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일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송계조직을 대신해서 삼림조합이나 혹은 산림조합, 조림조합, 삼림보호조합, 식림계, 조림계, 임업계 등의 이름으로 된 조직을 만들어 조선인들의 삼림자원 이용을 막았다. 대개 이 조직들은 조합원이나 계원들이 입산하는 것 자체를 막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정도의 일을 하는 데 그쳐 기존의 송계조직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제시기에 등장했던 삼림 관련 조직들은 대개 ① 지방관이 관내의 조림을 촉진하기 위해 임야소유자 및 점유자를 회원으로 하여 묘목배급과 남벌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것, ② 지역유지들이 해당 지역의 조림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것, ③ 지역 주민들이 마을 근처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받기 위해 만든 공동차수인조합 등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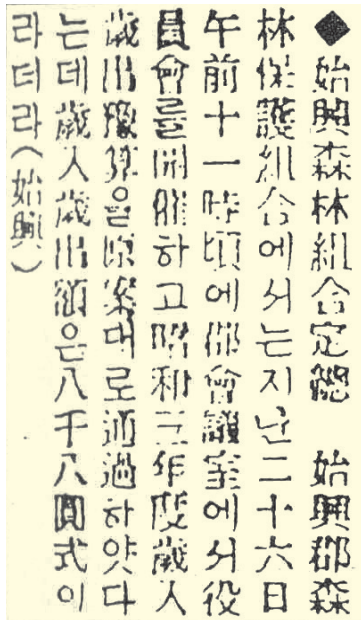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직은 기존의 송계조직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조직된 것이었는데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다. ③의 공동차수인조합은 촌락민들이 마을근처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받기 위해 만든 자발적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들 ②와 ③의 조직은 사실상 임야조사사업 직후 등장한 관제 군(郡)삼림조합에 연결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었다. 일제가 임야조사사업 종료와 함께 조직한 삼림조합은 ①의 성격을 이어서 만든 것이었는데 그 조합원이 임야소유자의 확대와 함께 많아졌던 것이다.

위의 삼림 관련 조직 중에서 일제시기 시흥군에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②의 성격을 가진 삼림조성조합(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68] 삼림공려조합(영등포 소재)[69] 등이 있다. 현 시흥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존재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현 시흥지역뿐만 아니라 원 시흥군지역 내에서 ①의 성격을 가진 삼림 관련 단체는 1924년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시흥지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제가 ①의 성격을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조직한 군삼림조합을 시흥군지역에서는 1924년경에 최초로 창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흥지역에 삼림조합이 언제 정확히 들어섰는지 알려 주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시흥군지역에서의 임야조사가 1923년 12월 무렵에 끝났음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해인 1924년 초에 군삼림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삼림조합은 법률상으로는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임의단체로 군을 단위로 하여 관내 민유림소유자 및 불요존림대부자를 조합원으로 한 조직이었다. 그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수가 군민을 강제

(68) 『동아일보』 1926년 12월 3일.
(69) 『동아일보』 1938년 10월 27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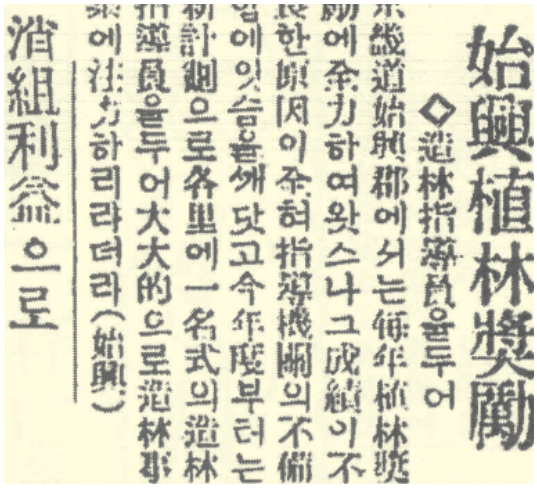
로 가입시키는 등 관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시흥군에서도 삼림조합이 결성되었는데 그 조직은 면 차원에서 꾸려진 것이 아니라 시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지금의 경기도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서울시 영등포지역 등이 모두 같은 행정구역에 묶여 있었고, 현 시흥시를 구성한 수암면, 군자면 역시 옛 시흥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된 삼림조합의 관할하에 있었다.


◆始興森林組合定總 始興郡森林保護組合에서는지난二十六日午前十一時頃에郡會議室에서役員會를開催하고昭和三年度歲入歲出豫算을原案대로通過하얏다는데歲入歲出額은八千八圓式이라더라(始興)

▲ 시흥 삼림조합 정기총회 신문기사(『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삼림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조합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그 외에도 산불방지활동, 송충이구제, 벌채제한, 묘목구입과 식수 등의 각종 의무가 가해졌다. 이 중에서 삼림조합이 실질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한 것은 입산금지조치였다. 군청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임야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자의 장작마련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정해진 기일(1년에 2회 정도)에 군직원의 감독하에서만 잔가지, 낙엽 정도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태형을 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상당한 제재가 가해졌다.

일제는 삼림조합을 '식림장려'를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강압책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림조합은 조선인들의 중요 불만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시흥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산동의 김태수(85세, 미산동 거주)에 의하면 장작을 구하기 위해 입산할 경우에는 군직원의 눈을 피해야 했고 만일 발각되는 경우에는 체벌이 가해지는 등 상당한 곤경에 처했다고 한다. 시흥지역 내에는 마을 근처 삼림의 면적이 과소하여 군직원이 지정하는 기일에 잔가지만을 채취해서는 연료 마련이 어려운 가정이 많았다. 특히 지


始興植林奬勵
◇道林指導員을두어
始興郡에서는每年植林奬
勵에全力하여왓스나그成績이不
良한原因이主로指導機關의不備
에잇슴을깨닷고今年度부터는
指導員을두어大大的으로道林事
業에注力하리라더라(始興)
消組利益으로

▲ 시흥군 식림장려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금의 포동과 같이 바다에 연접한 마을은 연료난이 극심했는데 당시 포동 염전 등에서는 소금을 장작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장작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염전에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던 박창식(85세, 장현동 거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그 전에 염전에 소금만 있으면 안현동에서 밤에 몰래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잘라서 소금하고 바꾸러 온다고. 그때는 단속이 심했으니까 밤에 몰래 와서 바꾸는데 소금이 있으면 별 무리 없이 장작을 얻을 수는 있었어.

나무가 풍부한 안현동 주민들과 포동 주민들 사이에 장작거래망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은 당시 일제가 만들어 놓은 법에 따르면 이른바 '불법행위' 였다. 소나무를 비롯하여 일체의 나무는 삼림조합에 의해 벌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밤을 이용하여 삼림조합 감수(주민의 벌채를 감시하는 자)의 감시를 피해 벌목을 하고 이를 팔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일제시기 주민의 생활은 매우 고달팠다.

사실 삼림조합은 명색이 조합일 뿐 임야소유자를 강제로 가입시킨 후 조합비를 거두어 군 재정에 보충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관제조직일 뿐이었다. 여기에서 잠깐 1929년 당시 조사된 조선 내 삼림조합의 전체 세출 · 세입내역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3〉 1929년 삼림조합 세입세출[70] (단위 : 圓)

세입		세출	
항목	액수	항목	액수
조합비	1,227,550	사무비	257,385
보조금	136,604	사업비	1,535,736
잡수입	376,414	회의비	28,256
전년도수입	154,568	예비비	122,399
이월금	207,848	기타	185,540
합계	2,102,984	합계	2,129,316

〈표 3〉의 세출항목에 기재된 사무비는 군 · 면 삼림담당 직원의 급여를 의미하며, 사업비는 삼림조합비로 따로 배치된 삼림기수의 급여, 묘포운영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다. 이 두 항목의 세출액은 각각 25만 7,385원, 153만 5,736원으로 전체 삼림조합 세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삼림조합에서 한 해 지출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군 · 면직원 및 삼림조합직원의 급여 및 군청 소속 기관 운영비로 쓰인 것이다. 그 외 항목의 경우도 임업 관련 직원의 회의비, 여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대부분 군 · 면 직원의 활동비로 쓰였다. 삼림조합이 관할 임야에 식림을 할 때에는 묘목대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조합비에서 실질적으로 식수에 사용되는 비용은 거의 없었다.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삼림조합 세입의 대부분이 조합비였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한 해 삼림조합 전체 세입이 210만 2,984원이었고 그중 조합비의 비율이 58%였다. 군 · 면직원에 지급되는 급여와 활동비의 상당부분이 조선인에게서 거둔 조합비로 충당되고 있었던 셈이다. 시흥군 삼림조합의 예산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였다.

일제시기 조선 내 전체 삼림조합의 세입세출은 현재 자료가 남아 있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흥군에서 거둔 삼림조합비의 총액과 그 사용처

(70) 朝鮮總督府山林部, 「森林組合の狀況」, 『朝鮮山林會報』 1930년 1월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전국 205개 전체 삼림조합 세입세출을 합계한 것이다.

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1928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시흥군 삼림조합의 1년 예산은 세입, 세출이 각각 8,000원에 이르렀다고 하여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액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즉 조합비를 비롯한 한 해의 세입을 모두 지출한 셈이다. 삼림조합 세출예산액의 사용처는 다른 지역과 거의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1928년 5월 12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시흥군의 삼림조합이 조합비를 거둔 후 그 돈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묘포에서 다량의 불량 묘목을 구입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상배포한 뒤 식림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일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합비를 거둔 후 그 일부를 관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경제적 이권 보장에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림조합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관리들의 급여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제로 묘목을 배부하여 심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1931년에는 함경남도 단천군에서 삼림조합에 반대하여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선인들의 강한 불만을 자아냈던 삼림조합은 1932년 갑자기 폐지되었다. 단천군의 경우와 같이 전국적으로 삼림조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고, 일제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삼림조합비 대신 임야세를 거두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한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나아가 군직원이 벌목을 금지, 감시하는 행위도 여전하였다. 이러한 억압에 대한 반발에서였는지 해방과 함께 일시적으로 일제 관리, 경찰의 감시가 느슨해지자 지역 주민들이 각자 자기소유의 임야에서 장작을 대량으로 벌목함으로써 삼림이 황폐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일제시기 삼림조합이 시행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입산통제를 지속해 왔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지속되었다. 실제로 김태수는 박정희 정권기에도 입산이 금지되어 어쩔 수 없이 감독을 피해 장작을 벌채하였고, 그런 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에 점차 완화되었다. 연탄의 보급과 함께 장작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감독도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연탄의 사용과 함께 임야에서 장작을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고, 그 결과 삼림 녹화도 눈에 띄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재 임야는 과거와 같은 재산가치를 점차 상실하고 있으나 일제시기 이후 임야를 확보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주민-당국자의 줄다리기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시흥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임야가 부족하였으므로 그러한 고통은 더욱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일제하 시흥지역의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민유림면적을 확대하여 민유림 소유권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수종개량, 치수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시켰으며 동시에 삼림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비를 거두는 방법으로 지방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제시기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부천군 소래면지역에서의 임야조사사업 결과를 살펴보아도 국유림보다는 민유림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임야조사사업이 끝난 후에는 임야소유자로 구성된 삼림조합이 만들어졌고, 시흥군지역에는 1924년경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흥지역의 임야소유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소면적 소유자가 많았는데, 이들 소면적 임야소유자는 임야소유권을 일제로부터 인정받음과 동시에 삼림조합에 강제로 가입되어 조합비를 내야 했다.

일제는 1908년에 처음 삼림법을 시행하여 한국의 삼림을 수탈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였다. 1908년 법령에 의하여 모든 임야소유자는 임야소유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시흥지역은 당시 임야신고서를 제출한 임야필지가 15%에 불과하였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대다수의 임야는 모두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제의 사유림확대정책에 따라 국유림편입지는 조림대부, 임야조사사업 등의 방법으로 민간에 다시 이양되었고, 그 결과 사유림면적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사유림의 소유자들은 자기소유의 임야라고 하더

라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고통도 컸다. 삼림조합이 임야소유자의 삼림이용을 일방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시흥지역에서도 삼림조합은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됨과 함께 설립되었다. 그런데 지역의 임야소유구조 특성상 조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흥지역의 대다수 사유임야는 영세농가가 작은 면적을 소유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대다수 영세농가에서는 장작과 퇴비마련을 위해 임야를 소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그 소유를 인정받게 되었으나 곧 이어 조합비를 물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곤경에 처해졌던 것이다. 일제는 주민들로부터 조합비를 거둘 뿐 어떤 유인책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녹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입산을 금지하고 삼림자원 이용을 금지했다.

일제시기 임야를 둘러싼 통제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사실 해방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삼림조합은 없어졌다고 해도 군청직원에 의해 일제시기와 같은 강도의 통제가 이어졌다. 여전히 주민들은 장작을 마음대로 채취할 수 없었고 군직원에게 발각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물거나 체형을 당했다. 이러한 경향이 사라진 것은 연탄의 등장 · 보급과 함께 장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1970년대였다. 현재 과거의 장작난을 기억하는 고령의 주민들은 임야와 관련된 애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최병택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4장 농업정책과 농촌경제의 변화

1. 일제시기 농업생산구조

1) 일제시기 인구구성

일제시기 현 시흥시의 해당지역은 시흥군[71] 수암면 · 군자면의 일부지역과 부천군[72] 소래면이었다. 특히 소래면과 군자면지역은 호조벌[73]이라 불리는 평야와 '바라지' 수문 일대의 평야지대로서, 조선시대부터 간척된 '방죽논' 지역이라 불린다. 수암면지역은 원래 육지로 평야와 산지, 하천, 계곡이 어우러져 있는 전형적 농촌지역인 '뭍논' 지역이었다.[74] 이처럼 지형적 차이는 있었으나 일제시기 시흥지역[75]은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도 경

(71) 일제시기 시흥군은 영등포면, 북면, 동면, 서면, 신동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으로 이루어졌다. 현 서울시 남서부지역과 광명, 안양, 과천시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시흥군 전체의 통계나 양상이 바로 현 시흥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지역 특성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72) 일제시기 부천군은 다주면, 문학면, 소래면, 남동면, 영종면, 용유면, 덕적면, 부내면, 계양면, 오정면, 계남면, 서곶면, 대부면, 영흥면으로 이루어졌다. 현 부천시와 인천시, 인천 앞바다의 섬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부천군의 한 면인 소래면만이 현 시흥시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역시 부천군의 전체 통계나 양상을 바로 시흥시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한정적일 수 있다.

(73) 호조벌의 생성과 발전 양상은 제2권에 수록되어 있는 '호조방죽의 축조와 석장둔' 참고.

(74) 지역문화연구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5.

(75) 이 글에서 일제시기 '시흥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시흥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제시기 시흥군 수암면 · 군자면 일부와 부천군 소래면지역을 말한다.

성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인천부와도 멀지 않으며 소래포구 등 바닷가와도 면해 있었으므로 폐쇄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오지 농촌은 아니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일제시기 시흥지역의 특성과 일상을 추적해보겠다. 먼저 일제시기 이 지역의 인구구성 및 변동을 직업, 출생지, 국적별로 살펴보자.

한국에서 근대사회로의 변동이 본격화된 것은 일제 식민지시기였다. 근대적 변화의 목적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식민지 수탈에 있었지만, 그로 인해 한국사회는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다. 1920년대까지는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던 개항장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 자본주의화,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1930년대 이후 일제가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중국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에서는 북한지역의 개발과 공업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흥지역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잔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지역만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적지만, 가능한 선에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6년에 조사된 시흥군 수암면의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 호수는 1,592호, 인구 8,124명이며, 그중 96%에 해당하는 7,812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이었다. 〈표 1〉은 1925년과 1930년, 1944년의 인구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같은 수암면만 비교해 보면, 1925년 8,377명으로 1916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1930년은 오히려 1925년 대비 0.6%가 감소하였다.

〈표 1〉 1916년 수암면의 인구구성[76]

총호수(호)	인구(명)			직업별 호수 및 인구							
	총인구	남	여	농업	어업	공업	상업	공무	기타유업	무업	계
1,592	8,124	4,112	4,012	1,489(호)	37	11	29	11	5	12	1,592
				7,812(명)	142	26	91	32	5	16	8,124

(76)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9쪽.

이러한 변화는 수암면이 속해 있는 시흥군 전체의 인구변동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시흥군은 1925년에서 1930년 사이에 10.4%가 증가했고, 부천군도 7.6%가 증가했다. 두 군은 경성부나 인천부와 접해 있어 그 주변 면을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흥지역인 수암면, 군자면, 소래면의 인구변동은 소속 군(郡)의 변동 상황에 미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시흥지역은 순연한 농촌으로서 인구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이었다.

〈표 2〉 1925~1944년 인구변동[77]

(단위 : 명)

지역	1925	1930				1944			
		총수	남	여	남/여 비율(%)	총수	남	여	남/여 비율(%)
시흥군	66,656	73,617	38,065	35,552	107.1	82,024	40,585	41,459	97.9
수암면	8,377	8,324	4,189	4,135	101.3	9,317	4,545	4,772	95.2
군자면	9,708	9,968	5,189	4,779	108.6	12,021	5,975	6,046	98.8
부천군	76,172	81,927	42,307	39,620	106.8	79,871	40,365	39,506	102.2
소래면	7,664	7,885	4,047	3,838	105.5	10,757	5,350	5,407	98.9

지역	1925~1930년 증감		1930~1944년 증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시흥군	6,961	10.4	8,407	11.4
수암면	-53	-0.6	940	11.2
군자면	260	2.7	2,313	23.8
부천군	5,755	7.6	-2,056	-2.5
소래면	221	2.9	2,872	36.4

이러한 1930년대 이전까지의 인구변동 양상은 1930년대 이후 달라졌다. 군 단위의 인구변동과 달리[78] 수암면은 11.2% 정도 증가했지만, 군자면과 소래면은 23.8%, 36.4% 증가하였다. 이것은 1920년대 인구변동이 감소 경향이거나 2~3%

(77) 朝鮮總督府,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1권 京畿道』, 1937, 5; 朝鮮總督府, 『人口調査報告書』 1, 1944, 21~22쪽.

(78) 〈표 2〉의 1944년 인구현황에서 시흥군과 부천군의 인구는 1930년 대비 약간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양 군에 소속된 면들 중 경성부와 인천부가 확대되면서 그곳에 편입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도 기인하지만, 이 지역의 수리시설이 확대되어 농업 생산환경이 향상된 점과 군자 · 소래염전이 건설된 점이 인구증가의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79)

한편 일제시기 시흥지역 인구변동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남녀 성별 인구구성이다. 1930년까지 남녀의 인구비율은 군자면이 108.6으로 남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암면은 101.3으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15년 후인 1944년에는 모두 여초(女超) 현상으로 반전되어, 수암면이 95.2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군자면과 소래면은 비슷했다. 이것은 시흥지역의 특수성만은 아니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해 1939년부터 본격화된 노동력 동원(80)으로 남성 성인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유출되었다. 1940년에는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81) 점차 남성노동력의 유출이 커져 1944년에는 현저한 여초현상을 보였다. 시흥지역 역시 일제의 전시 수탈과 동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별 인구구성을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흥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표 3〉에서 보면 10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한 인구구성에서 남녀 모두 농업 종사자와 무업자(無業者)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업 외에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직업구성은 군자면과 소래면에는 수산업 종사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상업 인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포구와 염전을 끼고 있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

(79) 시흥지역 수리시설의 발전에 대해서는 2) 일제의 식민농정과 농촌경제의 변화에서 살펴볼 것이다.

(80) 전시체제기 노동력 동원은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전개방식에 따라 제1기 모집 방식(1939~1941), 제2기 관알선 방식(1942~1943), 제3기 징용 방식(1944~1945)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원방법의 변화에 따라 강제력이 커졌고, 해가 거듭될수록 동원 인구는 많아졌다.

(81) 1940년 시흥군과 부천군의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지역	인구총수	남	여	남/여 비율(%)
시흥군	72,037	36,009	36,028	99.9
부천군	68,267	34,468	33,799	101.9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 昭和15年 國勢調査結果要約』, 1940, 6쪽.

〈표 3〉 1930년 직업별 인구구성[82]

(단위 : 명)

지역	1~9세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교통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시흥군	22,731	5,496	15,481	3,713	147	191	45		2,317	422	552	9
수암면	2,549	1,385	2,365	1,253	19	30			30	7	1	
군자면	3,190	597	2,532	312	97	161			370	7	15	
부천군	25,649	9,759	19,346	7,643	1,844	792	185		701	125	649	3
소래면	2,335	427	2,076	231	57	72	4		39	2	6	

지역	상업		무자유업		가사사용인		기타 유업자		무업(無業)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시흥군	1,124	678	540	76	90	244	2,435	163	15,334	30,056		
수암면	55	59	23	4	3	20	53	12	1,640	2,750		
군자면	74	76	38	7	8	29	56	5	1,999	4,182		
부천군	917	757	318	48	92	247	1,597	144	16,658	29,861		
소래면	68	87	27	2	4	31	54	2	1,712	3,411		

마지막으로 출생지와 국적별 인구구성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반하지 않았던 이 지역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1930년 기준으로 일제시기 시흥지역의 주민들 중에는 자신이 태어난 면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70%에 달했다. 군자면은 71.1%가 군자면에서 출생하여 군자면에서 살고 있었다. 같은 면이 아니더라도 군 내의 인접한 면 출신이 27% 정도를 차지했다. 소래면은 28.6%의 주민이 인접 면 출신이었다. 반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 출신은 군자면이 7.5%로 최대였고, 수암면은 2%에 그쳤다. 이렇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향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산 농민들이었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지역의 일본인 비율은 매우 낮았다. 시흥군과 부천군 단위로는 2~3% 정도의 일본인이 거주하였지만, 현 시흥지역의 수암면은 거의 100% 모두, 나머지도 99%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조선

(82) 朝鮮總督府,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1권 京畿道』, 1937, 108~109쪽.

후기 이래 곡창지역으로 소유관계나 계급 · 계층관계가 명확한 상태였으므로 일본인들에게는 이 지역에 진출할 만한 틈새나 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 내의 사회적 갈등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민족적 갈등은 거의 없었지만, 관공서 등 지배기구에서는 일본인 관리가 중심이었기에 그들과의 상하적 위계질서로 인한 민족적 차별의식은 갖게 되었을 것이다.

〈표 4〉 1930년 출생지별 인구구성(83)

(단위 : 명)

지역	도내생(道內生)									조선외생(朝鮮外生)
	자부면생(自府面生)			타부면생(他府面生)			타도생(他道生)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총수
시흥군	43,900(59.6)	26,113	17,787	23,614(32.1)	8,589	15,025	4,261(5.8)	2,196	2,065	1,842(2.5)
수암면	5,853(70.8)	3,403	2,450	2,237(27.0)	718	1,519	170(2.0)	66	104	4(0.1)
군자면	7,087(71.1)	4,121	2,966	2,172(21.8)	638	1,534	652(7.5)	395	257	57(0.6)
부천군	53,783(65.6)	30,621	23,162	22,189(27.1)	8,154	14,035	3,997(4.9)	2,163	1,834	1,958(2.4)
소래면	5,358(68.0)	3,250	2,108	2,229(28.3)	665	1,564	264(3.3)	112	152	34(0.4)

〈표 5〉 1930년 국적별 인구구성(84)

(단위 : 명)

지역	일본인			조선인			기 타(중국인)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시흥군	2,016(2.7)	1,089	927	71,095(96.6)	36,552	34,543	506(0.7)	424	82
수암면	6(0.1)	3	3	8,318(99.9)	4,186	4,132			
군자면	86(1.0)	41	45	9,873(99.0)	5,139	4,734	9	9	
부천군	1,302(1.6)	696	606	79,436(96.9)	40,665	38,771	1,189(1.5)	946	243
소래면	38(0.5)	21	17	7,845(99.5)	4,024	3,821	2	2	

(83) 朝鮮總督府,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1권 京畿道』, 1937, 44쪽 · 62~63쪽.

(84) 朝鮮總督府,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1권 京畿道』, 1937, 44쪽 · 62~63쪽.

2) 경지(耕地) · 계급구성과 소작관행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시흥지역의 농업 생산환경은 어떠했는가. 먼저 시흥지역이 속해 있던 시흥군과 부천군의 경지면적과 계층별 농가호수를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다음 〈표 6〉을 통해 본 경지구성은 두 군 모두 밭보다는 논이 많은 지역이었다. 시흥군은 평균 56 대 44 정도의 비율로 논이 많았고, 부천군은 62 대 38 정도로 논이 많은 지역이었다. 자작지와 소작지의 비율도 대략 35 대 65로 소작지가 많았다. 한편 일제시기 동안 소작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시흥군의 경우 1921년 조사에서는 45 대 56의 비율이었으나 1934년에는 35 대 65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 즉 식민지 지주제하의 지주소작관계는 1930년대 중반까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 6〉 일제시기 시흥군 · 부천군의 소유별 1인당 경작면적[85]

연도	지역	경작면적(단보)				자작지(단보)			소작지(단보)			농가 총호수	1인당 경작면적(단보)		
		논	밭	화전	계	논	밭	계	논	밭	계		논	밭	계
1921	시흥군							45%			56%	10,244	7.4	5.6	13.0
	부천군							43%			57%	10,279	10.1	6.4	16.5
	경기도							31%			69%	243,824	8.2	7.7	15.9
1928	시흥군	76,124 (55.6)	60,674 (44.4)		136,798 (100)	24,843 (18.1)	24,049 (16.9)	48,892 (35)	51,165 (37.4)	36,487 (27.6)	87,652 (65)	9,740	7.8	6.2	14.0
	부천군	118,663 (61.9)	73,123 (31.1)		191,786 (100)	38,737 (21.3)	3,228 (17.7)	71,965 (39)	71,357 (39.2)	38,494 (21.8)	109.851 (61)	11,560	10.2	6.3	16.5
	경기도	2,037,903 (52.2)	1,858,493 (47.7)	4,405 (0.1)	3,900,801 (100)	551,647 (14.2)	628,123 (15.8)	1,179,770 (30)	1,462,338 (37.8)	1,219,644 (32.2)	2,682,032 (70)	237,117	8.6	7.8	16.4
1930	시흥군	76,716 (56.3)	59,564 (43.7)		136,280 (100)	26,988 (20)	24,087 (18)	51,075 (38)	49,624 (36)	35,323 (26)	84,947 (62)	9,507	8.0	6.2	14.2

(85) 1921년은 京畿道 內務部 社會課, 『京畿道農村社會事情』, 1924, 121쪽; 1928~1934년은 京畿道, 『京畿道 農事統計』 1928 · 1930 · 1932 · 1934년판 해당 통계. 1921년의 자작 · 소작지 수치는 백분율(%)이다.

연도	지역	경작면적(단보)				자작지(단보)			소작지(단보)			농가 총호수	1인당 경작면적(단보)		
		논	밭	화전	계	논	밭	계	논	밭	계		논	밭	계
1930	부천군	116,881 (62.1)	71,487 (37.9)		188,368 (100)	36,396 (20)	30,161 (16)	66,557 (36)	76,206 (42)	40,751 (22)	116,957 (64)	2,160	9.6	5.8	15.4
	경기도	2,045,949 (52.4)	1,851,988 (47.5)	4,629 (0.1)	3,902,566 (100)	524,308 (13)	610,279 (16)	1,134,585 (29)	1,499,070 (39)	1,232,666 (32)	2,731,736 (71)	239,515	8.5	7.7	16.2
1932	시흥군	77,597 (56.5)	59,716 (43.5)		137,313 (100)	25,414 (20)	22,127 (16)	47,541 (36)	52,131 (38)	37,560 (26)	89,691 (64)	9,334	8.3	6.3	14.6
	부천군	118,153 (62.1)	72,195 (37.9)		190,348 (100)	36,519 (19)	30,677 (16)	67,196 (35)	79,821 (44)	40,815 (21)	120,636 (65)	11,740	10.0	6.1	16.1
	경기도	2,066,306 (52.8)	1,840,339 (47.1)	3,632 (0.1)	3,910,277 (100)	531,389 (14)	577,528 (15)	1,108,917 (29)	1,525,777 (39)	1,256,153 (32)	2,781,930 (71)	237,869	8.6	7.7	16.3
1934	시흥군	78,673 (56.8)	59,896 (43.2)		138,569 (100)	25,732 (19)	22,054 (16)	47,786 (35)	37,823 (45)	27,517 (20)	65,340 (65)	9,456	8.3	6.3	14.6
	부천군	119,619 (62.3)	72,503 (37.7)		192,122 (100)	31,732 (17)	27,347 (12)	55,079 (29)	344,362 (51)	7,977 (20)	82,339 (71)	12,217	9.7	5.9	16.6
	경기도	2,085,671 (53.1)	1,842,311 (46.9)		3,927,982 (100)	526,291 (13)	571,036 (15)	1,097,327 (28)	1,551,063 (49)	1,266,929 (33)	2,817,992 (72)	239,107	8.7	7.7	16.4

이것은 농업호수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1921년 시흥군의 소작호수 비율은 39%, 부천군은 47%였다. 1934년에는 시흥군 68.5%, 부천군 64.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흥군의 소작호수 증가가 더욱 컸다. 반면 지주계층은 순소작지주(지주갑)와 자작겸 지주(지주을) 모두를 합쳐 1921년 시흥군은 7%, 부천군은 5%였다. 1932년에는 각각 4.3%, 2.1%로 감소했다. 자작농은 1932년에는 1921년에 비해 시흥군은 12%에서 4.6%로 감소, 부천군은 8%에서 11.6%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주 · 자작농의 감소와 소작농의 증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식민지 지주제하에서 영세한 자작농, 자소작농이 몰락하면서 소수의 대지주에게 땅이 집중되었고, 몰락한 농민들은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하고 농촌에서 소작농으로 침전되며 열악한 소작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7〉 일제시기 시흥군 · 부천군의 계층별 농가호수[86]

(단위 : 호)

연도	지역	지주(갑)	지주(을)	자작	자소작	소작	피용자	화전민	합계
1921	시흥군	7%		12%	42%	39%			10,244(100)
	부천군	3%		8%	42%	47%			10,279(100)
	경기도	5%		8%	35%	52%			243,824(100)
1928	시흥군	30(0.3)	465(4.8)	799(8.2)	3,746(38.5)	4,700(48.2)			9,740(100)
	부천군	64(0.6)	263(2.3)	1,288(11.1)	3,658(31.6)	6,287(54.4)			11,560(100)
	경기도	3,590(1.5)	7,804(3.3)	19,183(8.0)	66,964(28.0)	139,064(58.2)		2,305(1.0)	238,910(100)
1930	시흥군	28(0.3)	465(4.9)	722(7.6)	3,387(35.6)	4,905(51.6)			9,507(100)
	부천군	62(0.5)	221(1.8)	1,432(11.8)	3,892(32.0)	6,553(53.9)			12,160(100)
	경기도	3,661(1.5)	7,264(3.0)	18,043(7.5)	64,373(26.7)	145,783(60.5)		2,049(0.8)	241,173(100)
1932	시흥군	38(0.4)	363(3.9)	432(4.6)	2,283(24.5)	6,218(66.6)			9,334(100)
	부천군	73(0.6)	180(1.5)	1,398(11.9)	2,861(24.4)	7,228(61.6)			11,740(100)
	경기도	5,517(2.3)	5,014(2.1)	14,699(6.2)	51,345(21.6)	161,156(67.7)		468(0.1)	237,869(100)
1934	시흥군			572(6.0)	2,146(22.7)	6,478(68.5)	260(2.8)		9,456(100)
	부천군			1,412(11.6)	2,770(22.7)	7,937(64.9)	98(0.8)		12,217(100)
	경기도			18,746(7.9)	50,970(21.3)	164,790(68.9)	4,601(1.9)		238,107(100)

이러한 경향은 시흥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표 8〉은 1930년에 완공된 소래수리조합(蘇萊水利組合) 몽리지역(부천군 소래면지역)의 계층별 농업자호수와 소유면적이다. 소작농호수는 59%로 1930년 부천군 소작농호수 54%보다 높았다. 또한 논과 밭의 비율은 66 대 34로 부천군의 62 대 38과 비슷한 수준으로 논이 많았다. 이처럼 부천군 소래면지역은 논에서 하는 쌀농사를 중심으로 지주소작관계가 매우 발달된 지역이었다. 특히 부재지주가 68명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를 모두 합한 수(32명)보다 배 이상 많았다.

1942년 착공하여 1944년 완공을 본 흥부수리조합은 소래수리조합보다 훨씬 넓은 몽리지역을 갖고 있었다. 흥부수리조합 몽리지역에 대한 〈표 9〉를 보면 이 지역

(86) 1921년은 京畿道 內務部 社會課, 『京畿道農村社會事情』, 1924, 93쪽; 1928~1934년은 京畿道, 『京畿道 農事統計』(1928 · 1930 · 1932 · 1934년판), 해당통계. ① 1926년부터 지주갑을 분리하여 조사 ② 1934년부터 지주갑은 생략, 지주을은 자작에 포함, 피용자 조사 ③ 1921년 수치는 합계인구수를 제외하고 백분율 ④ 1928~1934년 괄호 안의 수치는 백분율이다.

〈표 8〉 소래수리조합 몽리지역의 계층별 농업호수 및 소유면적[87]

농업호수(호)						농업인구(명)
총호수	지주(갑)	지주(을)	자작	자소작	소작	
1,242(100)	3(0.3)	29(2.3)	95(7.6)	381(30.7)	734(59.1)	1,736

자소작별 경지면적(단보)							부재지주 소유면적		
논	밭	합계	자작		소작		부재지주수 (명)	소유면적 (단보)	비고
			논	밭	논	밭			
15,119 (65.6)	7,928 (34.4)	23,047 (100)	3,579	3,131	11,540	4,797	68	1,234.613	국유지 포함

〈표 9〉 흥부수리조합 몽리지역의 계층별 농업호수 및 소유면적[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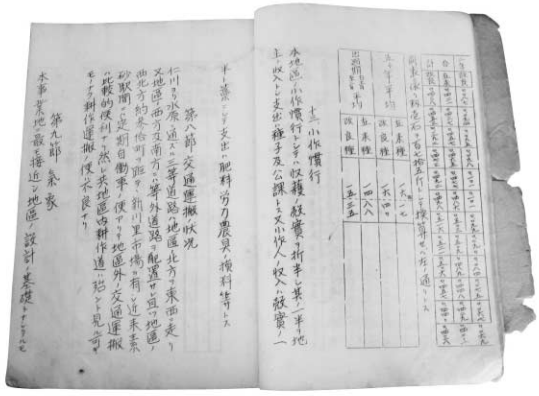
지역		농업자수							자소작별 경지면적(정보)						
		총호수(호)	지주갑	지주을	자작	자소작	소작	총인구(명)	논	밭	계	자작		소작	
												논	밭	논	밭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	111		5	1	18	87(78.4)	630	190.4(81.8)	42.5(18.2)	232.9(100)	83.1	26.8	107.3	15.7
	도창리	75		1	2	24	48(64)	409	88.6(63.1)	51.8(36.9)	140.4(100)	28.5	24.5	60.1	27.3
	금이리	102		6	3	43	50(49)	633	96.3(60.4)	63.2(39.6)	159.5(100)	42.4	30.3	53.9	22.9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	41				11	30(73.2)	259	29.2(62.7)	17.4(37.3)	46.6(100)	3.1	7.6	26.1	9.8
	물왕리	88				29	59(67.1)	534	52.1(61.1)	33.2(38.9)	85.3(100)	5.9	15.1	46.3	18.1
	하상리	83		2		35	46(55.4)	489	80.3(70.1)	34.3(29.9)	114.6(100)	17.0	5.6	63.3	28.7
	하중리	119		1	6	44	60(50.4)	764	163.3(79.3)	42.7(20.7)	206.0(100)	24.7	23.3	138.6	19.4

의 논과 밭의 비율은 최고 매화리의 82 대 18에서 최저 금이리의 60 대 40으로 절대적으로 논이 많았다. 논이 많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소작농의 비율도 높았다. 매화리는 소작농 비율도 78%로 매우 높았고, 금이리는 49%로 비교적 낮았다. 대부분의 지주들이 상품성이 높은 쌀을 재배하는 논을 주로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도 부재지주가 많았다. 소래면지역은 75명(30.4정보), 수암면지역은

(87) 京畿道, 『京畿道 富川郡 蘇萊水利組合 事業計劃書』. 1929년 조사내용이며, 소래수리조합 몽리지구는 미산리, 안현리, 은행리, 계수리 등이다.

(88) 京畿道, 『興富水利組合 事業計劃書』. 1942년 조사된 내용이다.



▲ 소래수리조합 몽리지역의 소작관행에 관한 내용

129명(35정보)이었다.[89]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 중 순소작 지주(지주갑)는 전혀 없었고, 자작겸 지주(지주을)가 약간 있었다. 시흥지역은 경성부와 인접한 농촌으로 전통적인 부재지주가 많았고, 이에 대다수 소작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의 절반을 외지(대부분 경성부)에 거주하는 지주에게 주고, 매우 어려운 생활을 영위해야 했다.

시흥지역의 소작관행은 전통적인 병작반수의 타조법(打租法)이 일반적이었다. 소래수리조합 몽리지역 소작관행은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의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종자 및 공과(公課)로 한다. 소작인의 수입은 수확량의 절반과 볏짚으로 하고 지출은 비료, 노력, 농구, 손료(損料) 등으로 한다"[90]는 것이었다. 흥부수리조합 몽리지역 소작관행도 "논은 대부분 타조로서 수확량을 지주 · 소작인이 절반씩 하고 공과, 종자는 지주부담, 비료는 지주 · 소작인 균등부담으로 한다. 정조(定租)일 경우는 반당 벼 2두(斗) 내외로 한다"[91] 였다. 이러한 소작관행에 수리조합 몽리지역에서는 수리조합비 명목으로 소작료가 10% 더해져 수확량의 60% 정도를 소작료로 내었다.

타조법이 일반적 관행이었던 이유는 지주의 대부분이 부재지주로서, 직접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채 소작료를 안정적으로 거두어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마름을 두어 소작인을 관리하였다. 농업관행 조사에서도 지주가 외지(서울 등)에 거주하고 마름이 관리했던 지역이 많았

(89) 京畿道, 『興富水利組合 事業計劃書』.
(90) 京畿道, 『京畿道 富川郡 蘇萊水利組合 事業計劃書』.
(91) 京畿道, 『興富水利組合 事業計劃書』.

다.[92] 한편 소작관행 여하에 상관없이, 땅이 없는 무토지 농민들에게는 소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삶의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추수기에 지주와 마름이 소작료를 받으러 오면 소작인들은 그들을 융숭히 대접했다고 한다.[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시기 시흥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고, 땅을 터전으로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대를 이어 거주하며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같은 군내가 아닌 타지(他地) 출신이 정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이미 토지소유관계가 명확히 설정된 순연한 농촌지역이었기에 일본인의 진출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60% 이상의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지주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이었다. 따라서 일제시기 시흥지역은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직접적 대면접촉에 따른 갈등과 차별에서 나오는 민족모순보다 식민지 지주제하의 지주소작관계에서 생기는 계급모순이 더욱 컸던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소작관행이 유지되어, 소작쟁의와 같은 지주-소작인 간의 갈등 양상은 크지 않았다.

2. 일제의 식민농정과 농촌경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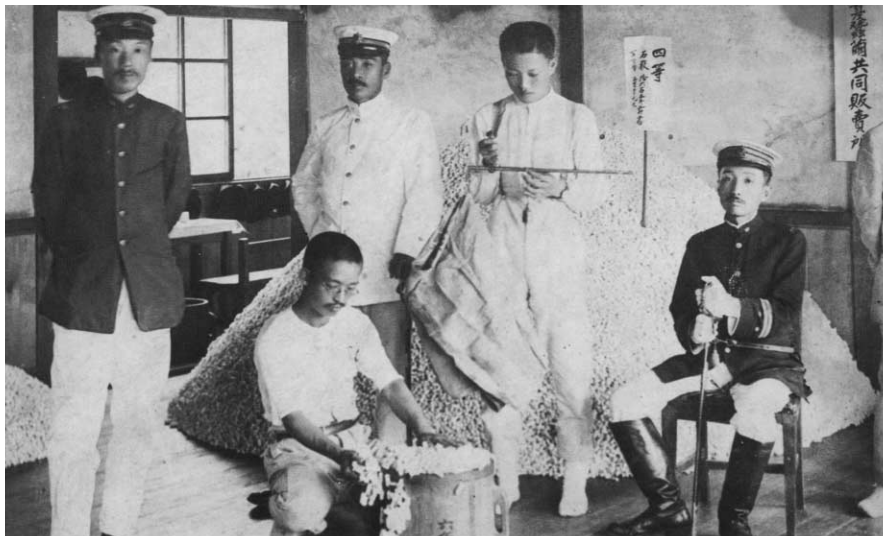
1) 농사개량과 수리조합

(1) 품종개량과 농법의 변화

일제시기 시흥지역은 대다수 농민들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농촌이었지만, 일제의 식민농정에 나름대로 발빠르게 대처하며 어려운 삶을

(92) 부재지주의 땅을 마름이 관리하던 곳은 은행동, 미산동, 도창동, 매화동, 하상동, 하중동, 방산동, 월곶동, 금이동 등이었다(지역문화연구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5). 이것은 소래 · 흥부수리조합 몽리지역 부재지주 실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93) 지역문화연구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5.



▲ 공출한 누에고치 판매소

개척해나가려는 모습도 갖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을 자본주의 발달에 필요한 식량 · 원료의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농업정책의 초점을 생산물의 개량증식을 통해 일본으로의 이출을 증가시키는 데 두었다. 이것은 1912년 3월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미작(米作) · 면작(棉作) · 양잠(養蠶) · 축우(畜牛)의 개량 · 증식에 관한 중대 훈시'에서 제시한 쌀, 면화, 누에고치, 소의 개량증식방침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쌀 증산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품종개량, 비료, 관개 등 세 요소를 개선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높이는 이른바 개량농법을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농민들의 생활 향상이나 농가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1910년대의 수확량 증가는 관개시설의 개선 없이 재래종을 개량종(穀良都, 祖神力 등)으로 교체하고 자급비료 투여량을 늘린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개량종의 보급만으로는 증산에 한계가 있었고 일본 국내에서 1918년 쌀폭동이 일어나자 쌀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조직적이

고 대규모적인 증산 · 수탈정책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시흥지역에서도 일제의 농사개량정책이 시행되었다. 먼저 일제는 쌀농사에서 일본개량품종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94) 평야지대이고 수원에 농법개량의 중심인 권업모범장을 가지고 있던 경기도지역은 품종개량사업이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1928년부터 1934년까지 쌀 농사를 짓는 면적의 82% 이상에서 개량품종을 재배했다. 이러한 경기도보다 시흥군과 부천군의 경우, 개량품종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1928년을 보면 시흥군은 쌀 재배면적의 95%를, 부천군에서는 99%를 개량품종으로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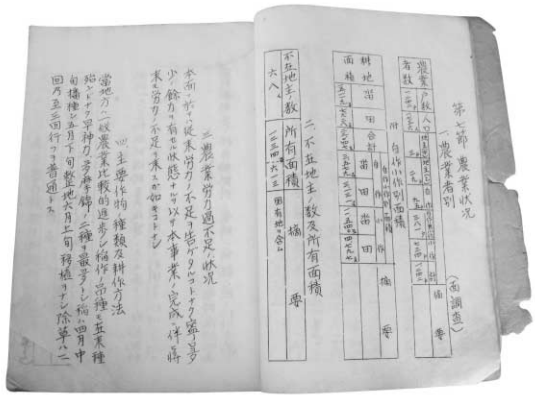
〈표 10〉 일제시기 시흥군 · 부천군의 쌀 개량품종 재배면적(95) (단위 : 단보)

연도	지역	벼 총재배면적	곡량도 (穀良都)	다마금 (多摩錦)	조신력 (早神力)	중생은방주 (中生銀坊主)	석백	하루소출	합계
1928	시흥군	69,724(100)	13,074(18)	37,155(53)	16,606(23)		2	39(1)	66,876(95)
	부천군	106,618(100)	20,226(18)	57,961(54)	28,209(26)				106,396(99)
	경기도	1,771,810(100)	743,663(41)	434,663(24)	267,313(15)		17,249(1)	19,979(1)	1,482,867(84)
1930	시흥군	70,738(100)	14,557(21)	40,848(58)	12,546(18)			42	67,993(96)
	부천군	112,787(100)	17,352(15)	68,341(61)	18,871(17)				104,564(92)
	경기도	1,965,843(100)	891,322(45)	536,971(27)	165,327(8)		12,808(1)	45,764(2)	1,652,192(83)
1932	시흥군	71,309(100)	13,403(18)	43,222(60)	7,074(10)				63,699(89)
	부천군	114,833(100)	13,494(11)	82,011(71)	5,179(5)				100,684(87)
	경기도	1,964,453(100)	952,175(48)	576,483(29)	63,991(3)		8,671(1)	14,847(1)	1,616,167(82)
1934	시흥군	74,889(100)	10,391(13)	42,249(56)	593	16,021(23)			69,254(92)
	부천군	119,897(100)	8,528(7)	59,518(50)	3,860(3)	37,764(31)			109,670(91)
	경기도	2,095,859(100)	837,581(40)	531,504(25)	22,769(4)	351,492(14)			1,743,346(83)

1920년대까지 일제가 적극적으로 보급했던 품종(초기 개량품종)인 곡량도, 다마금, 조신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 전체로는 조선 재래종과 가장 흡사한

(94) 총독부는 1922년부터 1940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수도(水稻)종자갱신계획을 세웠다. 계획 연면적 551만 정보, 실적 586만 정보로 106%의 달성률을 보였다(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の農業』, 1941, 81쪽).

(95) 京畿道, 『京畿道 農事統計』 1928 · 1930 · 1932 · 1934년판. ① 괄호 안의 수는 비율, ② 중생은방주는 1934년부터 조사이다.



▲ 소래수리조합지역의 농업상황(1929)

곡량도의 재배면적이 가장 컸으나, 시흥군과 부천군에서는 다마금이 가장 많이 재배되었다. 한편 총독부는 192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개량품종(후기 개량품종)인 은방주를 이전 초기 개량품종에 대체하여 적극 보급하였는데, 경기도지역은 이러한 변화를 빨리 수용한 편이었다. 1932년 개량품종 재배면적 비율이 감소한 것은 품종 교체시의 통계 누락에 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34년 통계부터는 새로이 중생은방주에 대한 통계가 잡혔고, 그 비율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 전체로는 14%였지만, 시흥군은 23%, 부천군은 31%로 높았다. 이것은 단기간에 품종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품종 교체는 다마금과 조신력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조신력은 초기 개량품종 중 가장 선진적 품종이었는데, 후기 개량품종의 대표격인 은방주도 그러한 농가에서 빨리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처럼 시흥군과 부천군은 도시와 가까웠던 관계로 농업 생산방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빨리 수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양 군에 소속되어 있던 시흥지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다. 1929년 소래수리조합지역(소래면)은 "이 지방의 농업은 비교적 진보하여 도작의 품종도 재래종이 거의 없고 조신력, 다마금의 2종을 가장 많이 심었다"[96]고 밝히고 있다. 1942년의 흥부수리조합지역(소래면, 수암면)에서는 "수도 품종은 장려품종인 중생은방주, 다마금을 주로"[97] 심었다. 이것은 〈표 10〉에 나타난 시흥군 · 부천군의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

(96) 京畿道, 『京畿道 富川郡 蘇萊水利組合 事業計劃書』.

(97) 京畿道, 『興富水利組合 事業計劃書』.

다음은 농업기술을 살펴보자. 일제가 보급한 개량농법으로 품종개량과 함께 재배기술도 일본의 농법을 들여왔다. 땅은 20㎝ 정도로 깊이 갈고(深耕), 모내기는 일정한 규칙 없이 모를 심는 막모[散植]에서 줄모[正條植]를 장려했다. 줄모로 심으면 이후 김매는 수고를 덜 수 있어 김매기[中耕除草]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총독부는 이러한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강제했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집약적 농법은 경작면적이 적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으므로 계속되었다.

먼저 경기도의 줄모 실행 상황을 보면, 1930년에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69% 였으나 1933년에는 98%로 높아졌다. 1930년에 이미 70% 정도로 줄모가 이루어졌고, 1930년대 중반에 거의 100% 줄모가 행해졌다. 그러나 줄모는 수리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수리안전답은 5월 하순경에 모내기를 할 수 있어 대부분 줄모를 냈다. 그러나 천수답의 경우 봄가뭄이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하지)경에나 모내기를 하였고, 대부분 막모를 냈다.

〈표 11〉 경기도의 정조식 실행 성적(98) (단위 : 정보)

연도	면적			벼 재배면적에 대한 비율(%)		
	양정조	편정조	계	양정조	편정조	계
1930	61,722	76,596	138,318	30.7	38.1	68.8
1931	110,515	64,408	174,923	54.5	31.7	86.2
1932	152,838	35,447	188,285	75.2	17.4	92.6
1933	182,432	17,515	199,947	98.1	8.6	97.7
1934	200,325	4,822	205,147	97.2	2.3	99.5
1935	200,922	3,941	204,863	97.0	1.9	98.9

시흥지역은 1929년 설립된 소래수리조합(계수저수지) 몽리지역 외에는 대부분 천수답이었다. 1944년 흥부수리조합(물왕저수지)이 완공된 후에야 몽리지역이

(98) 京畿道, 『京畿道道勢概要』, 1936, 386쪽.

대폭 확장되었다. 시흥지역 농업 생산관행 조사에 의하면 수리안전답은 5월 하순 모내기를 줄모로 냈고, 그 외 천수답은 6월 하순경 막모를 냈다. 일제시기 시흥지역은 천수답 비율이 높아 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줄모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일제시기 내내 시흥지역은 줄모보다 막모를 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지방 행정관청의 강요는 집요했다. "일제시기 줄모를 내는 것이 지겨워서 해방되고 나서 다 걷어치우고 한 5년 동안 산식[막모]으로 하다가 다시 줄모로 냈다"고 장현동지역 주민은 회고하고 있다. 또한 "일제시기에는 관에서 나와 지도를 해야 줄모를 냈지만, 해방 후에는 스스로 냈다"는 금이동지역 주민의 회고도 있다. 줄모는 김매기가 훨씬 수월해져 농업노동력 절약이 용이한 농사기술이었지만, 현지 사정에 맞지 않게 관에서 전시행정으로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반감을 샀다. 결국 수리시설이 확보되면서 농업환경이 달라져 농민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갔던 것이다.

〈표 12〉 시흥지역의 농업기술 양상[99]

지역명	모내기	김매기
은행동 은행정	수리안전답(5월 하순, 줄모), 천수답(6월 하순, 막모)	2회(두레노동)
광석동 나븐들	상동, 줄모:막모=30:70	2회(두레노동)
도창동 강창말	대부분 막모, 줄모는 해방 이후	두레노동
매화동 새터말	대부분 줄모	
하상동	대부분 막모, 6월 하순경	
장현동 안두일	상동	3회(품앗이)
장곡동 진마루	상동	3회(두레노동)
방산동 고잔	상동, 가뭄시 건답직파	3회(두레노동)
죽율동 큰말	상동	2회(두레노동)
금이동 거멀	논배미가 큰 곳은 줄모, 6월 하순경	3회(두레노동)
물왕동 능골	무논에서는 줄모, 천수답 중 건파하는 논도 70%	3회(품앗이)

(99) 지역문화연구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5.

한편 김매기는 2회 내지 3회를 했다. 모내기는 개별적으로 노동력을 고용하거나 품앗이로 했지만, 김매기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두레에 의한 공동노동으로 이루어졌다. 모내기는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차적인 공동노동이 어려웠지만, 김매기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마을단위로 순번에 따른 공동노동이 가능했다.

(2) 수리조합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대규모 관개시설을 통한 토지개량으로 증산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1920년에 시작되어 1926년 산미증식갱신계획(제2기 계획)으로 수정되었다가 1930년대 들어 일본 내 쌀의 일시적인 공급과잉과 가격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1934년 중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10년대 경종법(耕種法) 개선을 통한 농사개량만으로는 증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많

▼ 수리조합 직원(1940년대)



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증산을 위해서 관개 · 개간 · 간척 등의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 토지개량사업은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26년부터 실시된 제2기의 토지개량사업은 90% 이상이 수리조합에 의한 것이었고, 국고보조비와 정부알선 저리자금 역시 88%가 수리조합에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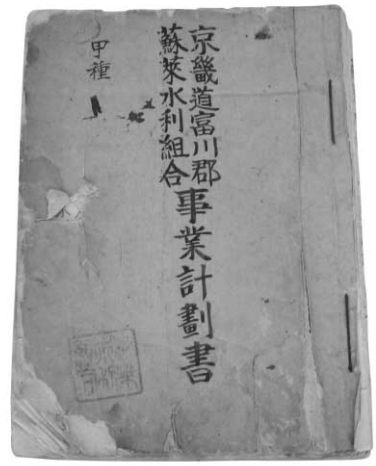
일제시기 시흥지역에 설립된 수리조합은 총 4조합이었다. 1929년 설립된 소래수리조합을 시작으로 1939년 칠리제공려수리조합과 매화공려수리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몽리면적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42년 설립된 흥부수리조합이었다. 각 수리조합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13〉 1940년 말 시흥지역 수리조합 현황[100]

조합명	사업지	설치 연월일	사업목적	몽리면적 (정보)	관개면적 (정보)	사업에 의한 증수익(엔)		조합비		조합 사무소 소재지	조합장
						반당	총액	반당	총액		
소래	소래면	1929. 5.30	관개, 배수	186	186	7.42	13,811	6.05	11,266	소래면 신천리	김진형 (金鎭瀅)
칠리제 (공려)	소래면	1939. 9.2	관개	35	35	3.02	1,063	2.55	900	소래면 무지리	김진형
매화 (공려)	소래면 수암면	1939. 11.16	관개	150	150	4.80	7,200	3.98	5,958	소래면 매화리	김진형
흥부	소래면 수암면	1942.9	관개, 배수	277	277						

시흥지역 수리조합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부천군 소래면 미산리 · 안현리 · 은행리 · 계수리를 몽리지역으로 하는 소래수리조합이었다. 소래수리조합은 소래면장이었던 이도영(李道榮)을 조합장으로 1929년 4월 1일 설립되어, 1930년 3월 저수지 시설을 완공했다.[101] 조합장은 1934년부터 이도영에서 김진형으로 교체되었다.[102]

(100) 朝鮮總督府, 『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40, 14~15쪽. 흥부수리조합은 1942년 사업계획 당시이다.
(101) 京畿道, 『京畿道 富川郡 蘇萊水利組合 事業計劃書』.
(102) 朝鮮總督府,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4, 10~11쪽.



▶ 『소래수리조합 사업계획서』 표지



▼ 계수저수지(1940년대)

소래수리조합의 몽리면적은 186정보로 1930년대 경기도의 수리조합 13개 중 3번째로 작은 규모에 속했다.[103] 소래수리조합은 저수지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것으로 계수저수지를 축조해서 관개용수를 제공했다. 1930년대 소래수리조합의 실적은 계획보다 좋았다. 계획상으로 수리조합 시공 후 증수량은 반당 2.73석이었다. 그러나 1933년의 실적은 3.47석이었다. 증수량에 대한 당시 곡가 환산액도 계획시 18.15엔(円)에서 실적은 22.35엔으로 늘었다. 이처럼 소래수리조합은 계획보다 좋은 실적을 내었다.

이에 따라 조합비도 증가했는데, 계획상 조합비는 6.05엔이었으나 1933년 조합비는 6.16엔이었다. 절대액수는 늘었지만 증수량 증가에는 못 미쳐 증수익에 대한 조합비 비율은 계획시 33.5%에서 실제 부담은 26.7%로 줄었다. 지역 주민들의 회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은행동 주민은 "계수저수지 축조 이후 90% 이상이 수리

(103) 가장 작은 규모의 수리조합은 수원의 장지제수리조합(86정보), 다음은 이천의 부발수리조합(122정보)이었다. 1922~1931년간 산미증식계획하에서 만들어진 수리조합은 대부분 일본인 대지주를 조합장으로 몽리면적 2,000~3,000정보 규모의 대규모 조합이 중심이었다. 이에 비하면 소래수리조합은 매우 소규모이고 조합장도 조선인이라는 차이가 있다.

안전답이 되었고, 수리조합비는 벼로 냈는데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부담했다. 조합비는 생산량의 20% 정도였다"고 했다.[104] 소래수리조합의 몽리구역이던 은행리는 조합 설립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만큼 수리조합비가 소작료에 추가되었다. 지주와 공동부담을 했으므로 생산량의 20% 정도인 조합비 중 10%를 소작인이 부담하게 되어 소작료는 생산량의 60% 정도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농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표 14〉 1933년 소래수리조합의 실적에 의한 수지계산표[105]

몽리면적(정보)	시공전 수량(石)		시공후 수량(石)		차인 증수고(石)		곡가(벼1석당, 엔)	증수량 곡가 환산액(엔)		조합비(엔)		조합비/증수익(%)
	반당	총량	반당	총량	반당	총량		반당	총액	반당	총액	
185.4	1.08	2,002	3.47	6,430	2.39	4,428	9.35	22.35	41,402	6.16	11,476	27.6

〈표 15〉 1940년 시흥지역 수리조합의 계획에 의한 수지계산표[106]

조합명	몽리면적(정보)	시공후 수량(石)		시공후 수량(石)		차인 증수고(石)		곡가(벼 1석당, 엔)	증수량 (엔) 곡가환산액		지주의 수익(엔)		조합비(엔)		조합비/증수익(%)
		반당	총량	반당	총량	반당	총량		반당	총액	반당	총액	반당	총액	
소래	186	1.08	2,009	2.73	5,078	1.65	3,069	11.00	18.15	33,759	7.42	13,811	6.05	11,266	33.3
칠리제	35	1.75	617	2.67	941	0.92	324	9.52	8.76	3,084	3.02	1,063	2.55	900	29.1
매화	150	1.74	2,610	3.04	4,560	1.30	1,950	11.00	14.30	21,450	4.80	7,200	3.98	5,958	27.8
흥부	277	1.70	4,709	3.60	9,972	1.90	5,263	14.25		39,423	0.93	2,576			

이 지역은 지력이나 기타 농업기술은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수리의 불안으로 농업생산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수리시설이 확보된 지역의 생산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농업경영에 적극적인 재지지

(104) 지역문화연구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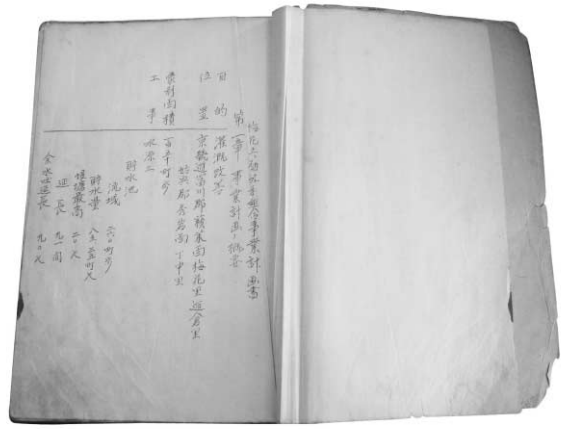
(105) 朝鮮總督府,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3, 64쪽.

(106) 朝鮮總督府,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40, 68~69쪽. ① 지주 수익 = 지주 전체소득액 − 금비, 기타 지주의 지출액 ② 흥부수리조합은 1942년 사업계획 당시이다.

주가 적고, 부재지주가 많은 특성으로 추가 수리조합의 설립이 발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 『매화공려수리조합 사업계획서』 표지
▼ 『매화공려수리조합 사업계획서』 내용





1929년 소래수리조합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으로 군수식량 확보를 위해 1939년부터 실시한 미곡증산계획에 따라 다시 수리조합 설립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전시하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1920년대 국고보조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수리조합사업과는 달리 200정보 이하의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수리조합을 공려수리조합(共勵水利組合)이라 한다. 공려수리조합은 200정보 이하의 소규모로 국고보조 없이 도비(道費)보조만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58곳이 설립되었다. 대부분 조선인을 조합장으로 했던 것도 1920년대 대규모 수리조합과 차이가 있었다.(107)

시흥지역에는 1939년 2개의 공려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칠리제공려수리조합과 매화공려수리조합이다. 칠리제수리조합은 몽리구역이 35정보에 그쳐 매우 소규모였다. 반면 매화수리조합은 몽리면적 150정보로 공려수리조합 중에서는

(107) 이영훈 외 공저, 『近代 朝鮮 水利組合 硏究』, 일조각, 1992, 92쪽.



▲ 물왕저수지 공사(1944)

꽤 큰 규모였다. 몽리구역은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 · 도창리,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였다. 매화수리조합 역시 저수지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것으로 도창저수지를 축조해서 관개용수를 제공했다.[108] 그러나 도창저수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실제 몽리구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109]

시흥지역의 논이 천수답을 벗어나 수리안전답이 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흥부수리조합의 물왕저수지였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더욱 확대되면서 식민지에서의 수탈과 동원이 극심해진 1942년 9월 흥부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이 수리조합의 수원인 물왕저수지는 2년 후인 1944년 3월 준공되었다. 흥부수리조합의 몽리면적은 277정보로서 시흥지역 수리조합 중 가장 큰 규모였고, 몽리구역은 소래면 매화리 · 도창리 · 금이리,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 · 물왕리 · 하상리 · 하중리였다.[110] 물왕저수지의 축조로 소래수리조합, 매화수리조합의 몽리구역에 더해 시흥지역의 주요 경작지대(방죽논지역)가 수리안전답이 되었다. 흥부수리조합의 성과는 해방

(108) 京畿道, 『梅花共勵水利組合 事業計劃書』.
(109) 지역문화연구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5.
(110) 京畿道, 『興富水利組合 事業計劃書』.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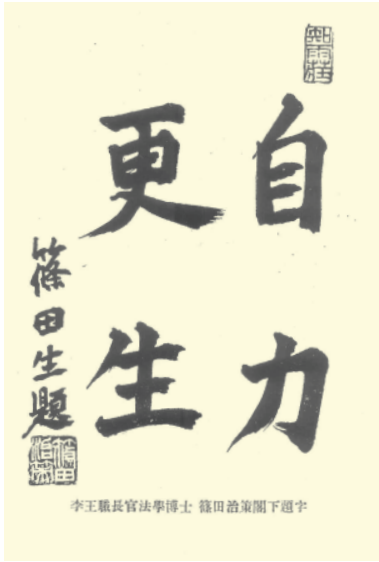
전쟁 중에 자금과 노동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흥부수리조합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1939년 대한해(大旱害)로 인한 흉작과 비료 · 노동력 부족이 겹치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독부는 1942년 '조선증미개정계획'을 실시하여 토지개량사업을 확대하였다.(111) 1942년 흥부수리조합의 설립도 이러한 정책선상에서 진행되었고, 부족한 자금과 노동력은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11.22)의 공포로 근로보국대에 의한 노동력 동원에 의해 메워졌다.(112) "물왕저수지 공사는 보국단이 담당했다"는 지역주민의 회고는 이를 뒷받침한다.(113)

2) 농촌진흥운동과 농가경제

일제시기 조선의 농촌사회는 1920년대 말의 농업공황으로 쌀값이 급락하면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지주와 소작인 계층으로 양극화되어 갔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농촌사회 내부에서 소작쟁의 등의 갈등을 격화시켰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들어 '농촌진흥운동', '조선농지령', '자작농지설정사업' 등을 통해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합방 이후 상품화폐경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몰락해 가던 농민들에게 자급자족을 통해 자력갱생하자는 것이었다.

자력갱생, 춘궁(春窮)퇴치, 차금(借金)예방을 슬로건으로 한 농촌진흥운동은 1933년부터 개별농가에 대한 '농가경제갱생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계획의 목적은 농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의 궁핍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관제기구로 농촌진흥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각 읍면별로 30~40

(111) 이송순, 『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변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83쪽.
(112) 이송순, 『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변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157쪽.
(113)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2005.



▲ **자력갱생** 농촌진흥운동의 구호였다.

호 단위의 '갱생지도부락'을 1개씩 선정하여 '식량충실, 금전경제의 수지균형, 부채근절'을 목적으로 5년 기한의 농가경제갱생계획을 실시했다. 1938년까지 총농가호수의 17%에 해당하는 46만여 호가 지도농가로 지정되었다.

시흥지역도 농가경제갱생계획에 따라 갱생지도부락이 선정되었다. 계획 실시 초기인 1933 · 1934년에 시흥군 21개, 부천군 31개 부락을 선정하였다. 이후 12개년 동안 시흥군은 260여 개, 부천군은 380여 개의 부락을 더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1930년 현재 시흥군은 10개 면, 부천군 15개 면이 있었으므로 1934년까지 평균 1면당 2개 부락 정도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흥지역에도 6개 정도의 갱생지도부락이 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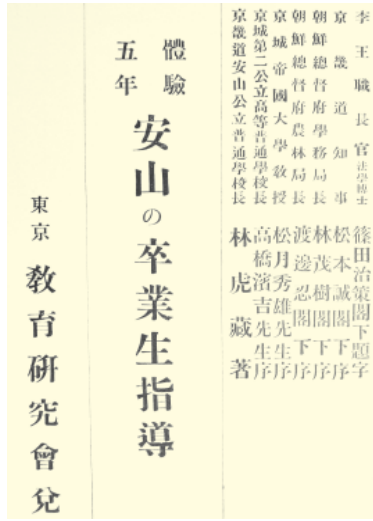
〈표 16〉 1934년 경기도 갱생계획 확충실시계획 개요[114]

지역	계획실시부락총수	계획실시부락수	장래 계획실시 부락수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시흥군	280	21	9	18	22	22	22	22	22	23	26	26	22	19	6
부천군	415	31	15	30	37	38	39	39	40	42	42	33	18	15	12
경기도	7,796	521	250	488	599	641	673	693	712	725	720	709	353	360	154

시흥지역에서 농촌진흥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직접적 자료는 없으나 농촌진흥운동의 전사(前史)라 할 수 있는 1927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114) 京畿道, 『京畿道道勢概要』, 1936, 154~155쪽.

'졸업생 지도' 사업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안산공립보통학교의 졸업생지도사업에 대한 책이다.

졸업생 지도는 1927년 경기도에서 당시 농무과장 야히로 이쿠오(八尋生男), 학무과장 타카하시 사토시(高橋敏), 도시학(道視學)이었던 하야시 타케히코(森武彦) 등이 입안, 계획하여 맨 처음 10개교를 지정학교로 선정하며 시작되었다. 일제시기 보통학교 졸업생들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교육받은 집단으로서 장래 지역사회의 핵심적 인자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보통학교 졸업생들을 흡수할 다른 경제적, 사회적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농촌사회의 기존 질서 내로 끌어들여 사회적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했다. 바로 졸업생 지도는 이들을 중견인물로 양성하여 식민지배를 안정화하려는 총독부 정책의 시발점이었다.(115)

농촌진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졸업생 지도는 중견인물 양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강조되기 시작하여 1931년 이후 매년 도지사 회의석상에서 정무총감은 졸업생 지도의 원활한 수행에 관심을 가지도록 강조했고, 총독 또한 여러 연설, 유고(諭告) 등에서 농촌진흥운동과 관련하여 이것을 언급했다.(116)

경기도에서 졸업생 지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지정한 학교 중 안산공립보통학교는 바로 시흥군 수암면이 통학구역이었다.(117) 먼저 안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 지도의 지도생 선정을 살펴보자. 지도생은 당해 졸업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미 졸업한 학생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선정인원은 10명 내외

(115) 이기훈, 「일제하 농촌보통학교의 '졸업생 지도'」, 『역사문제연구』 제4호, 2000, 274~275쪽.
(116) 이기훈, 「일제하 농촌보통학교의 '졸업생 지도'」, 『역사문제연구』 제4호, 2000, 278쪽.
(117)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7쪽.

로 하며 3년간 교사가 직접 지도를 하고 이후로도 간접 지도를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선정기준은 "졸업 후에도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할 자, 성행이 불량하지 않은 자, 지조 견실하여 업무에 성실한 자"로서, "부형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자, 부형이 농업에 열심인 자,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자, 부락 내에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였다.(118)

1927년부터 1931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선정인원은 총 46명(1927~1929년 각 10명, 1930~1931년은 각 8명)이었고, 1932년 현재 그중 13명이 이주나 전직 등으로 이동하여 33명이 지도대상이었다.(119) 〈표 17〉은 33명 지도학생의 지역별 분포이다. 현 시흥시 관내지역은 그중 절반인 17명의 지도학생이 있었다.

〈표 17〉 안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 지도'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120) (단위 : 명)

수암면(현 시흥시)				수암면(현 안산시)			
리명	인원	리명	인원	리명	인원	리명	인원
하상	1	능곡		수암	3	장하	
조남	7	물왕	2	부곡		월파	
화정		목감		와리	1	양상	4
광석		하중	3	장상	5	고잔	
논곡	2	산현	2	성포	1	박달	2

〈표 18〉은 시흥지역의 지도학생 17명의 가정경제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들 중 자작지를 소유하고 여기에 소작을 더 부치는 자소작농이 11집으로 대부분이었고, 자작지 없이 순전히 소작을 하는 소작농이 6집이었다. 자소작농 중 자작지가 가장 많은 집안의 학생은 하중리 김명한(논 1.4정보, 밭 1.2정보)과 장석철(논 1.5정보, 밭 1정보)이었다. 소작농가 6명(능곡리 차원국, 산현리 김인득, 조남리 김동훈 · 임형택 · 서상복 · 임천득)의 경우도 대개 논 · 밭 합계 2~3정보의 많은 땅을

(118)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47~50쪽.
(119)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135쪽.
(120)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133쪽.



▲ 지도생 임형택 모자의 갱생 자원이 된 밤산
▶ 송아지부터 키워서 농사에 이용하는 소



소작하였다. 이들 17명 농가의 경작규모(자 · 소작 합계)를 평균적으로 보면 논 1.38정보, 밭 1.17정보 2.5정보 정도 큰 편이었다. 이것은 〈표 6〉에서 확인한 1930년 시흥군의 1인당 평균 경작면적 1.42정보(논 0.8정보, 밭 0.62정보)에 비해 약 80% 정도 많은 규모였다.

이들은 상당한 규모의 농사 외에도 산림을 소유하였고, 대부분 소(農牛) 1마리 정도를 소유하여 농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들 가정의 소득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이들 가정의 수입은 평균 498.14원이었고, 지출은 388.29원이었는데, 지출에 비해 수입이 많아 연 109.85원의 순수입을 얻었다. 이것을 수암면지

역 농가수입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들 가정의 위치를 알 수 있다. 1920년대 중반 이 지역 농가 중 4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58% 정도가 100~2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였고, 100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궁민' 도 5%에 달했다.[121]

현실적으로 1929년 '1면 1교제' 가 실시되기 전에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최고 956원의 수입을 얻는 농가에서 최저 200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농가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지도생 농가는 이 지역 평균 경작면적의 80% 정도의 많은 토지를 경작하고, 전체 농가수입도 상위 20% 안에 속하는 중농 이상의 농가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8〉 1930년 안산보통학교 지도생 농가의 경제상황[122]

지역(수암면)	성명	연령	가정상황					가정에서 수입 전망(엔)		
			가족	토지		산림	가축	수입	지출	차액
				자작	소작					
능곡리	권섭	21	남 5, 여 3	밭 5반	논 5반			263.50	261.05	2.45
	차원국	19	남 4, 여 5		논 25반 밭 10반	5정	소 1, 닭 7	464.50	334.50	130.00
하중리	김명한	21	남 6, 여 2	논 14반 밭 12반	논 8반		돼지 1	956.00	607.00	349.00
	장형순	16	남 4, 여 3	논 4반 밭 3반	논 5반	1정 5반	소 1, 닭 4	460.20	309.40	150.80
	장석철	17	남 8, 여 4	논 15반 밭 10반	논 4반	5반	소 1, 닭 11	576.40	497.75	78.65
하상리	임성대	17	남 8, 여 8	논 8반 밭 12반	논 8반 밭 4반		소 1, 닭 10	529.00	402.90	126.10
	문정식	16	남 2, 여 3	논 3반 밭 15반	논 10반 밭 5반		소 · 돼지 1, 닭 6	755.50	621.65	133.85

(121)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13쪽.

(122)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138~140쪽.

지역(수암면)	성명	연령	가정상황					가정에서 수입 전망(엔)		
			가족	토지		산림	가축	수입	지출	차액
				자작	소작					
물왕리	안이산	17	남 6, 여 5	논 3반 밭 15반	논 20반 밭 15반	8반	소 1, 돼지 1, 닭 8	598.00	421.55	176.45
산현리	김인득	16	남 5, 여 5		논 15반 밭 10반	15정	소 1, 닭 20	537.20	436.40	100.60
조남리	김동훈	18	남 6, 여 3		논 15반 밭 5반	2정	소 2, 돼지 1, 닭 5	481.64	458.60	23.04
	임형택	15	남 4, 여 1		논 4반 밭 5반	7반	소 1, 닭 6	222.90	213.80	9.10
	신영우	17	남 4, 여 1	논 4반 밭 6반	논 1반	3정	소 1, 닭 5	199.00	179.20	19.20
	서상복	20	남 3, 여 1		논 10반 밭 15반	2정	소 1, 닭 6	217.80	148.24	69.56
	서상용	17	남 4, 여 2	논 1반 밭 10반	논 20반 밭 15반	30반	소 3, 돼지 2, 닭 24	650.40	415.47	234.66
	임천득	16	남 3, 여 2		논 10반 밭 15반	3반 5무	소 1, 돼지 1, 닭 5	228.50	219.56	8.94
	이용철	20	남 5, 여 3	밭 2반	논 7반 밭 6반	2정	돼지 2, 닭 10	624.80	433.70	191.10
논곡리	김왕성	22	남 4, 여 5	논 4반 밭 4반	논 11반		소 1, 돼지 1, 닭 6	703.00	600.50	102.50
평균		18		논 3.3반 밭 5.5반	논 10.5반 밭 6.2반			498.14	388.29	109.85

졸업생 지도는 직업교육을 통해 총독부가 제시하는 농업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체득하게 하고 다른 한편 공민교육을 통해 충량한 신민으로서 농촌 중견청년을 양성해 나간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123] 이를 위해 먼저 농업기술교육은 주로 농업당국의 '권업방침'을 충실히 따르게 하는 것으로 품종관리, 정조식(正條植) 모내기, 퇴비제조 및 시비 등에 대해 체계적인 농업지식을 보급하

(123)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卒業生指導の意義」, 『朝鮮の教育研究』, 1932년 3월호, 21~24쪽.





▲ 새로운 농법의 교육
◀ 가마니 짜기

는 한편, 현금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마니 짜기 등 각종 부업을 권장하여 농촌진흥운동의 모토인 자력갱생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자 했다.

실제로 안산보통학교 지도생들의 실습농경지의 농업생산성은 인근지역 평균의 두 배 이상이 되었다.(124) 이들은 작은 규모의 실습지에 적절한 양의 비료를 투입하고, 새로 보급된 품종에 가장 적합한 농법을 적용하였으며, 담당 훈도(교사),

(124) 안산보통학교 지도생의 실습경작지와 주변지역의 반보당 생산량 (단위 : 석)

연도	안산보통학교 지도생 실습경작지			인근 평균
	평균	최대	최소	
1927	5.01	5.66	4.16	2.50
1928	3.89	5.40	1.20	1.50
1929	4.02	7.00	2.50	2.24
1930	5.52	8.65	4.20	2.85
1931	4.15	7.25	2.70	2.30

출전 :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141쪽.



▲ 지도생 이회덕의 집을 시찰한 조선 13개 도지사들(1942)

군농회, 금융조합, 면의 기수 등이 번갈아 찾아와 지도 · 감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생산성이 인근 지주, 농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로서 수암리의 구장 엄이섭(嚴履燮)은 '면내 굴지의 자산가'로 1928년 자신이 스스로 논 1단보를 경작하면서 지도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을 받았다. 가을이 되자 그는 소작인에 비해 3배 남짓의 수확량을 거두었고, 다음 해부터 그 집안의 소작인들은 개량농법에 의해 농사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125) 이처럼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의 시작과 함께 졸업생 지도는 자력갱생의 훌륭한 사례로 각광받게 되었다.

한편 1930년대의 농촌정책인 자작농지 설정사업과 졸업생 지도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자작농지 설정대상 농가 267호 중 1/3을 보통학교 졸업지도생이 차지했다. 1935년 현재 경기도 내 자작농지 설정자 총 1,038명 중 지도생으로 그 대상이 된 자가 도(道)자작농 115명, 금융조합 자작농 165명, 합계 28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굳이 자작농지 설정대상

(125)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187~189쪽.

자가 되지 않더라도 농사시험장 견습생이 된다든지, 일본시찰단으로 파견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중견인물로서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126)

이처럼 졸업생 지도는 자력갱생의 신화를 만들고, 지도생을 자작농지 설정사업의 설정대상 농가로 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중견인물이라는 총독부 정책의 현지 대리자로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성공사례가 주변 농민들에게 선전되어 일제 총독부 정책에 협조하며 따르게 함으로써, 농촌의 피폐와 몰락으로 그에 저항하는 농민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식민지배의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었다.

일제시기 시흥지역은 조용한 농촌사회였지만, 그 속에서 살아간 농민들의 삶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다. 자신의 땅을 소유한 농민들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일제의 식민농정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대지주의 자본이나 총독부의 정책적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생산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의 노력으로 수리조합을 만들어 조금이나마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일제 총독부는 1930년대 이후 자신의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여 농민들을 자력갱생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곧 이어진 일제의 침략전쟁 도발로 농민들에 대한 수탈과 동원이 자행되면서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었다. 결국 시흥지역 농민들이 수리시설이 완비된 옥토를 자신의 소유로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었다.

(126) 이기훈, 「일제하 농촌보통학교의 '졸업생 지도'」, 『역사문제연구』 제4호, 2000, 279~280쪽.

◎ 참고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各年版.
朝鮮總督府,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1권 京畿道』, 1937.
朝鮮總督府, 『朝鮮 昭和15年 國勢調査結果要約』, 1940.
朝鮮總督府, 『人口調査報告書 1』, 1944.
京畿道 內務部 社會課, 『京畿道農村社會事情』, 1924.
京畿道, 『京畿道 農事統計』 1928 · 1930 · 1932 · 1934年版.
京畿道, 『京畿道 富川郡 蘇萊水利組合 事業計劃書』.
京畿道, 『興富水利組合 事業計劃書』.
京畿道, 『梅花共勵水利組合 事業計劃書』.
林虎藏(安山公立普通學校長),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京畿道, 『京畿道道勢槪要』, 1936.
朝鮮總督府,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各年度.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の農業』, 1941.
이영훈 외 공저, 『近代朝鮮 水利組合 硏究』, 일조각, 1992.
박섭, 『한국근대의 농업변동』, 일조각, 1997.
이기훈, 「일제하 농촌보통학교의 '졸업생 지도'」, 『역사문제연구』 제4호, 2000.
강만길 편,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우대형, 『韓國近代農業史의 構造』, 한국연구원, 2001.
이송순, 『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변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지역문화연구소,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5.

이송순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5장 군자 · 소래염전의 축조와 운영

1. 천일염(天日鹽) 관영화정책과 시흥의 염전

1) 수입 중국염(中國鹽)의 증가

개항 이후 조선의 염업은 중국염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염은 일본염이나 조선염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다. 그 이유는 제염법이 달랐기 때문인데 중국염은 햇빛을 쬐서 소금을 만드는 천일염인 반면, 조선염과 일본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갈아 소금가마에 끓이는 자염(煮鹽) 혹은 전오염(煎熬鹽)[127]이었기 때문이다. 천일염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연료비가 없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염에 비해 가격면에서 유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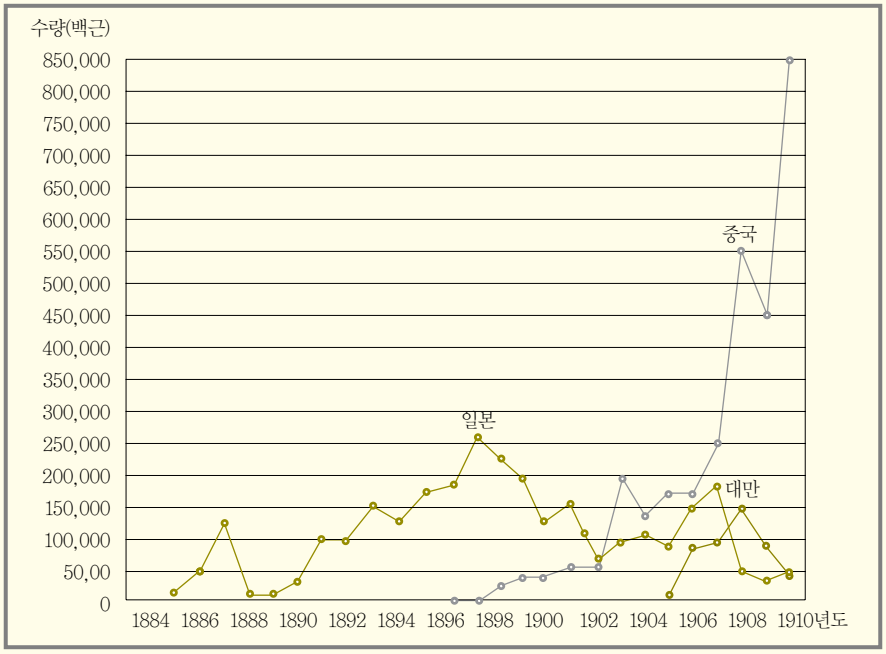
1910년경 각국 염의 시장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조선 자염이나 일본 전오염의 평균 소매가격은 중국 천일염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다. 대만염의 경우 중국염과 도매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중국염이 주로 산동반도를 비롯한 조선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반면 대만염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대만염은 운송비 문제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27) 소금가마에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자염, 火鹽 등으로 불렀으며, 일본에서는 전오염이라 불렀다.

〈표 1〉 1907~1910년경 각국 염의 시장가격 비교[128]

종류 \ 가격		한국 자염	중국 천일염	대만 천일염	일본 전오염
도매	최고	2.055	1.255	1.110	1.390
	최저	1.384	0.815	0.923	1.280
	평균	1.832	1.000	1.017	1.335
소매	최고	4.370	1.800		4.370
	최저	1.440	1.160		1.500
	평균	2.522	1.399		2.935

이러한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염은 이미 1910년 이전에 수입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1910년 이전 소금의 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가별 소금 수입량[129]

(128)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務概況』, 1910, 32~33쪽.

(129) 1885~1895년은 『通商彙纂』 17호(1895), 36호(1896) 참고; 1896~1910년은 이영학, 「開港期 製鹽業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12, 서울대 인문학연구, 1991; 田中正敬, 「統監府の鹽業政策について」, 『一橋論叢』 115券 2號, 1996에서 참고.

중국염의 수입 급증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밀수입염이었다. 중국인의 밀수는 비단 소금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조선과 중국의 해안은 많은 섬들이 널려 있고 안개가 자주 끼며, 경비가 허술하여 밀수출 · 입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밀수입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관을 통과하는 양만큼 많았다"고도 하며, "인천부 이북 각지에 정식으로 수입된 양이 12만 석인데, 밀수입염은 30만 석을 상회한다"고도 한다.[130] 단, 천일염은 자염에 비해서 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층민은 중국염을 사용했지만, 상류층은 여전히 자염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2) 천일염 이전 시흥의 염전[131]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안산군의 마유면(馬遊面) · 초산면(草山面) 등은 염전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곳은 현재 시흥시에 속해 있다. 이 지역은 해안에 많은 간석지가 있어서 염전개발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개항 이후 안산염전에 관한 기록은 '1887년 박재홍(朴在洪), 박치삼(朴致三), 김학손(金學孫) 등이 염업 공납의 폐단을 없애 줄 것을 상소'[132]한 것과 '1889년 경감관(京監官)이라 칭하는 자들이 염세를 신설하여 걷고 있으므로 그 폐단을 해결해 달라는 안산염민들의 상소'[133] 등 주로 세정의 문란과 관련한 문제였다.

그 이후 안산의 자염에 관한 기록은 1907년 일제에 의한 「염업조사보고(鹽業調査報告)」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안산지역은 염전개발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일찍이 염업이 발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마유면 일대가 가장 넓은 간석지를 가지고 있어서 염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규모도 컸다고 한다.

---

(130) 度支部, 『財務週報』 36호 부록, 1907.

(131) 시흥의 煮鹽에 관한 기록은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業調査報告書 第一編」, 『財務週報』 第55號 附錄, 1907에 잘 나타나 있으며, 다른 기록을 찾기 힘든 관계로 이 장은 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32) 「安山鹽民等狀」, 『각사등록 근대편』, 1887년(丁亥 十二月 二十二日).

(133) 「安山鹽民等 所志」, 『각사등록 근대편』, 1889년(己丑 九月 初七日).



〈그림 2〉 1910년대 시흥지역 지형도

이 지역의 소금 판매는 전부 중매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수송은 배를 통해서 중매인이 했으며, 대부분의 소금은 서울의 마포로 판매되었다. 그리고 소량의 소금이 황해도로 판매되었다. 당시 마포시장은 1년간 집산 물화가 곡물 2,500석, 과일 400관, 야채 4만 관, 소고기 500두 등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마포 근처에는 3만 2,681호, 19만 1,753인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134) 즉 마포시장은 서울이라는 대량의 소비지를 가진 큰 시장으로 안산 외에도 수원, 인천, 부평, 통진, 김포 등 경기지역의 소금 대부분이 이곳으로 집산되었다. 소금의 판매대금은 외상거래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변의 농가에서 구매하는 소량의 소금에 대해서는 쌀이나 벼를 현금 대신 받기도 하였다.

당시 염업자들은 대부분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제염업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족노동에 기초한 단독경영이 주를 이루었으며 부옥(釜屋)(135)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비가 와서 제염작업에 실패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소작에 의한 염전경영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1907년 현재 안산지역에서는 일본인 미카미 모토히로(三上素敬)가 유일하게 한국인 소작인

(134) 『每日申報』 1913년 8월 31일.

(135) 부옥은 鹹水를 끓여 소금결정을 만드는 곳을 말한다.

3명을 두고 염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1907년 안산에서 염전을 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907년 안산군 염업 종사자 현황[136]

구분 / 지역	소유자	소작인	종업자수 (명)	면적(町步)	1개년 제염고(斤)	염정수 (鹽井數)	부옥수 (釜屋數)
마유면 조현리 (烏峴里)	전치근(全致根)		3	1.4300	163,230	14	1
	정성환(鄭聖煥)		3	1.3401	116,640	10	1
	윤여공(尹汝公)		3	1.0220	116,640	10	1
	이홍여(李弘汝)		2	1.4320	162,290	14	1
	한춘명(韓春明)		2	1.0220	116,640	10	1
	이준명(李俊明)		3	1.8421	210,000	18	1
마유면 조리(鳥里)	이공미(李公美)		3	1.3309	139,965	12	1
	호영선(戶永善)		2	1.4320	163,290	14	1
마유면 월곶리 (月串里)	미카미 모토히로 (三上素敬)	조순화(趙順和)	2	1.2306	193,950	12	1
		심학순(沈學淳)	3	1.4321	163,290	14	1
		이준길(李俊吉)	3	1.6408	174,600	16	1
			2	1.0218	116,640	10	1
	조신득(趙申得)		2	1.2306	139,950	12	1
마유면 정왕리 (正往里)	예연호(芮連浩)		2	0.2624	39,120	4	1
	김호여(金浩汝)		2	0.2316	38,880	4	1
	안광신(安光信)		2	0.2624	39,120	4	1
	이청여(李靑汝)		2	0.2316	38,880	4	1
	박원선(朴元善)		2	0.2316	38,880	4	1
	정여즙(鄭汝楫)		2	0.2416	38,880	4	1
	천원명(千元明)		2	0.2407	38,880	4	1
	원여서(元汝西)		2	0.2624	38,880	4	1
	안영화(安永化)		2	0.2316	38,880	4	1
소계	19	3	51	19.6029	2,327,525	202	22
초산면 하중리 (下中里)	강기연(姜己連)		2	1.2306	139,950	12	1
	박근서(朴近西)		2	0.8204	93,300	8	1
	권사원(權士元)		2	1.4112	163,200	14	1
	김경공(金京公)		2	0.8204	93,300	8	1

(136)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業調査報告書 第一編」, 『財務週報』 第55號 附錄, 1907, 267~270쪽.

구분 / 지역	소유자	소작인	종업자수(명)	면적(町步)	1개년 제염고(斤)	염정수(鹽井數)	부옥수(釜屋數)
초산면 하중리	장춘홍(張春弘)		2	0.8204	93,300	8	1
	김일광(金日光)		2	0.8204	93,000	8	1
소계	6		12	5.9234	676,050	58	6
와리면 초지리 (草芝里)	홍군선(洪君先)		3	0.5110	58,320	5	1
	홍의선(洪義先)		3	0.4102	46,650	4	1
	손치광(孫致光)		2	0.2016	23,400	2	1
	홍경집(洪京集)		2	0.3024	34,950	3	1
	민중필(閔仲必)		2	0.4102	46,650	4	1
	김학인(金鶴仁)		2	0.4102	46,650	4	1
	박의교(朴義敎)		2	0.3024	34,950	3	1
	민원익(閔元益)		2	0.3024	34,950	3	1
	민성원(閔聖元)		2	0.4102	46,650	4	1
	최석보(崔石甫)		2	0.3024	34,950	3	1
소계	10		22	3.5630	408,120	35	10
총계	35	3	85	29.0893	3,411,695	295	38

〈표 2〉에 의하면 안산지역에서는 대부분 2~3명이 염업에 종사하여 1개년 1정보당 약 11만 5천근 내외의 소금을 생산해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1개년 1소유자당으로 따져 보면 염전소유자 1인이 일 년 동안 약 9만 6,000근의 소금을 생산해 낸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시기는 조선의 염업이 전체적으로 몰락해 가는 시점이었다. 그리하여 안산군도 1907년 소금생산 결과 약 5원(圓)의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안산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전국적으로 적자를 보는 제염지가 흑자를 보는 곳보다 많아 지고 있었다. 적자의 주된 원인은 연료비와 임금이었으며,[137] 그것은 앞서 밝혔듯이 중국염이 천일염 방식이었던 데 반해 조선염은 자염이었기 때문이다. 즉 가격경쟁에서 중국염은 조선염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일제의 천일염 관영화정책에 따라 조선염은

(137) 이영학, 「開港期 製鹽業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1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1991, 571~572쪽.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흥의 자염업자들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점차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산업적 전망을 잃고 생활염으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천일염 관영화정책

품질에 다소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중국염은 수입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대해 통감부는 1907년 경기도 주안(朱安)에서 천일염전을 시험하였고, 이후 천일염전을 축조하여 중국염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천일염전을 관영화하고 민간에는 허용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조선 염민들은 중국염과 관염이라는 두 개의 값싼 소금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것은 조선 염민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염민들은 염세저항운동을 벌이거나 염업회사를 설립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했으나 차츰 몰락해 가고 있었다.

원래 천일염 도입은 중국염으로부터 조선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염 보호라는 명분은 조선 염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통감부는 천일염 관영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조선의 염전에 대한 보상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천일염전 축조 이후에는 자본의 부족 등을 이유로 조선의 염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천일염의 개발은 중국염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감부는 천일염전 개발 기회를 사전에 봉쇄해 버렸으며, 이후 구제책조차 포기해서 조선 염민의 몰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것은 천일염 관영화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제에게 조선염의 관영화는 중국염의 방어라는 명분 외에도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하나는 식민지 재정확보책이었다. 통감부는 식민지 재정확보의 한 방책으로 염세에 주목했으며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1906년 염세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염세에 대한 염민들의 거센 저항과 낮은 교육수준, 생산량의 부족 등으로 염세정

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염업을 통한 재원의 확보는 관영화, 더 나아가서는 전매제의 수립이 가장 손쉬운 대안이었다. 즉 염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의 원염(原鹽) 증산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비단 조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식민지 대만과 관동주, 조선을 잇는 천일염 생산망을 통해서 장래 일본의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염의 증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원염은 소다공업[138]의 중요한 원료였으며 장래 일제의 공업 발달을 위해서는 값싼 원염의 대량 생산이 필요했다. 즉 통감부의 천일염 관영화정책은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영전략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1907~1930년 관영염전(官營鹽田) 축조와 군자염전

1) 관영염전의 축조와 군자염전의 난공사

1907년부터 1920년대까지는 '관영염전 축조기'라고 할 수 있다. 관영염전의 축조는 1907년의 경기도 주안시험염전을 효시로 하여, 관영염업 방침 확정 후에 본격화되었다. 축조계획에 따른 제1기 염전은 경기도 주안, 평안남도 광양만을 중심으로 1914년까지 858정보가 완성되었다. 1917년까지 제2기 염전 건설에는 경기도 주안과 평안남도 덕동에 347정보가 완성되었다. 제3기 염전 건설은 1920년부터 7개년에 걸쳐 평안남도 귀성, 평안북도 남시, 경기도 남동 및 군자에 2,600정보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1925년에 계획이 중단되고 완성된 염전도 계획의 절반인 1,241정보에 지나지 않았다.

(138) 소금을 원료로 하여 알칼리(수산화나트륨 · 탄산나트륨)와 염소를 생산하는 화학공업을 말한다. 황산공업과 함께 18~19세기에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 독일 등에서 산업혁명을 주도한 섬유공업의 관련 부문으로 크게 발전했으나, 현재는 염료 · 화학비료 · 합성수지 등에 중간원료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이용되고 있다.

1907~1920년대 관영염전 건설추이를 보면 〈표 3〉와 같다.

〈표 3〉 1920년대 관영염전 건설추이[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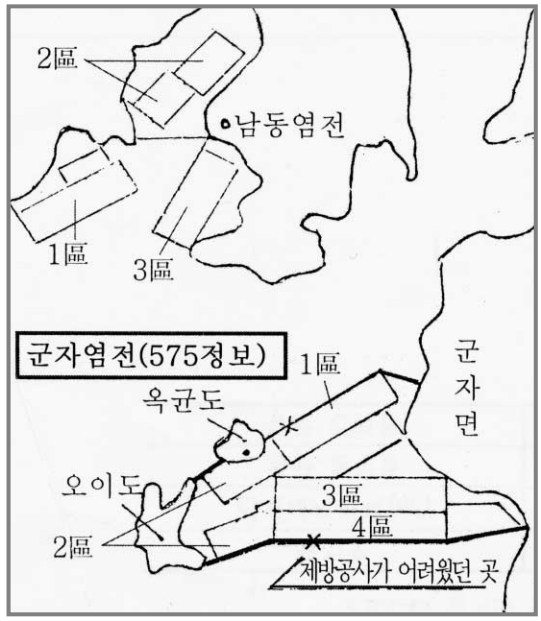
구분 / 출장소	염전	소재지	면적(町步)	공사기간	비고
주안 출장소	주안(朱安)	경기도 부천군 다주면(多朱面)	212	1907~1918	
	남동(南洞)	경기도 부천군 남동면(南洞面)	300	1920~1921	
	군자(君子)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575	1921~1925	
광양만 출장소	광양만(廣梁灣)	평안남도 용강군 금곡면(金谷面)	770	1910~1914	
	덕동(德洞)	평안남도 용강군 대대면(大代面), 신령면(新寧面)	223	1918~1919	
	귀성(貴城)	평안남도 용강군 귀성면(貴城面)	495	1920~1921	1930년대 증축
남시 출장소	남시(南市)	평안북도 용천군 외상면(外上面)	483	1921~1923	

〈표 3〉에서 보면 주안염전과 광양만염전은 천일염 축조 제1기의 염전들로 주안이 1907년 처음 천일염전을 축조한 이래 1918년까지 지속적으로 염전을 확장하였고 광양만염전은 5년 사이에 770정보의 비교적 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비해 제2기, 제3기의 염전들은 대부분 1~2년 사이에 염전을 완성하고 천일염 생산에 돌입하였는데 이는 염전 축조기술이 1기에 비해 그만큼 발전했음을 짐작케 해 준다. 그러나 제2기, 제3기에 축조된 염전 중 군자염전만은 공사기간이 5년이나 걸렸다. 다른 염전이 대체로 1~2년 사이에 완공된 것과 비교해 보면 공기가 두 배 정도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군자염전의 축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어려운 공사였기 때문이다. 군자염전은 군자면 앞바다 5㎞ 내 해상에 위치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옥균도(玉均島), 오이도(烏耳島) 두 섬을 이용하여 마주보는 연안인 군자면을 두 개의 제방으로 연결하여 1,000정보의 염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간만의 차가 매우 커서 무려 9m에 이르고 제방도 길이가 11㎞에 이를 정도로 길어서 처음부터 공사가 쉽지 않았다. 또한 1921년 11월 공사 착공 이

(139) 石橋雅威 편, 『朝鮮の鹽業』, 友邦協會 1983, 16~18쪽.



▲ 광양만염전(1920년대)



〈그림 3〉 군자염전

래 폭풍우, 해일 등의 피해로 제방 파괴가 되풀이되었고 5회에 걸친 재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폭풍우에 의한 파괴는 1921년 7월 20일과 8월 2일에 두 번 있었는데 모두 만조(滿潮) 때 일어났다. 해일에 의한 것은 그 다음해 8월 13일이며 이때의 피해는 '훗날 많은 사람들이 생생히 기억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몇 차례의 재해 때문에 매일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제방을 쌓았다.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면 제방은 그때마다 무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거듭되었다. 전매국에서도 공사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경험이 풍

부한 토가와 카네쿠라(戶川金藏)[140] 등에게 공사를 맡겼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임금을 낭비하여 마침내 자금을 탕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사감독 측에서도 피로와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망하는 인부들이 속출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염전공사장 토목인부 40명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이기도 하였다.[141]

전매국이 비상조치로 설계를 변경하여 최초 계약한 공사청부금 91만 원을, 141만 원으로 증액하고서야 공사를 끝마칠 수 있었다. 공사착수 이래 3년 5개월이란 세월과 공사 소요인원 60만 명을 투입하고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군자염전의 축조 개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군자염전 축조 개황[142]

구 분	내 용
위 치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지광(地光)간석지
공사면적	946정보(염전면적 575정보)
제방의 총길이	약 11㎞
공사기간	1921년 11월부터 1925년 3월까지(3년 5개월)
공사비	141만 원
천일염의 생산량 예상치	5,000만 근
공사청부자	戶川金藏, 秋山研
공사소요인원	60만 명
공사담당자	전매국 주안출장소 소장 宮田大藏, 藏口庄次 기수, 大住弘 기수
조선총독부 전매국	靑木 국장, 金村 염무과장, 山岸 기사, 眞田 기수

군자염전은 완공 후에도 말썽이 되었다. 정왕리, 죽율리 두 동네를 횡단한 염전 제방이 문제였는데, 이 제방으로 인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매년 홍수 때마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으며 제방도 여기저기 훼손되었

(140) 戶川金藏은 1875년 일본 新潟縣 태생으로 1905년 조선으로 건너와 용산停車場 공사담당, 京城民團役所 공사담당, 仁政殿 공사담당, 마산 重砲臺 등 여러 공사를 청부받아 완성하기도 하였다.

(141) 『고등경찰관계연표』, 1925년 8월 16일.

(142) 石橋雅威, 『朝鮮の鹽業』, 1983, 94쪽.

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총독부 전매국에서는 농민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농민들이 배수로를 파 주는 조건으로 배수구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143)


問題의 君子鹽田堤防
排水口設置確定
民怨不絕言專賣局 君子面堤防

▲ 군자염전 배수로 관련 신문기사 (『동아일보』 1926년 10월 17일)

2) 관염의 운영과 군자염전

관염의 관리는 주로 전매국에서 담당했는데, 전매국은 1921년 연초(煙草) 전매제 시행 이후 새로 설립되었다. 소금은 전매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러 · 일전쟁기에 전매가 시행되었으며 조선에서도 전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매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전매국 수입은 총독부 재정에서 15% 내외로, 비교적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연초 수입은 전매국 수입 전체에서 90% 전후였다. 한편 관염 수입은 1920년대에는 2% 전후로 매우 적은 반면 염전의 초기 투자비용은 큰 편이었기 때문에 1924년까지 계속해서 적자였다. 그리하여 관염이 전매국의 '암' 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관염 생산은 1920년대 전반까지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1920년대 후반에 생산이 급증해서 1929년에는 조선 내 소금 유통량의 50%를 점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 관염의 생산량을 표시하면 〈표 5〉와 같다.(144)

(143) 『동아일보』 1926년 8월 24일; 『동아일보』 1926년 10월 17일.

(144) 군자염전은 1925년 완공되었으므로 이 해의 생산량을 알 수 없어 0으로 표시했으며 생산평균에서도 군자염전의 1925년 생산량은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귀성염전의 경우 염전 전체의 생산량을 알 수 없어서 부득이 그 일부인 147정보(2區)에 대한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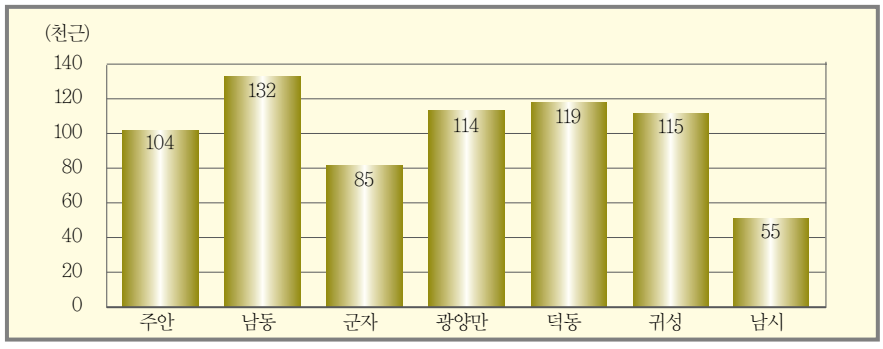
〈표 5〉 1925~1929년 관염 생산량[145]

(단위 : 천근)

소재지 / 생산량	주안	남동	군자	광양만	덕동	귀성	남시
면적(町步)	213	300	575	770	223	149	217
1925	12,042	2,775	0	52,733	20,067	9,514	1,268
1926	9,808	8,195	1,575	38,994	12,772	7,366	6,079
1927	13,905	16,690	15,852	66,881	20,925	12,295	8,545
1928	17,739	24,658	30,839	69,081	21,697	13,711	5,224
1929	22,193	39,601	48,843	87,510	26,545	17,125	11,938
평균 생산량	15,137	18,384	24,277	63,040	20,401	12,002	6,611

일제강점기 조선의 소금 소비량은 대체로 5억 2,000만 근 내외인데, 1929년의 관염 생산량은 약 2억 5,000만 근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량의 절반을 관염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나머지 소비량의 대부분은 수입염으로 대체되었으며, 일부 재래자염(在來煮鹽)도 소비되고 있었다.

군자염전은 1925년 완공된 이래 1927년까지는 생산량이 많지 않았으나 1929년을 전후해서 5,000만 근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공시기가 다른 염전에 비해 늦었기 때문에 염전의 생산량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는 못했던 것 같다. 1929년의 1정보당 평균 생산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1929년 1정보당 평균 생산량[146]

(145)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5~9.

(146)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5~9.

〈그림 4〉에서 보듯이 남동염전이 1정보당 13만 2,000근 정도를 생산해 내는 반면, 군자염전은 아직 8만 5,000근에 그치고 있으며 남시염전을 제외하면 평균 생산량이 가장 낮았다. 염전의 생산량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대체로 4~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염전은 '숙전(熟田)'으로써 기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자염전은 1920년대 말까지 생산량에서 다른 염전보다 높지 않은 편이었다.

관염의 판매는 1911년부터 위탁판매로써 민간의 염상(鹽商)에게 위임되었는데 1918년부터는 총독부 직영으로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관염의 판매는 가격 면에 있어서 수입염보다 불리해서, 관염판매촉진 때문에 특별히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도 있었다. 따라서 수입염 문제가 조선총독부의 염업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3. 1930~1945년 염업정책과 군자 · 소래염전

1) 염수이입관리령(鹽輸移入管理令)의 시행

1930년 5월부터 시행된 '염수이입관리령'의 시행은 염업정책의 큰 전환을 가져왔다. 이 제도에 의해 수이입염은 모두 총독부로 들어왔으며, 총독부에 의해 판매되었다. 즉 수입염은 총독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수입염은 소금 유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관염과 합치면 소금 유통량의 90% 이상을 총독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총독부는 전매제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선의 소금시장을 거의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 총독부는 '염수이입관리령'을 시행하면서 관영염업수입을 두 배 이상 늘리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염업정책은 전매제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우선 '염수이입관리령'의 시행이 민감염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매제는 소금에 대한 통제가 필수인데 민간염까지 통제를

확대할 경우 민간염의 보호라는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06년 재정된 염세규정이 조선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1920년 폐지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염업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소금의 자급자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재정부담이 큰 전매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제4기 염전 축조계획과 소래염전 축조

이 시기 총독부는 소금의 자급자족을 염업의 최대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관동대지진으로 중단된 염전 축조를 재개하였으며, 군자염전의 경우 염전 내부정리를 통해서 28정보의 염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 제4기 염전 축조계획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1~4차까지 나눠 추진될 계획이었다. 제1차 염전계획은 1932년부터 착수하기로 하였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1933년까지 실행이 연기되었고, 1936년경 완성되었다. 제2차 염전계획은 1935년에 개시되어 1940년에 완성되었다. 그 규모는 당초의 3,000정보가 아닌 2,200정보로 축소되었다. 제3차 염전계획으로 1938년부터 1942년까지 1,250정보의 염전이 건설되었으며 제4차 염전계획도 1,250정보의 염전 확장이 계획되었지만 8.15해방으로 인해 제4차 염업계획은 취소되었다. 이 시기 염전 축조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1930~1945년 관영염전 건설추이[147]

구분 / 출장소	염전	소재지	면적(町步)	공사기간	비고
주안 출장소	소래(蘇萊)	경기도 부천군 남동면(南洞面)	549	1934~1937	신축
광양만 출장소	귀성(貴城)	평안남도 용강군 귀성면(貴城面)	1,386	1933~1940	증축
남시 출장소	남시(南市)	평안북도 용천군 외상면(外上面)	266	1933~1935	증축
	해남(海南)	황해도 정안군 해성면(海城 面)	1,250	1938~1942	신축

(147) 石橋雅威 편, 『朝鮮の鹽業』, 友邦協會, 1983, 16~19쪽.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소래염전은 1934년 착공되어 1937년 완공되었다. 남동면의 노현리를 중심으로 549정보의 땅에 공사비 60만 원, 연인원 40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염전공사였다.(148)

총독부는 소래 · 귀성 · 남시염전이 포함된 제1차 염전계획을 통해서 염전 1,100정보를 확보하고, 여기서 약 1억 근 내외의 염을 생산하고자 하였다.(149) 1억 근은 수입염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2차의 1,100정보 축조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약 2억 근 내외의 소금 증산을 통해서 수입염을 거의 90%까지 대체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소금의 생산량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표 7〉 1930~1945년 관염 생산량 (단위 : 천근)

소재지 / 생산량	주안	남동	군자	광양만	덕동	귀성	남시
면적(町步)	213	300	575	770	223	149	217
1931	18,563	31,622	41,211	87,765	26,502	16,264	20,240
1932	9,808	8,195	1,575	38,994	12,772	7,366	6,079
1933	13,905	16,690	15,852	66,881	20,925	12,295	8,545
1934	17,739	24,658	30,839	69,081	21,697	13,711	5,224
1935	22,193	39,601	48,843	87,510	26,545	17,125	11,938
평균 생산량	15,137	18,384	24,277	63,040	20,401	12,002	6,611

이상에서 1930년대의 염전확장은 실제 건설이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염의 수급은 완성되지 못했다. 전시기에는 염 부족이 표면화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1941년경부터 가격통제를 시행하고, 1942년에는 조선염전매령을 시행해서, 종래 자유판매였던 민간염업과 공업용염전에 대한 통제 및 배급통제를 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조선총독부는 전시라고 하는 특수한 정세에서 전매제도를 완성한 것이었다. 1943년에는 임시제염지관리령을 시행해서 증산을 목표

(148) 『동아일보』 1934년 10월 11일.
(149) 『동아일보』 1934년 7월 4일.

로 했지만, 염 부족을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은 될 수 없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은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한편 1933년에 일제가 소다류를 시험제조하고, 193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조선에 있는 공업용 소금의 수요가 생겼다. 원래 공업용염은 일본과 같은 자기수입으로 되었지만, 1938년 총독부는 염전건설을 대일본염업주식회사에 허가해서, 조선에 있는 공업용염 생산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조선에서 염의 자급을 완성하지 않은 관영염업에 식료용 이외의 염을 증산하는 재정적 ·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는 것, 공업용염의 생산부터 소다류의 제조까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소다공업의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2차를 합해서 3,000정보를 확장할 예정이었던 공업용염전도 일부 염전 이외에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민간염업은 천일염의 증대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던 것이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말에 걸쳐 비교적 안정된 생산량을 가졌다. 그 이유는 첫째 지역에서는 가격으로 천일염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한 생산자가 존재했던 것, 둘째 전오염이 천일염보다 좋은 품질을 가지고 일정한 수요가 있어서 가능하였다.

민간염업자의 대부분은 농민으로 염업에 관한 형태가 부업이 일반적이고, 염의 생산으로 받는 이익도 적었다고 생각된다. 저렴한 천일염이 조선 내 유통의 9할을 점하는 상황에서 일제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염업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민간염업은 그것의 생산자로서는 현금수입 획득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었다. 여기에 민간염업이 계속된 기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30년대 말 이후 민간염업 존속의 조건은 악화되었고, 민간염 생산을 했던 염업자의 취업기회는 박탈되었던 것이다.

◎ 참고자료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 1 · 4.
度支部 臨時財源調査局, 『韓國鹽務槪況』, 1910.
石橋雅威 편, 『朝鮮の鹽業』, 友邦協會, 1983.
이영학, 「開港期 製鹽業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1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1991.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日本內閣 拓殖局, 『鹽ニ關スル調査』, 1911.
田中正敬, 『近代朝鮮における鹽需給と鹽業政策』, 一橋大學博士學位論文, 2001.
田中正敬, 「統監府の鹽業政策について」, 『一橋論叢』 115券 2號, 1996.
田中正敬, 「朝鮮開港後の日本 塩輸入とその影響-研究史整理を中心に」, 『日本鹽業の研究』 第26集, 日本鹽業研究會, 1998.
田中正敬, 「植民地期朝鮮の專賣制度と 塩業」, 『日本鹽業の研究』 第26集, 日本鹽業研會, 2000.
田中正敬, 「1930年以後の朝鮮における鹽需給と鹽業政策」, 『姜德相先生古希 · 退職記念日朝關係史論集』, 新幹社, 2003.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 1936.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5~19.

박민웅 | 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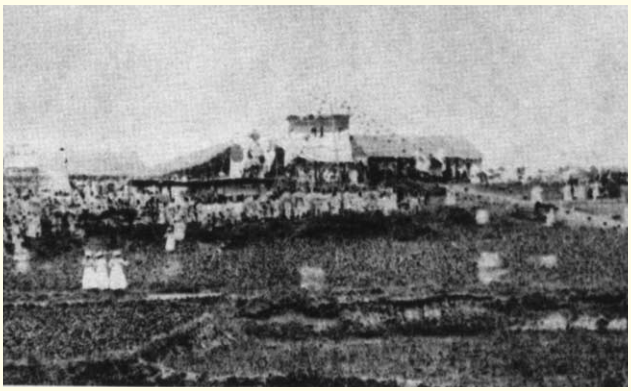
6장 수인선(水仁線)의 부설과 운영

1. 수인선 부설의 배경

수인선은 1937년에 개통되어 1995년 폐선될 때까지 58년간 수원 · 화성 · 안산 · 시흥 · 인천 등지를 연결하며 선로 연변지역의 인적 · 물적 교류에 기여한 철도로 평가되고 있다.(150) 일제강점기 수인선을 비롯한 철도부설과 운영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라 계획 · 시행되었다. 그중에서 사설철도는 국유철도 건설에 따르는 재정상의 제약을 타개하고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철도망을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민간에 그 건설과 운영을 장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제당국은 이러한 사설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제도를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설철도를 적극 매수, 개축하여 국철의 기능을 보완하게 하였다.

수인선과 수여선(水驪線)을 부설한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 이하 '경동철도')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내륙지방의 철도운수업과

(150) 수인선에 관한 대표적인 논저는 다음과 같다. 최미향, 「수인선 협궤철도와 공간형성에 관한 고찰」, 『녹우회보』,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1984; 인천문화원, 「국내유일의 협궤 명물 수인선 철도」, 『인천문화』 9, 1987; 이창식, 「일제하의 수여 · 수인선의 철도고」, 『기전문화』 3,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8; 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92.



▲ 경부선 철도 기공식

자동차운수업, 선박운수업, 창고업 등의 운수영업을 하던 회사였다.(151) 경동철도는 1920년 3월 1일 수원에서 여주에 이르는 43.1마일의 협궤 증기철도선의 부설을 허가받았지만,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28년에 가서야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수여선의 부설은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미곡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일본인의 진출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여선 부설은 이러한 수탈적 필요에 따른 것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926년에는 여주군민이 '경동철도촉진군민대회'를 열어 미곡 등의 생산물 수송을 위해 긴요한 수여선이 부설허가 후 진척이 없다며 수여선의 건설을 촉구하기도 하였다.(152)

1920년에 부설허가를 받은 후, 경제불황 등으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수여선 건설은 주민의 여망과 일제의 보조금정책에 힘입어 1930년 2월 5일에서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가(153) 8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30일에 개통식을 갖게 되었다.(154) 수여선의 개통은 여주 · 이천을 비롯한 내륙의 농산물 유통에 즉시 영향을 미쳐, 개통이 가까워지면서 이미 수원에는 주변 각지에서 밀려든 농산물이 넘쳐나 수원실업협회를 필두로 곡물창고 설치운동을 벌이는 지경에까지

(151) 사장은 田川常治郎, 전무는 內藤眞治(동아경제시보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0, 46쪽;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사 십년약사』, 1940, 484쪽 등을 참조).

(152) 『조선일보』 1926년 2월 22일.

(153) 『매일신보』 1930년 1월 30일.

(154) 『매일신보』 1930년 11월 6 · 25 · 28일; 『중외일보』 1930년 9월 14일.

이르렀다.[155] 개통 당시 수여선은 수원발 5편, 여주발 4편을 운행하였는데, 1938년부터는 수원발 4편, 여주발 4편으로 편수를 줄여 운행하였다. 수원에서 여주까지는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는데, 늘어나는 여객과 화물로 연발착이 잦아 이용객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156]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여선은 화물과 여객의 증가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수여선은 개통 후 화물운송이 많을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과 달리 여객운송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1932년의 경우 총수입의 60%에 달할 정도로 철도 주변 인구의 이동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157]

2. 수인선의 부설

수원-인천 간 철도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 그 부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미 1926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었다. 수인선 부설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인천상업회의소였는데, 1926년 1월 25일 조선총독부에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동해안 강원도 강릉에 이르는 횡단철도 부설 요망서'를 제출하고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조선의 중앙지점에서 서해안부터 동해안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2) 영등포-수원 간은 매년 홍수로 인해 철도 피해가 많아 교통운수상 불편이 적지 않아 지선 부설이 가장 긴요함. 3) 경부 경의본선은 단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경기가 될 때 물자수송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극단적으로는 소금값을 폭등시키고, 또한 貨車 쟁탈전을 연출하는 등 지난해의 實例가 많이 있으며, 더구나 산미증식

(155) 「京東鐵道開通後는 水原은 穀物 吞吐地」, 『매일신보』 1930년 8월 8일.
(156) 이창식, 「일제하의 수여 · 수인선의 철도고」, 『기전문화』 3,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8, 28~29쪽.
(157) 철도청, 『한국철도사』 3, 1979, 547~549쪽.

이 실현되는 날이 되면 수송상의 불편이 한층 심해지므로 철도수송상의 결함은 무엇보다도 용산을 중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부선 안에서 미곡생산지에 대해 수송상 최적지위에 있는 水原으로부터 지선설치는 초미의 급무임이 인정된다. 4) 현재 京釜沿線으로부터 인천에 도착하는 화물은 穀類 중심으로 12만 7천톤에 이르고, 또 인천으로 발송되는 것은 소금 및 여러 잡화류 등 19만 톤이다. 이들 화물수송의 곤란과 혼잡을 수원-인천 간 直路 지선의 부설로 완화시켜야 한다. 5) 소금수급의 독립은 조선총독부가 열성적으로 노력해야 할 바이다. 專賣局 朱安出張所의 관리에 속하는 旣成 염전은 1,086町步에 이르고, 장래 증설될 소래면 예정지 500여 町步를 합해 약 1,600여 정보에 달하게 될 때에는 1억 3천만斤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배급상 本路線의 신설을 가장 긴요한 일로 하게 하는 것이다. 6) 소금 需用은 경부선을 주로하고, 현재 부산 부근은 靑島鹽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朱安염전이 완성되면 당연히 官鹽 공급지가 된다. 또 동해안 어장에는 많은 소금을 신속히 공급해야 하는 실정인바, 이것 역시 청도염 대신 관염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7) 강원도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업발달이 늦은바, 본 노선이 개통되면 곡류, 목재, 해산물 등 다수의 물자를 볼 수 있음은 명확하다. 8) 산미증식계획에 기초한 토지개량 면적은 충남, 경기, 평안, 황해 등 네 道가 총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방의 생산품이 다량 인천항에 집중되어 철도수송의 곤란이 생길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158)

인천지역 상공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건의'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 구체화되었다. 다음의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1926년 5월경에는 니시노 토요히코(西野豊彦)라는 일본인 사업가가 수원-수암-소래-남동-문학-관교-인천을 잇는 수인선의 노선계획을 정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159)

(158) 인천부, 『인천부사』, 1933, 819~821쪽.
(159) 『매일신보』 1926년 5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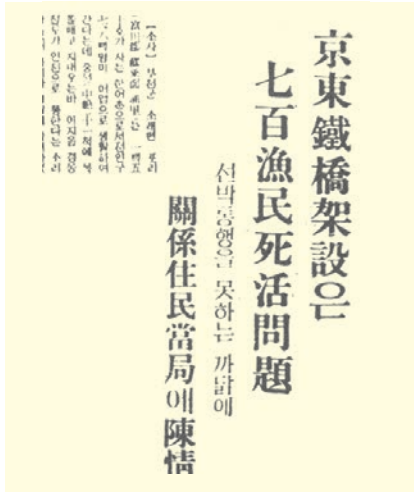
京城 京南倉庫運輸株式會社 代表者 西野豊彦 等은 仁川 水原間의 鐵道敷設計劃을 立하야 經營會社의 創立을 運動하는 一方에 當局에 對한 出願者를 京城, 仁川, 水原에서 立할 意向으로 方今 活躍中이라는바, 方今으로는 成功 여부는 未知數에 □한 바이나 設計의 大體를 探問하면, 水原을 起點으로 水原郡의 西方에 出하야 始興郡 秀岩面의 西端을 北貫하야 다시 富川郡 蘇萊 南洞 文鶴 三面에 海岸을 縱斷하야 文鶴面 官校里를 經하야 仁川에 至하는 全線 二十九哩 四分一의 將來의 中部南鮮을 □□할 主要線으로 三百萬圓의 株式會社를 計劃中인바 仁川側에서는 事業의 有望은 信하나 發起人 等의 人物 如何에 □하야 考□□爲하는 中이라더라.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계획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인천과 수원지역의 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경동철도기성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160] 이 기성회는 수인선 부설을 총독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수여선 부설이 중지된 상황에서 다른 활로를 모색하던 수원 상공인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성회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천상업회의소는 1927년 1월에 재차 수인선 부설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다.[161] 이러한 인천과 수원 상공인들의 활동은 수여선을 추진 중이던 경동철도사에도 자극이 되어 1928년 11월에는 수여선을 인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162] 그러나 수인철도계획은 1930년에 접어들어 경동철도사에서 수여선을 착공·개통하면서 그 추진이 사실상 중지되었다. 경동철도사는 당시의 경제여건으로 수인선과 수여선을 동시에 부설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여선을 먼저 개통하고 그 영업추이에 따라 수인선 부설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던 것이다.[163]

이처럼 수인선 부설문제는 수여선의 운행이 개시되고 그 사업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1931년경에 가서야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경동철도사도

(160) 『매일신보』 1926년 10월 22일.
(161) 『매일신보』 1927년 1월 20일.
(162) 『중외일보』 1928년 11월 19일.
(163) 인천부, 『인천부사』, 1933, 821쪽.

1932년부터 수인선 부설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경동철도는 수인선 부설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사설철도 보조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금문제로 상황을 관망하는 데 그쳤다. 경동철도는 보조금문제의 해결이 수인선 착공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164) 경동철도는 보조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인천지역 상공인들의 의향을 타진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기도 하였다.(165)


京東鐵橋架設은
七百漁民死活問題
선박통행을 못하는 까닭에
關係住民當局에陳情

▲ 경동철도 소래철교 공사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36년 6월 21일)

자료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협의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인천상업회의소가 수인선 부설을 처음 건의한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결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동철도사의 노선 신설계획은 수인선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동철도를 강원 내륙지방까지 연장하여 명실상부한 동서횡단철도로 완성하려는 데까지 이르고 있었다.(166)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동철도는 1935년 9월 23일 총독부 당국으로부터 수원-인천 간 철도 부설허가를 얻게 되었다.(167) 경동철도는 총공사비로 130만 원을 책정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철도부지 매수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1936년 6월 1일에서야 기공하게 되었다.(168) 공사과정에서는 토지수용 가격을 두고 지주와 경동철도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는데, 이에 대해 경동철도 측이 수용령을 무기로 지주를 위협하여 헐값에 매수하려

(164) 「京東鐵道 仁川延長」, 『매일신보』 1932년 10월 30일.
(165) 『매일신보』 1933년 5월 10일.
(166) 「京東鐵道의 延長 原州橫城을 貫通」, 『매일신보』 1934년 9월 12일;「原州與湖里까지 京東鐵道를 延長」, 『매일신보』 1934년 12월 26일; 「京東鐵道를 延長하야 金化電鐵까지 接續」, 『매일신보』 1935년 2월 11일.
(167) 「水原仁川間의 鐵道敷設을 認可」,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3일; 「수원-인천 간에 새 철도」, 『신한민보』 1935년 10월 31일.
(168) 「水原-仁川間鐵道 今日부터 運輸開通」, 『동아일보』 1937년 8월 7일.

한다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다.[169] 한편, 소래철교 공사와 관련해 인근 포구의 어민들이 철교가 가설되면 중선(中船)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펼치는 일도 있었다.[170] 이렇게 수인선 부설공사는 그 시작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30만 원으로 책정했던 공사비가 개통 당시에는 총 250여 만 원으로 크게 증가되었다.[171] 수인선의 공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데 반해 자금의 차입이 어려워지자, 그 경제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면서 투자한 주주들이 동요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172]

당시 재원이 부족한 사설철도는 당국의 보조금과 주식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건설자금을 마련했는데, 수인선의 경제성이 의문시되면서 경동철도사와 주주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지불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자금사정이 계속 어려워져 수인선 부설 자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여주 방면의 미곡을 인천항으로 수송하는 화물운송 외에 일반승객의 이용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5원이던 주식이 2원 70전의 조선철도 최저가로 폭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173] 수인선에 대한 회의론은 1937년 초에 절정에 달하여 수인선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도 생겨났다.[174]

이러한 비관적인 분위기에서도 토지수용문제가 점차 진전을 이루면서 17개 역내정지를 발표하고 5월 개통을 다짐하는 등 수인선 부설은 2월부터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175]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인선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 다

---

(169) 이런 분규는 송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해 땅값이 폭등한 문학, 남동 등에서 특히 격렬하였다(「京東鐵道 仁川水原間 用地買收에 難色」, 『매일신보』 1936년 7월 5일; 「京東鐵道 水原仁川間 敷設 用地買收에 非難」, 『매일신보』 1936년 7월 21일).

(170) 「京東鐵橋 加設은 七百漁民 死活問題」, 『동아일보』 1936년 6월 21일.

(171) 1938년의 영업실적 보고에 따르면 수인선 건설에는 총 268만 4,812원이 소요되었다(「조선경동철도 최근업적」, 『조선철도협회지』 17(下), 100~110쪽).

(172) 「京東鐵道 拂込公約 無視라고 분개」, 『조선상공신문』 1936년 11월 20일(수원시, 『수원시사』, 1255쪽에서 재인용).

(173) 「京東鐵道 水仁線, 經濟價値 疑問視」, 『조선상공신문』 1936년 11월 26일(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1992, 40쪽에서 재인용).

(174) 『朝鮮商工新聞』 1926년 2월 26일(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1992, 40쪽에서 재인용).

(175) 「仁川 水原間新鐵道 驛十七個所內定」, 『매일신보』 1937년 2월 23일.

시 높아져 개통을 고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소래철교 공사가 난항을 겪는 등 해안 간석지 노선공사에 어려움이 많아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7월 19일에서야 개통식을 갖고 완성을 보게 되었다.(176) 당시의 『동아일보』는 개통에 이르기까지의 수인선 건설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水原↔仁川間鐵道
今日부터運輸開通
西海岸干潟地를橫斷

▲ 수인선 개통 신문기사(『동아일보』 1937년 8월 7일)

> 京東鐵道會社에서 이미 공사의 준공을 보게 된 水原仁川間의 鐵道는 드디어 금 六일부터 운수영업을 개시하기로 되었다. 同線은 이백오십만 원 예산으로 작년 六월 一일 공사에 착수하야 一개년 二개월만에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沿線 일대는 조선 서해안의 독특한 간석지를 횡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자못 어려웠다고 한다. 同 철도의 사명은 강원도 벽지의 풍부한 물자를 인천항에 수송하는 동시에 君子, 蘇萊, 南洞 각 염전의 소금을 벽지에 수송함이라 한다. 그리고 同線은 불원한 장래에 나타날 인천 송도유원지를 직접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이라 한다.(177)

또한, 수인선의 경제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경쟁적으로 내어 놓던 언론들도 개통에 이르러서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강원도 오지의 물자수송과 제염의 수송, 경성(京城) 물자의 반출 등 중부조선의 자원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기

(176) 「仁川水原間의 鐵道 工事遲延을 未免」, 『매일신보』 1937년 5월 9일; 「水原 仁川間 鐵道 七月一日부터 開通」, 『매일신보』 1937년 6월 15일; 「水原 仁川間 鐵道 七月十九日에 開通」, 『매일신보』 1937년 6월 24일; 「水原仁川間鐵道 十九日에 開通式」, 『매일신보』 1937년 7월 13일.

(177) 「水原-仁川間 鐵道 今日부터 運輸開通」, 『동아일보』 1937년 8월 7일.

대감을 나타내었다.[178]

수인선은 착공한 지 1년 2개월 만에 개통을 완료하고 총독부로부터 영업개시 허가를 받아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총연장 52㎞의 협궤선(挾軌線)인 수인선은 17개의 정차장과 임시정류장을 설치하고 수원-인천 간을 1시간 40분에 연결하였다. 총 17개소의 정차장(停車場) 가운데 10개소는 정식 정차장으로 역사(驛舍)를 두고 역원이 배치되었지만, 7개소의 임시정류장에는 역사와 역원이 없었다. 개통 당시의 운행노선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인선 노선 및 정차장 일람[179]

정차장명	구 분	연 장(㎞)	역간거리(㎞)
수원(水原)	정차장	0	3.9
고색(古索)	정차장	3.9	1.9
오목(梧木)	임시정류장	5.8	4.9
어천(漁川)	정차장	10.7	3.0
야목(野牧)	임시정류장	13.7	1.4
빈정(濱汀)	임시정류장	15.1	4.9
일리(一里)	정차장	20.0	1.6
성두(城頭)	임시정류장	21.6	6.3
원곡(元谷)	정차장	27.9	1.3
신길(新吉)	임시정류장	29.2	3.2
군자(君子)	정차장	32.4	6.2
소래(蘇萊)	정차장	38.6	2.9
논현(論峴)	임시정류장	41.5	0.9
남동(南洞)	정차장	42.4	3.4
문학(文鶴)	임시정류장	45.8	1.2
송도(松島)	정차장	47.0	5.0
인천항(仁川港)	정차장	52.0	

(178) 「京東鐵道의 水仁線 開通」, 『朝鮮商工新聞』 1937년 8월 7일(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1992에서 재인용).

(179) 이 표는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제3168호, 1937년 8월 6일자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3. 수인선의 변천

수인선은 개통 후 중부 내륙지방과 인천항 간에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화물의 수송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수인선 개통 전 하루 1~2편의 버스에 의존하던 것에 비하면 개통 후 수원과 인천 간의 인적 · 물적 교류의 증가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수인선의 성공적인 개통에 힘입어 경동철도는 폭주하는 화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창고시설과 인입선(引入線)을 확충하고 역사를 증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갔다.(180) 특히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곡류와 소금 등이 속속 집하되면서 인천의 경기는 호황을 구가하였다. 때문에 개통 후 채 1년도 못되어 협궤를 광궤로 개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총독부 당국자들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다.(181) 이렇게 수인선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940년경에 이르면 노선의 광궤화(廣軌化)와 개량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182)

'수인선 개량운동'은 인천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인천부세진흥회(仁川府勢振興會)에서 주도한 것으로, 수인선 광궤화와 노선개량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인천항역의 확장을 촉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183) 이런 노력은 이듬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수인선의 경제적 역할과 기여도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다.

경동철도에서 운영하던 수인선은 1942년 8월, 수여선과 함께 조선철도주식회사에 매각되어(184) 운영되다가 1945년 해방 이후 적산(敵産)으로 군정에 접수되었다. 1946년 5월 17일부터는 여타 사설철도와 함께 국철(國鐵)로 흡수되어 폐선에

(180) 수원시, 『수원시사』, 1256~1257쪽.
(181) 『朝鮮商工新聞』, 1938년 4월 22일(수원시, 『수원시사』, 1261쪽에서 재인용).
(182) 「水仁線廣軌化 改良을 陳情」, 『매일신보』 1940년 4월 12일.
(183) 「水仁線廣軌改替와 港驛改築新要望」, 『매일신보』 1940년 10월 4일.
(184) 『매일신보』 1942년 7월 18일; 『매일신보』 1942년 8월 5일.

이르기까지 철도청에서 운영을 계속하였다.[185] 수인선은 해방 후 석탄부족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그 경영이 여의치 않아 화차 도입 등 주요 재정을 미국의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186] 수인선은 국철화 이후 철도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화차를 새로 도입하고 폐쇄했던 역을 부활시켜 본연의 기능을 지속하였다.[187] 그러나 도로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이 위축되어 역의 존폐가 거듭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간이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수인선은 쇠퇴일로를 걷게 되었는데, 그 추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해방 후 영업구간 및 역수의 변천[188]

연도	영업구간(㎞)	총역수	보통역	배치간이역	무배치간이역	신호소
1963	수원-남인천(52)	12	8	1	2	1
1965	〃	13	9	2	2	
1967	〃	14	9	2	3	
1968	〃	14	9	2	3	
1977	수원-송도(46.3)	11	4	3	4	
1982	〃	11	2	2	7	
1985	〃	11	1	1	9	
1988	〃	9	1	8		
1992	〃	9	1		8	
1994	수원-한양대앞(20.2)	3			3	
1995	〃	3			3	

1973년 7월 13일에는 수인선 구간 중 처음으로 남인천-송도 구간 5㎞가 인천시

(185) 접수를 위한 구체적 행동은 이미 5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5월 7일 법령을 발표하고 17일부터 발효시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 『미군정법령총람』, 한국법제연구회, 199~200쪽; 「운수부, 경남 · 경춘 · 조선철도 등 3개 사설철도의 접수식 거행」, 『서울신문』 1946년 5월 3일; 「운수부총무과장, 3개의 사설철도회사 접수에 관해 기자회견」, 『동아일보』 1946년 5월 19일.

(186) 「導入挾軌貨車 水仁線等에 登場」, 『조선일보』 1949년 4월 3일

(187) 「水仁線 野牧驛 復活」, 『조선일보』 1949년 7월 18일, "작년 七월부터 폐쇄하였든 水仁線 野牧 간이역은 오는 二十日부터 부활시켜 운수영업을 개시할 터인바 일반여객과 통학생에게 적지 않은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188) 〈표 2〉는 다음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철도청, 『철도연감』 1964 · 1966 · 1968 · 1969;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78 · 1983 · 1986 · 1989 · 1993 · 1995 · 1996.

도시계획으로 폐쇄되었는데, 언론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남인천역 터** 일명 '수인역'이라 불리던 곳이다.

> 국내 유일의 협궤도인 수인선(水仁線) 가운데 남인천(南仁川)-송도(松島) 5㎞가 인천시 도시계획에 밀려 12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철거된다. 이 협궤도는 인천항 내항 전면도크화에 따른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것인데 앞으로 인천의 종착역은 송도역이 된다. 시설된 지 36년만에 일부가 철거되는 수인선 협궤도는 1937년 당시 경성철도주식회사(경동철도주식회사 : 필자)가 수원-인천 간의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시설한 사철이다. 그 후 1942년 조선철도주식회사에 넘어갔다 해방 후 1947년 7월 25일 교통부에서 인수, 국철로 됐다.(189)

1977년 42번 국도의 포장을 계기로 수인선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도로여건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수인선의 몫이었던 화물운송기능이 대거 도로교통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화물수송이 급감하자 1977년 9월 1일부터는 객차와 화차가 혼합된 증기기관차를 여객수송만을 전담하는 디젤기관차로 교체하면서 화물수송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수인선은 주변 경작농민이나 어민, 통학생 등의 제한적인 여객수송기능을 담당하며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운행편수도 1961년까지 수원-인천 간을 5회 왕복하던 것을 1962년부터는 4회로 축소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다시 3회로 축소하였는데, 아울러 운행 차량수도 주중 2량, 주말 3량으로 함께 축소하여 운행하였다.(190)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수도권 개발로 인천-안산-수원 간의 연계보다 인

(189) 「水仁線 南仁川-松島 5㎞ 36년 만에 撤去」, 『조선일보』 1973년 7월 12일.
(190) 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1986, 43~47쪽.





▲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수인선을 타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 수인선 마지막 운행

천-서울, 안산-서울, 수원-서울 등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여객마저 급감하여 수인선은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폐선논의가 분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송도-한양대앞 간 26.9㎞를 1994년 9월 1일자로 폐선하고, 이듬해인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한양대앞-수원 간 20.2㎞의 운행을 중단하여 수인선 전체 노선이 개통 58년 만에 완전 폐지되기에 이른다.[191]

4. 시흥지역의 수인선 역(驛)과 기능

1937년 처음 부설된 이후 1994년 9월 송도-한양대 노선이 폐지되기 전까지 수인선은 시흥과 주변지역 간의 인적 · 물적 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흥에는

(191) 「협궤열차 연말 마지막 기적」, 『조선일보』, 1995년 9월 22일; 「추억의 협궤열차 '마지막 경적'」, 『조선일보』, 1995년 12월 31일.

군자역(현 정왕동 876-55)과 달월역(현 월곶동 664-3) 2곳의 수인선역이 설치되어 소금을 비롯한 산업물자수송을 담당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도 애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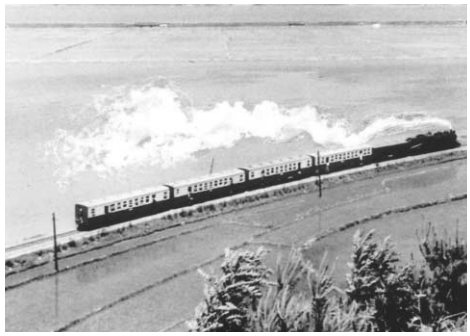
▲ 군자역(1994)
▼ 달월역 행선표 뒤로 머리에 짐을 이고 열차에 오르는 아낙이 보인다.

군자역은 군자면 군자염전 부근 피양촌[平安村]에 있던 수인선 역으로,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정차장과 역사(驛舍)가 건립되었다. 역사는 노후하여 일제 말에 다시 개축하였는데, 1988년경 역사가 먼저 철거되고 1994년에는 역마저 폐지되었다.(192)

달월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1937년 수인선 개통 이후에 현재의 철도차량기지 뒤쪽에 간이정류장으로 설치되고, 1962년경 노후된 역사를 개축하여 폐선 때까지 사용한 것으로만 추정되어 왔다.(193) 그러나 일제시기와 해방 이후의 각종 자료에는 보이지 않던 달월역이 1968년판 『철도연감』에 처음 언급되는 것으로 미루어1967~1968년경에서야 비로소 정차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94)

이렇게 부설 초기부터 시흥에 군자역 등 수인선 역이 설치된 것은 군자염전에

(192) 이승언, 『시흥시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시, 1995, 204쪽;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1988, 1183~1188쪽.
(193) 이승언, 『시흥시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시, 1995, 203~204쪽.
(194) 『철도연감』, 철도청, 1966 · 1968.





▲ 군자염전을 지나는 수인선
▼ 수인선을 타는 사람들

서 생산되는 소금의 수송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대로 수인선을 부설하게 된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인근의 남동염전 · 소래염전과 더불어 군자염전의 소금은 수인선의 주요 수송화물의 하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수인선의 기능은 점차 애초의 부설 취지와 달리 화물수송 보다 여객수송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도로교통과 경제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시흥지역의 주민들에게 수인선은 인근지역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시흥지역의 주민은 군자 · 달월역을 통해 인천 · 수원 등지로 왕래하며 농작물을 가져다 도시에 판매하기도 했고 인천 등지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수인선을 많이 이용하였다. 1963~1990년의 연평균 수송실적을 토대로 한 통계에 의하면, 수인선 21개 역 가운데 여객은 군자역이 5위, 달월역이 9위를 점하고 있고, 화물은 군자가 4위, 달월이 18위를 점하고 있다. 화물운송에서는 군자역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군자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수송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객에 있어서는 시 · 종착역인 남인천과 수원, 유원지를 배경으로 하는 송도를 제외하면 시흥의 수인선 여객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같은 통계에 따르면 군자역과 달월역은 출발여객이 도착여객보다 많고 하행여객이 상행여객보다 많아 시흥의 수인선이 주로 인천 등지로 이동하는 주민의 교통수단

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5)

◎ 참고자료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신한민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철도사십년약사』, 1940.
동아경제시보사,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0.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
인천부, 『인천부사』, 1933.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1988.
철도청, 『철도연감』, 1964 · 1966 · 1968 · 1969.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1978 · 1983 · 1986 · 1989 · 1993 · 1995 · 1996.
철도청, 『한국철도사』 1~3, 1979.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99.
철도청, 『한국철도 80년 약사』, 1979.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100년사』, 1995.
최미향, 「수인선 협궤철도와 공간형성에 관한 고찰」, 『녹우회보』,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1984.
인천문화원, 「국내유일의 협궤 명물 수인선 철도」, 『인천문화』 9, 1987.
이창식, 「일제하의 수여 · 수인선의 철도고」, 『기전문화』 3,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8.
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92.
이승언, 『시흥시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시, 1995.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견수찬 | 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195) 윤옥경,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8,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1986, 42~49쪽.



제3부 일제시기 주민 동향과 생활상

1장 시흥지역의 3·1운동
2장 연성음사의 활동내역
3장 주민생활의 편린 – 일제시기 신문기사를 통해 본 시흥

1장 시흥지역의 3 · 1운동

1. 3 · 1운동의 확산

3 · 1운동은 우리 민족이 결연한 자주독립의 의지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어선 항일독립운동으로서, 한국민족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3 · 1운동은 짧게는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길게는 1876년 개항 이후의 민족운동이 하나로 결집되어 폭발한 것이며, 1920년대에 다양하게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분기점이 되었다. 한민족 구성원의 대부분이 3 · 1운동에 참가했던 것은 10여 년에 이르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배를 억압으로 절감하였고, 국제적인 정세가 조선 독립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해 간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3 · 1운동이 그렇게 대규모로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민중의 소박한 애국심이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이다.[1]

3 · 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을 필두로 하여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및 함경남도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 바로 해당 도의 군 · 읍 · 면 소재지와 리 · 동 등지로 파급되었다. 남부지방인 전라 · 경상도의 경우 5일에 군산(群山), 8일에 대구

(1) 이윤상, 「평안도 지방의 3 · 1운동」, 『3 · 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258쪽.

(大邱), 10일에 광주(光州), 11일에 부산진(釜山鎭)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있어났다. 또한 중부지방의 강원도 · 충청도에서는 10일에 철원(鐵原) · 강경(江景), 19일에 괴산(槐山), 함경북도에서는 10일에 성진(城津)에서 각각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전국 13도에서 어느 도를 막론하고 3월 상순에 이미 만세운동이 파급되었던 것이다.(2)

경기도 내에서 가장 먼저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킨 지방은 개성(開城)이었다. 3월 1일 오후에 이미 서울의 소식을 듣고 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서둘러 3일부터 1주일간 만세시위를 계속하여 서울의 상황을 방불케 했다. 개성에 뒤이어 3일에는 고양군 동막(東幕)에서, 9일에는 인천에서, 10일에는 문호(汶湖)에서, 11일에는 평택(平澤)과 안성(安城)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 도내 각 군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와 같이 확대된 경기도 내의 만세운동은 20여 개 군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이 보편화되었으나, 3월 1일 이전에 서울의 운동계획과 사전연락이 있었던 곳은 드물다. 또한 도내 각 군에서는 그 나름대로 최대의 시위운동을 했고, 그에 따라서 희생자도 많이 냈기 때문에 어느 군(郡)이 더 심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개 군 전체가 희생된 제암리(堤岩里) 교회당의 대학살로 유명한 수원군(水原郡)은 그중 두드러졌고, 안성군(安城郡)과 이천군(利川郡) · 양평군(楊平郡)도 치열했다. 그리고 서울 남부에 인접한 시흥군지역의 만세운동도 그에 못지않았다.

3월 중순경까지 수원지역의 만세시위는 표면적으로는 전개되지 않는 듯하다가 3월 23일에 700여 명이 집결한 서호(西湖)에서의 만세시위를 비롯해서 4월 4일 본 경찰까지 군내 22개 면 중 수개 면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 만세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면사무소 · 경찰관주재소 등 일제의 말단 행정기관을 습격, 일본 군경과 항쟁하는 등의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군경의 무차별 발포와 탄압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2) 윤병석, 『증보 3 · 1운동사』, 국학자료원, 2004, 45~46쪽.

안성지역의 운동은 3월 11일 읍내에서의 만세시위를 발단으로 확대 전개되었다. 읍내에서의 만세시위에 뒤이어 화성(華城) · 화산(華山) · 죽산(竹山) 등지에서 만세시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4월 2일 밤에 벌어진 화산에서의 만세시위에서는 일본군의 총격으로 5명의 희생자를 냈다. 이천군지역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5일에 걸치는 1주일 동안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마장면(麻長面) 오천리(午川里)에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개된 만세시위가 대표적이며, 약 1,000명의 군중이 일본군 및 현지 헌병과 충돌하여 총검에 부상당한 사람이 20여 명에 달했다.(3)

이상은 몇 개 지역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격렬한 만세시위는 도내 각 군에서 계속 일어났다. 경기도 내의 만세운동은 평안도에서처럼 단기간에 강렬하게 전개되었거나 경상도와 같이 늦게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3개월여 간 끈기 있게 전개되는 한편, 전국 각 도 가운데 황해도와 함께 비교적 격렬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내의 만세운동 경향은 대체로 전국적인 운동의 추세와 발맞추어 3월 초순부터 4월 하순까지 계속되는데 그 절정기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였다. 그동안은 도내 어느 군에서나 거의 매일같이 시위운동이 전개되었고, 아울러 만세시위의 양상도 격렬하여 도처에서 일제 군경과 충돌, 무수한 사상자를 냈다. 물론 이것은 시흥군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은식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경기도 내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은 25개 지역, 집회 횟수가 303회, 참가 인원은 6만 8,100명, 사망자는 1,469명, 부상자가 2,677명, 체포된 사람이 4,220명에 이르렀다.(4)

---

(3) 윤병석, 『증보 3 · 1운동사』, 국학자료원, 2004, 49~51쪽.

(4)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동방미디어, 2002(초간, 1920), 519쪽.

2. 3 · 1운동의 전개과정

1) 수암면 만세시위운동

수암면에서는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비석거리[碑立洞]에 모여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윤병소, 홍순칠, 류익수, 윤동욱, 김병권, 이봉문은 3월 30일 수암면 수암리에서 면민들이 조선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당일 비립동에 가서 그곳에 모인 2,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수암면사무소와 보통학교 및 공자묘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 가운데 류익수와 윤병소는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만세시위투쟁을 지휘하였다. 여기서 이들 시위 주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 사법경찰관의 보고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보면 "3월 30일 수암면 내 18개 리(里)의 리민(里民) 약 2천 명이 수암 경찰관주재소의 서쪽 밭에 모여서 큰 기류를 떠받들고 각자는 작은 기를 가지고 '수암주재소 · 면사무소를 불태워 버리자'고 외치면서 동 관청에 몰려가 일변 만세를 부르고 불온행동을 하므로 우리들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역시 이에 순응하지 않으므로 거짓 사격태세를 취하여 겨우 해산시켰다"는 것이다.

먼저 윤병소는 "3월 29일 화정리에서 명 30일 수암리의 비립동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니 그곳에 모이라"는 격문을 돌렸다는 것을 이봉구(李鳳求)로부터 들었고 그날 밤 "능곡리의 친아버지 집에도 같은 취지의 통문이 왔다"는 것을 동생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이튿날 오전 10시경 수암리에 갔더니 각 리에서 모인 군중이 2,000명이나 되었고 홍순칠이 이들 모인 군중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수암면 와리에서 만든 태극기를 받아와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며 수암리 읍내로 몰려갔고 일본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공립보통학교 · 경찰관주재소 · 면사무소로 가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투쟁을 지휘한 뒤 해산했다.[5]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피고 윤병소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80쪽.



▲ 수암면 비석거리(현 안산시 수암동)

다음으로 홍순칠은 1919년 3월 30일 류익렬(柳益烈)의 하인 임학신(林學信)으로부터 "그날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니 수암리 비립동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동리 허치선(許致善) 집에서 30명을 인솔하여 수암면 남쪽 밭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이미 1,200~1,3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홍순칠이 모인 군중들을 점검하는 동안 일본 경찰이 와서 해산을 명령하자 모여 있던 군중들은 해산의 가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등 일시 동요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내 류익수를 선두로 읍내를 향해 행진을 개시하였고 경찰관주재소 · 공립보통학교 · 면사무소 및 공자묘 앞으로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홍순칠은, 자신은 원래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독립을 기도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3월 29일 국유지 소작인 수명에게 격문의 내용을 알리는 한편 "조선이 독립하면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지가 되니, 이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득책이다"고 권고하여 소작인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수암면 남쪽 밭에 모인 군

중의 인원을 점검한 것은 뒤에 불참자를 가려내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6)

그리고 류익수는 1919년 3월 30일 수암면 성포리(聲浦里) 리민 30명가량이 자기 집 앞을 지나면서 "만세를 부르기 위해 비립동으로 간다"고 하여 비립동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약 2,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유익수는 이때 성포리 구장이 "이 군중 속에는 난폭한 자도 있어 만일 주재소 등에 폭행을 가하여도 곤란하니 당신이 좀 조정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중을 지휘하여 도살장으로 가 그곳에서 홍순칠이 만든 기(旗)를 받았다. 그는 일본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지휘하여 읍내로 향해 그곳의 경찰관주재소 · 공립보통학교 · 면사무소 · 공자묘 앞으로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행진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류익수의 활동범위가 수암면에 그치지 않고 인근의 수원군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튿날인 3월 31일 수원군 반월면 시장에는 500~600명의 군중이 모여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시위운동을 선동하기 위해 반월면으로 가서 면서기를 만나 바로 어제 수암면 수암리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할 때 자신이 이를 지휘했노라고 말했고 반월면 면서기도 "그러면 당신께 오늘 지휘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이에 류익수는 반월면 시장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폭행과 협박 등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였고 군중은 해산하였다.(7)

윤동욱은 3월 30일 수암면 화정리에 갔다가 능곡리 리민으로부터 "비립동에서 만세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비립동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이때 일본 경찰이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읍내로 갈 때는 발포할 지도 모른다"고 위협하였으므로 군중이 일시 동요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대오를 가다듬고 읍내를 향해 행진하였고 윤동욱은 이들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경찰관주재소 · 공립보통학교 · 면사무소 등의 앞에서 이르러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는 공립보통학교 앞에서 순사 임건호(任健鎬)에게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피고 홍순칠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80~281쪽.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피고 유익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81쪽.

세를 부르라"고 권하기도 했다. 일제 관리가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시위운동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8]

이어 그는 수암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때 이 정보를 입수한 시흥 헌병이 들이닥쳐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과 몽둥이로 대항하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려 하였다. 이에 윤동욱은 시위군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독립되면 관공서는 우리 국유재산이니 털끝만큼도 상하게 말라"고 외치자, 시위군중들은 그의 말에 순응하고 행렬을 정돈하였다.

또한 김병권은 3월 30일 화정리에 리민 30명가량이 모여 "만세를 부르기 위해" 비립동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왜 구장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경솔한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나 격문 속의 "집합하지 않으면 방화한다", "후환을 피하려면 부디 오라"는 내용을 보고, 그는 모인 군중들이 폭행 등을 당하지 않게 감독하는 뜻으로 비립동에 갔으며, 약 1,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이에 김병권도 역시 읍내로 행진하는 군중들을 따라 경찰관주재소 · 공립보통학교 · 면사무소 · 공자묘 앞에까지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9]

이봉문도 3월 30일 수암면 면민이 수암리에서 만세를 부를 때 군중에 솔선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는 그 날 해산 후 수암리 구장이 이 날 시위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일행과 함께 밤 10시경 구장의 집에 몰려갔다가 없어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10]

한편 류익수는 성포리(현재의 안산시 성포동) 구장이 인솔하는 시위행렬을 따라 시위대의 집결 장소인 수암동, 비립동까지 갔다. 이때 성포리 구장이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오. 만일 주재소라도 습격하면 큰일이 날 터이니 당신이 알아서 지휘하면 염려 없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류익수는 시위

(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피고 윤동욱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81~282쪽.
(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피고 김병권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82쪽.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피고 이봉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82쪽.

군중을 지휘하여 읍내 도수장까지 갔는데, 이때 와리(현재 안산시 와동)의 홍순칠이 태극기를 주었다. 이에 더욱 용기를 얻은 류익수는 시위대의 앞에 서서 시위행진을 계속하자 일본 경찰이 "읍내로 들어가지 말고 해산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읍내로 들어가며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수암면의 만세시위운동에서 주목되는 곳은 시위군중의 집결지였던 비립동이다. 수암면지역의 3 · 1운동은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 면 행정의 중심지인 수암동에서 일어났다. 관내 19개 동리 주민들은 각각 지휘자의 인솔 아래 이 날 집결 장소인 수암동 수암농협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비립동에 모였다. 이곳에는 옛 안산군수의 선정비가 있는 곳이어서 비립동 또는 비석거리라고 불렀다.[11] 이 날 모인 군중은 2,000여 명으로 우선 이곳에서 만세를 불러 기세를 올렸다. 지휘자는 윤동욱(산현리), 윤병소(능곡리), 류익수(부곡리) 등으로, 이들은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고 시위행진을 하면서 경찰관주재소, 보통학교, 향교 등을 돌았다.

2) 군자면 만세시위운동

군자면에서는 1919년 4월 4일 거모리에 소재한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강은식(군자면 원곡리, 35세)은 군중 속에서 구한국 국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선동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군자면 죽율리에서는 김천복(군자면 죽율리, 23세)이 리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해 거모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며 선동한 후 수십 명을 모아 거모리를 향해 시위 행진했다. 이때 시위군중은 일본 경찰이 발포한 총소리를 듣고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김천복은 다른 주동자 2~3명과 함께 거모리에 이르러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부근에 집결한 수백

(11) 현재 이들 비석은 1988년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옛 수암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이승언,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시, 1995, 251쪽 참조).





▲ 군자면의 3 · 1운동 진원지인 거모동(1989)
◀ 군자면 독립운동 유적비 군자초등학교 내에 있다.

명의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는 죽율리 주민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 면사무소로 가라. 만약 불응하는 때에는 후환이 있을 것이다"고 하여 리민 30명을 이장 집에 모이게 한 다음 이들과 함께 거모리를 향해 출발했다.(12)

이틀 뒤에는 군자면 장현리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다. 4월 6일 권희(장현리, 20세)는 자신의 집에서 '비밀통고(秘密通告)' 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의, 집필하여 이를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강은식 · 김천복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77쪽.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명 7일이면 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리민(里民)은 구한국 국기 1개씩을 가지고 와서 모이라"는 내용의 격문을 작성했다. 권희가 작성한 이 격문은 장수산(농업, 21세)이 이를 마을 구장인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놓아 두고 이를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돌려보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시위운동으로 이끌었다.

후에 권희와 장수산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진(李鍾振)에 따르면, 4월 5일 오후 3시경 밭에서 돌아오는 도중 장곡리 남쪽 고개길 노변에서 1통의 문서(격문)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채로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해 이종형(李鍾亨)에게 읽어 달라고 했던바, "4월 7일 만세를 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 사발통문이었다고 한다. 이종진은 이것을 장곡리 이장 이덕증(李德增)에게 전달했다. 이덕증도 4월 5일 오후 6시 경 리민 이응수(李應洙)로부터 이종형이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며 비밀 통고문 1통을 받았는데, "오는 7일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부를 터이니 구 시장 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오지 않는 자는 후일 위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덕증은 사환을 시켜 이 격문을 다시 "지정되어 있는" 이웃 월곶리(月串里) 구장 앞으로 보냈다.[13]

3. 시흥지역 3 · 1운동의 특징과 성격

1919년 3월 23일 서울지역 시위의 재기와 더불어 본격적인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했던 시흥지역 3 · 1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흥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으로 3월 1일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권희 · 장수산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1971, 278~279쪽.

의 첫 시위부터 시위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흥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등의 이유로 3월 1일 서울시위에 참가했던 인원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4] 이와 같이 만세운동의 시흥지역 전파는 서울시위 가담자 내지는 목격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시흥지역의 3 · 1만세운동에서 별도의 시위주도조직이 결성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시위주도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여러 차례의 시위 가운데 주동자들이 사전에 모의하고 시위를 준비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이지만 이 경우에도 단발적인 주도 · 모의에 그치는 것이었고 타 시위주동자 상호간에 연락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시위가 연결되지 못하고 단발적인 시위로 끝난 것은 시흥지역에 독립운동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시흥에는 보통학교 이외에 중등 이상의 학교가 없었고 교회나 천도교 계통의 종단 조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조직성을 띤 시위주도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세시위운동의 폭력성도 시흥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컨대 1919년 4월 4일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시위는 시위를 알리는 비밀통문에서는 경찰관주재소와 군자면 사무소 방화를 시위의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밖에도 3월 23일 당산리 시위에서 일제의 주구인 순사보(임건호)가 시위군중에 의해 부상을 당했고, 3월 28일 이정석 탈환시위에서 시위군중이 돌과 몽둥이로 무장했던 것을 비롯하여 3월 29일에는 군내 각처에서 방화시위가 있었다. 또한 3월 30일 시위에서는 군중들이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 방화를 주장했으나 주도자의 만류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폭력시위에 일본 경찰은 무자비한 발포로 대응하였다.

다음으로 시위의 폭력화와 관련된 주동자의 성격이다. 군중이 경찰관주재소와 면사무소에 방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주동자 중 일부가 이에 반대하여 설득한 경우는 3월 30일의 수암면 수암리 비립동 시위였다. 즉 군중이 폭력시위를 주장

(14) 李正善,「始興地方 三一運動 硏究」, 國民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68쪽. 1919년 3월 27일 서이면 일동리 시위를 주동했던 이영래와 시흥 출신으로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면서 철도 통학생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 시흥과 안양, 군포지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던 韓興履 등은 서울시위에 직접 참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군중의 선두에 섰던 류익수가 "독립이 되면 관공서는 국가의 재산이 된다"는 논리로 시위대를 설득하고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4월 4일 군자면 거모리 시위에서는 주동자가 비밀통문을 띄울 때부터 경찰관주재소 및 면사무소 습격을 시위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단발적인 시위에 그쳤으면서도 주동자들의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된 시위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시위의 사전준비를 위해 사용된 통문과 격문, 통고 등은 시위의 계획을 알리는 효과적인 전달수단이었다. 시위를 주도할 별도의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이와 같이 사전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간 두터운 연대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만세시위가 횡적 연대 없이 마을(里) 단위로 추진된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또한 시흥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시위계획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단발적인 만세시위가 서로 연결성이 없이 전개된 가운데에서도 15일간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시흥군지역에서는 모두 6회에 걸쳐 1,950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가해 37명이 투옥되었다.[15] 10여 차례의 만세시위 가운데 연속해서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은 수암면 수암리(3월 30일), 반월리(3월 31일) 시위와 관련된 류익수 한 사람뿐이었다. 그 외의 시위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타 지역의 시위에 자극되어 만세시위를 준비하고 군중을 조직했던 것이다.

이현주 | 국가보훈처 연구관

(15)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동방미디어, 2002(초간, 1920), 519쪽.

2장 연성음사(蓮城吟社)의 활동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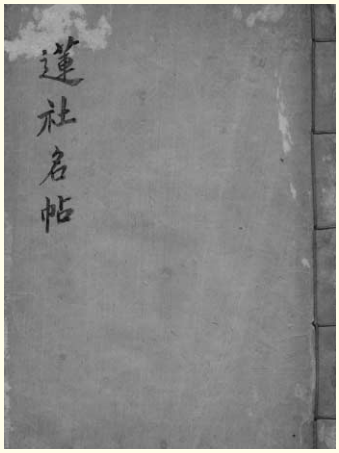
연성음사는 시흥지역의 한시 문인들이 1920년부터 1929년까지 활동하였던 시동호회로 일제강점기 이 지역 문인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보여 준 중요한 예에 해당한다. 현재 연성음사에 대해서는 시흥시 하중동에 거주하는 권희원(權熙元) 씨가 소장하고 있는 『연사명첩(蓮社名帖)』과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낸 『연성음사』(국립중앙도서관, 동곡古3643-207), 화정동에 거주하는 김준권(金濬權) 씨가 소장한 『연성음사시첩(蓮城吟社詩帖)』, 그리고 『연성음사 제일회집(蓮城吟社 第一回集)』 등의 자료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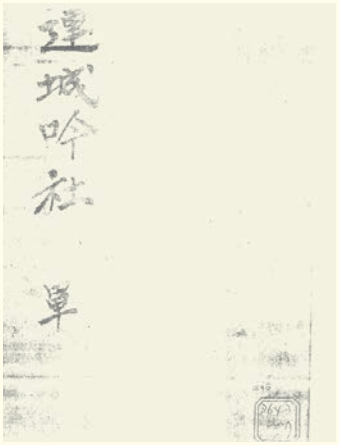
이 가운데 특히 『연사명첩』과 『연성음사』는 같은 내용의 이본이지만, 『연사명첩』은 한자가 간혹 잘못 쓰이거나 순서가 바뀐 곳이 있고 4편의 서문이 있는 반면, 『연성음사』는 한자의 오류가 전혀 없고 『연사명첩』에 누락된 광산후인(光山后人) 완계(莞溪) 김재승(金在昇)의 서문까지 총 5편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 원본에 가깝다고 본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연성음사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연성음사의 결성과 활동

1) 한시 창작모임의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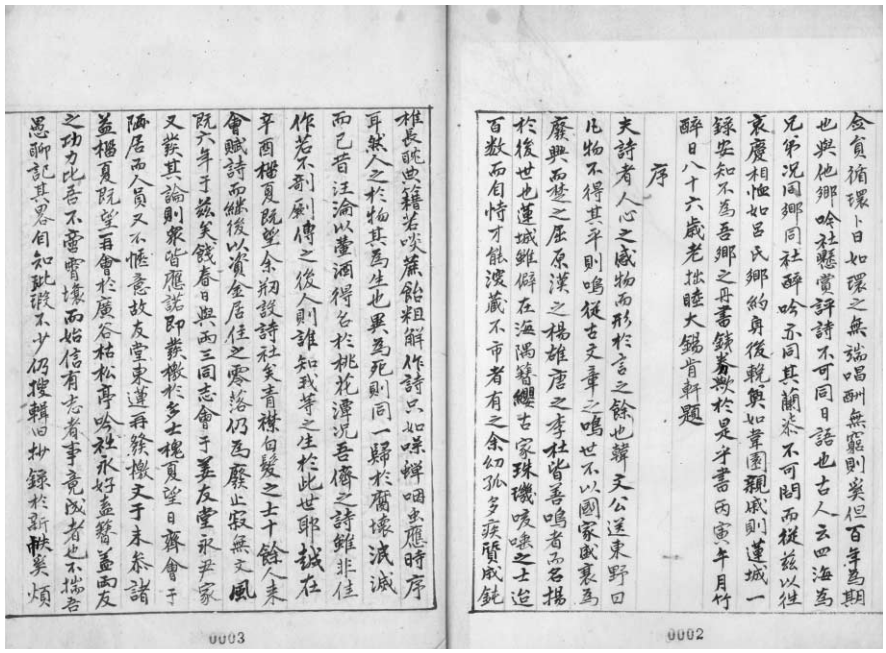
1920년대 중반, 시흥지역에 거주했던 지식인들의 모임인 연성음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 연성음사의 최초 결성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20년(辛酉) 음력 5월 16일(榴夏 旣望)에 창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은 이운근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연사명첩』 표지
▼『연성음사』 표지

옛날 왕륜이 한 동이 술로 도화담에 이름을 전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지은 시는 비록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만약 조각칼로 새겨두지 않은 채 그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누가 알겠는가? 신유년 유하(음력 5월) 16일에 내가 시 모임을 처음 만들어 청년과 나이든 선비들 십여 명이 모임에 나와 시를 읊어 이어졌으나 자금과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폐지되니 문풍이 사라진 지가 지금까지 육년이 되었다. 전춘일(음력 삼월 그믐날)에 두세 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우당 강영윤의 집에 모였는데 또한 그 의견을 꺼내자 사람들이 모두 응락하여 그 자리에서 많은 선비들에게 알리는 글을 작성하였다. 괴하(음력 4월) 보름



▲ 이운근의 서문

날 모두 나의 집에 모였지만 인원이 흡족하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당과 동연이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에게 다시 알리는 글을 썼다. 유하 16일에 광곡의 고송정음사에서 다시 모여 벗들이 오래 사귀었으니 이는 대개 두 벗의 공력으로 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다. 비로소 진실로 뜻있는 사람들의 일이 마침내 성사된 것이었다.

昔汪倫以壺酒 傳名於桃花潭 況吾儕之詩 雖非佳作 若不寄厥 傳之後人則 誰知我等之生於此世耶. 越在辛酉榴夏旣望 余 刱詩設楔矣 靑衿白髮之士 十餘人來會 賦詩而繼後 以資金居住之零落 仍爲廢止 寂無文風 旣六年玆矣. 餞春日與兩三同志 會于姜友堂永尹家 又發其論 則衆皆應諾 卽發檄於多士. 槐夏望日 齊會于陋居 而人員又不愜意 故友堂東蓮再發檄文 于未參諸益. 榴夏旣望 再會於廣谷枯松亭吟社 永好盍簪 盖兩友之功力 比吾不啻霄壤 而始信有志者 事竟成也.(국립도서관본 『연성음사』 서문 2, 岡蓮 李雲根 謹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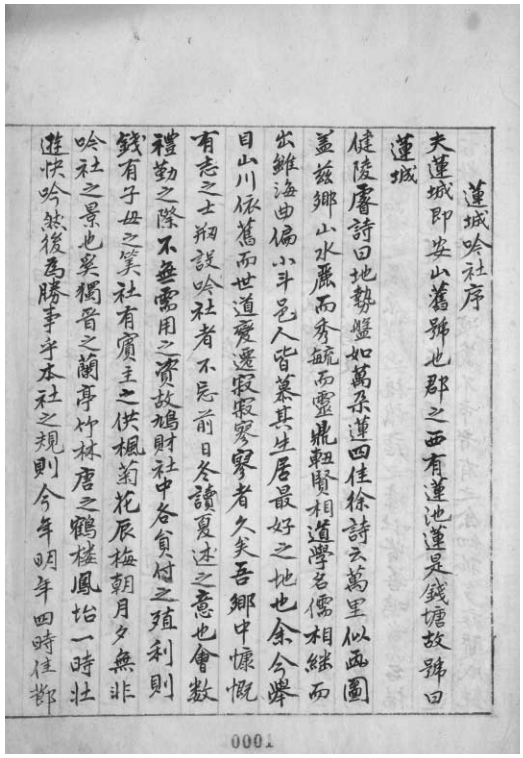
1920년 음력 3월 그믐날 두세 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견이 모

아졌고, 4월 보름에 다시 알리는 글을 쓰고 5월 16일에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이 서문을 보면 제1차 시모임 결성의 주축은 우당 강영윤, 동연(東蓮) 김봉성(金鳳聲), 강연 이운근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최초로 창설된 모임은 운영자금과 회합장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6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에 2차로 결성된 모임은 1925년(丙寅年)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연성음사의 계첩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전하는 『연성음사』(국립중앙도서관본)와 『연사명첩』(권희원 소장본)은 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 2차로 결성된 연성음사의 계첩을 엮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록문서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연사명첩』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성음사』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모임의 취지를 설명한 서문이 5편 수록되어 있고, 회원록에 45명의 회원이 연령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계를 모은 기념으로 회원 각자가 창작한 7언 율시가 같은 순서대로 45편 수록되어 있다.

한편, 제2차 시모임이 결성된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건대 1925년 음력 5월 16일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임이 매월 기망일인 16일에 있었고, 『연성음사』에 수록된 서문 가운데 목대석의 글이 음력 5월 13일, 이운근이 16일, 김봉성이 16일로 날짜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 사가 서거정의 시에 "만리가 흡사 그림과 같으니, 대개 이 마을은 산수가 아름다워 현명한 재상과 도학자와 이름난 유학자가 계속 나와 비록 바닷가에 치우쳐 있어 작지만 읍의 사람들이 모두 가장 좋은 곳에 거처함을 사모한다"고 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산천은 옛날과 같은데 세상 도리의 변천은 적적(寂寂)하고 쓸쓸한 것이 오래되었다. 우리 마을에 강개(慷慨)한 뜻을 지닌 선비들이 시를 읊는 모임을 만드니 예전에 겨울에 읽고 여름에 창작하는 뜻을 잊지 않았다. 여러 차례 예근하는 때를 만나니 소요경비가 없지 않아 회원들이 재물을 걷어 모아 이익을 낸 즉, 돈에는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있고 모임에는 손님과 주인의 대접이 있게 되었다.


蓮城吟社序
夫蓮城即安山舊號也郡之西有蓮池蓮是錢塘故號曰
蓮城
健陵庚詩曰地勢盤如萬朶蓮四佳徐詩云萬里似畫圖
蓋茲鄉山水厥秀而靈鼎軸賢相道學名儒相繼而
出雖海曲偏小斗邑人皆慕其生居最好之地也余今舉
目山川依舊而世道變遷寂寂寥寥者久矣吾鄉中慷慨
有志之士相說吟社者不忘前日冬讀夏述之意也會數
禮勤之際不無需用之資故鳩財社中各員付之殖利則
錢有子母之算社有賓主之供楓菊花辰梅朝月夕無非
吟社之景也奚獨晉之蘭亭竹林唐之鸛樓鳳沼一時壯
遊快吟然後爲勝事守本社之規則今年明年四時佳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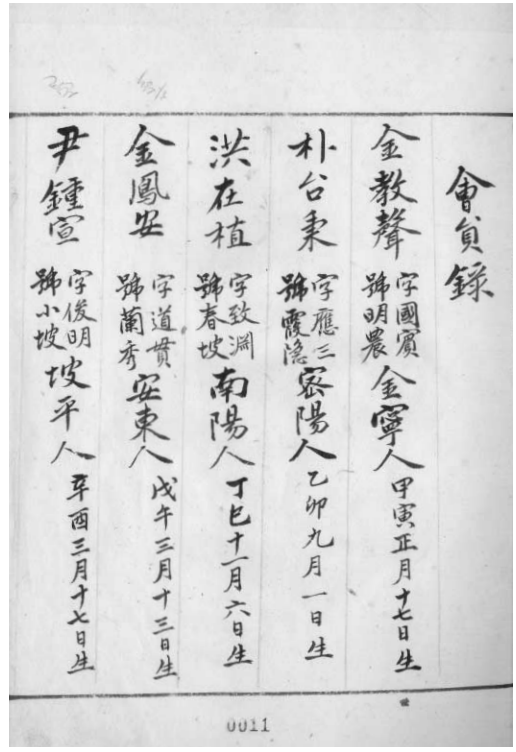
▲ 목대석의 서문

단풍 국화의 계절과 매화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에는 모두 시를 읊는 모임이 아닌 때가 없으니 어찌 유독 진나라의 난정시사와 당나라의 학루 봉대만을 장쾌하게 유람하며 마음대로 읊조린 훌륭한 일로 여기겠는가? 본 모임의 규칙은 금년과 내년 사계절의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이 차례로 날짜를 정하여 끝없는 고리처럼 시를 주고받음이 끝이 없으니 어찌 다만 백년을 기한으로 삼겠는가? 다른 지역의 시모임이 상을 걸고 시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형제가 된다" 고 했으니 하물며 같은 지역의 같은 모임에서 취하여 읊조리는 것 또한 같으니 그 난의 향기가 스며듦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슬픈 일과 경사스런 일에 서로 돕는 것은 마치 여씨향약과 같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제사를 치르는 것이 마치 울타리와 친척 같으니 연성의 책 한권이 어찌 우리 지역의 주사로 쓴 책과 금박으로 쓴 문서가 되지 않음을 알겠는가? 이에 글을 쓴다. 병인년 음력 5월 죽취일(竹醉日, 13일) 86세 늙은이 목대석 긍헌이 제함.

(前略) 四佳徐 詩云 "萬里似畫圖 盖茲鄉 山水麗而 秀敏而靈鼎軸 賢相道學名儒 相繼而出 雖海曲偏小斗 邑人 皆慕其生居 最好之地也." 余今 擧目 山川依舊而世道變遷 寂寂寥寥者久矣. 吾鄉中 慷慨有志之士 刱設吟社者 不忘前日 冬讀夏述之意也. 會數禮勤之際 不無需用之資 故鳩財社中 各員付之殖利 則錢有子母之算 社有賓主之供. 楓菊花辰

梅朝月夕 無非吟社之景也 奚獨晋之蘭亭竹林 唐之鶴樓鳳坮 一時壯遊快吟 然後 爲勝事乎. 本社之規則 今年明年四時佳節 僉員循環卜日如環之無端 唱酬無窮 則 奚但百年爲期也. 餘他 鄕吟社懸賞評詩 不可同日語也. 古人云 "四海爲兄弟" 況同鄕同社 醉吟亦同 其蘭參不可問而. 從玆以往 哀慶相恤 如呂氏鄕約 身後輓奠如韋園親戚則 蓮城一錄 安知不爲 吾鄕之丹書 鉄券歟. 於是乎書 丙寅午月竹醉日 八十六歲 老拙 睦大錫肯憲題.(『연성음사』 서문 1)


會員錄
金教聲 字國賓 號明農 金寧人 甲寅正月十七日生
朴台秉 字應三 號霞陰 密陽人 乙卯九月一日生
洪在植 字致淵 號春坡 南陽人 丁巳十月六日生
金鳳安 字道貫 號蘭秀 安東人 戊午三月十三日生
尹鍾宣 字俊明 號小坡 坡平人 辛酉三月十七日生
0011

▲ 연성음사 회원 명단

예전에 겨울에 읽고 여름에 창작하는 뜻을 이어받아 시모임을 결성했다는 것은 시흥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음을 암시한다. 이 시모임은 단순히 회합을 갖고 한시를 창작하고 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부조하는 계의 전통도 잇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회원들 모두가 이러한 두 가지 창설목적을 명확히 자각하고 있었다.

2) 연성음사의 운영

연성음사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자료에 나타난 규칙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규칙

一. 본 모임의 호칭은 연성음사라고 한다.(『연사명첩』)

一. 본 모임에는 임원인 사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간사 3인, 서기 1인을 둔다.(이하 『연성음사』)

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기간이 다하여 다시 선출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추천하여 뽑아 정한다.

一. 매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각자 의견을 말하며 사무에 모순이 없으면 오전 12시에 폐회한다.

단, 폐회 후에는 비록 말할 의견이 있더라도 다음번의 개회를 기다리고 사절한다.

一.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협의하며 만약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수에 따라 처리한다.

一. 모임의 회원은 매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리를 마련하는데, 술과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간략하게 한다.

一. 각각 2원씩을 기금으로 내며, 본전은 두고 이윤을 취해 때에 따라 적용하는데, 나머지가 있으면 봄과 가을에 모임의 유람을 특별히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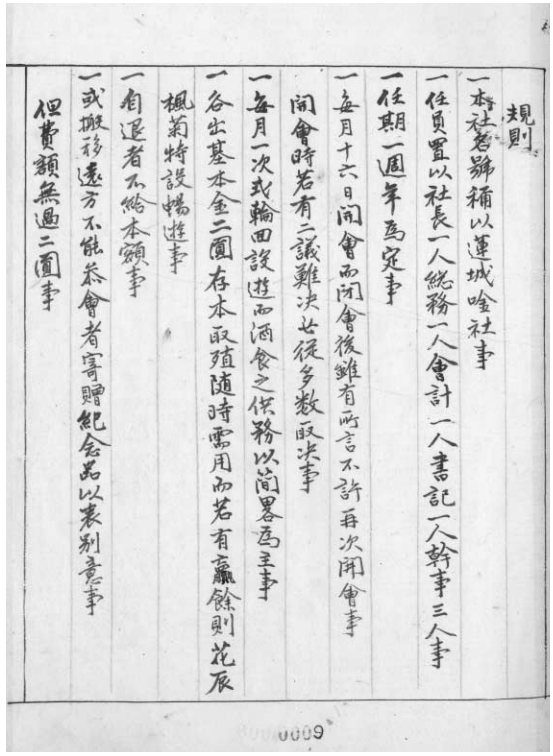
一. 회원 가운데 스스로 물러난 자는 원금을 주지 않는다.

一. 회원 가운데 멀리 이사 간 사람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주어 옛정을 표하는데 비용은 2원을 넘지 못한다.

一. 회원 중에서 부모상을 당하면 모두 모여 초상에 참여하며 만약 일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면 대신 심부름꾼을 보낸다.

一. 회원 중에서 불행히 사망하면 모두 장삿날에 모여 술과 과일을 준비하고 각각 만장(輓章) 1편으로 영전에 올리고 슬픈 정을 표한다.

一. 본 모임은 이와 같은 규칙을 일일이 어기지 않고 준수하기를 영구히 할 것이다.


規則
一本社名稱以蓮城唫社事
一任員置以社長一人總務一人會計一人書記一人幹事三人事
一任期一週年爲定事
一每月十六日開會而閉會後雖有所言不許再次開會事
開會時若有二議難決者從多數取決事
一每月一次或輪回設遊而酒食之供務以簡畧爲主事
一各出基本金二圓存本取殖隨時需用而若有贏餘則菊花辰楓菊特設暢遊事
一有退者不給本額事
一或遷移遠方不能參會者寄贈紀念品以表別意事
但費額無過二圓事

▲ 연성음사의 규칙

앞의 규칙은 모임의 조직(명칭, 임원, 임기), 모임의 재정(기금과 이익금), 회원의 의무(상호부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엄격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주된 업무가 시창작이나 품평에 있으므로 회원의 자격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규칙에는 한시창작의 수준이나 한시에 관한 소양 등 회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그 이유는 참여한 회원들이 한시에 대한 높은 소양을 지녔음을 처음부터 전제했거나 아니면 서로의 수준을 상호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자격을 특기하지 않은 점은 이 모임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수준에 오른 사람들만의 동호회란 자칫 그들만의 모임으로 폐쇄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회원의 자격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신입회원의 확충을 감안하여, 한시창작의 저변을 넓히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시에 관심은 있지만 수준이 낮은 초심자를 준회원으로 설정했다면, 이들을 교육하고 전문화시키는 내용이 연성음사의 또 다른 시대적 과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회원의 재정적 부담이나 운영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한 점은 상호부조적인 계를 운영하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적 문제로 이미 과거의 모임이 해체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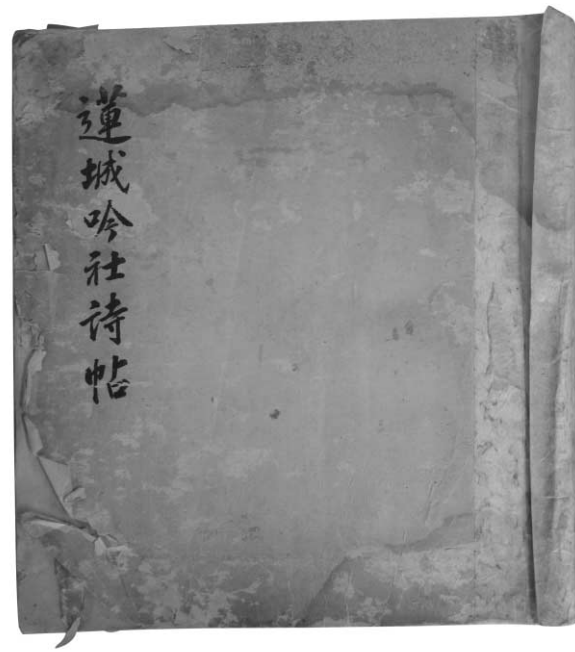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연성음사의 시대적 소명감을 감안했을 때 단순한 상호부조의 계에 머물러 한시창작의 전문화와 교육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 점은 일정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 『연성음사시첩』 편집과 현상공모를 통한 작품집 발간

연성계첩을 엮은 후에 1926년 정묘년(丁卯年) 정월 16일의 모임에서는 시를 창작하고 난 후에 『연성음사시첩』을 엮었다. 이 사실은 연성음사의 주도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김교성의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 갑오년의 경쟁 이후로 세상의 도리가 변천하고 과거가 모두 없어졌으며 선비의 기개가 점차 쇠약해지고 세상을 가르치고 교화함이 더욱 약해졌으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이에 지역에 있는 세상을 개탄하는 뜻을 지닌 선비들이 글을 숭상하는 풍습을 돕고 다시 일으키고자 시모임을 처음 만들게 되었다. 매월 16일에 모든 회원이 돌아가면서 술을 내고 마시며 속마음을 읊었는데, 모일 때마다 예를 갖추고 열심히 하자고 약속하기를 영원히 한 것은 진나라의 난정계와 당나라의 봉대모임이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먼 풍습의 여운이 아직 지금에 전함을 좋은 일로 여겨 우리 모임이 영원히 이어지게 한다면 과연 진나라와 당나라의 깨끗한 분들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
> 작년 봄에 내가 집을 지었으나 낙성식을 할 겨를이 없었다. 금년 봄 정월 기망일은 곧 모임이 있는 날이었고 내가 술을 갖추는 순번이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집에 모이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모임의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읊으며 말하기를 "이 집에 들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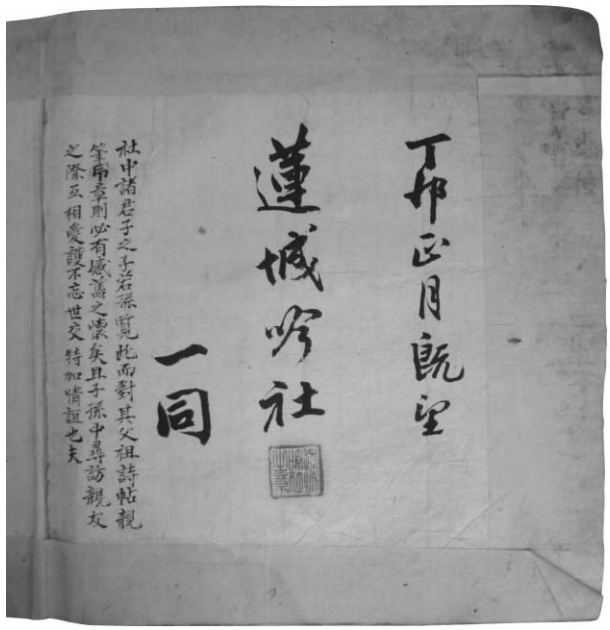
서 이 술을 마시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라 할 것이다. 이 어찌 시모임과 낙성식을 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찬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저절로 아름다운 것이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칭찬하는 까닭이 되었다.



▲『연성음사시첩』 표지

甲午競爭以後 世道變遷 科擧全廢 士氣漸頹 敎化益衰 寧不寒心哉. 於是乎 鄕中慨世有志之士 翼文風復振 刱設詩契. 每月朔望 全員輪次供酒 觴咏敍情 會數禮勤之約 因無限年而 晋之蘭亭修稧 唐之鳳臺吟詩 一次之遊. 然遠風餘韻尙傳于今 以爲盛事則 吾社循環永久之吟 果無愧於晋唐之淸流乎. 且昨春建屋 未暇落成之會. 今春正月旣望卽 社會日而 酒禮輪次 適逮於我. 故社中君子 咸集而吟曰 "入此室飮此醑 眞可謂樂事. 此豈非詩會兼 落成式乎" 讚美不已. 美不自美 因人而彰良以是也 明儂序.

제2차 음사모임이 결성된 후, 한시창작모임은 계속되었는데, 1926년 정월 16일에 김교성의 집에서 낙성식을 겸하여 열린 음사의 모임이 가장 큰 것이었다. 이 날에 모인 사람들은 집주인 김교성의 한시에 차운(次韻)하여 『연성음사시첩』에 모두 48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에는 류원성(柳遠聲)이 지은 명농정사상량문(明農精舍上樑文)과 근정김공청감하(謹呈金公淸鑑下)



▲『연성음사시첩』 속표지에 기록된 내용

라는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2차 창설 이후에 달마다 음사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창작도 아울러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성음사 회원들의 작품이 더 이상 전하지 않아 활발한 활동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연성음사의 회원들이 창작한 작품을 묶거나 공간(公刊)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출판비의 충당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연성음사시첩』처럼 창작작품을 모아 묶는 것은 이렇듯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부여한 의미도 물론 매우 컸다.

모임 가운데 여러 군자들의 자손이나 손자가 이것을 보고 자기 부모의 시첩에서 친필과 인장을 대한다면 반드시 옛날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손 가운데 친했던 사람들을 찾는다면 서로 간에 사랑하고 보호하여 대대로 교분을 잊지 말고 특별히 정의를 더욱 두터이 해야 할 것이다.

社中諸君子之子若孫 覽此而對 其父祖詩帖 親筆印章 則必有感舊之懷矣. 且子孫中 尋訪親友之際 互相 愛護不忘世交 特加情誼也夫.(『연성음사시첩』 속표지에 기록된 내용)

만날 때마다 창작을 하면서도 책으로 묶기 어려운 애로점이 생기자 새로운 방향의 타개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활동의 전국적인 확대방안으로 한시 현상공모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시 현상공모는 『동아일보』의 광고를 통해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되었는데, 연성음사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동아일보』의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

> 경긔도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京畿道 始興郡 秀岩面 下中里)에 잇는 련성음사에서는 동사 창립오주년 긔념사업으로 현상한시모집(懸賞漢詩募集)을 아래와 가치 행한다더라(시흥).
>
> 一. 題 錢塘紅 韻(押 塘)
>
> 一. 期限 丁卯 陰 十月末日 까지
>
> 一. 投稿方法 朝鮮白紙 半折
>
> 一. 刊行費 每首五十錢
>
> 一. 投稿場所 前記同社內
>
> 一. 賞品 一等一人 五十圓 二等二人 各 三十圓 三等四人 各 十圓 四等八人 各 五圓 五等 四十人 各 二圓 六等百人 各 一圓
>
> (『동아일보』 1927년 9월 21일)

대중매체인 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작품을 공모한 것은 이전의 다른 지역에서도 몇몇 사례가 보인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는 창립5주년 기념사업으로 현상공모한다는 점과 참가비를 받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창립5주년이라는 것은 연성음사의 창립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앞에서 필자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1차 창설이 1920년 5월 16일이고 2차 창설이 1925년 5월 16일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연도상의 오차를 연성음사에서 전국적인 광고를 할 때 자기들


懸賞漢詩募集
蓮城吟社主催
二十世紀의最
世間에喧傳되는
蓮城吟社主催
漢詩募集延期

◀『동아일보』에 낸 연성음사 작품공모 광고(『동아일보』 1927년 9월 21일)
▼ 마감연기에 관한 광고(『동아일보』 1927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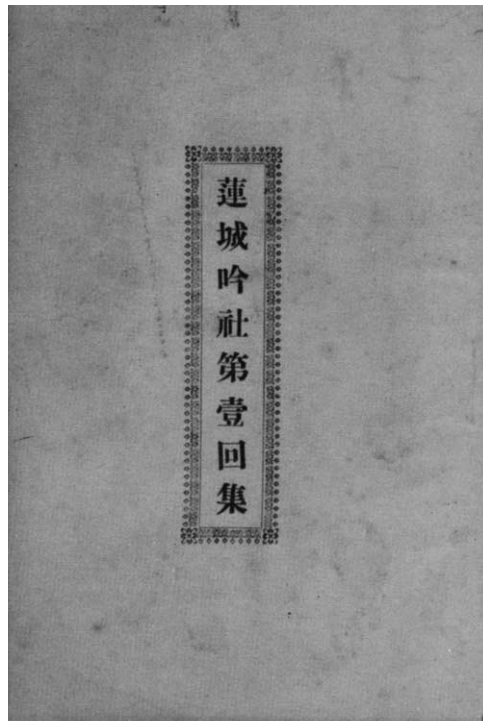
의 모임이 유구한 것으로 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실제의 창립이 1920년이었으나, 당시는 활동이 미미했고, 1925년에 재창립이 되었는데 1927년 광고에서는 기간을 늘여서 창립5년이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광고 후에 작품 마감까지의 기일이 40일밖에 안 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기 전인 1927년 5월 31일에 이미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의 김환제(金桓濟)와 이우규(李愚圭)가 현상시에 대한 질의를 엽서로 보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신문광고 전에 별도의 방법으로 이미 현상시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다양한 방

법으로 모집하고 추후로 신문광고를 활용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낮았는지, 마감연기 광고를 다시 내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 경긔도 시흥군 수암면 하중리(京畿道 始興郡 秀岩面 下中里)에 잇는 련성음사에서 한시 현상모집을 지난 음 십월 까지 모집코자 하던 바 긔일이 너무 단축한 관계로 다시 음 십일월 말일 까지로 연긔하엿다더라(시흥).(『동아일보』 1927년 12월 1일)



▲『연성음사 제일회집』 표지

1개월의 마감연기 외에도 작품의 선정작업과 작품집의 발간과정에서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 마감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1929년 2월 21일에서야 『연성음사 제일회집』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성음사 제일회집』의 판권란의 사고(社告)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본 시집의 원고접수 마감기한이 이미 여러 달을 넘겨서 여러 선비들의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했으니 본사에 대해 유감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흐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고치고 당국의 승인과 검열을 마쳐 출간하게 되기까지 어찌 시일이 소요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건대 투고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참작하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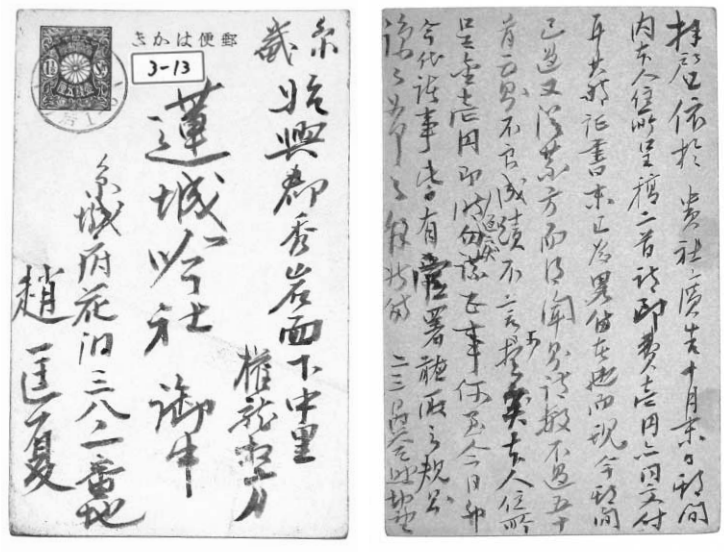
깊이 살펴 이해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소화 3년 4월 연성음사 아룀.
本社集收稿期限 已經數朔 少違諸彦之渴望 在於本社 遺憾良多. 然勢也奈何 計其考定及當局承認檢閱 至於刊出 日子則豈無時日之費哉. 惟希投稿諸氏 酌右事實 庶賜洞諒幸甚. 昭和3年 4月 日 蓮城吟社 白.

위의 사고(社告)에 언급된 날짜가 1928년 4월임을 감안할 때, 판권에 명기된 최종 인쇄일이 1929년 2월이라면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검열로 인해 지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지역 시사의 작품집들 경우에도 검열을 마쳤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일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시흥시사편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엽서자료를 살펴보면 이 현상작품의 심사와 출판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을 추론할 수 있다. 보관 중인 많은 엽서 중에서 31통이 연성음사의 현상시공모에 관해 독자들이 보내 온 것들인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문광고와는 별도로 현상공모를 알리는 방안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발신자가 경성부 화동 38-1번지의 조광하(趙匡夏, 1928.1.10.)로 된 엽서를 보면, 현재 50수의 작품을 모집하고 우선 2수에 1원의 대금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개성 동부 원정 376번지의 조덕재(趙悳載)가 현상모집광고를 개성의 10여 군데에 보내고 자기 돈을 보낸다는 내용(1928.2.29.)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자료를 통해 각 지역에 별도의 작품모집 알선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효과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었는데, 작품 발간이 지연되자 선금을 내고 시를 보냈던 사람들보다, 자기 돈으로 대납했던 작품 알선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강도가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평안북도 선천군의 계용련(1928.4.15.), 경성부 화동의 조광하(1928.7.28.) 경상남도 곤양의 조일생(1928. 9.13.) 등이 보냈던 엽서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 조광하의 엽서



다른 지역의 음사(吟社)에서도 상을 걸고 시를 평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연성음사에서 한시 1수당 50전의 참가비를 받고 작품을 모은 것도 문학사회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가 된다. 전체 모집한 작품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작품을 평가하는 위원들의 보수와 상금비용, 그리고 도서 발간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 이용하여 간략하게 인원과 상금액만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상금비용

등위	선정작품수	상금
1	1수	50원× 1= 50원
2	2수	30원× 2= 60원
3	3수	10원× 3= 30원
4	8수	5원× 8= 40원
5	40수	2원×40= 80원
6	121수	1원×121=121원
등외	433수	없음
총계	608수	381원

〈표 2〉 작품집 발간비용

수입액	지출액	잔액
참가비=304원	광고비=?	
	심사비=?	
	발간비=?	
	발송비=?	
	상금=381원	
304원	381원	-77원

확실하게 전체 응모인원은 알 수 없지만 등외 선정작품수가 이렇듯 엄청난 숫자임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작품집을 늦게 내는 대신에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전 인원을 수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시현상공모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될까? 한 작품당 참가비 50전에 선정작품수를 곱하여 수입을 계산하고, 지출액을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77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계산에는 응모작을 모두 수록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기타의 지출액은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니, 실제 적자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연성음사는 『연성음사 제일회집』의 발간 이후 활동내역을 거의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런 배경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일제의 탄압 사유 외에도, 위에 분석한 사업상의 엄청난 실패가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2. 연성음사의 문학관과 사회의식

1) 연성음사의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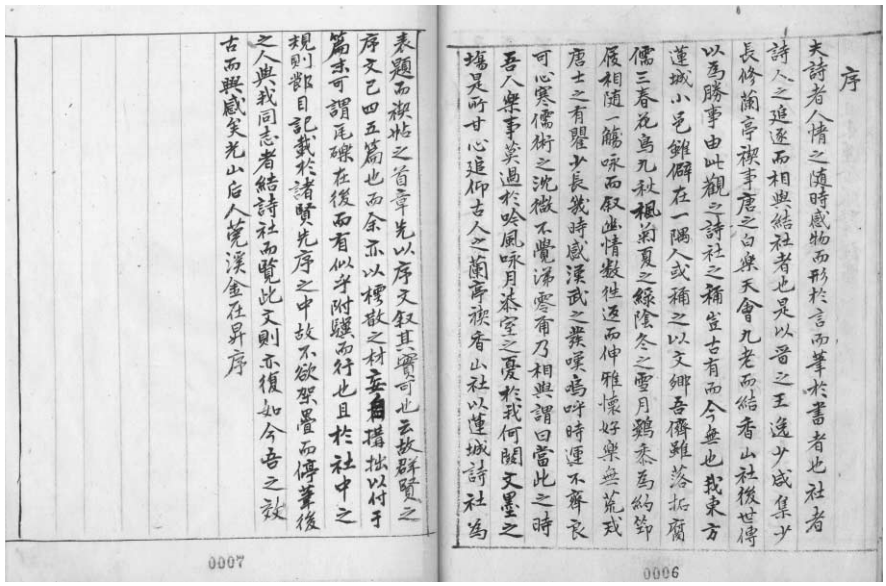
시동호회 개인의 문학관이 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모임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관점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문학적 노선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성음사』와 『연성음사시첩』의 서

문을 쓴 인사들의 문학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릇 시란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감응되어 언어로 형상화된 나머지이다. 한문공 퇴지가 동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무릇 사물이 그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낸다" 했으니 옛날에는 문장이 세상에 울림에 따라 국가가 번성했다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폐했다가 흥하게 되었으니 초나라의 굴원과 한나라의 양웅과 당나라의 이백 두보가 모두 잘 울린 사람들로 이름이 후세에 날린 사람들이다. 연성이 비록 바닷가 모퉁이에 치우쳐 있지만 양반의 옛집과 구슬 같은 문재(文才)의 선비가 백여 명에 미쳐 스스로 재능을 믿고 깊이 숨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나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병이 많은 체질이었으며 성장해서는 무딘 방망이처럼 전적을 탐독하기를 마치 사탕수수를 먹듯 하고 지은 시를 조잡하게 풀어, 단지 시끄러운 매미와 벌레가 마치 계절에 따라 응하는 것 같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사물과 비교할 때, 사는 것은 다르고 죽는 것은 같아서 하나같이 썩어서 흩어지는 데에 이르러 흔적이 없어질 따름이다. 옛날 왕륜이 한 동이 술로 도화담에 이름을 전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지은 시는 비록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만약 조각칼로 새겨 두지 않은 채 그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누가 알겠는가?

夫詩者 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餘也. 韓文公 送東野曰 "凡物不得其平則鳴" 從古文章之鳴世 不以國家盛衰爲廢興 而楚之屈原 漢之楊雄 唐之李杜 皆善鳴者而名揚於後世也. 蓮城雖僻在海隅 簪纓古家 璣珠咳唾之士 迨百數 而自恃才能 深藏不市者有之. 余幼孤多疾質 成鈍椎長耽典籍 若啖蔗飴 粗解作詩 只噪蟬咽蟲 如應時序耳. 然人之於物 其爲生也異 爲死則同 一歸於腐壞 泯滅而已. 昔汪淪以壺酒 傳名於桃花潭 況吾儕之詩雖非佳作 若不剞劂傳之後人則 誰知我等之生於此世耶.(『연성음사』 서문 2 이운근)

대개 시란 사람의 정서가 때에 따라 사물에 감응하여 언어로 형상화되고 글로 쓰여진 것이다. 모임이란 시인들이 서로 따라서 함께 단체를 묶은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진나라 왕일소(희지)가 젊은이와 어른들을 모두 모아 난정의 계를 모았으며, 당나라의



▲ 김재승의 서문

백낙천이 구로를 모아서 향산의 모임을 묶었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시사라고 칭하는 것이 어찌 옛날에만 있고 지금은 없다고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연성이 비록 작은 읍이고 비록 궁벽하여 한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지만 사람들은 간혹 문향으로 칭한다.

夫詩人者 人情之隨時感物 而形於言而筆於書者也. 社者詩人之追逐而相與結社者也. 是以 晉之王逸少咸集少長 脩蘭亭禊事 唐之白樂天 會九老而結香山社. 後世傳以爲勝事由此觀之 詩社之稱 豈古有而今無也. 我東方 蓮城小邑 雖僻在一隅 人或稱之 以文鄉.(『연성음사』 서문 5 김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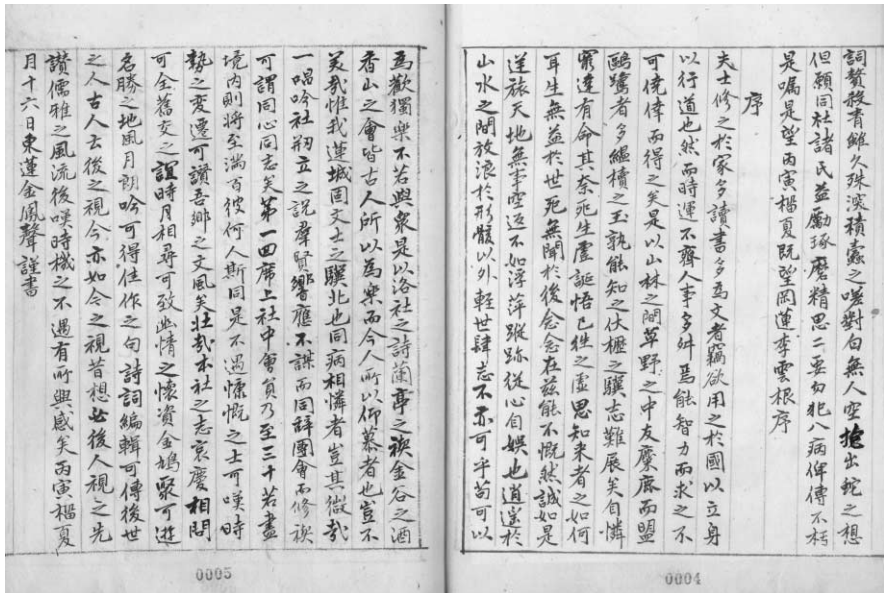
위의 인용을 보면 문학이 정서의 표현이라는 점을 넘어서 문학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염두에 두는 관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의 흥망에 문학의 비판적 소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인지 구체적인 상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연결해서 지역 문사들의 회합을 결성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 있지만, 조각칼로 새겨 살았던 흔적을 남긴다는 말에서는 후퇴한 인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문인의 입장에서 좀 더 투철한 사회적 역할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한시 문학의 다양한 현실참여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앞서 연성음사의 회원자격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한계는 문학이라는 전문성을 통한 사회활동의 시대적 한계라고 생각한다.

2) 연성음사의 사회의식

연성음사의 주도적 인사들의 글을 보면 궁벽한 지역적 위치로 인한 사회진출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선비가 가정에서 마음을 닦으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짓는 것은 나라에 등용되어 지위를 얻고 나서 도를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운수가 고르지 않아 사람의 일이 어그러지니 어찌 지력으로 능히 그것을 구하겠는가? 할 수 없어 요행으로 그것을 구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산림과 초야에 묻혀 사슴을 벗삼고 오리와 해오라비를 친구하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쌓여서 팔리는 구슬이 어찌 능히 이런 것을 알겠는가? 마구간에 숨어 있는 천리마는 뜻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다. 빈궁과 영달이 운명에 달려 있다고 스스로 가엾게 여겨야 하니 어찌 삶과 죽음이 허탄한가? 지나간 허망한 생각을 깨달아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어떠할 뿐이다. 살아서도 세상에 이익됨이 없고, 죽어서도 후세에 명성이 없는데, 지금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진실로 여관과 같은 땅밖에 없다. 하늘과 땅이 무사히 도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흔적과는 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스스로 즐기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내용 없는 뼈다귀에서 방랑하는 것 이외에 세상을 가벼이 여기고 뜻을 거리낌없이 하는 것 또한 할 수 있지 않은가? 진실로 즐거움을 만든다면 홀로 즐기는 것은 대중과 같이 하는 것만 못하다. 이로 인해 낙사의 시와 난정의 모임과 금곡의 술자리와 향



▲ 김봉성의 서문

산의 모임이 모두 옛사람이 즐거움으로 삼았던 이유이며, 오늘날의 사람이 우러러 사모하는 이유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우리의 연성은 진실로 문사들의 기북이다.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숨어 있는가? 음사를 창설하자는 말을 부르짖자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동조하여 논의하지 않아도 일치된 의견이 나와 모임을 엮어 계를 조직하였으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夫士脩之於家 多讀書 多爲文者 竊欲用之於國 以立身以行道也. 然而時運不齊 人事多舛 焉能智力以求之. 不可僥倖以得之矣 是以山林之間 草野之中 友麋鹿而盟鷗鷺者多. 澹儻之玉 孰能知之. 伏櫪之驥志難展矣. 自憐窮達有命 奈死生虛誕. 悟已往之虛思 知來者之如何耳. 生無益於世 死無聞於後 念念在茲 能不慨然 誠如是逆旅. 天地無事 空返不如浮萍踪跡 從心自娛也. 逍遙於山水之間 放浪於形骸 以外輕世肆志 不亦可乎. 苟可以爲歡獨樂不如衆. 是以 洛社之詩 蘭亭之稧 金谷之酒 香山之會 皆古人所以爲樂而 今人所以仰慕者也 豈不美哉. 惟我蓮城固文士之冀北也. 同病相憐者 豈其微哉. 一倡吟社刱立之說 群賢響應 不謀而同辭 團會而脩稧 可謂同心同志矣.(『연성음사』 서문 3 김봉성)

스스로를 팔리는 구슬과 마구간에 숨어 있는 천리마로 여기고 빈궁과 영달이 운명에 달려 있다고 가엾게 여기지만 세상을 가벼이 여기고 뜻을 거리낌없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대중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낙후함 때문에 문필을 통한 사회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이 비록 나쁜 환경에 처하고 생각이 낡은 선비들이지만, 봄날의 꽃과 새, 가을의 단풍과 국화, 여름의 나무 그늘, 겨울의 눈과 달에는 닭고기와 기장밥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끌며 서로 따랐으며, 한 잔을 마시고 노래하고 깊은 회포를 풀어내며, 자주 왕래하면서 좋은 뜻을 펴며 즐거움을 누렸다. 크게 경계함 없이 당나라 선비가 되어 젊고 씩씩함을 알고, 때를 보아 한무의 탄식을 느꼈다. 아아, 시대의 운수가 고르지 않아 양심이 곤궁해지고 유학이 미미해져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했다. 이에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마땅히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즐거운 일은 시를 읊는 것일 뿐이니 우리에게 신분의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문필의 분야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바이니 옛사람의 난정의 모임과 향산의 모임을 떠올려 연성의 시모임으로 표제를 삼고 계첩의 머릿장에 먼저 서문을 쓰고 이 사실을 쓰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吾儕雖落拓腐儒 三春花鳥 九秋楓菊 夏之綠陰 冬之雪月 雞黍爲約 笻屐相隨 一觴咏而敍幽情 數往返 而伸雅懷好樂. 無荒戒 唐士之有瞿少壯 幾時 感漢武之發嘆. 嗚呼 時運不齊 良可心寒 儒術之浸微 不覺涕零爾. 乃相與謂曰 "當此之時 吾人樂事 莫過於吟風咏月 漆室之憂於我 何關. 文墨之場 是所甘心 追仰古人之蘭亭稧 香山社 以蓮城詩社 爲表題而 稧帖之首章 先以序文 敍其實可也云".(『연성음사』 서문 5 김재승)

시대의 운수가 고르지 않다고 보고, 신분의 문제를 떠나 시를 읊는 일로 즐거움을 삼겠다는 발언에서 문필이 지닌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앞에 살펴본 표현들은 근본적으로는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 진출할 수 없는 인재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시창작모임의 필요성을 발견한 점은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한시창작의 의미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자칫 위와 같은 선언은 일부 지식층 문인들의 현실도피적인 의식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상호부조와 친목도모와 승경유람이라는 활동내역으로는 적극적인 사회비판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 상황은 좀 더 다른 시각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 지식인의 의식 결집 자체가 사회운동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일제강점기 지역적 한시 동인회 활동의 의의

1920년대에는 지역적인 한시창작모임의 결성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었다. 1890년대부터 광복 이전까지 각종 신문에 나타난 한시모임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 한말~일제강점기 한시모임의 활동내역

	시사명(詩社名)	지역명	시기	참고
1	남산음사시회(南山吟社詩會)	서울 남산 노인정	1898.10.18.	『황성신문』 기사 제10회 광고
2	삼청시회(三淸詩會)	서울 삼청동 감은정	1909.4.27.	『황성신문』 기사 모임 개최 사실 보도
3	대관시회(大官詩會)	미상	1909.5.2.	『황성신문』 기사 모임 개최 보도
4	취운시회(翠雲詩會)	재동 취운정	1909.7.13.	『황성신문』 기사 모임 개최 보도
			1909.7.14.	『황성신문』 기사 시회의 경찰경비 내용
5	신해음사(辛亥吟社)	미상	1912.2.24. 창립	『동아일보』 기사 연 4회간(刊) 경성 동부 호동(壺洞) 한국인
			1912.	『임자집(壬子集)』 출판
			1913.	안왕거(安往居) 편, 『신해음사 계축집(辛亥吟社 癸丑集)』 출판
			1913.	『기정집(旗亭集)』 출판
			1917.	『병진집(丙辰集)』 출판

	시사명(詩社名)	지역명	시기	참고
5	신해음사(辛亥吟社)	미상	1918.	『무오집(戊午集)』 출판
			1918.	『추모첩(追慕帖)』 방규환(方奎煥) 편 출판
			1928.	『하천수첩(荷泉壽帖)』 유자후(柳慈厚) 편 출판
6	송남음사(松南吟社)	송남(松南)	1914.	『송남음사시집(松南吟社詩集)』 이종열(李鍾烈) 등편 만포당(晩圃堂) 출판
7	금문시회(金門詩會)	미국 샌프란시스코	1914.7.30.	『신한민보』 모임 결성
8	창녕시사(昌寧詩社)	경남 창녕(昌寧)	1920.6.14.	『동아일보』 기사 『경남창녕남지(慶南昌寧南旨(上浦里)』 신경식(辛慶植) 외 발기
9	문곡서당시회(文谷書堂詩會)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1922.5.29.	『동아일보』 기사 문곡서당시회 개최
10	종산시사 (鍾山詩社)	전남 여수(麗水)	1922.8.18.	『동아일보』 기사 현상 사락모집(詞落募集)
11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경기도 강화	1923.6.12.	『동아일보』 기사 대동사문회 강화지회에서 문예시회
12	취성재계(聚星齋契)	전남 곡성군(谷城郡) 삼지면(三支面) 원등리(院嶝里)	1925.	출판사업
13	양원음사(楊園吟社)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1925.4.8.	『동아일보』 기사 현상시율대회
14	원음사(園吟社)	경기도 의정부(議政府)	1925.4.13.	『동아일보』 기사 현상시율대회
15	정사음사(丁巳吟社)	경북 안동군(安東郡) 하회리(河回里)	1925.5.4.	『동아일보』 기사 현상시고모집
16	관북시회(關北詩會)	길주(吉州)	1925.5.31.	『동아일보』 기사 관북시회 성황
17	관북시사(關北詩社)	길주읍(吉州邑) 길남동(吉南洞)	1925.7.10.	『동아일보』 기사 시현상모집
			1925.7.30.	『동아일보』 기사 시현상모집
			1925.8.7.	『동아일보』 기사 한시현상 투고증가
			1925.9.26.	『동아일보』 기사 시현상모집 연기
18	서호시사(西湖詩社)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창전리	1925.11.28.	『시대일보』 기사 서호시사 연기
19	화양시사(華陽詩社)	충북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川面) 화양리(華陽里)	1926.1.16.	『동아일보』 기사 제2회 현상한시모집
20	청양음사(淸陽吟社)	충남 청양(淸陽)	1926.7.15.	『동아일보』 기사 『청양음사시집(淸陽吟社詩集)』 오일상(吳一相) 편 출판
21	심양음사(瀋陽吟社)	중국 봉천	1927.1.2.	『동아일보』 기사 예오회 시가모집, 삼양음사를 조직한 오일상 씨
			1927.3.8.	『동아일보』기사 시작(詩作)에 일등(一等)하면 한림학사수여(翰林學士授與)

	시사명(詩社名)	지역명	시기	참고
22	동인음사(同寅吟社)	미상	1927.	『동인음사총회집(同寅吟社總會集)』 한창수(韓昌洙) 김석초(金石蕉) 등 출판
23	연성음사(蓮城吟社)	경기도 시흥(始興)	1927.9.21.	『동아일보』 기사 현상한시모집
			1927.12.1.	『동아일보』 기사 한시모집 연기
24	총석정시회(叢石亭詩會)	강원도 통천	1929.11.21.	『동아일보』 총석보승회(叢石保勝會)서 현상시모집, 시사와 비용을 제한 잔금으로 환선정 건립 비용 충당 예정
25	강릉청금록(江陵靑衿錄)	강원도 강릉	1930.	최인순(崔寅洵) 편, 강릉청금록발행임시사무소 출판
	강릉청금록 속록 (江陵靑衿錄 續錄)			최창순(崔昌洵) 등편, 강릉청금록발행임시사무소 출판
26	해양음사(海陽吟社)	전남 광주(光州)	1933.	『운림당시문집(雲林堂詩文集)』 김승련(金承鍊) 편집 출판
			1933.	『운림당시문집(雲林堂詩文集)』 노형규(盧衡奎) 등편 출판
			1933.2.17.	『동아일보』 기사 현상한시모집
			1933.6.2.	『동아일보』 기사 한시당선발표
			1934.	『운림당시집속(雲林堂詩集續)』 김승현(金承鉉) 편 출판
27	기영시사(箕穎詩社)	전남 함평(咸平)	1933.6.22.	『동아일보』 기사 한시현상모집
28	금란시사(金蘭詩社)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雄基)	1934.9.7.	『동아일보』 기사 금란시사동정
29	금릉음사(金陵吟社)	경남 김해(金海)	1933.	『능아집(陵雅集)』 김봉흠(金鳳欽) 편 출판
			1938.	『금능음사시집(金陵吟社詩集)』 이방녕(李邦寧) 편 이방녕가(家) 출판
30	풍남시사(豊南詩社)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임한면(臨漢面) 사동리(仕洞里)	1934.	『풍남시사시집(豊南詩社詩集)』 김훈경(金勳卿) 편 출판
31	언양작천정음사 (彦陽酌川亭吟社)	경남 울산군 언양	1935.2.3.	『동아일보』 기사 한시현상모집
32	만취당시사(晩翠堂詩社)	전남 장성군(長城郡) 삼계면(森溪面) 부성리(富城里)	1936.	『만취당창수시록(晩翠堂唱酬詩錄)』 최승휴(崔升休) 편 출판
33	담락루시사(湛樂樓詩社)	전북 고창군(高敞郡) 해리면(海里面) 송산리(松山里)	1936.	『담락루시록(湛樂樓詩錄)』 담락루시사 편 출판
34	봉성음사(鳳城吟社)	전남 구례(求禮)	1937.	『봉성시고(鳳城詩稿)』 이병호(李炳浩) 편 출판
35	이남시사(二南詩社)	충남 논산군(論山郡) 채운면(彩雲面) 우기리(禹基里)	1938.	『용은선행(龍隱善行)』 김수환(金琇煥) 편 출판

	시사명(詩社名)	지역명	시기	참고
36	회산음사(檜山吟社)	경남 마산(馬山)	1938.6.28.	『동아일보』 기사 한시모집
37	삼우시사(三友詩社)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흥교면(興敎面) 소문리(昭門里)	1939.	『삼우시사집(三友詩社集)』 장순황(張淳晃) 편집 문우당인쇄소(文友堂印刷所) 출판
38	울산한시회(蔚山漢詩會)	경남 울산	1939.5.11.	『동아일보』 기사 울산한시회 개최
39	목포유산시사(木浦儒山詩社)	전남 목포(木浦)	1940.	『만학영하첩(晩學影賀帖)』 이종석(李鍾奭) 간편(刊編) 출판
40	금강시사(錦江詩社)	충남 금강 일대	1942.	『금강시사속수안(錦江詩社續修案)』 박정서(朴鼎緖) 편 출판
41	신한음사(新韓吟社)	경성부 중구(中區) 삼각정(三角町)	1946.11.19.	『동아일보』 기사 현상한시모집

1900년대 초 황성신문이 주축이 된 고관대작들의 시회모임은 어용인사들의 사교장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모임장소가 자신들만이 모이는 장소였고, 극비리에 모여서 정치적 회합을 위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각지에서 한시 동호회의 활성화가 1910년대부터 대단히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는데, 도시와 향촌은 물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중국의 봉천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 마치 유행처럼 이런 모임이 각처에 확산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식수준이 있고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창작모임을 가지며,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문화활동의 조직화와 활성화는 정치적으로 유폐된 전통지식층의 새로운 모색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이 분명하다. 이 활동은 전통지식층의 자기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식인층의 결집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재인식으로 이어졌다.

한시 동호회의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문화운동으로는 시조부흥운동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하의 문화활동으로는 1930년대의 시조부흥운동만을 예로 들어 평가해 왔는데, 사실 시조부흥운동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앞시대의 한시 동호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설



▲ 연성음사 직인

득력이 있을 것이다.

일제 당국이 각종 모임과 출판물에 대해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게 된 것도 문화운동의 파급효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전하는 각종 출판물의 판권란에 검열표시가 남아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지역적 한시 동호회의 활성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시를 이해하는 교양의 수준과 범위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직접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식의 틀과 회고적인 표현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중성도 확충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시흥시의 한시 동호회모임인 『연성음사』의 활동내역은 지역적 문화운동이 근대적 대중매체인 신문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현상시사업을 펼쳐 나간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활동영역의 전국화는 지역적 모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출판과 경제적 문제의 상관관계가 얽히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쉽게도 경제적인 실패로 인해 연성음사의 조직도 와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흥시 연성음사의 사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경우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출판의 경제적 타산 문제는 일제강점기를 문학사회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준거로 그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 참고자료

시흥시사편찬위원회 보관, 각종 엽서류
권희원 소장, 『연사명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연성음사』.
김교성 편, 『연성음사시첩』.
권호 편, 『연성음사 제일회집』.
각종 신문기사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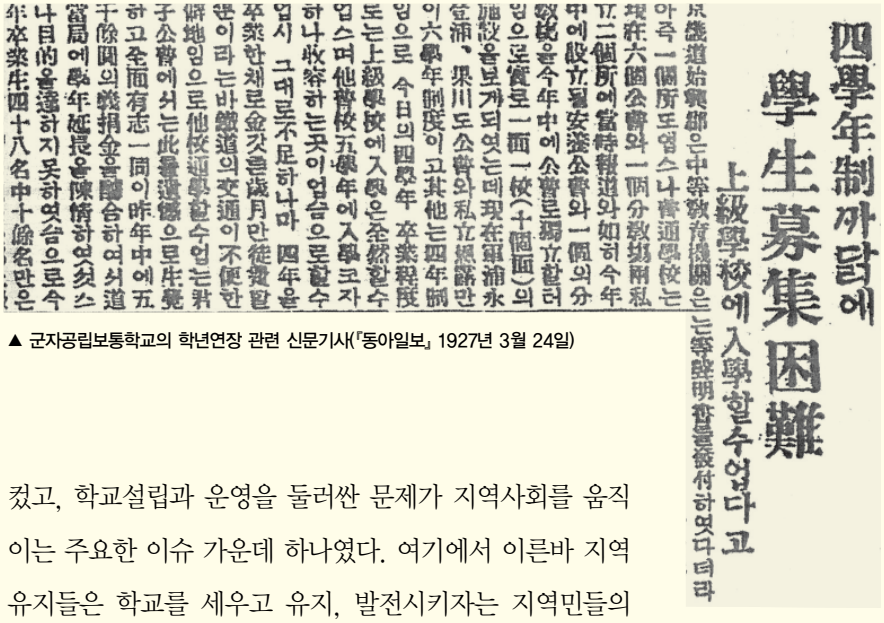
김근태 |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우언연구팀 겸임연구원

3장 주민생활의 편린
– 일제시기 신문기사를 통해 본 시흥

1. “보통학교 학년을 연장하라!”

1920년대 시흥지역에도 종래의 교육기관이던 서당을 대신하여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들어서고 있었다. 식민지시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와 서당은 공존하고 있었지만, 서당은 지고 학교는 계속 뜨는 추세였다. 학교는 일본의 중요한 식민지 지배수단인 동시에, 실력양성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의 독립을 향한 저항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상황에서 학교는 제국과 식민지 간의 갈등의 공간이 되기 쉬운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흥의 평범한 지역민에게 학교는 독립 저항이나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만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통한 관직진출이라는 전통적 입신출세의 길이 이제 학교교육을 통한 관직 또는 사회진출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요컨대 학교교육은 입신출세라는 사회적 상승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된 것이다. 1920~1930년대의 교육열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입신출세는 개인적 혹은 가문적인 차원의 문제였지만, 학교교육의 조건이 열악한 당시의 상황에서 학교를 세우자는 열의를 모으고 집행에 압력을 가하는 단위는 바로 지역사회였다. 일제시기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四學年制까닭에
學生募集困難
上級學校에入學할수업다고

▲ 군자공립보통학교의 학년연장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27년 3월 24일)

컸고, 학교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주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에서 이른바 지역 유지들은 학교를 세우고 유지, 발전시키자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군자 · 수암지역에서는 지금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가 6학년제로 단일화되지 못하고 4학년제 학교로 되어 있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것이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4학년제 까닭에 학생모집 곤란,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고」

경기도 시흥군은 중등교육기관은 아직 1개소도 없으나 보통학교는 현재 6개 공보(公普)와 1개 분교장 양 사립 2개소에 당시 보도와 여(如)히 금년 중에 설립될 안양공보와 1개의 분교장을 금년 중에 공보로 독립할 터이므로 실로 1면 1교(10개 면)의 시설을 보게 되었는데 현재 군포 · 영등포 · 과천도 공보와 사립 은로(恩露)만이 6학년 제도이고 기타는 4년제이므로 금일의 4학년 졸업 정도로는 상급학교에 입학은 전연 할 수 없으며 타 보교 5학년에 입학코자 하나 수용하는 곳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그대로 부족하나마 4년을 졸업한 채로 금 같은 세월만 도비(徒費)할 뿐이라는바 철도의 교통이 불편한 벽지(僻地)이므로 타교 통학할 수 없는 군자공보(君子公普)에서는 차(此)를 유감

으로 생각하고 전 면 유지 일동이 작년 중에 5천여 원의 의연금을 거합(醵合)하여서 도 당국에 학년연장을 진정하였으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금년 졸업생 48명 중 10여 명만은 농업에 종사하고 기타는 전부 상급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나 도저히 타 공보(公普) 5학년에 수용할 곳이 없으므로 일반은 학교가 불필요하다고 비난하며 입학을 시키지 않으므로 동년 신입학생이 전무하게 되어서 동교(同校)에서는 수일 전부터 각 리 구장들과 선생이 각각 호별 방문을 하고 입학 권유를 하였다 하며, 차(此) 현상은 비단 군자교뿐만 아니라 수암공보와 시흥공보도 그와 같은 상태로 구생난(求生難)이므로 입학권유에 분망 중이라더라.

(『동아일보』 1927년 3월 24일)

위의 기사는 우선 1920년대 시흥지역의 학교기관 현황을 보여 준다. 1927년 시흥군에는 중등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으나, 1면당 1개 학교에 가까운 총 10개의 보통학교가 건립되었거나 건립 예정에 있었다. 보통학교의 숫자는 적지 않은 편이었으나 문제는 6학년제 학교와 4학년제 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데에 있었다. 4학년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진학할 수가 없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컸고, 이 때문에 지역민들이 학령아동의 보통학교 진학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20년대 다수의 시흥 지역민들이 보통학교 4학년 수준의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않았고,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4학년제 학교에 대한 불만을 지역 유지들이 수렴하여 5,000여 원의 의연금을 거둬서 도 당국에 진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이 유지들을 압박하며, 유지들이 식민당국을 압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연장 불허, 도(道)의 심산(心算)을 문(問)함. 시흥 일기자(一記者)」

(전략) 차(此)에 대하여 米田 지사(知事)는 조선인은 2학년도 족하다는 이유로 돌연히 연장을 불허하였으므로 당지 일반은 도지사의 모욕적 언사에 분개할 뿐 아니라 금일의 4년

제 보교(普校)만 수료하여서는 실로 편지 한 장 못쓰는 교육을 차라리 안 시키는 것이 좋다 하여 금년부터 입학을 잘 시키지 않고 사숙에만 입학을 시키게 된 까닭이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米田 지사의 방침은 기설(旣設) 학교에 학년을 연장할 경비가 있으면 미설지(未設地)에 2학년이든지 4학년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고집하고 학년연장을 절대 불허한다 한즉 문맹퇴치의 필요를 느끼는 금일에 한 곳만 배우는 것보담 균일적으로 배우는 게 물론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매사가 그 처지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도지사의 주장하는 바는 지출예산이 부족한 점에서의 말이요. 만일 경비가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하필 4년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인 군자공보(君子公普)로 말하면 해(該) 면민의 생활여유가 타 면보담 비교적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는 동시에 면민 일반이 학년연장에 요하는 임시비 전부와 매년 경상비까지 부담(예정의 학교비 외)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2년도 족하다는 모욕적 언사로 연장불허를 고집함에 있어서는 더욱이 당국자의 심사(心思)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궤상공안(机上空案)만으로 형식만을 좋아하는 것보담 좀 더 친절하게 조선인의 정도와 환경에 부합하도록 조선인 본위의 실제방면에 착안하여서 좀 성의 있게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9일)

군자면의 지역 유지들이 군자공립보통학교를 4학년제에서 6학년제로 변경하여 달라고 도 당국에 진정한 데 대해 요네다 진타로(米田甚太郎) 경기도지사는 "조선인은 2학년도 족하다"는 차별적 발언으로 요구를 묵살하였다. 요네다 지사의 발언은 식민지민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일본의 시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보통학교 교육을 통한 조선인 문맹퇴치는 그야말로 일본제국의 지배명령을 조선인들이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중고등교육은 오히려 조선인들을 '문명화' 시켜서 지배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억제시켜야 할 것이었다. 시흥 지역민의 교육요구 수준은 훨씬 높았지만, 당국은 차별적이고 시혜적인 시선으로 초보적인 초등교육만을 강요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반박태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년제 보통학교만 수료해서는 "편지 한 장 못 쓰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원하는 문맹퇴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아울러 학년연장에 필요한 임시비와 경상비도 군자면 주민들이 부담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당국자의 '심사(心思)'를 문제 삼으며 보다 친절하고 성의 있는 통치를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약 5개월 뒤인 1927년 9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조선인은 2년도 족하다"는 요네다 지사의 발언이 조선인 지역민들을 크게 자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네다 지사의 발언을 두고 학부형들이 심하게 비난해 왔고, 9월 16일 군자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에서는 학년연장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한다.

한편, 수암면 안산공립보통학교에서도 4학년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4년제 연고(緣故)로 지원자가 전무(全無), 경찰의 힘 빌어서 당을 폐쇄, 안산공보(安山公普)의 진현상(珍現象)」

한동안 잠잠하던 조선 천지에 기미(己未)운동의 회오리바람이 한번 휩쓸어간 후로 조선의 사조는 급전직하로 돌변하는 동시에 향학열(向學熱)이 극도로 대두하는 반면에는 도무지 듣도 보도 못할 입학난(入學難)을 절규하게 된 이때에 시흥군 수암면(秀岩面)에 있는 안산공보교(安山公普校)에서는 입학지원자가 전무하여 경찰관의 힘을 빌어서 관내에 있는 각 한문사숙(漢文私塾)을 폐쇄케까지 하였다는 거짓말 같은 정말인 진기한 일이 있다는데 일반이 그와 같이 입학을 시키지 않는다는 원인을 듣건대 전기 안산학교는 4년제인 관계로 그 학교를 마쳐도 상급학교에 입학치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자기 성명 하나 변변히 알지 못한다 하여 차라리 사숙에서 한문이나 가르쳐서 농사에 종사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이라더라.

(『동아일보』 1928년 3월 20일)

1928년 3월 안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지원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수암면에 거주하던 시흥지역민들의 향학열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거나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통학교 4학년제의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당국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과 반발심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상급학교로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지역민들은 상급학교로의 진출이 가능한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거나, 기존의 한문사숙으로 회귀하는 선택을 취했던 것이다. 학교가 사회적 상승의 수단이 되지도 못하고 근대적 교양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환경 아래에서 지역민들은 4년제 보통학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경찰관의 힘을 빌어서 관내에 있는 각 한문사숙을 폐쇄"하도록 한 사건이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향학열을 수렴하여 고등교육까지 시킬 의사는 없지만, 기설된 보통학교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더욱더 원치 않았다. 하향 평준화된 초등교육은 확대되기를 바랐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통학교 4학년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일제는 문제의 원인을 애꿎은 한문사숙에서 찾았다. 한문사숙과 학교는 상호 보완적인 공존관계에 있었지만, 일제는 국가폭력의 상징인 경찰까지 동원하여 한문사숙을 탄압하여 학교교육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문사숙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었기에 한문사숙 탄압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었다. 보통학교 4학년제는 지역사회의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요소로까지 인식되고 있었다.

「군자공보교(君子公普校) 학년연장운동 기성회 조직코 당국에 진정, 면민 적립금 6천 원」 시흥군의 보고(寶庫)라고 말하면 누구나 군자면을 연상할 만치 농산물이 풍부하고 농민생활이 비교적 다른 면보다 부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원래 교통이 불편한 궁벽한 해변지대가 되어서 교육기관이라고는 단지 4학년제의 군자공립보통학교가 있을 뿐이므로 2천여 호나 되는 주민들은 자녀교육에 막대한 곤란을 받는 중에 더욱이 4학년제이므로 그 학교를 마치고도 상급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불과 10여 세

의 어린 자녀를 다른 곳으로 유학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라 하여 가세가 그다지 곤란치 않은 사람들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멀리 경성이나 인천 등지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가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한적한 빈 면이 되리라고 식자 간에는 대정 13년부터 학년연장운동을 일으키고 당년에 현금 3천 원을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안양금융조합에 예금한 후 당국에 여러 번 진정을 거듭하는 동안에 군수가 네 번이나 갈렸으나 재정문제로 실현치 못한다고 여러 해 동안 현안으로 내려왔었다. 그렇다고 금번 신임군수 小倉씨가 부임함을 기회로 면민들은 다시 3천 원의 자금을 거출하여 도합 6천 원을 적립한 후 지난 3일에 군자보통학교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고 회장 최준흥(崔俊鴻), 부회장 이명규(李明圭), 간사 김종상(金鍾祥) 외 수씨를 선거하고 군당국에 수차 진정을 하였으나 군당국에서는 역시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한다고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김태집(金泰○), 이두용(李斗用) 양 도회의원을 대표로 도당국에 진정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적극적 활동 개시하리라 한다.

(『동아일보』 1933년 12월 16일)

시흥은 경성, 인천과 같은 거대도시에 둘러싸여 있어서 유리한 면도 많았지만 불리한 면도 있었다. 교육부문에서는 대도시가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일수록 인구유출이 불가피했다. 일제는 한문사숙 등을 탄압할 수는 있었어도 학교를 찾아 이동하는 인구 자체를 억제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가장 위기감을 느낀 것은 지역사회의 리더역할을 담당하던 유지들이었다. 위 기사에 나타난 군자보통학교 학년연장기성회는 바로 그러한 유지들의 위기감의 발로였다. 도지사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당국에 진정을 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학년연장까지 강습소 수용, 시흥 군자면서」

시흥군 군자공보교 학년연장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군자면 유지 최준흥(崔俊鴻), 이명규(李明圭) 양씨 외 제씨가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고 도와 군당국에 진정서 혹 탄원

으로 학년연장운동을 오늘날까지 명렬히 노력하였던바 당국에서 소화 12년 전에는 허락할 수 없는 방침인즉 당분간 강습제로 채용하라 하므로 부득이 지난 19일 오후 2시에 군자면민대회(君子面民大會)를 군자보통학교 내에서 면장 류지영(柳志英) 씨 사회하에 개최하여 문징명(文徵明) 씨의 상세한 경과보고가 있은 후 즉석에서 군자강습소 경리회를 조직하고 협의한 결과 정식의 학년연장이 될 때까지 강습소에 대한 제반경비 연 1천 원을 면민이 부담한다는바 18등 이하 1,500호는 면제하고 17등 이상 538호가 부담키로 하며, 적립금 5천 원으로 우선 학교를 증축하여 명년 신학기부터 5학년에 해당한 강습생을 교수하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동 4시에 폐회하였다 한다.
△ 임원 : 회장 류지영(柳志英), 부회장 최준홍(崔俊鴻), 이사 장순봉(張淳鳳), 안○묵(安○默) 외 13인, 평의원 이명규(李明圭), 문창영(文昌永) 외 8인
(『동아일보』 1934년 11월 22일)

위의 기사는 학년연장운동이 당국에 대한 진정과 탄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자 지역민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잘 보여 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는 학년연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면민대회'가 1934년 11월 19일에 개최되었다는 것과 여기에 군자면장 류지영(柳志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자면 면민대회를 통해 군자강습소 설립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모습을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기존의 유지집단과 면장이 함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면장은 6학년제로 변경할 수 없다는 도당국의 입장과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의 진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입장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 강습소였고, 강습소 설립을 향한 추진력은 면장이 가진 행정적 권위와 유지들이 가진 여론적 권위, 그리고 지역민들의 분담된 경제적 희생이 어우러져 나올 수 있었다. 1930년대 내내 군자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보통학교 학년연장 문제는 1940년 5월 1일 군자소학교의 6년제 승인으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2. 누가 교육칙어를 훔쳤나

교육칙어는 1890년 일본 메이지천황의 이름으로 발표된 일종의 교육헌장이다. 교육칙어는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배움의 길에 들어선 학생들에게 천황국가에 맹종하는 신민이 되기를 강요하는 정치적 장치였다. 식민지 조선의 학교에서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교육칙어를 낭송하여 천황에 대한 숭배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 교육칙어는 곧 천황의 가르침과도 같은 상징물이기에 교육칙어가 쓰여 있는 교육칙어 등본(謄本)은 봉안전(奉安殿)이라는 곳에 귀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학교에서는 교육칙어가 놓인 봉안전을 천황이 모셔진 것과 같이 성스러운 장소로 여겼고, 교육칙어 등본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1932년 4월 소래공립보통학교(현 시흥 소재, 당시는 부천군 소속)에서는 봉안전에 놓인 교육칙어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부천 소래공보(蘇萊公普) 봉안(奉安)의 교육칙어를 도실(盜失), 수일 전 사실을 작일에야 발견, 인천서(仁川署) 범인 엄탐(嚴探)」
>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소래공립보통학교에서는 수일 전에 교육칙어를 어떤 자가 절취해 갔는데 작 30일에야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소관 인천서(仁川署)에 고발하는바 동서에서는 방금 그 범인을 엄탐중이라 한다.
> (『매일신보』 1932년 5월 2일)

학교 입장에서 교육칙어의 분실이란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교육칙어 등본은 워낙 소중하게 다뤄지는 물건이라 누군가가 작정하고 숨기거나 훔치지 않는 한 분실될 리가 없었다. 교육칙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학교에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범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누가 교육칙어를 가져갔을까? 물론 학교 밖의 사람은 아니었다.

「소래공보(蘇萊公普) 칙어사건 범인은 동교(同校) 교원, 교장에 대한 분풀이로, 동기는 차별대우」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에 있는 소래공립보통학교에서 교육칙어 분실사건이 생긴 후 소관 인천서를 위시하여 도 경찰부까지 크게 놀래어 범인을 엄탐중이더니 작 1일에야 진범인으로 동교의 교원 윤복동(尹福同, 31)을 인치하였다.

이제 동 교원이 범행을 하게 된 원인을 들어보면 동교 교장 津田 씨가 자기에 대한 대우가 극히 불미할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지어 놓고 그 집에만 들게 한 후 월세를 징수하는 등 평소에 감정이 절정에 달하였으므로 교육칙어를 꺼내어 감추었다고 한다. 교육칙어를 분실하게 되면 자연히 동 교장이 책임을 지고 면직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하여 자기에 대한 차별대우를 분풀이하려던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한다.

동 범인은 방금 인천서에 호송되어 취조를 받고 있는데 물론 津田 교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하며 이러한 불상사건이 생긴 것은 감독관청인 도 학무과로서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도학무과에서는 말한다.

(『동아일보』 1932년 5월 5일)

교육칙어를 숨긴 사람은 바로 소래공립보통학교의 젊은 교사였던 윤복동이었다. 그는 일본인 교장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차원에서 교육칙어를 숨겼던 것이다. 기사내용만 놓고 보면 차별대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본인 교사와 조선인 교사 사이의 차별대우와 같은 식의 민족적 차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내용에 나타난 사항들은 조선인 교장과 조선인 교사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이다. 기사만으로는 차별의 이유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분풀이 방식이 교육칙어를 숨기는 것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천황을 상징하는 교육칙어를 몰래 훔치는 행위를 통해 교장을 당혹스럽게 하려는 조선인 교사의 의도 속에는 교장과 교사 사이의 위계 이상의 권력관계와 그 관계의 전복시도가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일시적이나마 교장이 의지하고 있는 권위의 한 축을 훼손하려는 교사의 시도는 곧 학교 내의 제국-식민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에 경찰서에까지 끌려가게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같은 소래공립보통학교(소래국민학교)에서 몇 년 뒤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신문기사가 아닌 시흥 주민의 구술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926년생 포동 새우개마을 강철희의 증언에 따르면, 몇 년 뒤(강철희가 6학년이던 1938~1940년 무렵)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면담자 : 김종현 선생님이 헌병대에 잡혀 가셨군요.

구술자 : 6학년 적에 조 누구 선생 그이는 정말 우국지사야. 김종현 선생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놈들 기념행사 때 조쿠고라는 게 있어. 측어. 측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

면담자 : 칙어요?

구술자 : 칙어.

면담자 : 교육칙어?

구술자 : 교육칙어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교육헌장이야. 행사 때는 그거를 단 아래다 잘 모셔 놓았다가 밑으로 내려놓지 못해. 흰 장갑을 끼고 하- 그걸 읽고 들고 나와서 교장이 '조쿠고 호우도쿠', 칙어봉독(勅語奉讀) 식순에 따라서 그걸 클러 가지고 "쯔고모니 고소고소 쿤요하시묘 코에미토 ……." 그걸 읽는 거야. 그걸 읽으려고 칙어날 그때 마에무라(前村) 겐마쯔라는 교장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까 칙어가 없어졌어. 말할 때 싸는 그게 없어졌어. 난리가 났지 뭐. 한 쪽은 헌병이 쭉 열을 서 있고, 한 쪽은 밖에서 순경이 열을 서고 있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쭉 도열을 해서 식순을 따라서 칙어봉독이라고 했는데, 조쿠고 호우도쿠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이 조쿠고를 끌러 보니까 그게 없어졌잖아.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어. 바로 조 선생이 헌병대로 끌려가는 거야.

면담자 : 조 선생이 빼놓은 거예요?

구술자 : 조 선생이 그걸 막 잡으니까 급사. 급사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급사할아버지가 "내가 갖다가 ……", 그때는 초등학교에 전부 다 축사가 있어. 소도 기르고 돼지도

> 기르고 그랬거든 그때. 그 축사 지붕에다 쑤셔 넣은 거야 그걸. 조 선생이 헌병대에 끌려가서 죽었다 그랬지 죽었다 그랬는데, 아니 해방이 되었는데 …….

강철희가 증언한 조모 교사의 교육칙어 도난사건은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이 노골화되던 총력전체제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1932년 윤복동 선생의 교육칙어 도난이 일본인 교장에 대한 사적인 불만표출의 차원이었다면, 일제 말기 조모 교사의 교육칙어 도난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우고 황국신민으로 키우려는 일제의 교육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의 성격이 짙었다. 강철희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음악교사였던 김종현의 우리말 노래 교육사건을 회고하였다. '국어상용(國語常用)'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어를 폐지하고 일본어로만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김종현 선생은 조선어로 된 우리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교장이 교실에 들어와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말 노래 부르기를 진행하여 헌병대에 끌려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강철희는 소래초등학교에서 김종현 선생과 조모 선생이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던 교사였다고 증언하였다.

3. "술을 끊자, 담배를 끊자"

학교교육은 근대적 신학문이 보급·확산되는 과정이었다. 이 같은 신학문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세계를 설명하는 지식체계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자연을 인간이 장악하고 정복·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다. 자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곧 학교교육이었고, 이를 위해 학교는 새로운 가치규범과 생활규율을 일상에서 요구하고 있었다. '근검, 절약, 저축' 등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다음의 노력은 그 작은 예이다.

「군자공보(君子公普) 근검 선전」

시흥군 군자면에 있는 군자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去)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을 근검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직원은 물론 지방공직자 및 지방유지와 연락을 취하야 아래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하야 근검저축의 사상을 고취한다더라.(시흥)

1. 근로방면 : 가. 기상시간을 평시(平時)보다 1시간 조기(早起)할 사.

나. 등교 전 자기 정원(庭園) 소제(掃除: 청소)를 일층 청결케 할 사.

다. 가사를 조력할 사.

라. 승도(繩: 새끼줄), 혁화(革靴: 가죽신)를 제작할 사.

1. 절약방면 : 가. 근검기간 중 쓴 음주(飮酒), 끽연(喫煙)을 절대로 금(禁)함.

나. 본월(本月)에 한하여 규약저축(規約貯蓄)을 배액(倍額)으로 할 사.

다. 아동저금은 본월에 한하여 증액함.

라. 저금치 않은 자는 전부 저금할 사.

(선전방법 : 담화(談話), 근검에 관한 선전포스터 배부 등)

(『동아일보』 1928년 2월 19일)

앞에서 식민지시기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시기 학교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학교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뿐 아니라 "지방 공직자 및 지방 유지와 연락을 취하여" 근검과 절약의 실천을 지역사회에 선전하고 있었다. 많은 근대적 규범 가운데 근로정신과 절약정신의 앙양 및 실천을 학교가 강조했던 것은 아직 1928년이지만 전시동원에 대비하고 있던 총독부의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이 완전히 총독부의 작품인 것만은 아니었다. 위의 실천사항에 나타난 내용들은 조선인 계몽운동가들이 1920년대 초반부터 강조해 온 덕목들과 조선총독부의 선전사항들이 겹쳐져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덕목들의 중첩성보다도 지역 유지들이 그와 같은 덕목들을 전유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같은 해 군자면 죽율리에서는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위해 새 야학 교사(校舍)를 야학 경영자와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야학교(夜學校) 건축, 죽율리에서」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 유지 수씨(數氏)는 재작년부터 노동야학회를 당지 예배당 내에서 개최하고 생활고로 혹은 학년 연령 관계로 전면 입학할 기회가 없이 가갸 한자 배우지 못하고 여금(如金) 세월을 도비(徒費)하는 무산아동의 문맹을 면(免)하여 주고자 여러 청년들의 열성 있는 무보수의 교수로 3년 동안 많은 아동을 교양하여 오던바 해를 더할수록 입학지원자가 점점 증가하여 감을 따라서 현 교사(校舍, 예배당)로서는 도저히 수용키 불능함으로 동 야학경영자인 김규흥(金奎興), 안철재(安喆載), 김청환(金淸煥), 안흥규(安興奎) 등 제씨의 성의 있는 노력의 결정으로 동리 유지 제씨의 많은 찬동을 얻어서 목조 건평 12간(間, 朝鮮間數)의 교사(校舍)를 건축하고자 수일 전에 기공하였다더라.

(『동아일보』 1928년 4월 8일)

죽율리 지역민들의 높은 향학열을 기존의 4학년제 보통학교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고, 보통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몫을 야학이 담당하고 있었다. 야학 지원자의 숫자가 늘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유지들은 야학당으로 쓸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희사하고 기부금을 내놓았다. 1928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야학 교사 건축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되어 같은 해 6월 12일 죽율야학 낙성식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유지들과 야학 교육자들의 열성으로 거듭난 죽율야학은 1928년 대가뭄으로 재정상의 큰 타격을 입고 야학문을 닫을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비운의 야학을 구제코자 금주금연(禁酒禁煙) 단행, 연극 순회강연도 실행, 시흥군 죽율리 유지의 고심」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 유지 김규흥(金奎興), 김청한(金淸漢), 문창영(文昌永), 안희신

(安熙臣) 외 수씨(數氏)의 진력(盡力)으로 수년 전부터 죽율야학(竹栗夜學)을 개최하여 이내 수많은 문맹자를 광명한 길로 인도하여 오던 중 의외로 작년의 대한재(大旱災)에 전감(全減)을 당하게 되어서 경비(經費) 판출(辦出)의 도리가 없으므로 부득이 야학을 중지하고 전기 유지들은 야학 계속할 방도를 8면으로 강구하였으나 원체 군자면이란 전면(全面)이 대타격(大打擊)을 받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현금에 계속할 것만은 단념하는 동시에 금추(今秋)부터는 영구히 계속코자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우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주초(酒草)부터 끊어서 그 돈을 저축하여 가지고 사업자금을 만들자고 선전삐라를 동리 호호에 일일이 배부하고 일방(一方)으로는 우리 입장 우리의 현상 등의 연제(演題)로 강연을 하며 소인극, 환등(幻燈), 유희 등을 하여서 일반에게 금주단연(禁酒斷煙), 근검저축(勤儉貯蓄) 등의 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는데 그후 수일 내에 일동(一洞)을 망라하여 금주단연저축회를 조직하게 되어 매월 금(金) 천전(千錢)씩을 저축하기로 되었다는데 실행위원은 여좌(如左)하다 하며 일반은 동회(同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찬송한다더라.(시흥)

▲ 실행위원 부장 : 문창영(文昌永), 이사 : 김규흥(金奎興), 회계 : 김청한(金淸漢), 간사 : 문순모(文順模) 외 수명(數名)

(『동아일보』 1929년 1월 28일)

자신들의 손으로 애써 꾸린 야학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죽율리 유지들은 곧바로 금주단연(禁酒斷煙)을 통한 저축사업을 결의하게 된다. 술과 담배를 끊는 혹독한 금욕을 지역유지들은 집단적으로 결의하여 야학을 재개하려고 한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희사와 헌신 그리고 근검 · 절약 · 금욕의 실천을 통해 유지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실상 유지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의 권한에 비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컸기에 대체로 지역민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몸에 받았다. 유지들의 그 같은 희생과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유지 개개인의 인간 됨됨이보다는 가문의 정치와 지역공동체의 운용방식, 즉 공동체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시 술, 담배의 소비량은 상당히 많았다. 1930년 시흥군의 8개 보통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은 총 6만 2,586원이었는데, 1929년 한 해 동안 시흥군에서 소비된 술값과 담배값은 40여 만 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한 해 동안 술, 담배 소비를 하지 않으면 50여 개의 학교 유지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론일 뿐이고, 유지층의 모범과 계몽만이 있었을 뿐 실제 지역민의 전반적인 금주단연 실천은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죽율리뿐만 아니라 수암면 하중리, 소래면 금이리 등에서도 야학이 운영되었던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자면 옥구도에서는 총 21호 10여 명의 일본인 학생을 위한 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총 125호에 달하는 조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옥구도 유지들을 중심으로 사숙을 설치하였고, 1930년 11월에는 이를 '오이도학술강습소'(후에 '정왕강습소'로 인가됨)로 바꾸어 당국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건물을 신축하였다.

4. 1928년, 그 잔인한 가뭄의 해

댐으로 홍수와 가뭄을 관리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도 대홍수와 대기근의 피해는 이재민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재해관리체계가 취약하고 농업중심사회였던 1920년대에는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시기에도 여러 차례의 홍수와 가뭄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1928년 가뭄과 관련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농작(農作)엔 단념, 도회(都會)로 집중」

금년의 가뭄은 근래에 보기 드물 만큼 각지(各地)가 함께 혹심하여서 농업가(農業家)는 물론 각계 인사가 한가지로 극도의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됨은 매일 보도와 같거

니와 경기 시흥군 일대에도 역시 피할 수 없는 한액(旱厄)에 빠지게 되어서 인심이 대단 흉흉할 뿐 아니라 그중에도 제일 극심한 곳은 시흥군의 보고(寶庫)란 칭호를 받아오던 수암(秀岩), 군자(君子) 양면이라는데 행여나 기후가 순조(順調)할까 하는 일말의 희망으로 다대한 비용을 맡기지 않고 만경(晩耕)을 하여 놓은 것이 천후(天候)는 의외로 금일과 같은 현상이므로 전곡(田穀)과 채소까지 전멸상태로 금년 농사는 전연 희망이 없으므로 단념을 하고 한 푼벌이라도 하여야 엄동을 굶지 않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여 가겠다는 생각으로 돈벌이를 찾아서 도회지로 향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감으로 노약부녀만이 남아 있어서 집을 지키고 있는 동리(洞里)가 많더라.

(『동아일보』 1928년 8월 26일)

시흥 내에서 가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은 수암지역과 군자지역이었다. 특히 수암면은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까지 망쳐서 농사를 아예 포기하고 도회지로 한시적 임노동을 찾아 떠나고 인심도 흉흉하다는 기사 내용은 어려운 지역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가뭄이 있기 전인 1927년 11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시흥지역 내 지주들의 소작료 착취가 심하여 많은 소작인들이 간도 등지로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듬해의 대가뭄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흥군농회에서는 금융조합으로부터 농민들에게 저리자금을 융통시켜 주어 농우(農牛) 등의 방매를 막으려 하고 있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밖에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재(旱災) 위에 병(病)까지, 5백정보 전멸? 혹심한 시흥군 일대」

(전략) 수암면 하중리, 부천군 소래면 매화리 · 미산리 간에 재(在)한 호주방축(水源伏) 구역 내에 있는 7백여 정보는 전기 방축의 혜택으로 일찍 이앙을 하여서 대단 양호한 성적을 보게 되어 근일 중 전부가 발수(發穗)하여 방금 성숙기에 있던 중 수일 내로 별안간 벼의 뿌리와 줄기를 멀쩡하고서 이삭(穗)이 전부 말라 버리는 도무지 보지 못하던 병이 발생하여서 부근 5백여 정보가 전멸 상태에 빠졌다 하며 그 외에도 군자면

선부리, 수암면 수암리 · 하상리 · 와리 등지도 그와 같은 병으로 농민들은 대공황 중에 있다더라.

(『동아일보』 1928년 9월 14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물 공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벼 이삭이 말라서 수암 · 군자 · 소래지역에는 농사를 망친 곳이 많았다. 1928년 9월 25일 시흥군농회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지역 전체 통계를 보았을 때 전년대비 25%가량의 수확량 감수(減收)가 예상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뭄 피해가 덜한 과천, 안양, 군포 등지의 수확량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암과 군자지역의 수확량 감소폭은 더 컸을 것이다.

「초근목피(草根木皮)도 없어, 남부여대(男負女戴)로 유리, 시흥군내의 한재(旱災) 여파」

근래에 보기도 드문 작년의 대한재(大旱災)로 인하여 가뜩이나 시들어가던 농촌경제에 적지 아니한 대타격을 받는다 함은 매일 보도되는 것과 같거니와 시흥군 군자, 수암 양면에는 더욱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한재에 농작물이 전멸되다시피 되어서 작동(昨冬) 이래 그 생활상태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지경이던바 따뜻한 봄 기분이 대지에 돌자 춘궁(春窮)은 점점 더 심하여서 근일에는 초근목피로 근근이 생계를 하는 중이라는데 그중에도 제일 우심한 곳은 군자면 성곡리 일대라는바 그들은 초근목피까지도 풍부하지 못하므로 양축(養畜) 사료로도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황강(荒糠)과 옥촉(玉蜀), 맥피(麥皮)류 등을 사다가 죽을 쑤어서 먹고 연명을 한다는데 생활비로 1개인에 1일 평균 3전 내지 4전가량에 불과하다 하며 그도저도 할 수 없어서 남부여대하고 살길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도 많다더라.

(『동아일보』 1929년 3월 8일)

1928년 가뭄의 본격적인 피해는 이듬해 봄에 결정적으로 나타났다. 참혹한 보릿고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미 겨울을 넘기는 과정부터 농민들은 힘들어

했고, 이를 견디기 위해 지역사회는 자체의 구제책을 강구했다. 1929년 2월경 군자면장과 수암면장을 중심으로 양면에서 각각 한해이재빈민구제회(旱害罹災貧民救濟會)를 조직하여, 한편으로는 지역 유지들의 기부를 이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에서 빈민들에게 직접 지원식량을 보조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보릿고개를 넘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1929년 3월 8일자 위의 기사를 보면 초근목피마저 떨어져 황강 · 옥촉 · 맥피류 등으로 죽을 쑤어먹으며 농민들이 연명하고, 남부여대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참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재민들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는데, 오이도 부근에 있던 염전은 이재민들의 좋은 유인처였다. 하지만 총독부 전매국에서는 평남(平南) 광양만(廣梁灣) 부근에 살던 470여 명의 사람들을 이 염전에 채용하여 군자면 유지들은 이재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재민들에게는 이래저래 잔인한 시기였다.

5. 친절한 이명규 씨 그리고 어떤 효성

1928년 대가뭄으로 흉흉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훈훈한 인심을 발휘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주인공은 군자면 거모리의 이명규(李明奎) 씨다.

「호세(戶稅) 15원 대납(代納)」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이명규(李明奎) 씨는 그리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재(旱災)로 삼순구식(三旬九食)도 못하며 호세(戶稅)까지 내지 못하고 고통하는 동리(同里) 극빈자 40인분 호세 15원 89전을 대납하였으므로 부근 인사들은 이씨의 동정에 감사한다더라.

(『동아일보』 1928년 11월 24일)

가뭄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도 버거운 같은 마을 극빈자 40명의 호세를 어려운 형편에서도 대신 내준 이씨의 행동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신문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동아일보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그의 미담들은 이명규라는 인물을 다시 돌아보도록 만든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오른 정치인이나 유명인만을 기억하곤 하지만, 이처럼 작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실천을 한 사람들을 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가보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역사가들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팔순기념으로 교량을 가설」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이명규(李明奎) 씨의 모친 김씨는 팔십 평생 지내는 동안 약간의 재산을 저축하여 자손의 교육비와 공덕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써오던 터인데 작년이 김씨 부인의 80세에 해당한 해이므로 그의 아들 이명규 씨는 이를 기념코자 작동에 군자면 거모리 앞 내에 목교를 놓아 일반 교통에 많은 편의를 주던바 금춘에 또 거모리 죽율리 간 통로 중 누곳에 시멘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자 근일 공사에 착수하였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인근동 거모, 죽율, 정왕 세 동리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송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2년 3월 13일)

노모의 팔순을 기념하여 마을에 다리를 놓았다는 사연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리를 놓는 일은 국가나 관청이 해야 할 일인데, 왜 개인이 그러한 일에 나섰으며, 그것이 노모의 팔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의 행정력이나 물적 기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리를 놓는 데 기여하는 식으로 공덕심을 발휘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명규 씨는 하지 않았을까 싶다. 다리 가설로 그의 노모가 기뻐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은 무척 기뻐했던 것 같다.

「할육구조모(割肉救祖母)」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 285번지 서상규(徐相奎) 씨의 질녀 수복(壽福, 일명 聖順, 18)은 몇 일 전에 자기의 조모 이씨(69)가 신병으로 인하여 결국은 아주 위험 상태에 빠져 운명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왼편다리살 한 점을 베어 기름에 끓여서 먹였던 것이 의외에 다시 살아나서 요사이는 의외로 건강한 몸으로 집안일을 보살피게 되었다는데 전기 서수복은 일찍부터 양친을 다 잃고 그 조모의 손에 길러난 터이라는데 친아들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손녀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일반의 칭송이 높다더라.

(『동아일보』 1926년 6월 23일)

위의 기사는 수암면 조남리에 살던 서수복이라는 소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조모를 위해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 끓여 먹이자 조모가 다시 살아나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다. 기사의 사실관계 자체가 의심스럽고 현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전통시대 이래로 이 같은 자식의 행위로 부모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속설이 전해 내려왔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모를 위하는 손녀의 효성은 대단하지만, 손녀의 다리살 때문에 조모가 건강을 되찾은 것은 아닐 것이다. 효의 마음은 같더라도 표현과 형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6. '농촌진흥'에서 '근로보국'으로

193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에서는 농가경제의 안정화에 기반한 식민지배의 공고화를 목표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관제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진흥, 정신진흥, 자력갱생 등을 구호로 내걸고 농업경영의 다각화와 부업장려 등의 실천

을 독려하였다.

「농촌진흥운동, 시흥」

시흥군에서는 농촌진흥회의 중심인물을 양성할 목적으로 군내에 각 면리원(面吏員)은 물론 각 진흥회에 지도원과 지도학교 지도생까지 247인을 소집하여 지방개량의 방책을 가지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山田 군수와 山口 서장이 강사로 좌기와 같이 순회강습을 한다고 한다.

1조	6일, 7일	영등포 무덕관(武德館)	65인
2조	7일, 8일	군포공보교(軍浦公普校)	100인
3조	9일, 10일	안산공보교(安山公普校)	82인

(『동아일보』 1933년 2월 7일)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의 주체로 조선농민 전체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중견인물' 이라는 부락 단위의 지도자층의 양성 정책을 취하였는데, 위의 기사는 중견인물 양성을 목표로 군수와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순회강연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농촌진흥강연회는 일회적인 데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사회주사나 군속 등을 강사로 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었다.

「시흥농촌진흥」

시흥군 수암면 목감리 목감진흥회 44호는 작년 11월 5일에 설립한 후 류지연(柳志淵), 신만철(申萬澈) 양 씨의 지도하에 회원일동은 부업으로 제승하기를 일심 단결하여 끊임없는 공동기업으로 불과 4개월 동안에 판매 수입된 금액이 6백여 원에 달한 큰 수확을 하였다 하며 또 신호종을 설치하고 조기회까지 조직 여행하여 참으로 이상촌의 색채가 있다 한다.

(『동아일보』 1933년 3월 14일)



▲ 부업으로 새끼 꼬고 가마니 짜는 농가의 모습(1930년대 수암면)

농촌진흥운동이 개시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1933년 3월에 수암면 목감리 목감진흥회의 성공사례가 기사화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이 새끼줄을 꼬아 4개월 만에 600여 원에 달하는 수확을 냈다는 등의 내용이다. 부락 단위의 공동작업을 통해 나타나는 농촌진흥운동의 가시적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이상촌(理想村)의 색채' 운운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비치는 여론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던 차원에서 이 기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30년대 『동아일보』 편집진은 농촌계몽을 통한 실력양성을 전망해 오던 우파민족부르주아 계열로 구성되어 농촌진흥운동 등 총독부의 농촌정책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시흥군 각 진흥회 부인회 조직준비, 어머니 공덕가(功德歌)를 고창하며, 7일부터 이앙(移秧)도 실행」

시흥군에서는 금번 군내 318진흥회 전부에 부인회를 조직할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준비를 착착 진행 중, 금 6월 7일부터 20일까지의 2주일간은 부인노동주간으로 정하고 일반 농가부녀자로 하여 방금 성행 중에 있는 이앙에 노력케 하고 있는바, 지도 장려

의 제일선에 입각하여 부녀자의 이앙 출역(出役)의 권유에 노력함은 실로 감탄함을 금키 어려우며 지금까지 옥외 노동을 하여본 적이 없는 양가(良家) 주부가 거머리가 무서워서 양말을 신고 …….(중략)

1. 어머니의 눈물은 애정에서 우러나와 고생 끝에 맺혔어요.

2. 어머니의 부질없는 애정에서 솟는 힘이 괴로워도 낙이라오.

3. 어머니의 손밑에는 영웅호걸 자라나고.

(『매일신보』 1934년 6월 13일)

농촌진흥운동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을 '부인회' 혹은 '부녀회'로 조직하여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주로 부업이나 절미저축 등을 담당하였는데, 위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일손이 부족한 모내기철에는 군에서 '부인노동주간'을 정하여 농촌여성들의 모내기 가담을 독려하였다. 기존의 남성노동영역이었던 논농사에 여성들이 가담하게 하는 성역할의 경계 넘기가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모성(母性) 담론의 강화를 통한 성역할 고정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위의 어머니 공덕가에서 보이는 강인한 모성 예찬은 전시체제기 아들을 전장에 기꺼이 보내는 아름다운 모성을 예찬하는 총후보국(銃後報國) 담론으로 이어진다.

「시흥근로보국단 발단식 거행(擧行)」

지난 3일 오후 1시 시흥군 회의실에서는 宮野 군수 사회로 임의 관내 3백여 각 부락마다 조직된 근로보국단 연합단을 조직하고 그 발단식을 거행한바 관내 각 면장, 학교장, 신문기자, 도회의원, 일반 유지 등 50~60명이 모임으로, 국가 합창, 황거요배, 서사낭독, 규약심의, 역원선정, 근로보국단 신조낭독 등으로 원만히 마치었다는데 연합단장 宮野 군수의 인사와 도회의원 김민식(金敏植) 씨의 축사에 일반인들은 더욱 보국정신을 조장하였다 하며 그 역원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이하 생략)

(『동아일보』 1938년 8월 5일)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본토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도 전쟁수행을 위해 모든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전체제로 재편된다. 총력전체제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진흥운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나, 농촌진흥운동에서 강조되었던 근검 및 절약저축 등의 규범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락단위의 조직화 전략은 근로보국대와 정신동원총연맹 등의 기구가 주도하는 주민동원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농촌진흥운동과 전시동원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농촌진흥운동이 부락 내 소수의 중견인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참여 여부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공간이 존재했던 데 반해, 근로보국대 · 정신동원총연맹 등으로 나타난 전시동원에는 지역, 학교, 회사, 조합 등을 단위로 전 주민을 빠짐없이 조직화하고 강제적으로 참가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강제적 동원이 자발성의 형식 위에 이루어지면서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바로 천황제였다.

「시흥청년단 결성식, 1천여 청소년 참집하 성대 거행」

시흥군에서는 군내 각 청년대를 한 덩어리로 하여 강력적인 통솔 밑에 명일(明日)의 사명을 준비하고자 7일 오후 1시를 기하여 녹음이 우거진 안양초등학교 교단에서 군 청년단 결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날 8개 대원 1천여 명의 남녀청소년과 松下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민 다수가 임석한 가운데 ○原부단장의 개식(開式)에 뒤이어 단기(團旗) 입장, 궁성요배(宮城遙拜), 혼가(魂歌) 제창, 흥아성업(興亞聖業) 완수 기원의 묵도(默禱), 기원(紀元) 2천 6백 년 기원절(紀元節)에 하사하옵신 조칙(詔勅) 봉독(奉讀), 청년단에 하사하옵신 영지(令旨) 봉독이 끝난 다음 小野단장의 식사(式辭), 鈴川경기도단장의 고사(告辭) 대독(代讀)이 있었고 松下서장, 伊藤도의원의 축사가 있은 후 단원을 대표하여 宮村서이면(西二面)청년대 차장으로부터 지연문(旨然文) 낭독이 있었으며, 일동의 황국신민서사 제창이 끝난 다음 '우미유가바' 의 제창을 하고 만세삼창으로써 식을 마치고 이어서 각 대의 분열식과 체육회를 개최하였다.

(『매일신보』 1941년 6월 8일)



▲ 소래면 신천리청년단(1941)

1941년 6월 7일에 개최된 시흥청년단 결성식의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궁성요배, 조칙봉독, 황국신민서사 제창 등 거의 대부분이 천황숭배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단은 단순한 청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일제가 수행하는 대륙침략전쟁에 가담시킬 병사와 노동자를 준비해 두기 위한 동원기구였다. 일제의 동원을 시흥의 청년들이 거부하지 않고 일본제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전장의 병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의 작동 여부가 관건이 아닐 수 없었다. 전쟁수행을 정당화하는 흥아성업(興亞聖業)의 수행론이나 전쟁수행에 협력하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이 지속적으로 선전되었다. 일제는 동원에의 참여는 곧 대일본제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는 것인 동시에 천황의 '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이라고 조선인들을 현혹시켰다. 총력전체제기 각종 행사에는 천황숭배 의례가 빠짐없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조선인들이 곧바로 빠져 들지는 않았으나, 반복적으로 천황에 대한 상징과 의례를 접하면서 익숙해지고 있었다. 일제의 전시동원을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나, 다수의 주민들은 동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통제경제하에

서 수탈당한 농민들은 어려운 처지였지만, 배급이라도 받아 살아가려면 전시동원에 가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패망 전까지 시흥지역민들은 전시동원과 수탈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상록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제4부 현대사회의 변화

1장 해방과 한국전쟁
2장 시흥군 농지개혁의 전개와 귀결
3장 새마을운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4장 사회변동과 행정구역 변화
5장 근대가족의 변화와 시흥 주민의 가족생활

1장 해방과 한국전쟁(1)

1. 미군정기 시흥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1) 현 시흥지역은 1973년까지 시흥군 군자면 · 수암면, 부천군 소래면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내용적 관련성이나 자료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군 단위의 동향은 시흥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면 단위의 동향은 군자면 · 수암면 · 소래면을 다루도록 하겠다.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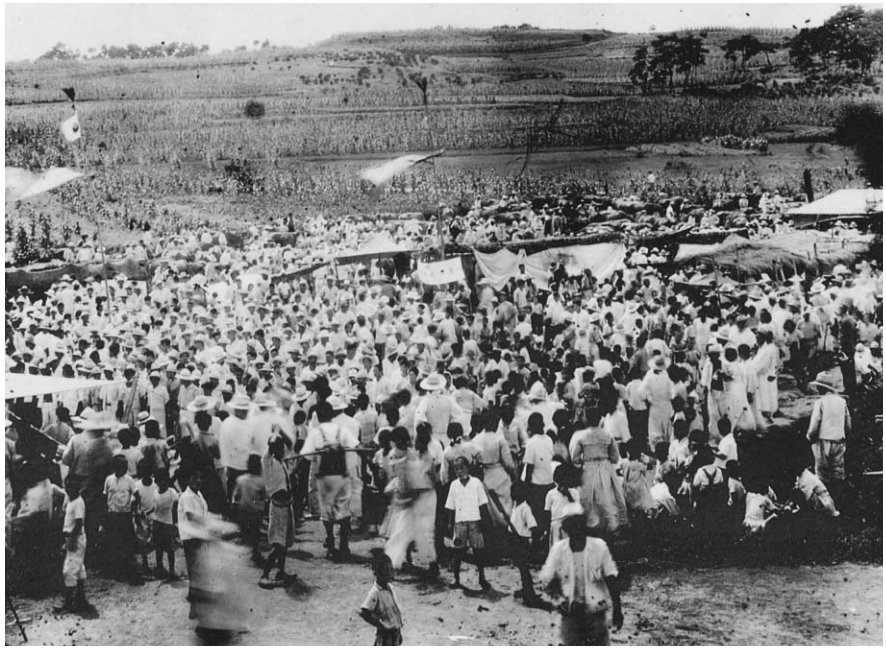
1945년 8월 15일 정오,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일본 천황의 라디오 방송은 민족시인 심훈이 그토록 열망하던, 아니 2천만 우리 동포 모두가 열화와 같이 고대하던 '그날'이 왔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남산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우뚝 솟고, 방방곡곡의 거리와 광장은 인파로 메워져 기쁨과 감격의 물결을 이루었다. 만나는 이마다 서로 부둥켜안고 목이 터져라 '해방 만세'를 외치면서 밤이 되어도 흩어질 줄을 몰랐다. 36년간 일제의 폭압에 억눌려 왔던 민족의 울분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 희망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군자면민들의 해방은 남달랐다. 1919년 군자면사무소 등에서 일제에 항거한 면민들은 1922년 군자염전 조성공사 및 1937년 수인선 부설공사 때에도 일제의 폭거에 거세게 항거하였다. 조국의 해방 소식은 순식간에 군자면 전체에 전해졌다. 면민들은 모두 백의민족을 상징하듯 흰 옷을 입고 해방 축하모임에 참석하였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깃대를 중심으로 모여든 면민들은 흥겨운 농악에 음식을 먹으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였다.(3)

해방,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독립투쟁을 전개해 얻은 성과였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는 일제의 잔재와 관행을 청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즉 해방은 건국과 혁명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었다.

---

(2) 심훈,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3) 시흥시,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1, 1996, 39쪽.



▲ 군자면민들의 해방 축하모임(군자면 거모리)

일제잔재의 청산과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해방 당일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그 중심에 섰으며, 전국적으로는 치안유지회 · 자치회 · 건국준비회 등 다양한 명칭과 성격을 지닌 자생적 조직들이 폭넓게 결성되었다.

해방 1년 전 조국독립을 목표로 비밀리에 결성된 건국동맹을 모체로 한 건준은 "민족의 총역량을 일원화하여 과도기 국내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표방하며 신속하게 식량확보, 치안유지, 항일투사 석방, 행정 수습 등 혼란한 해방 상황에 대처해 나갔다. 1945년 8월 말 건준은 145개의 전국 지부로 구성될 만큼 상당한 조직으로 활동했다.(4)

건준은 미군이 들어오기 직전인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조직으로

(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8권, 2005, 19쪽.

개편되었으며, 건준 산하의 각 지방지부들은 인민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조직되었다. 인민위원회는 해방 이후 치안유지회 · 자치회 · 건국준비회 등과 같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정치조직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흥군의 경우에도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흥군 인민위원회는 1946년 1월 7일 군위원과 상임위원회 선거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성하였다. 이 날 선출된 인민위원회의 주요 인사는 위원장 정○탁, 부위원장 김옥호(金玉鎬), 내정부장 이병돈(李炳敦), 산업부장 김광태(金光泰), 문교부장 류석빈(柳錫彬), 보안부장 조동현(趙東鉉), 선전부장 이성호(李聖浩), 재무부장 이창구(李昌九) 등이었으며, 각 면의 면위원 25명이 선출되었다.[5] 그러나 시흥군 인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전부터 이미 '인민임시자치회' 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실제 군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6] 1945년 미군정의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시흥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 수원, 용인, 평택과 더불어 인민위원회가 군청사를 인수하여 실제 군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7] 이와 같이 군 인민위원회가 군업무를 담당했던 지역에서는 각 하부 단위지역별 인민위원회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현 시흥 관내에서는 소래면 인민위원회가 대표적이었다. 소래면 인민위원회는 일제시기 면사무소 건물(현 신천리 보건소)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식량확보, 치안유지 등의 행정기능을 수행하였다.[8]

실질적인 지방행정기관 역할을 담당한 인민위원회는 미군이 남한에 군정을 실시한 후에도 대체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간 미군정으로부터 유일한 지방행정조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곧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경임시정부 등 한국인의 정권기관을 전면 부정하고 각지의 인민위원회와 치안대 등에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행정기구 정비작업을 착수해 나

(5) 『중앙신문』 1946년 1월 11일.

(6) 『중앙신문』 1946년 1월 16일.

(7) 『HUSAFIK』, 3권 4장, p.38(김태우, 「경기도지역의 민족국가 수립운동」, 『경기도사』 제8권, 2005, 57~58쪽 재인용).

(8) 「강철희(1920년생, 포동 거주) 구술」, 2005년 10월 28일; 「전숙도(1932년생, 미산동 거주) 구술」, 2005년 3월 25일. 이 글에 실린 구술자료는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2005를 참조한 것이다.



▲ 미군의 진주

갔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헌병사령관 스튜어트 대령은 1945년 9월 15일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공중집회에는 미군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대중들의 조직적 움직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자 하였다.[9] 또 10월 초에 마이어스(Myers) 소령을 경기도지사로 임명하는 한편, 내무부장 등 5개 부장과 17개 군수 및 6개 서무서장을 한국인으로 충원하였다. 이때 시흥군수로는 손영기(孫永琦)가 임명되었다.[10]

미군은 당초 일본인들을 그대로 행정수행에 활용하는 간접통치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이를 취소하고 직접통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미군정 수립을 위한 미군의 지역배치가 늦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미국의 남한점령계획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제1단계는 서울과 인천을 점령하고 조선총독부의 업무를 인계 받은 후 극동사령부 직속의 주둔 지휘부를 창설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부산을, 제3단계는 전주와 군산을 점령하는 것이었다.[11]

---

(9) 『매일신보』 1945년 9월 18일.

(10) 『신조선보』 1945년 10월 1일.

(1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8권, 2005, 20쪽. 미 태평양육군사령부의 대일 점령계획은 '블랙리스트(Blacklist)'로 명명되었으며, 이 중 한반도 점령계획이 '베이커-포티(Baker-Forty)'로 지칭되었다. 베이커-포티 계획에 따르면, 미군의 남한점령은 3단계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제1단계인 베이커-포티는 서울과 인천지역을 점령하며, 제2단계는 베이커-포티-원(Baker-Forty-One)으로 부산지역 점령, 제3단계는 베이커-포티-투((Baker-Forty-Two)로 군산-전주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정병준, 「주한미24군단의 대한 군정계획과 군정중대 · 군정단」, 『미군정기 군정단 · 군정중대 문서』, 국사편찬위원회, 2000, 1쪽).

이 계획에 따라 미 제24군단 예하 제6사단, 제7사단, 제40사단이 점령 임무를 수행할 전술부대로 운용되었다. 시흥이 포함된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점령 임무를 수행하였다.(12)

미군은 이 전술부대들을 통해 지방점령을 수행함과 더불어 전문적인 군정 · 민정업무에 숙달한 군정요원들을 투입하기도 했다. 즉 점령 초기 미 제24군단이 임시로 편성한 3개의 임시군정팀이 '일시적' 으로 군정업무를 담당하다가 12월 말에 이르러 7개 군정단과 49개 군정중대의 배치가 완료되면서 군정업무는 군정단과 군정중대가 전담하게 되었다. 특히, 1946년 1월 4일 주한미군정사령부(Head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가 설립되고, 1월 14일자로 군정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전술지휘관으로부터 주한미군정사령관으로 이관되면서 중앙(주한미군정사령부)-도군정(군정단)-시 · 군군정(군정중대)-군정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으며, 해당지역에 주둔한 전술부대는 군정부대에 대한 지원과 연락을 담당하게 되었다.(13)

시흥에는 1945년 10월 28일 메이플(Alpheus F. Maple) 대위가 이끄는 총 5명으로 구성된 제60군정중대 소속 파견반이 배치되었다. 당시 제60군정중대는 수원에 본부를 두고 시흥을 비롯해 수원, 여주, 용인, 안양, 안성, 평택, 이천 등을 관할하였는데, 그중 5명으로 구성된 '안양분견대' 가 시흥군을 담당하였다.(14)

군정부대의 역할은 38선 이남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좌익세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1946년 중반 이후 군정의 한국인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군정부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1947년에 들어서 그 역할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그에 반비례하여 1946년 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출범과 1947년 초 남조선과도정부의 출현은 한국인들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입법 · 행정권의 자율성이 보장되

(12) 정병준, 「주한미24군단의 대한 군정계획과 군정중대 · 군정단」, 『미군정기 군정단 · 군정중대 문서』, 국사편찬위원회, 2000, 7쪽.
(13) 정병준, 「주한미24군단의 대한 군정계획과 군정중대 · 군정단」, 『미군정기 군정단 · 군정중대 문서』, 국사편찬위원회, 2000, 11쪽.
(14) 국사편찬위원회, RG 407, Box 21878, MGCO-60-0.2 History-60th MG Hq & Hq Co. (6 Aug-Dec 45), 『미군정기 군정단 · 군정중대 문서』 4, 2000, 85~92쪽.



▲ 안양에 세워진 시흥군 청사

었음을 의미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 선출은 1946년 10월 29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2부 21군 대표 46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흥이 속한 제5구(시흥 · 안성 · 수원 · 평택)에서는 평택군수 겸 독촉 평택지부장인 최명환(崔鳴煥, 63세, 독촉 평택지부장)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기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15] 그리고 1947년 11월 29일에는 1,000여 만 원의 공사비를 들인 시흥군 청사가 안양에 준공되어 본격적인 행정업무를 시작하였다.[16]

한편 미군정 초기에는 다양한 정치조직체 및 사회단체들이 생겨났다. 1945년 9월 11일 조선공산당을 결성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조직 확장, 대중조직 건설 및 지도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11월 12일 '인민적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지식인 · 도시소시민 · 청년학생을 기반으로 하는 인민당을 결성하였다. 이들 공산주의 ·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조직은

(15) 『동아일보』 1947년 10월 30일.
(16) 『조선일보』 1947년 12월 3일.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으로 규합되었다. 또 안재홍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9월 24일 국민당을 조직했다. 해방 직후 수세에 빠져 있던 지주·자본가 세력은 미군 진주 이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송진우·김성수 등 우익인사가 중심이 되어 9월 16일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상해임시정부 지지'라는 간판을 들고 인민공화국 및 좌익타도를 부르짖었다.

이러한 정치조직체와 함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하 '전농'), 전국청년단체총동맹(이하 '청년동맹'), 전국부녀총동맹(이하 '부녀동맹'),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연맹(이하 '독촉청년연맹'), 대동청년단 등 다양한 대중단체도 결성되었다. 시흥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농과 부녀동맹, 청년동맹 등 좌익의 조직화에 앞섰다. 전농 시흥군지부는 1945년 11월 30일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김옥호(金玉鎬)를 비롯해 부위원장, 총무·선전·공제·쟁의·관리부장 등을 선출하였으며, 시흥군 청년동맹은 1945년 12월 6일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이병돈(李炳敦)을 비롯해, 부위원장, 총무·선전조직·문화·보안·체육부장 등을 선출하였다.[17] 그리고 시흥군 부녀동맹은 1946년 3월 17일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김희영(金嬉英), 부위원장에 안세임(安世任)을 각각 선출하였다.[18]

반면, 우익계열은 1946년 5월 이후에야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한독당 시흥군당부가 1946년 5월 17일 조소앙·안재홍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위원장에 권중석(權重錫), 부위원장에 이세진(李世鎭)과 박인영(朴仁營)을 각각 선출하였으며,[19] 한민당 시흥지부는 7월 13일 결성식을 갖고 수석총무 오상현(吳相鉉)을 비롯해 5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46년 6월 3일에는 독촉청년총연맹 소래지부가, 1946년 7월 14일에는 소래국민회가 각각 결성되었으며, 1947년

(17) 『자유신문』 1945년 12월 7일; 『자유신문』 1945년 12월 10일.
(18) 『자유신문』 1946년 3월 27일.
(19) 『자유신문』 1946년 6월 4일.

9월 26일에는 대동청년단 시흥군지부가 결성되었다.[20]

대중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좌우익 간의 갈등과 대립, 미군정 ·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도 빈번하였다. 초기에 압도적이었던 좌익은 미군정 수립 이후 위축되었으며, 반대로 우익은 점차 그 세력을 넓혀 나갔다.

정치상황의 큰 변수는 1945년 말에 터져 나왔는데, 바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안 발표였다. 모스크바회의의 중요 결정사항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합의였으나 한국 내에서 언론에 의해 전달될 때는 이 내용이 생략된 채 '신탁통치 실시'만이 부각되었다. 3상결정안을 신탁통치 실시로 받아들인 한국의 대중들은 이에 반대하였고, 우익세력은 이를 조직적 운동으로 이끌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소련이 신탁통치의 제안자라는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반탁운동을 반공산주의 · 반소련 운동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한편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대열에 동참하였다가 3상결정안의 내용을 파악한 뒤, 이 결정안의 '총체적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후 좌우 양대 진영은 '총체적 지지' 대 '반탁'이라는 구도 속에 격돌하게 된다.

시흥군에서도 3상회의 결정안이 알려진 초기에는 인민위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임시자치회 주최로 반탁강연회가 열리는 등 좌익계에서 먼저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1월 1일 안양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이 강연회에는 시흥군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래(朴榮來) · 김규창(金奎昌) · 김옥호 등의 강연이 있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가두행렬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각 면에서도 반탁강연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다.[21]

그러나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안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방침전환이 전농 및 청년동맹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이러한 반탁운동은 곧 3상회의 결정안의 '총체적 지지'로 방향이 급변하였다. 1월 7일 오후 1시 안양초등학교 강당에서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탁치토의 민족통일 시흥군민대회'에서는 전농의 김용운(金龍雲)이 모스크바3상회의안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방침전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자,

(20) 『동아일보』 1946년 6월 3일; 『대동신문』 1946년 7월 22일; 『동아일보』 1948년 10월 2일.
(21) 『중앙신문』 1946년 1월 5일.



▲ 탁치 관련 시위

"민족통일은 군인민위원회에 있다"라는 의미의 긴급동의가 이어졌으며, '군인민위원회 결성'이 가결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날 군민대회에서는 인민위원회의 군위원과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가두행렬을 진행하였다.(22)

반면 이 무렵 아직 뚜렷한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우익세력은 애국동지회를 중심으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애국동지회는 1946년 1월 12일 오후 1시 안양의 구 동방공장 회의실에서 반탁강연회를 개최하여 신탁통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결의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23)

탁치문제를 둘러싼 좌우익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민생문제를 둘러싼 대중과 미군정과의 갈등도 커져 갔다. 특히 식량문제에서 미군정이 일관성 없이 자유시장정책과 강제수집정책을 널뛰기 하면서 갈팡질팡하자 사회적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로써 곡가는 앙등하고 자유시장과 통제정책의 문제점만 부각되었다. 미군정 식량정책의 실패는 1946년 10월 도시와 농촌에서 발생한 폭동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46년도 시흥군의 미곡수집 실적은 경기도 내에서 포천 다음으로 100%의 실적을 보였는데,(24) 미곡수집 실적이 높다는 것은 그

(22) 『중앙신문』 1946년 1월 11일.

(23) 『중앙신문』 1946년 1월 16일.

(24) 1946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 구자옥은 쌀 수집과 관련해 11월 30일에 완료된 포천군에 이어 12월 4일 시흥과 개성이 100% 완료했으며, 수원이 88%, 가평이 85%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46년 12월 6일; 『동아일보』 12월 6일).

만큼 지역민들의 민생고가 심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미곡수집과정에서 매우 심하게 반발하였는데, 1946년 7월 31일 경기도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군을 비롯해 광주 · 여주 · 용인 · 수원 · 인천에서는 많은 정미소가 하곡수집령을 위반해 적발되어 정미소가 폐쇄되는 동시에 곡물수집위반자 15명이 유죄로 수감되었다고 하였다.(25)

여기에 생필품에 대한 통제는 대중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경기도 상무부에서는 1946년 6월 초순에 고무신, 빨래비누, 세수비누, 성냥, 광목, 본견, 교직, 인견, 농기구 등 9개 품목에 대해 배급을 실시하였다. 배급은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경기도지부가 시흥을 비롯해 개성 · 고양 · 양주 · 용인 · 안성 · 평택 · 수원 · 부천을, 각 군 농회(農會)가 광주 · 포천 · 가평 · 양평 · 여주 · 이천 · 김포 · 강화 · 파주 · 장단 · 개풍 · 옹진 · 연안을 담당하였다.(26)

그런데 생필품 배급은 한정된 배급 수량과 비교적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암시장과 매점매석 등의 문제점들을 만들어 일반 대중들에게는 오히려 불만을 야기시켰다. 게다가 1946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콜레라의 창궐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27)

민생문제는 곧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각종 집회 및 시위 사태로 연결되었다. 시흥군의 경우 좌익계열 주도하에 1947년 10월 27일 오전 9시 전국적으로 개최된 인민대회에 맞추어 시흥군 인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경찰은 대회준비위원장 김주호를 구속하였지만, 안양교 하적장에 모여든 군중 1만여 명은 김윤영의 사회로 '민주조선임정수립'의 기치를 내걸고 인민대회를 강행한 후 오후 3시에 산회하였다.(28)

이렇듯 민생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자 미군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

(25) 『조선일보』 1946년 8월 1일.

(26) 『조선일보』 1946년 6월 1일.

(27) 1946년 6월 6일 서울중앙방역본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시흥군에서는 1명이 콜레라로 사망하였다(『조선일보』 1946년 6월 7일).

(28) 『노력인민』 1947년 10월 31일.

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중 시흥군과 관련해 대표적인 것이 간척지 개발이었다. 1947년 10월 26일 미군정은 시급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선수리조합연합회에서 계획 중이던 군자면 구역 내 소위 시흥지구간척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26일 오후 1시부터 경동철도 연선현장에서 개최된 기공식은 미군정청 이재국장 김경진, 토지개량과장 강종무, 식산은행의 장봉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시흥지구간척사업은 경동철도 서편에 남아 있는 간석지 62정보를 사업비 1,378만 1,306원을 들여 1년 동안 개답(開畓)한 후 1년에 2,000석씩을 수확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해방 전에 이미 공사의 70%가 완료되어 있던 것을 재추진한 것으로, 완성 후에는 전재민 100여 호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시흥지구간척사업의 시공은 우익의 대동청년단이 세운 대동토건회사가 담당하였다.[29]

이 외에도 미군정은 사회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전재민 구제방책을 실시하였다. 1946년 11월 22일 경기도 후생국에서는 도회의실에서 각 군 후생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부(府)·군(郡)별로 국고금을 지출해 1호당 3,000원씩의 금액으로 2호당 1동으로 하는 총 2,550동의 토막식 간이주택을 건설하여 배당하기로 하였다. 시흥의 경우 40동이 배당되었다.[30]

또한 미군정은 주요 생필품인 소금의 전국 수요량의 약 50%를 공급하던 군자·소래·주안·남동염전에 대한 경비강화를 위해 무장경관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군자·소래염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천일염전으로 1946년 현재 경기·인천지역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소금절도 행위와 모리배에 의한 매점매석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미군정에서는 이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처하였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31]

(29) 『조선일보』 1947년 12월 3일.
(30) 『서울신문』 1946년 11월 24일.
(31) 『대중일보』 1946년 6월 11일.

〈표 1〉 1946년도 경기도 천일염전 현황[32]

구별	면적(정보)	종업원수(명)	1946년 생산예정(t)
주안염전	212	284	19,514
남동염전	300	296	30,752
군자염전	603	458	57,096
소래염전	549	406	38,482
인천염전	37	45	3,241
계	1,701	1,489	149,085

한편 일제시기에 일본어 사용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강제받았던 학교에서는 해방과 함께 많은 교육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학교의 설립이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서초등학교의 설립이었다. 1947년 2월 1일 정왕동 1175번지에서 개교한 군서초등학교는 1948년 7월 20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에 따라 현 시흥 관내의 교육기관은 군자 · 소래초등학교를 비롯해 3개교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교육기관 설립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시흥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에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가 약 2개월 만에 양국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결렬되자,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김규식 · 안재홍 등 중간파 민족주의자들은 여운형 · 백남운 등 중도사회주의 세력과 손잡고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미소공위를 재개시키고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방해, 좌익의 편협한 대응으로 말미

(32) 『대중일보』 1946년 6월 11일.

암아 좌초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지 1년 만인 1947년 5월 21일에 제2차 미소공위가 개최되었지만 7월부터 공동위원회 참가단체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과 소련이 자국에 불리한 임시정부 수립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제2차 미소공위는 결렬되었다. 이것은 한국문제를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던 미 · 소의 약속이 깨졌음을 의미하였다. 미소공위의 결렬과 함께 양국은 한반도정책을 전환하였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미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이 단체의 감시하에 1948년 3월까지 남북한 전역에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의회 및 정부를 구성하고 미 · 소 양군은 각 지역에서 철군하자는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3상결정안의 파괴라는 이유를 달아 거부하였다.(33)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유엔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방안이 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 남한에 파견되었다.

북한은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방안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선거는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했다. 총선거를 둘러싸고 남한 내부에서는 남한 단독선거 반대, 남북정치회담을 주장하는 통일운동세력과 즉각 총선거를 주장하는 단독선거세력이 대립하였다. 김구 ·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단선 · 단정 반대세력은 북한과의 남북연석회의를 추진했고, 우여곡절 끝에 4월 남북 제정당 · 사회단체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34)

한편 이 무렵 남한에서는 좌익이 주도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이 본격화되었다. 1948년 2월 7일 남로당의 지도에 따라 노동자와 학생 · 농민이 단독선거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시흥군의 경우 안양의

(3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2005.
(34) 김인걸 외,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92쪽.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1948년 2월 20일 경기도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2월 7일 소요 사건에 참가한 인원은 동양방직 등 6개 공장에서 2,900여 명이었으며, 그중 30명이 체포되었다.[35]

이러한 반대운동은 5월 10일의 총선거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었다. 남로당의 지도하에 파업, 동맹휴학, 시위, 경찰서 · 관공서 · 투표소 습격 등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전국적인 단선 · 단정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총선거 실시계획은 구체화되었다.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장관은 '법령 제175호의 부록 제1호'로 선거구와 선거인수를 발표하였는데, 시흥군은 총유권자가 8만 6,241명이었다.[36]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는 오전 7시에 개시하여 오후 7시에 폐쇄하였다. 선거는 단기무기명 투표로 행했고, 각 투표용지에는 선거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의 성명과 기호번호를 인쇄하고 각 후보자 성명 아래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 선거인이 택한 후보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문으로 인쇄하였다.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경찰관이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하에 투표소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선거 당일 남한 전역에서는 선거장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교통 · 통신이 두절되고 변전소가 파괴되기도 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경관이나 선거위원의 집이 습격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당시 시흥군 관내에 속했던 수암과 과천에서는 투표소가 소각되기도 했다.[37] 전국적인 총선거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5 · 10선거에는 등록한 유권자의 95.5%, 자격 있는 유권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748만 7,600명이 참여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시흥군의 경우 총유권자 8만 6,241명 중 1만 3,528표를 얻은 무소속의 이재형(李

(35) 『조선일보』 1948년 2월 20일.

(36) 군정청관보 법령 제175호.

(37) 5 · 10선거 반대투쟁과 관련한 경기도 사례는 김광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경기도에서의 민족분열 심화」, 『경기도사』 제8권,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166~170쪽 참고.

載瀅, 당시 33세)이 당선되었다.[38]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원이 선출한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어 해방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공식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이 공식 출범하자 해방 이후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고히 다져온 북한도 9월 9일 정부 수립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분단정권이 수립되었다. 수립된 양 체제는 상호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어 갔으며, 각각 미국과 소련에 대해 강력한 정치 · 경제 · 군사 · 문화적 연대관계를 형성했다. 남한은 정치적으로 김구 암살을 비롯해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활동의 중단, 국가보안법 제정 등에 의한 억압적 정치체제가 강화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위기국면과 대미의존 경제체제가 구축되었고,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파견과 국군의 강화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 · 중국과 동아시아 공산주의 삼각동맹을 강화하면서 군비증강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정치 · 경제적으로 노동당이 주도하는 동원체제를 강화해 갔으며, 중공으로부터는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수만 명의 한인병사를, 소련으로부터는 무기 및 전쟁물자와 군사고문단을 지원받았다. 1949~1950년에 계속된 38선지역에서의 군사충돌은 북한의 평화통일공세, 남한 내 침투한 빨치산의 공세 등과 맞물리면서 항상적인 위기국면을 조성했다.

한편, 해방 이후부터 계속된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혼란은 신생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다. 특히 농업문제의 해결은 신생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이미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의 설립으로 시작된 농지개혁은 8월 15일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헌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책화하였다. 1948년 말에 농지개혁법안이 작성된 이래, 법안은 매수와 분배방법을 놓고 논란을 벌이며,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정부로 왔다 갔다 하

(38) 『조선일보』 1948년 5월 15일.

다가 결국 1950년 3월에야 확정되고 5월부터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법으로 실행되기에 이르렀다.[39]

농지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부, 지주, 소작인 간의 입장차와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농지개혁 실시를 전후해서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마찰을 해결하고자 농림부 직원들이 전국순회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지개혁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농림부의 지방순회와 농촌좌담회는 1949년 1월 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시흥군에서는 2월 2일 농촌실정을 조사하고자 안양면 호계4구에서 농촌좌담회를 개최하였다.[40]

이렇게 실시된 농지개혁은 지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매수 대상이 60만 정보, 분배 예정 면적이 80여 만 정보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에 의하면, 시흥에서 20정보 이상의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는 이진홍(李鎭洪), 정재오(鄭在五), 조한영(趙漢永), 윤충한(尹忠漢), 이묘남(李妙男) 등이었다. 이들의 피분배 면적 및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41]

〈표 2〉 농지개혁시 20정보 이상 피분배지주 명단

성명	피분배면적(정보)			보상석수(正租 石)	주소
	논	밭	계		
이진홍	미상	미상	미상	1,118.0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574
정재오	미상	미상	미상	938.5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201
조한영	19.6	0.5	20.1	944.0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 256
윤충한	31.3	12.2	43.5	1,551.5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124
이묘남	8.5	12.1	20.6	559.5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212

이 무렵 시흥에서는 농지개혁문제와 더불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문제가 중

(3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2005, 25쪽.
(40) 『자유신문』 1949년 2월 4일.
(41) 최영묵, 「미군정의 농업정책과 농지개혁의 추진」, 『경기도사』 제8권,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256~257쪽.

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안양의 전 일본군 군용지에 환자 수용소를 만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집단 이주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시흥군민들의 대규모 반발에 부딪혔다. 1949년 8~9월 시흥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센병 환자 이주문제는 10만 군민의 명의로 '나병환자이주반대위원회'가 조직되고, 김건열(金健烈) 군수, 김성중(金性中) 경찰서장을 비롯해 군내 관공서 · 회사 · 단체 · 유지들이 연서한 진정서가 정부 각 부처에 제출되는 등 연일 반대 목소리가 드높았다.(42)

3. 한국전쟁의 발발과 북한군 점령하의 시흥

남북한에 각각 분단정부가 수립되면서 영구화된 38선 부근에서는 미 · 소 양군이 철수한 후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충돌의 기운이 점차 무르익고 있었다. 1949년에서 1950년 한국전쟁 직전까지 벌어진 남과 북의 충돌은 소규모 전투 차원을 넘어서는 규모였고, 쌍방의 피해도 막심했다. 남한의 발표에 의하면 1949년 1월에서 10월까지 북측은 총 7만여 명이 560회에 걸쳐 38선을 침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로 인해 북측 약 4,000명, 남측 약 300명이 전사하였다. 특히 개성에서는 연대급에 달하는 병력이 교전하는 등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남북 간의 38선 충돌은 1949년 말을 기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였다.

전쟁의 불을 먼저 당긴 것은 북한이었다. 1950년 4월 전쟁에 대해서 소련과 협의를 마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전후해 서해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 잔교리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3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가한 후 기습적

(42) 『서울신문』 1949년 9월 10일.



〈그림 1〉 북한군 선제타격계획

인 전면 공격을 시작했다. 북한군은 소련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일명 '선제타격계획'에 따라 1단계로 서울지역에서 국군의 기본병력을 포위섬멸하고 2단계로 전과를 확대하여 3단계로 남해안까지 진출해 잔적을 완전히 소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43)

이러한 계획으로 북한군은 개성-문산을 거쳐 서울의 서북쪽에 진입하는 도로·철로, 동두천과 포천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의 북방으로 연결되는 진입로, 그리고 춘천에서 가평을 지나 서울의 동북방으로 진출하는 접근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고자 했다. 북한군은 서울을 속전속결로 점령하여 서울 북쪽에 있는 국군과 남쪽의 증원군을 분리, 섬멸하고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한 전역을 점령한다는 목표를 세워 이들 세 주요 접근로에 병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44)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133~139쪽.
(44)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 제1권, 행림출판사, 2000, 178~179쪽.

밖에 없었다. 1949년 말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풍문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남한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전쟁 전야의 국군의 방위 태세는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최악의 상황이었다.(45)

전선 상황이 화급을 다투고 있던 26일 오전까지도 정부와 군의 수뇌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26일 오전 11시에 중앙청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성모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울을 사수할 것이며, 나아가 3~5일 안에 평양까지 진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어린아이 손목 비틀 듯이 손쉽게 북진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외쳐대던 이승만 정부와 국군의 수뇌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개전 하루 만인 26일 오후 1시경 의정부가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으며,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새벽 2시에 대전행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을 탈출했다. 그리고 28일 밤 1시에 미아리고개를 통과한 북한군 전차가 서울 시내에 진입하고, 오전 11시 30분에는 서울 시내 전역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 중앙청에는 인공기가 게양되었다.(46)

한편, 6월 28일 북한군의 전차가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육군 총참모장은 새벽 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파할 것을 지시해 교량을 건너던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한강교가 폭파되어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도로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서 한강 이북에 배치된 국군 4만 4,000명의 병력이 분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국군과 대통령을 믿고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피난할 시기를 놓친 100만 명이 90일 동안 북한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6월 28일, 결국 개전 3일 만에 북한군에 의해 서울은 함락되고 말았다.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교가 폭파되자, 육군본부는 한강선 방어를 위해 임시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했다. 국군 작전 지휘부인 육군본부는 6월 28일 새벽 용산에서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이동해 있었다. 수원의 육군본부는 유수폭 300~1,200m, 수심 3m에 달하는 한강의 자연조건을 이용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689~694쪽.
(46) 최용호 · 김병륜, 『그때 그날』, 삼우사, 2003, 23쪽.



▲ 한강방어선 전투

러나 새로 편성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에는 병력이 없었다. 결국 삼삼오오 도하해 오는 철수병력을 재편성해 한강선에 재배치함으로써 6월 29일 간신히 한강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6월 30일 밤부터 한강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치열한 공격을 시작해 결국 7월 1일 전차와 병력의 한강 도하를 성공시켰다. 북한군 전차의 한강 도하로 인해 한강방어선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자, 국군은 7월 3일,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연전을 펼치면서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된다.

전 한반도의 석권을 목표로 한 북한군은 하루 평균 10㎞를 전진해 50일 이내에 남한 전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수원과 대전, 그리고 대구로 남하해 갔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는 북한군의 지배를 피하려는 피난민들의 행렬로 온통 북새통을 이루었다.(47)

이들 피난민들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이 시흥에도 알려졌다. 멀리서 들리던 포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서울로 돈벌이 갔던 옛 주민들과 서울에 사는 친척들이 하나 둘씩 조그마한 봇짐을 짊어지고 마을에 들어오면서 동네의 분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비행기들이 북쪽을 향해 날아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했다.

(4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5, 148~202쪽.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주민들은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배를 가지고 있던 포리의 일부 선주들은 가족들과 함께 충청남도 삽시도로 피난하고, 가족들 중 경찰 · 군인 · 공무원이 있던 주민들은 서울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함께 도보로 남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없어 고향에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48)

시흥에 북한군이 처음 출현한 것은 7월 3일경이었다. 시흥은 서울–수원–오산으로 이어지는 북한군의 주공(主攻) 방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경수가도나 경인가도의 외곽에 위치한 시흥에는 소규모의 북한군 정찰대만이 정찰 목적으로 마을을 지나쳤으며, 해안경비를 목적으로 포리의 염부막사에 주둔하고 있던 50여 명을 제외하고는 북한군의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49)

그러나 북한이 남한 점령지역에서 추진한 '당 및 행정기구 재건사업'은 시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조직의 재건은 북한정권이 점령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당 및 사회단체의 핵심요원들을 남한에 파견하였는데, 이들 요원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 당조직 재건방식은 북로당을 중심으로 남한 내의 지역당을 복구 ·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중앙(서울) · 도 · 시 · 군 · 면 순서로 당위원회를 조직해 나갔다. 그리고 당 간부의 인선은 대부분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군당까지 중앙당이 당책을 임명하였다. 당원 확충방식은 신규당원의 확보보다는 이전에 당 활동을 했던 남로당원들을 재심사해 등록시키는 것이었다.(50)

한편, 당 간부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 도에는 도당학교(道黨學校)가 설치되었다. 각 도당학교에서는 약 100명을 수용시켜 1개월간 소련공산당사, 마르크

(48) 시흥문화원, 『신현동지』, 1999, 394~395쪽.
(49) 「윤태환(신천동 거주) 구술」, 2005년 7월 30일; 시흥문화원, 『신현동지』, 1999, 398쪽.
(50)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446~447쪽.

스 레닌주의 철학, 정치경제학, 해방투쟁사, 당건설 등을 강의했는데 강사는 모두 북에서 파견된 당 간부들이었다. 이와 같은 당 조직과 함께 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 여성동맹(이하 '여맹'), 직업동맹, 농민동맹(이하 '농맹'), 문화단체총연맹 등 각종 좌익사회단체들도 조직되었다.[51]

시 · 군 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조직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읍 · 면 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원장 1명, 조직책 2~3명 등으로 이루어졌다.[52]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1950. 8, 선전선동부)」에서 확인되는 시흥의 주요 당간부로는 군당위원장에 채석우, 선전부장에 이규백, 수암면 당위원장에 박성수 등이며, 각 면당위원회는 1950년 7월 7일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민청, 여맹, 농맹 등의 사회단체들도 뒤이어 곧바로 조직되었다.[53]

군자면의 경우 노동당원은 10명이었으며, 초등학교 교원 19명이 당 선전원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12명의 면 민청 선전원들과 함께 마을별로 정치선전 및 주민동원을 위한 선전 · 선동활동을 벌였다. 예를 들어 장곡리의 경우 장혁수를 비롯한 선전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마을을 돌며 벽보만화 등을 이용해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군자면의 좌익사회단체는 민청과 농맹, 여맹이 대표적이었다. 1950년 8월 24일 군자면당부에서 시흥군당부에 보낸 「군자면당부 정치정세보고」에 따르면 "민청, 농맹, 여맹은 당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청, 농맹조직에 비해 여맹조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가입대상자 6,115명 중 827명만이 가입하였으며, 활동도 민청이나 농맹에 비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과 각 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각 단체의 활동은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54]

또한 군자면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노동당의 노선과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

(51)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447~448쪽.
(52) 권영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45쪽.
(53)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 『북한관계사료집』 XVI, 국사편찬위원회, 1993, 162~200쪽.
(54) 「군자면당부 정치정세 보고」, 『북한관계사료집』 XVI, 국사편찬위원회, 1993, 187~189쪽.

로 보인다. 8월 13일 면 인민위원장 박종준이 과거 사상전향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노동당 군자면당에서 인민위원회와 노동당과의 관계, 내무서와 인민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수시로 지도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당의 노선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55)

수암면의 경우 노동당원이 총 12명으로, 면당업무는 박성수 면당위원장과 1명의 선전원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면당위원장과 선전원은 시흥군당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여맹원은 300명, 민청원은 997명이었다. 치안확보라는 명분하에 각 면과 리에는 자위대가 편성되었는데, 면에는 17명, 리에는 총 197명이 활동하였다.(56)

한편, 이러한 당 재건과 함께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예외 없이 조직되었다. 각 도에는 도 · 군 · 면 · 리 임시인민위원회가 체계화되어 점령 초기에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임시인민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대중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인민위원회의 구성을 계획하고 1950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군 · 면 · 리(동)의 인민위원회 선거 실시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 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도를 제외한 군 · 면 · 리(동)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선거일은 해당 도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셋째,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57)

이에 따라 김원봉 외 8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지도부가 구성되고, 각 도에는 임시인민위원회 안에 도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각 군 · 면 · 리에서는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리 총회와 군 · 면 대표자대회 등을 통해 군 · 면 · 리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때 설치된 각급 인민위원회의 수는 군 인민위원회가

(55) 「군자면당부 정치정세 보고」, 『북한관계사료집』 XVI, 국사편찬위원회, 1993,
(56) 「수원면당부 정치정세 보고」, 『북한관계사료집』 XVI, 국사편찬위원회, 1993, 196~200쪽.
(57)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448쪽.

108개 군에 3,878명, 면 인민위원회가 1,186개 면에 2만 2,314명, 리 인민위원회가 1만 3,654개 리에 7만 7,716명이었다.[58]

시흥군의 경우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7월 7일부터였다. 그 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7월 26~27일에 면 · 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인민위원회와 리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민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남한 토지개혁의 총괄 지도기관인 '중앙지도위원회' 의 훈령에 따라 토지개혁의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사회개혁의 일환이라는 명목하에 경찰 · 군인 · 공무원 · 지주 · 반공청년단원들을 색출 · 검거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시흥군 인민위원회는 중앙지도위원회가 내려 보낸 '해방지역에서의 토지개혁 실시에 대하여' 라는 훈령에 따라 토지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법은 〈표 3〉과 같다.[59]

〈표 3〉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법

구분	내용
원칙	1. 무상몰수, 무상분여 2. 소작제도의 폐지
몰수대상	미제와 이승만 정부 및 그 기관(회사 포함) 소유의 토지, 지주소유 토지
분여대상	고용농민,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
방법	1. 농촌위원회를 5~9명으로 구성하여 토지분여안을 작성한 후 2. 고용농민, 토지 적은 농민으로 구성된 농민총회를 거쳐 3.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분여를 실시
기타	1. 토지와 관련되는 일체의 부채의 폐기 2. 토지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부담금의 폐지

이와 같은 원칙하에 인민위원회는 몰수대상 토지를 조사한 후 토지분여안을 확정하고, 이 안에 따라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 · 빈농에게 분배하였다. 시흥에

(5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과학 · 백과사전출판사, 1981, 302~303쪽.
(59)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449쪽.

서도 각 리마다 토지개혁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토지몰수작업에 착수하였지만 다른 경기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적은 편이었다.(60)

당시 경기도 전체의 경우, 토지개혁이 실시된 지역에서 약 64%의 토지몰수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시흥은 몰수대상의 최고 제한치였던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토지몰수의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포리의 염전과 어선의 경우, 국가재산이라는 명목하에 모두 인민위원회에 압수되었다.(61)

그러나 토지개혁에 중점을 두던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8월 초순 북한군의 전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전선지원사업과 의용군모집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청 · 여맹 · 농맹 등 각 단체들은 노력동원, 의용군모집, 전시원호물자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청은 민청위원장이 의용군 조직부장을 겸임하는 등 의용군 초모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였으며, 여맹은 인민군대원호를 중심 사업으로 정하고 여맹원들이 호별 방문을 통하여 현금 · 구호물품 · 생필품 등의 전시원호물자를 수집하거나 부상병을 위한 구호 원호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농맹은 도로복구사업 · 군중해결사업 · 의용군초모사업 · 인구조사사업 · 인민군대원호사업 등을 전개하였다.(62)

이 무렵 시흥에서는 의용군 모집에 반발하여 도피하는 현상이 잦았다. 1950년 8월 24일자 「군자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에 따르면, "8월 초순부터 청년들이 의용을 회피하여 도피하고 피난하는 현상이 많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군자면에서는 1950년 8월 9일 각 리의 인민위원장 및 민청위원장들이 모여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청장년들을 적극적으로 의용군에 입대시키기로 결정하고 8월 19일에는 약 500명이 참가한 청년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63) 수암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60) 「윤태환(신천동 거주) 구술」, 2005년 7월 30일.
(61) 시흥문화원, 『신현동지』, 1999, 396쪽.
(62) 배경식,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002, 261쪽.

형태의 궐기대회가 개최되어 약 300명의 청년들이 의용군으로 강제징집되었다.[64]

다음의 증언은 당시 청년들이 어떻게 의용군으로 강제징집되었는지 보여 주는 일례이다.

> 의용군이라는 것은 통지서가 내려와서 군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집합시켜 놓고는 거기서 그대로 선발해 가는 거지. 나이라든가 과거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모아 놓고는 잡아 갔어.[65]

> 인민위원회로 다 모이래. 제비를 뽑으래요. 제비를 뽑는데 일곱 명이 모두 뽑혀. 그러니 형식적이야. 모두 공표를 해 놓았으니까 모두 걸리는 거야.[66]

이들 의용군으로 강제징집된 주민들은 도중에 탈출하거나 또는 반공포로가 되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귀향하지 못했다.[67]

북한군 점령하에서 군 · 면 · 리의 노동당지부, 인민위원회, 민청, 농맹, 여맹 등의 활동은 9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간 지속되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 강압적 또는 형식적 참여가 커 북한정권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63)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 『북한관계사료집』 X Ⅵ, 국사편찬위원회, 1993, 187~189쪽.
(64)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 『북한관계사료집』 X Ⅵ, 국사편찬위원회, 1993, 196~200쪽.
(65) 「조희영(전 포리거주) 구술」, 2005년 10월 28일.
(66) 「전숙도(미산동 거주) 구술」, 2005년 3월 25일.
(67) 「전숙도(미산동 거주) 구술」; 「안병권(포동 거주) 구술」; 「조희영(전 포리 거주) 구술」.

4. 유엔군의 시흥 수복과 휴전

한국전쟁에서 전환의 기회가 온 것은 9월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역전시킬 방법을 찾던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상륙작전을 기획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해안의 간만차이가 적은 '군산 상륙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했지만 맥아더는 거절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으로 상륙해야 단번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게 맥아더의 생각이었다. 9월 9일 합동참모본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인했다. 9월 15일 맥아더는 7만 5,000명을 투입해 크로마이트작전(Operation Chromite)이라고 명명된 상륙작전을 인천 앞바다에서 감행했다. 9월 15일 오전 2시 맥아더는 상륙작전의 결행을 지시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세기의 도박을 감행할 7만 5,000명의 국군 및 유엔군 상륙병력을 탑승시킨 260척의 대규모 수송선단이 일본 및 부산항을 출발한 것은 9월 12일이었다. 그리고 함대의 후미가 인천의 외항에 도착한 것은 9월 14일 밤이었다.

이보다 앞서 9월 4일부터 미 공군은 경인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공격은 10일간 계속되었으며, 인천을 중심으로 반경 50㎞ 이내의 도로, 교량, 터널 등 교통의 요충지로 보이는 곳은 모두 폭격의 대상이었다.

이 공격의 범위에는 시흥군의 해안지역도 포함되었다. 특히 상륙작전 이틀 전인 9월 13일부터는 공중폭격과 더불어 함포사격이 집중되었다. 당시 시흥군은 미군이 군사작전지역으로 설정한 '청색해안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미군은 상륙작전의 제1차 목표지점인 월미도 주변지역을 '적색해안지역'으로, 시흥군을 포함한 인천 주변지역을 '청색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무차별적인 포격과 폭격을 가하였다. 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 하루 동안 시흥군을 포함하는 '청색해안지역'에 투하된 포탄의 양은 2,000발을 상회하였다.(68)

(68) 일본육전사보급회, 『한국전쟁 : 인천상륙작전』 4, 육군본부, 1987, 120~140쪽.

다음과 같은 증언들을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 시흥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비가 오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팔미도가 불야성이야. 배가 환하게 불을 켜 놓고 인천상륙 준비를 하는 거야. 정찰기가 뜨고 그 다음에 포격하고 또 이쪽에서 곡사포 쏘고 …….[69]

바다 쪽에서 천둥과 같은 엄청나게 큰 소리가 계속되고, 밝은 섬광들이 하늘을 뒤덮었어. 방산리의 앞산에도 3발의 포탄이 떨어졌지. 나는 무서워서 솜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있었어. 그러면 포탄이 떨어져도 파편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해 몇 명의 주민이 죽었고, 해안방어를 위해 포리에 주둔하던 50여 명의 북한군이 허겁지겁 수원 방향으로 퇴각하더라고.[70]

당시 북한군은 낙동강전선에 후방예비대마저 투입한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인천과 그 주변지역에는 현지에서 징집한 학생, 민간인,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위성 제18사단, 인천경비여단, 제31여단 1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관총과 소화기로 무장한 총 병력 약 2만 명의 북한군과 육 · 해 · 공군 합동작전을 펼치는 유엔군과의 싸움에서 승패는 명약관화였다.

결국 북한군총사령부는 9월 23일 "활동가능자의 입산, 적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요소 및 군사시설 파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후퇴명령'을 내림으로써 38선 이남에서의 전면적인 철수를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시흥군도 북한군 치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도와 기쁨에 앞서 또 하나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상륙작

(69) 「신현수(금이동 거주) 구술」, 2005년 8월 20일.
(70) 「황규성(방산동 거주) 구술」과 「강성희(포동 거주) 구술」(시흥시, 『신현동지』, 1999, 398쪽 재인용).

전을 전후하여 미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집과 농토를 복구하는 작업이 물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주민들 간의 앙금이었다. 특히, 좌익으로 활동했던 주민과 그 피해자였던 주민 간의 앙금이었다. 실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북한군의 퇴각과 함께 마을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 일부가 마을에 남게 되어 마을 주민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앙금이 남아 있었다. 즉, 북한군 치하에서 벗어난 시흥군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복구'와 '주민들 간의 앙금 해소'라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뿐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의 원조'와 '시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정책과 전황의 급격한 변화로 시흥군민들에게는 구호원조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71)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유엔군은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하였다. 9월 28일 서울탈환으로 전황이 역전되면서 10월 1일에는 드디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여 순식간에 한 · 중 국경 부근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전쟁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 온 중공군이 10월 19일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으며, 유엔군은 중공군의 반격에 직면하여 전면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전쟁은 북한과 중 · 소를 한편으로 하고 남한과 미국 및 유엔군을 한편으로 하는 동 · 서 진영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12월 4일 평양철수를 결정하고, 15일에는 38선 이남으로 총퇴각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1951년 1월 공산군의 정월공세에 직면하자, 유엔군사령부는 서울 포기를 결정하고 평택-장호원-삼척을 연하하는 '37도 방어선' 구축을 명령하였다. 이른바 '1 · 4후퇴'가 시작된 것이다. 잠시 전쟁의 참화를 잊고,

(71) 「안병권(포동 거주) 구술」, 2005년 10월 22일; 「강철희(포동 거주) 구술」, 2005년 10월 28일; 시흥문화원, 『신현동지』, 1999, 398쪽.

복구작업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던 시흥군민들에게 1·4후퇴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1·4후퇴 때의 피난민대열은 전쟁 초기의 피난민 대열과 비교해서 엄청난 규모였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의 주민 대부분이 피난길에 올랐으며, 38도선 이북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남쪽으로 향했다. 시흥군민들도 다시 평택이나 서해안의 섬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한 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72]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른바 국민방위군들이었다.

병력동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국민방위군은 전국에서 약 50만 명이 소집되었다. 이들의 나이는 만 17~40세였다. 시흥에서도 군·면·리 단위로 장정들이 국민방위군 소집영장을 받고 1차 집결지인 각 지역 초등학교에 집결한 후 수천 명의 장정들과 함께 남행길에 올랐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경상남북도에 분산, 설치된 51개 교육대 중 거제도에 위치한 교육대였다.[73]

처음 출발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대열이 '죽음의 행렬'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가 방위군을 위해 마련한 것은 고작 양곡권이었다. 이는 장정들의 인솔책임자가 남하해 가면서 현지 군수나 경찰서장에게 급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군인도 아닌 장정들에게, 그것도 타향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군수나 경찰서장은 극히 드물었다. 더욱이 이동과정에서 방위군사령부의 고위 간부들이 방위군이 사용할 국고금, 양곡, 피복, 의류품, 기타 보급자원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수많은 방위군이 영하의 기온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중에 와병 또는 탈주자, 심지어는 아사(餓死)·동사(凍死)·병사자까지 생기는 등 대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육군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2월 말까지 남하하다가 행방불명, 동상, 질병 등으로 낙오된 장정이 27만

(72) 「신현수 구술」.
(73) 시흥문화원, 『신현동지』, 1999, 399쪽.



▲ **피난행렬** 1 · 4후퇴로 피난가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3,000명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들 중 2할은 환자들이었다. 교육대에서의 생활은 죽음만도 못한 삶이었다. 고된 훈련은 차지하더라도 교육대에서 지급한 것이라고는 2명에 한 장씩 이불을 대신하여 지급한 가마니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지급하는 주먹밥 한 개씩이 고작이었다. 결국 정부에서는 2월 17일 만 20세 이하와 36세 이상의 장정들에 대해 귀환조치를 내렸다.(74) 그러나 시흥군민들 중 국민방위군에 편입되었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병들어 돌아온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증언한다.(75)

한편, 전선의 상황은 1951년 1월 중순을 기해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던 중공군의 모습은 1월 중순경에 이르러 전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중공군은 1월 8일 신정공세를 중단하고 방어로 전환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유엔군 측은 갑자기 중공군이

(74) 조선일보사, 『전환기의 내막』, 1982, 549~574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335~336쪽.
(75) 시흥문화원, 『신현동지』, 1999, 400쪽.



▲ 국민방위군의 모습

전선에서 사라진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유엔군은 무작정 중공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당시 제8군사령관이던 리지웨이(Methew B. Ridgeway) 장군은 정찰부대의 규모를 확대해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의 위력수색(威力搜索)[76]으로 중공군의 배치와 규모, 앞으로의 의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미 제1군단에 지시했다.

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제1군단 예하의 제25사단 제27연대가 위력수색부대로 선정되었으며, 연대에는 전차 1개 대대와 포병 · 공병이 배속되었다. 작전의 명칭은 작전부대인 제27연대의 부대 이름을 따 '울프하운드(Wolfhound)작전' 으로 명명했다. 1월 15~16일 이틀간 실시된 위력수색 결과, '중공군의 방어선은 수원-이천을 연하는 선이며, 화력지원과 보급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중공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76) 적의 배치, 강도, 약점 그리고 예비대 및 화력지원 요소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한 부대로 제한된 목표에 실시하는 공격작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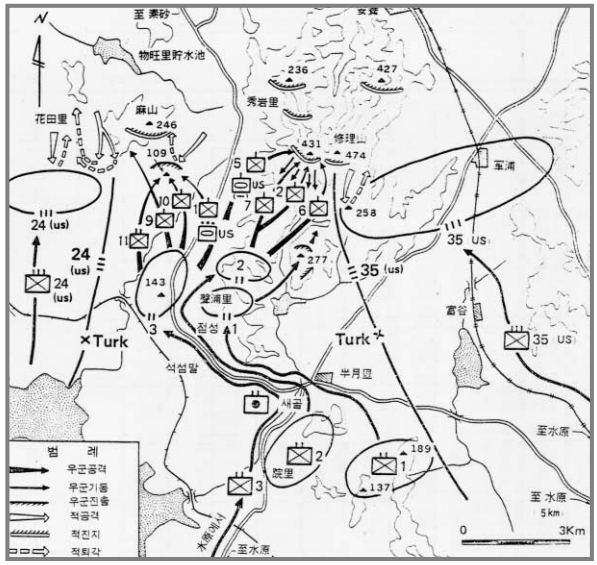
점도 확인했다.

'울프하운드 작전'의 결과만으로 볼 때는 한강선을 목표로 일거에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공세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리지웨이 장군은 '울프하운드작전'보다 한 단계 높은 위력수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산과 여주를 연하는 서부지역에서 한강까지의 구간에 5개의 통제선을 설정하고,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각각 1개 사단을 앞세워 통제선을 차근차근 점령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작전의 명칭은 '울프하운드작전'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의미로 '선더볼트작전(Thunderbolt Operation)', 즉 번개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미 제1군단은 제25사단을, 제9군단은 제1기병사단을 선두에 세워 오산-여주를 연하는 선을 공격개시선으로 삼아 공격을 시작했다. 공격을 개시한 부대들은 인접부대와 연계하여 조심스러운 작전을 계속했다. 공산군측의 저항은 미약했다. 미약한 공산군측의 저항을 확인한 리지웨이장군은 1월 31일, 안양-양평을 연하는 선에 도달한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에 "주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각 군단에서 1개 사단만을 전방에 운용하는 조심스러운 전투정찰 방침을 바꿔 1월 31일부터는 각 군단의 주력을 전방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시흥은 유엔군이 설정한 제2통제선에서 제4통제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군의 한강선 진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수리산(475m)과 관악산(629m)이었다. 수리산은 영등포를 통하는 국도와 반월리를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그리고 관악산은 면적이 8㎢나 돼 중공군이 이 지역을 고수할 경우 유엔군이 측면 또는 배후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공산군 측에서도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시흥의 경우 마산(麻山, 246m, 현재 마하산) 주변에 연대 규모의 공산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1951년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수리산과 관악산을 중심으로 유엔군과 공산군측은 무수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특히 수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투에는 시흥





〈그림 2〉 수리산전투 상황도
▼ 수리산전투에 참가한 터키군

의 정왕리와 화정리 마산지역도 포함되었다. 수리산전투는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수리산을 비롯한 성포동·부곡동과 서해 연안에서 벌어졌다. 전투를 주로 담당하였던 터키군은 1월 29일 성포리를 점령하였고, 1월 30일에는 제3대대가 마산 남쪽에 위치한 양상동의 109고지를 점령하였다. 109고지 점령과정에서는 공산군 1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화정리의 마산에 터키 포병대와 미 포병대의 포격지원이 있었으며, 미 제5공군의 항공지원도 병행되었다. 뒤이어 수일간의 공방전 끝에 유엔군은 2월 4일 수리산 주변의 주요 감제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77)

(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5, 361~387쪽;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하, 1988, 473~474쪽.

이어 유엔군은 서울을 재탈환하였으며, 3월 31일 중동부전선에서 38도선을 횡단하였다. 이 무렵 중국 본토 공격을 강력히 주장하던 맥아더 유엔군사령이 4월 11일 해임된 것을 계기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전쟁의 제한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하에 상호 대공세를 피함으로써 전선의 이동이 없는 진지전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후 전쟁은 '휴전협상과 협상강요를 위한 군사작전' 으로 전개되었다. 1951년 6월 소련이 미국에 휴전을 제의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진행되기 시작한 휴전협상은 만 2년간 158회의 지루한 회담이 되었다. 그 사이 양측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접적지역에서 전투를 계속 벌였다. 결국 3년 1개월간 진행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승자도 패자도 없이 현 전선에서 각각 2㎞씩 물러나 전투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뜻이며 적대행위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5. 전쟁이 시흥에 미친 영향

만 3년간 진행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이러한 민족사적 비극은 시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흥은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주공 방향에 위치하지 않은 관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적 · 물적 피해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과 1 · 4후퇴를 전후로 막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었다.

1956년판 『경기도지』에 의하면, 1951년 9월 1일 현재 시흥군(남면, 수암면, 군자면, 안양읍, 서면, 과천면, 동면, 신동면)의 인명피해는 사망이 1,888명, 납치가



▲ **소래초등학교의 움막교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대신 임시로 움막을 지어 수업을 하고 있다.

90명, 행방불명이 165명, 부상이 1,022명 등 총 3,165명이었다. 이러한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경기도 내에서 고양, 광주, 가평, 이천 다음으로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정밀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치자수는 크게 늘어나 647명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시흥에 포함되는 군자면이 141명, 수암면이 81명이었다.(78)

재산피해와 관련해서는 1951년 3월 2일자 『동아일보』의 다음 기사가 그 피해 정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안양 · 용인 · 시흥 등은 폐허화' 라는 제하에 "약 1주일 동안 피난민 동태와 전쟁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인천지구를 위시하여 경기도 일대를 시찰하고 귀입한 최 사회부차관은 1일 방문한 기자에게 경기도 내의 피해는 안양 · 김량장(용인) · 시흥 등의 도시가 환전 폐허화됐고 수원도 그 대부분이 초토화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처참한 전쟁 피해상황을 전했다.(79)

한편 한국전쟁이 시흥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피난민촌의 형성이었다. 피난민촌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

(78)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하, 1988, 478~479쪽.
(79) 『동아일보』 1951년 3월 2일.



▲ **포동의 피난민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다. 정부는 1951년 6월,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협상이 시작될 즈음 '피난민 구호대책' 이라는 명목하에 피난민 집단수용촌을 만들기 시작했다. 즉 정부 구호대책의 핵심은 인천에서 강릉지역을 '피난민 북상저지선' 으로 설정하여 피난민들이 북상하는 것을 막고, 구호물자의 보급이 용이한 안전지대를 택해 집단 피난민수용촌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시흥시 일원에는 신천동 붉은덕지, 포동의 국시랑과 걸뚝에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피난민촌은 지역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지 토박이들은 국시랑과 걸뚝에 자리 잡은 피난민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이었다고 증언한다. 여기서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갈등이 또 하나의 지역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으로 믿었던 피난민들이 정부방침에 따라 계속해서 머물게 되자, 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생활습성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피난민촌이 각종 질병의 온상으로 비춰지면서 양자 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점차 피난민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적 · 물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좌 · 우익활동으로 인한 주민 내부의 갈등과 분단의 고착화가 낳은 정치 · 사회적 영향과 분단의식의 내면화이다. 즉 한

국전쟁이 가져온 민족 내부의 대결 · 대립구도의 강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한 체제의 존재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민족적 비극이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은 인적 · 물적 피해와 더불어 주민들 간의 앙금과 민족분단의식의 고착화를 내면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시흥군민은 물론 전체 한국민들 사이에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개인적 · 집단적 고통의 원인으로 이는 우리 민족 제일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치유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박동찬 | 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

2장 시흥군 농지개혁의 전개와 귀결

1. 미군정의 귀속농지 분배

1) 해방 직후의 농업상황과 토지개혁 문제

해방 이후 봉건적 잔재의 청산과 식민지성의 완전한 탈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농업생산의 합리화에 있었다. 이때 농업생산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토지제도의 봉건성 타파, 즉 토지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일제가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사유제도를 확립한 이래 토지소유제는 지주층과 영세경작농민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일제하 식민지적 지주제로 말미암아 1939년 현재 농가 총호수(284만 1,000호)의 55.7%가 완전한 소작농이며, 답작지대(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경기)에서 소작농의 비율은 47~76%에 달하였다. 전혀 경지를 갖지 못한 피용자(농업노동자)의 호수도 이 지대에 가장 많이 존재하였다. 특히 전북의 평야부 4군, 즉 전주, 익산, 김제, 정읍은 소작농이 각각 전체 농가호수의 96%, 97%, 95%, 9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39년 총경지면적(452만 5,000정보)의 58%(262만 정보)가 소작지였다. 이것을 답 경지면적에 대한 소작지의 비율로 보면 전북 82.2%, 충남 77.4%, 경기 75.1%, 황해 75.1%, 경남 67.8%, 평북 69.2%로 답작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소작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농가경제가 극도로 영세화되었다. 1939년 통계에 의하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1.47정보였다. 그리고 1938년의 통계에 의하면 1정보 미만의 영세경영이 자작농 51%, 자작 겸 소작농 61%, 소작농 69%로 평균 63%였다. 게다가 소작농은 수확물의 40~80%, 평균 50% 내외의 고율 현물 소작료를 부담하는 한편 각종 부역과 조세 등 막대한 부담을 안았다.(80) 이로 인해 농가는 항상 부채에 시달렸으며 점차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해 갔다. 결국 소작농의 영농의욕 상실은 농업생산성을 악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영농형태의 영세화 결과, 첫째 전 농가의 52%인 106만 호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였고, 둘째 전 농가의 16%인 34만여 호는 자기 경작의 과반 이상을 소작하는 순소작농과 유사한 영세성을 가졌으며, 셋째 전 농가의 16%인 34만여 호는 자기 경작의 과반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나 그 경작능력에 비하여 자기의 소유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작을 겸하는 농가였다. 넷째 전 농가의 13%인 28만 호는 완전히 자기 소유토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농가이나 남한 평균 면적인 1정보 이하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영세 농가였다. 따라서 남한 농가의 약 70%가 토지를 전혀 가지지 않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밖의 농가에서도 그 경작능력에 비하여 충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남한 농가의 70% 정도가 평균 경지면적 이하의 영세한 경지면적밖에 가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토지소유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구래의 봉건적 · 제국주의적 토지소유 및 고율의 착취관계가 농가경제를 더욱 더 빈궁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농업경영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과소농제(過小農制)로 몰아넣었다.(81)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농민에게 해방은 무엇보다 농촌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토지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였다.

(80)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I , 1948, 336~344쪽 참조.
(81)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I , 1948, 28~30쪽 참조.

여기에서 해방 직후의 농업상황을 살펴보자. 〈표 1〉은 해방 직후 남한의 경지면적과 농가호수를 표시한 것이다.

〈표 1〉 남한의 영농형태별 경지면적과 농가호수[82] (1945년 말 현재)

경지면적			농가호수		
구분	면적(만 정보)	비율(%)	구분	농가호수(호)	비율(%)
소작지	147 (23)	63.4 (9.9)	자작농	284,509	13.8
			자소작농	716,080	34.6
자작지	85	36.6	소작농	1,009,604	48.9
			화전민 · 피고용농	55,284	2.7
합 계	232	100	합 계	2,065,477	100

〈표 1〉에서 보듯이 총경지의 63.4%인 147만 정보가 소작지였으며, 자작지는 36.6%인 85만 정보에 불과하였다. 소수의 지주가 경지면적의 63.4%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호수로 보면 자작농이 13.8%, 자소작농이 34.6%, 소작농이 48.9%로 압도적 다수가 순소작농이거나 자작 겸 소작농에 해당하였다.

2) 경기도 농업상황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경기도의 농업상황은 어떠했을까. 경기도 역시 남한의 전체적 상황과 비슷하였지만, 그 속에서 약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해방 직후 경기도의 영농형태별 농가호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의 경기도 영농형태별 농가호수를 보면 남한 전체의 추세와 상당히 다른 것을 엿볼 수 있다. 1945년 말 남한의 소작농가호수는 전체 농가의 48.6%를 점유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 소작농가 호수는 전체의 64.3%를 점하고 있다. 이는 남한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남한의 다른 지역보다 경기

(82)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I , 1948, 28~29쪽. 경지면적 중 소작지 항목의 괄호 안 숫자는 전 일본인 소유 면적임.

〈표 2〉 경기도의 영농형태별 농가호수[83]

(1945년 말 현재, 단위 : 호, %)

지역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토지불경작농가	합계
경기도	21,550 (7.7)	73,159 (26.1)	180,319 (64.3)	5,321 (1.9)	280,349 (100.0)
남한	286,824 (14.0)	717,509 (34.7)	1,004,744 (48.6)	56,400 (2.7)	2,065,477 (100.0)

도지역의 소작농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연동되는 현상으로 경기도지역의 자작농가는 남한 전체 평균의 절반인 7.7%에 불과하며, 자소작농의 비율도 남한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다.

한편 경기지역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가장 넓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 지주층이 많기 때문이다. 1928년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전체 농가 호수 23만 8,341호 중에서 지주층에 속하는 농가호수는 1만 1,535호나 되었다. 참고로 다른 도의 지주농가 호수를 보면 충북 3,888호, 충남 5,099호, 전북 3,051호, 전남 6,339호, 경북 1만 92호, 경남 7,316호였다. 또한 경기도의 소작농가 호수는 13만 3,924호나 되었다. 더구나 지주농가 호수 중 3,618호가 부재지주이므로 농가호당 경작면적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84]

일제시기 이래 경기지역 농지 경작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이었다. 이것은 해방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1947년 12월 말 현재 경기지역의 농가들은 다른 도의 농가들에 비해 상당히 넓은 면적의 경지를 가지고 있었다. 중농 이상이라 일컬어지는 2정보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의 비율이 경기지역에서 전체 농가 가운데 15.2%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치 6.7%와 비교할 때 2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경기지역 다음으로 2정보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의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는 12.1%의 강원도가 있었

(83)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Ⅰ, 1948, 31쪽. 이 표의 농가호수 비율의 수치가 〈표 1〉의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천 단위 이하의 절삭에서 오는 것이다.

(84) 고승제, 『한국산업풍토지(1) 경기도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197쪽.

고, 서울(8.4%)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7%에도 미치지 못했다. 2정보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 도의 전체 농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순서대로 열거하면, 제주 6.8%, 충남 6.2%, 경북 5.8%, 전남 5.2%, 충북 5.0%, 전북 4.1%, 경남 3.1%의 순이었다.

1947년 12월 31일 현재 경기지역의 경작규모별 농가호수의 상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남한의 경작규모별 농업호수(85)

(194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영농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계
10정보 이상	자 작		7	6	20		10	3		17	12	75
	자소작		8		10	1	5	1		5	7	37
	소자작		1		20		3			2	2	28
	소 작		5		15		10			14		44
	소계		21	6	65	1	28	4		38	21	184
5정보 이상 10정보 미만	자 작		57	41	53	34	103	50		147	105	590
	자소작	2	89	13	92	68	125	120		135	30	674
	소자작		74	15	89	66	61	106		118	11	540
	소 작		314	4	96	38	460	49		129	1	1,091
	소계	2	534	73	330	206	749	325		529	147	2,895
3정보 이상 5정보 미만	자 작		1,135	232	401	182	742	891	600	857	620	5,660
	자소작	7	1,613	235	595	322	983	956	241	889	123	5,964
	소자작		1,589	227	533	354	1,367	790	160	641	62	5,723
	소 작	76	5,276	220	1,029	580	1,475	595	624	801	1	10,677
	소계	83	9,613	914	2,558	1,438	4,567	3,232	1,625	3,188	806	28,024
2정보 이상 3정보 미만	자 작	1	3,166	1,217	1,490	824	2,654	3,998	2,738	3,185	1,737	21,210
	자소작	7	5,064	1,206	2,269	1,220	3,629	4,997	2,110	2,626	300	23,328
	소자작	5	6,416	1,370	2,667	1,899	3,612	4,637	2,183	2,387	121	25,297
	소 작	164	18,022	1,990	5,269	5,554	4,700	3,565	1,215	2,864	16	43,359
	소계	174	32,668	5,783	11,695	9,497	14,595	17,197	8,446	10,962	2,174	113,194

(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3, 1984, 6~8쪽.

구분	영농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계
1정보 이상 2정보 미만	자 작	18	6,964	3,508	5,546	3,452	10,070	17,013	8,553	7,361	6,192	68,677
	자소작	5	11,065	5,051	8,674	6,702	13,510	21,765	8,125	6,422	1,394	82,713
	소자작	33	14,180	5,353	10,548	10,365	13,324	21,493	7,493	5,714	586	89,089
	소 작	250	49,277	9,899	21,674	26,901	22,208	21,870	7,109	9,270	247	168,725
	소계	306	81,486	23,811	46,442	47,420	59,112	82,141	31,280	28,787	8,419	409,204
5단보 이상 1정보 미만	자 작	45	8,170	6,561	8,517	5,615	22,874	23,568	19,491	8,976	11,831	115,648
	자소작	57	12,552	8,297	13,215	10,542	28,327	29,449	26,412	8,605	2,329	135,785
	소자작	93	15,666	9,530	17,101	14,399	24,185	31,579	28,493	8,110	1,650	150,806
	소 작	727	50,154	22,125	43,233	58,647	50,827	41,118	41,571	12,846	1,180	321,928
	소계	922	86,542	46,513	82,066	89,203	121,713	125,714	115,967	38,537	16,990	724,167
5단보 미만	자 작	68	6,354	7,055	9,184	7,075	33,088	26,165	36,852	9,112	1,103	146,076
	자소작	65	9,993	16,209	13,612	10,306	29,202	27,134	40,191	8,902	2,844	153,458
	소자작	209	12,146	14,062	16,378	18,548	31,948	26,351	31,682	7,653	1,538	160,510
	소 작	1,257	39,102	27,821	48,560	63,079	71,908	44,185	57,114	13,239	2,286	368,545
	소계	1,599	67,595	60,147	87,734	99,008	166,146	123,835	165,839	38,900	17,786	828,589
계	자 작	132	25,853	18,620	25,211	17,182	69,541	71,688	68,436	29,655	31,620	357,938
	자소작	143	40,384	26,011	38,467	29,161	71,781	84,422	77,079	27,484	7,027	401,959
	소자작	340	50,072	30,557	47,328	45,631	74,500	84,956	70,011	24,625	3,965	431,985
	소 작	2,474	162,150	62,059	119,876	154,799	151,088	111,382	107,631	39,177	3,731	914,367
	계	3,089	278,459	137,247	230,882	246,773	366,910	352,448	323,157	120,941	46,343	2,106,249
토지불경작농가		31	4,206	1,553	5,636	25,732	17,654	5,856	5,285	202	31	66,186
합 계		3,120	282,665	138,800	236,518	272,505	384,564	358,304	328,442	121,143	46,374	2,172,435

〈표 3〉에서는 우선 경영규모를 전체 7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포함되는 농가호수를 지방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3정보 이상 경작자는 부농, 1~3정보 경작자는 중농, 1정보 이하 경작자는 빈농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실제로 1949년 당시 김포지역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작규모와 생활상태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김성섭은 "7,000평은 큰일만 없으면 생활해 나가기에 곤란하지 않으며, 생활필수품만 좀 싸게 배급된다면 넉넉히 살아 나갈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였으며, 백용남은 "2정보는 가져야 생활비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면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영선은 "2,000평은 경작하여 다섯 식구가 먹고 지내기 어려운 면적"이며

농지개혁 때 "한 3,000평 분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 있다. 노상길의 경우는 "1,700평 하등 답을 경작하는데, 공출을 하고 나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걱정되어 하는 수 없이 식구를 처가로 분산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혼자서 짓기에는 2,500평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적산농토 불하로 농지분배의 경험이 있는 곽양훈은 "분배면적은 1호당 2정보 한도라면 적당하다"고 하였다.[86] 요컨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볼 때 최소 1정보, 3,000평은 넘어야 식구를 부양할 수 있으며, 2정보, 6,000평 정도는 되어야 큰일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그리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 또한 농지개혁 시 분배받기를 원하는 면적으로 2정보를 하한선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미군정의 토지정책과 귀속농지의 분배

해방 이후 농지개혁 문제는 미군정에 의해 단초가 놓였다. 미군정 당국은 진주 직후인 1945년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로 미곡의 자유시장을 공포함과 동시에 법령 제9호로 '최고 소작료 결정 건'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은 제1조에서 "현행 계약에 의하여 소작인이 그 전지(田地)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혹한 소작료 및 이율의 결과로 소작인의 반노예화와 그 생활수준이 군정청이 목적하는 수준하에 있는 이유로 조선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하여 최고 소작료 실시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현물 또는 금전에 의한 소작료 납부는 수확물 총액의 1/3을 초과치 못함"이라고 하여 최고 소작료가 수확물 총액의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확물의 1/2을 넘는 일제시기의 고율소작료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미군정은 일단 소작료 총액 상한제를 실시하여 소작료 수취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일본인 개인이나 단체, 정부 등의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86) 「金浦 현지 좌담회, 농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서울신문』 1949년 3월 22일.

신한공사(新韓公社, New Korea Company)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일본인 토지의 몰수작업 결과 파악된 각도별 귀속농지는 〈표 4〉와 같다.

〈표 4〉 미군정기 귀속농지 총관리면적[87]

(1948년 2월 28일 현재, 단위 : 정보)

지방 국별	도별	농지								농지계	산림	총관리 면적
		일반농지					과수원 및 상전(桑田)					
		논	밭	垈	기타	계	과수	상전	계			
서울	경기	23,634	9,658	650	1,706	35,648	591	43	634	36,282	19,267	55,549
	강원	819	1,055	88	16	1,978	18	11	29	2,007	15,598	17,605
대전	충북	4,927	3,971	427	415	9,740	112		112	9,852	2,832	12,684
	충남	24,035	7,053	770	1,796	33,654	332		332	33,986		33,986
대구	경북	13,499	6,503	375	463	20,840	1,462	244	1,706	22,546		22,546
부산	경남	26,084	7,327	452	2,871	36,664	365	49	414	37,078		37,078
이리	전북	57,905	8,496	478	1,392	68,271	301	104	405	68,676		68,676
광주	전남	55,068	17,663	102	1,906	74,739	421	219	640	75,379		75,379
제주	제주	17	905	1	23	946	15		15	961		961
계		205,988	62,631	3,343	10,518	282,480	3,617	670	4,287	286,767	37,697	324,464

즉 일제시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남한지역의 토지는 총 32만 4,464정보이며, 이 중 일반농지는 28만 2,480정보였다. 남한 전체 농지 가운데 신한공사 소유농지(귀속농지)가 점하는 비율은 15.3%였다. 요컨대 일제는 남한농지 가운데 15.3%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논밭의 소유 비율은 각각 18.3%, 8.7%였다. 논의 소유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지역의 귀속농지 소유상황을 보면 전체 3만 5,648정보로 경기도 전체 농지의 13.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1953년도 경기도 농지면적 26만 9,714정보 기준). 서울에서 가깝고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등 농사에 여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 전체의 평균에 못 미치는 일본인

(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3, 1984, 16쪽.

농지 소유 비율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제시기 조선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88]

일제시기 경기도 지주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7년 이후 1932년까지의 지주수는 대체로 1만여 명 정도였다. 1932년 현재 지주 갑(甲, 소유경지 전부를 소작 주는 지주)이 5,517명, 지주 을(乙, 소유경지 중 일부를 자작하고 나머지는 소작 주는 지주)이 5,014명으로 총지주수는 1만 531명이었다.[89] 그리고 1943년에는 지주수가 7,202명이고,[90] 1947년 12월 현재 8,711명이었다. 위의 수치들을 감안하면 일제시기 경기도의 지주는 1만여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들 지주들의 소유경지 규모별 지주수를 살펴보면 1923년도에 20정보 이상 지주 782명, 5~20정보 지주 2,539명, 1~5정보 지주 5,386명, 1정보 미만 지주 10만 408명이었다.

그러면 일제시기 경기도 소재의 전답만을 합산하여 30정보 이상을 가진 대지주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1937년의 상황을 알려 주는 『지주명부』에 의하면 대지주수는 총 777명이다. 이 중 조선인 대지주가 722명, 일본인 대지주가 55명으로 조선인 대지주가 절대 다수인 92.9%를 차지하고 있다. 1937년 현재 경기지역 30정보 이상의 대지주의 밀도를 보면 부(府)·군(郡)당 33.8명, 읍(邑)·면(面)당 3.3명, 정(町)·동(洞)·리(里)당 0.28명이다. 이는 608호의 일반호구당, 315호의 농가호구당 30정보 이상의 대지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0년 현재 경기도는 다른 도에 비해 소작형태를 통한 농업경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30정보 이상 대지주의 밀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민족별 비중에서도 조선인 대지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이들 대지주의 소유 전답이 경기도 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대지주의 수와 그들이 가진 전답이 비교적 많거나 총

(88) 일제하 지주의 동향에 대해서는 임대식, 「1930년대 말 경기지역 조선인 대지주의 존재형태」,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8~10쪽을 전적으로 참고하였다.

(89) 조선총독부 농림국,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49~50쪽.

(90)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I -32, 1948.

소작지에 대한 비율이 높은 곳, 즉 30정보 이상 대지주의 전답이 집중된 지역은 수원 · 평택 · 여주 · 이천 · 안성 등 경기 남부의 평야지역 및 남한강 인근지역과 장단 · 개풍 등 임진강 인근지역 등이다. 즉 평야지역과 강변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대지주 소유 전답 중 논의 비율(69%)이 도 전체의 논의 비율(5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서도 반증되고 있다. 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소작지 경영의 주목적이 미곡의 생산 · 수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0정보 이상 대지주의 전답 추이를 살펴보면, 1930~1937년간 조선인 대지주 소유의 전답면적이 증가한 것은 물론 민족별 비중에서도 77%에서 80.5%로 상승했다. 반면에 일본인 대지주 소유 전답면적은 절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정체되었다. 경기도의 이러한 특이한 양상은 1930년대 들어서도 경기도가 조선인 대지주들이 선호하는 소작 대상지였던 것을 의미한다. 즉 경성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들에게 경기도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소작지 관리가 편리했고 또한 전통적인 기호 중심의식 등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한공사를 통하여 귀속농지를 관리하고 있던 미군정은 군정이 종료되어 가던 1948년 3월 22일에 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 설치령과 제174호 신한주식회사의 해산령을 공포하여 귀속농지 불하사업에 착수하였다. 귀속농지 분배 시 상환조건은 평년 소출의 3배를 농지가격으로 정하여 매년 소출의 20%씩 15년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이었다.

다음 〈표 5〉는 귀속농지의 도별 매각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도의 귀속농지 매각으로 사고농지를 제외하고 총 4만 1,889호의 소작농가에 3만 3,383정보의 농지가 분배되었다. 이로써 경기도 귀속농지 경작 소작농은 매 호당 0.797정보의 농지를 자기 소유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경기도 신한공사 소작농이 받은 0.797정보는 전국 평균인 0.409정보와 비교할 때 대단히 넓은 면적이었다. 제주도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국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농지가 경기도 신한공사 소작농에게 분배되었던 것이다.

〈표 5〉 도별 귀속농지 매각 실적[91]

(단위 : 정보, 호)

구분 / 지역	매각대상			사고농지			양도면적			수배농가	1호당 수배면적
	논	밭	계	논	밭	계	논	밭	계		
경기	23,634	10,292	33,926	266	277	543	23,368	10,015	33,383	41,889	0.797
강원	819	1,084	1,903	34	60	94	785	1,024	1,809	6,923	0.261
충북	4,927	4,084	9,011	112	103	215	4,815	3,981	8,796	25,656	0.343
충남	24,035	7,524	31,559	442	142	584	23,593	7,382	30,975	79,570	0.389
전북	57,905	8,901	66,806	387	410	797	57,518	8,491	66,009	148,370	0.445
전남	55,068	18,303	73,371	238	85	323	54,830	18,218	73,048	193,522	0.377
경북	13,499	8,209	21,708	989	592	1,490	12,601	7,617	20,218	63,199	0.320
경남	26,084	7,741	33,825	918	287	1,205	1,166	7,454	32,620	96,309	0.339
제주	17	920	937		19	19	17	901	918	194	4.732
계	205,988	67,058	273,046	3,295	1,975	5,270	202,693	65,083	267,776	655,032	0.409

2. 한국 정부의 농지개혁

1) 농지개혁법의 성립과 내용

농지개혁은 농지개혁법으로 실행되었으며, 그 법이 별 저항없이 제헌국회에 상정될 수 있었던 것은 최초의 최고법률인 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제86조)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반공체제의 구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수립, 자본주의 공업 발전을 위한 자본 형성의 길을 농지개혁에서 찾았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92]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949년 4월 27일이었다. 이 농지개혁법은 5월 2일자로 정부에 이송되었는데 9일 임시국무회의 심의결과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국회에 환부하기로 결정하고 16일자로 '농지개혁법안 소멸'을 국회에 통고

(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3, 1984, 30쪽.

(92) 김성보, 「입법과 실행과정을 통해 본 남한 농지개혁의 성격」,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138~139쪽.

하였다. 이때 주요 이유로 제시된 것은 지주 보상액 15할(150%)과 농민의 상환액 12.5할의 차이를 정부가 메워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이 없다는 것과 조문의 모순 등이었다. 이후 농지개혁법 개정법은 1950년 2월 2일 지주보상율과 농지상환율을 150%로 하여 통과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 개정법은 1950년 3월 10일 공포되었다. 개정법 공포 이후 이를 뒷받침할 농지개혁법 시행령은 3월 25일에,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은 4월 28일에, 그리고 농지분배점수제 규정은 한국전쟁이틀 전인 6월 23일에 공포되었다.

1950년 춘경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농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농림부의 의지대로 농촌 현장에서 개혁사업이 전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도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경상북도 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경기도 인천의 경우 한 달여의 지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농지개혁의 나머지 절반을 구성하는 지주에 대한 보상은 한국전쟁 이전에 거의 실행되지 못하였다. 본래 지가증권은 1950년 3월 31일까지 교부하도록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쟁으로 지가증권 발급이 중단되었다. 농지보상업무는 부산 피난 후인 1951년 1월 9일에 가서야 재개되었다. 그 후에도 사업은 지지부진하여 보상 법정기간(1951~1955)이 지난 1957년경에야 지가증권 발급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의 결과로 기존의 지주소작제가 폐지되고 자작농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생산 합리화의 길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급으로서의 대지주가 거의 소멸되어 농촌에 새로운 사회관계가 전개될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지개혁사업의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귀속농지 26만 7,776정보가 귀속농지 소작인에게 분배되었고, 한국정부에 의해 31만 6,862정보가 해당 농지의 소작인 등에게 분배되었다. 이로써 총 58만 4,638정보가 소작농 등 농민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표 6〉 농지분배 총괄표 (단위 : 정보)

구분 / 지역	귀속농지			분배농지			계		
	논	밭	계	논	밭	계	논	밭	계
경기	23,368	10,025	33,383	52,152	29,498	81,650	75,520	39,513	115,033
강원	789	1,024	1,809	3,531	5,033	8,564	4,320	6,057	10,377
충북	4,815	3,981	8,796	8,361	8,161	16,523	13,176	12,142	25,318
충남	23,593	7,382	30,975	41,448	15,531	56,979	65,041	22,913	87,954
전북	57,518	8,491	66,009	34,636	10,684	45,320	92,154	19,175	111,329
전남	54,830	18,218	73,048	30,196	10,350	40,546	85,026	28,568	113,594
경북	12,601	7,617	20,218	16,982	11,605	28,587	29,583	19,222	48,805
경남	1,166	7,454	32,620	27,919	10,346	38,265	29,085	17,800	70,885
제주	17	901	918	39	386	425	56	1,287	1,343
계	202,693	65,083	267,776	215,266	101,595	316,862	417,959	166,678	584,638

2) 농지개혁의 귀결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남한의 대지주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비록 일부 대지주들, 특히 일제시기부터 산업 및 금융에 활발히 투자하거나 관여한 동태적 · 기업가적 지주의 계보를 잇는 지주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선거문화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에 성공하였고, 정치적으로도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하는 등 종래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조차도 더 이상 지주경영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계급으로서의 대지주층은 거의 소멸되었던 것이다.[93]

한편 농지개혁을 전후해서 방대한 지주의 소작지가 경작농민에게 이전되었다. 하지만 1945년부터 1951년까지 5년간의 농민의 계층 변동을 보면, 농지개혁에도 불구하고 1정보 이상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리고 0.5~1.0정보 계층은 1947년까지 감소 추세였던 것이 농지개혁으로 증가하게 되고, 0.5정보 미만층만

(93) 홍성찬,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 동향」,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220~221쪽.

은 계속 증가 추세였다. 5년 사이에 0.5정보 미만층은 무려 25만 5,810호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3정보 이상의 계층이 감소한 것은 3정보 이상의 농지를 국가가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1~3정보 계층이 감소한 것은 지주 금융의 소멸에 의한 영농자금의 부족과 특히 비료를 위시한 영농자재의 부족 및 극심한 강제공출 등으로 초래된 농업생산의 후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농지개혁은 0.5~1.0정보 계층의 감소를 막았을 뿐 오히려 영세소농층의 비대를 촉진함으로써 종래의 영세농경구조를 심화시킨 셈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분배농지이든 지주의 처분농지이든 일단 지주의 손을 떠난 대부분의 소작지가 기존의 소작농에 그대로 이전되어 종래의 영세농적 계층구조를 고스란히 답습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토지는 다시 신규로 증가한 영세농들에게 분산되어 종래의 계층구조를 더욱 악화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분배방식(상한제), 비현실적인 상한 규정(3정보) 및 유명무실한 분배순위에 농촌질서의 와해와 총농가수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한 계층구조의 전면적인 포락(浦落)현상이기도 하다. 여하튼 농지개혁에도 불구하고 전농가의 78.6%가 자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1정보 미만이라는 사실은 분배방식의 결함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결국 농지개혁에 의해 지주층이 몰락하고 자작농체제를 창출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이지만, 자작농체제는 중농구조가 아니라 영세농경구조였다는 점에서 중도반단의 취약성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시흥군의 농지개혁과 귀결

1) 전국의 지주 동향

해방이 되자 일제강점기에 각 권력기구 · 금융기관들과 유착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한 몸에 거머쥐었던, 그리하여 지역명망가, 지방 민원의 해결사, 지방민을

외부세계와 연결하고 일제의 통치 이념과 방침을 지방민에게 전달 · 지도하는 창구역할을 하였던 대지주들은 친일파 청산이 최대의 정치적 과제로, 토지개혁이 최대의 사회 · 경제적 과제로 부각된 속에서 신국가 건설을 위한 최우선의 인적 청산대상이자 물적 개혁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동안의 토지 독점과 정치 · 사회활동, 즉 친일 경력 때문에 이들은 구질서 · 구체제 · 구악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94)

이런 가운데 대지주들은 미군정에 의해 치안이 서서히 회복되자 해방 직후의 당혹감에서 벗어나 점차 전열을 정비해 갔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체 정국 동향을 관망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체제의 신국가 건설운동에 참여하여 사회주의 · 공산주의 체제의 신국가 건설 노선과 정면으로 투쟁하는 한편,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세력들과 정치 ·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여 집단이익 수호에 나선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와 병행하여 개별적 차원에서 농지를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등 농지개혁에 경제적으로 대응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앞장서서 주도한 것은 일제하에서 자본주의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변신한 바 있던 새로운 유형의 지주, 동태적 · 기업가적 지주들이었다.(95) 여기에서는 후자의 경제적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해방 후 대지주들은 농지개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각자 예상을 달리했지만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농지개혁이 실시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46년 3월의 북한 토지개혁에 이어, 1947년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토지개혁법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고, 1948년 3월에는 미군정에서 귀속농지매각령을 발표하는 등 농지개혁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곧이어 실시될 농지개혁에 대응하여 농지를 미리 방매하거나, 가족 간에 분산 소유하거나, 교육재단 등으로 명의를 변경해 두거나, 위토 · 염전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농지개혁을 시대적 대세로 수용

(94) 홍성찬,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 동향」,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182쪽.
(95) 홍성찬,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 동향」,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183~184쪽.

하면서 분배대상농지를 축소하려 했던 것인데, 당시 대지주들이 가장 흔히 택했던 방안은 사전방매였다.(96)

해방 직후부터 농지개혁 때까지 매각된 남한의 전체 소작지 규모는 1945년 말 현재 전체 소작지의 49.2%, 이 가운데 귀속농지를 뺀 일반 소작지의 60.7%에 해당하는 71만 3,000정보였다. 시기별로는 1946년 1월부터 1947년 말까지 12만 2,000정보, 1948년 1월부터 1949년 6월까지 45만 5,000정보, 1949년 7월부터 1951년 말까지 13만 6,000정보가 매각되어, 1948년 1월부터 1949년 6월 사이에 전체의 63.8%가 집중되었다. 이 통계는 정부가 농지개혁으로 분배될 모든 농지소유자의 사전 매각실태를 일괄해서 조사 ·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지주의 동향만을 따로 분리하면, 1945년 8월부터 1946년 12월까지 전체 대지주 1,630명의 33.5%인 546명이 농지 매각 등으로 대지주 대열에서 탈락하여 대지주는 1,084명으로 줄었고, 1947년 1월부터 1950년 5월까지 1,630명의 23.6%인 384명이 추가 감소하여 700명이 되었으며, 나머지 42.9%인 700명은 농지개혁 때까지 잔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들 대지주가 소유한 농지도 축소되어, 1945년 8월의 17만 2,732정보에서, 1946년 12월에는 11만 5,043정보로 줄었고, 1950년 5월에 6만 2,668정보만을 소유하여, 해방 후 1년 반 사이에 33.4%가 줄고, 그 후 3년 반 사이에 30.3%가 추가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36.3%는 농지개혁 때까지 잔존하였다. 대지주수와 그들의 소유농지 규모는 1948, 1949년 이후가 아닌 1945년 8월부터 1946년 12월 사이에 주로 감소했던 것이다.(97)

이렇게 보면 해방 후 농지개혁 때까지 지주들의 농지 매각 형태는 크게 두 유형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일제 때부터 동태적 · 기업가적 지주로 활동하며 탄탄한 정치 · 사회 연결망을 구축하여 해방 직후의 정국 추이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관측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대지주들의 매각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96) 홍성찬,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 동향」,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190쪽.
(97) 홍성찬,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 동향」,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190~193쪽.

일제 때부터 단순한 정태적 지주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리하여 급변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대지주들이나, 특히 자경(自耕)하지 않거나 자경할지라도 규모가 일정 면적을 넘어 그 초과분을 분배당하게 된 영세 지주 또는 중소 지주까지 포함한 농지 소유자 일반의 매각 형태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전자는 급변하는 정국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비교적 일찍부터 농지방매에 나섰던 반면, 후자는 정부가 농지개혁법을 공포하는 등 농지개혁 실시가 눈앞에 다가선 후에야 비로소 사전방매에 나섰던 것 같다.(98)

해방 정국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지주들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개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농지를 방매했으나, 무상몰수가 아닌 유상매수가 예상되면 결코 헐값에는 방매하지 않았다. 토지개혁의 예상시기, 폭, 조건 등이 수시로 변하는 가운데 매우 합리적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사전방매의 방법으로는 방매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원매자 개개인과의 개별 계약, 원매자를 대표한 사람과의 집단 계약 등 두 가지 방식을 병용했다. 집단 계약은 다시 두 종류로 세분되는데, 하나는 한 동리의 원매자들이 그중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 집단 계약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한 경우인데, 대개 매매 규모가 컸으며, 마름 등 지주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 농지 매각이 절박해진 지주의 청탁을 받아 매매를 알선하고 구전을 받거나 아예 외상이나 헐값에 소작지를 대량 불하받아 실수요자에게 소량씩 후한 값으로 매각하여 중간 이익을 취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사전방매 외에도 지주들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농지를 분재(分財)하여 가족들끼리 분산 소유하였다. 대지주들의 경우는 학교재단 또는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그곳에 대규모 농지를 출연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한편 일부 대지주들은 농지개혁을 전후한 시기에 자기 농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기도 하였다.(99)

(98) 홍성찬,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 동향」,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194~195쪽.
(99) 홍성찬,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 동향」, 『농지개혁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200~206쪽.

2) 시흥군의 지주 동향

시흥군에서 어떠한 지주가 어느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면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로 분배를 당하였는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시흥군에서 20정보 이상을 분배당한 지주의 명단이다.

〈표 7〉 시흥군의 20정보 이상 피분배 지주명단(100)

성 명	피분배면적(정보)			보상석수 (正租 石)	주 소
	논	밭	계		
이진홍(李鎭洪)	미상	미상	미상	1,118.0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574
정재오(鄭在五)	미상	미상	미상	938.5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201
조한영(趙漢永)	19.6	0.5	20.1	944.0	시흥군 수암면 윤곡리 256
이중영(李重永)	16.2	10.0	26.2	932.5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 278
김성환(金成煥)	36.2	12.4	48.6	1,542.5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112
육훈상(陸勳相)	31.9	4.7	36.6	1,445.5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 213
윤충한(尹忠漢)	31.3	12.2	43.5	1,551.5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 124
김성환(金成煥)	30.2	7.7	37.9	1,423.5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112
이묘남(李妙男)	8.5	12.1	20.6	559.5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 212
합 계	173.9	59.6	233.5	10,455.5	

시흥군에서 20정보 이상의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는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성환이 가장 많은 86.5정보의 농지를 분배당하고 2,966석을 보상받았다. 나머지 대지주는 50정보 이하를 분배당하였으며 윤충한(43.5정보, 1,551.5석), 육훈상(36.6정보, 1,445.5석)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0정보 이상 소유지주의 농지 구성을 각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20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논밭을 어떠한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1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23쪽.

〈표 8〉 경기도의 20정보 이상 소유지주의 농지 구성비율[101] (단위 : %)

구분	인천	수원	강화	고양	광주	김포	부천	시흥	안성	옹진	용인	이천	평택	파주	화성	평균
논	78.7	72.4	89.8	91.2	66.5	72.1	63.7	74.5	70.0	60.0	79.3	71.3	80.9	76.0	75.8	75.5
밭	21.3	27.6	10.2	8.8	33.5	27.9	36.3	25.5	30.0	40.0	20.7	28.7	19.1	24.0	24.2	24.5

〈표 8〉에서 경기도에서 20정보 이상 소유 지주들은 평균적으로 농지를 논 75.5%, 밭 24.5%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각 지역별로 살펴보자. 사례가 1명인 고양군을 제외하면 20정보 이상 소유지주의 농지 구성에서 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으로, 전체 농지 가운데 89.8%가 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서 논의 소유비율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평택군(80.9%), 용인군(79.3%), 인천시(78.7%), 파주군(76.0%), 화성군(75.8%)의 순이다. 시흥군은 경기도 평균에 가까운 논밭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면 단위에서 파악한 지주들의 실태는 어떠했을까? 〈표 9〉는 시흥군 군자면의 지주 소유면적을 집계한 것이다.

〈표 9〉에 나오는 지주는 총 100명이다. 그러나 동일인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경우(박흥렬)가 있고, 분배농지의 면적이 표기 안 된 경우(6번 원용익, 26번 정운극, 28번 박흥렬, 100번 정재오)가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총 96명이 된다. 이 96명의 지주를 대상으로 군자면의 지주들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분배당했는지를 살펴보겠다.

군자면의 경우, 분배를 당한 면적이 가장 많은 지주는 문창영으로 1만 9,565평(약 6.5정보)이었으며 1만 평 이상을 분배당한 지주는 문창영을 포함하여 단 세 명에 불과하다. 3정보 이상을 분배당한 지주 역시 앞의 세 명을 포함하여 네 명이다. 2정보 이상을 분배당한 지주는 군자면 96명의 지주 가운데 도합 10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2정보 이하를 분배당했다. 또한 이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1,000평 미만을 분배당한 영세 지주이다. 군자면의 사례를 다른 면의 사례로 환치시킬 수는 없지만 시흥군에서 분배당한 지주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8~27쪽에서 작성. 피분배면적 합계가 20정보 이하여도 20정보 이상으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계산함.

〈표 9〉 시흥군 군자면 지주의 피분배면적[102]

연번	리명	성명	소유면적			연번	리명	성명	소유면적		
			전	답	계				전	답	계
1	거모	이윤종		1,805	1,805	31	군자	박응래	1,162		1,162
2	〃	이계명		3,427	3,427	32	모지	민병희	1,705	3,707	5,412
3	〃	이계철	4,253	4,145	8,398	33	〃	이원영		6,129	6,129
4	〃	이계희		4,942	4,942	34	목내	최상의	601	2,292	2,893
5	〃	이계호	930	3,714	4,644	35	〃	최만수	1,444	2,188	3,632
6	〃	원용익				36	〃	김재서		889	889
7	〃	이기종	896	6,610	7,506	37	〃	김유묵	339	355	694
8	〃	이창규		388	388	38	선부	민택기	625	401	1,026
9	〃	원계상	827		827	39	〃	박내봉	500		500
10	〃	한하석	1,511	2,801	4,312	40	〃	박내훈	550	4,813	5,363
11	〃	박정숙		2,350	2,350	41	〃	윤필한	296	1,155	1,451
12	〃	김수봉		755	755	42	선부	박이영	150		150
13	〃	황정용	519		519	43	〃	이대종		9,727	9,727
14	〃	이계인		3,780	3,780	44	〃	안순복	984		984
15	〃	이양섭		568	568	45	〃	민병목	84	2,841	2,925
16	〃	황정용	225		225	46	〃	김○동		5,008	5,008
17	군자	박흥렬	600	891	1,491	47	〃	민찬기	756	739	1,495
18	〃	강홍겸		753	753	48	성곡	김세권	500	4,510	5,010
19	〃	김우현	704		704	49	신길	이영근	750		750
20	〃	강홍집		346	346	50	〃	윤종구	1,334	450	1,784
21	〃	이을수		152	152	51	〃	김동혁	291		291
22	〃	방춘복	444		444	52	〃	김동윤	1,160		1,160
23	〃	임기현	372	5,971	6,343	53	〃	정규진	347		347
24	〃	임지설		956	956	54	〃	유명준	526	904	1,430
25	〃	임옥경		2,560	2,560	55	〃	유정근		322	322
26	〃	정운극			*秀岩面分	56	〃	김정완		1,125	1,125
27	〃	한재숙		742	742	57	〃	최재섭	458	971	1,429
28	〃	박흥렬			*秀岩面分	58	〃	김사배	175	350	525
29	〃	조광호		668	668	59	〃	문창영		19,565	19,565
30	〃	임지영	913	1,326	2,239	60	〃	최건섭	390	4,796	5,186

(102) 「1954 분배농지 지주확인 일람표1(군자면)」; 「지주별 농지확인 일람표」; 「지주신고서(갑)」; 「지주신고서(을)」.

연번	리명	성명	소유면적			연번	리명	성명	소유면적		
			전	답	계				전	답	계
61	신길	윤학노	800	1,343	2,143	81	원시	한일동		500	500
62	〃	정규성	165		165	82	〃	박순복	395		395
63	원곡	김태연	560	1,234	1,794	83	월곶	안정묵	2,966	3,558	6,524
64	〃	이영근		1,657	1,657	84	〃	안동옥	1,054	61	1,115
65	〃	지동흠		690	690	85	〃	안돈묵	3,063	3,473	6,536
66	〃	태덕규	278		278	86	〃	최정환	1,450		1,450
67	〃	최용원		232	232	87	장곡	장채응	2,887	350	3,237
68	〃	장상근	212		212	88	장현	정민섭		3,380	3,380
69	〃	김○명	84		84	89	〃	정창섭	7,069	10,827	17,896
70	〃	윤성한	252	120	372	90	〃	김묘근	600		600
71	원시	하진태		4,790	4,790	91	정왕	김종필		450	450
72	〃	김영훈		545	545	92	〃	김인택		129	129
73	〃	김경태	3,164		3,164	93	죽율	홍순교		551	551
74	〃	임종원	396		396	94	〃	김월남	21		21
75	〃	김영호		366	366	95	〃	안희민	576		576
76	〃	이철영	910	849	1,759	96	〃	김진수		262	262
77	〃	정필옥		902	902	97	〃	평성만		1,000	1,000
78	〃	이형규	1,842	2,548	4,390	98	〃	김진석		394	394
79	〃	이복영	1,460	2,335	3,795	99	〃	김덕현	167	4,991	5,158
80	〃	강홍순	2,858	13,195	16,053	100	서울 아현동	정재오	60,550	183,619	244,169

이와 같이 시흥군 농지개혁 통계자료를 통해 지주의 토지 매수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흥군의 지주들이 농지개혁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였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을까. 여기에 단편적이지만 당시 농민들과 지주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여기에는 1949년 당시 시흥군에서 벌어진 정부의 농지개혁 담당자와 농민의 목소리가 비교적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시흥군 농지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보기 드문 기사이므로 약간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기사는 두 가지이다. 먼저 첫째 기사를 보기로 한다.

[안양에서 李祿永 기자] 농림부에서는 농지개혁을 앞두고 이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월 4일부터 각 지방 농촌을 순회하며 실정을 조사하고 농촌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월 2일에는 경기도 내 농촌실정을 조사하고자 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4區에서 농촌좌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이날 농림부 측에서는 姜 농지국장 이하 관계 각 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농민 측에서는 호계리 4구 농민들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호계리 4구는 농가 호수 75호에 인구 360명인데 참석한 농민을 類別하면 소작 26명, 자소작 17명, 자작 6명, 고용인 3명 등이었다.

먼저 姜 농지국장의 농지개혁법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는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향상을 도모하기로 되었다. 금반 농림부에서 立案한 골자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체감 매상하여 평균생산량 12할분 가격으로 농민에게 최고 2정보까지 분배하여 6년 간 年賦 매년 생산고 2할씩 現穀으로 상환토록 하는 것이며, 지주에게는 연평균 생산량의 15할을 보상하되 최초 3년간은 据置하고 그 후 10년간 분할 지급토록 되며 그 보상액이 소액일 시에는 일시불, 혹은 기간 단축 등의 편의도 보아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액 3할은 대지주 토지징수가격을 체감 계산하는 것으로서 균형을 짓는 것이다."

다음 이 초안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 청취로 들어갔는데 대체로 동 초안에 찬성하고 있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농민들의 격의 없는 실정을 들어보건대 자기네 洞里에 있어서 해방 전에는 자작농가라고는 불과 1할에 不外하였었는데 현재는 약 3할 이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농가경제가 향상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주에게 토지를 강매당하여 그런 것이다. 참석한 농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토지를 강매당하였으며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중의 한 사람은 말하기를 토지매매를 즉시 금지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지개혁을 시급히 실시하지 않으면 농민의 고초는 막심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매당하여 농촌의 유일한 생산도구인 農牛 등을 방매하고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농림부 측에서도 언명한 바와 같이 아직도 일제 시 농지령이 존속되고 있는 이상, 소작인이 어떠한 과오가 없는 이상, 소작권은 3년간 지속되며 만기가 되어도 소작인이 어떠한 과오가 없는 이상,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작권을 지

주가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하나 항상 약한 입장에 서 있는 농민들은 자기의 정당한 주장도 제대로 주장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참혹한 농촌의 실정이다.

요는 진실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법을 춘경기 전에 시급히 실시하여 달라는 것이 전 농민들의 적절한 요망이다. 그러니 전 국민의 7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어떠한 개인적 · 정치적 편견을 제거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동 안을 국회에 상정 · 통과시키기를 농민과 더불어 일반은 바라고 있는 바이다.[103]

이 기사에는 농지개혁의 실시를 앞둔 농촌의 상황과 농민들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사가 당시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첫째, 당시 정부의 농지개혁 담당자가 농민과 농촌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던 간담회에는 농민의 다양한 계층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시흥군의 경우도 지주를 제외한 농민 각층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작농 11.5%, 자소작농 32.7%, 소작농 50.0%, 고용 5.%의 비율이다. 이는 실제 시흥군의 농민 구성과 대동소이한 수치이다.

둘째, 당시 시흥군 농민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연평균 생산량의 120%를 6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는 안에 대해서 농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셋째, 해방 전과 비교하여 해방 이후 자작농가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1949년 초 시흥군의 경우 해방 전에는 1할에 불과하던 자작농의 비율이 3할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작농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농가경제가 향상된 결과가 아니라 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작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강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

(103) 『자유신문』 1949년 2월 4일.

중에서도 토지를 강매당하였거나 강매당하고 있는 농민이 허다할 만큼 고초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지주들의 토지강매로 인하여 유일한 생산도구인 농우를 방매해서라도 토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활난에 허덕이는 상황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이 결과 농민들은 불법적인 지주들의 토지강매 행위를 막기 위하여 토지매매를 즉시 금지시키든가, 아니면 농지개혁을 시급히 실시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49년을 전후하여 지주들의 토지강매 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가 강력히 지주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하루라도 빨리 농지개혁을 실시할 것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지주를 상대로 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다음 기사는 시흥군에서 지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농민이 재판을 통하여 법적인 해결을 모색한 경우이다.

토지개혁을 앞두고 지주와 소작인 간에는 구구한 의론으로 왕왕 불미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당국에서 이에 대한 원만한 조처를 하여 주기를 더욱 요망하고 있는 이때, 또 소작인으로부터 지주를 상대로 쟁의조정을 申込한 사실이 있다. 즉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리 198번지 尹弼鉉 씨는 전 외무부장관 장택상 씨를 상대로 쟁의조정 申込을 법원에 제출하여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흥리 397번지 밭 417평을 십여 년 전부터 동 윤씨가 소작하여 왔던바, 4280년 가을에 이르러 이 토지를 장택상 씨가 사게 됨에 따라 작년 가을에 소작료를 官定 가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賭地를 납부하려 하니, 지주인 장씨는 분개하며 현물 납부를 요구하는 동시에 "만약 불응하면 소작권을 박탈하겠다" 하며 소작권 포기를 요구하였다 한다. 그 후 동 소작인 윤씨는 수차 지주를 찾아갔었으나 삼엄한 경계로 인하여 면대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주는 아직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 봄에는 지주가 동 토지 일부분을 직접 경작 파종함으로써 소작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여 달라고 申込

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04]

이 기사는 시흥군 동면 시흥리의 윤필현이라는 소작인이 전 외무부장관 장택상을 상대로 소작권의 일방적 박탈에 대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실례이다. 비록 1947년 장택상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이후 소작인과 지주의 소작료 수취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작권 박탈 사례이지만 토지개혁을 앞둔 시점에서 지주와 소작인이 직접 충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식량수집법에 의해 지주가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인에게 현물 소작료 납입을 요구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을 앞두고 자기가 소작하고 있는 토지의 소작권, 즉 장래의 토지매수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농민의 대응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농지개혁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면사무소는 지주와 농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까. 물론 면사무소는 법률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말단 행정 단위에 불과한 만큼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위치한 만큼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주나 농민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면장의 입장에서 전년도 상환곡의 상환을 받기 위해 농민들을 일정하게 배려하는 내용의 공문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始秀 제 호

단기 4284년 11월 20일

수암면장

각 이장 前

4283년도 미상환금 정산의 건

首題之件 경기도 농림부 당국 지시에 의하야 11월 20일 한 대금수납 사무를 완료하고 11

(104) 『서울신문』 1949년 7월 29일.

월 21일 현재 미납액에 한하야는 일단 금년산 추곡으로 납부케 되었으나 20일 현재 수납액이 국고로 송금되는 기간을 이용하야 일반 농민의 식량사정 기타 경제 면을 鑑하야 본직 자의로 좌기 시일까지 미납액을 수납하야 道 금고로 즉송코자 하오니 區內 미납자가 유할 시는 본 기간을 이용하야 필히 금액을 납부토록 특단 노력을 가하심을 務望함.

記

1. 납부기일 : 11월 22일 오후 2시 한(기간 엄수)

1. 납부장소 : 본 면 농지계

추신 : 단 본 통지는 상부 지시가 아니고 본직 자의 방침이온즉 현금으로 수납하야 도에 즉납타가 인수치 아니할 시 반환할 事도 유함.

이 공문은 수암면장이 1952년 가을의 시점에서 1951년도 미상환금의 상환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1952년 11월 20일 현재 대금수납 사무가 종료되었으나 '일반 농민의 식량사정 기타 경제 면' 에 비추어 볼 때 1952년산 추곡으로 미납액을 대신할 경우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자의적이지만 이틀 연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면장으로서 미완료 사무를 처리하면서도 농민의 경제 및 식량 사정 등을 배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사례만으로 면사무소가 농민을 위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면사회(對面社會)인 면 단위에서 면장이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지시만을 강요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농민의 동향

경기도의 경우 일반농지는 논 5만 2,152정보, 밭 2만 9,498정보, 합계 8만 1,650정보가 일반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귀속농지를 합하면 총 11만 5,033정보, 3억 4,509만 9,000평이 농민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 농지개혁 결과를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여기서 제시된 수치는 앞의 수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집계과정에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표 10〉 경기도 시군별 농지분배 결과[105]

(196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정보)

지역	매수농지				귀속농지				합계			
	농가호수	분배면적			농가호수	분배면적			농가호수	분배면적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인천	4,474	1,530	673	2,203	3,407	1,023	657	1,680	7,881	2,553	1,330	3,883
수원	1,918	431	303	734	2,322	672	288	960	4,240	1,103	591	1,694
의정부	908	242	178	420	186	10	45	55	1,094	252	223	475
양주	11,111	3,287	2,667	5,954	869	223	234	457	11,980	3,510	2,901	6,411
여주	9,276	3,006	1,570	4,576	505	259	159	418	9,781	3,265	1,729	4,994
평택	10,681	4,600	1,676	6,276	4,412	765	364	1,129	15,093	5,365	2,040	7,405
화성	18,843	5,533	3,156	8,689	2,318	1,432	604	2,036	21,161	6,965	3,760	10,725
시흥	6,900	2,716	1,328	4,044	990	341	458	799	7,890	3,057	1,786	4,843
부천	5,970	1,395	639	2,034	3,295	581	451	1,032	9,265	1,976	1,090	3,066
파주	10,176	4,330	2,340	6,670	1,229	522	109	631	11,405	4,852	2,449	7,301
고양	7,508	2,891	1,099	3,990	3,761	1,048	572	1,620	11,269	3,939	1,671	5,610
광주	6,969	161	121	282	387	139	127	266	7,356	300	248	548
연천	101	15	25	40	16	7	15	22	117	22	40	62
포천	4,494	986	1,069	2,055	130	48	65	113	4,624	1,034	1,134	2,168
가평	2,470	196	263	459	105	7	20	27	2,575	203	283	486
양평	7,385	433	138	571	365	515	636	1,151	7,750	948	774	1,722
이천	10,735	4,081	1,915	5,996	1,427	291	176	467	12,162	4,372	2,091	6,463
용인	10,125	3,044	1,744	4,788	2,306	448	230	678	12,431	3,492	1,974	5,466
안성	12,645	4,261	2,126	6,387	1,569	513	142	655	14,214	4,774	2,268	7,042
김포	7,661	3,578	1,160	4,738	1,478	835	98	933	9,139	4,413	1,258	5,671
강화	9,282	3,967	766	4,733	336	221	71	292	9,618	4,188	837	5,025
38이남 소계	159,632	50,683	24,956	75,639	31,413	9,900	5,521	15,421	191,045	60,583	30,477	91,060
연천	1,682	631	550	1,181	664	45	13	58	2,346	676	563	1,239
포천	782	261	107	368	17	2	4	6	745	263	111	374
38이북 소계	2,464	892	657	1,549	681	47	17	64	3,145	939	674	1,613
합계	162,096	51,575	25,613	77,188	32,094	9,947	5,538	15,485	194,190	61,522	31,151	92,673
70.12.31. 누계 집계결과	168,219	64,839	28,900	93,739	31,700	14,700	8,252	22,952	199,919	79,539	37,152	116,691

(1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3, 1984, 116~117쪽.

〈표 10〉에서 시흥군의 농가호수 대비 분배면적을 보면 각각 7,890호, 4,843정보이다. 즉 1호당 0.613정보의 농지를 분배받은 것이다. 경기도 38선 이남지역 평균은 0.477정보이다. 이 시흥군의 분배면적 수치는 경기도 내에서 파주군과 김포군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뒤를 이어 양주, 이천, 연천, 강화 등의 순으로 많은 분배면적을 받았다. 이를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자. 농지개혁사업을 정리해 가던 197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농지분배 상황을 보면 농가호수 167만 1,270호에 분배면적이 60만 4,867정보였다. 즉 1호당 0.362정보를 분배받은 것이 된다. 이를 시흥군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시흥군이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분배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흥군의 농민들은 평균적으로 전국이나 경기 전체의 농민보다 많은 농지개혁의 혜택을 입었던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평균 수치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와 경위로 경기도와 시흥군의 분배면적 수치가 전국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앞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표 1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가들이 분배받은 전체 수배농지의 면적은 1,430만 4,541평으로 이 중 논이 907만 2,070평, 밭이 523만 2,471평이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수배농지 중 논이 63.4%, 밭이 3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흥군 내 수배농지의 크기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수암면이 전체 수배농지의 20.4%를 차지하여 1위이며, 다음으로 군자면(15.4%), 안양읍(13.6%), 서면(13.2%), 동면(13.0%), 남면(9.8%), 신동면(9.5%), 과천면(5.1%)의 순이다. 논의 경우 전체 순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수암면(22.2%), 군자면(18.2%)은 논밭을 합한 전체 농지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이는 수암면, 군자면 농지 중에서 논의 비율이 다른 읍면에 비해 더욱 높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수배논면적 중 수암면, 군자면의 논면적을 합한 비중은 40.4%에 이른다. 즉 전체 수배논면적 가운데 수암면, 군자면의 논면적이 4할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밭의 경우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전체 수배밭면적 중 수암면의 비중이 17.2%를 차지하여 여전히 높지만 그 이하의 순위에서는 안양읍

〈표 11〉 시흥군 분배농지 수배자조서 집계표[106]

읍면별	전체 농지					
	수배농지(평)			총상환액(석)		
	밭	논	계	밭	논	계
안양읍	823,297 (15.7)	1,116,417 (12.3)	1,939,714 (13.6)	7,293.44 (17.0)	17,067.64 (12.2)	24,361.08 (13.4)
과천면	352,470 (6.7)	383,976 (4.2)	736,446 (5.1)	2,628.39 (6.1)	5,869.77 (4.2)	8,498.16 (4.7)
신동면	741,664 (14.2)	615,546 (6.8)	1,357,210 (9.5)	6,835.72 (15.9)	9,696.03 (7.0)	16,531.75 (9.1)
동 면	647,436 (12.4)	1,205,916 (13.3)	1,853,352 (13.0)	4,780.93 (11.1)	17,489.67 (12.5)	22,270.60 (12.2)
서 면	647,777 (12.4)	1,238,985 (13.7)	1,886,762 (13.2)	4,450.12 (10.4)	19,080.55 (13.7)	23,530.67 (12.9)
남 면	566,483 (10.8)	840,442 (9.3)	1,406,925 (9.8)	4,491.75 (10.5)	11,972.22 (8.6)	16,463.97 (9.0)
수암면	898,198 (17.2)	2,015,301 (22.2)	2,913,499 (20.4)	7,595.40 (17.7)	32,229.25 (23.1)	39,824.65 (21.8)
군자면	555,146 (10.6)	1,655,487 (18.2)	2,210,633 (15.4)	4,851.80 (11.3)	26,051.71 (18.7)	30,903.51 (16.9)
계	5,232,471 (100.0)	9,072,070 (100.0)	14,304,541 (100.0)	42,927.55 (100.0)	139,456.84 (100.0)	182,384.39 (100.0)

(15.7%), 신동면(14.2%), 동면(12.4%), 서면(12.4%), 남면(10.8%), 군자면(10.6%)의 순이다.

또한 수배농지의 읍면별 비중과 총상환액의 읍면별 비중은 당연히 같은 경향을 보인다. 〈표 11〉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읍면별로 약간 수치를 달리하는 경향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이는 논밭의 면적별 비율과 수확량을 표시하는 농지 등급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논밭을 막론하고 수배농지 평균 비율보다 더 많은 상환액을 부담하고 있는 읍면으로는 수암면과 군자면을 들 수 있다. 즉 이들

(106) 『단기 4287년 분배농지수배자별대장(시흥군)』. 매수농지와 귀속농지의 통합분임.

두 개 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밭 비율을 넘어 더 많은 상환액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들 두 개 면에 비옥한 농지가 다른 읍면에 비해 더 많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상의 시흥군의 농지개혁 과정을 보면 다음의 세 가지를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흥군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주의 수가 월등히 많거나 지주가 아주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강고한 세력을 가진 지주들은 농민들의 소작권을 이동시키거나 식량수집정책을 무시할 정도로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농지개혁 과정에서 영세지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흥군에서 지주들의 상당수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강매하여 농지개혁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둘째, 농지개혁 과정에서 면장이나 면사무소는 정부의 행정 시책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농민의 식량 및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농민들에게 유리한 여러 시책을 강구하였다. 셋째, 시흥군의 농민들은 농지개혁을 통하여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농지를 분배받았다. 시흥군의 농민들은 1호당 0.613정보, 약 1,839평의 농지를 분배받아 파주군과 김포군에 이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농지를 분배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면적은 당시 농민이 '경작하여 다섯 식구가 먹고 지내기 어려운 면적' 으로 간주된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농민의 숙원인 토지소유의 열망을 최소한으로만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주의 소유농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한 농지개혁은 종합적인 농민 · 농촌 · 농업 대책과 연결되어 갈 때에만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었다.

최영묵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3장 새마을운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1970년 4월 22일에 개최된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처음으로 제창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출범사업은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불린 농촌에서의 환경정비사업이었다. 이 새마을가꾸기사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자 정부는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초창기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힘입어 점차 도시·공장 등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새마을운동을 단순한 농촌 환경정비사업이 아닌 '국민운동'이자 '정신혁명운동'으로 부각시키기에 이른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농촌 새마을운동을 전개한 배경에는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소외되고 농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놓여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농민과 농촌사회를 정치적으로 포섭하려는 정권의 의도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단순히 정권의 어용캠페인으로 폄하하고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태도는 새마을운동의 풍부한 의미를 가두는 효과를 발휘한다. 시흥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헌신했던 많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들은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매우 큰 계기로 작용했으며, 자신들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었다고 공통적으로 회고한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대통령 박정희 1인의 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전의



▲ **새마을가꾸기 촉진대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가꾸기사업'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농촌 근대화 담론과 재건국민운동 및 각종 증산운동 등의 역사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된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회고담을 듣거나 회고록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의 농촌사회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농민들의 근로의욕과 개척의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묘사되곤 한다. 이 같은 회고에는 일면의 진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이전의 농촌사회가 완전히 나태와 타성에 찌든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 내부의 권력구조와 여론 주도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독려하고 있었다.

1. 1970년대 초반까지의 농촌상황 – 소래면의 사례

시흥지역의 농촌근대화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전개되었으나,

1960년대의 경우 관의 지원여부 등에 따라 동 · 리 간에 편차가 존재하였고 같은 면 내에서도 근대화 정도가 비균질적인 상황이었다. 1971년 소래면을 취재한 기사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단계의 시흥지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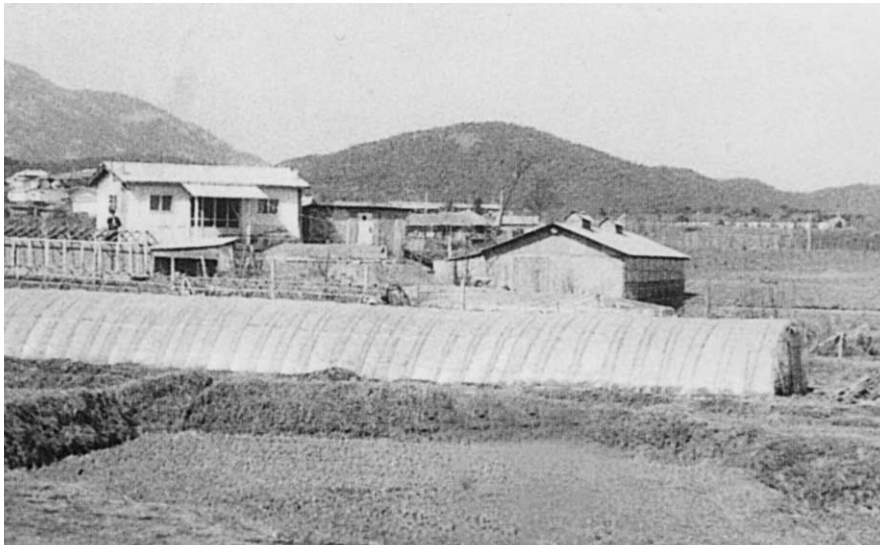
당시 소래면 총무과장이었던 전영환(全榮煥)은 소래면의 근대화 우수지역으로 도창리, 안현리, 은행리, 미산리를 꼽았고, 근대화 미흡지역으로 포1리를 지목했다.

소래면 도창리 점말은 경지 78㏊에 31호의 농가가 있는 평범한 농촌마을이나, 이 마을에는 일찍부터 전기시설과 상수도시설이 설비되어 마을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1971년 6월 전기개통으로 점말 주민들은 밤에도 낮처럼 환한 전깃불 아래 생활하게 되었다. 또한 상수도설비로 수도꼭지만 틀면 24시간 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1970년 12월에는 총시설비 57만원(군비 지원 30%, 마을부담 30%)을 투입하여 공동빨래터를 설치하였다. 마을 한복판에 공동빨래터가 생김에 따라 여성들은 빨래터에 모여 함께 빨래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소래면 미산리는 부녀회(1971년 회장, 김간난) 활동이 활발하였다. 부녀회에서는 매월 25일을 정기 친목회일로 정하고 요리강습, 은행계, 기타 생활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마을 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합심하여 참여하였다고 한다. 미산리에서는 부엌개량이 1964년에 이미 이루어져서 조리대시설 등을 갖춘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다. 1971년 무렵에는 변소개량사업도 진행 중이었다. 비록 용변탱크에 시멘트를 바르고 뚜껑을 덮는 식의 개량이었지만, 생활공간을 보다 근대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소래면 은행리에서는 1967년부터 지붕개량사업이 시작되어 1971년에 총 39호 중 37호가 지붕개량을 마쳤을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었다. 은행리는 경지정리도 비교적 일찍 진행되었고, 탁아소 같은 공동편의시설이 마을 내에 운영되고 있

(107) 김동식, 「상수도 있는 은행리」, 『월간경기』 1971년 8월호; 박주농, 「구태의연 속의 포리」, 『월간경기』 1971년 8월호.



▲ 1970년대 소래면 은행리 검바위마을

었다. 문화시설 면을 보면 1971년 무렵 라디오는 집집마다 거의 구비되어 있었고, 텔레비전도 마을 내에 4대나 들어와 있었다. 은행리에서는 포도, 복숭아 같은 과수작물이나 고추 등을 재배하는 근교농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렸고, 이 덕분에 은행리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텔레비전 등의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은행리에서는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농사개량구락부, 학술개선구락부, 생활개선구락부, 4H구락부 등의 모임을 토대로 주민들이 마을일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지정리 등 마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에는 농촌지도소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반면 포리는 1970년대 초반까지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지목되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포1리 내 20여 호가 타향으로 전출할 정도로 포리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 있었다. 400여 정보에 달하는 염전지대는 예전의 활기를 잃고 묵은 땅이 되었고, 타 지역과 달리 지붕개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방 이전 포리는 어업이 활발하던 곳이었다. 기계배의 도입과 포리호납북사건 이후 어민들은 어업을 포기하고 농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나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염전의 음성수입이 횡행하여 마을 주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였고, 부패와 태만의 기풍을 야기하였다. 1960년대의 고리채 정리와 축산장려정책도 모두 실패하였고, 1970년에 시행된 새마을가꾸기사업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염전의 쇠락과 농토의 제한이라는 조건 아래, 주민 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목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에도 소래면에서는 지붕개량사업, 경지정리, 전기 및 상수도시설 설비,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등이 전개되었으며, 각종 구락부와 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일을 공동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을 간의 극심한 편차가 말해 주듯이 1960년대 농촌개발은 아직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전면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관의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 이루어진 일부지역의 개발은 새마을운동의 농촌근대화 방향을 예고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대체로 상징적 차원에 머물렀고, 1960년대 말까지도 농촌개발사업은 미성취영역이 성취영역을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2. 새로운 주체의 탄생 – 새마을연수교육

1970년 새마을가꾸기사업 이래로 진행된 새마을운동은 그 이전의 농촌 근대화운동과 질적 · 양적으로 차원을 달리했다. 전국의 모든 시군 단위에 대한 농촌 지원 · 개발 프로젝트가 새마을운동이었기에 시흥군에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 바람의 추동인자는 바로 '새마을지도자' 였는데, 이 개념은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기의 중견인물이나 1950~1960년대의 농촌 청년층에 대한 주목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전개방식 또한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서 마을 주민들을 운동의 대열로 이끄

는 방식을 공공연히 내세웠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9월 17일 전국 시장·군수 비교행정회의에서 말한 다음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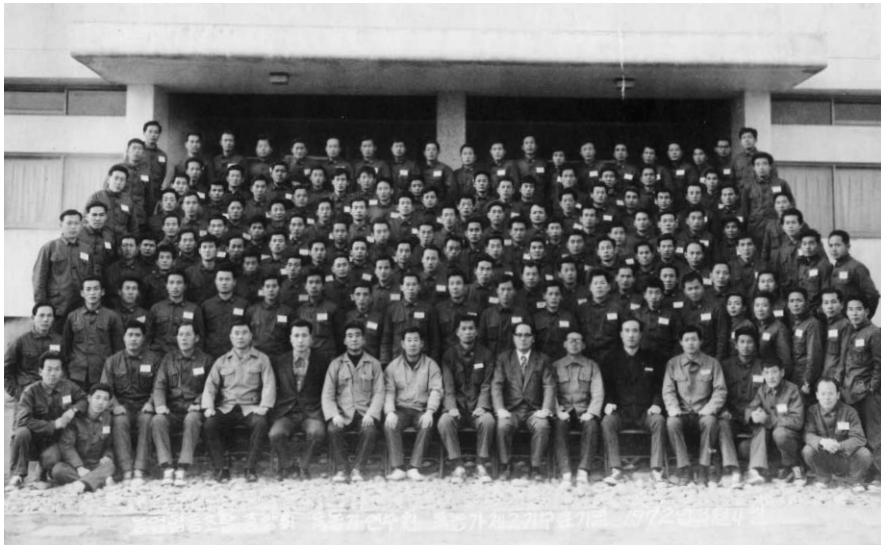


▲ 경기도 농촌진흥원 정착지도지역 안내판

>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새마을 가꾸기 정신을 국가개발의 기본정신으로 삼아, 그 계몽에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젊고 패기 있는 일꾼들을 찾아내어 훈련시켜 농촌지도에 앞장서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새마을가꾸기운동이 성공하려면, 먼저 그 부락의 지도자양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농촌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새 물결이 아래위로 파고 들 때, 이 운동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파급될 수 있는 것이다.(108)

1972년 1월 농림부에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는 독농가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고양군 농협대학 구내에 독농가연수원을 개설하였다. 이 독농가연수원은 1973년 4월 수원의 농민회관으로 이전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명칭도 독농가연수원에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초창기인 1972년에는 새마을완성부락의 지도자와 각 도의 새마을 담당 공무원만 연수교육을 받았으나,

(108)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지도자연수원 10년사』, 1982, 11쪽.



▲ **독농가 연수** 농림부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해 독농가연수원을 개설하고 지역 지도자들을 교육하였다.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미산리 새마을지도자였던 전숙도의 경우 시흥군의 추천으로 고양군 농협대학 내 독농가연수원에서 연수교육을 받았다. 2주간 제복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군대식으로 교육을 받은 그는 처음에는 불만히 많았다고 한다. 마치 '인민군' 같이 제복을 입고 2주간 꼼짝 못하게 되자, "우리 공산주의 세뇌교육 받는 거냐? 왜 이렇게 자유가 없느냐?"고 불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의식과 태도가 변해 가고 있음을 느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가 밥그릇에 밥풀이 남아 있는 것을 질타하는 내용이나 치약이나 비누의 절약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를 들으며, 그는 이것을 일종의 '생활혁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교육에서는 노동의 신성함과 절약의 소중함 같은 일상적으로 실천가능한 미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새마을지도자가 국가발전을 이끌고 나갈 중요한 인재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면담자 : 독농가연수원에서는 주로 정신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술자 : 거기서는 주로 양심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가면 국회의원 출마하라 이거야. 이런 양심적인 사람이 국회의원 나가야 제대로 운영하지 지금 썩은 정치인들이나 하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한다고. 거기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구요,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 전에 대통령이 그랬어요. 후손들이 아버지 그 전에 뭐 했냐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했었다고 그러라고. 그때 초창기에는 진짜 새마을지도자들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을 많이 했죠.〈미산리 새마을지도자 출신 전숙도의 구술〉(109)

독농가연수원의 교육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대비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며, 양심적인 자신들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신성한 책무와도 같았다. 그리고 이들 새마을지도자가 이 신성한 책무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고, 새마을연수교육 이후에는 자기 마을에서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었다.

면담자 : 농협대학 안에 독농가연수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건가요?

구술자 : 농업 관련 업무 쪽으로는 농촌지도자 역할,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지도자 역할인 거지. 우린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인데 불러다 시킨 거지. 그때는 참 순진했지. 뭔가 시키면 물불 모르고 일했으니까. 난 집에 들어오면 더워서 우와기 벗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일을 하지 땀에 젖어 일을 못 해.〈군자리 새마을지도자, 군자면장 출신 이형수의 구술〉(110)

(109)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43쪽.
(110)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285쪽.

독농가연수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새마을정신, 자율적 향토질서 유지, 농촌환경개선, 농민지도기법, 현지시찰, 성공사례 발표, 고소득영농,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교과명을 살펴보면, '애국애향관 확립, 국민교육헌장과 국민윤리, 자립정신과 자립경제, 새 역사의 창조,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농촌의 문제점과 해결책, 협동정신의 발양, 농촌근대화를 위한 정신적 기초, 공공사회질서, 새마을농촌 건설, 농촌지역개발 계획, 농민지도 방법, 리더십, 생각하는 농업경영, 통일벼 집단재배' 등이었다.[111] 교과명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새마을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업이며, 새마을지도자는 이 위대한 과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군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 바탕 아래 농민지도 기술이나 새로운 농업기술, 농업경영법 등 실질적인 활용기법을 학습받았다. 새마을영화 관람이나 성공마을 현지시찰, 분임토의 등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치밀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새마을지도자는 "농촌 근대화작업에 앞장서 무엇인가 해 보려는 의욕이 생겼다", "꿈에서 깨어난 느낌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느꼈다"와 같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각성과 의욕적 자세를 갖게 되었다.[112]

3. 새마을지도자의 열성 – 포1리의 사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지도자에 의해서만 좌우된 것은 아니었으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농촌 깊숙이 농민들에게 알리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음은 틀림없다. 내무부에서 간행한 『새마을운동 10년사(자료편)』에는 1979년 12월 28일 개최된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소래면 포1리 새마을

(111)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지도자연수원 10년사』, 1982, 142~143쪽.
(112)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지도자연수원 10년사』, 1982, 148쪽.

지도자 이영득이 새마을 포장을 서훈받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1971년 무렵만 하더라도 소래면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던 포리를 시흥에서 가장 모범적인 새마을운동 성공마을로 변모시킨 일은 새마을지도자였던 그의 열성과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 1960년대 소래면 포리

1945년 포리에서 태어난 이영득은 포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학교를 다녔다.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대학교육까지 받고 군복무를 마친 뒤 회사생활을 하던 그는 1971년 무렵 부친의 병환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고향으로 돌아온다.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군대에서 근대적 기술을 경험한 그가 포리로 돌아와서 고향마을을 바라보았을 때 받은 느낌은 초라함이었다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마을 개발위원이 된 그는 수원 시민회관에서 새마을 교육을 받으면서 쇠락해진 고향마을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선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높이고자 이웃집을 방문하여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을 여성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남편들의 노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든가, 재래식 부엌에서 살림하는 것이 어렵다든가 하는 정보를 얻었다. 그 다음에 그는 마을 내 노름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포리호사건 이후 어업이 쇠퇴하고 염전이 위축된 가운데 외지인의 출입이 빈번하던 포리에서는 술과 노름이 번성하였다. 마을에서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노름판을 뒤엎고 다니는 이 젊은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름판에 있던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를 피해 나



▲ **포리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을 통해 낙후된 포리를 발전시킨 공로로 새마을포장을 받기도 했다.

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저수지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노름판을 뒤집으러 다니는 새마을지도자는 일종의 공공적 정의의 실현자와 같은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고, 반면 숨고 도망다니며 노름하는 이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영득이 마을 내 노름판을 정리하면서 획득한 도덕적 정당성은 그의 마을개발 활동에 중요한 자산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4H클럽 활동을 하면서 소득증대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4H클럽경진대회에 참가하면서 유휴지 활용이나 각종 작물재배 등에 대해 연구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는 새마을운동 과정에서도 마을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하려 하였다. 1970년대 초반 그가 의욕적으로 시도한 소득증대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물질적 기반이나 후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의 의욕도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초기 소득증대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그는 계몽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힘썼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10대를 대상으로 야학을 열고, 교회 유치도 추진했다. 교인이 아니었던 그가 교회를 마을에 유치한 이유는 마을 젊은이들의 정착과 주민들의



▲ **한미재단 새마을부락 간담회** 한미재단의 농촌개발 지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윤리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 염전을 끼고 있는 포리의 특성상 계절노무자가 많았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노동특성이 술과 노름으로 흥청망청하는 풍조를 낳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회를 통해 이들의 마을정착과 문화개조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염전 노동자들이 염전에서 소금을 조금씩 빼돌려 다른 생필품을 구매하는 관습을 그는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교회는 세속적인 노동자들을 윤리화시켜 줄 기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교회의 설립과 운영은 간단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풍토 변화와 윤리화를 목표로 유치한 교회는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갈등을 낳았고, 기복신앙을 따르던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당시 기복신앙을 믿는 주민들이 교회 유리창에 인분을 투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포리 새마을운동이 탄력을 받게 된 중요한 계기는 1970년대 중반 새마을지도자인 이영득이 한미재단에 취직한 것이었다. 당시 한미재단은 농촌개발 지원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4H클럽 활동경험이 있던 이영득은 농촌지도소의 소개로 한미재단에 들어가 농촌개발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담당관이 되었다.



▲ 포리의 마을길 확장

포리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는 한미재단의 선진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학습하였고, 포리의 새마을사업에 적용하였다. 지붕개량, 지붕도색, 농로 및 도로 확장, 하천정비, 사방공사와 같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중 가장 많은 난관에 부딪친 일은 마을길을 넓히는 길이었다. 지주들에게 땅의 희사를 요청하며 동의를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쳤다. 그가 지주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을 거쳐서 희사동의를 받아 낸 뒤에는 확장대상도로 옆에 있는 무명의 무덤들이 걸림돌이 되었다. 무덤 옆에 페인트로 묘지주인을 찾는다는 간판을 써 붙인 뒤 묘지 주인을 기다렸다가 몇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마을 청년들이 직접 화장을 하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마을길을 넓힐 수 있었다.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마을길은 주민 모두가 바라보고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을길의 확장은 중요한 새마을운동의 공간적 상징물이었다. 넓어진 마을길을 통해 마을의 구체적인 변화와 새마을운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었다.

포리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가장 큰 사업은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이었다. 마



▲ 포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 포리 간이상수도 통수식



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던 우물은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고,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위생적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희망 아래 간이상수도 설치가 추진되었다. 포리는 샘물이 귀해서 산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유압식으로 물이 내려가게 하는 시설을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야 했다. 전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 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결속이 전적으로 중요했다. 이영득은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는 그 과정을 일종의 최면걸기라고 회고한다.

내가 그때 당시 총각이니까 회사에서 오면, 콜라 · 빵을 먹고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사람들한테 마이크로 설득을 하는 거야. …… 그 사람들한테 최면을 걸 정도로 하는 거야 최면을. 아침에 5시 6시 때 음악 나와서 하고, "오늘도 새마을사업을 해야 하는데 매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렇지만 이는 우리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니까 용기를 갖고 이불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양말도 신고 바지도 입고 장갑 꼭 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고 삽이나 곡괭이 들고 대문을 열고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가." 이런 식으로 최면을 거는 거야. …… 그러면 "아, 이 사람아 그만해, 사람들 지금 한 오륙십 명 나왔어." 그렇게 해서 결속도 하고.〈포리 새마을지도자 출신 이영득의 구술〉[113]

포리 주민들이 단지 이영득의 방송 때문에 간이상수도 작업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간이상수도가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편리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마을일이니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참여동기를 증폭시키는 데 새마을지도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며, 방송을 통한 설득작업은 일종의 '최면걸기'에 비유되듯이 주민을 규율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은 방송 마이크를 독점하였고, 주민들은 스피커를 통한 동원 압박을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로 시작되는 새마을노래를 아침마다 마을 방송으로 트는 것 또한 이 같은 규율화의 일환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동의 의미를 판단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새마을노래와 새마을사업 참여 독려방송을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 갔다.

한미재단에서는 전기시설, 기계시설, 마을회관 설립, 농약 분무기 등 각종 기구를 지원하였다. 또 이영득은 돼지와 소를 한미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육시켰고, 나중에 그것을 도축하여 주민에게 고기를 나눠 줌으로써 주민과의 유대 및 결속을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초창기에 실패했던 소득증대사업이 한미재단의 지원과 도로확장, 간이상수도 설치과정에서 생긴 주민의 근로 · 협조정신을 토대로 성

(113)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177쪽.

과를 나타내었다. 이후 포리는 새마을 성공사례로 각종 대회에서 발표되었고, 이영득은 새마을포장과 대통령하사금을 받기에 이른다.

4. 관의 지원과 마을 간 경쟁

새마을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국가는 최소 지원을 기반으로 마을 간 경쟁을 이끌어 냈고, 성공마을에 집중적인 지원과 포상을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

> 그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새마을처럼 지역적으로 정부에서 관장하고 지원하는 게 없었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맨 처음에 뭐 기초마을, 그 다음에 자조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 하나하나 단계 위에 올라가면서. 그걸 따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런 것을 주면서 동기를 부여해주니까. 자립마을 하면 이렇게 뭐 하사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을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일거삼득 일거오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포1리 새마을지도자 출신 이영득의 구술〉(114)

1972년 내무부에서 발간한 『새마을총람』에는 전국 군(郡) 단위의 행정리동별로 각종 통계와 '기초마을 · 자조마을 · 자립마을'로 구성된 새마을구분을 명기해 두었다. 197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이 자료에는 새마을구분이란 새마을가꾸기사업의 지원구분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즉, 기초마을은 이 자료의 조사연도인 1972년 새마을가꾸기 지원대상이 아닌 마을을 의미하며, 그 다음 단계인 자조마을은 1972년 지원대상 중 자립마을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해당되

(11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185쪽.

고, 최상의 자립마을은 1972년 지원 대상마을 중 우수마을을 뜻하였다. 이 같은 평가구분은 곧 국가의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현 과천, 광명, 군포, 안산, 안양, 의왕 등을 포괄하던 1972년 당시 시흥군에는 총 166개의 동리(洞里)가 존재했으며, 이 중 기초마을이 56개, 자조마을이 95개, 자립마을이 15개였다. 이를 2006년 현재 시흥시 행정구역 중심으로 재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1972년 수암지역 동리별 새마을지표[115]

동리명	새마을 구분	지도자		호당경지 면적	가구			인구	지붕개량	
		성명	연령		계	농가	비농가		개량	미개량
화정1	자조	김종덕	35	1.8	74	70	4	442	43	33
화정2	자조	김연권	41	1.8	52	51	1	307	4	48
능곡1	자조	이길우	31	1.2	58	41	17	284	19	39
능곡2	자조	권근행	40	1.2	34	30	4	199	13	21
하중1	자조	권지수	40	1.5	86	76	10	485	57	49
하중2	자조	최영택	42	0.6	121	90	31	650	14	95
하상1	기초	권종필	38	6.6	43	38	5	232	5	38
하상2	기초	박선관	32	1.3	48	48		274	28	35
광석리	자조	정광현	34	1.2	74	58	16	445	67	24
물왕1	자조	김재만	37	1.2	54	51	3	294	17	51
물왕2	기초	박명현	42	1.5	64	57	7	351	16	53
산현리	기초	윤명열	34	0.9	74	65	9	383	28	56
논곡리	자조	편영범	39	1.2	103	91	12	654	24	79
목감1	자조	신영식	42	1.4	55	40	15	292	13	48
목감2	기초	이재연	37	1.4	69	42	27	424	30	46
계(평균)			37.60	1.65	1,009	848	161	5,716	378	715

1972년 8월 16일 경기도에서는 제1차 새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로써 도내 285개 부락을 '새마을완성부락'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새마을완성부락이 바로 '자립마을'과 일치한다. 이는 시흥군을 포함한 각 시·군의 평가를 경기도에서 수렴하

(115) 내무부, 『새마을총람』, 1972, 102~103쪽. 화정리 일부는 1995년 이후 안산으로 편입되었다.

〈표 2〉 1972년 군자지역 동리별 새마을지표[116]

동리명	새마을 구분	지도자		호당경지 면적	가구			인구	지붕개량	
		성명	연령		계	농가	비농가		개량	미개량
거모1	자조	안진호	38	1.1	115	35	80	556	94	13
거모2	자조	안종면	50	1.1	216	128	88	1,119	139	99
거모3	자조	정원기	41	1.1	127	102	25	762	24	116
거모4	자조	김영권	37	1.1	91	51	40	536	15	60
군자1	자조	류제훈	50	1.2	59	44	15	340	22	56
군자2	자조	이형수	36	1.2	85	76	9	457	27	58
장현1	자립	최화형	42	1.6	57	54	3	336	14	58
장현2	기초	권은장	37	1.6	33	30	3	192	12	28
장곡1	자조	이수환	47	1.5	82	63	19	435	16	68
장곡2	자조	정태호	45	1.5	84	65	19	413	7	109
월곶1	자조	이경하	42	1.1	126	94	32	662	28	128
월곶2	자조	안용옥	55	1.1	161	95	66	953	27	135
정왕1	자조	김준성	35	1.0	63	59	4	364	14	51
정왕2	자조	민순학	48	1.0	91	63	28	475	20	73
정왕3	기초	원무상	44	1.0	116	95	21	692	17	89
정왕4	자조	예정봉	62	1.0	191	68	123	1,167	59	137
정왕5	기초	윤동민	39	1.0	87	10	77	411	41	66
정왕6	자조	연광현	40	1.0	191	25	166	1,028	39	159
죽율1	기초	한준석	40	0.8	71	56	15	393	25	50
죽율2	자조	문성기	33	0.8	25	4	21	393	26	52
죽율3	자조	안승재	53	0.8	66	59	73	69	20	52
계(평균)			43.52	1.12	2,137	1,276	861	12,053	686	1,657

고 각 도(道)의 평가를 국가가 수렴하여 새마을사업을 주관하는 내무부에서 『새마을총람』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마을을 '자립 · 자조 · 기초'로 구분 · 평가한 것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이들 '새마을완성부락'에 대해 마을별로 150만 원씩의 시상금을 주어 마을공동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117]

(116) 내무부, 『새마을총람』, 1972, 104~105쪽.

(117) 「道 새마을완성부락 2백 85개 부락 선정」, 『새마을경기』 1972년 9월, 102쪽.

〈표 3〉 1972년 소래지역 동리별 새마을지표[118]

동리명	새마을 구분	지도자		호당경지 면적	가구			인구	지붕개량	
		성명	연령		계	농가	비농가		개량	미개량
대야1	자조	한윤석	48	0.8	137	114	23	792	163	124
대야2	기초	곽윤수	38	0.8	128	87	41	616	103	25
신천1	자조	서형하	48	0.6	257	108	149	1,370	209	60
신천2	자조	이경전	47	1.1	123	97	26	728	104	50
신천3	자조	오대근	39	1.0	123	82	41	715	60	95
방산리	자조	이혁근	31	1.2	178	163	15	1,054	83	181
포1리	자조	이광태	31	0.4	144	131	13	783	75	129
포2리	자조	김경일	31	5.7	50	3	47	282	74	6
포3리	기초	윤석순	50	0.7	78	78	0	416	64	29
미산리	자립	정윤종	45	0.8	217	181	36	1,161	113	215
은행1	기초	윤태수	42	1.1	113	75	38	613	96	45
은행2	기초	윤창로	48	0.9	120	79	41	700	91	131
안현리	자조	김봉학	47	0.9	182	182	0	1,119	127	167
매화1	자조	함완식	38	1.8	68	65	3	399	25	27
매화2	자립	기노현	49	1.6	97	80	17	549	70	109
도창리	자조	정교채	32	1.0	130	115	15	699	82	88
금이리	자조	이규호	50		134	120	14	742	73	181
무지리	자조	차기남	37	1.3	128	124	4	679	89	150
과림1	기초	이희종	38	0.9	90	73	17	545	76	76
과림2	자조	주명환	44	1.0	131	89	42	743	88	141
과림3	기초	송성진	35	1.1	90	59	31	585	67	82
계수1	자조	이성범	40	0.6	198	179	19	1,213	198	89
계수2	자조	이종혁	38	1.1	140	102	38	702	100	87
계수3	자조	방한섭	35		400	228	172	1,751	383	40
계(평균)			40.88	1.10	3,456	2,614	842	18,956	2,613	2,327

앞의 세 표를 살펴보면, 현재의 시흥시에 포함되는 지역 내에서는 자립마을이 군자면 장현1리, 소래면 미산리, 소래면 매화2리의 3개 마을에 불과하였다. 국가

(118) 내무부, 『새마을총람』, 1972, 108쪽. 소래지역은 당시 시흥군이 아니라 부천군에 속해 있었으며, 위의 표에 포함된 계수리 일부는 1983년 이후 부천으로 편입되었다.



▲ 자립마을인 매화2리(1970년대)
▶ 기초마을인 은행1리(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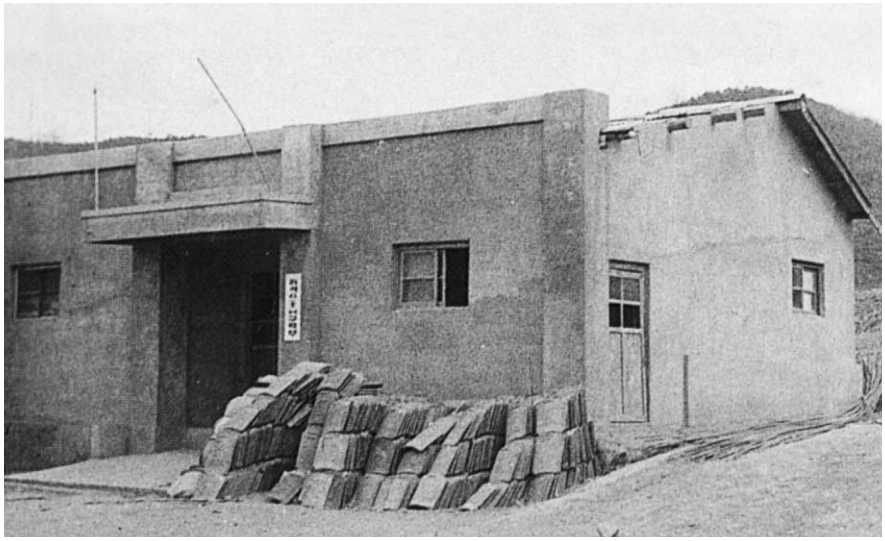
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마을이 15개였고, 대부분 '보통' 수준의 평가와 지원을 받는 자조마을이 42개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1972년 자료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일정 기간 후에는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42개 자조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자기마을을 자립마을로 상승시켜 더 많은 지원과 명예를 얻고자 주민을 독려하며 새마을운동에 열을 올렸다. 당시로서는 '새마을완성부락' 시상금인 150만 원이 마을공금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요인이었다. 농촌지역 내에 소문의 정치가 작동하여 "어느 마을에서 15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는데 우리 마을도 한 번 받아보자"는 식의 마을 간 경쟁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마을 간 경쟁은 철저하게 관에서 짜놓은 회로 안에 놓여 있었다. 관에서는 새마을사업을 일종의 '전투'와 같이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관의 생산자료를 살펴보면, '필승목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매우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새마을가꾸기 필승목표를 확립하여 주민의 명확한 목표의식에 입각한 자조 · 자립 · 협동 정신을 유발시켜 명백하며 능률적인 행정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자 모든 마을에 새마을사업 '리동 LODE NO'를 부여하고 '새마을 필승목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즉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총회에 회부한 뒤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명백히 다짐하고 확정지은 뒤 각 리동에서 확정된 계획서를 읍면과 시군에 제출하도록 하여 각 시군에서는 리동 LODE NO순으로 종합책자를 작성하였다. 또한 리동별 '새마을필승목표'를 리동 게시판과 마을 곳곳에 부착하고 가가호호 배포한 뒤 이를 다짐하는 새마을목표 필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119] 관에 의해 획정된 회로 안에서 주민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관이 설정한 형식 아래 주민들은 그 목표의 실현을 다짐하고 결의하도록 강제되었다.

〈표 4〉 새마을농촌건설 20개 표준사업(1972년 경기도 선정)

번호	사업명	번호	사업명
1	지붕개량	11	위생우물
2	농로	12	공동목욕탕
3	간이상수도	13	마을회관
4	마을안길확장	14	새마을광장
5	소하천제방	15	주택환경개선(부엌, 변소, 축사, 퇴비장, 울타리)
6	하수구	16	푸른마을가꾸기
7	사방(砂防), 조림(造林)	17	부락 1기 육성
8	공동빨래터	18	마을금고
9	메탄가스 이용시설	19	전화사업
10	분산농가집단화	20	통신사업

(119) 「경기도의 새마을 농촌건설」, 『새마을경기』 1972년 2월호, 29~30쪽.



▲ **수암면 능곡리 마을회관 건립** 지원받은 시멘트로 마을회관을 짓고 있다.

초창기 관의 지원은 잘 알려져 있듯이 시멘트지원에 집중되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이 막 시작되던 1971년에 시흥군에서는 새마을가꾸기사업용으로 총 5만 3,738포의 시멘트를 지원하여 주었다. 주민들은 이 시멘트로 마을진입로 확장, 하천뚝 보수, 공동우물 파기, 공동빨래터 만들기 등 총 4,0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120] 그 밖에도 상하수도시설 설비, 마을회관 건립, 제방 및 교량 건설 등의 사업을 관에서 제공받은 시멘트와 마을 주민의 노동력으로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

면담자 : 마을 사람 소집은 종을 쳐 가지고 하셨다구요?

구술자 : 그래. 인저 다 종이야. 종 쳐 가지고 …… 그 다음부터 앰프 허고. 인저 그 …… 부락에 그 …… 하수도 같은데 그 양회를 주면은 그 전엔 저거를 공구리루다가 정비하고 그러는 거 순 새마을운동에서 거의 다 한 거지. 양회를 인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 정비할 게 백 미터다, 오십 미터다. 그 하수도 넓이가 얼마다. 그러면

(120) 김광준(시흥군수), 「건설사업 깨끗이 매듭」, 『월간 경기』 1971년 12월호, 27쪽.



▲ **마을길 확장** 새마을사업에 지원된 새마을양회 시멘트로 마을길을 포장하고 있다.

대개 양회가 몇 푸대 들어간다는 게 나오잖어, 기술적인 거는. 그러면 양회를 갖다 주고, 요 정비소에 갖다 주면은 인저, 그 모래하고 자재만 갖다 주면 동네 사람들이 인저 다 새마을사업 하는 거야. 새마을사업 효과가 백 원을 들이면 만 원의 효과를 봤다는 게 바로 그거 아냐. 자재만 갖다 주지, 인건비는 동네 사람들이 해주는 거야, 응? 그리고 조금 돈이 나오는 건 뭐 하냐 하면, 그 일할 때 간식을 조금 사다 주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다 조금 더 발전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자재가 나오구 돈이 조금씩 나오더라구. 그랬다가 인저, 그것두…… 그것마저 안 되고, 관에서 다 주관을 해 가지고 인저, 관에서 그 저 …… 업자들 줘 가지고 그 새마을사업이 그렇게 자꾸 발전이 된 거지.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궁리해 가지고 나중엔 인저 …… 저 관에서 다 주도가 돼 가지고 다 했지.〈대야리 새마을지도자 출신 이광석 구술〉[121]

이광석의 표현처럼 새마을사업이 백 원을 투입하여 만 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

(121)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224쪽.

었던 것은 시멘트 중심의 최소지원에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결합시키는 새마을운동의 사업방식 때문이었다. 그만큼 주민들의 무임노동력이 새마을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의미한다. 또 새마을양회라는 시멘트 지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전에 관에서의 농촌지원이 그만큼 미미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시멘트가 새마을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농민들의 기억에는 '시멘트'가 가장 강렬한 관의 지원으로 남아 있지만, 1970년대 관의 입장에서는 새마을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시흥군에서는 1973년에 일반회계 4억 2,800만 원과 특별회계 1억 1,150만 원 등 총 5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8대 중요사업과 5대 특색사업을 추진하였다.

〈1973년 시흥군 8대 중요사업〉

① 새마을가꾸기사업

② 지붕개량사업

③ 소득증대사업

④ 농로개발사업

⑤ 새마을하천가꾸기사업

⑥ 도시미화정비사업

⑦ 주민보건향상

⑧ 관광개발사업

〈1973년 시흥군 5대 특색사업〉

① 새마을 표준 시범부락을 5개 부락 선정하여 새마을 농촌지도를 한다.

② 새마을 시범 육성부락 중 각 리에서 2명씩의 독농가를 선정, 174개의 독농가를 상대로 60만 원의 군비를 들여 농사경작법과 종자개량 등을 지도케 한다.

③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수암천을 개발하여 안양읍의 도시정화를 한다.

④ 도시의 공한지와 주택 주변 등 27만 6천여 평에 은행나무 등 관상수 33만 본을

심는다.

⑤ 관내 32개 노선과 부락 입구 등 길 옆에 코스모스 심기운동과 각 부락 단위 등에 정원만들기 등으로 꽃길만들기운동을 벌인다.

8대 중요사업 가운데 ①~⑤는 모두 새마을사업 그 자체이거나 깊이 관련된 것들이다. 1973년 시흥군의 새마을사업 관련 예산수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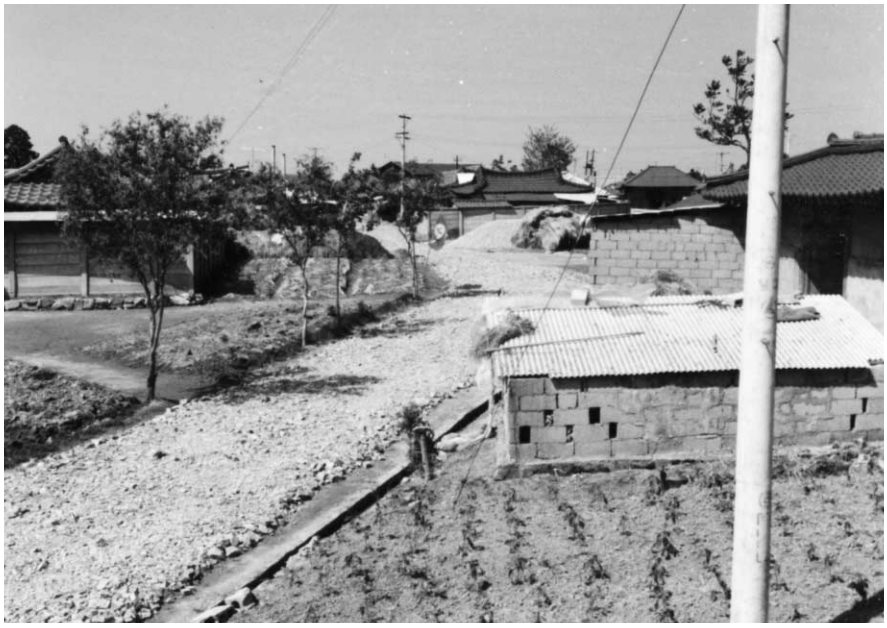
새마을가꾸기사업의 경우 시흥군에서는 기본사업비 8,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5만 5,0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보다 상세한 지원내역을 보면, 기초마을에 양회 500포와 철근 1t씩을, 자조마을에 양회 300포와 철근 0.5t씩을, 자립마을에 지역개발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원의 원칙은 자립마을이 자조마을에 우선하고, 자조마을이 기초마을에 우선 한다는 것이었다.

지붕개량사업에는 1억 2,500만 원의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중앙지원 1,630동 및 주민부담 1,316동 도합 2,946동의 지붕개량을 계획하였다. 지원기준은 1호당 보조 5,000원, 융자금 1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붕개량의 우선적인 추진대상은 주요 도로변, 도시주변, 관광지구변, 시범부락 등으로 중앙권력의 시선을 크게 의식한 전시행정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농로개발사업에는 총 943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 9개선에 총연장 7.4㎞를, 노폭 5m로 확장 및 신설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농로개발사업은 구조물 자재대와 측량비는 관에서 지원하고, 토공과 용지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었다.

새마을 하천가꾸기사업은 중천 3개소, 소천 1개소, 세천 3개소, 준용하천 2개소 도합 9개소에 6,540m의 하천을 사업비 2,57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직영사업

(122) 「우리군의 새해설계 : 김광준 군수」, 『시흥새마을공보』 1972년 2월호, 2쪽.



▲ 새마을사업으로 달라진 마을 풍경

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1973년 예산에 대한 실제 집행내역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산계획과 집행내역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후반의 새마을가꾸기사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에 비해 1970년대 후반기 관의 지원은 오히려 다소 줄고 주민부담금은 크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기 새마을가꾸기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77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5,1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주민부담금은 무려 7억 1,300만 원에 달했고, 연인원 40만 명이 동원되어 1만 7,552건의 사업실적을 거두었다. 1977년 이후 사업실적과 주민참여도는 하강세를 보이고, 1980년대 들어서는 실적, 참여인원, 주민부담이 모두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다.(123)

(123)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새마을운동」, 『시흥군지』 하, 1987, 183쪽.

5.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동원 사이

이 같은 관 주도의 새마을사업에 시흥 주민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라는 새마을운동의 대의명분에 동의하여 적극적으로 마을일에 나섰던 것일까? 아니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공동노동에 참여했던 것일까? 이는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마을마다 그 양상이 다를 것이고, 한 마을 내에서도 사람들의 태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는 당시 새마을지도자들의 회고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면담자 : 수도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도로는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요. 마을 주민 가운데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구술자 : 없죠. 그럴 순 없는 거야. 노인들만 살면 동네에서 그 양반들한테는 으레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젊은 놈이 있어서 빤질빤질하고 안 하면 지금처럼 얘기하면 '왕따'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마을에 살아. 아주 개망나니 같은 놈 아니면 나와서 다 하게 돼 있어.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야.

면담자 : 지붕개량도 강제로 이렇게 했나요? 동의 안 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구술자 : 아니. 동의 안한 집을 그 집을 뭐 하러 왜 해 줘. 그런데 그게 해 놓으니까 우선 지붕일을 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들여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 이응 엮고 그걸 하고 그걸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 울타리도 엮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러니 그걸 자기네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돈이 있으면 얼른 하고 싶은 거지, 강제성이라는 게 뭐 필요해.〈포1리 새마을지도자 출신 이영득의 구술〉[124]

(12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197쪽.

앞의 구술은 앞서 살펴본 포1리의 새마을지도자 이영득의 구술내용 중 일부이다. 그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새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없소"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부분이다. 이 구술이 나오기 전에 이영득은 술과 노름에 빠진 포1리 주민들이 새마을사업 과정에서 결속하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단결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마을 주민의 결속과 단결은 염전노동자의 마을출입으로 흩어진 마을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공동체성은 공동체 내부를 규율하는 질서를 포함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규율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었다. 규율의 힘은 '왕따'나 '개망나니 같은 놈' 이라는 과격한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적으로 타자화시키고 그에게 윤리적으로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물론 주민들이 마을 어른들로부터 '개망나니 같은 놈' 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새마을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같은 마을 내 타자화의 경계 안에서 주민들은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화적 공동체성도 새마을사업 참여에서 중요한 대목이지만, 행정망을 타고 내려오는 공적 형식의 압력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새마을사업은 '대통령-내무부-경기도-시흥군-○○면-○○리(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회, 마을총회)' 로 이어지는 행정망을 따라 전개되었다. 이러한 행정망의 작동은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관에 대해 지니고 있는 복종심과도 맞물려 있었다. 위로부터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주민을 관리하고 통제하였는데, 농민들은 이 같은 공무원의 통제와 관리에 대해 한편으로 힘겨워하면서도 공무원의 모습을 대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공(奉公)하는 활동' 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면담자 : 새마을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때 새마을운동 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체크하지 않았나요?

구술자 : 그 담당공무원이 매일 출근하지. 그래 가지고 들들 볶다시피 하고. 담당공무

원이 지방마다 면직원이 있어 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의논도 많이 하고. 그래도 직원들하고 친해지면 잘 지내왔지. 젊어서 그런지.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나 그렇지.〈물왕리 새마을지도자 · 이장 출신 김재만의 구술〉[125]

면담자 : 면직원도요?

구술자 : 그럼 전부. 과장도. 식사대접하려면 어렵다고. 한두 사람이 아냐.

면담자 : 여러 사람이 와서 있었나 보죠?

구술자 : 많을 땐 20명 정도. 보통 4~5명.

면담자 : 그렇게 직접 방문하지 않을 때는 전화로 연락을 하나요?

구술자 : 그땐 전부 출장이야.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고 들어가서 출장보고서 써야 돼. 어느 동네 가서 뭐 하고 왔다고. 아침 식전에 와서 저녁때 들어가서 출장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퇴근하는 거야. 애 많이 썼지. 지금은 일하는 거 그냥 앉아서 하지만, 그때는 여기까지 걷고 장갑 끼고 댕겨야 돼. 힘들었어. 그때 공무원들은.〈군자1리 산뒤마을 이장 출신 정운형의 구술〉

마을의 공동기금이나 마을금고 같은 것이 비축되면 마을총회나 개발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체의 의무와 권리를 획정 짓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마을총회 등의 형식을 통해 전체(大同)의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반하는 선택이나 행위는 입지가 매우 좁았고, 이장은 마을 주민 '전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마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관과 마을공동체가 행사하는 규율과 압력, 분위기 속에서 마지못해 새마을사업에 참여한 것만은 아니었다. 농촌 새마을운동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는 점과 농민들의 '잘살고 싶은' 욕망을 수렴하면서 진행되어 갔다는 점이다. 주

(125)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250쪽.



▲ **마을 공동체** 농촌의 새마을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민총회나 개발위원회에서는 마을의 숙원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예를 들어 대야리의 경우 마을길 확장은 주민들이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었고,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범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천 옆 둑 보수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이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숙원사업이었고, 새마을지도자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면담자 :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잘 참여를 했나요?

구술자 : 근데 그것두 자기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잘 안 헐라고 하지. 내가 거길 왜 댕기냐 하는데, 근데 그땐 지금처럼 부락이 방만한 게 아니니까. 고것 딱 고 가구들만 사니까. 다른 사람은 열흘 나갈꺼면, 그 사람들도 이삼일 나가서 해주는 거야. 그럼 다 인저 내 일이구, 니 일이구 똑같이 다 봉사하기는 하지.

면담자 : 그래도 편차가 좀 있군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 날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

구술자 : 그렇지. 내가 직접 거기 필요한 사람은 많이 나가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잘

또 안 나가고. 다 또 그렇잖어, 그게 다 이해관계가. 그래두 지금은 아마 이해관계가 있어도 하나도 안 나갈라구 그럴 거야. 그때만 해두 당시 농촌 인심이지.〈대야리 새마을지도자 출신 이광석 구술〉[126]

대야리 이광석의 회고는 앞서 살펴본 이영득의 구술과는 조금 다르다. 이영득은 새마을사업에 마을주민들이 빠질 수 없는 분위기를 회고하는 반면, 이광석은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새마을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하천교량 설치사업으로 직접 이익을 보는 주민들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그것과 큰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은 사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없어도 사업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광석은 이를 '농촌인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농촌인심의 이면은 농촌공동체의 윤리와 규율이다. 대면사회이자 농업노동공동체인 마을 단위에서 '인심'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광석이 한탄하듯이 오늘날 농촌의 인심이 사라진 것은 사람들의 품성이 예전보다 나빠진 탓이 아니라 마을 내부의 공동체성이 느슨해진 탓이며, 이는 이농의 급증과 농촌 내 자본침투의 전면화와 관련이 있다.

6. 여성들이 나서다

1979년에 내무부에서 발간된『새마을운동-시작에서 오늘까지』라는 책에는 1979년도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군자면 정왕6리 오이도 갯마을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127]

(126)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227쪽.
(127) 내무부,「79년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성공한 마을 부녀회-군자면 정왕6리 새마을지도자 박형진」,『새마을운동-시작에서 오늘까지』, 1979, 253~262쪽.

주인공은 박형진이라는 여성지도자이다. 박형진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편과 결혼한 뒤, 가정형편에 따라 오이도로 내려왔다고 한다. 도시에서만 생활했던 그녀가 오이도로 내려왔을 당시에는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마을의 현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례기에는 그녀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주민들을 일깨워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식의 전형적인 서사가 실려 있는데, 그녀가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남자들이 바다와 염전에 나가 있어 마을일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마을보다 컸다는 점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도시와 외진 어촌마을 사이의 문화차이를 그녀는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분위기를 타면서 주민계몽과 지역개발의 필요성에 쉽게 호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어쨌든 그녀는 부녀회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부녀회 결성을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객지에서 굴러먹다 들어온 버릇없는 여편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고 한다. 1972년 3월 5일에 43명의 회원으로 부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녀는 부녀지도자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부녀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새마을운동 사례와 마찬가지로 술과 도박의 근절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이 공적으로 남성들의 문화적 관행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포1리의 경우 이영득이 신체 건장한 젊은 남성이었기에 도박판을 뒤엎고 마을 내에서 도박문화를 근절시켜 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오이도의 경우는 도박을 없애려는 주체가 여성들이었기에 남성들의 강한 반발은 견디기 어려웠다.

이에 부녀회에서는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전략에서 새로운 질서를 긍정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하였다. 부녀회 여성들은 하수구를 치우고 마을 주변 청소를 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남성들에게 별다른 자극이 되지 못하였다. 박형진은 남성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마을을 변화시킬 계

기를 만들고자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을 계획하였다. 당시 이 마을은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들어오지 못했고, 마을 주민들이 좁은 염전 둑을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물건을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지고 둑길을 걸어야 했고, 학생들의 통학도 몹시 불편하였다.

기존의 염전도로를 연결하여 500m만 확장하면 버스노선과 연결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을에서 6㎞ 정도 떨어진 군자역까지 연결이 되어 교통이 매우 편리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도로편입부지와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편입 지주들과 구조물 철거대상자의 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또 부녀회원 가정 내에서는 남편들이 반대하였고 추진자인 박형진에 대한 비난과 모략이 마을 내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남성 새마을지도자 김영웅과 함께 구조물과 편입부지 주인들을 찾아가 호소하고 설득한 결과, 40여 일 만에 노폭 7m, 전장 500m의 진입로를 완공하여 마을에 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버스가 마을에 닿게 되자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보다 편리해졌고, 외부에서는 낚시꾼 등의 관광객이 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이룬 결과에 자극을 받았고, 마을일과 같은 공적 활동의 주도권을 여성이 쥐는 것을 불편해 하면서도 여성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을진입로 완공 이후 남성들도 새마을사업에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수구 정비, 지붕개량, 담장개량, 농로개설 등의 사업을 함께 해 나갔다.

여성들은 갯벌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촌지역의 소득증대에도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제기된 문제는 어촌자원의 고갈과 무계획적 생산이었는데, 박형진은 수요공급선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정하는 격일제 입어제도를 창안하여 어촌계의 협조하에 실행에 옮겼다. 가구당 1명씩 격일제로 입어시키고 생산량을 설정 · 시달하여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결정하고, 어촌계를 통한 계통출하를 시도함으로써 어촌자원 보호와 소득증대, 노동력 절감을 한꺼번에 꾀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에 만든 공동작업장과 공동판매



▲ 오이도 진입로 확장공사

사무실 덕분에 계통출하가 가능하였다. 또한 자연산 조개의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1970년대 후반 굴 양식장을 설치하고 양식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했다. 그 결과 1975년 호당 평균소득이 55만 6,000원에 불과하던 것이 3년 뒤인 1978년에는 211만 1,000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왕6리 오이도의 경우처럼 새마을운동의 주도권을 여성들이 장악한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마을일에서 소외되고 가부장적 문화에 짓눌려 있던 여성들은 부녀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새마을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마을 내의 공적 활동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부모의 반발을 사기도 하고, 동네 남성어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지만,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공적 활동을 대체로 즐기고 있었다. 물론 부녀회 활동을 하면 가정과 마을 양측에서 이중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지만, 가정 내의 고정된 역할을 넘어서 마을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발언하는 것을 색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마을 내에서의 공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마을 안



▲ **부녀회** 부녀회라는 조직을 통해 여성들은 공적 활동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팎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가정 내에서도 이를 용인하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녀회기금으로 가는 단체관광이나 부녀지도자의 새마을연수, 각종 봉사활동 등은 가정에만 묶여 있던 여성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일상탈출로 다가가기도 하였다.

면담자 : 그렇게 일을 미리 많이 해 두셔야지 시간을 내서 가고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구술자 : 그럼.

면담자 : 그렇게 힘든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

구술자 : 그런데도 재미있었죠. 가면 단합이 잘 되고 고아원 같은 데 봉사 가면 그 애들 저거 하고, 우리는 군인 위문도 많이 갔어요. 부락에서, 부락 자체에서도 군인들 위문 가서 먹을 거 잔뜩 해 가지고 가서 군인들 거기서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행운의 열쇠 만들어서 숨겨서 군인들 휴가도 보내고 그랬거든. 여기 군인들도 그 전에 그렇게 해서 휴가도 보내고, 저기 오이도도 가서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면담자 :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

구술자 : 그럼,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니 고맙다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군인들이. "우리 위문 간다. 차 좀 보내 줘라" 그러면 군인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요. 먹을 거 해 가지고 가니까. 그 날은 뭐 떡 같은 거 해 가져가서 떡국도 끓여 주고 그런 거 해서 막걸리도 해가지고 가고 과일 같은 것도 사 가지고 가고 가서 해 멕이고 그랬어요.〈군자리 산뒤마을 부녀회장 출신 안종실의 구술〉

가사노동과 밭농사 등으로 여성들의 노동량이 많았음에도 여성들은 마을일이나 바깥 활동을 즐겁고 보람찬 일로 받아들였다. 새마을사업 과정에서 여성들은 벽돌을 이고지고 나르는 힘든 육체노동도 감수해야 했지만, '부녀회' 라는 성별 조직 아래에서 가내 주부와 같은 성역할로 마을 내에서 주로 배치되었다. 정월이나 5월에 주로 열리는 마을잔치에는 여성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역할을 도맡아 했다. 마을잔치에서 주어진 성역할의 의무를 다한 것은 마을의 단합에 여성들이 기여하는 행위였다. 절미저축이나 구판장과 같은 사업을 부녀회에서 맡아 했는데, 이 또한 가정살림을 담당하는 주부의 역할을 마을 내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았다. 새마을운동 시기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의 성역할을 해체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내에서 공동주부와도 같은 기존의 성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담자 : 그거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듣나요?

구술자 : …… 우리는 군 회의에 가면 그때 부녀계장이 항상 부녀회원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어. 여자들이 회의에 나오는데 쓰레빠 신고 나오면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단정하게 다니고, 또 여자 남자 새마을사업을 하고 하는데 단합대회를 해도, 사람도 일종의 동물에 가까우니까 여자는 어디를 가든지 본분을 지켜라 그러고.

면담자 : 여자의 본분을 강조한 건 어떤 건가요?



▲ 여성들의 새마을 활동

> 구술자 : 예를 들어 남자들하고 단합대회를 갔을 때는 인제 회포를 풀 거 아니에요. 회식을 하든지, 그러면 술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남자들이 아무렇게도 술 한 잔 들면 희롱한다고 그런 자리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같이 저거 하지 말고 잘 자기 본분을 지키라는 거지.〈군자리 산뒤마을 부녀회장 출신 안종실의 구술〉

새마을운동시기 산뒤마을 부녀회장을 지냈던 안종실은 당시 시흥군 새마을 부녀계장에 대해 "그 부녀계장이 그렇게 정신을 잘 넣어 줬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당시 그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위의 인용에서처럼 부녀계장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전략을 말해 주고 있는데, 기존의 남성영역인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본분과 몸가짐'을 강조하는 기성의 도덕률을 여성 스스로가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 증대라는 여성권

익 신장의 과정에는 '조신한 여성이 되라' 는 식의 여성 억압적 도덕률이 강화되는 역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실제 활동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이 같은 도덕률을 약화시키고 여성들의 뜻대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조금씩 넓혀 나갔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엌개량의 경우 가사노동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반기는 일이었다. 부녀 새마을운동과 연동되어 진행된 가족계획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피임약이나 각종 시술절차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고 인구억제라는 국가목표 아래 여성의 신체가 기계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여성들은 가족계획에 능동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1960년대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이 이야기되었을 당시에는 농촌 여성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거부감을 갖기도 했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보건소나 가족계획협회 등에서 강사가 부녀회를 돌며 강의를 할 때에는 농촌여성들이 대체로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해 나갔다.

7.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과 망각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술자료 수집, 조사를 위해 시흥 각지를 돌아다니며 1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 혹은 이장 출신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새마을운동은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시절의 활동' 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일지도 모른다.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이 근대화되었고 농가소득은 증대되었다고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농촌의 공동체성은 약화되고 농업인구는 크게 줄어들었다. 1990년대 이래 시흥의 농촌 곳곳에는 공장과 각종 공업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수입개방 이후 농업은 그 근본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성공

했다지만 역설적이게도 농촌사회는 활기를 잃었고 농업은 재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새마을지도자들은 이 같은 오늘날의 농촌사회를 바라보며 이제 과거가 된 새마을운동을 더욱 절절하게 추억하였다.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새마을운동 시기는 농촌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던 때이자 마을 주민 사이에 인정이 흐르던 때였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을 변화의 흐름을 자신들이 주도했다는 자부심도 그 기억 속에는 녹아있다. "그때는 내가 새마을에 미쳐 있었다"는 새마을지도자의 말 속에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헌신적 참여를 자랑스러워 하는 감정이 강하게 실려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들의 애틋한 기억은 비단 오늘의 현실 때문만은 아니다.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 세대는 대체로 1950~1960년대 농촌근대화의 꿈을 품고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던 이들이다. 이들에게 새마을운동은 어떤 면에서 그토록 바라던 '꿈의 실현' 과도 같았다. 1970년대 이들이 '새마을' 이라는 이름 아래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국가와 관의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새마을지도자를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며 새 역사를 창조할 주체' 라며 이들의 사업추진 의욕을 북돋았다는 점에서 정신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국가는 곧 대통령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접촉은 대통령이 시달한 명령의 집행자이자 대리자인 군내 면 단위 공무원들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공무원에 비추어 대통령을 보았고, 각종 미디어와 홍보물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총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을 뚜렷이 인식하였다. 국가의 지원은 곧 대통령의 지원이었다. '대통령 박정희' 라는 이름이 쓰인 시멘트를 받아들고서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가의 준엄한 지시와 든든한 후원을 동시에 느꼈다. '위로부터의 모든 지시' 는 곧 대통령의 지시와 같은 힘을 발휘하였고, 농민들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였다.

그 새마을정신에는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위에서 지시만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 거역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부락별로 다 해서, 나부터 내일 모레 회의에 나가야 한다 하면 모레 일할 거를 오늘 내일 마쳐야 모레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일을 하니까, 남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그렇게 맨날 그 부녀계장이 그렇게 항상 교육을 시켰어요.〈군자리 산뒤마을 부녀회장 출신 안종실의 구술〉(128)

관의 지시에 대한 농민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의 심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는 했지만, 전통사회에서도 농민들은 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만 하지는 않았다.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들의 관에 대한 복종은 국가의 지시가 농민의 이해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는 농민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는 국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연수교육을 통해, 주민은 반상회와 마을회의를 통해 새마을에 대한 국가의 홍보에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마을지도자층의 기억에는 그에 협력한 혹은 갈등한 기층 농민들에 대한 기억은 탈각되어 있다. 새마을지도자 자신의 광적인 설득과 활동으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호응했고 그로 인해 마을의 단합을 꾀할 수 있었다는 식의 언설이 공통적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의 방식이었다.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없이 기층 농민들의 호응만으로는 새마을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 같은 언설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지만, 새마을수기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새마을운동에 모든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발적으로 호응했다는 것은 신화에 가깝다. 기층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반발하고 갈등했는지 그 다양성에 대한 기억이 새마을지도자들의 구술 속에는 공통적으로 망각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 글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집단기억과 집단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에 분명 어떤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것은 마

(128)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팀, 『시흥지역 근현대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2005, 299쪽.

을의 공동체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 신분적 · 계층적 · 씨족적 갈등을 잠재우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길을 넓히면서 경운기 등의 농기계 보급이 활성화되어 농업의 기계화가 촉진되었고, 이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관 주도의 각종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업의 다각화와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농촌사회 내부로 국한시켜 보자면 유례 없는 급격한 변화가 1970년대를 경유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진행되어 온 경제개발의 효과는 농업보다 도시 · 상공업 부분에 집중되었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지만 사실 도농 간 경제적 · 문화적 격차는 1970년대 이후 더욱 커졌다. 서울, 수원, 인천이라는 거대도시에 둘러싸인 시흥의 농촌사회는 1980년대 이후 도시라는 강력한 흡인요소로 인해 급격한 이농현상에 직면했고, 도시의 자본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형적인 농촌유형에서 벗어나 도농복합형 상공업 배후지역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

이상록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4장 사회변동과 행정구역의 변화

해방 이후 시흥지역은 정치 · 경제 ·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하게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한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흥지역이 속해 있던 시흥군은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 도시화와 산업화의 중심지대에 놓여 있던 곳으로, 사회변동의 결과 잦은 행정구역의 개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같은 시흥군 내에서도 사회변동의 속도와 양상은 차별적으로 전개되었는데, 1970년 중반 이후 시흥군은 전체적으로 비농업적인 산업구조를 띠게 되었지만, 현 시흥지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여전히 전통적인 농촌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산업화 · 도시화의 물결이 서울 근교지역이던 시흥군에서 격렬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현 시흥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비껴가는 요인들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인공업지대의 형성과 시화공단의 조성을 통해 산업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화 과정과 함께 이를 더디게 하는 요인을 검토해 보겠다. 또한 이러한 사회변동 속에서 해방 후 시흥군지역의 행정구역이 변화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경인공업지대의 형성과 시화공단의 조성

1962년 1월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추진된 산업화로 1960년대 이후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인축을 따라 영등포 · 안양 · 부천 · 부평 · 인천 등의 지역에 한국 최대의 종합공업지대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공포하고 서울 구로와 인천지역에 한국 최초의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산업단지는 수도권 전철 및 경인고속도로에서 1㎞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와 종업원 확보 등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체 경인공업지대의 중앙부에 위치해 다른 산업들과의 전 · 후방연계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노동집약형 경공업을 기반으로 1 ·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경제는 1970년대 들어 그 성장세가 주춤하였고, 이에 정부는 1973년 5월 대통령령으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화학공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경인공업지대의 분산 재배치 및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특정제조업의 집중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공업구조가 다양화되는 한편, 산업단지가 구축된 서울 및 인천 이외에도 1970년대 초 개통된 수도권 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 경수고속도로로 인접 도시들(시흥 · 안양 · 수원, 부천 · 부평)과 의정부, 성남 등에 공업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 시기부터 수도권 공업의 중심지역이 점차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 가게 됨을 의미하는데, 특히 서울 및 인천과 인접한 안양과 부천 그리고 성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공업지대의 확산과정을 겪게 되었다.

안양은 영등포지역이 팽창하자 섬유 및 제지업체를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4년만 해도 제조업체수가 33곳에 불과한 소도읍이던 안양은 서울 근교농업으로 포도농사가 성했고, 도시민의 여가장소로 유명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경인공업지대가 확산되기 시작한 1972년에는 제조업수가 100여 곳으로



▲ **1980년대 초 신천대로 풍경** 한적한 시골 읍내의 모습이다.

늘어났고, 1974년 경수산업도로가 개통되면서 산업화의 속도에 탄력이 붙게 되어 1980년대 전반까지 400개가 넘는 공장이 들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공업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안양지역의 급속한 산업화는 1980년대 및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남으로는 군포와 의왕을 지나 이미 대규모 공업지역으로 성장한 수원까지 연접하고, 서쪽으로는 시흥 및 안산지역까지 연계되기에 이른다.

부천 역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건설과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급격히 산업화된 도시로 꼽힌다. 도시의 용수사정이 좋지 않았던 부천은 1960년대 초까지 지금의 부천역 인근에 있던 음료가공업 · 벽돌제조업 · 정미업 등이 공업의 전부였다. 시로 승격한 1973년만 해도 시내 기업체수가 모두 150여 개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 이후 교통 접근성이 탁월한 경인국도와 경인고속도로 및 전철노선 연변에 산업체의 입주가 폭주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부천은 크고 작은 공장

이 무려 3,000여 개에 달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하는데, 조립금속 · 기계 · 전기 · 전자공업의 업종이 전체의 60%를 상회하여 수도권 내에서 보기 드문 중화학공업 특화지역이 되었다. 1970~1980년대 거치며 부천과 인근 부평지역이 거대한 공업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존 영등포 · 구로 공업지역에서 인천의 서해안공단까지는 하나의 거대한 '경인공업벨트' 지역으로 연결되게 된다.

한편, 현 시흥시지역은 1970년대까지 아직 산업화 또는 도시화가 크게 진척되지 않았는데 이는 인구구조나 토지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1974년 시흥군의 인구수는 18만 8,000여 명이었고, 가구수는 3만 7,572호였다. 이 가운데 농가가 1만 217호로 27.2%에 달했다. 그런데 현 시흥시 영역에 해당하는 소래 · 군자 · 수암면만의 농가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수 1만 587호 가운데 65.4%에 달하는 6,926호가 농가였다. 1975년 전국의 농가비율이 35.8%임을 감안하면 세 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75년 시흥군의 토지지목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은 임야로서 전체의 54%(1만 6,650㏊)에 달하였고, 경지가 38.1%(1만 1,751㏊), 기타가 7.9%(2,421㏊)를 차지하였다. 경지 가운데 논면적이 7,108㏊로서 60.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4,643㏊(39.5%)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시흥군 호당 경지면적은 1.15㏊로서 이는 당시 전국 평균인 0.94㏊보다 많다. 농가비율이 높은 위 세 면만의 호당 경지면적은 물론 이보다 훨씬 낮았던 것이다.

1970년대 제조업 분포현황을 보면 8개 읍 · 면 ·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던 시흥군에서, 현 시흥지역은 1975년의 경우 전체의 18.7%에 해당하는 총 36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1979년의 경우 29.8%에 해당하는 122개 제조업체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시흥군이 해체되기 전인 1988년까지 커다란 변동 없이 유지되었는데, 5개 읍 · 면 중 현 시흥지역에 해당하는 소래읍과 수암면 · 군자면은 전체 426개 업체 중 27.2% 정도인 116개 업체가 분포할 뿐이었다. 즉 1970년대 이후 현 시흥지역은 경인공업지대에 포위된 상태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 외부적 요소일 뿐 시흥지역 내부에 산업화의 동인이 확립되지는 않았다.

〈표 1〉 1970년대 시흥군 제조업 분포[129]

(단위 : 개소)

구분 / 업종	1975							
	시흥군	비율(%)	수암면	비율(%)	군자면	비율(%)	소래면	비율(%)
합계	193	100	4	2.07	2	1.04	30	15.56
섬유	18	100	1	5.56			3	16.67
화학	43	100	1	2.33			5	11.63
약품	7	100						
제지	21	100	1	4.76			2	9.52
기계	43	100					8	18.60
전자	11	100						
식품	13	100					2	15.38
기타	37	100	1	2.70	2	5.41	10	27.03

구분 / 업종	1979							
	시흥군	비율(%)	수암면	비율(%)	군자면	비율(%)	소래면	비율(%)
합계	410	100	17	4.15	23	5.61	82	20.00
섬유	41	100	2	4.88	3	7.32	7	17.07
화학	81	100	2	2.47	1	1.23	16	19.75
지류	27	100	1	3.70			4	14.81
목재	9	100					4	44.44
전기 · 전자	24	100			1	4.17	4	16.67
약품	7	100					1	14.29
식품	47	100	4	8.51	6	12.77	12	25.53
금속	97	100	4	4.12			14	14.43
비철금속	30	100	3	10.00	11	36.67	6	20.00
기타	47	100	1	2.13	1	2.13	14	29.79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부천과 안양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경인공업지대는 차츰 그 지리적 범위만으로는 수도권의 공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이 도시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는 기존 경인공업지대 이외 지역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인구와 산

(129)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75 · 1979.

〈표 2〉 1988년 시흥군 제조업 분포[130]

(단위 : 개소)

구분 / 읍면	합계		섬유		화학		기계		기타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계	426	33,112	20	3,963	94	5,438	148	8,433	164	15,278
군포읍	198	16,760	7	1,455	48	2,628	71	4,139	72	8,538
의왕읍	112	10,161	6	1,822	25	1,515	41	2,399	40	4,425
소래읍	100	4,943	6	277	17	1,028	33	1,695	44	1,943
수암면	14	1,223	1	409	4	267	3	200	6	347
군자면	2	25							2	25

업의 분산배치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수도권지역은 그 발전전략에 따라 5개 권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권역별 개발 · 정비계획은 수도권 공업지역의 재정비와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공업지역 확산정책은 경기도의 자체적 발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립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업이 발달한 기존 도시에는 무공해 도시형 공장만 남기고 새로 조성되는 주변 공단에는 염색 · 도금 · 피혁 등의 공해유발 공장들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에서 공업지역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1978년부터 산업기지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개발된 반월공업단지에는 1980년대 초부터 수도권의 이전대상 공장들이 입주했다. 이 공단은 기계 · 장비, 화학 · 고무, 섬유 · 의복 · 가죽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신규인구 수용과 종업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추진된 반월신도시는 원래 1986년까지 인구 20만 명을 유치하는 규모로 계획했으나 인구가 급증하자 2001년까지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육성하도록 1985년경 목표를 수정하였다.

(130)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89. 수암면과 군자면의 제조업체수가 줄어든 것은 1979년 이후 수암 · 군자면의 일부지역이 반월출장소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 반월공단 조성공사
◀ 시화공단

또한 1980년대 초부터 서울 · 인천 · 부천 · 안양 등 인접 공업도시의 제조업이 이전되는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인근 반월공단의 공장부지가 전부 소진됨에 따라 대규모 공업단지인 시화공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되었다. 1987년 착공하여 1995년 준공된 시화공업단지는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었는데, 도시형 영세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과 임대공장을 건설하는 동시에 인근에 주거단지도 조성하였다. 공단에는 본래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수도권 소재 이전 공장으로 입주를 제한하였으며, 현재는 기계공업 외에 식품 · 섬유 · 종이 · 인쇄 · 화

학 · 목재 · 비금속 · 1차금속 등을 중심으로 한 총 2,000여 개 업체가 입주한 대형 공업단지로 성장하고 있다.

〈표 3〉 시화공단 조성 개요

구분	내용
조성목적 및 특징	수도권 내 이전대상 공장 이전용지 제공, 중소기업전문단지 조성 및 서해안 공업벨트 형성 촉진
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
위치	서울 남서쪽 30㎞ 지점.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
지역지정	1986. 9.27. 반월특수지역 확대고시(건설부고시 제424호) 1986.12.22. 시화지구개발실시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577호) 1992. 4.25. 시화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고시(건설부고시 제167호) 2000. 8.29.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조성기간	1986~2000년
조성면적	총면적 1,644만 3천㎡, 산업시설구역 1,062만 7천㎡, 지원시설구역 : 160만 9천㎡, 공공시설구역 347만 2천㎡, 녹지구역 73만 5천㎡

이렇듯 인천 남동지구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에 이르는 경기 해안지역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한국 최대의 공업지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경인 및 경수축을 중심으로 발달한 기존 공업지역과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경기지역의 공업지대가 서남부 방향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평택 및 아산만지역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공업벨트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도시화와 행정구역의 개편

1) 인구 변동과 개발제한구역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경기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

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초기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과가 아직 주변 경기지역으로 파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서울마저 추월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끊임없는 산업화 과정과 이를 뒷받침한 교통망 발달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인구증감의 시기와 패턴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기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정책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고 이에 따라 지역별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기지역의 인구이동 성격에는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나는 197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진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다. 이촌향도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서울이지만 서울 입성은 사실 높은 주택비용 · 생활비 · 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이촌민(移村民)들이 '언젠간 서울서 살리라' 는 꿈을 품고 차선으로 서울의 주변지역인 경기도에 우선 정착한다. 여기에는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주거비용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그 결과 인천 · 부천 · 안양 · 과천 · 성남 · 시흥 · 광주 · 하남 · 구리 · 의정부 · 고양 등지가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호되었다. 비슷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의 일부는 서울의 고지대나 하천 주변에 무허가 불량주택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불량주택 정비와 도심재개발의 차원에서 이들 빈민을 축출하여 주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이주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이주정책과 빈민운동의 결과 1970년대 말부터 신천리(현 신천동) 일대에는 서울 청계천 · 안양천 주변 등지에서 거주하였던 철거민들이 집단이주하여 마을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이들 마을을 통칭하여 '복음자리' 마을이라 부르는데, 최초 이주가 이루어진 복음자리마을과 그 주변의 한독주택마을, 목화마을이 그것



▲ 복음자리마을 건설공사

이다. 복음자리마을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동 및 문래동 일대의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철거민 170세대가 집단이주하여 형성되었고, 한독주택마을은 1979년 시흥동 · 봉천동 · 망원동 등 8개 지역에서 철거당한 164가구가 복음자리 인근에 집단이주해 형성되었다. 또 목화마을은 1985년 목동에서 철거당한 주민 105가구가 인근에 정착해 형성되었다.

경기지역 인구증가의 두 번째 요인은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이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왕성해진 이 현상은 주로 과천 · 하남 · 분당 · 평촌 · 일산 등지에 조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신도시 개발의 핵심은 사실 서울의 과밀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다. 시의 일부를 개발한 이들 신도시는 웬만한 중소도시에 버금할 정도의 인구규모를 지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강력한 인구흡입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1990년대

이후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서울에서 빠져 나간 사람들뿐 아니라 신도시를 중심으로 몰려든 새로운 이촌민들이 주도한 것이다.

시흥군 인구변동 역시 경기지역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각 읍 · 면별로 인구증가의 경향과 속도는 달랐다. 그중 인구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시흥군 영역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적인 행정구역을 구성해 갔다. 현 시흥지역은 1970년대 이후 빠르게 확산되는 산업화 · 도시화의 영향으로 수도권 내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과는 달리, 지역 내의 뚜렷한 인구성장 요인이 없는 가운데 주변의 신흥 위성도시 성장과 관할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불안정한 인구성장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 시흥군의 면별 인구수와 구성비의 변화[131]

(단위 : 명, %)

연도 / 지역	1949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시흥군	100,309	96,517	121,432	128,254	183,767	206,835	288,913	163,671
동 면	22,527	14,671	19,567					
서 면	9,737	10,186	12,775	12,992	27,816	93,328	145,870	
신동면	9,576	9,481	11,780					
과천면	5,304	5,323	6,068	6,974	8,885	13,470	16,074	
서이면	20,085	22,301	31,290	54,287	90,505			
남 면	5,866	5,246	6,073	7,458	11,325	23,422	40,253	52,664
수암면	11,582	11,541	13,649	15,942	14,609	15,247	11,273	13,533
군자면	15,632	17,768	20,172	21,038	18,879	18,362	11,767	12,983
의왕면				9,557	11,748	19,331	32,842	54,993
소래면						23,645	30,834	29,498
미 상			58	6				

(131) 통계청 자료. ① 시흥군의 구성비는 경기도 내에서 시흥군이 차지하는 인구구성비. ② 1963년에 동면과 신동면은 서울시로 편입되고, 화성군에서 의왕면 편입해 옴. ③ 1973년에 안양시 분리, 부천군에서 소래면을 편입해 옴. ④ 서이면은 1941년 이후 안양면, 1949년에 안양읍, 1973년에 안양시로 승격함. ⑤ 남면은 1979년에 군포읍, 1989년에 군포시로 승격함. ⑥ 서면은 1979년에 소하읍, 1981년에 광명시로 승격함. ⑦ 군자면과 수암면의 일부지역은 1979년에 반월지구출장소로, 1986년에 안산시로 승격함. ⑧ 과천면은 1982년에 과천지구출장소, 1986년에 과천시로 승격함. ⑨ 의왕면은 1989년에 의왕시로 승격함.

연도 / 지역	1949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시흥군	3.7	4.1	4.4	4.1	5.6	5.1	5.9	3.4
동 면	22.5	15.2	16.1					
서 면	9.7	10.6	10.5	10.1	15.1	45.1	50.5	
신동면	9.5	9.8	9.7					
과천면	5.3	5.5	5.0	5.4	4.8	6.5	5.6	
서이면	20.0	23.1	25.8	42.3	49.2			
남 면	5.8	5.4	5.0	5.8	6.2	11.3	13.9	32.2
수암면	11.5	12.0	11.2	12.4	7.9	7.4	3.9	8.3
군자면	15.6	18.4	16.6	16.4	10.3	8.9	4.1	7.9
의왕면				7.5	6.4	9.3	11.4	33.6
소래면						11.4	10.7	18.0

〈표 5〉 소래 · 군자 · 수암권의 인구성장[132]

(단위 : 가구, 명)

구분 / 연도	시흥지역				소래권 인구	군자권 인구	수암권 인구
	가구	총인구	남자	여자			
1962	9,554	55,309	27,887	27,422	19,601	20,775	14,933
1968	9,672	55,653	28,228	27,425	20,261	19,934	15,458
1973	10,426	57,067	29,099	27,968	21,983	19,560	15,524
1975	11,499	57,261	29,387	27,874	23,648	18,353	15,260
1977	11,784	61,000	30,575	30,428	25,667	18,927	16,406
1979	9,767	52,294	26,222	26,072	30,378	11,319	10,597
1981	11,390	54,236	26,943	27,293	31,491	11,276	11,469
1983	10,733	50,423	25,471	24,952	27,275	11,528	11,620
1985	13,032	56,034	28,593	27,441	29,517	12,980	13,537
1987	20,842	82,860	41,555	40,805	51,991	13,685	17,184

1970년대 초반 현 시흥지역의 전출인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수암면은 1972~1974년에 서울로 전출한 인구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점차 증가

(132) 〈표 4〉와 〈표 5〉의 인구수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통계청 자료와 통계연보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과 시점의 차이이므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였다.



▲ 반월출장소 개청

하는 추세였다. 경기도로 전출한 인구의 경우 시부(市部)는 증가, 군부(郡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안양시 및 인천시로의 전출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듯 서울 및 주변 도시(안양 · 인천 · 수원)로의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출사유를 보면 가족 전체가 이주하거나 직장 소재지를 따라 이동한 사례가 61.3%를 차지하고 있어 수암면 전체의 이농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군자면과 소래면의 경우도 서울 · 인천 · 부천 등으로 인구가 흡수되고 있었다.[133]

1973년 이후 수암 · 군자 · 소래지역의 가구 및 인구는 점차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77년 1만 1,784가구에 6만 1,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9년 수암면의 6개 리와 군자면의 7개 리가 반월출장소로 편제되면서 총 2,017가구와 8,706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뒤이어 1983년 소래읍 옥계리 전체와 계수리 일부가 각각 광명시와 부천시에 편입되어 다시 한 번 가구 및 인구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133)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 『수암 도시기본계획 1990』, 시흥군, 1973;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 『소래 도시기본계획 1990』, 시흥군, 1973.



〈그림 1〉 신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감도

시흥지역의 인구는 서울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늘어났으며, 농가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인구구성이 점차 도시형으로 변화하는 추세였다.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군자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화공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인구성장 추이는 빠르게 회복되어 1987년 시흥지역의 가구 및 인구는 총 2만 842가구에 8만 2,86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시흥지역의 전체적인 인구성장세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 시기 생활권별 인구성장 추이를 비교해 보면 경인공업지역 및 인천 · 부천생활권과 연접한 소래권의 인구증가 폭과 규모가 군자권과 수암권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소래권의 경우 대야리 · 신천리 · 은행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즉 1973년에 면급(面級)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예규 제10호)에 따라 1975년을 기점으로 하여 1990년까지 16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구소래읍사무소 주변이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었다.[134]

(134)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 『소래 도시기본계획 1990』, 시흥군, 1973.

또한 1980년 7월 1일 결정된 신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신천리 · 대야리 일원의 소래권은 현 시흥지역 인구성장을 주도하였는데,[135] 1973년부터 1987년까지의 인구증감률을 생활권별로 비교해 보면 소래권이 136.5%에 달하는 인구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암권은 10.7% 증가에 그쳤고, 군자권은 오히려 30.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987년 시흥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소래생활권의 인구가 약 62.7%를 점유하였다. 이는 경인공업지대의 확대와 양호한 접근성, 소래권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유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래권의 일부 구시가지를 제외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 현 시흥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탈피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71년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의 평면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인접 시군에 소규모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기지역의 경우 1976년까지 3차례나 그 면적이 확대되었다. 현 시흥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현황[136]

지정고시	지적고시	지정면적(㎢)	해당지역(법정리)
1971.12.29	1971.2.11	7.1775	목감리, 수암리, 조남리 일대
1972.8.25	1972.6.9	36.8085	정왕리, 월곶리, 논곡리, 목감리, 계수리, 대야리, 무지리
1976.12.4	1978.4.29	67.546	방산리, 매화리, 도창리, 은행리, 포리, 조남리, 화정리, 군자리, 월곶리, 장곡리, 장현리, 정왕리, 죽율리, 광석리, 하중리, 기타

(135) 민주당 시흥 · 군포시지구당 도시 및 지역발전연구회, 『시흥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1, 132쪽. 신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8만 7758㎡의 면적에 2만 1,530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고 1991년 12월 27일에 완료되었다.

(136) 민주당 시흥 · 군포시지구당 도시 및 지역발전연구회, 『시흥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1, 76쪽;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의 도시』, 법문사, 1999. 2002년 현재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102.29㎢로 시 면적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시흥시, 『시흥시 통계연보』 2003).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결과적으로 시흥시의 도시성장과 주민생활에 커다란 문제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방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개발가능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 승격 당시 시흥시의 개발 가능지는 약 9.9㎢인데 이 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개략 7㎢의 면적만이 남게 되고, 여기에 이미 개발된 3.2㎢를 고려하면 일찍부터 시흥시의 성장에 대한 한계선이 설정된 형편이다. 시흥시가 하나의 시로서 충분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심시가지가 형성되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제반시설이 입지해야 하는데, 새로운 입지선택이 어려워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된 상태이다.(137)

두 번째로는 공간구조상의 왜곡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개발 가용지가 점적으로 상호 분리되어 존재함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연계성도 취약하게 되었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상 · 하수도 ·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또한 구도심인 소래권과 시화공단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시흥시는 두 지역으로 양분되는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 상호 연관성을 확립하기 어렵게 하였다.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각종 불편과 불이익을 들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농림수산업 등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 토지의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건축물은 증축 · 개축 · 재건축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통해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이 줄을 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후 현재까지 행위제한규정만 다소 완화되었을 뿐 구역경계는 변경되지 않았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의 폭발적인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수도권 도시성장의 방향성을 제공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하여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등의 많

(137) 민주당 시흥 · 군포시지구당 도시 및 지역발전연구회, 『시흥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1, 81쪽.

은 기여를 하였지만, 해당지역 주민에게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끝없는 민원과 갈등의 대상이 되었고, 지역 간에 불균등한 발전을 초래하였다.

2) 행정구역의 개편[138]

해방 이후 시흥군지역은 격심한 사회변동을 겪었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통합보다는 지속적인 분리와 분열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해방 후 시흥군지역의 행정구역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해방 후~1960년대 행정구역 개편

① 안양면의 읍 승격과 동면 일부지역의 서울 편입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조선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미군정의 잠정적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군정기 지방제도는 식민지적 색채가 짙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제하의 지방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인 11월 17일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시흥군과 관련된 행정구역 변화는 1949년 안양면의 읍 승격과 동면 일부지역의 서울 편입이다. 즉 1949년 8월 13일에 대통령령 제162호로 공포되어 8월 14일에 시행된 '읍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159호로 제정·공포된 '시도(市道)의 관할구역 및 구군(區郡)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거 시흥군 동면 구로리·도림리·번대방리가 서울시 영등포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일제시기에 경성부로 시

(138) 행정구역의 개편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하, 1988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흥군지역이 편입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서울시 편입이었다.

1950년대의 행정구역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 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흥군의 행정구역도 거의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1953년 10월 현재 시흥군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그림 2〉 시흥군 관내도(1961)

〈표 7〉 1953년 시흥군 행정구역[139]

읍·면	리명
안양읍(安養邑)	안양리(安養里), 일동리(一洞里), 이동리(二洞里), 비산리(飛山里), 호계리(虎溪里)
남면(南面)	당리(堂里), 산본리(山本里), 금정리(衿井里), 부곡리(富谷里), 당정리(堂井里)
동면(東面)	시흥리(始興里), 안양리(安養里), 독산리(禿山里), 신림리(新林里), 가리봉리(加里峯里), 봉천리(奉天里)
신동면(新東面)	잠실리(蠶室里), 방배리(方背里), 반포리(盤浦里), 양재리(良才里), 사당리(舍堂里), 우면리(牛眠里), 신원리(新院里), 서초리(瑞草里)
과천면(果川面)	관문리(官門里), 주암리(注岩里), 문원리(文原里), 막계리(莫溪里), 하리(下里), 갈현리(葛峴里)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 박달리(博達里), 하안리(下安里), 가학리(駕鶴里), 노온사리(老溫寺里), 일직리(日直里), 철산리(鐵山里), 광명리(光明里)
수암면(秀岩面)	수암리(秀岩里), 장상리(章上里), 장하리(章下里), 양상리(楊上里), 성포리(聲浦里), 월피리(月陂里), 고잔리(古棧里), 부곡리(釜谷里), 와리(瓦里), 화정리(花井里), 능곡리(陵谷里), 하중리(下中里), 하상리(下上里), 광석리(廣石里), 물왕리(物旺里), 산현리(山峴里), 조남리(鳥南里), 논곡리(論谷里), 목감리(牧甘里)
군자면(君子面)	거모리(去毛里), 군자리(君子里), 장현리(長峴里), 장곡리(長谷里), 월곶리(月串里), 정왕리(正往里), 죽율리(竹栗里), 신길리(新吉里), 성곡리(城谷里), 목내리(木內里), 원시리(元時里), 초지리(草芝里), 원곡리(元谷里), 선부리(仙府里)

(139) 문연사, 『지방행정구역일람(地方行政區域一覽)』.

② 서울시역의 확장과 시흥군역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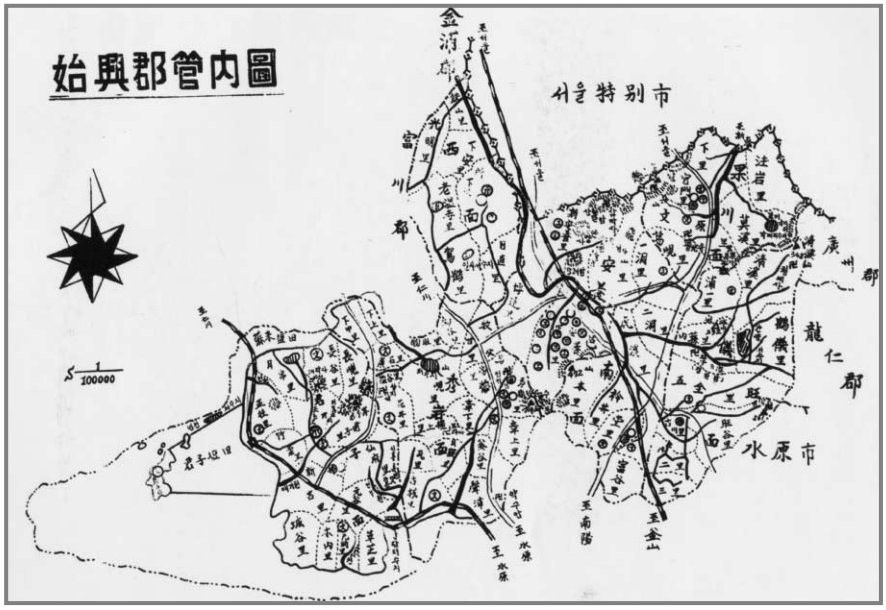
1961년 5 · 16쿠데타 이후 정치적 격변과 함께 지방제도도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는데, 4 · 19민중항쟁 이후 확대되던 지방자치제는 5 · 16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폐지되고, 이어 1961년 9월 1일에는 법률 707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제로 다시 바뀌게 되었으며, 읍 · 면 대신에 군이 기초자치단체로 되었다.

이 시기 가장 큰 행정구역 변동 중 하나는 서울시의 규모를 적정화하는 행정구역 개편이었다. 1960년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집중현상이 인근 경기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나감으로써 적잖은 사회문제와 행정상의 애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역을 대폭 확장하고자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정비를 목표로 시흥군을 비롯한 인근지역을 흡수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2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 군 ·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시흥군 신동면의 잠실리 · 방배리 · 반포리 · 양재리 · 사당리 · 우면리 · 신원리 · 서초리와 동면의 시흥리 · 독산리 · 가리봉리 · 신림리 · 봉천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이렇듯 시흥지역의 서울시 편입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날 법률 제1172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 시행된 '시 · 군 관할구역 변경 및 폐치(廢置)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입되었는데, 동면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읍 내에 안양리가 있어 신안양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서울시의 구역 확장으로 신동면 및 동면 일부 등 시흥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된 반면, 같은 법률 제1175호에 의거 화성군 일왕면 중 이리 · 삼리 · 고천리 · 왕곡리 · 오전리 · 학의리 · 내손리 · 청계리 · 포일리가 의왕면으로 개칭되면서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신동면과 동면의 대부분 지역이 서울시에 할애되고 화성군 일왕면(의왕면)이 시흥군에 편입된 직후인 1963년 1월 1일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표 8〉과 같다.



〈그림 3〉 시흥군 관내도(1967)

〈표 8〉 1963년 시흥군 행정구역

읍·면	리명
안양읍	안양리, 비산리, 일동리, 이동리, 신안양리, 호계리, 박달리
남 면	당 리, 당정리, 부곡리, 산본리, 금정리
서 면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노온사리, 가학리, 일직리
과천면	관문리, 문원리, 갈현리, 막계리, 하리, 주암리
의왕면	고천리, 이리, 삼리, 왕곡리, 오전리, 학의리, 내손리, 청계리, 포일리
수암면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 양상리, 부곡리, 성포리, 월피리, 고잔리, 와리, 화정리, 능곡리, 하중리, 하상리, 광석리, 물왕리, 산현리, 조남리, 논곡리, 목감리
군자면	거모리, 군자리, 장현리, 장곡리, 월곶리, 정왕리, 죽율리, 신길리, 성곡리, 목내리, 원시리, 초지리, 원곡리, 선부리

(2) 1970년대 행정구역 개편

1970년대 서울 주변의 도시들은 빠른 도시화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행정

의 관할구역 영역으로서의 지역적 · 사회적 여건과 주민의 생활영역으로서 생활권 내지 경제권 등에 변화가 생겨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행정 개편은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도시화 과정을 겪는 지역을 시 · 읍급 도시로 변화해 가는 것이었고, 이에 수반된 행정구역 개편이 뒤따랐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수도권 분산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제1차 오일쇼크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지역의 많은 공장과 정부기관 · 민간시설이 수도권과 그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시흥군의 과천과 수암 · 군자(현 안산시)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었다.

① 서면 광명출장소의 설치

1970년 6월 10일 군조례(郡條例) 제199호에 의거 당시 인구 8,056명의 서면 광명리와 철산리의 2개 법정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면 광명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광명출장소가 설치된 것은 1963년 9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547호로서 서면 광명리와 철산리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으로 편입된 후, 1968년 7월 18일부터 1972년 8월 5일까지 대한주택공사가 38만 평의 택지조성을 실시한 후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② 안양읍과 소사읍의 시 승격

1973년 3월 12일에는 2건의 법률과 4건의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무려 192개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3개 시, 33개 읍, 4개 구가 새로이 설치되고 2개 군이 폐지됨과 아울러, 150개 지역에 달하는 시도 · 시군 · 읍면 간의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그동안 무질서하게 팽창되어 온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조정과 서울시 주변 위성 도읍(都邑)의 시 승격이 시급하였다. 즉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주변의 인천 · 수원 · 의정부 등의 기존 위성도시와 서울 외곽도시의 합리적 육성



▲ 광명아파트 건설
▶ 안양시 승격



을 목적으로 종전의 안양읍 · 소사읍 지역을 안양시 · 부천시로 각각 승격하였다.

서울 기점 20㎞권의 경부선에 위치한 안양읍은 1960년대 이래 급격히 발전하여 1960년의 3만 명 수준에서 1971년에는 9만 명을 넘게 되었다. 또한 서울로부터 20㎞ 밖의 경인선에 위치한 소사읍의 경우도 1960년대에는 5만 명이 채 못 되었으나, 1971년에는 9만 명 가까이 됨으로써 규모 면에서 시 승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③ 부천군의 폐치에 따른 소래면의 시흥군 편입

이 시기에 경기도 부천군이 폐치되었는데, 그곳은 관내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이때에 내륙지역과 도서(島嶼)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서 6개 면은 옹진군에, 내륙 3개 면은 인근 김포군과 시흥군에 나누어 편입시켰다.

〈표 9〉 부천군 폐치에 따른 인접군의 조정

개편 전				시 승격(감)				개편 후(증)			
명칭	인구	면적	리	명칭	인구	면적	리	명칭	인구	면적	리
시흥군	186,665	312㎢	67	안양시	91,875	58㎢	7	시흥군 (부천군)	116,019 21,229	304㎢ 54㎢	74 14
부천군	147,589	355㎢	84	부천시	56,534	27㎢	10	옹진군 (부천군)	58,425 43,182	290㎢ 216㎢	42 34
김포군	78,084	239㎢	73					김포군 (부천군)	104,728 26,433	297㎢ 58㎢	102 29

시흥군은 관내 안양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군역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간 반면, 부천군의 폐지로 일부지역이 보충되었다. 즉 소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부천군이 폐지됨에 따라 부천군의 관할구역 중 소래면의 신천리(新川里)·대야리(大也里)·은행리(銀杏里)·미산리(米山里)·방산리(芳山里)·포리(浦里)·안현리(鞍峴里)·매화리(梅花里)·도창리(道倉里)·금이리(錦李里)·과림리(果林里)·옥길리(玉吉里)·계수리(桂壽里)·무지리(茂芝里) 등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시흥군은 1읍 6면에서 7면 74개 리에 주민 11만 6,100명, 면적 304㎢가 되었다.

〈표 10〉 1973년 시흥군 행정구역(140)

읍·면	리명
과천면	관문리, 문원리, 갈현리, 막계리, 하리, 주암리
서 면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노온사리, 가학리, 일직리
남 면	당리, 당정리, 부곡리, 산본리, 금정리
의왕면	고천리, 이리, 삼리, 왕곡리, 오전리, 학의리, 내손리, 청계리, 포일리
수암면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 양상리, 부곡리, 성포리, 월피리, 고잔리, 와리, 화정리, 능곡리, 하중리, 하상리, 광석리, 물왕리, 산현리, 조남리, 논곡리, 목감리
군자면	거모리, 군자리, 장현리, 장곡리, 월곶리, 정왕리, 죽율리, 신길리, 성곡리, 목내리, 원시리, 초지리, 원곡리, 선부리
소래면	대야리, 신천리, 방산리, 포리, 미산리, 은행리, 안현리, 매화리, 도창리, 금이리, 무지리, 과림리, 옥길리, 계수리

④ 서면의 소하읍 승격과 남면의 군포읍 승격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직강공사(直江工事)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시흥군 간의 실질적 경계선이 조정되었고, 이는 1973년 3월 12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즉 법률 제2596호인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 영등포구 개봉동과 시흥군 광명리 간에 관할구역이 교환되면서 경계가 변경되었다.

▼ 서면의 소하읍 승격



서면 광명리 등의 행정구역 개편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1974년 6월 1일에는 군 조례 제

(140)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74.

401호에 의거 서면 광명출장소가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되었다. 2년여 후인 1976년 4월 20일에는 7개 분소가 설치되었고, 다시 3년 후인 1979년 4월 7일에는 대통령령 9409호인 '미금읍 등 53개 읍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면이 소하읍으로, 남면이 군포읍으로 각각 승격되어 같은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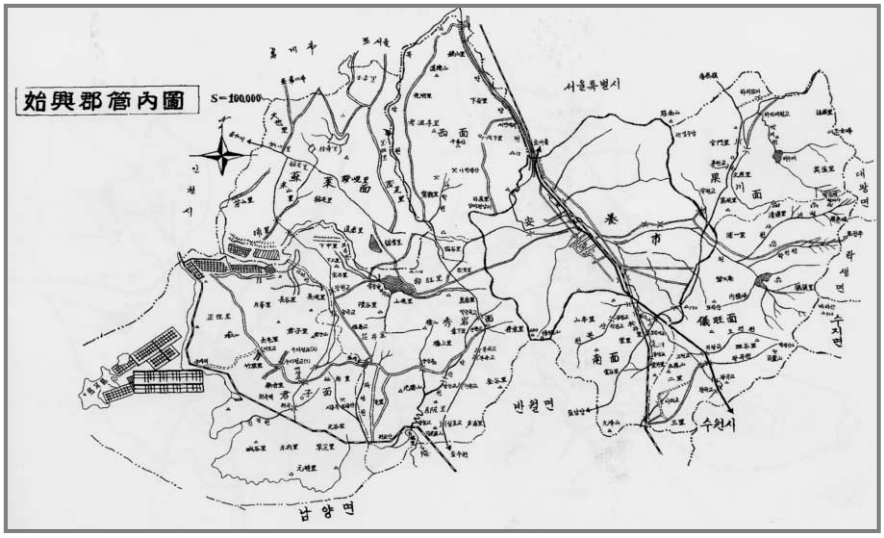
⑤ 반월공단의 조성과 반월출장소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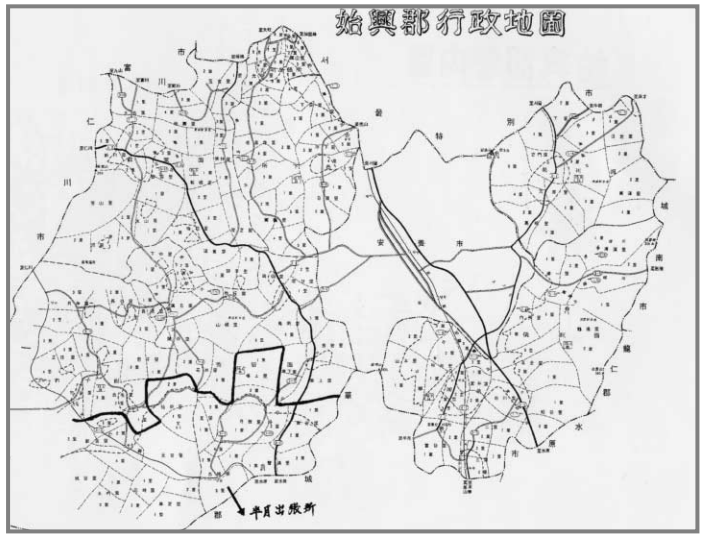
1970년대에 들어서 서울 주변 60㎞ 이내의 인천 · 수원 · 성남 · 안양 · 부천 등에서는 인구 폭증에 따른 주택부족, 교통체증, 쓰레기 처리장 부족, 환경오염, 공해공장의 유입 및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온갖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도시권 인구집중 억제 대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70년대 말에 들어와서는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였다.

1976년 7월 1일 서울의 공해공장을 소산(疏散) · 수용할 수 있는 신공업도시 건설의 적지를 선정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건설부가 같은 해 9월 21일 반월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신공업도시가 태동하였다. 1976년 12월 4일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하는 한편, 12월 24일 반월신도시 개발지원사업에 관해 경기도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976년 12월 31일 경기도 조례 제757호로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79년 8월 10일 공포된 경기도 조례 제969호에 의해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로 승격되었으며, 반월지소 · 수암지소 · 군자지소가 설치되었다. 한편 출장소에서는 2군 3면의 지방행정을 통할하게 되었는데,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에 출장소를 개소하고 해당 군수 및 면장과 행정사무위수탁협약에 따라 종합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편입구역은 2군 3면으로서 시흥군 수암면 22.22㎢에 6개 법정리(고잔리 · 와리 · 월피리 · 부곡리 · 성포리 · 양상리), 군자면 30.35㎢에 7개 법정리(신길리 · 성곡리 · 목내리 · 원시리 · 초지리 · 원곡리 · 선부리), 화성군 반월면 21.35㎢에 5





〈그림 4〉 시흥군 관내도(1974) 소래면이 편입되었다.
〈그림 5〉 시흥군 행정지도(1978)

개 법정리(일리 · 이리 · 사리 · 본오리 · 팔곡2리)로서 총면적 73.92㎢에 2군 3면 18개 법정리로 되어 있었다. 이후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는 계속적인 도시개발과 성장을 거쳐 법률 제3798호(1985년 12월 28일 공포)에 의해 1986년 1월 1일부터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 과천신도시 개발

⑥ 과천신도시 개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에 이어 1978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반경 약 15㎞, 안양에서 8㎞ 지점인 시흥군 과천면 일원에 신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과천신도시는 서울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제2종합청사 건립과 서울 및 안양을 통근권으로 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건설한 서울대공원과 관련하여 건설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과천신도시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한 서울 강북인구의 분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어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1979년 4월 28일에는 경기도 조례 제958호로 경기도 과천지역지원사업소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6월 10일에는 경기도 조례 제1256호로 경기도 과천지역지원사업소가 경기도 과천지역출장소로 승격되고 북부지소와 남부지소가 설치되었으며, 1984년 10월 15일(도 조례 제1485호)에 중부지소가 신설되었다. 도시가 점차 기반을 구축하면서 성장해 나가자 1985년 12월 28일에 공포된 법률 제3798호에 의거 1986년 1월 1일부터 과천지구출장소가 과천시(6개 동)로 승격되었다.



▲ 소래읍 승격

(3)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과 시흥군의 해체

1980년대 중반 이후 시흥지역의 도시화와 성장은 서울의 광역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70년대 서울 주변의 도시들은 기존 시 · 읍급 도시의 빠른 성장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1979년 안산과 과천이 신도시로서 서울 주변 도시에 추가되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공업기능과 행정기능을 정책적으로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서울의 통근권에 해당되는 주변지역이 광역화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도시화되었다.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과정을 보면, 먼저 1962년과 1973년 시흥군으로 편입된 의왕면과 소래면이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1980년 10월 21일 공시)로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81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3425호(1981년 4월 13일 공시)에 의거 서면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독립하였다.



▲ 시흥시 개청

시흥군에서 광명시가 분리된 후 주민의 편익에 따른 2건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즉, 1983년 1월 10일 공시되어 같은 해 2월 15일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소래읍의 옥길리와 계수리가 각각 광명시와 부천시에 편입되었다. 한편 시흥군역의 일부가 광명시와 부천시에 편입되었으므로,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년 1월 10일 공시)에 의거 화성군 반월면 초평리와 월암리가 시흥군 의왕읍에 편입되었다.

1983년 3월 1일에는 군조례 제924호에 의거 의왕읍 동부출장소가 설치되는가 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1986년 1월 1일 과천출장소와 반월출장소가 각각 과천시와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시흥군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관계로 그동안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군역이 읍 · 출장소 또는 시로 승격되는 등 잦은 행정구역상의 변동을 겪어왔다. 1988년 12월 31일 현재 시흥군은 3읍 2면 1출장소 49법정리 1,466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마지막까지 시흥군에 속해 있었던 군포읍 · 의왕읍 · 소래

읍 · 수암면 · 군자면 5개 읍 · 면은 1989년 1월 1일자로 군포읍은 군포시로, 의왕읍은 의왕시로, 소래읍 · 수암면 · 군자면은 시흥시로 각각 승격되었다.

〈표 11〉 1988년 시흥군 행정구역[141]

읍 · 면	리명
군포읍	당리, 당정리, 부곡리, 산본리, 금정리
의왕읍	고천리, 이리, 삼리, 왕곡리, 오전리, 학의리, 내손리, 청계리, 포일리, 월암리, 초평리
소래읍	대야리, 신천리, 방산리, 포리, 미산리, 은행리, 안현리, 매화리, 도창리, 금이리, 무지리, 과림리, 계수리
수암면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 화정리, 능곡리, 하중리, 하상리, 광석리, 물왕리, 산현리, 조남리, 논곡리, 목감리
군자면	거모리, 군자리, 장현리, 월곶리, 정왕리, 죽율리, 장곡리

〈표 12〉 1988년 시흥군 일반 현황[142]

구분 / 읍 · 면	총면적(㎢)	가구(호)	인구(명)			행정구역		
			계	남	여	법정리	행정리	반
계	205.76	69,369	258,433	129,587	128,846	49	190	1,466
군포읍	20.69	23,303	83,785	41,864	41,921	5	34	428
의왕읍	53.40	21,658	81,364	40,320	41,044	11	57	575
소래읍	50.37	16,012	60,548	30,822	29,726	13	44	255
수암면	39.27	4,533	17,626	8,922	8,704	13	30	108
군자면	42.03	3,863	15,110	7,659	7,451	7	25	100

홍복현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141)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89.
(142)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89.

5장 근대가족의 변화와 시흥 주민의 가족생활

조선시대에는 촌락이나 가족 · 친족제도를 매개로 하여 사회체제를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농촌가족은 생산을 담당하는 단위였고, 가족구성원은 노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자들이었다. 부모가 농사일을 하면 자식들이 그 보조 역할을 했고,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이것을 떠맡았다. 개인의 행위는 가족의 행위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과거에 합격하고 출세를 하면 집안의 영광으로 알았다. 이는 당시가 신분제도와 친족질서 속에서 개인의 생존과 생활이 이루어지던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제도는 공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근대국가의 출현으로 크게 바뀌었다. 부부 중심의 개별가족이 친족집단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생활단위가 되었다. 동시에 개인은 가족이나 가문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점차 약해지고, 각 개인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는 경향이 커졌다. 이런 경향은 한말과 일제강점기에도 진행되었지만, 특히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진행되었다.[143] 도시화 과정은 농촌을 기반으로 했던 가족생활의 터전을 도시로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크기와 가구 구성의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가족계획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소자녀가족이 강조되게 되었다. 여성의 산업노동시

(143) 조성윤, 「가족 가문의 사회사」,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역사비평사, 1998, 248~250쪽.

장으로의 편입은 가족 내의 성별 분업방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산업자본주의는 가족생활의 전통적 특면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켰다.(144)

에드워드 쇼터(Shorter)에 의하면 근대가족이란, 첫째는 배우자의 자율적인 선택 및 구애관계, 둘째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 자녀가 어머니에게 미치는 감정상의 중요성, 셋째는 가족과 주변 지역사회와의 경계로서 가족 내의 사적 생활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등을 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중반까지도 기혼남성들과 여성들이 모두 가족보다는 동네단위로 각각의 집단을 구성해 놀이를 즐겼으며, 훨씬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다. 쇼터는 근대에 와서야 배우자 선택에서 낭만적 사랑이 가장 우선하며, 개인적 행복이나 자아발전이 자산이나 혈통보다 우선해졌다는 점을 중시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관계에서도 과거의 가족에 비해 자녀가 중심이 되고 모성애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으며, 가족이 재산 및 재생산의 단위에서 감정적 연대의 단위가 된 점이 바로 근대가족의 특성임을 밝히고 있다.(145)

물론 서양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의 그것은 다르지만, 근대국가의 형성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한국 가족 변화의 양상은 쇼터가 정의한 근대가족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흥 주민의 가족생활 양상이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흥 주민의 구술을 통해서 밝혀 보고, 또한 서구와 다른 한국적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터뷰는 2006년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술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섭외하였다. 구술자의 주요 신상은 〈표 1〉과 같다.

(144) 이정옥 · 한영혜, 「해방후 한국가족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광복50주년기념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5, 130~131쪽.
(145) 조은 · 이정옥 · 조주현,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출판부, 1996, 20~21쪽.

〈표 1〉 구술자의 인적 사항[146]

분류	이름	성별	출생연도/연령	학력	직업(직책)	결혼연령	자녀수
A군	류덕환[147]	남	1916/91	초졸	무직	19세	4남 2녀
	안장국	남	1928/79	초졸	대한노인회 시흥지회 회장	21세	3남 1녀
	김난향	여	1929/78	초졸	주부	20세	3남 1녀
	강명옥	여	1936/71	중졸	주부	20세	3남 1녀
B군	정종미	여	1948/59	고졸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4세	3녀
	차동완	남	1957/50	대학원졸	연구직	29세	1남 1녀
C군	박가영	여	1973/34	전문대졸	유치원 교사		1남 1녀
	유정우	여	1971/36	대졸	주부	28세	1녀
	장동근	남	1977/30	고졸	금속 노동자	28세	무

1. 가족 규모와 구성의 변화

한국의 가족은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현대적인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화해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가족은 산업화 이전의 가족형태로서, 그것이 놓였던 사회경제적 조건은 유교와 농경이었다.[148] 봉건시대의 가족은 생산의 단위였기 때문에 가족의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의료시설의 미비로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가족수는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자의 부모를 비롯하여 부계혈족이 한집에 모여 사는 일이 매우 흔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59년의 농촌가족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식구수가

(146) 9명의 구술자를 세대별로 세 부류로 나누었다. A군은 70대 이상, B군은 50대, C군은 30대이다. 구술은 녹음을 하여 녹취를 푼 것을 주제별로 발췌해 인용하였다. 인용된 구술은 구술자의 말을 그대로(들리는 대로) 서술하였으며, 생략된 말은 '[ ]'로, 필자가 보충 설명하는 말이나 구술자의 행동 등은 '( )'로 표시하였다.

(147) 류덕환 씨는 장녀(69세)와 함께 구술하였고, 일부는 장녀의 구술로 대치하였다.

(148)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1998, 52~57쪽.



▲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
▶ 현대의 핵가족



5~6명인 가구가 3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8명인 가구가 23.4%, 2~4명인 가구가 22.0%였고, 식구수가 9~10명인 가구수도 10.7%나 되었다.(149)

이처럼 전근대사회에서는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 높은 출산율, 부계혈족의 동거 등의 이유로 한 가구당 평균 인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

(149) 고황경 외, 『韓國農村家族의 硏究』, 서울대출판부, 1963, 17쪽.

의의 발전과 더불어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이던 직계의 원리가 약화되었고, 가구당 평균 식구수도 줄어들어 소가족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시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흥의 인구는 1954년에 8만 9,198명에서 1987년에는 22만 6,8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1954년에 253명이었으나 1970년에는 597.8명, 1987년에는 1,102.6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표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가구당 가족의 평균수는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1954년에 가구당 가족수는 5.7명이었고, 1970년에는 5.0명, 1980년에는 4.4명이던 것이 1987년에는 3.9명으로, 소규모 가족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954~1987년 시흥군의 가족수 추이[150]

연도	가구당 가족수(명)	연도	가구당 가족(명)
1954	5.7	1971	5.1
1955	5.61	972	5.1
1956	5.6	1973	5.1
1957	5.6	1974	5.0
1958	5.8	1975	4.6
1959	5.9	1976	4.7
1960	5.7	1977	4.8
1961	5.6	1978	4.7
1962	5.7	1979	4.8
1963	5.8	1980	4.4
1964	6.0	1981	4.6
1965	6.1	1982	4.6
1966	5.6	1983	4.5
1967	5.7	1984	4.4
1968	5.5	1985	4.1
1969	5.5	1986	4.0
1970	5.0	1987	3.9

(150) 시흥군지편찬위원회, 『始興郡誌』 下, 1989, 106쪽.



▲ **가족계획사업** 경제개발을 위해 산아제한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로 인한 출산력의 저하이다.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가족계획사업은 1961년 4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설되고 박정희 정권이 이를 국책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초반의 인구증가율이 3.0%였던 것이 1970년대 초반에는 1.79%, 1980년대 초반에는 0.89%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출산율의 저하와 가구당 가족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봉건시대에도 핵가족이 지배적 유형으로서, 조선시대 핵가족 비율이 60~70%에 이르렀다는 연구도 있다.[151]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핵가족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산업화는 농촌의 젊은 인력을 도시로 유인하였다. 생계수단을 찾아 도시로 나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핵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점차 가족의 규모가 작아졌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는 경향은 시흥시민의 구술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처음에 결혼해 가지구 저 안동네, 월미에 살았어요. 시집에 시할아버님, 시할머님, 시

(151)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20쪽.

아버님, 시어머님, 시동생들, 시삼촌까지. 하여튼 시집 오니까 식구가 열여덟 식구였었어요. 그때는 뭐 옛날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집살이 다 했죠.〈A군 김난향〉

1948년에 결혼한 위의 구술자는 처음에 시집왔을 때 식구들이 18명이었다고 한다. 구술자의 시집은 시부모와 시동생뿐만 아니라 시조부모, 그리고 시아버지의 형제까지 한집에서 사는 전형적인 대가족이었음을 보여 준다. 시부모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아버지의 형제까지 한집에서 동거하는 유형은 보다 엄밀히 말해 복합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家)' 관념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단일가족 개념이 아니라 부계혈족이라는 보다 확대된 가족관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 · C군의 구술자들 중에는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부부 중심의 가족을 이룬 경우들이 많았다.

언니들 사는 모습을 봐서 나는 식구 많은 집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게 골랐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시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남편 고등학교 삼학년 때. 그리고 시아버님이 계셨는데 따로 사시고 계셨고.〈B군 정종미〉

하지만 한국의 가족형태는 외형상 핵가족의 형태를 띤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직계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시)부모를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가족형태가 단순히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직계가족의 원리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다음의 사례를 보자.

저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시어머님을 안 모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전부터 죽 어머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좋은 배우자들을 중매해 오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부모를 모시는 것) 때문에

선을 봤다가도 시어머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내는] 모실 [생각을 했죠].〈B군 차동완〉

처음에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거거든요. 저는 그냥 농담삼아 그랬었어요. "나는 하나니까(외아들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생각이라고.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웃음) 저야 고맙죠. 저는 나가자 그래도 나갈 수도 있는데 전혀 아무런 말없이 그래 같이 살자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C군 장동근〉

우리 신랑은 그게(분가해서 사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의 마음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따로 사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매번 주말은 가겠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입덧을 열 달 내내 했는데두 사탕을 물구라두 [직장이] 끝나면 여기서 시댁을 꼭꼭 갔어요, 토요일 날 근무가 끝나면.〈C군 박가영〉

주로 장남인 경우에는 B군뿐만 아니라 C군의 구술자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위의 B군의 구술사례처럼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매주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분가의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가족의 성격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전통과 근대, 대가족과 핵가족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적 특성을 보이는 지점이다. 즉 한국의 가족은 결혼한 자녀와 그들의 부모가 경제적 · 정서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다. 결혼 이후의 가족생활에서도 대가족적 연계망 속에서 부모에 대한 의존은 지속되어 핵가족은 부부 중심의 가족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은 '핵가족의 이상과 대가족적 현실'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152)

하지만 직계의 원리가 경향적으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도 포착된다.

(152) 구술사례를 통해 현대 한국가족의 특성을 분석한 글로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문화, 2003, 109~132쪽 참조.

저는 처음에는 일을 하니까 어머님이 집에라도 와 계시면 솔직히 저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힘든 건 있겠죠. 우선 애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어머님이 동서 애를 키워주시다가, (지금은) 혼자 즐기면서 사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 아버님이 그냥 버실 때까지는 "우리 그냥 이렇게 살겠다, 니네도 우리가 가면 니네 더 힘들지 않냐, 살기가." 저는 얼마 전까지도 계속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최근에 제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게, 저는 서운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머님 아버님 손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머님은 인제 본인의 시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핑계도 많이 하세요. "내가 나중에 올게"란 말씀을 많이 하세요.〈C군 박가영〉

위의 사례는 취업주부인 며느리가 보육문제로 시부모와 동거하기를 바라지만 시부모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자식에 의존하기보다 부부중심의 문화와 여유를 즐기려는 노인층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인식 변화는 직계가족의 원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직계가족보다 핵가족모델을 선호하는 것도 직계가족의 원리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올해 이월 달에 분가했어요. 같이 살면은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고 괜찮긴 한데 와이프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할머니도 같이 계시니까. 더 힘들죠. …… 처음에는 티 내서 얘기를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느낌이 오더라구요. (웃음)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일 년 있으니까 슬슬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생각을 해 봤죠. 근데 젊었을 때 나가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신경이 많이 써지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가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C군 장동근〉

C군의 구술자는 부부가 모두 (시)부모를 모시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정 기간이라도 부부가 따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시)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이전 세대와 달리 부부를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직계의 원리가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핵가족적 원리가 강화되는 원인은 근대 산업화이론이라는 거대담론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구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직계가족원리에 대해 여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즉 분가를 하는 데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다. 한국가족이 놓인 현실은 아직도 시부모와 함께 살 경우 전통적인 시부모-며느리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증가되는 요인에 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요소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핵가족모델은 여성에게 불리한 직계의 원리를 부정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근대 핵가족화의 경향이 단지 산업화이론으로만 설명되었던 기존의 설명방식은 여성들의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결혼과 출산

1) 결혼 관행의 변화

결혼 관행의 전통성과 근대성은 결혼 결정에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의 여부, 결혼생활이 부부중심 가족인가, 부모-자녀관계 중심의 가족인가의 여부, 결혼 관행과 결혼 자체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의 여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전통적 가족규범에 따르게 되면 결혼은 혼인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 또는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는 정혼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반면 근대적 핵가족의 규범에 의하면 결혼은 당사자의 의견 즉,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자유



▲ **전통혼례** 집안 간의 정혼이 일반적이었다.

연애혼이 일반적이게 된다. 자유연애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혼생활에서는 가족 간 유대의 핵심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감정적인 유대에만 기초를 둔 부부중심 가족은 해체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153)

여기서는 결혼의 결정과정, 자유연애와 결혼의 관계, 결혼 풍습의 변화 등을 통해 시흥 주민의 결혼 관행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결혼 연령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결혼은] 열아홉에, 중매로 했어요. [중매해 주신 분이] 동네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지. 그것두(부인 집안도) 왕족이라구 그래서 장가들이셨는데. [처가는] 가까이 살았어요. 요 위에 장곡리. 거기는 열여덟 살이구, 나는 열아홉 살이구.〈A군 류덕환〉

스물한 살에 결혼을 했어. 우리 할어버지가 "환갑 때 손주며느리가 잔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종손이구 그래서 조혼을 시킨 거지.〈A군 안장국〉

육학년 졸업하구, 그러고는 집에 있다가 여자정신대 간다고 그래 가지고 시집을 일찍 왔죠. 그때는 왜정 때라 여자정신대를 보낸다고 해서 서울 가서 작은 집에 좀 숨어 있다가 그냥 결혼한 거예요. 중신은 이제 동네분이 하시구, 나는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중매로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식날] 처음 [남편을] 뵌 거예

(153) 이정옥 · 한영혜, 「해방후 한국가족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광복50주년기념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5, 146~147쪽.

요. 그냥 맘에 들더라구요. 그래 가지구 오늘날까지 아무 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때가 스무 살.〈A군 김난향〉

1955년 이래 35년간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져 왔다. 남녀 모두 높아졌지만 증가의 폭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훨씬 컸다. 1990년 남자의 초혼연령이 28.6세로서 1955년의 24.5세보다 4.1년이 증가하였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5.1년이 증가하여 1990년의 초혼연령이 25.5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녀의 결혼연령 차이는 1955년 4.1년이던 것이 1990년에는 3.1년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

〈표 3〉 1955~1990년 평균 초혼 연령의 변동 추이(154)

연도	전 국			시 부			군 부		
	남	여	차	남	여	차	남	여	차
1955	24.5	20.4	4.1	25.5	21.5	4.0	24.3	20.1	4.2
1960	25.4	21.6	3.8	26.8	22.8	4.0	24.9	21.0	3.9
1966	26.7	22.8	3.9	27.7	24.0	3.7	26.1	22.0	4.1
1970	27.1	23.3	3.8	27.5	23.8	3.7	26.8	22.6	4.2
1975	27.4	23.6	3.8	27.6	24.2	3.4	27.1	22.9	4.2
1980	27.3	24.1	3.2	27.4	24.3	3.1	27.3	23.5	3.8
1985	27.8	24.8	3.0	27.8	25.0	2.8	27.9	24.0	3.9
1990	28.6	25.5	3.1	28.4	25.5	2.9	29.0	25.1	3.9

앞에 언급된 구술자들은 일제시기에 주로 결혼을 하였는데 초혼연령은 주로 남녀 모두 20세 전후였다. 또한 결혼의 형태도 자유연애가 아닌 중매혼을 하였다. 그리고 결혼의 이유가 "환갑 때 손주며느리가 잔을 올렸으면 좋겠다"(안장국 씨의 구술)는 할아버지의 소원 때문이라고 한 데서도 드러나듯 부계혈통을 잇는 것이

(154) 권태환 · 김태헌 · 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38쪽; 조사통계국, 『한국의 사회 지표』, 통계청, 1990.

혼인의 중대 이유였다. 이러한 혼인방식은 1950~1960년대 농촌에서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에서는 결혼 연령도 늦춰지고 혼인에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가 더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 선을 봤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맞대 놓고 보기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렴풋이 보니까 물론 경제력도 있어야 되구 그렇지만 우선 인상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한눈에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어렴풋이 괜찮을 것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 데이트는 남산도 가 보고 탁구장에도 가 보고 ……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번 결정한 거면은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그래 가지구 한 달 만에, 선 보고, 한 달 만에 했어요.(B군 정종미)

> 신랑은 어린이집에 근무를 할 때 동료 선생님의 친구였어요. 그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서 일 년 반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가 부다 하구 차 한 잔을 마시구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는데 저희 신랑은 인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밤새 삐삐가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얘기를 했는데 거의 새벽 세, 네 시까지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한 거예요, 저희 신랑이랑. 그러고 저희 신랑은 저를 봤을 때 결혼상대로 생각을 해서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를 갔구요, 만난 지.〈C군 박가영〉

B · C군의 구술자들은 소개를 통해 상대를 만났더라도 결혼을 결정하는 데 본인의 결정을 더 중시하였다. 즉, 집안의 어른들이 주도하는 중매가 아니라 본인들이 결혼을 염두에 둔 중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선을 본 후 데이트를 즐기는 등의 자유연애혼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결혼 양태를 보여 주고 있다.

서로 직장생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가끔 만나서, [아내가] 오빠네 집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데려다 주는 과정 속에서 데이트를 했죠. 뭐 레스토랑을 갔죠. 저 같은 경우는 쑥맥이라 잘 몰랐고 집사람이 좀 그런 쪽으로 리드했는지도 모르죠.〈B군 차동완〉

평일에는 제가 바빠서 그냥 얼굴만 보는 정도고, 주말이나 그럴 때, 빨간 글씨, 그럴 때는 많이 놀러 다녔죠. 뭐 강원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해수욕장이나 산 그런 데 많이 다녔어요. [데이트 비용은] 같이 [냈어요]. 제가 두 번 내면 자기가 한 번 내는 식으로.〈C군 장동근〉

주로 데이트는 사회생활을 둘 다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남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러 다니고. 주중에는 주로 전화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또 남편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배구경기를 관람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주는 아니지만 등산을 하기도 했구요.〈C군 유정우〉

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에 애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근대에 새롭게 일반화되었다. 근대 이전의 시대에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 이해되었고 가계를 잇는다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의 사랑과 애정은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애정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근대가족은 결혼에서 남녀의 사랑을 중시하였고 이에 따라 연애문화가 일반화되었다.(155) 데이트를 할 때 한식당보다는 레스토랑이 선호되는 이유도 연애를 근대적인(서구적인) 문화코드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방식의 변화와 달리 결혼예단을 비롯한 혼수 관행은 크게 변화하

(155) 근대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연애를 분석한 글은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참조.



▲ 혼수로 해 온 가구

지 않았다. 주로 남자가 거처를 마련하고 여자가 살림장만을 하였다. 다만 C군은 전통적인 절차에 따른 혼수를 하기보다 실용적으로 살림장만을 하거나 돈으로 예단을 대신하는 경향이 강했다.

옛날에 혼수랄 게 뭐 있어요. 장롱이랑 뭐 이런 옷 같은 거 그런 거죠.〈A군 김난향〉

혼수가 어딨어요? 옛날에는요 신랑이 옷두 빌려 입구 했어요. …… 밥그릇두 그때는 양재기가 양은은 양은인데, 손꾸락이 쭈꾸닥 쭈꾸닥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 거 양재기 몇 개. 그거 사 갖구 숟갈 두 개 사구 그랬는데. 그 전 때는 뭐 살 것도 없구, 그저 이불하고 베개만 있으면 자구요. 옛날에는 나무 상자에 사과를 담아 팔았어요. 거기다 하얀 보자기 같은 거 씌워 놓고 찬장 겸 그렇게 사용했어요, 옛날에. 예단두 옷 한 벌 해 주구 우리가 혼배성사를 했어요, 성당에서. 그 당시에 할 직에 금반지 서 돈 했어요.〈A군 강명옥〉

[혼수는] 문을 앞으로 잡아 댕기는 거 말고 미닫이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 두 쪽짜리 나무농. 살림은 아이들 낳고 살다가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거. 그리고 남편이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림살이 몇 가지가 있어서. 또 옛날에는 접시 같은 거 세트로 샀어요. 접시라든가 냄비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거 약간. 둘이 사는 거니까. 농은 기본적인 거니까 두 짝짜리 해 오고. 그리고 인제 이불. 그것도 간단하게 해 왔어요, 철철히 것만. 그리고 옛날에는 요강,

세숫대야, 놋대야 그리고 그 속에다가 팥하고 쌀하고 이런 거하고 솜하고 넣어 가지고, 소리 나지 말라고. 그런 거는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두 그런 거는 해 가지고 와야 된다구 그래서. 그리구 이불 같은 거 덮을라구 하면은 귀바늘로 뜨개질을 해 가지고 덮는 거 있어요, 이불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내가 손뜨개, 귀바늘뜨개 해 가지고 왔던 생각이 [납니다]. 시댁에는 시아버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거는(혼수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굉장히 그때는 생각 못 했던 일이지요. 아마 버선이나 양말이나 이런 정도로, 그래두 그냥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때는 돈이 없고 전세방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태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절약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이해들이 되셨어요. 아주 간소하게 했어요.〈B군 정종미〉

가구라든지 텔레비전, 예단.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거는 다 했어요. 예단 비용도 그 당시에는 작지 않은 액수로 해 드렸구요. [예단은] 친척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돈으로 [했어요].〈A군 박가영〉

꼭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사서 보내 드리구요. 그 외에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돈으로 드리고. 저도 받기도 하고 그랬죠. 요즘 평범한 사례죠 그게. 집은 남편이 마련하고 살림살이는 제가 하고.〈C군 유정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단 비용을 줄여서 주택마련자금을 예비한 현실파도 있었다.

그냥 단칸방에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직장을 다녀서 저축을 해 가지고 저축한 돈을 다 살림을 해 온 것이 아니라 일부 현찰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선적으로 그래도 먹고 자고 할 집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인제 현찰로 가져왔는데.〈C군 정종미〉

이처럼 남녀가 나누어서 집과 살림 장만을 했던 것은 오랜 세월 변하지 않았지만, 혼수와 살림 세목 등은 많이 변화했다.

2) 출산과 가족계획

전근대사회는 가족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다산 관행은 1950년대 농촌사회에도 지속되었다. 1959년 농촌가족 연구에서 보면 7명 이상을 임신했던 경우가 3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6명을 임신한 경우로 31.5%, 1~3명을 임신한 경우가 29.4%였다. 출산 횟수는 4~6명을 출산한 경우가 35.3%로 가장 많고, 7명 이상을 출산한 경우도 30.9%나 되었으며, 1~3명을 출산한 경우는 29.4%였다. 또한 5명을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로 보기도 하였다.[156] 시흥 주민의 경우도 주로 1950년대 이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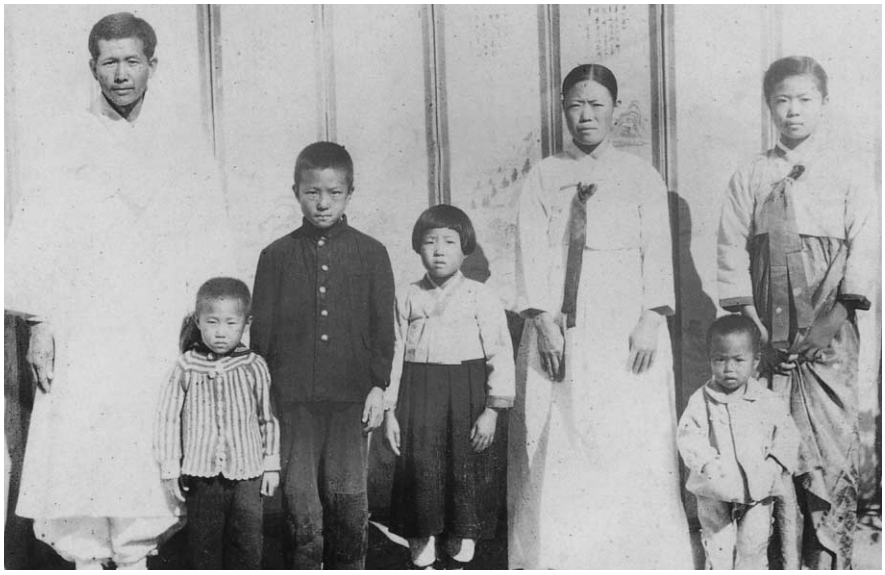
[자녀는] 아들 4형제하구 딸 둘 하구.〈A군 류덕환〉

큰 자녀는 스물두 살에 낳았어요. 3남 1녀.〈A군 김난향〉

그러나 1960~1970년대로 넘어오면 아이를 많이 낳는 관행은 점차 약화된다. 이것은 도시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 때문이었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 출산조절을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의 대대적인 시행은 '생기는 대로 낳던' 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사실 둘만 낳을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려웠으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먹구

(156) 고황경 외, 『韓國農村家族의 硏究』, 서울대출판부, 1963, 34~37쪽.



▲ 다자녀 가구
▶ 가족계획사업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 사는 일이 월급만 받아 가지구는 한정이 있는 생활이니까. 그때는 또 자녀 덜 갖기 운동을 했어요. 둘 아니면 하나. 시대적으로도 그러했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애요.〈A군 정종미〉

위의 구술에서 보이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에 결혼을 한 경우, 임신 · 출산에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던 시대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은 피임기구를 보급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슬로

건 · 표어 · TV드라마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을 크게 강화하였다. 1960년대 셋으로 제시되었던 표준적 자녀수는 1971년 '둘 낳기 운동'으로 둘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둘 낳기'라는 목표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출산하는 경향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통해 남아선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중요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157)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이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차원에서 고안된 것이기는 했지만, 개별 가정 단위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여성의 건강 등이 고려되면서 출산조절의 필요성이 적극 수용되었다.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자녀를 원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가사노동이었다. 앞의 구술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육열의 고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것은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의 고된 집안일은 많은 자녀를 원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아래의 구술은 대식구가 같이 살며 시집살이를 했던 여성이 힘든 가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절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임신을 또 했었는데] 내가 결심을 했죠. 시골에서 이렇게 일이 씨구(힘들고) 많은데 자식을 많이 낳으믄 다 가리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구 유산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가서 했죠. 그래서 그냥 넷만 낳았어요. 그러구 그냥 루프 같은 거 끼구 그랬어요.〈A군 김난향〉

[막내를] 서른 살에 낳았어요. 10년[동안] 낳았어요. 그 밑으루 애가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는데 내가 맨첨부터(맨 처음부터) 식구가 여섯 식구였잖아요. 그 전 때는 물을 지게로 져다 먹었어요. 그러믄 지게로 다 지어다가 빨래도 해 입히구 다 모든 걸

(157)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168~169쪽.

했었어요. 그걸 노상 지어다 먹어 갖구 좀 그랬어요(힘들었어요). …… 우리 친정에가 손이 좀 귀했어요. 몇을 두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두 아, 손(자손)은 좀 많어야 되겠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넷을 낳으니까 우리 시누들, 막내 시누도 그 때 시집을 안 가고, 셋째도 그때 시집을 안 가고, 그런데다가 애가 또 있으니까 [식구가] 일곱, 여덟, 아홉 식구 막 이렇게 되요. 그러니까 점점 헐 수가 없죠. 식구는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내가 야야 안 되겠다 그래 갖구 안 낳으니까 넷인가, 넷인가 없앴어요. …… 하여간에 내가 일 년에 세 번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는 것 같애요. 2년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유산시켰거든요.〈A군 강명옥〉

A군 여성들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생기면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유산의 횟수도 3~4회로 매우 많다. 이를 통해 이 여성들이 유산을 하였던 1960년대까지도 피임상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유산을 결정하는 데에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기도 하였다.

제가 그냥 결심을 했으니까. 근데 인저 할아버지(남편)는 몰르지요. 몰래 내가 댕기구 했으니까. 그런 거는 저 남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좋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 했죠. [친정부모와도] 상의 안 했어요.〈A군 김난향〉

A군에 속한 이 여성은 피임과 중절에 대해 남편이나 친정식구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고 한다. 피임방법도 루프를 사용하며 여성이 혼자 피임을 전담하고 있다. 이것은 임신과 출산, 피임 등에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속한 일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보여 준다. "남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좋잖아요"라고 하는 말도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B군에 속한 구술자는 피임이나 단산(斷産)문제에 대해 남편과 상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피임을 했죠. 그때 약을 조금 먹었는데 그러면 또 안 좋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그래서 콘돔도 조금 사용해 봤고, 콘돔도 역시 좀 그런 거 같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루프 [사용했어요]. 그 당시 남자들이 그런 거 사러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약국에 가서 [내가 직접 콘돔을] 샀어요. 콘돔 사용하다가 막내가 생긴 거예요. 그리구 나서는 막내 낳고는 그냥 과감하게 [내가] 수술했어요. 막내를 수술해서 낳았거든요. 수술한 김에. 더 이상 아들은 바라지 말자 그렇게 남편하고 상의해 가지고.〈B군 정종미〉

피임과 출산문제에 대해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는 모습은 A군의 부부관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미약하나마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여성 혼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도 피임을 주로 여성이 하고 있다. 피임약 복용과 루프 사용, 불임수술을 여성이 직접 하였다. 또한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도 여성이 직접 구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이전 세대인 A군과 유사한 점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C군은 주로 피임을 하거나 피임기구를 사는 일을 남성이 한다. 이것은 임신과 출산, 피임과 관련된 일들을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A · B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피임방법은] 자연피임이나 남편이 [피임을 해요]. 콘돔이나 자연주기를 이용해서. [콘돔을 사러] 같이 간 적도 있구요, 남편이 산 적도 있구요.〈C군 유정우〉

[피임은] 콘돔. [불임수술을]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하고 신랑보고 하라고 했는데 신랑 두 싫대요. 그래서 그냥 [콘돔을 써요].〈C군 박가영〉

남성이 피임을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늘어난 각 대학의 여성학 강의는 남녀평등론에 입각

한 성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것은 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의 성의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의 매체에서 남성이 콘돔을 구입하는 장면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젊은 남성들이 직접 피임기구를 준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3. 가족 내의 성역할 변화

조선시대에 결혼한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사와 손님접대였다. 이 시대는 부부관계보다는 부자관계가 중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을 잘 내조하는 '양처(良妻)' 보다는 시부모 봉양을 잘 하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더 중시되었다. 또한 육아도 아이의 어머니가 전담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경우 하루 종일 가사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도맡아서 양육할 형편이 못 되었다. 주로 아이들은 나이 많은 시부모가 돌봐 주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가에서는 유모를 따로 두어 육아를 돕게 하였다. 또한 자녀교육도 아이의 어머니가 직접 하기보다는 집안의 남자 어른이 했다. 딸에 대한 성교육과 가사와 관련된 교육만 어머니가 담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서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층이 탄생하게 된다. 근대의 전업주부는 유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는 '현모(賢母)' 와 남편이 바깥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양처' 를 중요한 덕목으로 하였다. 근대적인 '현모' 는 아이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학교 교육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내조하는 여성의 역할도 시부모를 봉양하는 덕목 이상으로 강조되었다. 근대적인 '양처' 는 남편에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남편의 동반자로서 부부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근대적인 현모양처의 개념에 비추어 시흥 주민의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녀 양육

근대적인 현모는 아이들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양육하고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어머니를 말한다. 이러한 근대적인 어머니상(像)은 높아지는 교육열과 함께 그 역할이 더욱 중시되었다. 교육열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의무교육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생이 급증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서열화가 뚜렷해지고 사회 전반의 교육열기를 시설과 교원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입시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과열된 입시경쟁은 부모들의 자녀교육 열기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도시 중산층 주부에게는 드센 '치맛바람'을, 농민에게는 '우골탑(牛骨塔)'을, 도시 서민에게는 '북청 물장수의 신화'를 낳았다.

1954년 삼성물산, 1957년의 락희화학, 1958년 금성사 등의 대기업 공개채용제도의 시행도 교육열을 과열시키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였다. 대기업의 공채제도는 영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으며, 대학의 서열화를 촉진시켰다.[158] 대기업 입사를 위한 대학생들의 치열한 경쟁과 취직이 잘되는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입시경쟁은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만들어 버렸다.

> [아이들 공부는] 봐 주기는 봐 줬죠. 뭘 물어 보는 거나 대답하고 그랬지, 특별히 저기 한 건 없구. 그 전 때는 시방 쉰 두 살짜리가(큰 아들이) 중학교가 시험제였어요. 또 시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외 사학년부터 늘 시키구,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과외 같이 하는 아이들이] 열 명인데 한나에(한 명당) 30만 원씩인지 3

(158)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253~255쪽.



▲ 장한 어머니상 시상

만 원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딴 애들은(딴 자식들은) 못 시켰어요. 우리가 돈 조금씩 벌어 갖구 시킬 수 있어요? 못 시켰죠.〈A군 강명옥〉

이 여성은 과일노점상을 하며 천막집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큰아들을 좋은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비싼 교육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과외를 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지자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어머니의 역할은 점차 강조되었다. 또한 사친회나 사은회와 같은 학교 관련 행사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사친회, 사은회 이런 거를 집에서 음식을 해 가두,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집에서 휘답해서, 하다못해 감주까지, 김까지 사다가 싹 돌리구 그냥. 그 사은회를 우리 어머니가 다 치르시는겨. 그렇게 열혈 여성이여.〈A군 류덕환 씨 딸〉

그러나 이 여성은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이 어려운 조카들까지 다 교육



▲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관심

시키고 돌보아 왔다고 한다. 이것은 가족을 부모와 자식들로만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생각하기보다 남편의 혈족을 포함하는 확대된 가족으로 여겼던 전통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어머니는 애기를 낳아서, 밥을 잡숴야 젖이 나서 멕이는데, 젖이 안 나. 못 잡숴서. 조카들하구 같이 먹구, 어쩌든지 피죽이래두 끓여 먹구 살아보자구 하구. 그러니까 큰댁 식구하구 우리 식구 하구 한데 생활을 다 어머니가 휘담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박봉에 면사무소 직원 하시구, 처음엔 군청 다니시다가 면으루 오셔서 면사무소 직원을 하시는데. 옛날에 공무원 월급 알지? 나무를 어디가, 이 방이 뜨듯하도록 때 볼 수가 있어. 밥만 끓여서 후루룩 하고. 정말 춥게 자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시매 그 조카들하구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그런데 인제 어머니가 시집장가를 아들들까지, 조카를 다-, 5남매를, 아들 형제, 딸 3형제야, 우리 큰아버지가. 그걸 다 국민학교 졸업해서 시집장가 다 보내셨어,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장한 어머니상을 타시게 됐어.〈A군 류덕환 씨 딸〉

일제시기나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가장 중시했던 것이 위생과 가정교육이었다. 그러나 1960~1970년대부터는 아이들의 교육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조기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훌륭한 어머니는 유아 및 아동 교육에 대한 유능한 관리자로 정의되었다. 1960~1970년대에 도시 중산층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이었다. 이전 시대에 국가 번영을 위해 자녀 교육이 중요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자녀 교육은 가족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일류학교에 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당시의 열성적인 중산층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일류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아 경쟁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또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여성들은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이 시기에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육아서적 출판이 상당히 증가했으며, 신문과 여성잡지에는 조기교육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들이 종종 게재되었다. 어머니들은 취학 전 아동교육, 발달심리학 그리고 지능 개발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 관한 책들을 읽고 활용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장난감과 다양한 놀이도구를 구매하고 『가정백과』, 『주부백과』 같은 서적들도 참고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B군 구술자는 직접 한글과 한문, 피아노 등을 집에서 가르쳤다고 한다.

> 물론 인품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살아가면서 죽– 이렇게 이뤄지고 가정교육으로 같이 연관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우선적으로 그래도 좀 더 공부를 잘 하는 쪽으로 해서. 왜 더 그것을 생각을 했냐면 그때 장학생제도가 있었거든요.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 공부도 잘 하고 나름대로 자기 앞길은 헤쳐 나가기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집에서 제가 두 아이는 한문도 좀 가르쳤어요. 피아노 교습소에 보내 보기도



▲ 아이와 놀아 주는 아버지

하고, 박봉에. 그리고 유치원은 딱 1년 정도만 보내 주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주로. 한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깨우쳐 주고, 그리고 산수라든가, 제가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나름대로 직장 다니면서 조금 배운 게 있어서 교습소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구요. 집에서 복습을 해 주구 그래야 되니까. 하면서 인제 음악에 대한 아이들한테 맞는 음표라든가 리듬, 요런 거 집에서 조금 가르쳤어요. 저는 그 한문의 뜻글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건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문도 좀 집에서 가르쳐 주고. 저는 주판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조금 가르쳐 보고. 그리고 인제 나름대로 책을 좀 많이 읽어 주고. 그리고 책을 좀 보도록 아이들한테 권해 줬죠.〈B군 정종미〉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다.

우리는 같이 했어요. 외부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치맛바람 부는 것처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건하고 환경적인 것을 조성해 주고 뒷바라지해 주는 것을 최선을 다 해줬죠. 대화두 나누고 학습지 같은 것도 같이 하지만은 과제 부여도 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거 제공해 주고 그랬죠.〈B군 차동완〉

어머니가 교육을 전담을 하고 아버지는 놀이와 여가를 담당하여 자연스레 부부가 육아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제가 전담해서. 나도 역시 남편한테 해 주라 그런 거보다, 남편은 어느 부분을 맡았냐 하면 아이들하고 놀아 주는 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지금두 아빠한테 어떤 때는 귀엽다고 그러고.(웃음) 사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정도로 아빠하고 가깝다. 저는 좋더라구요, 그런 면이. 지켜보는 게. 괜히 뿌듯한 거 있죠. 나를 안 좋아해도. 왜냐면 나는 좀 엄하게 하고 아빠는 여태까지 아이들 혼내키는 적이 없어요.〈B군 정종미〉

위의 구술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과거 전통사회의 엄부(嚴父)에서 탈피하여 자상하고 가정적인 역할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해방 후 미국식의 가족모델이 민주주의적 가족의 전형으로 선전되면서 이상적인 아버지상(像)도 탈권위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구적인 남녀평등론에 입각한 가족질서는 교과서를 통해 교육 · 전파되었다.

> 아직도 민주주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침투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존장자가 완고하여 연소자의 의견을 무시, 억압하고 그 개성을 발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159)

> 자유와 평등의 관념이 발달하지 못하여 처나 자식들을 남편이나 부친에게 예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부모나 친족에게 의뢰하는 마음이 강하여 일문 중에 출세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친족들이 그 도움을 받으려고 모여드는 일이 많으며, 또 자칫하면 파벌심이 생기기 쉬운 것 따위는

(159) 손명현,『(고등학교 사회과 3학년용) 문화의 창조』, 을유문화사, 1957.

큰 폐단이다. 우리들은 미풍을 길이 보존하는 동시에 폐단을 하루 속히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160]

물론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효와 도의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전통'과 '미풍양속'이 강조되는 한편, 전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민주적인 가족질서로 이상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해방 후 세대의 가족 관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C군의 가정교육을 보면, 역시 인지교육은 어머니가 전담하고 있다. B군과 차이가 있다면 자녀의 학습에 있어 어머니의 개입 정도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다음의 구술자는 직장을 다니는 취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저녁에 아이의 교육을 직접 챙기고 있다.

제가 많이 알아서 하는 편이구요. 저희 신랑이 집을 비울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저한테 그런 거는 좀 맡기는 편이에요, 집안일은 다. 학습지는 집에 저녁에 와서 제가 같이 해줘요. 같이 풀어 주구. 한글 가르쳐 주구, 책 읽어 주구, 제가 책에 대해서 독후감 쓰는 것은 같이 했었어요.〈C군 박가영〉

200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학교 수업 뒤 과외공부를 하는 어린이가 86.9%에 이르렀다. 학원과 과외공부에 할당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17.8%)~3시간(13.8%)이 가장 많았고, 4시간 30분을 넘는다는 아이들도 8.5%나 됐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고학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포함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61] 이러한 교육현실은 시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 이외에 주로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

(160) 김중한, 『공동생활』 1, 1960.
(161) 『한겨레』 2006년 5월 3일.

육문제에 가장 큰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부의 '가정교사' 로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20 · 30대의 젊은 주부들은 단순히 자녀의 글자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학교나 학원 숙제를 돌봐 주는 등 총체적인 '교육 매니저'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의 과잉 교육열과 과도한 경쟁체제는 놀이와 휴식으로부터 아이들을 몰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일상을 모성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다.(162)

이처럼 세대가 내려올수록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덜 중시되는 데 반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더욱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녀들 공부를 잘 시켜서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는 어머니 역할이 다른 어떤 역할(며느리, 아내)보다도 우선시되고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교육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왜곡된 교육현실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2) 가 사

가사노동의 양태는 각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며 변화해 왔다. A세대는 가사를 여성들이 전담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노동강도가 매우 강했던 특징을 보인다.

> 그때 당시에는 밭일은 안 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짓구, 시부모님들 다 상 차려서 갖다 조반 대접하구, 또 인저 그거 치우고 나믄 시골이라 일을 하니까 새참 또 해야 되구. 새참하구 나믄 또 점심해야 되구. 매 그게 반복했어요. 저녁 또 하구. 옛날엔 다 겸상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시삼촌 따로, 시

(162) 여성들의 일상이 모성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음을 밝힌 글로 윤택림,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권 2호, 1996 참조.



▲ **절구질하는 여성들** 전통사회에서 가사는 여성이 전담하는 영역이었다.

동생하고 시누들은 그냥 한데 먹구 그랬죠. 저는 옛날이라 부엌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혼자요. 바느질은 뭐 많이 했죠. 옛날에 뭐 저고리 바지도 꼬매고 두루마기도 꼬매고 그런 거 다 했어요. 쉴 새 없죠. 어디 나가 본 적도 없구요. 나갈 수도 없구, 옛날이라. 시어머니 시할아버지에 뭐 층층시하라. 친정에도 잘 못갔어요.〈A군 김난향〉

집안 살림은 [나밖에] 누가 할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좀 저기 할 수도 없고. 내가 밤에도 일 많이 하고. 낮에 못 하는 거 밤에 다 하고. 식구들 많잖아요. 식구들 양말 꼬매는 것두 다 밤에 하고.〈A군 강명옥〉

위의 구술자들은 시집살이를 하며 살림을 거의 전담하였다. 김난향 씨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을 식사 준비하는 데 보냈다고 한다. 하루 세 끼 식사에 새참까지 많은 식구들 상을 보는 일은 아주 고된 일이었다. 거기에다가 간장 · 된장 · 고추장 등 장 담그기, 김장하기, 장아찌 등의 밑반찬 만들기, 제철 나물 손질해서 말리기 등 장기적으로 먹을 저장음식을 만드는 일을 틈틈이 해야 했다. 빨래와 옷 만들기 등도 역시 여성의 몫이었다. 이처럼 A세대 여성들은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

하였다. 그러나 B세대에는 조금씩 남성들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많이 도와주죠. 제가 사회활동 하고 하니까. 혼자 감당은 사실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청소 같은 거, 청소기 하고 닦고 이런 거. 왜냐면 자영업을 하니까 남편이 시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하니까.〈B군 정종미〉

> 내가 인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죠. 저희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주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 생일날 외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손수 차려 주구 그래요. 내가 잘 하는 거는 밥하고 미역국 끓인다거나 갈비찜이라거나 그런 건 잘 해요.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입맛이 없구 저거 한다 그래서 새로운 요리도 식구들을 위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B군 차동완〉

1981년에 서울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 52.4%의 주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사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을 주로 많이 주는 사람은 가사사용인(파출부)이 27.4%로 가장 많고, 시부모(친정부모) 16.3%, 남편 15.6%였다. 그러나 가사를 주부가 전담하는 경우도 23%나 되었다.[163]

〈표 4〉 가사에 도움을 받는 정도[164]

도움을 받는 정도	비중(%)
아주 많이 도와준다	15.0
다소 도움을 받는다	37.4
별로 도움이 없다	24.5
전혀 도움이 없다	23.1
계	100.0 (274명)

(163) 이동원, 「도시가족(서울)에 관한 연구-주부의 역할 및 자녀관의 변화:1958~1980」,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2권, 이화여대대학원, 1983, 79~80쪽.

(164) 이동원, 「도시가족(서울)에 관한 연구-주부의 역할 및 자녀관의 변화:1958~1980」,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2권, 이화여대대학원, 1983, 79쪽, 표 Ⅱ-7 참조.

〈표 5〉 가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165]

도와주는 사람	비중(%)
가사사용인(파출부)	27.4
시부모/친정부모	16.3
남편	15.6
자녀	18.1
도움을 받지 않는다	21.9
기타	0.7
계	100.0(274명)

위의 조사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은 층에서 자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층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군에서는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남편과 합리적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가정이 많았다.

저는 빨래하고 청소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와이프가 다 하고.〈C군 장동근〉

장은 남편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봐요]. 신랑은 잘 도와요. 청소 잘 해요. 예전에는 평일날두 저희 신랑이 더 늦게 나가요. 제가 더 일찍 나가구. 그러면은 저희 딸을 챙겨서 저희 신랑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들 옷 입혀 놓고 밥만 먹여 놓거나. 아니면 애들이 못 일어나면 밥만 챙겨 놔요. 밥을 챙겨 놓고 가면 신랑이 일어나서 애들 세수하라 그러고 옷 입혀서 밥 멕여서 데리고 나가요. 그렇게 계속 해 왔어요.〈C군 박가영〉

이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사를 분담한다. 부인이 아침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남편이 어린 자녀들의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서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한다.

(165) 이동원, 「도시가족(서울)에 관한 연구—주부의 역할 및 자녀관의 변화:1958~1980」,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2권, 이화여대대학원, 1983, 80쪽, 표 Ⅱ-8 참조.

그리고 장을 보는 일도 부부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장을 보는 일은 젊은 부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장을 보던 과거와 달리 대형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풍속도라고 하겠다.

> 장을 볼 때 항상 남편하고 같이 주말을 이용해서 보구요, 일주일치 필요한 물품들을 같이 사구. 그것도 일종의 가사 분담이죠. [그리고 육아에서도] 엄마가 못 놀아 주는 부분을 많이 채워 주는 편이예요. 같이 목욕을 시켜 준다든지 아이 옷을 챙겨 준다든지 그런 거는 남편이 많이 해요. 식사 준비도 많이 하는 편이예요. 주말을 이용해서지만.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제가 바쁘거나 약속이 있을 때 사먹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요, 집에서. 같이 있을 때도 주방에서 밥 준비하면 같이 들어와서 해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웃음) 그게 더 빠르잖아요. 제가 조리를 하면 본인은 수저를 놓는다든지, 음식을 담는다든지, 그 정도는 해요. 아이 없을 때 한 삼 년 정도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구요.〈C군 유정우〉

C군에서는 전업주부일지라도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기보다 가능한 부분은 남편과 같이 가사를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젊은 세대일수록 강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남성들이 가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첫째,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사는 핵가족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부모세대의 사고방식과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다. 둘째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이 가사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는 청소기나 세탁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가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사회적으로 부부 평등의식이 고양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편들의 가사 참여는 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사 참여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된 양상은 아니다. 여성의 노동력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과 보육시설 미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하는 형태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가사 참여는 아주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가사노동의 성역할 구분문제는 사회구조적인 것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의 주변화문제와 보육문제, 가부장적 의식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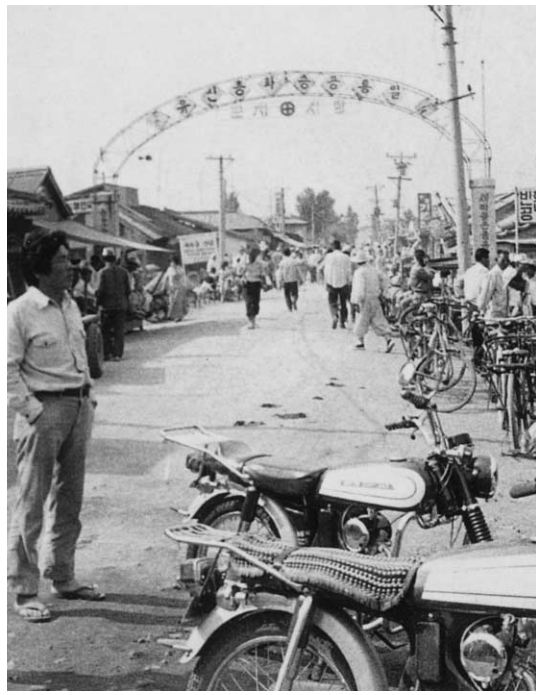
4. 경제생활의 변화

1) 경제권

1959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돈을 남편이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4.2%이며, 대체로 남편이 관리한다는 응답이 20.8%, 대체로 부인이 관리한다는 응답이 3.7%, 전적으로 부인이 관리한다는 응답이 11.0%였다. 이 외에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는 대답도 각각 6.9%, 3.6%가 있었다.[166] 이처럼 1950 · 196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는 경제권이 거의 남성에게 있었다. 다음의 구술자도 이렇게 남편이 경제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자녀들의 학비나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 오는 일도 모두 도맡아했다고 한다.

> 돈 관리는 내가 했지. [자식들 월사금도] 다 내가 했지. 장에도 내가 갔지. 옷감이나 떠 오구 비닐에 석유나 한 통 사 오구 그러면 생활이 되는 거지.〈A군 류덕환〉

(166) 고황경 외, 『韓國農村家族의 硏究』, 서울대출판부, 1963, 46쪽.



▲ 장에 나온 남성들

돈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영감님이 그걸 다 했어요. 지금까지도 해요. 지금까지도 나는 만 원 달래면 만 원 주구요, 2만 원 달래면 2만 원 주구 그래요, 지금두. 저번 때 시누가 "오빠 이제 언니한테 넘겨줘" 그러는데 안 넘겨줘요. 어떤 때는 불만이 있는데 그게 더 편안할지도 몰라요. 노인네도 편안하고 나도 편하고. 여직까지 한 일이니까, 이제 냄겨주면 (넘겨주면) 노인네도 섭섭할 거구 하니까, 그냥 괜찮아요.〈A군 강명옥〉

[중대사는] 시아버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결정하시죠.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남편)는 직권이 없었어요. [재산 관리도] 다 웃어른들이 다 하셨죠. 결혼하구 한-푼두, 십 원 하나 타서 쓰지 그런 건 못 만졌거든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구 나서는 영감이 다 했죠. 시방은 제가 합니다. 시골이니까 야채구 뭐구 여기서 다 나는 거니까 다른 거, 신 같은 거, 이런 거 다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사다 주시고 했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돌아가시구 나서 처음 [장에 가 봤어요]. 얼떨떨하죠, 뭐. 좋죠, 그때 당시에는 내 세상 만난 거 같았죠. 맨날 갇혀서 살았으니까.〈A군 김난향〉

이처럼 돈 관리를 전적으로 남편이 한 이유는 전통적인 사고방식도 한 원인이

되었겠지만, 농촌 경제생활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농촌에서는 먹거리를 비롯한 소비용품을 주로 자급자족하였다. 생산(수입)과 소비가 분화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산은 남성이 담당하고 소비는 여성이 담당한다는 인식이 크게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돈의 관리는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전담했던 경우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와 C세대에는 주로 여성들이 남편의 수입과 통장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시생활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은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여성은 남편의 수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소비활동은 자연 여성의 몫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돈의 관리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 [통장 관리는] 제가 했어요. 우리 집 양반이 다 맡겨 버리드라구요, 알아서 해주라고. 여태까지 우리 집 양반은 우리 집이 어느 정도의 돈이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고도 안 하고. 아예 돈은 나는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고 [그래요].〈B군 정종미〉

> [통장 관리는] 제가 전적으로 했어요. 지금도 그 터치는 없어요. "니가 할 일은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남편이 말해요.] 제 결정권이 더 큰 거 같애요.〈C군 박가영〉

2) 주택마련

한국전쟁으로 전국의 주택은 61만 2,636동이 파괴되었고, 경기도에서는 9만 6,920동이 파손되었다.[167] 이에 정부는 주로 외국 원조에 의한 구호자재로 주택을 건설하였다. 전후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1957년부터 주택금융체계가 확립

(16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89쪽.

되어 갔다. 산업자금과 대출자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을 산업은행에서 융자형식으로 공급을 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주택자금융자가 시작되었던 것은 1962년부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에게 주택융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조로 지어진 부흥주택이나 재건주택도 집 없는 서민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168]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파손된 가옥의 일부 자재를 뜯어 집을 짓거나 판자를 주워 모아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천막으로 지붕을 올린 움막집을 짓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결혼 후 부모 집에 들어가서 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렵게 주택마련을 하였다. 다음의 구술자는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천막집을 구입하였다고 한다.

> 우리가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 돈 갖구 집을 샀어요. 천막집을 사 갖구 그래 갖구 여섯 식구가 살았어요, 거기서. 방은 하나였어요. 방은 하난데, 그것두 [방바닥에] 절반은 불이 들어오고 절반은 판자였어요. 그래두 여섯 식구 살았어요, 거기서.〈A군 강명옥〉

A군의 이 구술자는 한국전쟁 후에 부부가 사과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 천막집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택융자제도가 정착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직접 돈을 모아 방이 한 칸인 작은 집을 마련하였다.

B군의 구술자 역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생활비를 아껴서 목돈을 마련하여 집을 샀다. 그러나 이 경우는 A군 구술자와 달리 봉급생활자였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가능한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다. A군 구술자들이 대부분 농사나 노점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가정경제도 계획적인 운용이 어려웠던 데 반해, B군은 나름대로 어렵지만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6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77, 700~707쪽.

처음에 우리가, 그때 당시 아마 20만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전세에 살고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조금 저축해 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거하고 보태서 전세를 조금 늘려서 갔고 ……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많이 세웠죠. 봉급생활 하니까. 우리는 또 어려운 시대를 살은 사람이래서 절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더라구요. 다른 부수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옷도 인제 친구들한테 얻어다 입히고, 친척들한테 얻어다 입히고. 그리고 최소한 먹는 것만 [신경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가능하면 제가 집에서 가르쳤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절약하는 것만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봉급을 타면은 그냥 딱 짤라서 삼분의 일이 됐든 얼마가 됐든 우선적으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살다가 조금 부족하면은 보나스 탈 때 채워 넣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몇 년돈가요, 집 파동 일어나고 그럴 적에 요행히 아파트 사서 들어간 것이 어떻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그동안 저축한 돈하고 좀 보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마련하고 이러고 살아요.〈B군 정종미〉

위의 구술자는 주택마련을 목표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저축을 하고 그 나머지로 알뜰하게 생활을 꾸려갔다고 한다. 주택을 장만할 때까지는 나머지 소비생활을 절제하는 모습은 이 당시의 일반적인 소비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A · B군의 구술자들이 주로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주택을 마련한 데 비해 C군의 구술자 중 일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집을 장만하였다. 물론 부모에게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고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댁에서 백 프로는 안 해 주셨구, 천만 원의 현금을 주시구, 아버님이. 그 다음에 계처럼 해서 미리 타는 걸 해주셨어요. 니네가 하면서 갚아라. 그래서 한 달에 곗돈이 60만 원 정도 나가는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돈 있는 거 몇 백씩 보태서 2,300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방 두 개짜리. [지금 현재의 집은] 아버님이 해 주신 건

데 아버님 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명목상으로는 저희한테 내가 나중에 너희한테 가야 되니까 너희 몫이다라고 주신 거예요.〈C군 박가영〉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A · B세대 구술자들과 달리 C군 구술자들 중에는 초기 결혼자금에서부터 주택마련자금까지 부모로부터 일정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C군의 부모들이 A · B군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의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효의식이 점차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 후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3) 소비생활

지난 50~60여 년간 자본주의 소비문화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인구의 70~80%가 농업에 종사하였던 1940 ·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먹거리는 주로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반찬 장만을 위해 장을 보러 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시장에서 상품으로 나온 재료들을 구입해야만 했다.

됫박 쌀 사다 먹었어요, 옛날엔. 옛날에 그 소쿠리 같은 거, 시방 전화 줄 같은 걸 전화로 엮은 게 있었어요. 시꺼먼 걸로 전화 줄로 바구니같이 이렇게 엮었어요. 성글성글하게, 빠지지 않게 그런 거 갖구 가서 그냥 조금씩 사다 먹구.〈A군 강명옥〉

A군의 구술자는 한국전쟁 후에 전깃줄을 꼬아서 만든 시장바구니를 들고 장에 다니면서 쌀을 되로 사서 먹었다고 했다. 당시는 쌀을 가마니로 사들여 가는 것은 아주 소수의 부잣집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쌀을 말로 사다 먹었으며, 한 되도 못 되는 한줌의 쌀을 편지봉투에 넣어 파는 노점상들도 곳곳에

있었다. 북어도 여러 마리를 꿰어서 팔지 않고 한두 마리씩 낱개로 팔았다.

반면 C군의 구술자들은 주로 일주일치 생활필수품을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구입한다. 한번 장을 볼 때 사용하는 금액은 4만~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해 상품화된 음식을 구매하는 경우도 매우 늘었다.

> [외식은] 자주 하는 거 같애요. 치킨을 시켜 먹는다거나 그런 쪽. 한 달에 두 번, 세 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아웃백' 같은 데를 가면 거의 7만 원, 8만 원 정도 들구요, 동네에서 그냥 먹으면 2만 원에서 4만 원.〈C군 박가영〉

대중외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외식인구가 팽창하고 도처에 음식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외식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은 소득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국민소득 3천 달러로 진입하면서 외식인구도 급속하게 늘게 된 것이다. 다음은 도시 근로자의 가구별 소득에 비해 외식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표 6〉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현황[169]

(단위 : 원, %)

연도	소비자지출	식료품비(A)	외식비(B)	외식비(B/A)
1982	255,416	97,752	6,512	6.7
1983	285,492	102,533	7,401	7.2
1984	312,415	108,553	8,427	7.8
1985	336,157	113,927	9,260	8.1
1986	339,008	120,646	11,620	9.6
1987	388,323	134,999	17,385	12.9
1988	435,887	154,833	22,578	14.6
1989	561,650	181,961	36,740	20.2
1990	649,969	211,118	45,693	21.6
1991	779,600	247,900	56,700	22.9

(169) 김영미, 「외식문화의 자화상」,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역사비평사, 1998, 180쪽;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7 · 1992.



▲ 외식

또한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외국계 패스트푸드점들이 들어오면서 외식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햄버거나 도넛, 치킨 등을 상품화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어린이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또 한편 서구식의 외식문화가 들어오면서 한식 외식업들도 보다 다양화되었다. 설렁탕이나 국밥류가 대부분이었던 메뉴는 삼겹살, 갈비, 춘천막국수, 아구찜, 닭갈비, 보리밥 등 지방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즐겨 먹던 향토음식들이 별미음식으로 상품화되었다.(170) 이러한 외식상품의 다양화는 더욱 외식인구를 늘리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에서 외식은 단지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집이 아닌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사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외식은] 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주말은 주로 식사를 위한 외식이구요, 주중에는 남편

(170) 김영미, 「외식문화의 자화상」,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역사비평사, 1998, 180~183쪽.



▲ 휴일에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

하고 간단하게 술을 한 잔 하면서. 아이도 먹을 수 있거나 담배를 좀 덜 피는 그런 건전한 장소를 이용해서 같이 나가죠. …… 집에서 주로 안 해 먹는 음식을 먹게 되죠. 고기요리라든지 집에서는 평소에 많이 안 해 먹는 편이에요. 그런 음식은 나가서 먹는 편이죠.〈C군 유정우〉

A · B세대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도의 지출을 하였던 것과 달리 점차로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로 소비패턴이 변화하였다.

예전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영화를] 보러 다니고. 여행은 주말 끼구 아니면 공휴일 껴 가지구 가까운 데라도, 요기서 두 시간을 가든 한 시간을 가든 가서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C군 장동근〉

경제적인 거나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멀리 가는 편이구요.〈C군 유정우〉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저희는. 옛날에 차가 없을 때도 싹 메고 직행 타고 에버랜드를 다녔어요. 나가는 거 좋아해요. 에버랜드는 연간회원을 싸게 끊은 대신에 밥 같은 거는 잘 안 사먹어요. 과일을 싸갖고 가거나 먹을 것을 싸 갖고 가서 배고프기 전에 나와요. 과일이며 간식거리 김밥 천 원짜리 이런 거를 사 가지고 가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거나.〈C군 박가영〉

이와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는 '근로정신'과 '저축'이 강요되던 개발시대를 벗어나서 여가와 휴식이 중요한 삶의 코드로 등장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5.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1) 부부관계

가족의 중대사에 관련한 일은 주로 부부가 의논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로 A군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는 두 분이 꼭 의논하셔. 그러나 아버지 주장이 강하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대쪽 같으시지. 절대 옳다고 하는 건 물러서시지 않어. 근데 아버지가 원체 머리가 비상하시구 어디에 뭐 말씀 한마디 빠지게, 누구한테다 또 어떤 생각이든 하시구 나서 얘기하시지 불쑥 하시는 얘기가 없으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순종을 하셨지.〈A군 류덕환 씨 장녀〉

하지만 B군과 C군은 주로 집안과 관련된 대소사는 여성이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주택을 구입할 때처럼 부부의 상호 의사교환이 중요한 경우는

많은 구술자들이 세대 구분 없이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거의 모든 일을 여성이 관장하고 있었다.

> 상의는 하는데 그래도 남편은 그런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줬으면 하니까. 예를 들어 집을 사고 판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은 "응, 그러냐" 하지, 뭐 더 받아라 덜 받아라 이런 거 없고. 자녀들의 결혼 비용 얼마를 쓴다고 해도 다 일임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임을 받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같이 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편하기도 해요 그게. 둘이 마찰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로. 근데 전권을 일임을 해 버리니까 제가 더 조심스럽게 하죠.〈B군 정종미〉

> 집안에서 대소사 문제라든지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그래라, 누나랑 의논해 봐라. 그런 식이구 거의 제가 [합니다].〈C군 박가영〉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뀐 이유는 공적인 바깥일은 남성이 담당하고 사적인 집안일은 여성이 담당하는 근대 성역할 분업에 기인하는 바 크다. 하지만 가정 내부에 한정해 볼 때,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한이 일정 부분 높아졌다고도 평가해 볼 수 있다.

2) 딸과 아들에 대한 태도

아들을 통한 가계계승의식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사고방식이다. 1950년대 농촌에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나 소실을 들이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다. 즉 결혼 후 딸만 있을 경우 소실을 얻겠다는 응답이 40.7%(남성 응답자), 44.6%(여성 응답자)나 되었다. 양자를 들인다는 대답은 34.4%(남성 응답자), 31.5%(여성 응답자)였다. 하지만 없는 대로 살겠다는 응답은

16.5%(남성 응답자), 12.1%(여성 응답자)밖에 되지 않았다.[171] 이러한 아들선호사상은 B세대에까지 강하게 남아 있었다.



▲ **무남독녀** 가계계승의식이 약화되면서 딸 하나만 낳는 가정이 늘고 있다.

> 큰아들은 장손이니까 그냥 우리들 잘 데리구, 저거 하면서 살면 되죠. 장손이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돈두 많이 들어갈거구. 우리들 이러구[같이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야 다 똑같이 저거 하고 싶은데 그래두 우리 장손이, 장남이 최고죠.〈A군 김난향〉

> 딸만 둘을 낳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혹시 아들이 아닐까. 저는 그때만 해도 아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남자니까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냥 낳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저는 은연중에 그래도 기왕이면 아들 낳으면 좋겠지, 그랬는데 막상 딸이라고 하니까 조금 섭섭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예 두 달 동안 안 보더라구요, 애기를. 그렇게 서운했던가 봐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많이 속상했죠. 나 혼자 낳았나. 그래서 안 좋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랬었죠.〈B군 정종미〉

이에 반해 C군 구술자들은 모두 아들과 딸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

(171) 고황경 외, 『韓國農村家族의 硏究』, 서울대출판부, 1963, 141~142쪽.

술자 본인이 외아들인 경우에도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가계계승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설정했던 과거에는 가계계승의식이 강했으나 점차 다양화되고 다원화되어 사회에서는 가계계승의식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난 날 아들을 선호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때문이었다. 노인복지가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노후생계는 대부분 자식(아들)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점차 노인복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아들에게만 의존하려는 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3) 여성들의 사회활동

남편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집안 살림만 돌보는 전업주부층은 도시 중산층에 한정된 주부상이다. 농촌의 주부들이나 하층 서민주부들은 남편의 벌이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여성들은 논밭 일을 한다든가, 혹은 집안에서 삯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상 등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는 개념조차 일반화되지 않았던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여성들에게 있어 집안일과 사회적 활동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A군 구술자들의 사회활동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본격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1960~1970년대 이후에 전업주부층이 보편적으로 늘어났다. 각종 여성잡지들은 '스위트홈'을 낭만화시켰고, 전업주부를 스위트홈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성은 결혼과 함께 퇴사 압력을 받았다. 이에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결혼 전에는] 학교 서무과에 근무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결혼하면 여자는 [직장을] 그만

두는 걸로 당연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다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만두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 그런 생각도(계속 다닐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우선 남편이 나가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 내가 잘 돌봐 줘서 아프지 않고 키울 수 있다라면 그것도 일종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죠]. 왜냐면 병원 출입을 하면은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 때 당시만 해도 맞벌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닌다 하더래도 조금 아이들 키워 놓고 [할 생각이었죠]. 우리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맞벌이를 할 생각]을 잠깐은 했었죠. 같이 벌어서 하면은 좀 빨리 일어설 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알뜰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돈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자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살림이 하기가 힘들죠. 다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때는 조금 몰르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여자들이 막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같이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만 해도 덜 했던 것 같아요.〈B군 정종미〉

당대의 사회분위기나 육아시설의 미비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C군의 구술자들은 대체로 부부가 모두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저두 일을 해야 되는 성격이구, 그리구 경제적으로도 벌어야 돼요. 제가 이왕 어린이집 일을 시작했고 경력이 쌓였으면 한번 어린이집은 해 보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집에 있지는 못해요. 반나절 일을 하더라도 저는 '나간다' 주의예요. [제일 어려운 점은] 아이들 문제죠.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또 제가 버니까. 여자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벌어 오는 데서 괜히 뭔가를 내 거를 사면 괜히 미안해지구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사 쓸 수 있구, 아이들도 조금 더, 학원이라도 하날 더 보낼 수 있구.〈C군 박가영〉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 키우느라고 못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생겨서 결혼 이전에 생각했던 그거를 한번 실현해 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결혼 이전에 생각했던 일들이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라고 해야 하나? 저만의 인생을 나름대로 가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C군 유정우〉

저는 [아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이프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애 낳으면. [애가] 초등하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한다고. 왜냐면 자기가 일을 해 버리면은 애가 성장을 하면서 안 될 것 같다, 그래두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애 성장에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C군 장동근〉

C군 구술자들은 모두 직장을 갖는 문제에서, 자녀의 교육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주부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였다. 이런 이유는 주택구입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려가 가장 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여성들 자신의 사회적 성취욕도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주부들은 집안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이상의 사회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조금 클 때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으로 근대사회의 변천에 따른 시흥 주민의 가족생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대 자본주의사회는 사회의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조와 구성원리, 소비패턴, 가족문화까지 바꾸어 놓았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던 시흥은 산업화 이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게 되었다. 이에 시흥 주민의 가족생활도 많은 변화상을 보였다. 여기에서는 서로 세대가 다른 9명의 구술자들의 구술을 통해 시흥 주민의 가족 변천사를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보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존재한다. 북한에서 월남한 가족, 염전

이나 어업을 생계로 하는 가족, 농사를 짓는 가족, 도시빈민 가족, 독거노인 가족(1인 가족), 서울에서 새로 이입된 도시 봉급생활자 가족 등등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한다.

가족은 하나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정치 · 경제 · 문화적 영향을 받는 역사적 구성물이다. 가족은 과거에도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또 동시대라고 할지라도 도시의 가족과 농촌의 가족의 모습이 다르며, 부유한 층의 가족과 하층민의 가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고 단일한 그 무엇으로 이상화하는 가족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가족의 형태와 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비춰 볼 때, 보다 열린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172)

김은경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172) 보다 열린 시각을 가지고 대안적인 가족을 주장하는 글로는 이이효재, 「부록:21세기 가족의 전망-열린가족, 평등가족」,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이 있다.

표 목록

조선 후기~1910년대 초 안산군의 행정구역 변화 14
조선 후기~1910년대 초 인천부 · 신고개면 · 전반면 · 황등천면의 행정구역 변화 16
시흥시 행정구역의 변천 37
조선~한말 안산군 각 면별 호구의 변화 38
읍지에 나타난 안산군 토지결부의 변화 40
1895년 안산군 진탈 조사결과 41
1896년조 안산군 진탈의 내용 42
1896~1905년조 안산군 실총전답의 내용 42
안산군 초산면 양안의 위원, 학원, 지심인과 그 지역 48
안산군 초산면 중초책 양안의 수정과정 50
안산군양안에 나타난 면별 토지현황 51
안산군의 궁장토 52
1899년 내장원 소관 안산군 궁장토 53
1875년 안산군 초산면 · 마유면 용동궁장토의 규모 53
1868~1870년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경영 55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경영실태 56
1870~1873년 안산 용동궁장토 추수실태 56
용동궁장토의 작미 처리방향 57
한말 안산군 용동궁장토의 추수 58
도장의 처분 60
안산군 궁장토 도장 배상금 산출결과 60
안산군의 둔토 62
1827년 안산군 석장둔 진기 조사결과 64
1804년 안산군 구 장용영둔토의 규모 65
1827년 안산군 구 장용영둔토의 현황 65
1896년 안산군 석장둔의 상황 68
1896년 장용둔의 상황 69
1897년 수원지방대 본영에서 조사한 안산군의 둔토 70
1899년 내장원 소관 안산군 둔토 72
1906년 안산군 둔토의 상황 73
시흥군, 과천군, 안산군 행정구역 명칭 일람 104
시흥군 행정구역 명칭 일람 105
시흥군 행정구역 명칭 일람 109
일제시기 시흥군 직원 110
1927년 시흥군 면직원 및 면협의회 의원 114
일제시기 시흥군 면장 117
토지조사사업시 무신고지 현황 141
소래면 소재 엄비 소유토지현황 143
'사정' 완료 후의 시흥 국 · 민유지의 지목별 필수 및 면적 146
시흥시 면별 경지의 결수 및 '사정' 면적 비교 148
시흥시 호수별 · 지목별 분쟁지 155
시흥군 군자면 · 수암면과 부천군 소래면 국유 · 민유림별 면적 166
1920~1932년 국유 · 민유 소유별 임야 현황 170
1929년 삼림조합 세입세출 175
1916년 수암면의 인구구성 181
1925~1944년 인구변동 182
1930년 직업별 인구구성 184
1930년 출생지별 인구구성 185
1930년 국적별 인구구성 185
일제시기 시흥군 · 부천군의 소유별 1인당 경작면적 186
일제시기 시흥군 · 부천군의 계층별 농가호수 188
소래수리조합 몽리지역의 계층별 농업호수 및 소유면적 189
흥부수리조합 몽리지역의 계층별 농업호수 및 소유면적 189
일제시기 시흥군 · 부천군의 쌀 개량품종 재배면적 193
경기도의 정조식 실행 성적 195
시흥지역의 농업기술 양상 196
1940년 말 시흥지역 수리조합 현황 198
1933년 소래수리조합의 실적에 의한 수지계산표 200
1940년 시흥지역 수리조합의 계획에 의한 수지계산표 200
1934년 경기도 갱생계획 확충실시계획 개요 204
안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 지도'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206
1930년 안산보통학교 지도생 농가의 경제상황 208
1907~1910년경 각국 염의 시장가격 비교 215
1907년 안산군 염업 종사자 현황 218
1920년대 관영염전 건설추이 222
군자염전 축조 개황 224
1925~1929년 관염 생산량 226
1930~1945년 관영염전 건설추이 228
1930~1945년 관염 생산량 229
수인선 노선 및 정차장 일람 240
해방 후 영업구간 및 역수의 변천 242
상금비용 277
작품집 발간비용 278
한말~일제강점기 한시모임의 활동내역 284
1946년도 경기도 천일염전 현황 332
농지개혁시 20정보 이상 피분배지주 명단 336
토지개혁의 원칙과 방법 344
남한의 영농형태별 경지면적과 농가호수 362
경기도의 영농형태별 농가호수 363
남한의 경작규모별 농업호수 364

미군정기 귀속농지 총관리면적 367
도별 귀속농지 매각 실적 370
농지분배 총괄표 372
시흥군의 20정보 이상 피분배 지주명단 377
경기도의 20정보 이상 소유지주의 농지 구성비율 378
시흥군 군자면 지주의 피분배면적 379
경기도 시군별 농지분배 결과 386
시흥군 분배농지 수배자조사 집계표 388
1972년 수암지역 동리별 새마을지표 406
1972년 군자지역 동리별 새마을지표 407
1972년 소래지역 동리별 새마을지표 408
새마을농촌건설 20개 표준사업(1972년 경기도 선정) 410
1970년대 시흥군 제조업 분포 436
1988년 시흥군 제조업 분포 437
시화공단 조성 개요 439
시흥군의 면별 인구수와 구성비의 변화 442
소래 · 군자 · 수암권의 인구성장 443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현황 446
1953년 시흥군 행정구역 449
1963년 시흥군 행정구역 451
부천군 폐치에 따른 인접군의 조정 454
1973년 시흥군 행정구역 455
1988년 시흥군 행정구역 461
1988년 시흥군 일반 현황 461
구술자의 인적 사항 464
1954~1987년 시흥군의 가족수 추이 466
1955~1990년 평균 초혼 연령의 변동 추이 473
가사에 도움을 받는 정도 493
가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 494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현황 502

그림 목록

조선 후기의 안산군(『광여도』) 15
조선 후기의 인천부(『광여도』) 15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경기도 19
조선시대 시흥의 영역 35
시흥군 관내지도(1936) 36
시흥군 관내지도(1936) 108
안산군 대월면 석고리 민유산 약도①(1909) 161
안산군 대월면 석고리 민유산 약도②(1909) 161
국가별 소금 수입량 215
1910년대 시흥지역 지형도 217
군자염전 223
1929년 1정보당 평균 생산량 226
북한군 선제타격계획 338
수리산전투 상황도 354
신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감도 445
시흥군 관내도(1961) 449
시흥군 관내도(1967) 451
시흥군 관내도(1974) 457
시흥군 행정지도(1978) 457

사진 목록

안산우체소(1910년대) 31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 모습(1899) 45 지적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 47 지적
중초책 안산군양안의 표지 49
안산군 초산면양안의 내용 49
『안산군초산마유양면소재용동궁매득전답개타양안』 내용 54
『용동궁안산초산면중직동추수기』 표지 55
『안산군석장둔전답사정양안』 63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 수원지방대 본영 안산군 부분 71
안산군 관아를 개수한 수암면사무소 99
조현강습소 졸업사진 102
시흥군 면치강습기념 군청직원 일동 기념촬영(1942.9.3) 113
시흥군 영등포읍 직원(1940년대) 118
수암면 직원(1940년대) 118
읍면리원강습회 종료기념(1943) 119
신천리 청년단 120
시흥군청 이전운동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36년 2월 26일) 121
『토지조사부』 표지 125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 모습(1899) 129 지적
역둔토 실지조사 129 지적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 130 지적
결수연명부 131 지적
과세지견취도 131 지적
임시토지조사국 134 지적
분쟁지조사 136 지적

지위등급조사 139 지적
오이도 『토지조사부』 내용 141
미산리 『토지조사부』의 엄비 소유지 144
「동서역추수서류」의 군종리평 부분 149
용동궁 마름 안재록이 기록한 추수기 151
『안산군소재장용둔전답사정양안』 마유면 부분 154
임야조사 159 지적
연고림 양여에 관한 신문기사(『동아일보』 1927년 2월 25일) 168
시흥 삼림조합 정기총회 신문기사(『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173
시흥군 식림장려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174
소래수리조합 몽리지역의 소작관행에 관한 내용 190
공출한 누에고치 판매소 192
소래수리조합 지역의 농업지역 194
수리조합 직원(1940년대) 197
『소래수리조합 사업계획서』 표지 199
계수저수지(1940년대) 199
『매화공려수리조합 사업계획서』 표지 201
『매화공려수리조합 사업계획서』 내용 201
물왕저수지 공사(1944) 202
자력갱생 204 안산
『體驗5年 安山卒業生指導』 205
지도생 임형택 모자의 갱생 자원이 된 밤산 207 안산
송아지부터 키워서 농사에 이용하는 소 207 안산
새로운 농법의 교육 210 안산
가마니 짜기 210
지도생 이회덕의 집을 시찰한 조선 13개 도지사들(1942) 211 안산
광양만염전(1920년대) 223
군자염전 배수로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26년 10월 17일) 225
경부선 철도 기공식 233
경동철도 소래철교 공사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36년 6월 21일) 237
수인선 개통 신문기사(『동아일보』 1937년 8월 7일) 239
남인천역 터 243 인하대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수인선을 타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244 철도
수인선 마지막 운행 244 철도
군자역(1994) 245
달월역 행선표 245
군자염전을 지나는 수인선 246 철도
수인선을 타는 사람들 246 철도
수암면 비석거리(현 안산시 수암동) 254
군자면 3 · 1운동 진원지인 거모동(1989) 258
군자면 독립운동 유적비 258
『연사명첩』 표지 263
『연성음사』 표지 263
이운근의 서문 264
목대석의 서문 266
연성음사 회원 명단 267
연성음사의 규칙 269
『연성음사시첩』 표지 271
『연성음사시첩』 속표지에 기록된 내용 272
『동아일보』에 낸 연성음사 작품공모 광고(『동아일보』 1927년 9월 21일) 274
마감연기에 관한 광고(『동아일보』 1927년 12월 1일) 274
『연성음사 제일회집』 표지 275
조광하의 엽서 277
김재승의 서문 280
김봉성의 서문 282
연성음사 직인 288
군자공립보통학교의 학년연장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 1927년 3월 24일) 291
부업으로 새끼 꼬고 가마니 짜는 농가의 모습(1930년대 수암면) 312
소래면 신천리청년단(1941) 315
군자면민들의 해방 축하모임(군자면 거모리) 322
미군의 진주 324 *
안양에 세워진 시흥군 청사 326
탁치 관련 시위 329 *
한강방어선 전투 340 *
피난행렬 351 *
국민방위군의 모습 352
수리산전투에 참가한 터키군 354
소래초등학교의 움막교실 356
포동의 피난민촌 357
새마을가꾸기 촉진대회 391
1970년대 소래면 은행리 검바위마을 393
경기도 농촌진흥원 정착지도지역 안내판 395 전속도
독농가 연수 396 전속도
1960년대 소래면 포리 399

포리의 새마을지도자 400
한미재단 새마을부락 간담회 401
포리의 마을길 확장 402
포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403
포리 간이상수도 통수식 403
자립마을인 매화2리(1970년대) 409
기초마을인 은행1리(1970년대) 409
수암면 능곡리 마을회관 건립 411
마을길 확장 412
새마을사업으로 달라진 마을 풍경 415
마을 공동체 419
오이도 진입로 확장공사 423
부녀회 424
여성들의 새마을 활동 426
1980년대 초 신천대로 풍경 434
반월공단 조성공사 438
시화공단 438
복음자리마을 건설공사 441
반월출장소 개청 444
광명아파트 건설 453
안양시 승격 453
서면의 소하읍 승격 455
과천신도시 개발 458
소래읍 승격 459
시흥시 개청 460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 465
현대의 핵가족 465
가족계획사업 467
전통혼례 472
혼수로 해 온 가구 476
다자녀 가구 479
가족계획사업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479
장한 어머니상 시상 485
자녀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관심 486
아이와 놀아 주는 아버지 488
절구질하는 여성들 492
장에 나온 남성들 497
외식 503
휴일에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 504
무남독녀 507

❶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 필자제공
지적 :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백년사』, 2005
철도 : 철도청, 『한국철도100년사』, 1999
안산 : 『體驗5年 安山の卒業生指導』, 1932
인하대 : 인하대학교 박물관
별도의 표시가 없는 사진은 시흥시 포토뱅크와 향토사료실에서 제공한 것이다.
❷ 사진과 관련된 문제는 시흥시향토사료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찾아보기

ㄱ

가사 491
가족 511
가족계획 427
가족계획사업 467, 478
가족관념 468
가족생활 463
가족형태 464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402
감창환 116
갑오개혁 25
강기연 218
강릉청금록 286
강릉청금록속록 286
강영윤 116, 263
강은식 257
강정원 116
강제적 동원 416
강종무 331
강철희 300
개발제한구역 439, 446
개신교 76
갱생지도부락 204
거모동 15
거모리 107
거모포 107
거모포리 15
결부 37
결혼 471
결혼 관행 471
경기관하각부군병신조수조성책 41
경기도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 456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 457
경동철도 232, 241
경동철도기성회 236
경동철도사 236
경동철도촉진군민대회 233
경부철도 233
경선궁 143, 144
경성부 109
경수산업도로 434
경인고속도로 434
경인공업지대 433
경제개발 5개년계획 433
경제권 496
계수리 150, 444, 454, 460
계수저수지 199
계용련 276
고송정음사 264
고잔리 106
고택규 48
공려수리조합 201
과림리 150, 454
과천 104
과천군 12, 107
과천면 107
과천시 13
과천신도시 458
과천지구출장소 458
과천출장소 460
관둔 62
관북시사 285
관북시회 285
관영염전 221
관영화정책 220
광곡리 15, 106
광명리 455
광명시 13, 444, 459, 460
광무사검 58
광무양안 37, 39
광무양전 46, 51
광무양전사업 34, 43
광석동 15
광석리 15, 79, 107, 150
광양만염전 222
광양만 출장소 222, 228
광학조직 84
교육계몽운동 88
교육칙어 298
교육칙어 도난사건 301
구소래읍사무소 445
구장용영둔토 65
구정리 107
구지정 153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02
국민총력조선연맹 102
국유지 128, 141, 145
국유화 61
군내면 13, 104, 107, 108
군자공립보통학교 293, 302
군자리 107, 150
군자면 12, 13, 108, 145, 146, 150, 153, 342, 461
군자면당부 342
군자면당부 정치정세 보고 342, 345
군자면 인민위원회 342
군자면 죽율리 303
군자보통학교 296
군자역 245
군자염전 222, 224, 225, 226, 245
군포시 13
군포읍 13, 460
군포읍 승격 455
궁내부 153
궁장토 52, 144
궁장토경영 52
권사원 218
권섭 208
권성학 116
권준영 116
권중석 327
권중영 155
권형 116
권형집 48
권호 116
권희 258, 259
궤곡리 15, 106, 153
귀속농지 360, 366, 367
그날이 오면 320
근로보국단 120
근로보국단 연합단 121
금강시사 287
금란시사 286
금릉음사 286

금문시회 285
금이리 152, 454
금천현 12
기간시설 31
기리다 겐지 122
기영시사 286
김건배 116
김경공 218
김경진 331
김광태 323
김교성 270
김규창 328
김규홍 303, 304
김동설 116
김동식 55
김동훈 206, 209
김명채 116
김명한 206, 208
김문수 48
김병권 253
김봉성 265
김성관 116
김성환 377
김승렬 48
김승한 116
김옥호 323, 327, 328
김왕성 209
김용운 328
김원봉 343
김윤영 330
김응태 72
김인득 206, 209
김일광 219
김재승 262
김재연 23
김재원 60, 61
김종윤 116
김종현 300
김주호 330
김진형 198
김천복 257
김청한 303, 304
김치덕 59
김학노 48
김학손 216
김학인 219
김해운 66
김현광 155
김호여 218
김희영 327

ㄴ
나기정 113
나변환자이주반대위원회 337
남계술 72
남계양 48
남녀평등론 482
남덕원 116
남면 107, 108
남시 출장소 222, 228
남조선과도입법의원 325
남조선과도정부 325
남조선노동당 327
내수사 52
내수사둔토 153
내장원 128, 153
논곡동 15
논곡리 15, 90, 91, 92, 107
농가경제갱생계획 204
농로개발사업 414
농민 385
농사개량 120
농업호수 187
농지개혁 336, 360, 370
농지개혁법 370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336
농촌진흥운동 203, 310
능곡동 15
능곡리 15, 93, 106, 107, 151, 152, 206
니시노 토요히코 235

ㄷ
달산리 107
달월역 245
담락루시사 286
대동사문회 285
대동청년단 327, 331
대동청년단 시흥군지부 328
대동토건회사 331
대야리 150, 454
대월면 13, 15, 104, 108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연맹 327
대한매일신보 90
덕안궁 144
데라우치 192
도시화 439
도창리 152, 392, 454
도촌리 15
독농가교육계획 395
독농가연수원 395
독촉청년총연맹 소래지부 327
동곡리 106
동면 107, 108
동인음사 286

ㄹ
류겸수 116
류군현 116
류기형 116
류석빈 323
류승렬 86
류원성 271
류익렬 116, 254
류익수 253, 255, 257
류지연 116, 118, 297
류지창 116
류해로 116
리지웨이(Merhew B. Ridgeway) 352

ㅁ
마름 190
마유면 13, 15, 66, 104, 108, 216
마이어스 324
만세시위운동 260
만취당시사 286

매화공려수리조합 198, 201
매화리 454
메이플(Alpheus F. Maple) 325
면민대회 297
면사무연구회 119
면장 100
면장회의 119
면제 98, 103
면협의회 101, 116
명농정사상량문 271
명례궁 52
모스크바3상회의 328
목감동 15
목감리 15, 106
목감리진흥회 312
목내리 107
목재판매통제조합 121
목탄통제배급조합 121
목포유산시사 287
목화마을 440
몽리지역 188
무곡동 107
무신고지 147
무지내교회 78
무지리 454
문곡서당시회 285
문순모 304
문정식 208
문창영 116, 304, 378
물왕동 15
물왕리 15, 106
물왕저수지 202
미곡통제조합 121
미군정 323
미산감리교회 78
미산리 392, 454
미소공동위원회 332
미카미 모토히로 217, 218
민성원 219
민영찬 60
민유지신고 140
민중필 219
민진원 62

ㅂ

박계근 48
박근서 218
박노정 48
박래형 116
박봉진 116
박성수 343
박세환 23
박영구 48
박영래 328
박원선 218
박유현 48
박의교 219
박재홍 216
박정희 390
박종준 343
박창보 150
박창식 174
박치삼 216
박평서 60
박형진 421
반월공업단지 437
반월출장소 13, 444, 460
방산리 454
방죽뫼 76
뱀내장 80
보통면 100
복음자리마을 441
봉성음사 286
부계혈족 468
부곡리 106
부부관계 505
부재지주 189
부천 434
부천군 13, 454
부천시 444, 460
북곡리 15, 106
북면 107, 108
북방 104
북방면 20, 104
분쟁지 154
분쟁지심사위원회 156
분쟁지조사 137
비립동 256, 259
비밀통고 258
비석거리 253
빈민운동 440

ㅅ

사립학교 86
사이토 마코토 101
사천장 80
4H클럽 400
4H클럽경진대회 400
산림조합 171
산북리 107
산업기지개발공사 437
산업장려 120
산현동 15
산현리 15, 106, 206
삼림공려조합 172
삼림조성조합 172
삼림조합 158, 173
37도 방어선 349
삼우시사 287
삼일운동 250
상북면 107
상서면 107
상직리 15, 106
새마을가꾸기사업 390, 415
새마을노래 404
새마을양회 413
새마을연수교육 394
새마을완성부락 406
새마을운동 390
새마을지도자 394
새마을지도자연수원 395
새문안교회 77
서규석 116
서리청둔 70
서면 108, 455
서상규 310

서상복 206, 209
서상용 209
서수복 310
서이면 107
서이면사무소 122
서정리 106
서정악 114
서호시사 285
석곡동 107
석곡리 15
석장둔 55, 57, 62, 64, 66, 70, 73
석장둔토 150, 153, 154
선곡리 107
선더볼트(Thunderbolt Operration)
작전 353
선부동 107
선희궁 70, 153
성곶 104
성곶면 20, 104
성내리 107
성두리 107
성역할 483
성조경 116
성포리 106, 255
소래공립보통학교 298
소래국민회 327
소래권 13, 142, 146, 150, 391, 446, 454, 459
소래수리조합 188, 194, 195, 198, 201
소래염전 227, 228
소래읍 460
소래철교 239
소비생활 501
소사읍 454
소유권분쟁 155
소작관행 190
소작쟁의 191
소작지 186
소작호수 187
소하읍 승격 455
손영기 324
손치광 219
송남음사 285
송종원 48
송증 116
수도권 전철 434
수도권정비계획법 437
수리산 353
수리산전투 354
수리안전답 202
수암리 12, 13, 106, 108, 145, 146, 150, 205, 253, 343, 461
수암리 비립동 시위 260
수암면사무소 256
수암주재소 253
수여선 232, 233
수원경찰서 30
수원 서리청둔 73
수원 석장둔 73
수원세무서 24
수원실업협회 233
수원우편국 25
수원 장교청둔 73
수인선 232, 237, 239, 241
수인선 개량운동 241
수인선 부설문제 234
수진궁 52
순사주재소 30
순소작지주(지주갑) 187
스튜어트 324
시우동 107
시화공업단지 438
시흥 104
시흥군 12, 104, 107, 373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 342
시흥군농회 306
시흥군 문묘유림시국인식강연회 120
시흥군 부녀동맹 327
시흥군 부인근로보국단 121
시흥군 삼림조합 176
시흥군 인민대회 330
시흥군 인민위원회 323, 343
시흥군 청년단 121
시흥군 청년동맹 327
시흥군 청사 이전운동 121
시흥근로보국단 313
시흥시 145, 461
시흥우체사 30
시흥지구간척사업 기공식 331
시흥청년단 314, 315
시흥호 121
식민농정 191
신각동 107
신고개면 16
신고주의 134, 160
신길리 107
신동면 107
신민주주의 327
신석현 60, 61
신영우 209
신영조 152
신영학교 87, 88
신천리 150, 440, 454
신탁통치 328
신한공사 367
신한음사 287
신해음사 285
신현기 116
신현면 13, 153
신현목 116
심양음사 285
심윤택 48
심학순 218
13도제 18

ㅇ

아들선호사상 507
안광신 218
안문흠 66
안산 104, 150
안산공립보통학교 205, 294
안산군 12, 13, 14, 17, 18, 23, 40, 72, 104
안산군결복영진성책 41
안산군 광무양안 46

안산군 궁장토 53
안산군도 219
안산군 둔토 62, 73
안산군사 31
안산군 석장둔 67
안산군석장둔전답사정양안 63, 65
안산군 세무주사 23
안산군소재장용둔전답사정양안 64, 68
안산군수 92
안산군양안 47, 48, 50, 88
안산군 용동궁장토 54, 56
안산군 토지결부 39
안산둔답 55
안산분파소 29, 92
안산석장둔양안 63
안산세무분서 24
안산순사주재소 29, 30, 93
안산염전 216
안산재무서 24
안상묵 116
안세임 327
안양 433
안양면 448
안양읍 448
안양초등학교 328
안영화 218
안이산 209
안재록 55
안재홍 327
안종실 425, 429
안철재 303
안현리 392, 454
안홍규 303
안희신 304
애국기 헌납운동 121
양상리 106
양원음사 285
양전 44, 47
양지아문 44
양하리 106
어택선 48
언더우드 77
언양작천정음사 286
엄선영 86
엄영섭 116
엄이섭 116, 211
여운형 322
역둔토실지조사 129
역둔토조사 128
연사명첩 262, 265
연성음사 262, 265, 281, 286
연성음사시첩 262, 270
연성음사 제일회집 262
염수이입관리령 227
염전 216
영등포면 109
영등포정 109
예연호 218
오상현 327
오이도 150, 222
오이도학술강습소 305
옥균도 222
옥길리 454, 460
와리 106
와리면 13, 66, 87, 104, 108
와상리 106
와하리 106
요네다 진타로 293
요존국유림 169
용동궁 52
용동궁둔 150
용동궁장토 53, 151, 152, 154
울산한시회 287
울프하운드(Wolfhound)작전 352
원곡리 107
원당포 107
원상리 107
원시리 107
원여서 218
원음사 285
원하리 107
월곡 104
월곡면 20, 104
월곶동 15
월곶리 107, 150, 153
월동리 15, 107
월서리 15, 107
월입피 106
월입피둔 62, 73, 74
월피 79
월피리 106
위력수색 352
유병룡 48
유상매수 유상분배 336
유엔한국임시위원단 333
유인재 78
육복동 299
육아시설 509
육훈상 377
윤경헌 116
윤당당 116
윤동욱 253, 255, 257
윤병소 253, 257
윤성한 116
윤시병 90
윤여공 218
윤준 116
윤충한 336, 377
윤필구 113
윤필현 384
윤희용 48
율포리 15, 106
은행리 392
은행리 454
을미사판 58, 67
을사조약 89
응곡리 15, 107
의병운동 89
의병투쟁 94
의왕면 459
의왕시 13
의왕읍 13, 460
의왕읍 동부출장소 460
의용군 모집 345
이건영 116
이경수 59

이공미 218
이광석 412
이규용 116
이규원 116
이남시사 286
이남진 116
이덕증 259
이도영 198
이동익 116
이명규 308
이명기 116
이명상 116
이목동 107
이묘남 336, 377
이범직 48
이범하 48
이병돈 323, 327
이봉구 93, 94
이봉문 253
이서구 116
이석재 92
이성호 323
이십삼부제 17
이염 116
이염태 116
이영득 399, 403
이용철 209
이운근 263
이원우 48
이원종 116
이은구 48
이응수 259
이재간 116
이재형 334
이종진 259
이종형 116, 259
이주정책 440
이준길 218
이준명 218
이중영 377
이진홍 336, 377
이창구 323
이청여 218
이한우 116
이형수 397
이훈직 91, 92
이흥여 218
인민임시자치회 323
인주 17
인천경무서 29
인천경정우편소 32
인천경찰서 29, 30, 93
인천군 17, 18, 23
인천군 세무주사 23
인천남동지구 439
인천도호부 17
인천둔탑 55
인천부 13, 18
인천부관찰사 23
인천부 광무양안 46
인천부세진흥회 241
인천부읍지 16
인천상륙작전 347
인천석장둔양안 63
인천세무분서 24
인천우편국 32
인천재무서 24
인천전신취급소 32
인천지금고 25
인천화방정우편소 32
인천화정우편소 32
인화면 108
1·4후퇴 349
일어원증학교 90
임갑준 23
임건호 255
임성대 208
임시정부 수립 328
임시토지조사국 136
임야소유권 158
임야조사부 166
임야조사사업 158, 165
임천득 206, 209
임학신 254
임형택 206, 209
잉화면 13, 15, 104, 151, 152

ㅈ

자녀 양육 484
자립마을 406
자발적 참여 416
자염 214
자작지 186
장곡동 15
장곡리 107, 150, 151
장교청둔 70
장봉호 331
장상리 15, 106, 107
장석철 206, 208
장수산 259
장순봉 116
장왕동 15
장용둔 62, 73, 74
장용영둔전 66
장용영둔토 153
장종리 53, 151, 153
장춘흥 219
장택상 384
장택진 116
장하리 15, 106, 107
장현동 15
장현리 107, 150, 153, 155
장형순 208
전국농민조합총연맹 327
전국부녀총동맹 327
전국청년단체총동맹 327
전기봉 59
전농 시흥군지부 327
전매국 223, 225
전반면 13, 16
전업주부 495
전영화 392
전오염 214
전우태 86
전치근 218
전태신 59

점성리 106
정기섭 116
정동섭 155
정사음사 285
정성환 218
정시촌 93
정신총동원연맹 120
정여즙 218
정왕강습소 305
정왕리 107, 150, 153
정우택 86
정원렬 116
정원수 116
정윤영 86
정윤철 116
정은교 116
정재오 336, 377
정형택 86
제4차 염전계획 228
제3차 염전계획 228
제암리 251
제2차 염전계획 228
제1차 염전계획 228
제청리 15, 106
조광하 276
조남동 15
조남리 15, 106, 206
조덕재 276
조동현 323
조선건국준비위원회 322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23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327
조선민사령 138
조선부동산등기령 138
조선수리조합연합회 331
조선인민공화국 322
조선직물주식회사 122
조선철도주식회사 241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 133
조선토지조사사업 124
조세징수 22
조소앙 327
조순화 218
조신득 218
조이리 107
조일생 276
조재승 48
조촌리 107
조한영 336, 377
조현리 15, 107
졸업생 지도 205
종산시사 285
좌우합작운동 332
주안 출장소 222, 228
주택마련 498
주한미군정사령부(Head 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325
죽율동 15
죽율리 107, 257
죽율야학 303, 304
죽율야학 낙성식 303
중경임시정부 323
중림 81
중림역토 150
중직동 53, 151
중직리 15, 106
지구총대 134
지방제도 17, 98
지붕개량사업 414
지위등급조사 137
지정면 100
지종엽 55
지주 377
지주명부 368
지주소작관계 186
직계가족 470
진명의숙 86
진휼청 153

ㅊ~ㅍ

차원국 206, 208
찬녕시사 285
창흥측량학교 86
천수답 202
천원명 218
천일염 214
천일염 관영화정책 219
천주교 76
청양음사 285
초산면 13, 15, 104, 108, 151, 153, 216
초지동 107
초지리 107
초혼연령 473
총리연둔 62
총석정시회 286
최명환 326
최석보 219
최성재계 285
출산 471, 478
치안행정 28
칠리제공려수리조합 198, 201
크로마이트작전 347
탁지부 140
토가와 카네쿠라 224
토지개량사업 198
토지개혁 344, 360
토지소유권 134
토지신고서 140
토지조사부 125, 148
토지조사사업 140, 158
통감부 127
통신사무 31
통신시설 28
팔도제 17
포리 399, 454
포1리 392, 421
풍남시사 286
피난민 북상저지선 357
피양촌 245
피임 482

ㅎ

하북면 107
하상동 15
하상리 15, 53, 106, 150, 151

하서면 107
하중리 15, 107, 141, 150, 206
하하리 15, 107
학년연장기성회 296
학년연장운동 29
한국수자원공사 437
한국전쟁 337
한기호 116
한독당 시흥군당부 327
한독주택마을 440
한문사숙 295
한미재단 404
한민당 시흥지부 327
한성세무서 24
한성우체사 30
한승리 116
한승우 116
한시모임 284
한원배 94
한춘명 218
함원식 87
해방 321
해양음사 286
핵가족 467
행정구역 439, 448
허완 116
협궤선 240
호구 37
호영선 218
호조벌 180
홍경집 219
홍군선 219
홍덕순 78
홍순칠 116, 253, 254, 257
홍의선 219
홍종국 113, 155
홍종준 48
화양시사 285
화영둔결 57
화정동 15
화정리 15, 106, 151, 354
황등천면 13, 16
회산음사 287
홍부수리조합(물왕저수지) 188, 195
홍인의숙 86

집필위원 명단(가나다순)

견수찬(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김근태(단국대학교 동아시아우언연구팀 겸임연구원)
김은경(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강사)
박동찬(한양대학교 사학과 강사)
박민웅(경기지역사연구소 연구원)
윤해동(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이상록(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송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이영호(인하대학교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이현주(국가보훈처 연구관)
조석곤(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차선혜(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최병택(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최영묵(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홍복현(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시흥시사 ❸ 시흥의 근현대

발행일 2007년 2월 28일 **발행처**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집 · 디자인 (주)디자인 소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37-13번지 2층 | 전화 02-514-5164 | 팩스 02-517-3692

출력 및 인쇄 (주)두경프린텍 | 전화 02-859-8900

시흥시사 전 10권, 2007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시흥시청 031-310-2114, 031-310-2936

始興市史 (전 10권)

1권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2권 시흥의 전통시대
3권 시흥의 근현대
4권 시흥시의 출범과 성장
5권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6권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7권 시화공단과 노동자들
8권 시흥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9권 시흥 사람들의 구술 생애사
"마디마디 서러워도, 살자면 살아지는 게 인생"
10권 시흥이 남긴 기록, 기록에 담긴 시흥

시흥시사편찬위원회
429-701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Tel 031-310-2936, Fax 031-310-2832, www.siheung.go.kr